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732-01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연구



2014. 12.

(주)한국농업경영기술연구원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연구」 정책과제의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과제수행 참여 연구원

책임 연구원	: 전북대학교	조 가 옥
참여 연구원	: 동국대학교	황 재 현
참여 연구원	: (주)한국농업경영기술연구원	김 윤 태
참여 연구원	: (주)한국농업경영기술연구원	양 호 성
참여 연구원	: 전북대학교	이 인 재

2014년 12월 일

(주)한국농업경영기술연구원 대표 이 덕 순

< 차례 >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용역 개요	1
2.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3. 국내외 연구동향	9
4.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3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0
6. 연구추진 과정	22
제2장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과정과 운영실태	23
1.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배경과 과정	23
1-1 2000년대이후 쌀산업의 변화과정	23
1-2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현황	32
2.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지원대상 특성	38
2-1 선정 들녘경영체 지역 분포실태	38
2-2 선정 들녘경영체의 유형적 특성	41
3. 들녘경영체 공동경영 실태와 문제점	46
3-1 들녘경영체 조직운영 실태와 문제점	46
3-2 들녘경영체 공동경영 현황과 문제점	51
제3장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개발	65
1.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필요성	65
1-1 들녘경영체내부 실태로 본 필요성	66
1-2 정책상 필요성	70
2. 들녘경영체 개념정의와 단계구분	71
2-1 들녘경영체 개념정의	71
2-2 들녘경영체 단계규정	72
2-3 일본의 집락영농 및 북해도 농업생산법인 공동경영 사례	75
3. 단계별 들녘경영체 자격요건, 구비내용 및 지원내용	85
3-1 들녘경영체 단계별 자격요건	85

3-2 단계별 들녘경영체 자격·구비내용 확인방법	89
3-3 단계별 들녘경영체 정부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92
3-4 들녘경영체 공동지원조직 시스템	94
4. 들녘경영체 법제화 방안 검토	100
4-1 들녘경영체 법제화 개요	100
4-2 법제화 검토방안(법률 개정 기본방향)	102
4-3 조문별 검토방안	103
4-4 들녘경영체 개념정의와 목적 및 사업내용과 관련된 기타 법령 조문	106
4-5 들녘경영체 인정방안(안)	112
제4장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119
1.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필요성과 가능성	119
1-1 농업실태로 본 맞춤형 육성모델 개발 필요성	119
1-2. 들녘경영체 실태로 본 지역·품목 맞춤형 육성모델 가능성	122
2. 지역·품목 맞춤형 육성모델 개발	127
2-1 맞춤형 육성모델 개발시 고려점	127
2-2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128
3. 쌀 중심의 들녘경영체 유형	131
3-1 쌀 관세화 이후 쌀 생산 전망 및 목표치	131
3-2 쌀 중심 들녘경영체 유형	132
3-3 고품질쌀 생산모델	134
3-4 친환경쌀 생산모델	141
3-5 가공용쌀 생산모델	147
3-6 수출용쌀 생산모델	151
4. 논 이모작 확대유형	156
4-1 논 이모작 실태와 문제점	156
4-2 [쌀+맥류] 생산모델	158
4-3 [쌀+조사료+한우 결합형] 모델	168
4-4 [쌀+논 원예작물 결합형] 모델	179
5. 논+밭작물 확대유형	185
5-1 현황과 문제점	185

5-2 [쌀+밭 식량작물 확대] 생산모델	188
5-3 [쌀+채소류] 생산모델	194
5-4 [쌀+과수류] 생산모델	205
6. 유형별 공동사업 추진전략	213
6-1 들녘경영체 조직-운영체계	213
6-2 농기계 공동이용 시스템	218
6-3 공동 육묘-방제 시스템	225
제5장 들녘경영체 성과 조사방법 분석	229
1. 사업 계획-선정-관리-평가 4단계	229
1-1 분석체계	229
1-2 들녘경영체 육성 단계별 요약	230
2. 들녘경영체 선정단계 평가방법	233
2-1 이전 들녘경영체 선정 평가방법	233
2-2 들녘경영체 선정 평가방법	244
3. 들녘경영체 성과단계 평가방법	266
3-1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및 농산물생산비 조사항목	266
3-2 들녘경영체 육성효과 흐름도	274
3-3 들녘경영체 성과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275
3-4 들녘경영체 성과 비교방법	285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290
1. 연구결과 요약	290
2. 정책제언	305
< 참고문헌 >	309
< 참조 1 > 2009 ~'14년 들녘경영체 소속 읍면 주요 작물재배면적	311
< 참조 2 > 전국 농업법인의 현황	321
< 참조 3 > 일본 농지보유합리화사업 사례(일본 福岡縣 糸島市)	327
< 참조 4 >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연구 설문조사표	330

< 표 차례 >

표 1 2004년 쌀 관세화 유예이후의 주요 수입내용	23
표 2 농가의 호당 농가소득 구성내용 변화추이	25
표 3 호당 농업총수입 구성 품목별 조수입 변화추이	26
표 4 쌀 재배면적, 생산량, 1인당 쌀 소비량 변화추이	27
표 5 논벼 생산농가 연령별 변화추이	29
표 6 쌀 재배규모별 농가수 변화추이	30
표 7 전국 들녘규모별 들녘수 및 들녘면적 현황(2013년 재조사 결과)	31
표 8 전국 품목별 작목반이 있는 행정리수 비교(2010년)	31
표 9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전개과정	32
표 10 들녘경영체 연도별 선정개수	34
표 11 시도별 광역방제기 공동육묘장, 시설장비 지원여부	34
표 12 도별 광역방제기 지원 실태	35
표 13 도별 공동육묘장 지원 실태	36
표 14 도별 기타 시설장비 지원 실태	37
표 15 들녘경영체 도별 시설장비지원 경영체 분포현황	38
표 16 들녘경영체 선정 시군수 및 읍면수	39
표 17 전국 시도별 논의 들녘크기별 들녘수(2013년 조사)	40
표 18 전국 품목별 작목반이 있는 행정리수 비교	40
표 19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수별 공동경영면적별 경영체수 비교	41
표 20 들녘경영체 경영주체별 시설장비지원 경영체 분포현황	42
표 21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소유현황 요약	42
표 22 들녘경영체 경영주체별 지원횟수 분포현황	43
표 23 들녘경영체 경영주체별 평균 농가수 및 경영면적	43
표 24 들녘경영체 경영체별 시설장비 소유현황 1	44
표 25 들녘경영체 경영체별 시설장비 소유현황 2	45
표 26 들녘경영체 유형별 평균 참여 농가수 변화현황	46
표 27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규모별 경영체수 변화현황	47
표 28 들녘경영체의 법인구성(계약재배농가수)	47
표 29 들녘경영체의 법인구성(임원수)	47

표 30 들녘경영체 쌀 재배면적 변화현황	48
표 31 들녘경영체 참여면적별 경영체수 변화현황	48
표 32 운영비·교육컨설팅비용으로 들녘경영체에 도움이 된 내용	49
표 33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운영비 지원사업 지원기간	49
표 34 교육컨설팅·운영비 지원사업 중 운영비 지원사업 사용용도	50
표 35 교육컨설팅·운영비 지원사업 중 운영비의 바람직한 비율	50
표 36 귀하의 들녘경영체에서 5년 이내에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사업	51
표 37 들녘경영체를 법인화(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	51
표 38 법인의 농지소유와 임차 및 쌀직불금 수령 법인수	52
표 39 들녘경영체 구성원별 농지현황	53
표 40 들녘경영체별 공동경영체 조직화 정도 비율	53
표 41 농업법인유형별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수와 면적	54
표 42 농업법인유형별 들녘경영체 참여구성원수별 들녘경영체 현황	55
표 43 농업법인유형별 공동작업 참여 일반농가수 비율별 들녘경영체수	55
표 44 농업법인유형별 공동작업 참여 일반농가의 면적 비율별 들녘경영체수	56
표 45 들녘경영체 운영주체에 의한 작업별 공동작업비율	56
표 46 들녘경영체 운영주체별 공동작업비율별 들녘경영체 현황	57
표 47 들녘경영체 지원내역별 작업별 공동작업비율	58
표 48 들녘경영체 지원 연차별 작업별 공동작업비율	58
표 49 들녘경영체 지원내역별 공동작업비율별 들녘경영체 현황	59
표 50 들녘경영체 지원연차별 공동작업비율별 들녘경영체수 현황	60
표 51 들녘경영체가 지역의 쌀을 포함한 식량발전에 기여여부	61
표 52 들녘경영체가 지역의 쌀을 포함한 식량발전에 기여내용	61
표 53 들녘경영체를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	66
표 54 들녘경영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영체 자체에서 중요한 것	66
표 55 들녘경영체 지원내역 및 연차별 작업별 공동작업비율	67
표 56 들녘경영체 지원내역별 공동작업비율별 들녘경영체 현황	68
표 57 들녘경영체 농작업에서 공동경영의 실태와 미래 전개방향	74
표 58 한국 들녘경영체와 일본의 집락영농 비교요약	78
표 59 南幌町(난포로쵸) 11개 농업생산법인의 참여농가수 및 재배작물 현황	79
표 60 일본 북해도 농업생산법인의 수익·비용구조와 법인참여 농가의 수입구조	83

표 61	일본 법인형태별 비교자료	84
표 62	들녘경영체 운영상의 공동경영의 실태와 미래 전개방향	85
표 63	들녘경영체 육성단계별 규정내용 요약	88
표 64	들녘경영체 2단계이후의 자격 및 구비내용	91
표 65	2009~'10년 들녘경영체 평가결과에 의한 면적별·등급별 지원단가 기준	92
표 66	들녘경영체 단계별 지원내용과 지원방식 요약	93
표 67	일본 농림수산성 국별 조직도	94
표 68	도별 경지이용률 변화추이	119
표 69	시도별 논과 밭의 맥류 및 두류 이용률	120
표 70	주요 곡물 자급률 추이	120
표 71	농가전체 농가호당 농가소득 구성내용의 변화추이	121
표 72	주요 품목 재배의 시군 및 읍면동 집중도	122
표 73	지역(들녘)특성에 맞는 다양한 육성모델로 만드는 것에 대한 찬성여부	122
표 74	예시된 육성모델중 지역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유형	123
표 75	5년 이내에 쌀 등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	123
표 76	들녘경영체 작물재배상의 특징 요약	124
표 77	들녘경영체 작물재배상의 특징 1	124
표 78	들녘경영체 작물재배상의 특징 2	125
표 79	들녘경영체가 있는 읍면의 경지현황(60개 읍면)	126
표 80	읍면당 논 면적 및 밭 면적 규모별 읍면수(2010년 기준)	126
표 81	들녘경영체 있는 읍면당 평균 논과 밭 현황	127
표 82	지역특성별 들녘경영체의 유형 구분방법(안)	127
표 83	들녘경영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육성모델과 목표	129
표 84	시도별 GAP쌀 인증 현황(2014년)	134
표 85	고품질쌀 생산과 비용절감을 위한 생산시스템 구축	137
표 86	시도별 친환경인증쌀 유형별 인증 면적 비교(2014년)	141
표 87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에 의한 가공용쌀 계약재배 시범사업	147
표 88	최근 국가별 쌀 수출실적	152
표 89	도별 논 이용률 변화추이	156
표 90	도별 주요 품목별 경지이용률 변화 추이	157
표 91	주요 맥류 논 재배면적과 논재배면적 비율 변화추이	158

표 92 맥종별 논 재배면적과 변화추이	159
표 93 도별 농가의 농업총수입과 맥류수입의 변화비교	160
표 94 주요 품목 곡물자급도 및 1인간 연간소비량의 변화추이	161
표 95 맥류 곡종별 재배지대 구분기준	163
표 96 사료 수급실적	168
표 97 조사료 관련 생산·이용 통계	168
표 98 조사료 생산현황	169
표 99 시도별 사료작물 논 재배면적 및 논 재배면적비율 변화추이	170
표 100 지역특성에 따른 들녘경영체 가능한 작부체계, 경영유형 구분	172
표 101 마늘주산지 도별 논 재배면적 변화추이	180
표 102 양파주산지 도별 논 재배면적 변화추이	180
표 103 봄감자 도별 논 재배면적 변화추이	181
표 104 밭 이용면적 및 주요 품목별 이용율 변화추이	185
표 105 도별 주요 품목의 밭 이용률 변화추이	186
표 106 주요 품목 재배의 시군 및 읍면동 집중도(2010년)	187
표 107 주요 밭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추이	188
표 108 주요 곡물 자급도 변화추이	189
표 109 주요 채소류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추이	194
표 110 주요 양념채소류 10a당 수량 변화추이	195
표 111 주요 양념채소류 1인당 연간 소비량	195
표 112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	198
표 113 주요 채소류 주산지 지정현황(2014.10월 현재)	199
표 114 주요 과일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추이	205
표 115 과일류 1인당 연간 소비량	205
표 116 들녘경영체를 법인화시 어려운 점	214
표 117 들녘경영체 운영시 어려운 점	214
표 118 들녘경영체 활성화를 위해 경영체에서 중요한 점	214
표 119 들녘경영체 조직유형별 장단점	215
표 120 들녘경영체 바람직한 구성원 형태와 역할	216
표 121 평야지대 들녘경영체 적정 농기계 편성 추정치	220
표 122 중산간지대 들녘경영체 적정 농기계 편성 추정치	221

표 123	○○영농조합법인의 농기계소유 및 이용현황 사례(2013년 12월)	222
표 124	○○영농조합법인의 농기계 이용 사례(2013년 12월)	222
표 125	○○영농조합법인 농가 기종별 10a당 농기계 감가상각비(2013년)	223
표 126	○○영농조합법인 농가의 기종별 10a당 영농광열비와 수선비(2013년)	223
표 127	공동육묘장-광역살포기 공동시스템 구축 들녘경영체(2009~10년선정)	227
표 128	농가경제조사 도별·영농형태별 표본농가수	267
표 129	농업총수입 분류	267
표 130	농업총수입중 농업잡수입 구성 항목	268
표 131	농업외소득 관련 수입 내용	268
표 132	이전수입과 비경상수입 구성 내용	269
표 133	농가경제조사시 농업지출 항목	270
표 134	농산물생산비 투입내역	273
표 135	농가경제조사에 의한 농가소득 구성항목	275
표 136	농가소득 구성항목별 의미와 계산식	275
표 137	쌀 생산비조사에서 수입항목과 비목항목	276
표 138	들녘경영체 부문별 수입부문 조사항목	279
표 139	들녘경영체 품목별 비용부문 조사항목	280
표 140	들녘경영체 소속농가의 농기계 소유 및 이용실태	281
표 141	논 이모작 작물 재배현황 조사내용	281
표 142	쌀 생산비조사에서 수입항목과 비목항목	282
표 143	들녘경영체 쌀 부문 조사내용	283
표 144	도별 논벼 생산비 비목별 10a당 생산비 비교(2012~'13년 평균)	286
표 145	논벼 재배면적별 논벼 생산비 비목별 10a당 생산비비교(2012~'13년 평균)	287
표 146	경영주연령별 논벼 생산비 비목별 10a당 생산비비교(2012~'13년 평균)	288
표 147	들녘경영체 성과비교 기준안별 장단점	289
부표 1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동 경지면적 및 식량작물 재배면적 1(2010년)	311
부표 2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동 경지면적 및 식량작물 재배면적 2(2010년)	312
부표 3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동 노지채소 및 특작류 재배면적 1 (2010년)	313
부표 4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동 노지채소 및 특작류 재배면적 2 (2010년)	314
부표 5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동 과일류 재배면적 1 (2010년)	315

부표 6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동 과일류 재배면적 2 (2010년)	316
부표 7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동 시설채소 재배면적 1(2010년)	317
부표 8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동 시설채소 재배면적 2 (2010년)	318
부표 9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동 축종별 사육현황 1 (2010년)	319
부표 10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동 축종별 사육현황 2 (2010년)	320
부표 11 전국 농업법인 조직형태별 출자자수별 법인수 비교(2013년)	321
부표 12 전국 농업법인 조직형태별 출자자 비율 및 법인당 출자자수 비교(2013년)	321
부표 13 전국 농업법인 조직형태별 출자액별 법인수 비교(2013년)	321
부표 14 전국 농업법인의 정부보조금 및 융자금 관련법인 현황	321
부표 15 전국 농업법인 조직형태별 출자금 유형 및 법인당 출자금 비교(2013년)	322
부표 16 전국 농업법인의 사무실 유형별 법인비율	322
부표 17 전국 농업법인의 운영주체별 법인 현황	322
부표 18 전국 농업법인의 사업유형별 법인 현황	323
부표 19 전국 농업법인의 법인당 종사유형별 종사자수 및 비율	323
부표 20 전국 농업법인의 상시종사자 규모별 법인수 비율	323
부표 21 전국 농업법인의 재무제표 작성여부 비율 변화(단위 : %)	324
부표 22 전국 농업법인중 결산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 현황	324
부표 23 전국 농업법인중 결산법인의 규모별 자산, 부채, 자본 현황	324
부표 24 전국 농업법인 법인당 수입현황	325
부표 25 전국 농업법인 법인당 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 현황	325
부표 26 전국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현황	325
부표 27 전국 농업법인의 경영성과비율 비교	326
부표 28 전국 농업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 구성내용	326
부표 29 전국 농업법인의 매출액규모별 법인수 비율	326
부표 30 전국 농업법인의 영업이익규모별 법인수 비율	326

< 그림 차례 >

그림 1 쌀 재배규모별 쌀 생산비목별 비교(2012~13년 평균)	3
그림 2 쌀 재배 경영주 연령별 쌀 생산비목별 비교(2012~13년 평균)	3
그림 3 쌀 재배농가 계층별 경영특성	6
그림 4 연구체계 흐름도	17
그림 5 연구단 조직도	19
그림 6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산업정책 전개도	21
그림 7 10a당 쌀 수익성 변화추이	26
그림 8 80kg당 쌀 판매가격 변화추이	27
그림 9 쌀 생산량과 식량자급도의 변화추이	28
그림 10 들녘경영체 소재 시군별 선정 들녘경영체수	39
그림 11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필요성	65
그림 12 일본 집락영농과 북해도 농업생산법인으로 본 바람직한 들녘경영체의 형태 ...	69
그림 13 들녘경영체 단계별 유형 공동경영내용 요약	72
그림 14 들녘경영체 단계별 공동경영의 종류와 범위	73
그림 15 전국 및 북해도 집락영농수의 변화추이 비교	76
그림 16 일본 북해도지역 농업생산법인의 경영형태의 특징	80
그림 17 들녘경영체 단계별 진입대상과 방법	89
그림 18 일본 농림수산성 경영국 조직과 과별 역할	95
그림 19 일본 북해도 도청 농정부 조직도	96
그림 20 농림축산식품부 조직도	97
그림 21 시군단위 공동경영체 공동경영활성화를 위한 공동경영지원센터 역할	99
그림 22 특정농업법인(특정농용지이용규정) 인정순서	113
그림 23 들녘경영체 유형 및 유형별 주요 모델과 목표	128
그림 24 쌀 생산 전망 및 목표치	131
그림 25 쌀 용도별 쌀 생산목표량과 들녘경영체 육성방향	133
그림 26 [고품질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목표와 추진전략	135
그림 27 고품질쌀 경영체 생산-유통 시스템	136
그림 28 [고품질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138
그림 29 [고품질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139
그림 30 [친환경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목표와 추진전략	143

그림 31	친환경쌀 생산-가공-유통 시스템	144
그림 32	[친환경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145
그림 33	[친환경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산학연관 중간지원체계	146
그림 34	[가공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목표와 추진전략	148
그림 35	[가공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149
그림 36	[가공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산학연관 중간지원조직	150
그림 37	우리쌀 수출실적 비교	151
그림 38	[수출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목표와 추진전략	153
그림 39	[수출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154
그림 40	[수출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산학연관 중간지원 시스템	155
그림 41	농업총수입 대비 맥류수입 비율의 변화추이	157
그림 42	[쌀+맥류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목표와 추진전략	162
그림 43	맥종별 재배지대 구분도	164
그림 44	[쌀+맥류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생산-유통 시스템	165
그림 45	[쌀+맥류 생산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166
그림 46	[쌀+맥류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산학연관 중간지원 시스템	167
그림 47	[쌀+조사료+한우 결합형] 들녘경영체의 목표와 추진전략	171
그림 48	경축순환농업의 유형과 방향	173
그림 49	[쌀+조사료+한우 결합형] 들녘경영체 생산-가공-유통 시스템	174
그림 50	[쌀+조사료+한우 결합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175
그림 51	[쌀+조사료+한우 결합형] 들녘경영체 산학연관 중간지원 시스템	176
그림 52	마늘, 양파, 봄감자 논 재배면적과 논 재배면적비율 변화추이	179
그림 53	[쌀+논 원예작물 결합형] 들녘경영체 목표와 추진전략	182
그림 54	[쌀+논 원예작물 결합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183
그림 55	[쌀+논 원예작물 결합형] 들녘경영체 산학연관 중간지원 시스템	184
그림 56	[쌀+밭 식량작물 확대형] 들녘경영체 목표와 추진전략	190
그림 57	[쌀+밭 식량작물 확대형] 들녘경영체 생산-가공-유통 시스템	191
그림 58	[쌀+밭 식량작물 확대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192
그림 59	[쌀+밭 식량작물 확대형] 들녘경영체 산학연관 중간지원 시스템	193
그림 60	주요 양념채소류의 단위무게당 가격추이	196
그림 61	주요 양념채소류 단위무게당 월별 변화추이	196

그림 62	채소류 수급조절 시스템과 들녘경영체 육성방향	200
그림 63	[쌀+채소류 생산형] 들녘경영체 비전과 추진과제	201
그림 64	[쌀+채소류 생산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202
그림 65	[쌀+채소류 생산형] 들녘경영체 산학연관 중간지원시스템	203
그림 66	주요 과일의 연평균가격의 변화추이	206
그림 67	과수류 수급조절시스템과 들녘경영체 육성방향	209
그림 68	[쌀+과수류 생산형] 들녘경영체 목표와 추진전략	210
그림 69	[쌀+과수류 생산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211
그림 70	[쌀+과수류 생산형] 들녘경영체 산학연관 중간지원 시스템	212
그림 71	들녘경영체 단계별 조직화 유형	215
그림 72	들녘경영체 사무실 및 사무실 내부 현황	217
그림 73	쌀 생산에 있어 농기계 관련비용의 비중 변화추이	218
그림 74	10a당 주요 비목의 비용변화추이	219
그림 75	쌀 재배면적별 농기계 관련비용 비교(2012~13년 평균)	219
그림 76	○○영농조합법인 공동작업 추진 구상도	224
그림 77	공동육묘장-공동방제기-고품질쌀브랜드RPC연계 시스템	228
그림 78	들녘경영체 육성계획-선정-수행관리-평가단계별 내용	229
그림 79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배경과 목적과 사업내용	230
그림 80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추진체계	232
그림 81	들녘경영체 육성효과의 흐름도	274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용역 개요

- 연구제목 :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연구
- 연구기간 : 2014년 9월 1일~12월 23일(4개월)
- 관계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 연구기관 : (주)한국농업경영기술연구원
- 주요과업내용
 1. 기존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 '09~'14까지 들녘경영체 운영실태 분석
 2.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 체계 정립
 - 현행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개편하여 2단계로 구분하고, 차별 지원하는 단계적 육성체계 정립
 - (1) 1, 2단계 들녘경영체 개념 및 자격(진입)요건 검토·정립
 - (2) 1, 2단계별 들녘경영체 정부 지원 내용 검토·제시
 - (3) 2단계 들녘경영체 자격(진입) 구비 확인 방법 제시
 3. 들녘경영체 성과조사 방법 제시
 -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성과지표인 '생산비 절감률' 조사·확인방법 제시
 - 들녘경영체의 생산비 절감 내역 조사 항목 및 항목별 조사방법
 -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논벼 생산비 조사 방법과 들녘경영체의 생산비 조사방법의 연계 방안 제시
 - 들녘경영체 조직 전·후의 생산비 절감 내역 조사방법 제시
 4. 지역·품목에 적합한 다양한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검토
 - 현재 수도작 중심으로 육성되는 들녘경영체의 모델을 장기적으로 지역·품목에 적합한 다양한 육성모델을 제시
 - * '쌀+맥류' 생산형, '쌀+조사료+한우' 생산형, '식량작물+맥류' 생산형 등
 - 지역·품목에 따른 모델별 지원체계 검토
- 연구추진일정
 - 자료수집 및 조사분석(9월~12월초)
 -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12월 4일)
 - 결과보고회 개최 (12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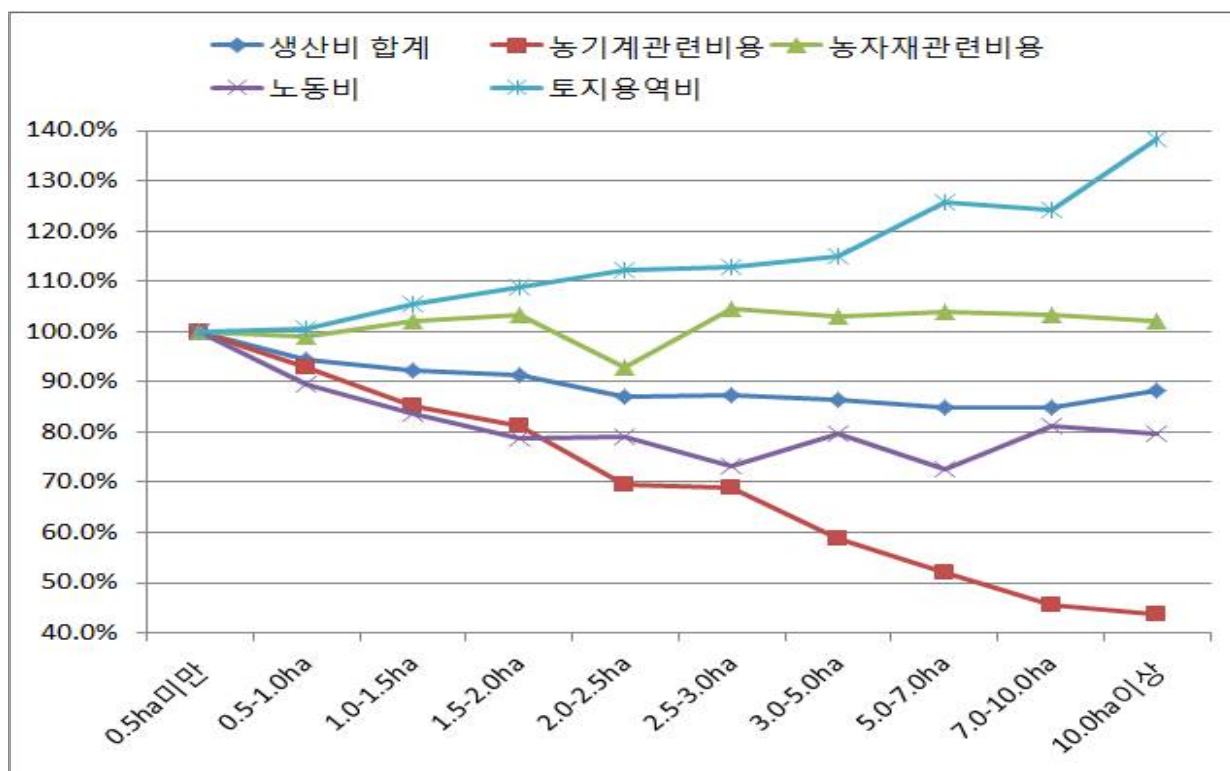
2. 연구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1) 식량산업의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농가 조직체 육성 필요

- 2014년 관세화 종료에 대응한 우리쌀의 국제경쟁력 향상 요구
 - MMA물량 : 2004년(225.6천톤)→2014년(408.7천톤, 30%는 밥쌀용 쌀)
 - 2014년 쌀 관세화 종료 후 2015년 이후 관세화 선언(2014. 07. 22)
 - 쌀 관세화 수입에 따른 우리 쌀 품질 및 가격 경쟁력 필요
 - 고품질쌀 생산 → 품질경쟁력 향상 요구
 - 비용절감 → 가격경쟁력 증대 요구
- 식량자급률 저하
 - 식량자급률 : 2000년(55.6%) → 2013년(47.2)
 - 급속한 쌀 자급률 저하 : 2010년(104.5%) → 2013년(89.2)
 - 논 이용률 저하, 농업노동력의 고령화 → 식량자급률 저하 → 식량안보에 대비한 안정생산체계 필요
 - 65세 이상 농가 비율 : 2000년(전체 32.7%, 논벼 35.2%) → 2013년(각각 53.5, 58.6)
 - 49세 이하 농가 비율 : 2000년(전체 23.8%, 논벼 20.1%) → 2013년(각각 9.3, 8.3)
 - ※ 농업인구 고령화와 감소는 경지이용률 감소, 식량자급률 저하, 농가소득 감소 및 농업·농촌 피폐화의 원인으로 농산업 기반이 붕괴됨
-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곡물 가격 불안정성 증대
- 기상이변에 따른 쌀 수급 불안정성 증대 → 안정적인 쌀 생산체계 필요
 - 이상기상 증가 : 2001년(6회) → 2007년(8) → 2011년(11) → 2012년(9)
 - 쌀 생산과잉(2008~2009년) → 쌀가격 하락에 의한 쌀 생산농가 소득감소
 - 쌀 생산부족(2010~2012년) → 가격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상승 영향
-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농가의 조직화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이를 통한 생산단지의 규모화, 집단화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공동생산체계가 필요
 - 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농지의 규모화, 집단화는 계획 생산 및 공동농작업 체계를 가능케 하여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음
 - 쌀 생산농가 역량강화는 쌀 개방화시대에 지속가능 농업체계 마련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농정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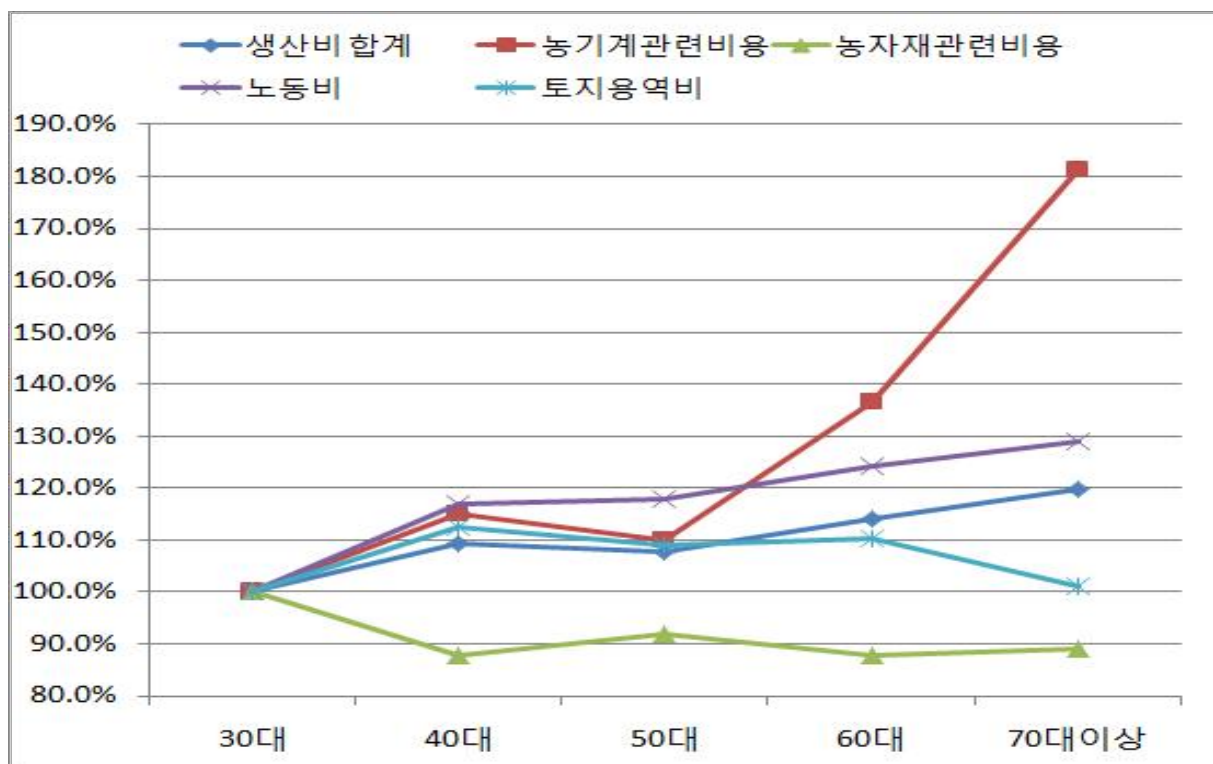
그림 2 쌀 재배규모별 쌀 생산비목별 비교(2012~13년 평균)



주1) 농기계관련비용=영농광열비+농구비+위탁영농비

주2) 농자재관련비용=종묘비+비료비+농약비+기타제재료비

그림 3 쌀 재배 경영주 연령별 쌀 생산비목별 비교(2012~13년 평균)



(2)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전개

- 2009년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쌀최적경영체육성사업] 실시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74개소 경영체가 지원하여 158개 경영체가 선정되었고, 이 중 시설장비 지원 경영체는 63개소임
 - 사업초기 [고품질쌀최적경영체육성사업]에서 2012년도에 [들녘별쌀경영체육성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들녘경영체육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됨
- 2014년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정책 방향
 - 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들녘경영체를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과 함께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우리 쌀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육성
 - 2020년까지 500개 들녘경영체 육성 목표

참조1) 「쌀 관세화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산업 발전대책」 발췌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2014. 9 -

<경쟁력 제고 지속 추진 >

□ 생산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핵심경영체 육성

① 대농·소농간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경영체(평균면적 200ha)를 쌀산업 주요 주체로 육성하고 RPC와 연계하여 생산-유통을 효율화

○ 들녘경영체 : ('14) 158개소 32천ha, → ('24) 600개소, 120천ha

< 지원확대 및 규제완화 >

○ 지원대상 경영체 확대, 교육·컨설팅 지원단가 인상 등 지원규모확대 ('14 :25억원→ '15 : 40억)

- 시설장비지원 : ('14) 20개소, 개소당 2억원→ ('15) 30개소 2억원

- 교육·컨설팅지원 : ('14) 50개소, 개소당 20백만원→ ('15) 80개소 25백만원

○ 신청요건 완화* 및 지원가능 시설·장비 범위확대** 등 규제완화

* 신청요건 : (현행) 인접농지→ (개선) 산간지역은 분리 농지도 인정

** 지원 시설·장비 : (현행)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무인헬기로 제한 →

(개선) 농가가 필요로 하는 공동영농장비 추가

○ 들녘경영체 법인에는 쌀 직불금 지급상한 확대 : 50ha → 400ha

- 들녘경영체의 정의 및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마련('15년)

참조1) 「쌀 관세화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산업 발전대책」 발췌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2014. 9 -

< 발전방향 >

- 공동경영확대를 위해 사업체계를 개편('15)하고, 공동경영정도가 높은 들녘경영체에는 쌀 관련 지원 우선 제공
 - 개편방향 : 공동경영정도에 따라 육성단계를 구분하고, 지원내용을 차별화
 - 지원방안(예시) : 농기계은행사업 우선지원, 간척농지 임대·농지은행제도 활용 시 우대, 벼 재배보험 우대, 회계·세무 등 경영관리 업무 지원 등
- RPC-들녘경영체간 생산-유통 연계모델*, 품목·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육성모델** 제시·확산
 - * 기대효과 : 생산비절감(농기계 공동이용 등) 품질제고(품종통일, RPC 공동출하 등)
 - ** 「쌀+맥류」 생산형, 「쌀+조사료+한우」 생산형, 「식량작물+맥류」 생산형 등
- 들녘경영체 운영에 관한 심화교육 과정 개설*(15~), 우수-신규 경영체간 멘토링 체계구축 등 들녘경영체 핵심인력 양성
-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자체-농진청-농협-들녘경영체-RPC」 협의회를 구성하여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해결시스템 구축

- 일본의 경우 2007년부터 농업정책을 크게 전환하여 일정규모의 인정농업자(認定農業者→개인, 법인)와 일정의 요건을 갖춘 집락영농(集落營農 : 우리나라의 마을단위 영농)만을 토지이용형 농업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이들 인정농업자와 집락영농만을 정책의 지원대상 경영체로서 압축하였음1).

(3) 들녘경영체 육성의 필요성

- 들녘내 농가들은 경영요소(노동력, 토지, 농기계 등의 소유)가 다르고, 경영요소의 결합형태인 경영조직도 달라서 생산성, 수익성도 다름.
 - 연령별, 가구원 구성원수, 경지의 소유규모와 소유형태, 농기계 소유정도 차이
 - 노동력의 이용형태, 경지의 이용형태, 농기계의 이용형태 등 경영조직의 차이
- 생산자 조직화는 쌀의 용도별(고품질, 친환경, 기능성쌀, 가공용쌀 등) 계획 생산과 공동생산에 의한 균일한 품질관리 및 비용절감으로 경지이용률 제고와 안정적인 소득체계에 기여할 것임

1) 楠元雅弘, 『集落營農-つくり方・運営・經營管理の實際』, 農文協, 2006.3, p.9. 여기서 集落營農이란 우리의 마을 단위로 영농을 조직화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들녘경영체보다 작은 범위에서 조직체를 구성하는 것임.

연구개요

- 쌀관세화 대비 →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
- 쌀 수급대비 → 쌀 생산조정의 주체역할 강화
 - (쌀 과잉시) 타작물재배, 가공용·수출용쌀 재배 등에 의한 쌀 수급조정
 - (쌀 부족시) 다수확 품종 재배로 수량증대 역할
- 곡물자급률 향상 → 논 이모작 확대를 통한 자급률 향상

그림 4 쌀 재배농가 계층별 경영특성

들녘전체 다양한 농가 분포		농가간 생산성-수익성 차이 극심	
계층	경영요소 특성	경영조직 특성	생산성-수익성
영세 고령농층 1ha미만(55%)	▪노동력: 고령화, 부녀화 ▪논면적: 영세 ▪농기계: 없음	▪노동력: 역할 미미 ▪논이용: 낮음 ▪농기계: 농작업 위탁	▪생산성: 낮음 ▪수익성: 낮음
중소농층 1~2ha미만 (25~30%)	▪노동력: 50~60대 ▪논면적: 중소규모 ▪농기계: 1~2대	▪노동력: 양호 ▪논이용: 중간 ▪농기계: 중간	▪생산성: 중간 ▪수익성: 중간
대농층 2~3ha이상 (15~20%)	▪노동력: 40~50대 ▪논면적: 대면적 ▪농기계: 일괄체계	▪노동력: 가장 양호(왕성) ▪논이용: 농가간 차이 큼 ▪농기계: 중간	▪생산성: 농가간 차이 큼 ▪수익성: 높음

(4)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연구의 필요성

○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주요 변천과정

년 도	지 원 자 격	사 업 내 용
2009 ~ 2010	작목반, 연구회	시설·장비, 컨설팅 동시지원
2011 이후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정부지원 RPC, DSC, 농협	교육·컨설팅·운영비, 시설·장비 분류지원 *1회 이상의 교육·컨설팅 이수 경영체만 시설·장비 지원

- 지난 6년간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지역단위에서 새로운 쌀 농업의 주체로서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 및 경영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선정된 들녘경영체는 표준생산매뉴얼에 따른 품종통일, 공동육묘, 병해충공동방제, 공동수매를 통해 고품질쌀 생산과 비용절감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식량산업의 생산주체로서 들녘경영체의 생산관리 및 경영효율화는 농가조직화 체계와 더불어 개선점이 있으며, 현재 들녘경영체의 수준은 초보에서 중급수준으로 진입하는 단계로 보다 심화된 육성전략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미래 식량산업의 생산주체로서 식량자급률 향상과 지속가능한 논농업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들녘경영체의 단계별 육성체계 연구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들녘경영체 모델을 지역 및 작물별 특성을 고려한 발작물까지 확대하여 농업정책의 기반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기존에 선정된 시설장비 지원 경영체 63개소를 중심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효과분석과 들녘경영체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심화 단계의 들녘경영체 육성 정책 방안을 제시
 - 단계별 들녘경영체에 대한 자격요건과 지원체계방안 및 평가체계 마련
 - 새로운 경영체 육성 모델은 ‘다양한 답리작 작부체계 모델’, ‘발작물 주산지 모델’, ‘경종과 축산 융합 모델’ ‘6차산업 모델’ 등 다양한 모델들이 새롭게 개발되어 육성될 필요가 있음.
 -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는 쌀 부문에서의 생산비 절감효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품질평가 등 구체적인 성과평가 항목이 개발되어야 하고, 나아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 2015년 쌀 관세화 대비 「쌀산업 발전대책」에 들녘경영체 2단계 육성 연구는 개방화 시대 우리 쌀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연구가 될 것임

나.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되었던 들녘경영체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단계별 들녘경영체의 모델 수립에 활용하여 농산업의 기반이 되는 생산자 조직화 체계 기틀을 만들고자 함.
- 본 연구로 기대되는 효과
 - 첫째, 공동경영에 의한 계획생산, 비용절감, 수익성 향상 등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방안을 마련

연구개요

둘째, 저비용·고효율 생산 체계 구축으로 농업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체계를 구축

셋째, 쌀 관세화와 미래의 식량 산업 위기에 대응한 식량자급율 제고와 농식품개방화에 따른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넷째, 우리 전체 농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의 기본 모델로 제시하여 지역과 품목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육성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농정 토대를 마련

3. 국내외 연구동향

가. 쌀 생산농가 지원정책 동향

- 2001년에 논농업직접지불제(고정직불금) 도입은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환경친화적 영농조건 준수 등을 위해 ha당 53만원이 지급되기 시작하였음.
- 한편 2004년 쌀 관세화 유예조치와 더불어 쌀 수매제도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을 계기로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본격적인 쌀 직불제가 도입되어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이 지급되기 시작하였음.
- 구조조정을 위한 쌀 농가지원사업은 2004년 쌀 관세화유예 이후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6ha, 7만호 쌀전업농 육성을 위한 「영농규모화사업」이 중심이었음. 이 영농규모화사업은 쌀전업농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지의 임대와 매매사업을 통한 규모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아니었음. 또한 대규모 쌀 생산농가와 조직체에 대한 「농어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으로 시설장비 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강화사업으로 부족한 사업이었음.
- 2009년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현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비용절감과 고품질쌀 생산으로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쌀 생산농가에 대한 처음으로 시도된 시설장비 지원사업임. 이 사업은 품질개선과 비용절감을 통한 쌀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개별 쌀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들녘단위에서 100ha이상 조직화된 경영체에 대한 지원사업이었음.

나. 국내연구동향

- 쌀산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으나 쌀산업의 담당주체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쌀 연구는 정책적인 연구 혹은 개별 쌀 생산농가에서의 규모의 경제성 존재여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음.
- 쌀 생산농가의 조직화와 관련된 연구는 1998년 김정호외 5인, 『쌀 농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모델과 지역시스템 개발』²⁾에서 “쌀 생산자 조직화에 대해 중점 논의되었으며, 대규모 개별농가와 조직체를 통한 쌀생산 시스템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음.

2) 김정호외 5인, 『쌀 농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모델과 지역시스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98-10, 1998.12

연구개요

- 또한 2004년 조가옥외 『영농규모화사업 효과분석 및 쌀전업농 육성방안에 관한 실증조사 연구』³⁾에서 쌀전업농을 중심으로 조직화를 통한 우리나라 쌀의 담당자 육성을 주장하였으며, 2008년 조가옥은 『쌀산업 경영개선을 위한 “맞춤형 최적경영단지”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⁴⁾에서 지자체의 쌀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들녘별 맞춤형 최적경영단지 모델’을 제시하였음.
- 2009년에는 박문호외 2인, 『지역농업 주체의 확립과 육성방안』⁵⁾에서 지역농업의 다양한 주체육성방안으로 경영체 육성을 주장하였으며, 2011년에는 박문호·김정승이 『지연성 농업경영체의 경영실태와 성과』⁶⁾에서 들녘경영체를 중심으로 들녘경영체의 유형을 조직화의 목적과 범위, 경영통합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경영체의 경영성과와 시사점 등을 분석하였음.
- 2010년 도원회계법인에서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효과분석』⁷⁾을 연구하였으나, 지원내용인 공동육묘장과 광역살포기의 효과분석에 머물러 있고 사업추진 1년 차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연구의 제한이 있음.
- 2012년 농산업전략연구원에서 『지역특성별 들녘별경영체 육성모델 개발』⁸⁾을 연구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들녘경영체육성사업으로 지원된 공동육묘장과 공동방제기 지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지역특성별 들녘경영체 모델을 쌀을 중심으로 5개 모델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들녘경영체의 2단계 전환을 위한 연구와 단계별 경영체 평가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함.

다. 일본연구동향

- 일본에서는 도작농업(稻作農業)과 논농업의 조직체 육성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007년부터 일정규모의 인정농업자(認定農業者, 개인, 법인)와 일정의 요건을 갖춘 집락영농(集落營農)을 토지이용형농업의 「담당자」로서 인정하고, 이들 인정농업자와 집락영농만을 정책의 지원대상 경영체로서 인정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3) 전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영농규모화사업 효과분석 및 쌀전업농 육성방안에 관한 실증조사 연구』, 2004.12

4) 전북대학교·농협중앙회 양곡부, 『쌀산업 경영개선을 위한 「맞춤형 최적경영단지」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2008.12

5) 박문호외 2인, 『지역농업 주체의 확립과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653-3, 2009.10

6) 박문호, 김정승, 『지연성 농업경영체의 경영실태와 성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653-3, 2011.11

7) 도원회계법인,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효과분석』, 농림수산식품부, 2010.12

8) 농산업전략연구원·농림축산식품부, 『지역특성별 들녘별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2012.10

「들녘경영체」와 같은 집락영농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집락영농의 효율적인 사업전개를 위해서 楠元雅弘, 『集落營農-つくり方・運
營・經營管理の實際』⁹⁾와 森 剛一, 『集落營農と家族經營を活かす法人化塾』¹⁰⁾등의
저서들이 출간되었음.
- 최근 논농업과 지역산업의 거점으로 집락영농을 강조하고 집락영농의 마지막 방향성
을 Community Business으로 제시한 梅本雅, 『轉換期における水田農業の展開と經營
對應』¹¹⁾, 谷口信和, 『水田活用新時代-減反・轉作對應から地域産業興しの據点へ』¹²⁾
등의 저서들이 출판되었음.

라. 본 연구의 의미

- 기존의 쌀산업의 주체육성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연구는 극히 부족하고, 개별경영체
즉 대규모농가 혹은 가족농 육성을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음.
- 2009년부터 육성되어온 [들녘경영체]는 지역에서 들녘을 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하여
쌀을 중심으로 한 식량산업의 생산주체로서 부각되고 있음.
 - 2015년 쌀 관세화 전환으로 우리쌀의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품질경쟁과 가격경쟁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쌀 생산비용절감과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들녘경영체 육성은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임.
-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추진 5년동안 63개소의 시설장비 지원경영체와 95개소의 교육·컨
설팅·운영비 지원경영체가 선정되어 품종통일, 재배매뉴얼통일, 공동육묘, 공동방제,
공동계약재배 등을 통하여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2015년 쌀 관세화를 위한 쌀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평가하고 2단계 들녘경영체육성사업으로의 전개는 우리 쌀을
포함한 식량산업에 매우 중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쌀을 포함한 식량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
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들녘경영체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2단계 들녘
경영체 육성방향과 지역·품목에 적합한 다양한 들녘경영체 육성모델을 개발하고, 효
율적인 들녘경영체 사업추진을 위한 들녘경영체 단계별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식
량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함.

9) 楠元雅弘, 『集落營農-つくり方・運營・經營管理の實際』, 農文協, 2006.3

10) 森 剛一, 『集落營農と家族經營を活かす法人化塾』, 農文協, 2009.11

11) 梅本雅, 『轉換期における水田農業の展開と經營對應』, 農林統計協會, 2008.4

12) 谷口信和, 『水田活用新時代-減反・轉作對應から地域産業興しの據点へ』, 農文協, 2010.12

연구개요

- 또한 2014년에 많은 국가와 FTA가 타결됨에 따라 농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주체(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별 역량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나 그동안 많은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생산·유통·가공체계의 확고한 기반구축이 미흡하였고, 이는 생산자 조직화기반 취약과 이로 인한 유통체계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쌀뿐만 아니라 잡곡과 맥류 등 식량산업 전체와 밭작물(채소, 과수 등), 축산 등 다른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들녘경영체」의 생산자 조직화 모델이 적용 가능한가를 제시하고자 함.

4.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

- (1) 식량산업과 지역농업을 둘러싼 여건변화 분석
 - (1) 쌀산업 및 식량산업 관련 주요 정책 변화 조사 분석
 - (2) 쌀산업 관련 여건 변화
 - 쌀 및 식량 생산구조의 변화
 - 농업노동력 구조변화
 - 농기계이용 구조변화
 - 쌀 및 식량부문의 수익구조변화
- (2) 기존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 1) 2009년 이후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전개과정 정리
 - 2) 들녘경영체 운영상 문제점 분석(도입·전개 과정 분석 포함)
 - 법인체 등록과정에서 문제점
 -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들녘농가 참여 및 RPC와 계약재배와의 문제점
 - 들녘경영체 공동농작업(공동육묘, 병해충공동방제) 추진의 문제점
 - 들녘경영체 회계처리(자조금, 회계보고, 수익배분 등)의 문제점
 - 3) 들녘경영체 운영실태 및 사업성과 분석
 - 지원대상별(교육·컨설팅·운영비지원, 시설장비지원) 운영실태 분석
 - 지원주체별(농가법인체, RPC 등) 운영실태 분석
 - 지원주체별(농가법인체, RPC 등) 운영실태 분석
 - 연차별 조직운영실태 분석
 - 지역특성별(평야지대, 중산간지대, 이모작 가능지대, 이모작 불가능지대 등) 사업 실태 분석
 - 4) 들녘경영체 사업유형 및 우수사례분석
 - 대상 : 시설장비 지원 들녘경영체 63개소
 - 들녘경영체 사업유형분석
 - 공동육묘형, 병해충공동방제형, (공동육묘+공동방제형), 이모작사업형, 타부문 연계사업형, 기타
 - 들녘경영체 사업유형별 우수사례분석
 - 운영실태, 조직실태, 중간지원 조직체계, 사업수익구조 등

연구개요

- 5) 들녘경영체육성사업과 유사한 지자체 사업 분석
 - 도별 들녘경영체육성사업과 유사 지원내역을 갖는 사업내용 분석
 -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역 등
 - 시군별 들녘경영체육성사업과 유사 지원내역을 갖는 사업내용 분석
 -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역 등
- (3) 들녘경영체 단계별·특성별 육성체계 정립
 - 1) 현재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단계별 육성체계로 정립
 - 단계 구분 : 본 연구에서는 3단계로 구분
 - 1단계 : 생산자 조직화 기초단계(교육·컨설팅·운영비 지원 경영체)
 - 2단계 : 공동농작업 실행단계(시설장비 지원 경영체)
 - 3단계 : 공동경영 심화 단계(지속사업 운영 경영체)
 - 2) 1, 2, 3단계별 들녘경영체 개념 및 자격요건 검토·정립
 - 단계별 사업운영 목표, 조직형태, 자격요건, 재배면적
 - 세부 사업내용, 공동농작업의 종류 및 범위, 품목별 표준생산재배매뉴얼 운영, 계약·수탁재배 및 이행실태
 - 회계 관리 및 조직관리(자조금, 수익 배분, 조직도)
 - 지속사업 추진 계획 등
 - 3) 1, 2, 3단계별 들녘경영체 정부 지원 내용 검토·제시
 - 지원 종류, 규모, 방식 등 검토·분석
 - 지원내용별 사업 추진 실태 분석
 - 4) 1, 2, 3단계 들녘경영체 자격 확인 방법 제시
 - 2, 3단계로 들녘경영체 진입을 위한 자격 요건별 구비서류, 확인지표 제시
 - 서류 확인 조사방법 및 확인지표를 제시하고 관리하는 방안 도출
- (4) 지역·품목에 적합한 다양한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검토
 - 1) 지역특성별 들녘경영체 유형구분
 - 경영체 관련 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조직체 유형구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유형구분을 위해 고려할 점
 - 지역특성별 들녘경영체의 유형별 구분방법
 - 2) 품목 유형별 육성모델 개발
 - 쌀 특성별 : 다수확, 고품질, 친환경, 가공용, 수출용, 기능성 등

- 논 이용형태별 : 지역특성 및 들녘경영체 추진목적에 따른 유형구분
 - 기본 : 비용절감 및 품질균일화 및 향상
 - 논벼 단작형 : 쌀 생산(친환경, GAP, 지력증진, 경관농업)
 - 논 이모작형 : 쌀+맥류, 쌀+조사료, 식량작물+맥류, 식량작물+조사료
- 융복합형 : 새로운 소득품목 육성에 따라 구분
 - 논+밭작물형 : 쌀+시설하우스(채소, 감자), 쌀+밭작물(마늘, 양파, 고구마, 감자)
 - 논+축산결합형 : 쌀+조사료+축산(한우, 양계, 친환경축산 등)
 - 밭작물형 : 밭(채소), 과수
 - 융복합형 : 농촌체험, 관광, 유통·가공 등

3) 유형별 육성모델의 검토내용

4) 유형별 육성모델 개발의 활용

- 농림축산식품부의 생산자조직화 정책 활용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생산자조직화 육성방향 제시
- 생산자 조직 경영체간 정보교류

(5) 들녘경영체 성과조사 방법 제시

- 들녘경영체의 공동경영 가능내용
 - 품목별 품종통일, 재배매뉴얼 통일, 공동육묘, 병해충 공동방제, 공동계약재배 및 출하, 공동경운·정지, 공동이앙, 공동수확, 공동이익배분 등
- 들녘경영체에 의한 가능한 성과내용
 - 정량적 측면 : 품질(완전미율 증가, 단백질 함량 감소 등), 경영비(생산비 절감, 공동농작업 정도, 공동구매 등), 소득(판매가 상승, 수량 증가 등), 규모화(농가수, 재배면적 증가), 차별화(친환경, 신기술적용 및 소득작물 증가 건수 등)
 - 정성적 측면 : 주체별 경영역량 향상, 브랜드 제고, 계획생산 체계 구축, 들녘경영체 이미지 제고
- 성과분석 방법
 - 통계청 자료와 비교 분석
 - 들녘경영체 참여 전·후 비교 분석
 - 들녘경영체 주변 일반농가와의 비교 분석
- 들녘경영체 성과지표 구성내용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항목 및 쌀 생산비조사 항목 등
 -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수 및 재배면적, 공동농작업 등 주요 사업내용 등

연구개요

- 단계별(1, 2, 3단계) 들녘경영체 성과지표 제시
 - 1, 2, 3단계별 들녘경영체 성과지표

나. 부문별 연구방법

(1) 식량산업을 둘러싼 여건변화 분석

- 1) 쌀산업 및 식량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변화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료 분석
- 2) 쌀산업 관련 여건변화 : 통계자료 분석
 -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관련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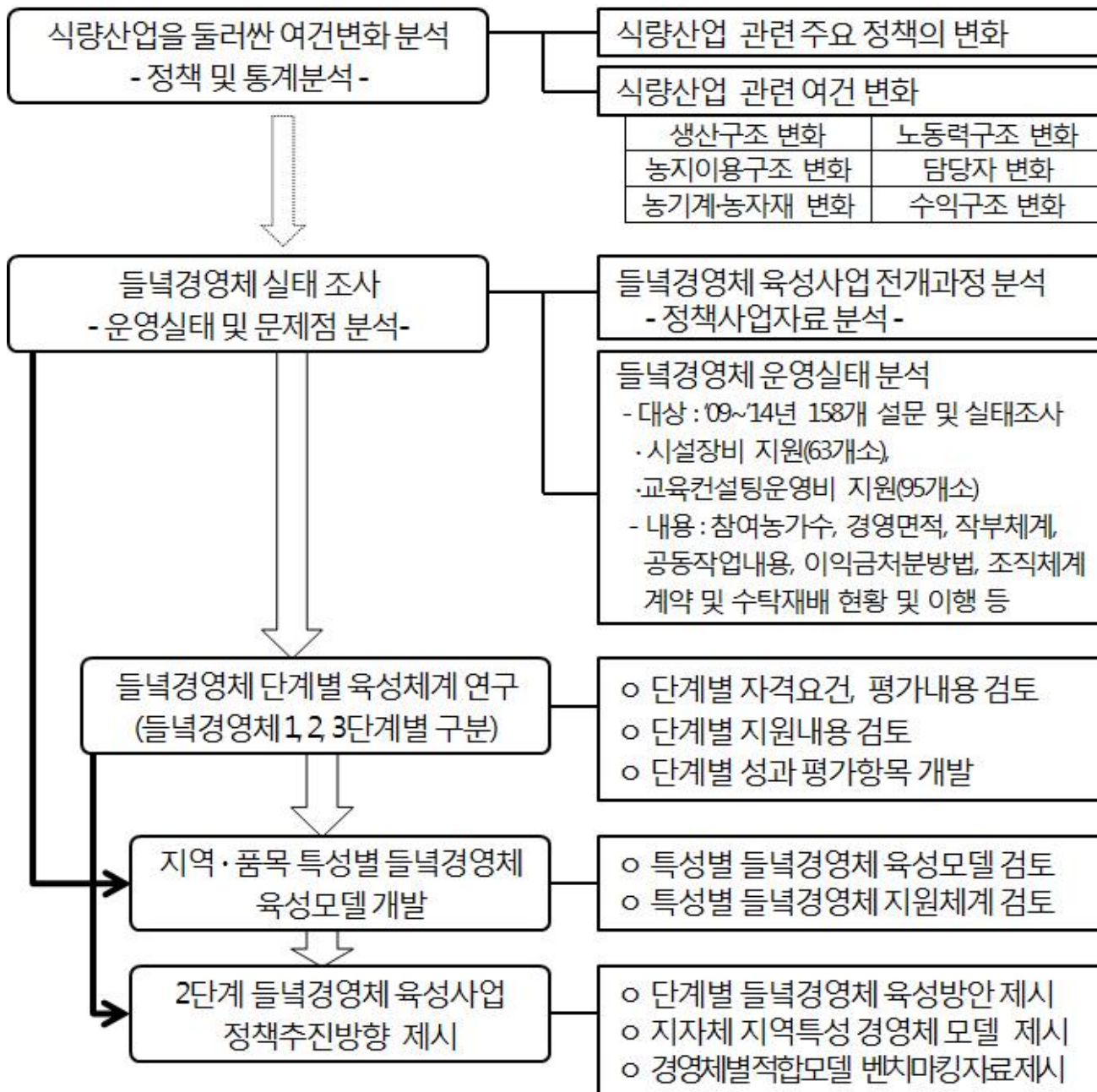
(2) 기존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 1)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전개과정분석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료 분석
- 2) 들녘경영체육성사업과 유사한 지자체 사업분석 : 시도 방문조사
- 3) 들녘경영체 운영실태, 문제점분석 및 육성체계 연구
 - 들녘경영체 운영실태, 문제점분석 및 육성체계 연구
 - 2009~14년 선정 경영체 158개소 대상 설문 및 실태조사
 -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효과분석
 - 시설장비 지원사업 : 2009~'14년 선정 경영체 63개소 대상 및 계약재배 RPC 설문 및 실태조사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 2009~'14년 선정 경영체 158개소 대상 및 행정, 기술센터 설문 및 실태조사
 - 들녘경영체 자격, 진입요건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 관련자료 및 등기소 등록
- 4) 들녘경영체 사업유형 및 우수사례 분석
 - 들녘경영체 사업유형 : 2009~2014년 선정 158개소 대상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 2009~2014년 시설장비지원 63개소 대상 특성별 실태조사
 - 들녘경영체 이외의 우수사례분석 : 답전혼작지대에서 5~8개 경영체 실태조사
- 5) 일본 집락영농 등 생산자 조직화 전개과정 분석
 - 일본자료 검토 분석 후 일본 현지방문조사

(3) 연구체계 흐름도

○ 본 연구의 전체적인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5 연구체계 흐름도



(4) 연구분담 및 연구팀 구성방안

1) 연구팀 분담내용

분 담 내 용	참여 연구자			연구 보조원
	소 속	직위	성 명	
연구총괄(책임연구원) - 쌀 및 식량관련 통계정리 - 들녘경영체 실태조사분석 - 지역별·품목별 들녘경영체 최적 모델개발	전북대학교	교수	조가옥	전북대학교 이인재
들녘경영체 운영 실태조사 - 들녘경영체의 육성체계 정립 - 생산관리 조사	(주)한국농업 경영기술연구 원	이사	김윤태	(주)한국농업 경영기술연구원 양호성
들녘경영체 성과조사내용 및 방법연구	동국대학교	부교수	황재현	

2) 연구팀 구성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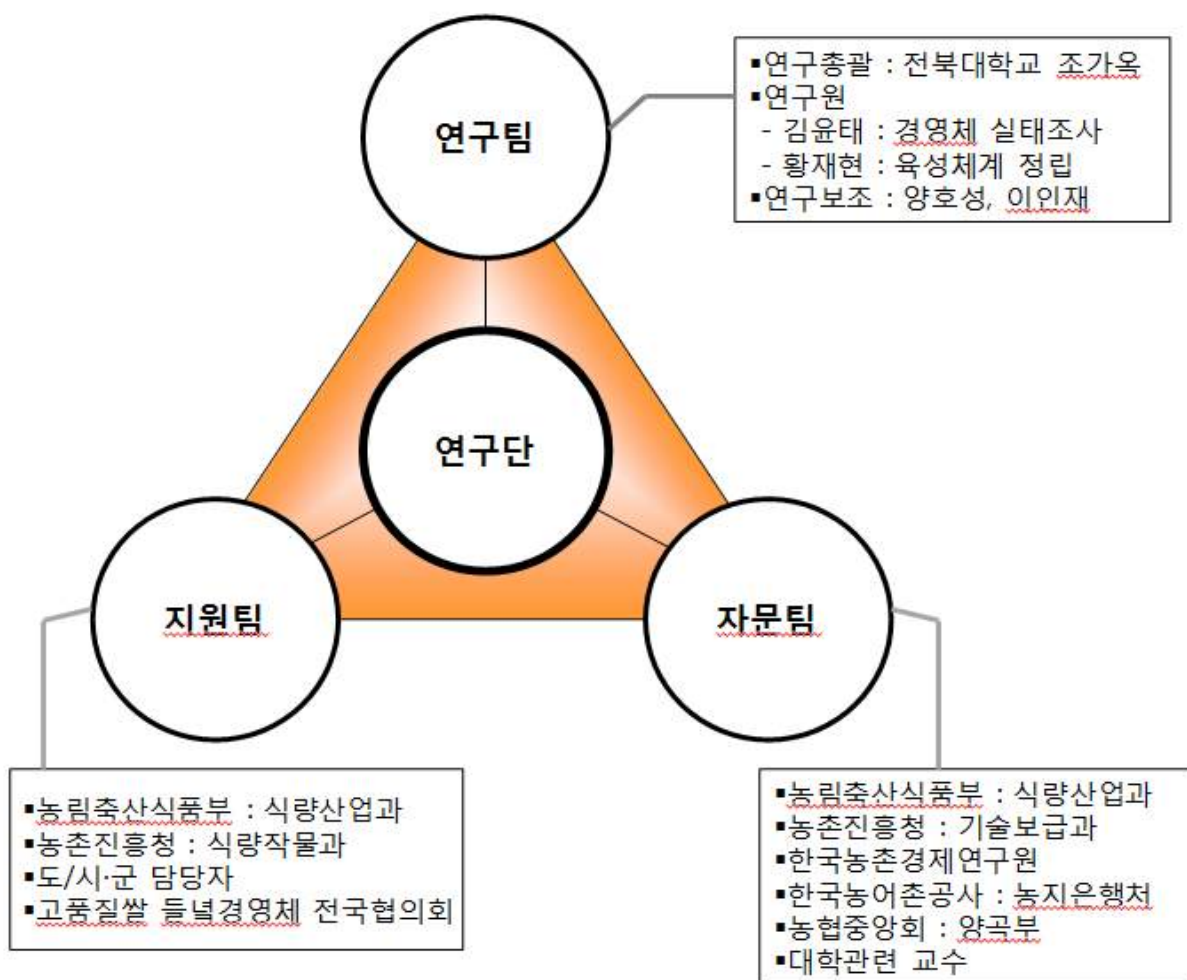
(가) 연구단 구성

-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팀, 자문팀, 지원팀 등 연구단 구성
- 연구팀 역할 : 실태조사 및 분석
- 자문팀 구성 및 역할
 - 구성 : 본 연구와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량작물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농협중앙회 양곡부, 연구부문인 농촌경제연구원, 대학교수 등 각 기관에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
 - 역할 : 월 1회 정도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자문 지도
- 지원팀 구성 및 역할
 - 구성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시도·시군 담당자, 들녘경영체 전국 단위 및 도 단위 협의회 임원진으로 구성
 - 역할 : 경영체관련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에 지원

(나) 연구팀 구성

- 연구원 : 조가옥, 김윤태, 황재현, 양호성, 이인재
 - 조가옥 : 연구총괄
 - 김윤태 : 들녘경영체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로 단계별 육성체계 정립
 - 황재현 : 들녘경영체 성과 조사방법 연구
- 연구보조원 : 양호성, 이인재 : 자료정리 및 통계분석

그림 6 연구단 조직도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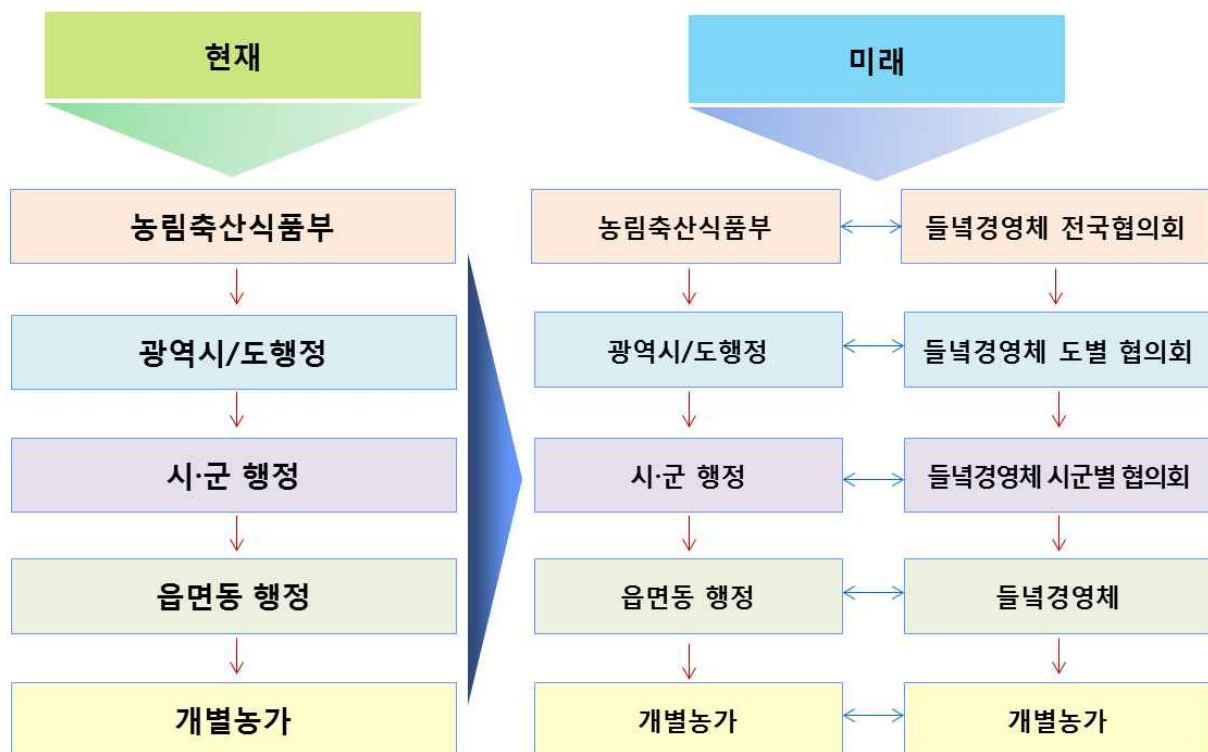
○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 첫째, 식량작물의 계획생산 및 안정적 소득 체계 마련
- 둘째, 고품질·저비용 식량생산체계 구축으로 농업경쟁력 확보
- 셋째, 미래 식량 불확실성에 대응한 식량자급생산 체계 구축

나. 활용방안

- 들녘경영체의 단계별(1, 2, 3단계) 조직체계, 운영방안, 평가체계 등 효율적인 육성체계 정립
 - 들녘경영체 기초 진입단계부터 단계별 심화단계까지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으로 사업 추진 목적에 기여할 수 있음.
- 지역적·품목별 특성에 맞는 들녘경영체 및 생산자 조직화 육성모델 제시
 - 지역과 작물별 특성을 고려한 모델개발로 지자체별, 들녘경영체별로 효율적인 사업 활성화 도모
 - 들녘경영체 조직화를 희망하는 각 조직체들에게 다양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들녘경영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유도함.
- 생산자 조직화 육성으로 “식량작물 달성”, “채소류 수급조절”, “국제정세 변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략 품목 육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추진의 주체적 파트너로서 활용
 - 쌀산업 발전과 논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 전개를 들녘경영체 중심으로 추진
 - 들녘경영체 중앙, 시도, 시군단위 협의회체 구성을 통하여 지자체별 정책 추진파트너로서 활용 가능
 - 위와 같은 들녘경영체 지역단위 협의회와의 행정과의 연계를 통해
 - ① 정확한 정책 수립 및 전달
 - ② 신속한 정책의 전개
 - ③ 효율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기대할 수 있음

그림 7 농림축산식품부의 식량산업정책 전개도



6. 연구추진 과정

가. 보고회 및 연구협의회

- 4차에 걸친 보고회 및 자문협의회 개최
 - 자문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 반영 검토

협 의 내 용	일시	협의회 참석자(명)		협의회 장소
		관계관	조사연구팀	
○ 연구착수 보고회	09. 23	10	3	농림축산식품부
○ 중간보고회 및 협의회	12. 04	10	2	농림축산식품부
○ 현장협의회	12. 08	3+6	2	산청군 영실영농조합법인
○ 실무 협의회	12. 23	3	2	농림축산식품부
○ 결과보고 및 자문협의회	12. 30	10	2	농림축산식품부

주 : 자문협의회(농림축산식품부 관계관, 들녘경영체 사업추진 T/F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문호 박사, 농촌진흥청 박홍재 지도관, 한국농어촌공사 윤석환 박사)로 구성

나. 기타 연구활동

- 일본 북해도 농업생산법인 방문
 - 일시 : 2014.11.19~11.22
 - 장소 : 일본 북해도 난뵤로町
 - 목적 : 공동영농선진지역인 일본북해도 지역 집락영농과 농업생산법인의 운영실태 조사를 통하여 들녘경영체 운영방향 설정
 - 대상 : 조가옥, 김윤태
 - * 관계관 : 식량책관, 식량산업과 들녘경영체 담당
 - * 들녘경영체 임원 : 이병훈, 임종완, 김원석, 이점
- 「고품질쌀 들녘별경영체 전국협의회」 2014년 임시총회 참석
 - 일시 : 2014. 12.15
 - 장소 : 대전시 유성구 인터시티호텔
 - 내용 : 들녘경영체 소개 및 나아갈 방향 설명, 설문조사 실시
- 「2014 쌀 안정생산 업무담당자 워크숍」 참석
 - 일시 : 2014. 12. 16

제2장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과정과 운영실태

1.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배경과 과정

1-1 2000년대이후 쌀산업의 변화과정

가. 쌀 수입개방 확대

- 우리 쌀산업은 1994년과 2004년 2회에 걸쳐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씩 받았으며,
 - 특히 2004년 쌀 협상이후 밥쌀용 쌀이 들어오고 있어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임
- 2004년 쌀 재협상 타결내용
 - 관세화 유예기간 : 2005~2014(10년간)
 - 유예기간 5년차인 2009년에 이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 실시
-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의 증량 및 배분
 - 수입물량 : 2005년에 225,575M/T에서 시작하여 2014년에는 408,700M/T(기준년도 소비량의 7.96%)으로 확대
 - 관세율 : 5%이며 수입방식은 종전대로 국영무역 방식
 - 수입쌀 시판 : 시중에 유통가능한 밥쌀용량은 2005년에는 해당년도 MMA의 10%인 22,528M/T에서, 매년 늘어나 2014년에는 122,610M/T이 됨.

표 1 2004년 쌀 관세화 유예이후의 주요 수입내용(단위 : 천톤, %)

구분		20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도입실적 및 계획	수입총량	226	246	266	287	307	327	348	368	388	409
	가공용	203	212	218	224	227	229	244	258	271	286
	밥쌀용	23	34	48	63	80	98	104	110	117	123
수급 계획 (안)	수입량		238	246	229	287	307	327	348	368	388
	밥쌀용		22	34	47	63	80	98	104	110	117
	가공용		96	102	115	145	160	160	160	160	160
	주정등		168	198	135	80	65	65	80	100	110
재 고			227	140	71	71	73	77	81	79	80

나. 쌀을 둘러싼 여건변화

- 2000년대 들어와 우리 쌀산업은 수입개방 확대, 농자재가격 상승, 쌀 생산농가 소득정체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
 - 농업인력 감소와 고령화, 생산비용 증가, 수급 불안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
- 쌀산업의 규모화를 위한 전업농 육성을 추진하여 일부 성과가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소규모 개별 농가단위 경영의 한계 노정
 - 7만호 쌀 전업농 육성으로 호당 영농규모 및 소득 증가
 - * 쌀 전업농 수/호당 규모 : ('95) 14천호/2.5ha → ('13) 70천호/5.9ha (2.4배 ↑)
 - ** 전업농 호당 쌀 소득 : ('95) 14백만원 → ('13) 38백만원 (2.7배 ↑)
 - 전업농 육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세·고령농이 많아 쌀 농가수 70만호 및 평균 재배면적 1.2ha로 비용절감 등에 한계
 - * '13년도 1ha 미만 재배농가 : 383천호(54.8%), 65세 이상 농가 비중 : 393천호(56%)
- 개별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들녘경영체 육성 정책 추진('09년)
 - 쌀산업의 규모화를 지속하는 한편, 전업농에서 배제된 중소농 참여 및 공동경영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잉여 노동력을 활용한 토지 이용 효율화, 농가소득 향상 등의 효과 도모
 - * 들녘경영체의 생산비·경영비 절감 가능 범위는 약 20% 수준으로 분석('논벼 재배 농가 유형별 소득분석 연구', 농산업전략연구원, 2013)

(1) 농가 농가소득 정체

- 2005년 이후 농가의 전체 농가소득은 정체 상태에 있으며, 농업소득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2005년 38.7%에서 '13년 29.1%로 떨어지고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2005년 78.2%에서 '13년 62.5%로 떨어짐
- 농업소득의 감소는 쌀소득 감소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쌀 소득(미곡수입×쌀소득율)은 2005년 4,508천원에서 '13년 3,783천원 약 16% 감소함

표 2 농가의 호당 농가소득 구성내용 변화추이

구분	농가소득 (A)	농업소득 (B)	(쌀소득) (C)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소득(D)	농업소득÷농가소득 (B/A)	쌀소득÷농업소득 (C/B)	농가소득÷도시근로자 가구소득 (A/D)
2005	30,503	11,815	4,508	9,884	8,803	39,025	38.7%	38.2%	78.2%
2006	32,303	12,092	4,608	10,037	10,175	41,329	37.4%	38.1%	78.2%
2007	31,967	10,406	4,185	11,097	10,465	43,874	32.6%	40.2%	72.9%
2008	30,523	9,654	4,533	11,353	9,516	46,807	31.6%	47.0%	65.2%
2009	30,814	9,698	3,793	12,128	8,988	46,238	31.5%	39.1%	66.6%
2010	32,121	10,098	2,834	12,946	9,077	48,092	31.4%	28.1%	66.8%
2011	30,148	8,753	3,682	12,949	8,446	50,983	29.0%	42.1%	59.1%
2012	31,031	9,127	3,652	13,585	8,319	53,908	29.4%	40.0%	57.6%
2013	34,524	10,035	3,783	15,705	8,784	55,275	29.1%	37.7%	62.5%
05년 대비	113.2%	84.9%	83.9%	158.9%	99.8%	141.6%	-	-	-

- 농업소득을 결정하는 농업총수입 구성내용을 보면,
 - 농업총수입은 2005년 대비 '13년에는 13.2% 증가에 머물렀으며,
 - 품목별로는 쌀의 경우만 감소했음
- 이와 같은 농가소득과 농업총수입의 정체의 원인은 쌀 소득의 감소에 의한 것임

(2) 쌀 수익성의 변화

- 쌀 소득(쌀 총수입-경영비)의 감소 원인
 - 쌀가격의 정체와 하락에 의한 쌀 총수입의 정체와 감소
 - 농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쌀 경영비의 지속적인 상승에 의한 것임

표 3 호당 농업총수입 구성 품목별 조수입 변화추이

(단위 : 천원)

구분	농업 총수입	미곡	미곡 비율	미곡이외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작및 기타	대동물	축산물	농업 잡수입	소득 보상금
2005	26,496 (100.0%)	7,264 (27.4%)	27.4%	1,537 (5.8%)	6,388 (24.1%)	2,945 (11.1%)	356 (1.3%)	1,361 (5.1%)	3,883 (14.7%)	2,230 (8.4%)	158 (0.6%)	113 (0.4%)
2006	27,322	7,578	27.7%	1,168	6,758	2,915	226	1,282	4,006	2,197	853	834
2007	26,102	7,296	28.0%	1,340	6,817	3,192	418	1,131	3,133	1,782	651	582
2008	25,843	7,364	28.5%	1,201	5,755	3,398	416	1,676	3,913	1,003	566	519
2009	26,621	6,522	24.5%	1,317	6,198	3,355	324	1,555	4,995	1,643	257	168
2010	27,221	5,368	19.7%	1,463	7,251	4,147	415	1,525	4,537	1,217	1,011	964
2011	26,457	6,254	23.6%	1,494	7,675	3,762	409	1,429	2,492	1,719	847	784
2012	27,589	6,243	22.6%	1,679	8,427	3,683	264	1,445	3,699	1,250	548	514
2013	30,648 (100.0%)	6,315 (20.6%)	20.6%	1,750 (5.7%)	8,094 (26.4%)	4,519 (14.7%)	451 (1.5%)	1,845 (6.0%)	3,850 (12.6%)	3,327 (10.9%)	96 (0.3%)	70 (0.2%)
05년 대비	115.7%	86.9%		113.9%	126.7%	155.4%	126.7%	135.6%	99.2%	149.2%	60.8%	

그림 8 10a당 쌀 수익성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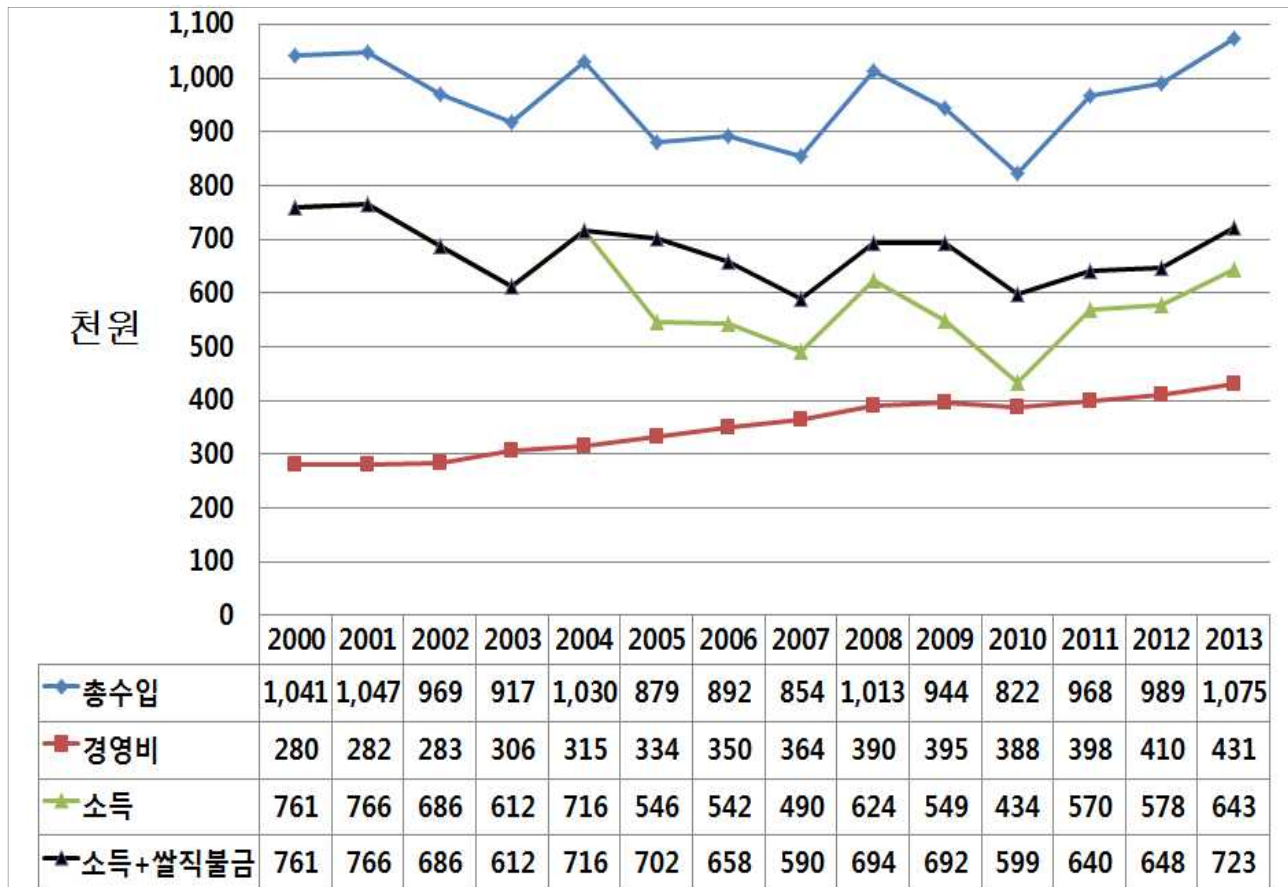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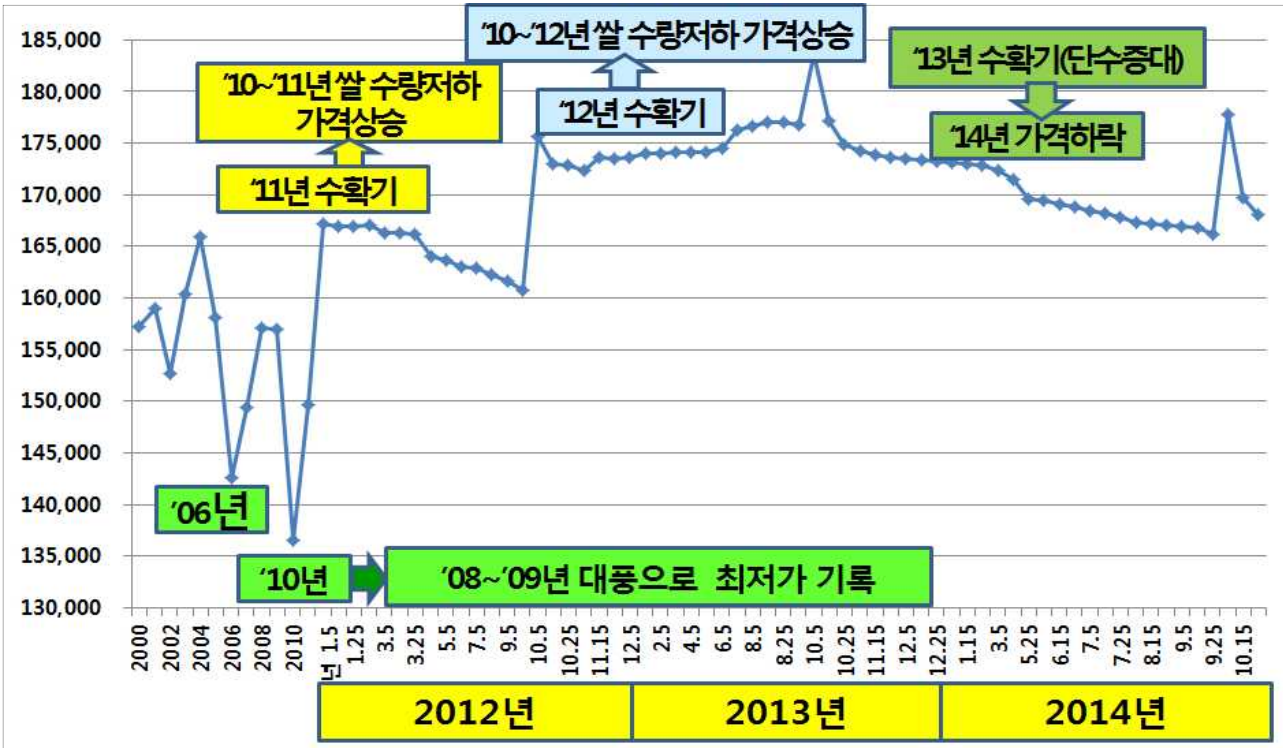


그림 9 80kg당 쌀 판매가격 변화추이



(3) 쌀 생산 및 소비변화 추이

- 2000년 이후의 쌀 생산량은 쌀 재배면적의 감소에 의해 1백만톤이 감소
 - 이는 10a당 수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쌀 재배면적이 224천ha 감소한 영향임.
- 한편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동기간 26.4kg이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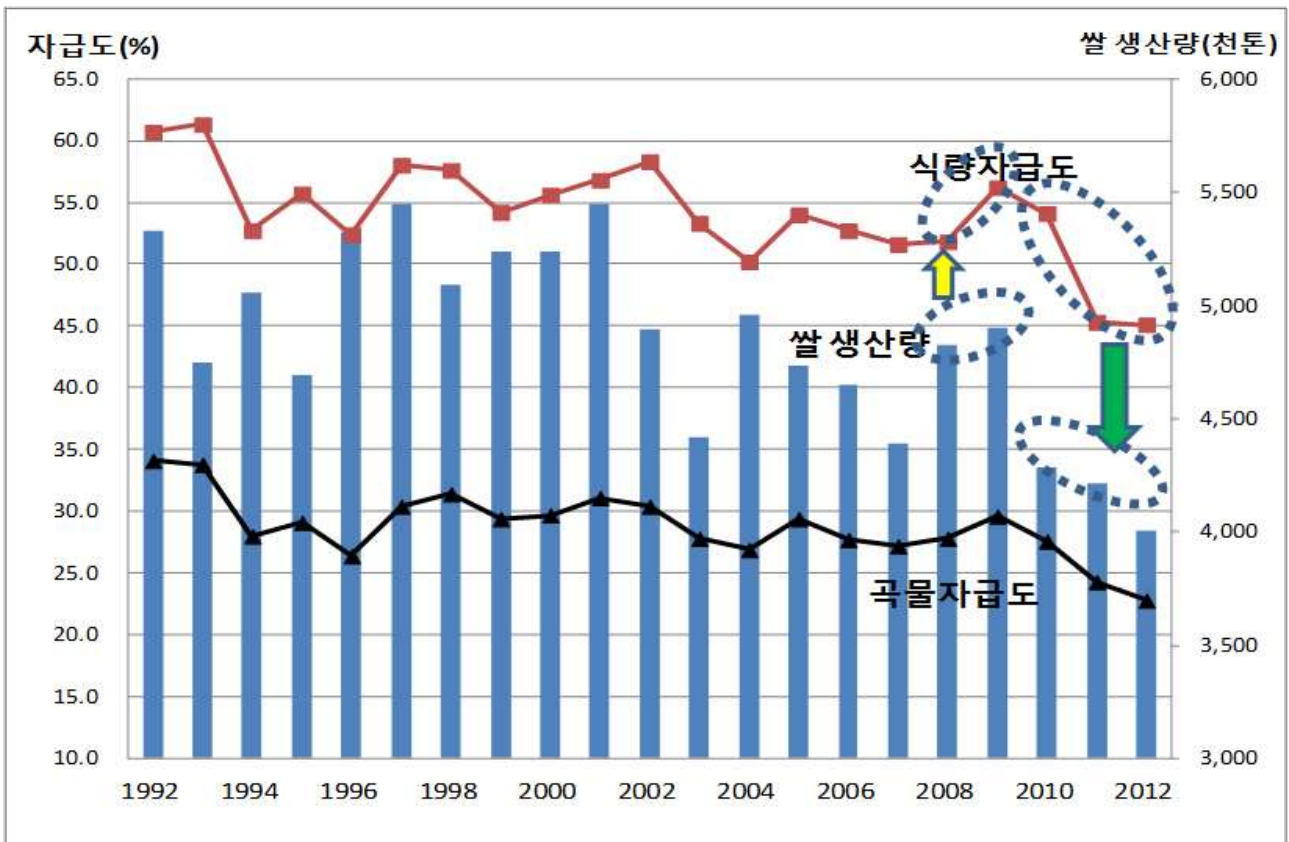
표 4 쌀 재배면적, 생산량, 1인당 쌀 소비량 변화추이

구분	쌀 kg재배면적(ha)	10a당 쌀 생산량(kg)	쌀 총생산량(톤)	1인당 쌀 연간소비량(kg)
2000	1,055,034	497	5,238,719	93.6
2004	983,560	504	4,960,249	82.0
2007	942,223	466	4,388,500	76.9
2008	927,995	520	4,825,078	75.8
2009	917,990	534	4,898,725	74.0
2010	886,516	483	4,281,729	72.8
2011	850,798	496	4,216,607	71.2
2012	846,870	473	4,002,154	69.8
2013	831,355	508	4,227,359	67.2
(2000년대비)	(78.8%)		(80.7%)	(71.8%)
2013-00년	-223,679	-	-1,011,360	-26.4
연평균증감율	-1.82%		-1.64%	-2.52%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과정과 운영실태

- 이와 같은 쌀 생산량의 변화는 바로 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08~'09년 연속적인 쌀 생산량 증가로 2009년과 2010년 식량자급도가 올라갔으나,
 - 2010년 부터 3년간 쌀 생산량 감소로 2010년 이후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을 급속하게 하락하였음.

그림 10 쌀 생산량과 식량자급도의 변화추이



(4) 생산주체의 변화

- 농업경영은 노동, 토지, 자본 등 생산의 3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주체인 노동력임
 - 노동은 노동력의 질과 양의 문제이며, 이 노동력에 의한 농지와 농기계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함.
- 논벼 생산농가의 경우 연령적으로 급속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감소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13년만에 농가수는 약 378천명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50대 이하 농가가 304천명이 감소한 반면, 70대 이상 농가는 110천명이 증가함.
 - 그 결과 48%를 점하던 50대 이하 농가비율이 30%로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70대 이상의 농가비율은 15.8%에서 38.1%로 증가하여
 - 미래 쌀 농업을 담당할 주체의 유지 및 육성이 문제시 됨

표 5 논벼 생산농가 연령별 변화추이

구분	2000	2005	2013	2000~13년	
				증감율	증감수
합계	1,077,642 (100.0%)	935,318 (100.0%)	700,079 (100.0%)	-35.0%	-377,563
40대이하	240,883 (22.4%)	154,362 (16.5%)	58,338 (8.3%)	-75.8%	-182,545
50대	275,545 (25.6%)	218,836 (23.4%)	154,011 (22.2%)	-44.1%	-121,534
60대	391,440 (36.3%)	331,860 (35.5%)	208,178 (29.7%)	-46.8%	-183,262
70대	169,774 (15.8%)	230,260 (24.6%)	279,553 (38.4%)	64.7%	109,779

- 쌀 생산농가의 호당 쌀 재배면적은 영농규모화사업과 농지은행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13년간 0.88ha에서 1.19ha로 0.31ha 증가에 머물렀음.
- 재배면적 규모별 농가수를 보면 양극화현상임.
 - 1ha미만 농가계층은 동기간 786천호에서 384천호로 50%로 급감하였으나,
 - 반면 2ha이상 농가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5ha이상 농가수 증가율이 가장 높음

표 6 쌀 재배규모별 농가수 변화추이

구분	쌀 재배규모별 농가수(호)							호당 수확면적 (ha)
	총 농가수	0.5ha 미만	0.5~1.0	1~2	2~3	3~5	5ha 이상	
2000	1,078천	456,884	329,176	201,361	49,543	29,221	11,457	0.88
	100.0%	42.4%	30.5%	18.7%	4.6%	2.7%	1.1%	
2005	935천	411,907	269,544	160,025	43,080	32,469	18,293	1.06
	100.0%	44.0%	28.8%	17.1%	4.6%	3.5%	2.0%	
2013	700천	193,643	190,717	171,840	62,655	45,336	36,888	1.19
	100.0%	27.5%	27.2%	24.5%	8.9%	6.5%	5.3%	
증감율	-35.1%	-57.6%	-42.1%	-14.7%	26.5%	55.1%	222.0%	35.2%
전체 쌀전업농 (2011년)	68,059 (100.0%) <9.4%>	12,387 (18.2%) <2.1%>		10,249 (15.1%) <28.8%>	24,349 (35.8%) <52.6%>	21,074 (31.0%) <58.9%>	4.66 398%	
지원 쌀전업농 (2011년)	51,638 (100.0%) <7.1%>	5,564 (10.8%) <1.0%>		6,947 (13.5%) <19.5%>	20,564 (39.8%) <44.5%>	18,563 (35.9%) <51.9%>	5.17 442%	

다. 들녘단위 조직화 가능성

○ 전국에 50ha이상 들녘수와 들녘면적

- 들녘수 : 3,400개소

- 들녘면적 : 508천ha(2012년 논 면적의 52.6%, 쌀 재배면적의 60%)

○ 이상과 같이 양질의 단지화가 가능한 들녘이 전국에 약 3,400개소가 있으며

- 논벼농가의 작목반이 있는 행정리수도 약 3,400개가 있음

* 통계청 2010년 농업총조사 자료

- 1개 행정리에 논벼농가 작목반이 2개소 있는 행정리도 168개소 있음

○ 이상과 같이 단지화가 가능성이 높은 들녘과 행정리내에 논벼농가 작목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 들녘, 행정리를 중심으로 들녘경영체 조직의 가능성이 높음

표 7 전국 들녘규모별 들녘수 및 들녘면적 현황(2013년 재조사 결과)

구분	총 들녘수	총 들녘면적	들녘면적 규모	50~70ha미만		70~100ha		100~149ha		150~199ha	
				들녘수	들녘면적	들녘수	들녘면적	들녘수	들녘면적	들녘수	들녘면적
개수	3,398	508,391	수	877	50,500	723	59,975	541	65,691	356	60,633
면적			면적								
비율	100.0%	52.6%	비율	25.8%	9.9%	21.3%	11.8%	15.9%	12.9%	10.5%	11.9%
200~249ha		250~299ha		300~349		350~399ha		400~449ha		450~499ha	
들녘수	들녘면적	들녘수	들녘면적	들녘수	들녘면적	들녘수	들녘면적	들녘수	들녘면적	들녘수	들녘면적
264	58,506	212	59,483	229	73,785	92	34,248	64	26,890	40	18,680
7.8%	11.5%	6.2%	11.7%	6.7%	14.5%	2.7%	6.7%	1.9%	5.3%	1.2%	3.7%

주 : 본 자료는 '08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본인이 시군별 데이터와 500ha이상 들녘은 2개이상으로 분리하고 시군데이터와 네이버지도를 중심으로 다시 조사한 수치임.

표 8 전국 품목별 작목반이 있는 행정리수 비교(2010년)

전국 행정리 총수	작목반 있는 행정리수	논벼			채소			특용·약용작물			과수		
		소계	1개	2개 이상	소계	1개	2개 이상	소계	1개	2개 이상	소계	1개	2개 이상
36,498	11,538	3,382	3,214	168	4,897	4,051	846	1,777	1,537	240	4,030	3,252	778
100.0%	31.4%	9.3%	8.8%	0.5%	13.4%	11.1%	2.3%	4.9%	4.2%	0.7%	11.0%	8.9%	2.1%
	100.0%	29.3%	27.9%	1.5%	42.4%	35.1%	7.3%	15.4%	13.3%	2.1%	34.9%	28.2%	6.7%
		100.0%	95.0%	5.0%	100.0%	82.7%	17.3%	100.0%	86.5%	13.5%	100.0%	80.7%	19.3%

자료 : 통계청, [2010 농업총조사], 2012.6

1-2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현황

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실태

- 2009년부터 집단화된 들녘(50ha 이상)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 들녘별쌀경영체육성사업('12~'13)을 거쳐 '14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명칭 변경

표 9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전개과정

구분	'09~'10년	'11년	'12년	'13년	2014년
명칭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좌동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사업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목적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고품질쌀 최적경영체를 육성하여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쌀 경쟁력 제고	들녘별 공동농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들녘별 쌀경영체 육성	좌동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생산·관리하는 들녘경영체를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쌀산업 경쟁력 제고
성과 목표	최적경영체육성 목표(누계) ('09)10개소→('10)30→('14)200	17년까지 들녘별 경영체 50개소 육성하여 공동농작업 비중을 25% 유지	17년까지 들녘별 경영체 50개소 육성하여 공동농작업을 통한 노동시간 절감	좌동	20년까지 들녘경영체 50개소 육성하여 공동농작업을 통한 공동경작비율 확대 및 생산비 절감
사업 대상자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한 법인 혹은 농가조직체	RPC, DSC 사업자, 농협 및 농업법인	정부인정 RPC, DSC 사업자, 농협 및 농업법인	좌동	좌동
자금 용도	생산시설 및 장비·기계지원 컨설팅 지원	교육·컨설팅 운영비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구입비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	좌동	좌동
선정 결과	'09년 12개소 지원 '10년 18개소 지원	컨설팅 지원 : 83개소 지원	교육컨설팅 50개소 시설장비 6개소	교육컨설팅 52개소 시설장비 7개소	교육컨설팅 59개소 시설장비 20개소
예산 현황	'09년 1,500백만원 '10년 2,250백만원	1,000백만원	1,000백만원	1,000백만원	2,500백만원
근거 법령	농업농촌식품기본법 제8조(농업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농촌식품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1항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	좌동	좌동

○ 지원대상 및 사업대상자

- 2010년까지 벼를 재배로 하는 법인 혹은 농가조직체였으나,
- 2011년부터 50ha이상 들녘을 조직화하여 공동영농을 수행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 농업회사법인), RPC·DSC, 농협으로 확대함

○ 지원 내역

- 들녘경영체 지원내역은 크게 교육·컨설팅 비용과 공동농작업 시설·장비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
- 농가 조직화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
 - * 공동영농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개소당 10~30백만원)
 - * 1~3년간 지원가능
- 교육·컨설팅을 통해 조직이 정비된 들녘경영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또는 무인헬기 구입·설치비 지원(개소당 2억원 이내)

○ 지원조건

- 국고(50%), 지방비(40%), 자부담(10%)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운용현황

- 들녘경영체 운영 및 조직화 방법, 재배기술 및 작부체계, 농기계 관리,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방안, 우수경영체 견학 등
- 30% 수준은 수리비, 유류비, 종자비 등 시설 운영비로 사용
- 지자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정 업체(약 60개소)나 지역 연구소, 대학 등을 통해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유도(일부 소수는 외부전문가 초빙 실시)

○ 시설·장비지원 사업 운용현황

- 공동육묘장이나 광역방제기를 시·군이 주체가 되어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자는 시설·장비 인수 후 자급집행 증빙자료를 시·군에 제출
- 농업법인의 경우는 법인 임직원이 장비를 직접 관리 및 참여 농지에 대한 공동농작업을 일괄 수행
 - * 타 사업에 의해 지원된 사업체보다 저렴하게 작업료 책정하여 추진
- RPC나 농협은 인수한 장비를 직접 농작업을 수행하는 마을단위 작목회장, 단지장 등 임원지 등에게 인계하여 운영
 - * 수리비·유류비 등 경비는 공동위탁작업 수수료로 충당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과정과 운영실태

-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158개소의 들녘경영체 선정·운영 중
 - 실적(누계) : ('09)12개소 → ('10)30 → ('11)99 → ('12)118 → ('13)132 → ('14)158
 - 50ha 이상 전국 2,800여개 들녘(45만ha) 중 '20년까지 500개소 (10만ha, 전체들녘의 20%수준) 육성 목표
- 연도별 선정·지원 현황
 - 2009~'14년간 총 158개 들녘경영체를 선정하여, 교육·컨설팅은 274개소(중복지원 포함), 시설·장비는 63개소에 대해 지원

표 10 들녘경영체 연도별 선정개수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신규선정	12개소	18	69	19	14	26	158
교육컨설팅	12개소	18	83	50	52	59	274
시설장비	12개소	18	-	6	7	20	63
예산(국비)	15억원	23	10	10	10	25	93

나. 도별 식량산업관련 지원사업 내역

- 2004년 쌀 관세화 유예이후 도 단위에서 지역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특히 양질묘 생산과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공동육묘장 지원사업과
 -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광역방제기(광역살포기, 무인헬기) 지원사업 등이 있음
- 공동육묘장과 광역방제기를 지원하는 도 현황
 - 공동육묘장과 광역방제기 동시 지원 :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 공동육묘장남만 지원 : 강원, 충남, 경북

표 11 시도별 광역방제기 공동육묘장, 시설장비 지원여부

구분	지원 시도								비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광역방제기 지원	●		●		●	●		●	
공동육묘장 지원	●	●	●	●	●	●	●	●	
시설장비 지원				●			●		

(1) 도별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 병충해방제를 위한 광역방제기 지원 실태
 - 지원기종 : 광역살포기, 무인헬기 중 선택
 - 지원대상 : 농업법인, 농협 등 공동경영가능 경영체
 - 지원액 : 지원비율(50~70%), 지원액 개소당 150~200백만원

표 12 도별 광역방제기 지원 실태

도별	사업명	주요 지원내용	지원액 및 비율 (도비:시군비:자부담)	지원대상
경기	농업용 헬기지원	무인헬기 지원	- 매년 2대 지원 -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들녘경영체와 연계된 RPC, 농협
충북	병해충 방제 공동광역방제기 공급사업	원거리 광역살포기, 무인헬기	- 광역살포기 : 180백만원 - 무인헬기 : 180백만원 - 도비(14%), 시군비(56%) 자부담(30%)	영농조합법인, 농협 등 들녘단위 경영체
전북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차량제외)	무인항공방제기 (7.5~8m 방제폭) 원거리용방제기 (3,000ℓ)	- 14대 지원 - 무인항공방제기 : 160백만 - 광역살포기 : ~140백만원 - 도비(30%), 시군비(30%), 자부담(40%)	농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전남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사업	광역살포기· 무인헬기, 운송용 차량	- 지원단가 : 보조금상한가 적용 - 광역살포기 : 141백만원 - 광역살포기 탑재차량 : 39백만원 - 무인헬기(차량제외) : 184백만원 - 무인헬기 탑재차량 : 16백만원 -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쌀 농업회사를 설립하는 조 직체(들녘별 50ha 이상) 들녘별 100ha이상 집단화된 농업인 단체와 육묘 공급 및 수매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 협
경남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지원사업	2015년 8대	- 8개소 - 개소당 200백만원 - 도비(20%), 시군비(40%), 자부담(40%)	법인, 작목반 협의체 등 육묘장을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경영체

(2) 도별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 양질묘 생산과 비용절감을 위한 공동육묘장 지원 실태
 - 지원내용 : 공동육묘장 660㎡과 관련 시설장비 지원, 소형육묘장(330㎡)도 지원
 - 지원대상 : 농업법인, 농협 등 공동경영가능 경영체
 - 지원액 : 지원비율(50~70%), 지원액 개소당 120~300백만원

표 13 도별 공동육묘장 지원 실태

도별	사업명	주요 지원내용	지원액 및 비율 (도비:시군비:자부담)	지원대상
경기	공동육묘장 지원	공동육묘장 지원 200평규모	매년 1개씩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 50%	들녘경영체와 연계된 RPC, 농협
강원	육묘은행사업	건전묘 육성을 위한 육묘은행 설치 지원(시설규모 588㎡)	-1개소 지원 -개소당 120백만원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쌀 생산자조직체, 농협과 수매 계약된 RPC
충북	못자리 Bank 설치지원	-주요 시설 및 장비 : 온실, 자동제어 장치, 자동살수장치, 출아실, 녹화 및 경화실, 육묘상자, 볍씨소독기, 발아기, 파종기, 관정-양수시설, 온 풍기, 에어쿨 등 -시설규모 : 개소당 분담 100ha(3만 상자) 이상 육묘생산시설	-10개소 -개소당 1~3억원 -도비(21%), 시군비(49%) 자부담(30%)	쌀 전업농 조직체, 농 협·농업법인 등 생산 자 조직, 대규모농가 등
충남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벼 육묘를 자동화, 대량화할 수 있 는 하우스 시설 및 부대시설 지원 -자동화기준(588㎡)	-14개소 -개소당 120백만원 -도비(16%), 시군비(37%) 자부담(47%)	지역농협 및 RPC, 농 업인, 생산자단체, 육 묘기술을 습득하고 위 탁경험이 있는 쌀 생 산 전문 농업회사법인
전북	벼 공동육묘장 (녹화장) 지원사업	H빔(파이프형) 육묘온실, 자동제어 살수장치, 최아실, 발아기, 파종기, 온 풍기, 육묘 컨테이너, 상자세척기 등 시설장비 (녹화장 1억원/660㎡)	-30동 지원 -180백만원/660㎡, -100백만원/330㎡ -도비(30%), 시군비(30%) 자부담(40%)	농협, RPC,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
전남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필수시설 : 육묘온실, 자동제어장치, 자동살수장치, 출아실, 컨테이너, 최 아기 등 -자동화 160백만원 -반자동화 90백만원	-90~160백만원/660㎡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쌀 농업회사를 설립하 는 조직체 (들녘별 50ha 이상) 들녘별 집단화(100ha 이상)된 농업인 단체 와 육묘 공급 및 수매 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법인 등
경북	벼 육묘공장(대형) 지원사업	-기본시설 (63%) * 육묘온실(자동살수) : -사업량588㎡(178평), 출아실(63㎡),육 묘컨테이너(184개) 등	-10개소 -개소당 120백만원 -도비(12%), 시군비(48%) 자부담(40%)	쌀전업농, 영농조합법 인, 농업회사법인
경북	벼 육묘공장(소형) 지원사업	기본시설 (63%) * 육묘온실(자동살수) : 사업량 168㎡(51평), 출아실(42㎡ 포함), 육묘컨테이너(28개)	-280개소 개소당 36백만원 -도비(20%), 시군비(50%) 자부담(30%)	쌀작목반, 마을공동체 쌀전업농, 벼재배농가
경남	벼 육묘장 설치	(660㎡/동 기준)	-15개소 지원 -120백만원/개소 -도비(20%), 시군비(50%) 자부담(30%)	법인, 작목반 협의체 등 육묘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영 체

(3) 도별 시설장비 지원사업

- 충남과 경북의 경우는 지역 쌀브랜드 육성을 위해 시설장비와 함께 농자재 지원을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음.
- 지원내용 : 공동육묘장 혹은 광역방제기 중에서 택1, 자연녹화장, 건조저장시설, 공동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관련 지원
- 지원대상 : 농업법인, 농협 등 공동경영가능 경영체
- 지원액 : 지원비율(50~70%), 지원액 개소당 100~250백만원, 차등지원

표 14 도별 기타 시설장비 지원 실태

도별	사업명	주요 지원내용	지원액 및 비율 (도비:시군비:자부담)	지원대상
충남	충남쌀 695 프로젝트 실천경영체 육성사업	-고품질쌀 생산 및 생산비 절감 농자재 및 시설장비 구입 *종자, 토양개량, 차별화농법 농자재, 도복방지제, 병해충 방제 등 *공동육묘, 건조, 단지관리 등 생산비·노동력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수매 및 가공시설 보완, 확충 -고품질 쌀 생산 실천을 위한 기반조성	-15개소 지원 -개소당 1~2.5억 차등지원 -도비(15%) 시군비(35%) 자부담(50%)	일정면적이상 계약 재배를 하고 건조·보관 및 가공시설을 갖춘 RPC, DSC 사업자, 농업법인 등
경북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사업	-우수공동체 생산시설 및 장비, 기계지원 *생산시설지원 : 자동화 공동육묘장, 자연녹화온실, 상온통풍 종자건조저장시설 등 준영구적 시설의 신규설치, 시설확대 및 개보수 지원 *기계장비지원 : 공동직파기, 광역방제기 등 장비의 신규구입지원	-6개소 -개소당200백만원 -도비(14%) 시군비(56%) 자부담(30%)	*벼를 주작목으로 설립한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또는 벼 재배를 목적으로 구성된 농가조직체 *지원대상규모 : 들녘단위50ha이상 규모화, 조직화, 집단화된 지역

2.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지원대상 특성

2-1 선정 들녘경영체 지역 분포실태

- 전체 지원받은 들녘경영체 150개소 중에서 전남이 34.2%, 전북(21.5%), 경북(12.0%), 경기(9.5%)가 많고 경남이 가장 적으며, 쌀 재배면적이 적은 강원과, 충북도 적음.
-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들녘경영체의 경우는 전북이 23.8%로 가장 많고, 전남과 충남이 각각 20.6%로 쌀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3개도의 비중이 65.0%를 점하고 있음
- 교육컨설팅과 운영비만 지원받은 들녘경영체 중에서 전남과 전북을 제외한 다른 도의 경우는 대부분이 농협과 RPC(농협RPC와 민간RPC)로
 - 시설장비 지원 들녘경영체 육성을 위해서는 농업법인 육성이 매우 시급함
 - 도단위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한 농업법인 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함

표 15 들녘경영체 도별 시설장비지원 경영체 분포현황

구분	시설·장비 지원 경영체					교육컨설팅 운영비 지원경영체	전체 경영체수(B) 비율	(A/B)
	육묘장	광역 살포기	무인 헬기	기타	소계 (A)			
경기	1	1		1	3(4.8%)	12 (0)	15(9.5%)	20.0%
강원	2	2		1	5(7.9%)	3 (0)	8(5.1%)	62.5%
충북	2	2			4(6.3%)	3 (0)	7(4.4%)	57.1%
충남	6	5	2		13(20.6%)	5 (1)	18(11.4%)	72.2%
전북	6	9			15(23.8%)	19 (7)	34(21.5%)	44.1%
전남	4	5	4		13(20.6%)	41 (19)	54(34.2%)	24.1%
경북	1	5	1		7(11.1%)	12 (1)	19(12.0%)	36.8%
경남	1	1	1		3(4.8%)	-	3(1.9%)	100.0%
계	23 (36.5%)	30 (47.6%)	8 (12.7%)	2 (3.2%)	63(100%) (100%)	95 (48)	158 (100.0%)	39.9%

주 : 교육컨설팅·운영비 지원 들녘경영체에서 ()는 농업법인 수입

- 시군별 지원내역을 보면 전국 58개 시군에서 들녘경영체 지원을 받아
 - 2000ha이상 쌀 재배면적을 갖춘 시군의 53.2%,
 -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시군이 37개 시군 33.9%
- 쌀 재배면적 2000ha이상 되는 시군 중에서 들녘경영체가 있는 시군비율
 - 전남,(95%) 경기(72.7%)의 경우는 많은 시군에서 선정되었으나, 전북(53.8%), 충북 (50%), 충남(50%), 경북, 경남, 강원의 경우는 50%미만으로 낮은 수준임
- 들녘경영체를 지원받은 읍면수는 총 113개 읍면에서 지원받았으며
 -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읍면수는 전체적으로 58개 읍면에서 지원받았음

그림 11 들녘경영체 소재 시군별 선정 들녘경영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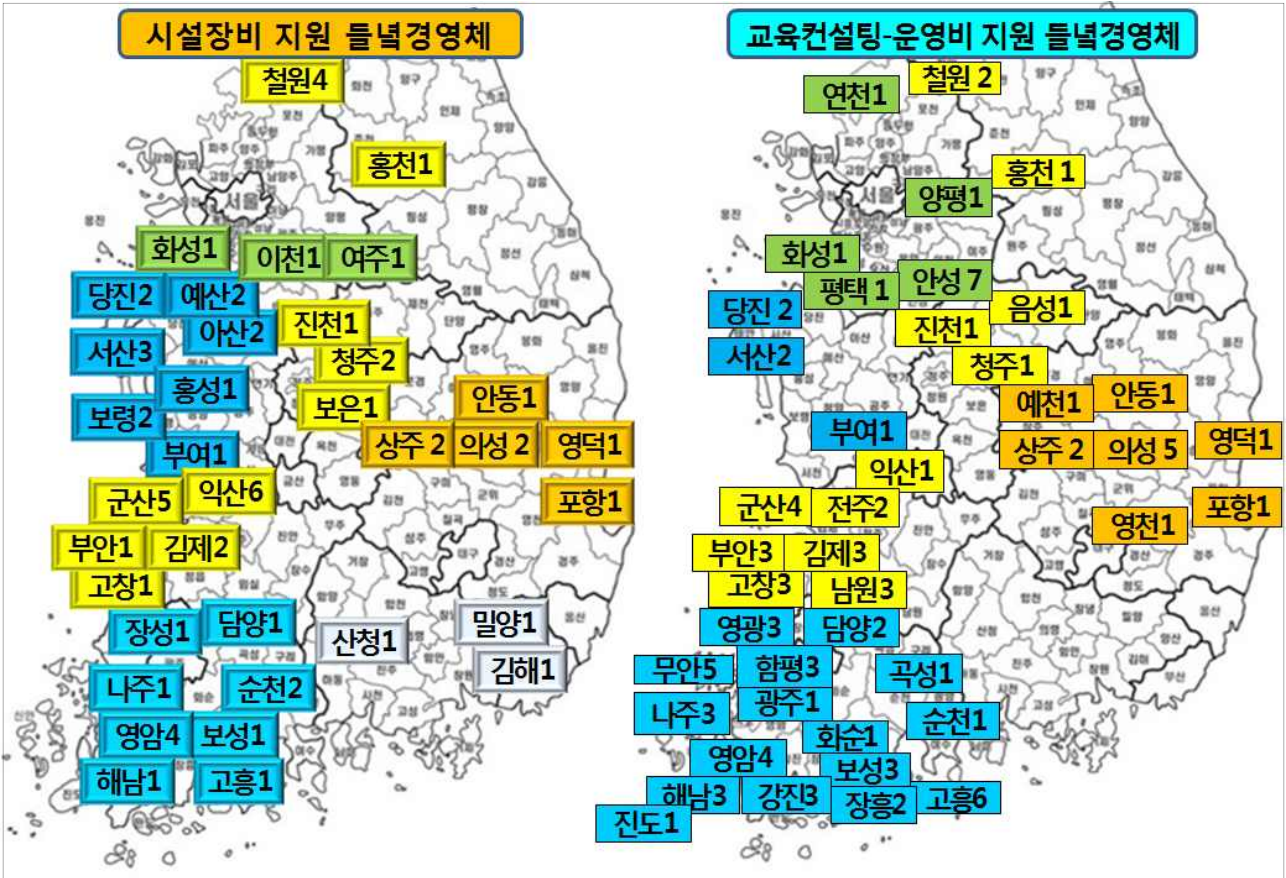


표 16 들녘경영체 선정 시군수 및 읍면수

구분	시군 구수	2000ha이상 쌀재배면적 (A)	시군수			읍면수		비고
			시설장비	컨설팅 (B)	B/A (%)	컨설팅	시설장비	
경기	31	11	3	8	72.7	14	3	
강원	18	6	2	2	33.3	5	4	
충북	12	8	3	4	50.0	7	4	
충남	16	14	7	7	50.0	17	12	
전북	14	13	5	7	53.8	27(2)	12	
전남	22	20	9	19	95.0	25(26)	13	
경북	22	19	5	7	36.8	14	7	
경남	18	15	3	3	20.0	3	3	
광주	5	1	0	1	100.0	1	0	
인천	10	1			-			
울산	5	1			-			
계		109	37	58	53.2	113(28)	58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과정과 운영실태

표 17 전국 시도별 논의 들녘크기별 들녘수(2013년 조사)

시도별	들녘 비율	총계	50~70ha	70~100ha	100~149	150~199	200~249	200~249	250~299	300~349	350~399	400~499ha
계	52.6%	3,398	877	723	541	356	264	264	212	229	92	104
부산시	72.6%	18	3	1	4	4	3	3	-	2	1	
대구시	33.1%	11	-	4	3	2	1	1	-	-	1	
인천시	76.5%	57	9	6	14	8	3	3	6	4	4	3
광주시	26.1%	25	14	9	2	-	-	-	-	-	-	
울산시	18.7%	21	18	2	1	-	-	-	-	-	-	
세종시	76.5%	13	-	1	2	4	1	1	3	-	2	
경기	46.2%	266	51	55	46	28	20	20	19	16	12	19
강원	51.5%	177	68	42	24	15	9	9	5	5	5	4
충북	54.3%	258	99	64	47	28	7	7	7	4	-	2
충남	67.1%	575	82	107	73	53	57	57	68	81	23	31
전북	67.7%	593	141	109	84	60	65	65	42	56	15	21
전남	49.2%	585	95	124	116	87	49	49	35	47	21	11
경북	35.5%	483	209	114	70	42	23	23	8	6	4	7
경남	42.3%	316	88	85	55	25	26	26	19	8	4	6

표 18 전국 품목별 작목반이 있는 행정리수 비교

구분	전국 행정리 총수	작목반있는 행정리수				도별 비율			
		작목반있는 행정리수	논벼	1개	2개 이상	작목반있는 행정리수	논벼	1개	2개 이상
전국	36,498	11,538	3,382	3,214	168	100.0%	100.0%	100.0%	100.0%
부산	139	20	11	10	1	0.2%	0.3%	0.3%	0.6%
대구	264	72	10	8	2	0.6%	0.3%	0.2%	1.2%
인천	260	59	30	27	3	0.5%	0.9%	0.8%	1.8%
울산	335	31	11	11	-	0.3%	0.3%	0.3%	0.0%
경기	4,042	911	371	354	17	7.9%	11.0%	11.0%	10.1%
강원	2,195	870	225	213	12	7.5%	6.7%	6.6%	7.1%
충북	2,897	1,054	270	238	32	9.1%	8.0%	7.4%	19.0%
충남	4,517	1,553	356	339	17	13.5%	10.5%	10.5%	10.1%
전북	5,108	1,220	332	323	9	10.6%	9.8%	10.0%	5.4%
전남	6,650	1,799	855	816	39	15.6%	25.3%	25.4%	23.2%
경북	5,167	2,395	528	510	18	20.8%	15.6%	15.9%	10.7%
경남	4,752	1,458	381	363	18	12.6%	11.3%	11.3%	10.7%
제주	172	96	2	2		0.8%	0.1%	0.1%	0.0%

자료 : 통계청, [2010년 농업총조사], 2012

2-2 선정 들녘경영체의 유형적 특성

가.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수와 경영면적

- 들녘경영체 총 참여농가수는 23,981호이며, 경영체당 평균 152호 참여
 - 참여농가수별 경영체 현황을 보면, 25호 미만의 경우는 7.0%에 불과하고
 - 100호 이상 참여농가 경영체 비율은 58.2%
- 들녘경영체 158개소의 전체 경영면적은 31,968ha 전체 '14년 쌀 재배면적의 3.9%
 - 경영체당 평균 경영면적은 202ha로 '13년 평균 1.19ha보다 170배 많음
 - 100~200ha는 73개소(46%), 200~400ha는 61개소(39%)이며 400ha 이상은 5.7%
- 참여농가의 호당 평균은 1.33ha로 '13년 평균 1.19ha보다 0.14ha 많음

표 19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수별 공동경영면적별 경영체수 비교

총참여 농가수	평균 농가수	참여농가수별 경영체수(개소)					
		10호미만	10~25호	25~100호	100~200호	200~400호	400호이상
23,981	152	2 (1.3%)	9 (5.7%)	55 (34.8%)	56 (35.4%)	29 (18.4%)	7 (4.4%)
총면적 (ha)	평균경작 면적(ha)	공동경작 면적별 경영체수(개소)					
		50~100ha	100~200ha	200~400ha	400~600ha	600ha이상	계
31,968	202	15 (9.5%)	73 (46.2%)	61 (38.6%)	7 (4.4%)	2 (1.3%)	158 (100.0%)

나. 경영주체별 실태

- 들녘경영체 지원자격은 농업법인, RPC, 농협임
- 158개 들녘경영체 운영하는 경영주체별로 보면
 - 농업법인을 조직한 농가조직체 경우가 96개소 60.8%로 가장 많고
 - 다음이 농협RPC가 17.7%, 농협 및 민간RPC는 각각 10.8%임
-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63개 들녘경영체 운영하는 경영주체별로 보면,
 - 농업법인을 조직한 농가조직체 경우가 51개소 81.0%로 가장 많고
 - 다음이 민간RPC가 11.1% 농협이 7.9%에 불과함
- 특히 시설장비지원을 받은 경우 농협의 비율이 극히 낮은 이유는
 - 지자체 사업으로 시설장비를 지원받았거나, 단순히 운영비와 교육컨설팅 사업만을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짐

표 20 들녘경영체 경영주체별 시설장비지원 경영체 분포현황

구분	시설·장비 지원 경영체						전체 경영체수(B) 비율	(A/B)
	육묘장	광역 살포기	무인 헬기	기타	소계 (A)	비율		
농가조직체	21	25	3	2	51	81.0%	96 (60.8%)	53.1%
농협			2		2	3.2%	17 (10.8%)	11.8%
농협 RPC		2	1		3	4.8%	28 (17.7%)	10.7%
민간 RPC	2	3	2		7	11.1%	17 (10.8%)	41.2%
계	23	30	8	2	63	100.0%	158 (100.0%)	40.0%

-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들녘경영체 중에서 공동육묘장과 광역방제기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들녘경영체의 비율은 27.0%에 불과하여,
 - 육묘와 방제 2개 작업을 동시에 공동작업하는 부문에서 공동경영체로서의 역할이 매우 미약할 수 있음.
 - 따라서 들녘경영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공동작업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공동육묘장과 광역방제기 모두를 지원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혹은 공동육묘장과 광역방제기를 지원하고 있는 도단위 지자체에서 가능한 정부가 지원한 들녘경영체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 지원하는 방안도 있음.

표 21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소유현황 요약

구분	공동육묘장만 소유	광역방제기만 소유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소유	기타
경영체 수 (63개소)	19개소 (30.2%)	26개소 (41.3%)	17개소 (27.0%)	1개소 RPC이용

- 들녘경영체 지원횟수를 보면
 - 전체적으로 1회만 지원받은 들녘경영체 비율이 54.4%로 가장 많고
 - 3회 지원을 받은 들녘경영체는 26.6%, 2회 지원을 받은 들녘경영체가 19.0%임
- 경영주체별 지원횟수를 보면 민간RPC가 3회 지원을 받은 경영체 비율이 41.2%로 가장 많고, 다음이 농협RPC가 32.1%이며
 - 농협의 경우는 2회가 23.5%, 3회가 17.6%에 불과함

표 22 들녘경영체 경영주체별 지원횟수 분포현황

구분	1회	2회	3회	계
농가조직체	53 (55.2%)	20 (20.8%)	23 (24.0%)	96 (100.0%)
농협	10 (58.8%)	4 (23.5%)	3 (17.6%)	17 (100.0%)
농협 RPC	16 (57.1%)	3 (10.7%)	9 (32.1%)	28 (100.0%)
민간 RPC	7 (41.2%)	3 (17.6%)	7 (41.2%)	7 (100.0%)
계	86 (54.4%)	30 (19.0%)	42 (26.6%)	158 (100.0%)

○ 들녘경영체 경영주체별 농가수 및 경영면적

- 농협RPC와 민간RPC가 들녘경영체가 참여농가수 및 경영면적이 가장 많은데, 이는 RPC의 경우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들녘경영체를 조직하여 신청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어짐
- 한편 농업법인을 구성하여 신청한 농가조직체의 경우 참여농가수와 경영면적이 가장 적은데, 이는 농가자체 조직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들녘경영체 중에서는

- 민간RPC가 경영면적이 가장 많고, 다음이 농협RPC, 농가조직체 순임

표 23 들녘경영체 경영주체별 평균 농가수 및 경영면적(ha)

구분	경영체수	전체 평균		시설장비지원 경영체		교육-컨설팅-운영비 지원 경영체	
		농가수	경영면적	농가수	경영면적	농가수	경영면적
농가조직체	96	113	170	152	169	89	171
농협	17	216	197	394	138	193	205
농협 RPC	28	230	283	124	202	242	293
민간 RPC	17	176	259	155	247	190	267
전체평균	158	152	202	145	178	157	218

표 24 들녘경영체 경영체별 시설장비 소유현황 1

지원 연도	시도	시군	경영체명	농가 수	면적 (ha)	시설장비		
						공동 육묘장	광역 방제기	기타
'09년	경기	여주	왕대리최적경영체	42	89			'09저장고
	강원	철원	동송재배단지	52	120		농협	'09건조장
	충북	청원	양지말영농법인	27	154	충북	'09	
	충북	진천	장척쌀유통단지법인	82	150	'09	충북	
	충남	아산	둔포영농법인	119	110	'09		
	전북	군산	나포십자들작목반	118	199	RPC	RPC	'09논두렁시트
	전북	익산	한그루영농법인	6	240	전북	'09	
	전남	순천	별량최적경영체	195	153		'09	
	전남	나주	동강작목반	42	154		'09	
	경북	상주	금화작목반	165	123	경북	'09	
	경북	의성	칠성작목반	210	204	경북(소)	'09	
	경남	김해	화목3통작목반	49	90	'09		
'10년	경기	이천	풍계3리영농회	47	116	'10		
	강원	철원	갈말재배단지	42	137	'10		
	강원	철원	관우재배단지	35	105		'10	
	충북	청원	신평유기쌀작목반	40	80	'10		
	충북	보은	대추고을작목반	131	120	충북	'10	
	충남	서산	서산간척지영농법인	7	198	'10		
	충남	당진	당진해나루쌀영농법인	133	225		'10	
	충남	예산	쌀전업농삼교영농법인	15	160	충남	'10	
	전북	군산	대야큰들의꿈작목반	79	100		'10	
	전북	익산	송산영농조합법인	137	207		'10	
	전북	김제	소목영농조합법인	65	102	'10		
	전남	고흥	해창만고품질쌀단지	162	164	'10		
	전남	영암	서호태백리쌀작목반	70	85		'10	
	전남	해남	오뚝이영농법인	32	120	'10		
	경북	포항	홍해쌀전업연구회	67	155	'10		
	경북	의성	구천작목반	186	250		'10	
	경북	영덕	병곡생산단지	202	157		'10	
	경남	산청	영실영농법인	131	182	경남	'10	

주 : 도가 적혀있는 들녘경영체는 도단위에서 지원받은 시설임

표 25 들녘경영체 경영체별 시설장비 소유현황 2

지원 연도	시도	시군	경영체명	농가 수	면적 (ha)	시설장비		
						공동 육묘장	광역 광제기	기타
'12년	강원	철원	동송농협RPC	127	185		'12	
	충남	당진	상록수영농법인	66	220		'12	
	전북	군산	(유)나승영농사	460	101		'12	
	전남	영암	농업회사법인빛가람(주)	55	240	전남(소)	'12	
	경북	안동	안동농협	694	130		'12	
	경남	밀양	밀양제일영농법인	270	150		'12	
'13년	충남	아산	황금들탑라이스	108	105	'13	(아산시)	
	충남	보령	보령통합RPC	91	118	충남	'13	
	전북	김제	에쿠스영농조합법인	100	254	'13	전북	
	전북	부안	동진협동RPC	174	310	'13		
	전남	순천	농업회사주농	351	60	'13	전남	
	전남	장성	농업회사법인한농연장성노령뜰(주)	1201	200		'13	
경북	상주	공검감꽃쌀영농조합법인	145	110		'13		
'14년	경기	화성	화성농산RPC	106	218		'14	
	강원	홍천	피내뜰영농조합법인	213	244	'14		
	충남	서산	산울림영농법인	70	253	'14		
	충남	서산	새들만RPC	12	250		'14	
	충남	보령	청소영농조합법인	66	117	'14		
	충남	부여	큰사랑영농조합법인	66	173	충남(소)	'14	
	충남	예산	고덕황금영농법인	25	250		'14	
	충남	홍성	대한경기영농조합법인	156	184	'14		
	전북	군산	회현농협(RPC)	155	304	전북	'14	
	전북	군산	제희RPC	169	285	전북	'14	
	전북	익산	익산우리밀영농조합	64	327	'14	전북	
	전북	익산	중앙영농조합	119	151		'14	
	전북	익산	명천영농RPC	240	350	'14		
	전북	익산	무형친환경영농조합	81	209.2	'14		
	전북	고창	한결영농RPC	115	165		'14	
	전남	담양	농업회사법인(주)대동	120	122		'14	
	전남	보성	천명농업회사법인	87	120	'14		
	전남	영암	기찬들영농조합법인	229	220		'14	
전남	영암	덕진농협	93	146		'14		
전남	장흥	농업회사법인사자산쌀(주)	388	500		'14		

주 : 도가 적혀있는 들녘경영체는 도단위에서 지원받은 시설임

3. 들녘경영체 공동경영 실태와 문제점

3-1 들녘경영체 조직운영 실태와 문제점

가 참여농가수 변화내용

○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수의 문제

- 들녘경영체에 참여하는 총 농가수의 문제는 들녘경영체 조직과 운영에 영향을 주며,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효과의 파급효과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임.

○ 들녘경영체 선정당시와 현재의 변화상황을 보면, 선정당시 152명에서 현재 138명으로 9.3%가 감소되었으며,

- 농가가 조직한 들녘경영체와 시설장비지원을 받은 들녘경영체, 연차별로는 3~4년차의 경영체에서 탈락비율이 높음
- 이는 점차적으로 고령농의 증가와 함께 농지가 규모화 됨에 따라 참여농가수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6 들녘경영체 유형별 평균 참여 농가수 변화현황

구분		선정당시	현재	증감(증감율)
평균		152	138	-14 (-9.3%)
운영주체별	농가조직체	113	100	-13 (-11.5%)
	기타조직체	211	198	-13 (-6.2%)
지원내역별	시설장비지원	145	128	-17 (-11.7%)
	교육컨설팅지원	157	145	-12 (-7.6%)
선정연차별	1~2년	180	165	-15 (-8.3%)
	3~4년	160	139	-21 (-13.1%)
	5년이상	90	99	9 (-10.0%)

○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규모별로 보면,

- 30~49명 참여 들녘경영체와 200명 이상 참여의 들녘경영체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 50~199명 참여농가 들녘경영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표 27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규모별 경영체수 변화현황

구분	선정당시 참여 농가수		현재 참여 농가수		증감
	개수	비율	개수	비율	
~29명	15	9.5%	15	9.6%	0
30~49명	16	10.1%	23	14.7%	7
50~99명	35	22.2%	31	19.9%	-4
100~199명	56	35.4%	49	31.4%	-7
200명이상	36	22.8%	38	24.4%	2
계	158	100.0%	156	100.0%	무응답 2개소

○ 그러나 들녘경영체 임원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장기적으로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참여농가수 : 현재(122명)→미래계획(170명)
- 특히 100명 이상 되는 들녘경영체의 경우 참여농가 확대계획 비율이 높음

표 28 들녘경영체의 법인구성(계약재배농가수)

구분	현재		미래 확대계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0~49명	6	22.2%	3	12.5%
50~99명	7	25.9%	3	12.5%
100~199명	8	29.6%	9	37.5%
200명이상	6	22.2%	9	37.5%
합계	27	100.0%	24	100.0%

○ 들녘경영체 임원수는 현재 9.3명에서 미래계획은 9.4명으로 큰 변화를 희망하지 않음

표 29 들녘경영체의 법인구성(임원수)

구분	현재		미래 확대계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명미만	4	12.1%	2	7.1%
5명	10	30.3%	8	28.6%
6~9명	10	30.3%	10	35.7%
10명이상	9	27.3%	8	28.6%
합계	33	100.0%	28	100.0%

나 경영면적 변화내용

- 들녘경영체 경영면적의 경우 선정당시보다 현재 12.1%가 증가하여 226.7ha로 확대됨
 - 특히 농가조직체의 경우는 농가수는 감소한 반면 경영면적은 170ha에서 198ha로 16.5%가 확대되었음.
 - 지원내역별로는 운영비·교육컨설팅비를 지원받은 들녘경영체는 거의 확대되지 않았으나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들녘경영체의 경우는 178ha에서 237ha로 33.2% 확대됨
 - 선정연차별로는 3년 이상 된 들녘경영체의 경우 10% 이상이 증가되었음
- 이와 같이 참여농가수는 감소한 반면, 참여 경영면적의 확대는 특히 시설장비지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참여 경영면적이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단순한 운영비와 컨설팅비 지원보다 시설장비지원이 들녘경영체 사업추진에 동기를 부여하여 들녘의 많은 농지가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짐

표 30 들녘경영체 쌀 재배면적 변화현황

구분		선정당시	현재	증감(증감율)
평균		202.3	226.7	24.4 (12.1%)
운영주체별	농가조직체	169.8	197.9	28.1 (16.5%)
	기타조직체	252.8	271.4	18.5 (7.3%)
지원내역별	시설장비지원	178.1	237.3	59.2 (33.2%)
	교육컨설팅지원	218.4	219.4	1.0 (0.5%)
선정연차별	1~2년	238.3	234.1	-4.2 (-1.8%)
	3~4년	204.4	245.0	40.6 (19.9%)
	5년이상	148.3	164.2	15.9 (10.7%)

표 31 들녘경영체 참여면적별 경영체수 변화현황

구분	선정당시 참여 면적		현재 참여 면적		증감
	개수	비율	개수	비율	
~99ha	15	9.5%	21	13.5%	6
100~149ha	45	28.5%	31	19.9%	-6
150~199ha	28	17.7%	20	12.8%	-8
200~299ha	46	29.1%	47	30.1%	1
300ha이상	24	15.2%	37	23.7%	13
계	158	100.0%	156	100.0%	무응답 2개

다. 운영비·교육컨설팅비 운용실태

-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1단계 운영비·교육컨설팅비의 운영실태에 대한 들녘경영체 임원진들의 의향을 보면,
 - 운영비·교육컨설팅비용으로 들녘경영체에 도움으로는 법인체 및 들녘경영체 운영방법, 추진 사업내용, 정부의 쌀과 식량정책에 대한 이해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보이고 있음.
 - 비록 적은 액수지만 운영비와 교육컨설팅지원을 통하여 들녘경영체 임원진들의 경우 정부의 식량정책에 대한 이해, 들녘경영체 추진사업내용, 운영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32 운영비·교육컨설팅비용으로 들녘경영체에 도움이 된 내용

구분	빈도	비율
① 쌀 재배기술에 대한 기술습득	13	43.3%
② 들녘경영체의 사업내용	19	63.3%
③ 쌀 판매방법에 대한 지식습득	7	23.3%
④ 법인체 및 들녘경영체 운영방법	22	73.3%
⑤ 정부의 쌀과 식량 정책이해	15	50.0%
⑥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0.0%
합계	30	100.0%

- 들녘경영체 운영비·교육컨설팅비 지원사업의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 현재대로 3년간 지원과 2단계에도 최소 1년이상 지원이 각각 43.3%를 점하고 있음.

표 33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운영비 지원사업 지원기간

구분	빈도	비율	
① 현재대로 3년간 지원	13	43.3%	
② 2단계별 이후 최소 1년이상 지원필요	13	43.3%	
③ 지원 필요없음			
④ 기타	4	13.3%	연속지원,
합계	30	100.0%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과정과 운영실태

- 운영비의 사용용도는 공동방제에 필요한 비용지출이 59%로 가장 높고
 - 다음이 공동육묘에 필요한 비용지출과 기타 들녘경영체 운영을 위한 지출이 각 20.5%를 점하고 있음.

표 34 교육컨설팅·운영비 지원사업 중 운영비 지원사업 사용용도

구분	빈도	비율
① 공동육묘에 필요한 운영비 사용	8	20.5%
② 공동방제에 필요한 운영비 사용	23	59.0%
③ 기타	8	20.5%
합계	39	100.0%

- 현재 30%에서 최대 4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의 비중에 대해서는
 - 들녘경영체 임원진의 80.6%가 연차별로 운영비 비중을 높여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 교육컨설팅비용은 참여농가의 의식교육에 도움이 되지만
 - 참여농가들의 들녘경영체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는 공동운영비 지출에 의한 개별농가의 참여효과가 높기 때문에 운영비의 비중을 높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짐.

표 35 교육컨설팅·운영비 지원사업 중 운영비의 바람직한 비율

구분	빈도	비율
① 매년 동일하게 비율 책정	6	19.4%
② 연차별 운영비 비중을 증대	25	80.6%
③ 모르겠다		
합계	31	100.0%

3-2 들녘경영체 공동경영 현황과 문제점¹³⁾

가. 조직화 실태와 문제점

- 들녘경영체가 미래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는 12년도 조사치와 달리 나타났음
- 2012년도 조사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50%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64.7%로 증가함
 - 들녘경영체의 농가와 농지범위가 한개 마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2~3개 행정리에 분포되어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범위와 유사한 권역을 갖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들녘단위로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까지 확대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표 36 귀하의 들녘경영체에서 5년이내에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사업

구분	2012년도 조사	2014년 조사결과
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50.0%	64.7%
② 정보화마을	5.0%	2.9%
③ 도농교류형사업	13.8%	14.7%
④ 녹색농촌체험마을	22.5%	2.9%
⑤ 사회적기업 운영	8.8%	14.7%
합계	100.0%	100.0%

- 들녘경영체 법인체 운영에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6%가 법인에 대한 이해 부족, 다음 법인 운영경험부족이 45.2%, 고령화로 주변 참여농가의 경영체로의 참여, 참여농가의 조합원 혹은 주주로의 참여 어려움 등을 들고 있음
 - 따라서 참여농가의 법인이해와 조합원으로서의 참여에 대한 교육이 절대 필요

표 37 들녘경영체를 법인화(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

구분	빈도	비율	비율
① 법인에 대한 이해부족	16	28.6%	51.6%
② 고령화로 참여농가의 한계	11	19.6%	35.5%
③ 의사결정의 어려움	4	7.1%	12.9%
④ 주변농가들의 경영체로의 참여	11	19.6%	35.5%
⑤ 법인운영 경험 부족	14	25.0%	45.2%
합계	56	100.0%	응답자 31명

13) 식량산업과 들녘경영체 공동작업 현황 점검자료 분석내용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과정과 운영실태

○ 들녘경영체 구성 농가와 농지 구성 현황

- 조사 들녘경영체의 공동경작에 참여하는 농가수는 108호이며, 이중 법인 구성원(조합원, 주주)은 33명으로 30.6%를 점하고 있으며, 일반농가가 69.4%를 점하고 있음.
- 농지의 경우, 전체 쌀 재배면적의 35.3%가 법인 구성원면적이고 나머지 64.7%가 일반농가의 농지임
- 이와 같이 들녘경영체 공동경작에 참여하는 농가수와 농지의 법인구성원 비중이 낮은 것은 영세소농인 고령농가가 법인에 대한 이해 부족, 법인의 사고발생시 두려움으로 농업법인의 조합원이나 주주로의 참여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되어짐.

○ 들녘경영체 중에서 농가조직체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임차 및 쌀직불금 수령 현황

- 농업법인 중 법인명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수 비율 2.5%
- 농업법인 중 법인명의 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법인수 비율 6.3%
- 농업법인 중 쌀 직불금 수령 법인수 비율 3.8%

○ 이와 같이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는 들녘경영체는 극소수에 불과

- 농가조직체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모두 농지소유가 가능하나,
- 아직 법인 구성기간이 5년 미만의 경영체가 많아 공동육묘와 공동방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농지소유나 농지임차에 관심부분이 적고,
- 대부분 출자를 현금출자나, 농기계 출자중심으로 이루어져 농업법인체의 농지소유와 농지임차 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짐.

표 38 법인체의 농지소유와 임차 및 쌀직불금 수령 법인수

구분	전체	농지 소유 법인수	농지 임차 법인수	쌀직불금 수령 법인수
농업법인현황	79	2	5	3
	100.0%	2.5%	6.3%	3.8%

○ 농업법인명의로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는 면적 현황

- 법인명의로의 농지소유면적 비율은 전체 공동경작면적의 1.7%
 - 법인명의로의 농지임차면적 비율은 전체 공동경작면적의 1.0%
 - 법인명의로의 쌀직불금 신청면적 비율은 전체 공동경작면적의 0.7%에 불과
- * 농업법인명의 쌀직불금 신청면적은 1개 법인당 400ha까지 확대됨

표 39 들녘경영체 구성원별 농지현황

구분	①공동경작 전체면적		②법인구성원 재배면적		③일반농가 재배면적		법인명의 농지현황(ha)		
	농가수	면적 (ha)	농가수	면적 (ha)	농가수	면적 (ha)	④ 소유농지	⑤ 임차농지	⑥ 쌀직불금 신청면적
합계	9,099	18,839	2,812	6,662	6,287	11,684	313 (1.7%)	180 (1.0%)	129 (0.7%)
평균	108 (100%)	224 (100%)	33 (30.6%)	79 (35.3%)	75 (69.4%)	139 (64.7%)	4	2	2

주 : ① = ② + ③ + ④ + ⑤

○ 들녘경영체 공동경영을 위한 경영관리 현황

- 명부관리와 농지조서 구비는 90%수준으로 관리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이나,
- 협약서 이행, 단일영농계획수립, 농작업일지 기록 등은 6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들녘경영체 주체별 공동경영을 위한 경영관리 현황

- 농가조직체의 경우 협약서에서 농협, RPC보다 경영관리 비율이 높고
- 농협이나 RPC 경우는 단일영농계획수립의 비율이 농가경영체 보다 높음
- 시설장비 지원 경영체의 경우는 대부분 경영관리 부문에서 높게 나타남
- 선정연차별로는 대부분의 경영관리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협약서는 5년 이상 경영체가 높음

표 40 들녘경영체별 공동경영체 조직화 정도 비율

구분		명부관리	농지조서 구비	단일영농 계획수립	협약서	농작업 일지기록
평균		94.9%	89.2%	62.7%	58.9%	63.3%
운영주체별	농가조직체	95.8%	89.6%	56.3%	62.5%	63.5%
	기타조직체	93.5%	88.7%	72.6%	53.2%	62.9%
지원내역별	시설장비지원	96.8%	92.1%	61.9%	76.2%	65.1%
	교육컨설팅지원	93.7%	87.4%	63.2%	47.4%	62.1%
선정연차별	1~2년	100.0%	100.0%	62.5%	55.0%	75.0%
	3~4년	93.2%	84.1%	63.6%	56.8%	61.4%
	5년이상	93.3%	90.0%	60.0%	70.0%	53.3%

나. 농가조직체 조직화 실태

- 농가의 경우 농업법인을 들녘경영체 선정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음.
 - 농가경영체의 79개소 중에서 영농조합법인의 비율이 55.7%, 농업회사법인은 44.3%이며, 전남지역 들녘경영체는 대부분 농업회사법인임.
- 농가경영체의 경우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수는 평균 107명, 참여면적은 205.6ha로 참여농가 호당 면적은 1.92ha로 들녘경영체 평균 보다 많은 편임
 - 농가경영체의 경우 농협이나 RPC주체의 들녘경영체보다 2ha이상의 대농층의 참여가 많은 것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짐
- 농업법인의 법인 유형별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수와 경영면적 현황 비교
 - 참여농가수는 영농조합법인이 122명으로 농업회사법인(89명)보다 37% 많고, 참여농가수 중에서 법인구성원의 비율은 농업회사법인이 35.9%로 영농조합법인(28.2%) 보다 많음.
 - 참여면적도 영농조합법인이 238.5ha로 농업회사법인(164.4ha)보다 45% 많으며, 법인구성원의 면적비율은 영농조합법인이 40.9%로 농업회사법인(36.65) 보다 약간 높음 편임.

표 41 농업법인유형별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수와 면적

구분	경영체 참여 농가수(호)			경영체 참여면적(ha)		
	전체	법인 구성원	일반 농가	전체	법인 구성원	일반 농가
영농조합법인	122 (100.0%)	34 (28.2%)	87 (71.8%)	238.5 (100.0%)	97.5 (40.9%)	139.1 (58.3%)
농업회사법인	89 (100.0%)	32 (35.9%)	57 (64.1%)	164.4 (100.0%)	59.7 (36.3%)	104.4 (63.5%)
전체	107 (100.0%)	33 (31.1%)	74 (68.9%)	205.6 (100.0%)	80.8 (39.3%)	123.7 (60.2%)

- 농가경영체로 구성된 들녘경영체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으로 할 것인가? 농업회사법인으로 할 것인가는 장기적으로 들녘경영체 방향 설정과 사업추진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 특히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주체의 문제, 설립요건, 사업내용, 출자형태, 의결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특성을 반영하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선택
- 들녘경영체 참여구성원은 조합원(혹은 주주)과 일반참여농가로 구성됨
 - 농업법인의 조합원(혹은 주주)의 수는 들녘경영체의 의결권과 성과배분에 매우 중요
 - 참여구성원 즉 조합원(혹은 주주)의 농가수의 비율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5~9인의 들녘경영체의 비율이 41.8%로 가장 많으며, 30인 이상도 27.8%나 됨
 - 20인 이상의 조합원을 갖는 들녘경영체는 농업회사법인이 많으며, 5~9인의 경우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가 많음
 - 미래 들녘경영체의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성과배분을 고려시 가능한 조합원(주주)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42 농업법인유형별 들녘경영체 참여구성원수별 들녘경영체 현황

구분	~4인	5~9인	10~19인	20~29인	30인이상	계
영농조합법인	5 (11.4%)	21 (47.7%)	6 (13.6%)	1 (2.3%)	11 (25.0%)	44 (100.0%)
농업회사법인	6 (17.1%)	12 (34.3%)	3 (8.6%)	3 (8.6%)	11 (31.4%)	35 (100.0%)
전체	11 (13.9%)	33 (41.8%)	9 (11.4%)	4 (5.1%)	22 (27.8%)	79 (100.0%)

- 농가경영체 중에서 공동작업 참여농가수 비율별 들녘경영체 현황
 - 100% 참여 농가의 비중은 12.7%, 70%이상이 64.6%이며, 법인유형별로는 큰 차이가 없음

표 43 농업법인유형별 공동작업 참여 일반농가수 비율별 들녘경영체수

구분	30%미만	30~50%	50~70%	70%이상	100% 법인	총합계
영농조합법인	1 (2.3%)	5 (11.4%)	4 (9.1%)	28 (63.6%)	6 (13.6%)	44 (100.0%)
농업회사법인	2 (5.7%)	4 (11.4%)	2 (5.7%)	23 (65.7%)	4 (11.4%)	35 (100.0%)
전체	3 (3.8%)	9 (11.4%)	6 (7.6%)	51 (64.6%)	10 (12.7%)	79 (100.0%)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과정과 운영실태

- 농가경영체 중에서 공동작업 참여면적 비율별 들녘경영체 현황
 - 100% 참여 농가의 비중은 12.7%, 70%이상인 45.6%이며, 50~69%가 21.5%임
 - 법인유형별로는 참여면적비율이 30% 미만인 영농조합법인은 11.4%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9%보다 높음

표 44 농업법인유형별 공동작업 참여 일반농가의 면적 비율별 들녘경영체수

구분	30%미만	30~50%	50~70%	70%이상	100% 법인	총합계
영농조합법인	5 (11.4%)	5 (11.4%)	8 (18.2%)	20 (45.5%)	6 (13.6%)	44 (100.0%)
농업회사법인	1 (2.9%)	5 (14.3%)	9 (25.7%)	16 (45.7%)	4 (11.4%)	35 (100.0%)
전체	6 (7.6%)	10 (12.7%)	17 (21.5%)	36 (45.6%)	10 (12.7%)	79 (100.0%)

다. 공동작업의 실태와 문제점

- 들녘경영체에서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작업임.
- 들녘경영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업 중에서 품종통일, 공동방제, 공동건조, 공동출하, 공동육묘 작업에서 공동작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 공동육묘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공동육묘장의 연간 공동육묘 가능량이 최대 100ha 수준이기 때문에 낮음
 - 경운정지, 이앙, 수확, 시비, 제초 등의 공동작업 비율은 낮은 편임
- 들녘경영체 운영주체로 보면
 - 농가조직체의 경우, 품종통일, 공동방제, 공동육묘, 공동출하 순이며
 - 기타 농협이나 RPC의 경우는 품종통일, 공동방제, 공동출하, 공동육묘 순임

표 45 들녘경영체 운영주체에 의한 작업별 공동작업비율(%)

구분	품종 통일	육묘	경운 정지	이앙	물 관리	시비	제초	방제	수확	운반	건조	출하
농가조직체	77.9	56.9	36.2	42.8	11.9	30.1	30.4	76.3	45.1	30.6	38.0	51.2
기타조직체	84.9	56.6	18.5	27.6	10.3	24.0	17.2	73.8	31.8	24.7	69.0	75.2
전체	80.6	56.7	29.2	36.8	11.3	27.7	25.2	75.3	39.9	28.3	50.2	60.7

표 46 들녘경영체 운영주체별 공동작업비율별 들녘경영체 현황(%)

구분		0%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99%	100%	계
품종 통일	농가조직체	8.3%	3.1%	4.2%	3.1%	7.3%	26.0%	47.9%	100.0%
	기타조직체	8.1%	0.0%	1.6%	4.8%	6.5%	11.3%	67.7%	100.0%
	전체	8.2%	1.9%	3.2%	3.8%	7.0%	20.3%	55.7%	100.0%
육묘	농가조직체	17.7%	4.2%	11.5%	16.7%	7.3%	17.7%	25.0%	100.0%
	기타조직체	24.2%	8.1%	3.2%	9.7%	11.3%	11.3%	32.3%	100.0%
	전체	20.3%	5.7%	8.2%	13.9%	8.9%	15.2%	27.8%	100.0%
경운정지	농가조직체	47.9%	3.1%	4.2%	10.4%	9.4%	13.5%	11.5%	100.0%
	기타조직체	77.4%	1.6%	0.0%	3.2%	1.6%	1.6%	14.5%	100.0%
	전체	59.5%	2.5%	2.5%	7.6%	6.3%	8.9%	12.7%	100.0%
이앙	농가조직체	38.5%	0.0%	8.3%	14.6%	9.4%	15.6%	13.5%	100.0%
	기타조직체	61.3%	6.5%	1.6%	4.8%	0.0%	11.3%	14.5%	100.0%
	전체	47.5%	2.5%	5.7%	10.8%	5.7%	13.9%	13.9%	100.0%
물관리	농가조직체	82.3%	0.0%	4.2%	2.1%	3.1%	5.2%	3.1%	100.0%
	기타조직체	87.1%	0.0%	1.6%	1.6%	0.0%	3.2%	6.5%	100.0%
	전체	84.2%	0.0%	3.2%	1.9%	1.9%	4.4%	4.4%	100.0%
시비	농가조직체	61.5%	0.0%	5.2%	3.1%	6.3%	8.3%	15.6%	100.0%
	기타조직체	72.6%	0.0%	1.6%	3.2%	0.0%	6.5%	16.1%	100.0%
	전체	65.8%	0.0%	3.8%	3.2%	3.8%	7.6%	15.8%	100.0%
제초	농가조직체	59.4%	0.0%	5.2%	7.3%	5.2%	6.3%	16.7%	100.0%
	기타조직체	79.0%	0.0%	1.6%	3.2%	3.2%	0.0%	12.9%	100.0%
	전체	67.1%	0.0%	3.8%	5.7%	4.4%	3.8%	15.2%	100.0%
방제	농가조직체	15.6%	0.0%	1.0%	4.2%	9.4%	17.7%	52.1%	100.0%
	기타조직체	17.7%	1.6%	3.2%	6.5%	1.6%	9.7%	59.7%	100.0%
	전체	16.5%	0.6%	1.9%	5.1%	6.3%	14.6%	55.1%	100.0%
수확	농가조직체	37.5%	0.0%	7.3%	10.4%	13.5%	14.6%	16.7%	100.0%
	기타조직체	58.1%	0.0%	4.8%	8.1%	3.2%	11.3%	14.5%	100.0%
	전체	45.6%	0.0%	6.3%	9.5%	9.5%	13.3%	15.8%	100.0%
운반	농가조직체	59.4%	0.0%	4.2%	5.2%	7.3%	9.4%	14.6%	100.0%
	기타조직체	66.1%	0.0%	9.7%	0.0%	3.2%	4.8%	16.1%	100.0%
	전체	62.0%	0.0%	6.3%	3.2%	5.7%	7.6%	15.2%	100.0%
건조	농가조직체	46.9%	0.0%	6.3%	10.4%	10.4%	10.4%	15.6%	100.0%
	기타조직체	24.2%	1.6%	0.0%	6.5%	0.0%	16.1%	51.6%	100.0%
	전체	38.0%	0.6%	3.8%	8.9%	6.3%	12.7%	29.7%	100.0%
출하	농가조직체	37.5%	0.0%	3.1%	6.3%	12.5%	10.4%	30.2%	100.0%
	기타조직체	21.0%	0.0%	0.0%	4.8%	1.6%	9.7%	62.9%	100.0%
	전체	31.0%	0.0%	1.9%	5.7%	8.2%	10.1%	43.0%	100.0%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과정과 운영실태

○ 들녘경영체 지원내역별 작업별 공동작업비율 현황비교

- 대부분의 작업공정에서 시설장비 지원 들녘경영체가 교육컨설팅 지원 들녘경영체보다 공동작업비율이 높게 나타남.
- 특히 품종통일, 공동육묘, 공동시비, 공동방제, 공동수확 및 운반과 공동출하 등의 작업공정에서 시설장비지원 들녘경영체에서 공동작업 비율이 높음

표 47 들녘경영체 지원내역별 작업별 공동작업비율(%)

구분	품종 통일	육묘	경운 정지	이앙	물 관리	시비	제초	방제	수확	운반	건조	출하
시설장비지원	83.7	60.0	30.0	40.7	9.3	37.0	33.8	80.2	44.0	32.4	47.9	62.4
교육컨설팅지원	78.6	54.6	28.7	34.2	12.6	21.6	19.5	72.1	37.2	25.5	51.7	59.5
전체	80.6	56.7	29.2	36.8	11.3	27.7	25.2	75.3	39.9	28.3	50.2	60.7

○ 들녘경영체 지원 경과별 작업별 공동작업비율 현황비교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지원 경과연차별로는 공동작업비율은 큰 차이가 없음.
- 이앙, 시비, 수확 부문에서는 지원연차가 지날수록 공동작업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들녘경영체에서 공동육묘와 공동방제를 통해서 참여농가가 들녘경영체로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8 들녘경영체 지원 연차별 작업별 공동작업비율(%)

구분	품종 통일	육묘	경운 정지	이앙	물 관리	시비	제초	방제	수확	운반	건조	출하
1~2년	87.3	65.9	29.6	30.8	13.1	17.7	16.3	77.6	38.9	31.2	52.2	70.3
3~4년	77.0	49.2	30.6	36.4	12.0	30.8	31.5	75.3	38.7	27.9	50.8	55.2
5년이상	82.3	66.6	24.9	45.9	6.7	32.2	18.7	72.3	44.9	25.4	45.7	63.9
전체	80.6	56.7	29.2	36.8	11.3	27.7	25.2	75.3	39.9	28.3	50.2	60.7

표 49 들녘경영체 지원내역별 공동작업비율별 들녘경영체 현황(%)

구분	구분	0%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99%	100%	계
품종 통일	시설장비지원	3.2%	3.2%	6.3%	3.2%	4.8%	17.5%	61.9%	100.0%
	교육컨설팅지원	11.6%	1.1%	1.1%	4.2%	8.4%	22.1%	51.6%	100.0%
	전체	8.2%	1.9%	3.2%	3.8%	7.0%	20.3%	55.7%	100.0%
육묘	시설장비지원	15.9%	4.8%	9.5%	14.3%	9.5%	15.9%	30.2%	100.0%
	교육컨설팅지원	23.2%	6.3%	7.4%	13.7%	8.4%	14.7%	26.3%	100.0%
	전체	20.3%	5.7%	8.2%	13.9%	8.9%	15.2%	27.8%	100.0%
경운 정지	시설장비지원	60.3%	1.6%	0.0%	9.5%	6.3%	7.9%	14.3%	100.0%
	교육컨설팅지원	58.9%	3.2%	4.2%	6.3%	6.3%	9.5%	11.6%	100.0%
	전체	59.5%	2.5%	2.5%	7.6%	6.3%	8.9%	12.7%	100.0%
이앙	시설장비지원	44.4%	1.6%	3.2%	15.9%	4.8%	11.1%	19.0%	100.0%
	교육컨설팅지원	49.5%	3.2%	7.4%	7.4%	6.3%	15.8%	10.5%	100.0%
	전체	47.5%	2.5%	5.7%	10.8%	5.7%	13.9%	13.9%	100.0%
물 관리	시설장비지원	87.3%	0.0%	3.2%	0.0%	1.6%	3.2%	4.8%	100.0%
	교육컨설팅지원	82.1%	0.0%	3.2%	3.2%	2.1%	5.3%	4.2%	100.0%
	전체	84.2%	0.0%	3.2%	1.9%	1.9%	4.4%	4.4%	100.0%
시비	시설장비지원	55.6%	0.0%	3.2%	4.8%	4.8%	9.5%	22.2%	100.0%
	교육컨설팅지원	72.6%	0.0%	4.2%	2.1%	3.2%	6.3%	11.6%	100.0%
	전체	65.8%	0.0%	3.8%	3.2%	3.8%	7.6%	15.8%	100.0%
제초	시설장비지원	58.7%	0.0%	3.2%	6.3%	3.2%	4.8%	23.8%	100.0%
	교육컨설팅지원	72.6%	0.0%	4.2%	5.3%	5.3%	3.2%	9.5%	100.0%
	전체	67.1%	0.0%	3.8%	5.7%	4.4%	3.8%	15.2%	100.0%
방제	시설장비지원	12.7%	0.0%	1.6%	4.8%	6.3%	11.1%	63.5%	100.0%
	교육컨설팅지원	18.9%	1.1%	2.1%	5.3%	6.3%	16.8%	49.5%	100.0%
	전체	16.5%	0.6%	1.9%	5.1%	6.3%	14.6%	55.1%	100.0%
수확	시설장비지원	41.3%	0.0%	4.8%	11.1%	7.9%	17.5%	17.5%	100.0%
	교육컨설팅지원	48.4%	0.0%	7.4%	8.4%	10.5%	10.5%	14.7%	100.0%
	전체	45.6%	0.0%	6.3%	9.5%	9.5%	13.3%	15.8%	100.0%
운반	시설장비지원	58.7%	0.0%	4.8%	3.2%	4.8%	11.1%	17.5%	100.0%
	교육컨설팅지원	64.2%	0.0%	7.4%	3.2%	6.3%	5.3%	13.7%	100.0%
	전체	62.0%	0.0%	6.3%	3.2%	5.7%	7.6%	15.2%	100.0%
건조	시설장비지원	42.9%	1.6%	1.6%	6.3%	4.8%	14.3%	28.6%	100.0%
	교육컨설팅지원	34.7%	0.0%	5.3%	10.5%	7.4%	11.6%	30.5%	100.0%
	전체	38.0%	0.6%	3.8%	8.9%	6.3%	12.7%	29.7%	100.0%
출하	시설장비지원	31.7%	0.0%	1.6%	1.6%	7.9%	12.7%	44.4%	100.0%
	교육컨설팅지원	30.5%	0.0%	2.1%	8.4%	8.4%	8.4%	42.1%	100.0%
	전체	31.0%	0.0%	1.9%	5.7%	8.2%	10.1%	43.0%	100.0%

표 50 들녘경영체 지원연차별 공동작업비율별 들녘경영체수 현황

구분		0%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99%	100%	계
품종	1~2년	5.0%	0.0%	0.0%	5.0%	7.5%	22.5%	60.0%	100.0%
	3~4년	10.2%	2.3%	4.5%	3.4%	8.0%	19.3%	52.3%	100.0%
	5년이상	6.7%	3.3%	3.3%	3.3%	3.3%	20.0%	60.0%	100.0%
	전체	8.2%	1.9%	3.2%	3.8%	7.0%	20.3%	55.7%	100.0%
육묘	1~2년	10.0%	10.0%	2.5%	15.0%	12.5%	17.5%	32.5%	100.0%
	3~4년	28.4%	4.5%	11.4%	11.4%	6.8%	13.6%	23.9%	100.0%
	5년이상	10.0%	3.3%	6.7%	20.0%	10.0%	16.7%	33.3%	100.0%
	전체	20.3%	5.7%	8.2%	13.9%	8.9%	15.2%	27.8%	100.0%
경운 정지	1~2년	57.5%	2.5%	2.5%	12.5%	2.5%	15.0%	7.5%	100.0%
	3~4년	56.8%	3.4%	3.4%	6.8%	8.0%	6.8%	14.8%	100.0%
	5년이상	70.0%	0.0%	0.0%	3.3%	6.7%	6.7%	13.3%	100.0%
	전체	59.5%	2.5%	2.5%	7.6%	6.3%	8.9%	12.7%	100.0%
이앙	1~2년	50.0%	5.0%	5.0%	15.0%	5.0%	12.5%	7.5%	100.0%
	3~4년	47.7%	2.3%	8.0%	8.0%	5.7%	13.6%	14.8%	100.0%
	5년이상	43.3%	0.0%	0.0%	13.3%	6.7%	16.7%	20.0%	100.0%
	전체	47.5%	2.5%	5.7%	10.8%	5.7%	13.9%	13.9%	100.0%
물관리	1~2년	82.5%	0.0%	0.0%	5.0%	2.5%	7.5%	2.5%	100.0%
	3~4년	83.0%	0.0%	4.5%	1.1%	2.3%	3.4%	5.7%	100.0%
	5년이상	90.0%	0.0%	3.3%	0.0%	0.0%	3.3%	3.3%	100.0%
	전체	84.2%	0.0%	3.2%	1.9%	1.9%	4.4%	4.4%	100.0%
시비	1~2년	77.5%	0.0%	2.5%	5.0%	0.0%	5.0%	10.0%	100.0%
	3~4년	61.4%	0.0%	4.5%	3.4%	5.7%	8.0%	17.0%	100.0%
	5년이상	63.3%	0.0%	3.3%	0.0%	3.3%	10.0%	20.0%	100.0%
	전체	65.8%	0.0%	3.8%	3.2%	3.8%	7.6%	15.8%	100.0%
제조	1~2년	77.5%	0.0%	2.5%	7.5%	0.0%	5.0%	7.5%	100.0%
	3~4년	58.0%	0.0%	5.7%	6.8%	8.0%	2.3%	19.3%	100.0%
	5년이상	80.0%	0.0%	0.0%	0.0%	0.0%	6.7%	13.3%	100.0%
	전체	67.1%	0.0%	3.8%	5.7%	4.4%	3.8%	15.2%	100.0%
방제	1~2년	12.5%	0.0%	2.5%	10.0%	2.5%	22.5%	50.0%	100.0%
	3~4년	17.0%	1.1%	1.1%	3.4%	8.0%	12.5%	56.8%	100.0%
	5년이상	20.0%	0.0%	3.3%	3.3%	6.7%	10.0%	56.7%	100.0%
	전체	16.5%	0.6%	1.9%	5.1%	6.3%	14.6%	55.1%	100.0%
수확	1~2년	40.0%	0.0%	12.5%	15.0%	10.0%	12.5%	10.0%	100.0%
	3~4년	48.9%	0.0%	4.5%	9.1%	8.0%	11.4%	18.2%	100.0%
	5년이상	43.3%	0.0%	3.3%	3.3%	13.3%	20.0%	16.7%	100.0%
	전체	45.6%	0.0%	6.3%	9.5%	9.5%	13.3%	15.8%	100.0%
운반	1~2년	52.5%	0.0%	15.0%	5.0%	2.5%	10.0%	15.0%	100.0%
	3~4년	63.6%	0.0%	4.5%	3.4%	6.8%	5.7%	15.9%	100.0%
	5년이상	70.0%	0.0%	0.0%	0.0%	6.7%	10.0%	13.3%	100.0%
	전체	62.0%	0.0%	6.3%	3.2%	5.7%	7.6%	15.2%	100.0%
건조	1~2년	35.0%	0.0%	5.0%	12.5%	2.5%	12.5%	32.5%	100.0%
	3~4년	36.4%	1.1%	4.5%	8.0%	8.0%	12.5%	29.5%	100.0%
	5년이상	46.7%	0.0%	0.0%	6.7%	6.7%	13.3%	26.7%	100.0%
	전체	38.0%	0.6%	3.8%	8.9%	6.3%	12.7%	29.7%	100.0%
출하	1~2년	22.5%	0.0%	2.5%	2.5%	10.0%	5.0%	57.5%	100.0%
	3~4년	35.2%	0.0%	2.3%	9.1%	6.8%	8.0%	38.6%	100.0%
	5년이상	30.0%	0.0%	0.0%	0.0%	10.0%	23.3%	36.7%	100.0%
	전체	31.0%	0.0%	1.9%	5.7%	8.2%	10.1%	43.0%	100.0%

라. 공동경영의 문제점 요약

(1) 들녘경영체 자체 공동경영상의 문제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 시작된 지 6년의 시간이 지났음.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들녘경영체 임원진들 대부분이 들녘경영체가 지역의 쌀산업과 국가의 식량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식이 강함.

표 51 들녘경영체가 지역의 쌀을 포함한 식량발전에 기여여부

구분	빈도	비율
① 많이 기여한다	29	87.9%
② 약간 기여한다	4	12.1%
③ 기여하지 못한다		
합계	33	100.0%

- 특히 쌀을 포함한 식량산업 부문에서 비용절감을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하였고,
 - 다음으로 고품질쌀과 친환경쌀 생산에 기여한다고 하고 있어,
 - 미래 지역농업에서 식량 생산주체로서의 가능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음.

표 52 들녘경영체가 지역의 쌀을 포함한 식량발전에 기여내용

구분	빈도	비율	비율
① 고품질-친환경쌀 생산	21	37.5%	63.6%
② 식량산업에서 비용절감	26	46.4%	78.8%
③ 지역농업의 식량생산 주체	8	14.3%	24.2%
④ 기타	1	1.8%	3.0%
합계	56	100.0%	응답자 33명

- 그러나 들녘경영체가 쌀을 포함한 식량생산의 주체로 농가의 조직화, 농지의 단지화를 통한 공동경영, 공동작업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
 - 일부 선도적인 들녘경영체 사례가 많이 있지만
 - 아직 많은 들녘경영체는 초보단계로 조직화와 공동작업 수준이 낮은 수준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과정과 운영실태

- 이와 같은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의 낮은 공동경영은
 - 참여농가의 사업취지 인식이 미흡하여 제대로 된 경영체 양성에 제약이 된 부문과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단순히 지원사업인 공동육묘와 공동방제 부문에서만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고 사업취지인 공동경영·각각의 작업별 공동농작업에 의한 비용절감에 대해 공감대가 부족한 들녘경영체도 있음
 - 들녘경영체의 공동경영, 공동농작업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이유
 - 지역(특히 경기지역과 도시근교지역)에 따라 높은 부채지주 비율로 들녘내 참여농지 전체의 공동농작업이 쉽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음
 - 일부 일반 참여농가의 경우 재배매뉴얼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개별농가 과거의 습관에 의존하여 농사짓는 사례도 존재함
 - 한편 들녘경영체를 조직화하여 농지를 단지화해야 주도할 핵심리더 부족하고, 고령화로 미래 핵심리더로 양성할 인력풀도 부족한 실정임.
 - 또한 들녘경영체 자체의 조직화의 미비와 임원진들의 공동경영에 대한 인식부족, 참여농가의 농업법인과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음.
 - 사업시작연도인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간 정부의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대한 확고한 인식부족에 의한 예산부족과 적극적인 홍보부족에 의한 들녘경영체 육성의 지체도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한편 공동농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는 토지용역비와 농기계 비용 부문에서 어느 일정부분 분명한 한계가 있음.
 - 쌀 생산비중 가장 많은 비중(약 40%)을 차지하는 토지용역비 절감문제임.
 - 토지용역비 계상은 지역의 유사임차료를 기준으로 하고 논·논의 이용결과 논 이용 품목별 총수입에 의한 임차료 부담으로 계상하고 있음.
 - 토지용역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첫째, 지역의 임차료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거의 불가능한 방법임. 둘째, 논 이모작 확대를 통한 쌀 부담 토지용역비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음
 - 따라서 들녘경영체 참여농지의 논 이용효율을 높이면 쌀 부문 토지용역비를 낮출 수 있으며, 논 이모작면적 확대에 의한 농가의 농업소득 증대도 동시에 이루어짐.
- * 예시. A지역 토지임차료 10a당 250,000원 쌀만 재배시 250,000원이 토지용역비계상
B지역 토지임차료 10a당 250,000원 논 이용현황(합계 1,400천원(100.0%) 쌀 총수입 1,000천원<71.4%>, 맥류 400천원<28.6%>)일 경우 쌀 토지용역비 부담액 178,500원(10a당 임차료 250,000원×71.4%< 논·조수입에서 쌀총수입 비율)이 됨.

- 또한 쌀 생산비의 23% 이상을 점하고 있는 농기계 관련비용(농구비, 영농광열비, 위탁영농비)의 절감문제임.
 - 농구비의 절감은 농기계 소유농가의 부문으로 현재 농기계 과잉으로 농구비의 상승을 가져오는 요인임. 농기계소유농가의 경우 농작업면적별 적정농기계 소유가 이루어져야 하나, 농기계 소유를 규제하기 힘들.
 - 위탁영농비의 경우는 농기계를 소유하지 못한 영세소농들의 농작업위탁비용으로 단위면적당 작업료를 떨어져야 절감되는 부문임.
 - 즉 농구비의 절감은 위탁영농비와 상호 결합관계로 적정농기계 공동소유를 통하여 농구비의 감가상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위탁영농비도 절감할 수 있음.
 - 즉 들녘경영체 경영면적별로 적정농기계 소유와 이용을 통하여 위탁작업료를 하락시키는 방법임.
- 따라서 들녘경영체가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 단일영농계획 수립 등 공동경영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 현재 대부분 쌀 중심의 들녘경영체에서 쌀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의 품목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으며,
 - 들녘경영체별 농기계 적정소유대수 추정과 과잉농기계의 처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 참여농가의 다양한 소득창출을 위해 들녘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농지의 공동이용과 단지화 집단화 방향 설정이 필요함

(2) 정책추진상의 문제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선정을 위한 농업법인 구성시 소수의 대농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농의 참여가 미흡한 부문
 - 들녘경영체 선정기준에 농가호수나 경지규모의 제한이 없어 소수의 대농 위주로 갈 가능성이 있음.
 - 중소농의 경우, 법인의 조합원(혹은 주주)으로의 참여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음. 따라서 중소농 참여확대 유인책(인센티브)을 들녘경영체 사업 내용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지원내용을 보면,
 -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은 공동육묘를 위한 공동육묘장 지원 혹은 공동방제를 위한 광역방제기(광역살포기, 무인헬기) 지원중에서 하나를 선택 지원하였기 때문에 공동육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과정과 운영실태

묘와 공동방제에서 높은 비율이 나오지 못했음.

- 체계적인 교육컨설팅 체계의 미비한 점이 있음.

○ 들녘경영체 선정이나 지원 규정에 제약이 있어 신규 진입희망 조직체나, 기존 들녘경영체 규모화·활성화에 제약되는 부문

- 직불금 상한이 50ha로 제한되어 그 이상의 규모화 제한 및 들녘경영체간 합병시 법인 청산절차(기존계약 해지, 부채청산 등) 요구 등 요건 과다함

- 직불금 상한제가 농업법인의 경우 400ha까지 확대되었음.

○ 들녘경영체 요건,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점검·제재 등 사후관리 미흡

- 공동농작업을 전제로 지원된 시설·장비가 일부 조직원을 위해서만 이용되는 사례 등에 대해 점검·제재하는 방안 부족

- 조직화 분해, 공동영농 면적 축소 등으로 들녘경영체 요건을 충족치 못하게 된 경우에 보조금 회수 또는 지정 철회 등의 사후관리 미흡

○ 들녘경영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원책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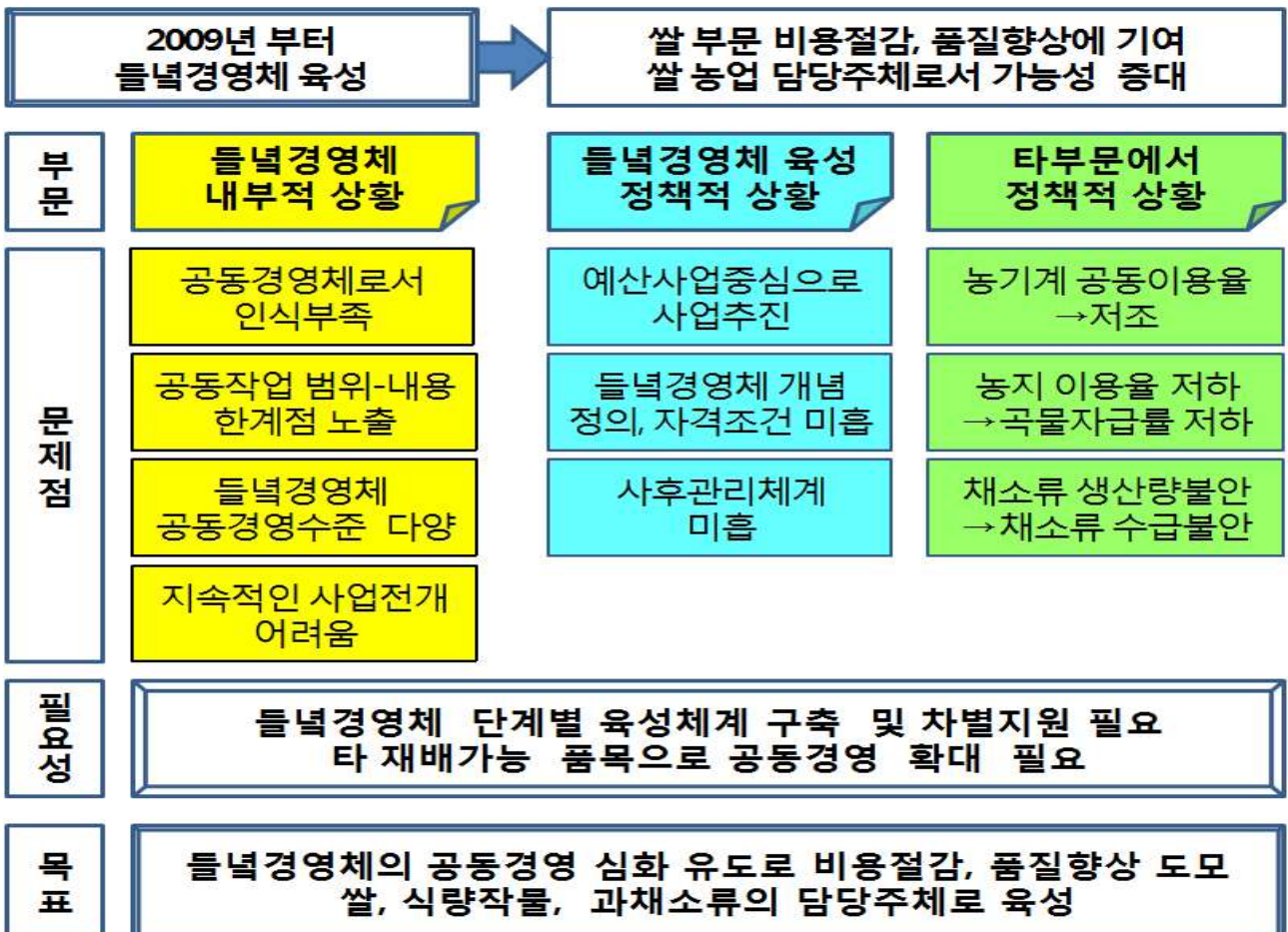
- 교육·컨설팅은 3회, 시설·장비는 육묘·방제에 한정 및 1회 지원 원칙(대규모일 경우 1회 추가 지원) 등 지원이 제한적이다 보니 잘 하고 있는 곳을 더 잘하게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은 부족한 실정임.

제3장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개발

1.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필요성

- 2009년부터 추진되어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5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들녘경영체의 내부의 변화와 정책적 상황에 따라 2단계 들녘경영체 육성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들녘경영체 내부적으로는 임원진들을 제외한 일반구성원들의 경우 공동경영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공동작업(공동경영)의 범위, 내용에 한계점이 노출되었으며, 들녘경영체 선정이후 지속적인 사업전개에 어려움이 있음.
- 정책적으로는 그간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들녘경영체 개념정의, 자격조건이 미흡하며,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한 실정임.
- 그간 쌀산업에서 새로운 생산주체로서 비용절감, 품질향상에 기여한 부문이 있으나, 타 작물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임

그림 12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필요성



1-1 들녘경영체내부 실태로 본 필요성

가. 들녘경영체 임원진의 의향

- 들녘경영체 임원진들이외의 일반참여농가의 경우는 사업취지인 공동농작업, 공동경영체 대한 인식 및 공감대가 부족하여 공동작업의 한계성이 노출되고 있음.
- 그간 쌀 중심의 들녘경영체 육성으로 타 부문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경영체의 다양한 사업의 지속적인 전개의 어려움 존재
 - 들녘경영체 임원진들은 들녘경영체 운영상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속사업 발굴 및 추진을 들고 있으며,
 - 들녘경영체 활성화를 위해 경영체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이 두 번째에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음.

표 53 들녘경영체를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 (모두 체크)

구분	빈도	비율	비율
① 농가 조직화	11	28.9%	39.3%
② 임원진의 역량부족	6	15.8%	21.4%
③ 농기계 공동작업 추진	7	18.4%	25.0%
④ 공동육묘 및 방제 등 사업비정산	1	2.6%	3.6%
⑤ 공동육묘장이나 광역살포기 운영		0.0%	0.0%
⑥ 지속사업 발굴 및 추진	13	34.2%	46.4%
합계	38	100.0%	응답자 29명

표 54 들녘경영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영체 자체에서 중요한 것(모두 체크)

구분	빈도	비율	비율
① 대표의 리더쉽	12	11.9%	40.0%
② 임원진의 역량강화	8	7.9%	26.7%
③ 조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역량강화	25	24.8%	83.3%
④ 다양한 사업추진	20	19.8%	66.7%
⑤ 사업추진 및 자금의 투명성 제고	17	16.8%	56.7%
⑥ 자체 자조금 확보 운영	19	18.8%	63.3%
합계	101	100.0%	응답자 30명

- 대부분의 경영체가 조직화와 공동작업 수준 낮고 아직 초보단계로 지역단위에 있어서 공동경영의 고도화가 필요함.
- 들녘경영체가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품종통일, 공동육묘, 공동방제와 공동출하 부분에서 공동작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에 의한 경운정지작업, 이앙작업, 수확작업 부문에서는 공동작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이들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이 요구됨.

표 55 들녘경영체 지원내역 및 연차별 작업별 공동작업비율(%)

구분	품종	육묘	경운 정지	이앙	물 관리	시비	제초	방제	수확	운반	건조	출하	
전체	80.6	56.7	29.2	36.8	11.3	27.7	25.2	75.3	39.9	28.3	50.2	60.7	
지원 내역별	시설장비 지원	83.7	60.0	30.0	40.7	9.3	37.0	33.8	80.2	44.0	32.4	47.9	62.4
	교육건설 탕지원	78.6	54.6	28.7	34.2	12.6	21.6	19.5	72.1	37.2	25.5	51.7	59.5
지원 연차별	1~2년	87.3	65.9	29.6	30.8	13.1	17.7	16.3	77.6	38.9	31.2	52.2	70.3
	3~4년	77.0	49.2	30.6	36.4	12.0	30.8	31.5	75.3	38.7	27.9	50.8	55.2
	5년이상	82.3	66.6	24.9	45.9	6.7	32.2	18.7	72.3	44.9	25.4	45.7	63.9

- 들녘경영체가 일부 영세소농과 고령농을 배제하고 대농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 중소농 배제 가능성이 있음.
- 한편 FTA체결의 확대, 2015년 쌀 관세화이후 우리 쌀산업과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 보다 조직된 공동경영에 의한 공동영농방식을 수행하는 들녘경영체의 육성확대를 통해 쌀과 식량생산의 주체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해야 함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개발

표 56 들녘경영체 지원내역별 공동작업비율별 들녘경영체 현황(%)

구분		0%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99%	100%	계
품종	시설장비지원	3.2%	3.2%	6.3%	3.2%	4.8%	17.5%	61.9%	100.0%
	교육컨설팅지원	11.6%	1.1%	1.1%	4.2%	8.4%	22.1%	51.6%	100.0%
	전체	8.2%	1.9%	3.2%	3.8%	7.0%	20.3%	55.7%	100.0%
육묘	시설장비지원	15.9%	4.8%	9.5%	14.3%	9.5%	15.9%	30.2%	100.0%
	교육컨설팅지원	23.2%	6.3%	7.4%	13.7%	8.4%	14.7%	26.3%	100.0%
	전체	20.3%	5.7%	8.2%	13.9%	8.9%	15.2%	27.8%	100.0%
경운정지	시설장비지원	60.3%	1.6%	0.0%	9.5%	6.3%	7.9%	14.3%	100.0%
	교육컨설팅지원	58.9%	3.2%	4.2%	6.3%	6.3%	9.5%	11.6%	100.0%
	전체	59.5%	2.5%	2.5%	7.6%	6.3%	8.9%	12.7%	100.0%
이양	시설장비지원	44.4%	1.6%	3.2%	15.9%	4.8%	11.1%	19.0%	100.0%
	교육컨설팅지원	49.5%	3.2%	7.4%	7.4%	6.3%	15.8%	10.5%	100.0%
	전체	47.5%	2.5%	5.7%	10.8%	5.7%	13.9%	13.9%	100.0%
물관리	시설장비지원	87.3%	0.0%	3.2%	0.0%	1.6%	3.2%	4.8%	100.0%
	교육컨설팅지원	82.1%	0.0%	3.2%	3.2%	2.1%	5.3%	4.2%	100.0%
	전체	84.2%	0.0%	3.2%	1.9%	1.9%	4.4%	4.4%	100.0%
시비	시설장비지원	55.6%	0.0%	3.2%	4.8%	4.8%	9.5%	22.2%	100.0%
	교육컨설팅지원	72.6%	0.0%	4.2%	2.1%	3.2%	6.3%	11.6%	100.0%
	전체	65.8%	0.0%	3.8%	3.2%	3.8%	7.6%	15.8%	100.0%
제조	시설장비지원	58.7%	0.0%	3.2%	6.3%	3.2%	4.8%	23.8%	100.0%
	교육컨설팅지원	72.6%	0.0%	4.2%	5.3%	5.3%	3.2%	9.5%	100.0%
	전체	67.1%	0.0%	3.8%	5.7%	4.4%	3.8%	15.2%	100.0%
방제	시설장비지원	12.7%	0.0%	1.6%	4.8%	6.3%	11.1%	63.5%	100.0%
	교육컨설팅지원	18.9%	1.1%	2.1%	5.3%	6.3%	16.8%	49.5%	100.0%
	전체	16.5%	0.6%	1.9%	5.1%	6.3%	14.6%	55.1%	100.0%
수확	시설장비지원	41.3%	0.0%	4.8%	11.1%	7.9%	17.5%	17.5%	100.0%
	교육컨설팅지원	48.4%	0.0%	7.4%	8.4%	10.5%	10.5%	14.7%	100.0%
	전체	45.6%	0.0%	6.3%	9.5%	9.5%	13.3%	15.8%	100.0%
운반	시설장비지원	58.7%	0.0%	4.8%	3.2%	4.8%	11.1%	17.5%	100.0%
	교육컨설팅지원	64.2%	0.0%	7.4%	3.2%	6.3%	5.3%	13.7%	100.0%
	전체	62.0%	0.0%	6.3%	3.2%	5.7%	7.6%	15.2%	100.0%
건조	시설장비지원	42.9%	1.6%	1.6%	6.3%	4.8%	14.3%	28.6%	100.0%
	교육컨설팅지원	34.7%	0.0%	5.3%	10.5%	7.4%	11.6%	30.5%	100.0%
	전체	38.0%	0.6%	3.8%	8.9%	6.3%	12.7%	29.7%	100.0%
출하	시설장비지원	31.7%	0.0%	1.6%	1.6%	7.9%	12.7%	44.4%	100.0%
	교육컨설팅지원	30.5%	0.0%	2.1%	8.4%	8.4%	8.4%	42.1%	100.0%
	전체	31.0%	0.0%	1.9%	5.7%	8.2%	10.1%	43.0%	100.0%

나. 일본의 집락영농과 북해도 농업생산법인 사례

- 일본의 경우 집락영농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집락(우리의 마을단위)의 공동화 현상에 대비하여 집락단위를 중심으로 [집락영농을 조직하여 농업생산과정에서 일부 혹은 전부를 공동화, 통일에 관한 합의하에 실시하는 영농]을 시작하기 시작함.
 - 2014년 현재 138천개의 집락 중에서 14,717개의 집락영농이 조직되어 평균 농기계의 공동소유와 공동이용 비율이 79.5%, 농산물 생산판매가 73.3%, 경작지의 단지화 등 마을내 토지이용조정이 58.2% 등 공동경영을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일본 북해도의 경우 지역에서 [농업생산법인]을 조직하여 법인체내에 개별농가가 가지고 있는 농지, 농기계 등을 법인에 위탁하여 거의 100% 공동작업 및 공동경영을 수행하고 있음.
 - 농업생산법인의 경우 완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있음
- 따라서 들녘경영체의 경우
 - 일본의 집락영농과 같이 마을단위 혹은 우리의 들녘 단위내에 가능한 많은 영세소농도 참여하면서
 - 북해도 농업생산법인과 같이 완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사업운영을 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임.

그림 13 일본 집락영농과 북해도 농업생산법인으로 본 바람직한 들녘경영체의 형태

일본의 집락영농	들녘경영체 형태 (집락영농+ 농업생산법인) 장점만을 채택	일본 북해도 농업생산법인
장점: 마을(들녘) 많은 농가 참여 - 많은 농가 참여로 공동경영체 운영 공동체 의식확대 - 지역사회로의 기여부문 큼 - 공동작업에 의한 영세고령농에 기여부문 큼 - 다양한 사업전개 가능성이 큼		장점: 대규모 개별농가 중심 조직 - 완전한 조직체계로 법인 운영 -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경영합리화 - 농지와 농기계 공동이용 가능성 큼 - 사업의 다양화로 수익증대 - 의사결정구조와 수익배분이 단순
단점: 경영규모(마을범위)가 적음		단점: 영세소농 참여가 없음

1-2 정책상 필요성

- 2009년 출범한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2008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이 도입되었으나,
 - 들녘경영체 육성의 이념과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며, 현재 들녘경영체는 법률에 의한 개념이나 기준이 정의되지 않고, 예산사업의 개념에 머무르고 있어 사업추진의 안정성이 부족한 실정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상 「들녘경영체사업」의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자금용도 등을 보면 일본 시스템과는 전혀 다르고, 우리나라 「농지법」 제 14조~19 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과의 연계성도 부족함.
 - 농림사업시행지침상 들녘경영체 사업대상자(지원자격 및 요건)는 정부지원 RPC, 정부지원 DSC,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단, DSC, 농협, 농업 법인의 경우는 반드시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는 경우에만 들녘경영체로 선정하고, 계약재배만 하고 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들녘경영체 선정 제외하고 있음.
 - 들녘경영체는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 육묘·이앙·재배관리·수확 중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 단 육묘는, 묘종 공급면적이 100ha 이상인 조직
 - 일본사례의 경우는 농지유동화 촉진, 임대차 촉진, 집단적 조직적 농작업 및 공동 농업경영 활성화, 농업경영법인화를 위해 지속 노력 및 제도개선, 법 개정 및 제정
- 들녘경영체의 요건,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점검·제재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소홀하여 이탈되는 경영체 발생가능성이 높아짐
 - 들녘경영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책 부족으로 지속적인 경영체 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성 증대
- 쌀 이외의 부문에서의 조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의 급속한 저하, 이상기온에 의한 양념채소류의 생산량의 불안정성으로 가격진폭의 격차 커서, 소비자의 가계부담 증가와 농가의 소득저하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품목특성에 맞는 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해 곡물자급률의 향상과 양념 채소류의 안정생산을 위해 이들 공동경영체 육성이 필요하고 이들의 공동경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함.

2. 들녘경영체 개념정의와 단계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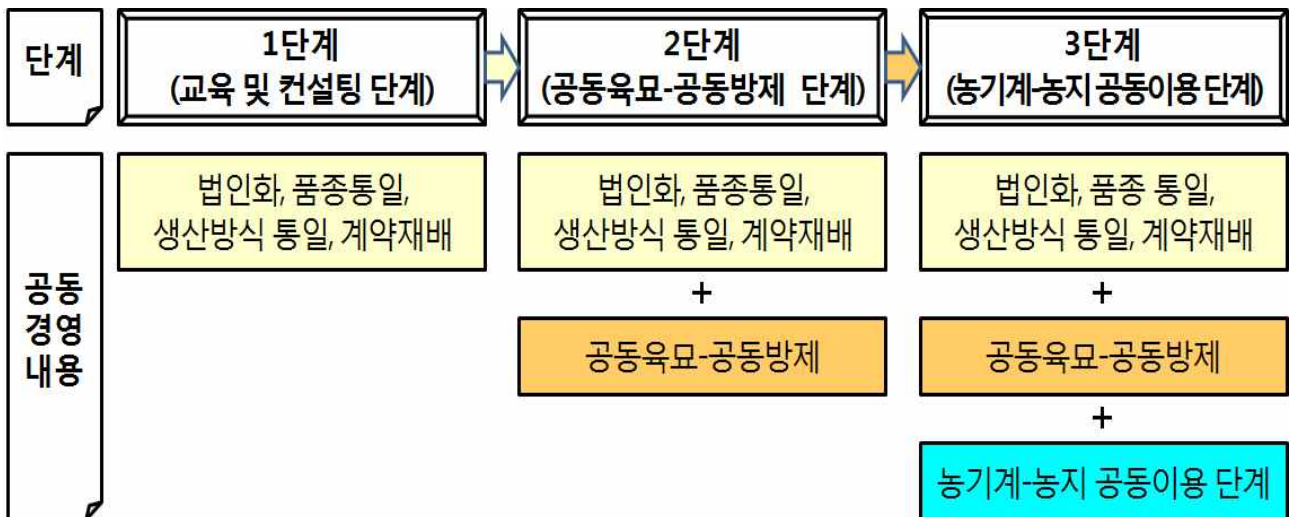
2-1 들녘경영체 개념정의

- 들녘경영체 개념정리→법제화를 위해 중요→법제화와 연계하여 개념정의
- 들녘경영체 개념정리시 고려점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들녘경영체 개념)
 - 다른 품목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해야 하는가?(공동경영체 개념)
 - 장기적으로 채소와 과수의 경우 주산지를 중심으로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공동경영체]로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 개념정리 요건
 - (지역범위) 특정 행정리내 농업인
 - (목적) 비용절감,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강화
 - (면적기준) 일정 규모(50ha, 시행지침으로 규정) 이상의 농지 획정
 - (사업내용) 당해 농지 내에서 품종통일, 공동육묘, 공동방제, 농기계의 효율적 공동이용, 농지의 공동이용에 의한 농지이용증진, 기타 공동농업 경영활동
 - (규약 및 계획서) 공동이행 규약사와 경영계획서를 작성
 - (대상) 효율적으로 공동경영활동을 하는 농업인 조직체로 정부가 인정한 조직체
-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 개념정리
 - 특정 행정리내 농업인을 중심으로 비용절감, 품질향상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50ha) 이상의 농지를 획정하고, 당해 농지 내에서 품종통일, 공동육묘, 공동방제, 농기계의 공동이용, 농지의 이용증진, 기타 공동 농업 경영활동 등 공동이행 규약서와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공동경영활동을 하는 농업인 조직체로 정부가 인정한 농업경영체

2-2 들녘경영체 단계규정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들녘경영체를 다음과 같이 단계를 구분하여 규정 함.
- 1단계 규정
 - 특정 행정리내 농업인을 중심으로 법단체를 구성하여 비용절감, 품질향상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50ha) 이상의 농지를 확정하고, 당해 농지 내에서 품종통일을 통일하여 RPC와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육묘, 방제, 농기계 등 공동 농업경영활동 등 공동이행 규약서와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공동경영활동을 하는 농업인 조직체로 정부가 인정한 농업경영체
- 2단계 규정
 - 1단계이후, 특정 행정리내 농업인을 중심으로 비용절감, 품질향상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50ha) 이상의 농지를 확정하고, 당해 농지 내에서 품종통일, 공동육묘, 공동방제 등 공동이행 규약서와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공동경영활동을 하는 농업인 조직체로 정부가 인정한 농업경영체
- 3단계 규정
 - 1, 2단계이후, 특정 행정리내 농업인을 중심으로 비용절감, 품질향상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50ha) 이상의 농지를 확정하고, 당해 농지 내에서 품종통일, 공동육묘, 공동방제, 농기계의 공동이용, 농지의 이용증진, 기타 공동 농업경영활동 등 공동이행 규약서와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공동경영활동을 하는 농업인 조직체로 정부가 인정한 농업경영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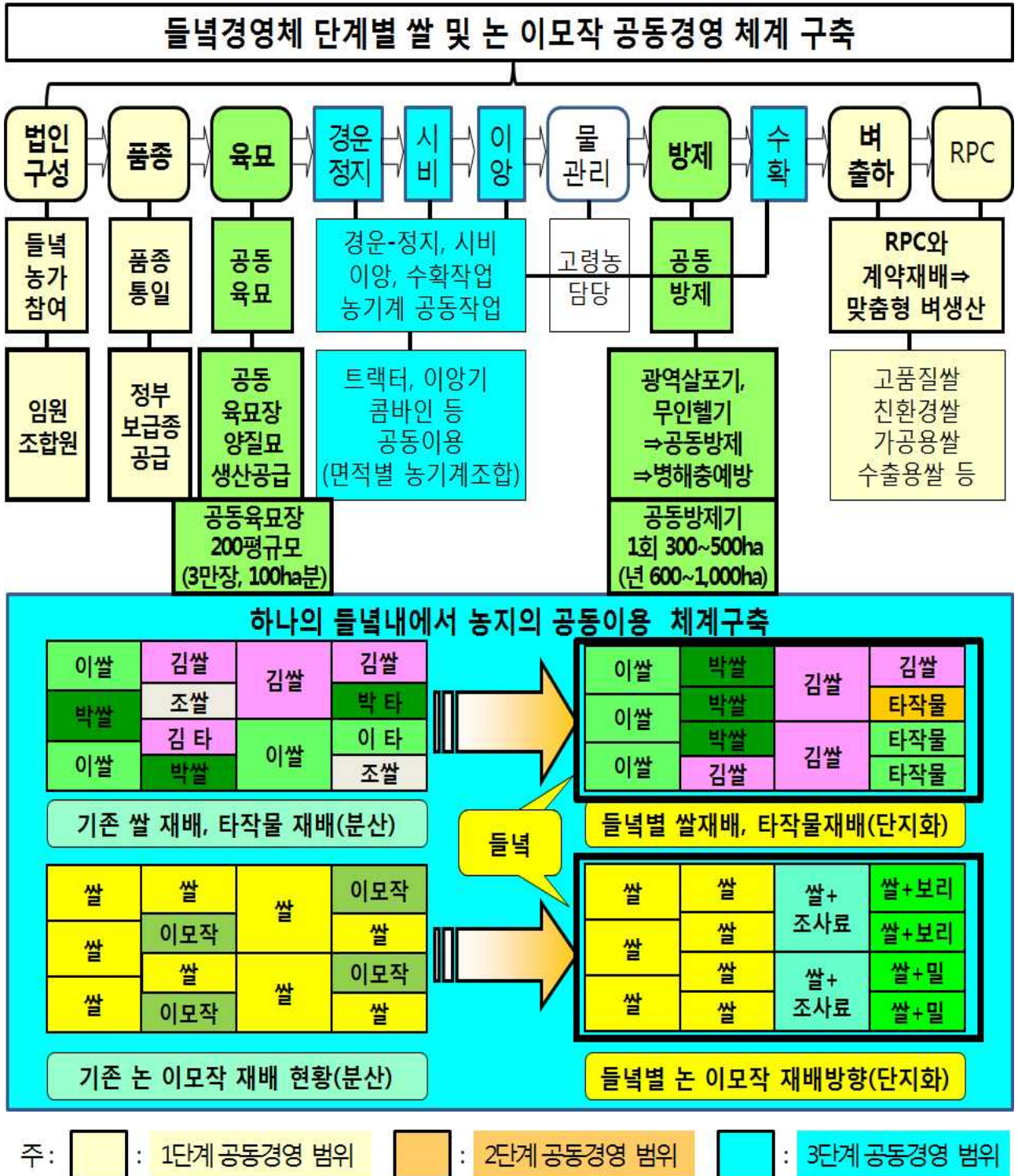
그림 14 들녘경영체 단계별 유형 공동경영내용 요약



주: : 1단계 공동경영 범위 : 2단계 공동경영 범위 : 3단계 공동경영 범위

○ 들녘경영체 단계별 공동경영의 종류와 범위는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15 들녘경영체 단계별 공동경영의 종류와 범위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개발

○ 들녘경영체 2단계이상의 들녘경영체의 농작업별 공동경영 실태와 전개방향은 아래 표와 같음.

표 57 들녘경영체 농작업에서 공동경영의 실태와 미래 전개방향

농작업별	2단계 들녘경영체		3단계 들녘경영체
	현재 상태	방법	방법
전체 벼 재배양식	품종별-특성 별 통일	시군농업기술센터 매뉴얼에 따라	좌동
품종통일	공동(통일)	종자원 우선지원대상 매년 지원대상에 한해 보급종 보급 (1회 선정후 지속화요망)	좌동
육묘	공동(통일)	지원 공동육묘장으로 공 동육묘	좌동
경운-정지	개별	중대형 농기계소유자가 농작업수행	○ 들녘단위 농기계 조직화를 통해 공동작업 실시 - 들녘경영체내 작업료 (농기계 은행사업) - 공동육묘장 작업과 연계하 여 공동작업 모색
이앙	개별	중대형 농기계소유자가 농작업수행	
시비	개별	중대형 농기계소유자가 농작업수행	
방제	공동(통일)	광역살포기, 무인헬기에 의해 공동방제	좌동
제초	개별	논두렁제초 : 개인 논 제초 : 개인	
물관리	개별	개인	
수확	개별	중대형 농기계소유자가 농작업수행	○ 들녘단위 농기계 조직화를 통해 공동작업 - 들녘경영체내 작업료 (농기계은행사업) - 통합건조장과 연계하여 공 동작업 모색
운반	개별	중대형 농기계소유자가 농작업수행	
건조	공동(80%) 개별(20%)	산물수매시 공동 건조기 소유자가 농작업 수행	
출하	공동	경영체에서 RPC와 계약 재배	○ 좌동 - 계약비율과 출하비율 비교
논 이용	개별	소유, 임차자에 의해 개별경영	○ 들녘단위 농지이용계획 수 립을 통해 경영체 협의를 통해 농지의 공동이용분배 * 일본 [농지중간관리기구]를 중심 으로 농지소유와 이용권 분리 * 북해도 농업생산법인 사례

2-3 일본의 집락영농 및 북해도 농업생산법인 공동경영 사례

가. 일본 집락영농 소개

(1) 집락영농 개요

- 집락(集落) 정의 : 2005년 일본 농림업센서스
 - 자연발생적인 지역사회이며, 家와 家가 지연적, 혈연적으로 결부되어 각종의 집단과 사회관계를 형성하여온 사회생활의 기초적인 단위
 - 일부 市町村에서 농업상 형성되어온 지역사회마다를 [농업집락]이라 칭함
 - 농업집락수 : 2005년 138,655개(2005년 일본 농림업센서스 수치)
- 1989년 일본농업백서에 집락영농(마을단위영농) 마을단위를 조직하여 농업의 유지발전을 목적으로 시작
 - 집락영농 : [마을을 단위로 농업생산과정에서 일부 혹은 전부를 공동화, 통일화에 관한 합의하에 실시되는 영농] 정의
- 집락영농은 아래 내용중 몇 개 정도를 행하고 있는 집락영농
 - ① 집락에서 농업용 기계를 공동소유하고, 집락마다 종합적인 영농계획서 등을 기초로 집락영농에 참가하는 농가가 공동으로 이용한다.
 - ② 집락에서 농업용 기계를 공동소유하고, 집락영농에 참가하는 농가로부터 기간작업 수탁을 수탁반은 오페레이터 조직 등을 이용한다.
 - ③ 집락의 농지전체를 하나의 농장으로 보고, 집락내의 영농을 일괄하여 관리 운영한다.
 - ④ 지역의 의욕있는 담당자에 농용지의 집적, 농작업의 위탁 등을 진행하면서 집락마다의 정리된 영농계획서 등에 의해 토지이용과 영농을 행한다
 - ⑤ 집락영농에 참가하는 각 농가의 出役に 의해 공동으로 농작업을 행한다.
 - ⑥ 재배농지의 단지화 등 집락내 토지이용조정을 행한다.
- 집락내 영농을 일괄관리, 운영하는 형태의 집락영농
 - 집락영농의 15%정도임

(2) 집락영농 조직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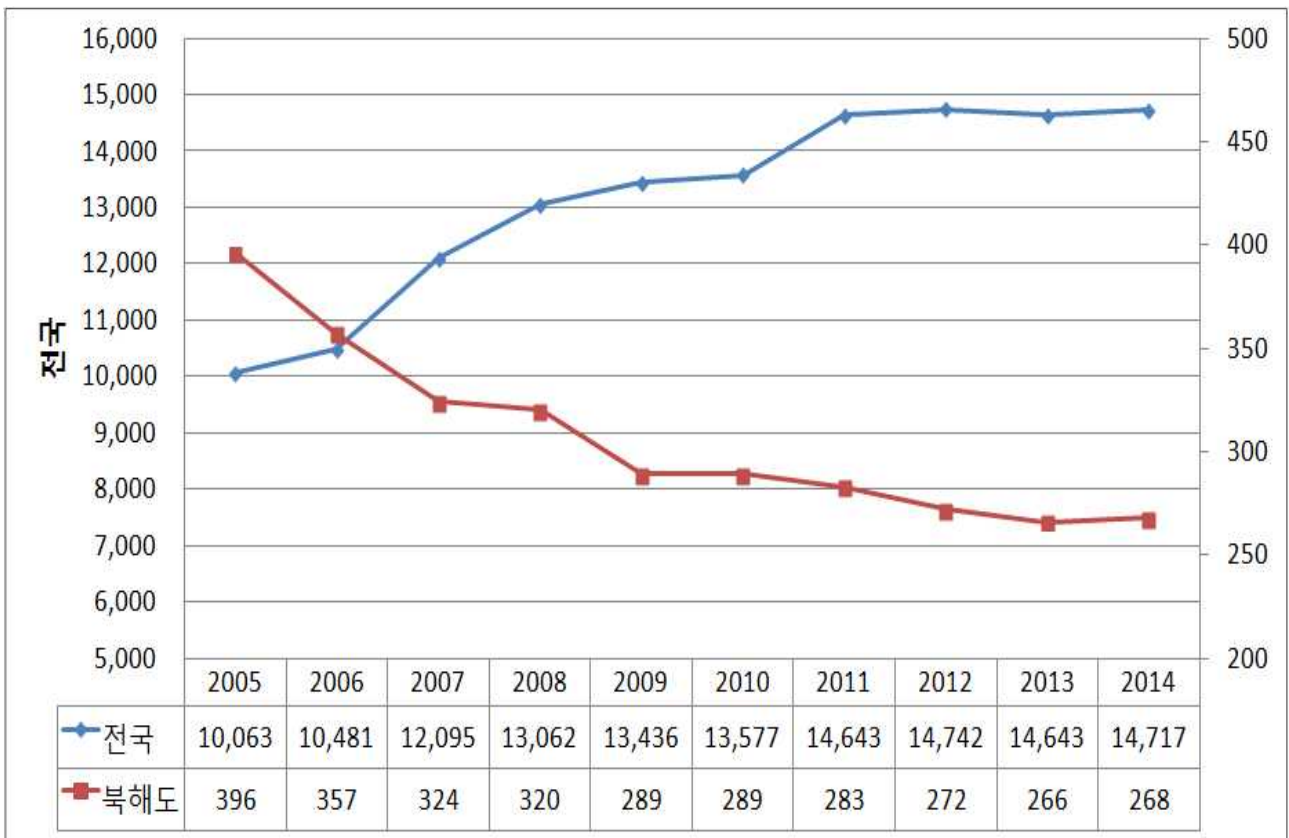
- 2000년 농업센서스부터 집락영농조직과약 시작
 - 조직수 : 2000년(9,961개)→05년(10,063개)→10년(13,577)→2014년(14,717개)
 - 법인수비율 : '05년(646개, 6.4%), 10년(2,038개, 15.0%),
14년(3,255개, 22.1%)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개발

○ 2014년 집락영농별 마을수

- 14,717개 집락영농의 집락수(28,895개) : 1개 집락영농당 평균 2개 집락
 - * 1개마을(74.4%), 2개 집락(10.3%), 3개마을 이상(15.4%)
 - * 총 참여농가수 : 530,163호(1개 집락영농당 평균 36호)
- 2014년 집락영농유형별 1개소당 평균 면적 : 33.5ha
 - * 법인집락영농 1개소당 면적(34.6ha), 비법인집락영농 1개소당 면적(32ha)
 - * 20ha이상 집락영농비율 : 52.1%

그림 16 전국 및 북해도 집락영농수의 변화추이 비교



(3) 집락영농의 구체적 활동내용

○ 조직화 과정과 내용

- ① 마을주민의 합의하에 영농조합 조직
- ② 마을내 농가는 영농조합에 노동력, 농지와 농기계 임대
- ③ 영농조합에서 노동력, 농지, 농기계 공동이용후 투입대비 배분

- 사업내용
 - 1차산업(농작업 수위탁, 농업생산)→2, 3차 산업으로 확대(6차산업화)

- 공동사업내용
 - 농기계 공동소유와 공동이용(79.5%),
 - 농산물 생산판매(73.3%),
 - 경작지의 단지화 등 마을내 토지이용조정(58.2%)

(4) 변화내용

- 품목변화 : 쌀, 과소, 채소집락영농→잡곡, 서류, 두류, 맥류 생산 집락영농 증가
- 사업 : 농기계공동이용, 농작업 수위탁→협업경영, 1개 마을 1개 농장형태로 변화

(5) 집락영농의 장단점

- 장점 : 땅을 중심으로 한 경영체 육성
 -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생산비용 절감
 - 여유노동력 이용 : 타 작물, 축산부문으로 투입하여 마을전체 소득증대
 - 2, 3차 산업으로 전환 등 마을단위에서 경영 다각화 도모로 소득증대
- 단점 : 집락영농의 범위가 좁아 효율성 저하
 - 1개 마을단위 [집락영농]에서 집락간 통합으로 복수의 마을이 하나의 집락영농형태로 가는 집락영농수가 증대하고 있음
 - 이유 : 1개 마을단위로는 경지규모가 영세(20~40ha)하여 규모경제-범위경제 실현이 미약

표 58 한국 들녘경영체와 일본의 집락영농 비교요약

구분	한국 들녘경영체	일본 집락영농
시작	2009년부터 지원사업 실시	-2000년부터 통계조사 실시 -’07년산부터 도입되는 [품목횡단적경영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인정농업자이외 경영주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장래 효 율적, 안정적인 농업경영으로 발전하려 는 집락영농조직이 지원대상
목적	쌀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	-집락을 단위로 하여 농업생산과정에서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서 공동화, 통 일화에 관한 합의하에 실시되는 영농
대상	들녘단위(들녘면적 50ha이상)	-집락단위(우리나라 마을단위)
들녘, 집락수	들녘수 3,200개(50ha이상들녘) -우리마을수 (약 45,000개) -행정리 (36,600개)	138,655개
조직화 수	158개 농가법인체 96개(60.8%) 기타법인체 62개(39.2%)	14,717개 -법 인 3,255개, 22.1% -비법인 11,462개, 77.9%
평균면적	202ha 농가법인체 170ha 기타법인체 253ha	○평균 33.5ha - 법인집락영농 34.6ha, -비법인집락영농 32.0ha ○20ha이상 집락영농비율 : 52.1% ○1개 집락영농당 평균 2개집락
주요 사업내용	품종통일, 공동육묘, 공동방제 공동출하	농기계공동소유와 이용 농산물 생산판매, 경작지 단지화 등 마 을내 토지이용조정 등
벤치마킹자료		공동경영방안

나. 일본 북해도 농업생산법인 소개

(1) 일본 北海道 南幌町(난포로쵸)지역의 농업생산법인 소개

-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 JA北海道中央會가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해 농업 생산법인 추진 계획 실시(주 : JA는 우리의 지역농협을 의미)
 - JA北海道中央會가 [농업법인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의 농업법인을 지원하고 있음.
- 2001년부터 농업생산법인(대부분 유한회사) 설립시작
 - 2001년 이후 11개 법인 설립
- 이들 법인의 특징 : 법인에 속한 농가의 경우 개별경영은 완전히 철폐하고 하나의 경영체로서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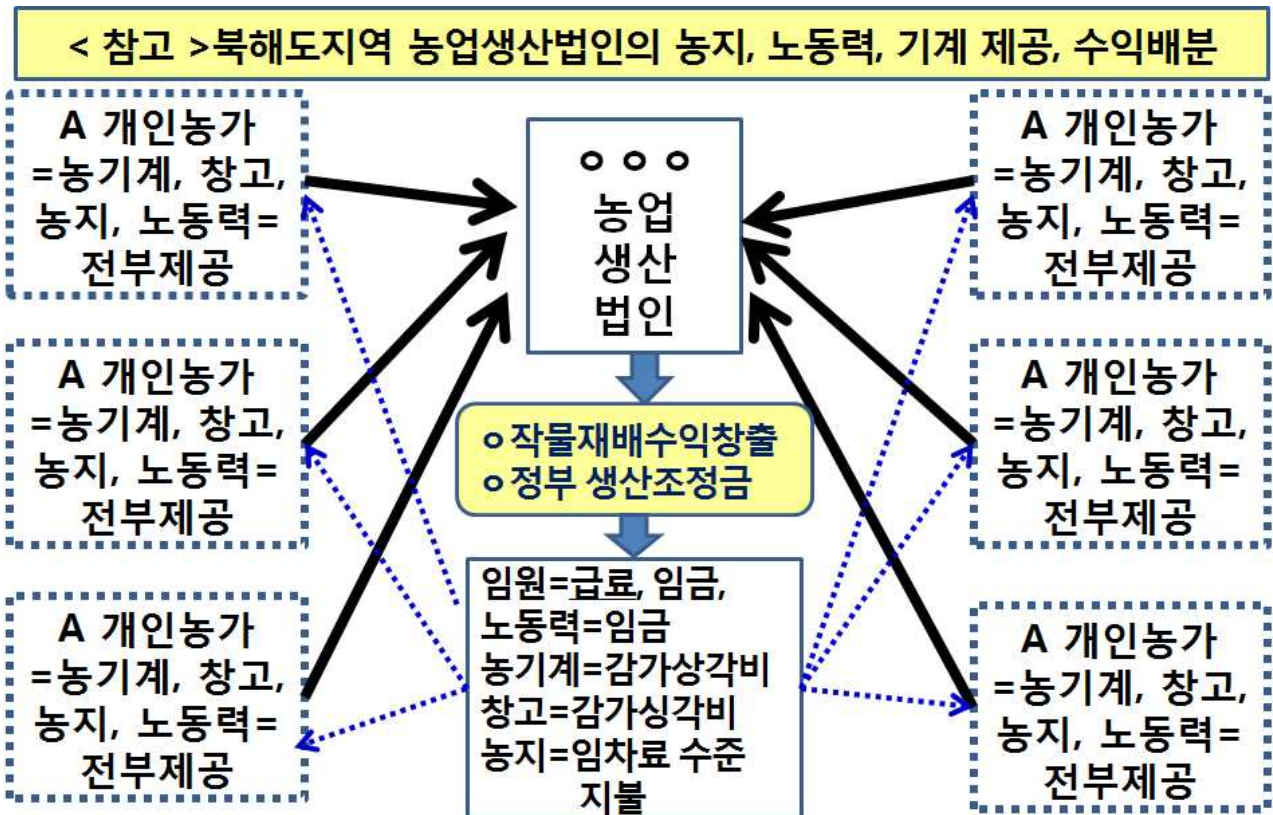
표 59 南幌町(난포로쵸) 11개 농업생산법인의 참여농가수 및 재배작물 현황

법인명칭	설립 연도	구성 농가수	종업원 수	경영 면적(ha)	재배 작물과 재배면적(ha)						
					쌀 이외는 생산조정면적						
프로아	2001	4	9	112	쌀53	밀34	콩12	팥7	사탕무5	기타1	
호나미	2002	12	30	237	쌀176	밀31	콩4	사탕무7	대과3	팥1	기타15
라이프	2004	5	15	135	쌀54	밀46	콩13	양배추10	사탕무9	기타3	
히비키	2003	5	7	127	쌀53	밀31	콩14	사탕무9	양배추7	대과6	기타7
하루	2004	3	9	63	쌀27	밀13	콩13	대과7	사탕무2	호박1	
흙무	2004	4	8	147	쌀58	밀38	콩19	양배추8	대과4	사탕무4	기타16
NOAH	2004	5	13	127	쌀54	밀40	콩9	사탕무9	옥수수7	대과4	기타6
가제쿠라	2004	2	7	69	쌀40	밀9	사탕무6	옥수수6	양배추5	기타3	
야가쿠	2006	2	7	55	쌀27	밀12	콩7	옥수수4	호박4	기타1	
에이무	2006	7	12	181	쌀82	밀52	콩14	사탕무8	옥수수7	대과6	기타11
아시루	2007	4	7	119	쌀31	밀29	콩26	사탕무21	양배추5	감자3	기타4
합계		53	124	1,372	655	335	131				
평균		4.8	11.3	124.7	59.5	30.5	13.1				

(2) 南幌町지역내 농업생산법인(유한회사)의 경영상의 특징

- 개인경영은 완전히 폐지하고, 법인으로 하나 경영체로서 운영하고 있음
 - 농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 농기계, 창고 전부를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 * 법인체에 이용권 설정후 노동력, 농기계, 농지 이용 지급방법
 - 노동력(급료와 임금지급), 농기계와 창고(감가상각비로 지급),
 - 농지(임차료 지급, 19,0000円/10a)
- 농업생산법인 수익배분 방법 :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
 - * 법인을 만들기 전에 확실한 기준과 배분 수준을 결정하여 법인을 구성
 - * 기준 설정시 다양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후에 농가간 합의하여 농가별 결정
 - * 기본적인 기준 : 법인 참가전의 참가농가별 연간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중심으로 하여 결정

그림 17 일본 북해도지역 농업생산법인의 경영형태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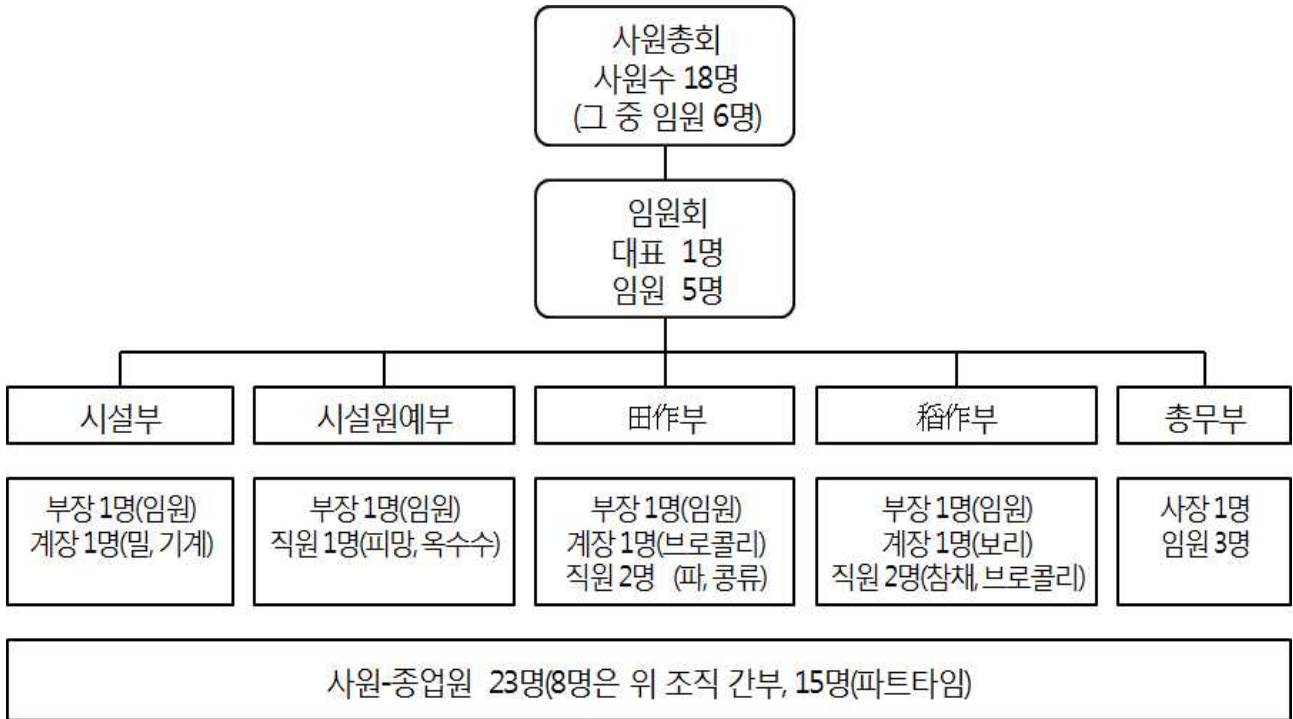


(3) 유한회사 호나미(ほなみ) 사례

- 법인설립연도 : 2002년 2월
- 자본금 : 995만円(약 1억원)
- 구성원 : 16호로 출발하여 현재 18명으로 확대됨
 - 18명으로 구성된 직원중에서 6명이 임원을 맡고, 부서별 업무분담 실시
 - 파트타임 12명(2002년)에서 30명(2014년)으로 증가됨
- 경영면적
 - 2002년 창립당시 164ha로 시작하여 2014년에 237ha로 73ha 확대됨
 - 2004년(3ha구입, Park Golf장 설치), 2008년(3.5ha구입), 2009년(22.6h 구입)
- 2014년 경영면적 : 총 237ha
 - 쌀 176ha, 밀 31ha, 콩 4ha, 사탕무 7ha, 대파 3ha, 팔 1ha, 기타 15ha
- 회사사훈
 - 創意工夫努力을 한다
 - 調和와 飛躍을 도모한다
 - 共存共榮을 도모한다.
- 설립과정
 - 구성원의 경영형태가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복합경영으로 쌀가격 하락으로 개인소득의 저하가 현저하게 되고, 개인경영으로는 미래 경영유지와 집락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움
 - 1997년 농가 17호로 설립된 [南幌町호나미 利用組合]으로 벼 건조조제시설을 운영하던 중, 구성원 모두 고령화되어 가기 때문에 법인화하는 것이 후계자가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00년 법인화를 위한 [검토 위원회]를 설치, 법인화 검토 시작
 - 南幌농협에서 선진지시찰, 법인의 사업계획서작성, 구성원·가족에 대한 면담, 설명회 실시, 보수의 분배 등에 관한 규칙 제안, 정관의 작성·등기 등의 사무 수속을 지원
 - 2002년 2월 [有限會社 ほなみ]법인 시작
- 전체 총 매출액 : 4억円(약 40억원)
 - 쌀이 2억円(50%), 기타작물(1억円), 작업료(2천만円), 보조금(8천만엔, 20%)
- 법인의 특징
 - 2004년에 사회보험에 가입시작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개발

- 동절기 수입원 확보와 소비자교류를 위해 [Park Golf]장을 개설함과 동시에 이용객에게 쌀, 콩, 대파를 판매하고 법인 구성원 중에서 고령인이 담당 시작
- [Park Golf]장 연간 매출액 : 8,000만원~1억원
- 조직체계 : 총무부, 미맥부, 전작부, 시설부, 기계부 등 5개 부서를 구성하여 부장과 차장을 배치하여 조직운영



- 조직간의 경쟁관계를 유지시켜 이권에 의한 소득감소시 패널티 부여
- 구성원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경영안정화를 위해 차세대를 담당할 20, 30대 육성을 준비중
- 후계자 육성·확보, 신규종업원을 위해 농업개량보급소(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재배기술강습회, 시험전시포 등의 설치 등에 의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 일정면적의 고령농가의 벼와 밀에서 작업수탁(방제작업, 경운·정지작업), 벼 현미도정 등을 하고 있음.
- 농작업의 집중도를 낮추기 위해서 경운·정지와 이앙, 수확시기를 분산시킴
 - * 벼 품종을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배분
 - * 포트이앙기와 일반이앙기로 작업체계 구축

○ 법인의 어려운 점

- 법인구성원이 다른 법인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늦어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소통을 위해 체제를 정비함

(4) 들녘경영체 공동경영을 위한 시사점

○ 법인 출발점의 공통점

- 기존 개별농가가 바로 법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개별경영체가 모여 [다양한 조직활동]을 통해 모인 개별농가들이 모여 법인체를 구성하였음.
- 개별경영의 단점(병환발생시 경영유지의 어려움, 다양한 품목재배로 낮은 생산성 등)을 보완
- 품목별로 다양한 기술노하우를 갖는 임원들이 모여 다양한 작물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수익이 증대
- 고수익 작물 도입이 가능

○ 들녘경영체에서 교훈

- 철저한 경영마인드로 법인 운영
- 다양한 사업전개로 경영의 안정성 도모
- 미래 고령화대비하여 후계자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차세대 담당자 육성계획
- 농지, 농기계, 창고 등 시설장비들을 법인 앞으로 임대하여 공동이용
- 농기계, 시설 등에 투자는 항상 고려해야 함.

표 60 일본 북해도 농업생산법인의 수익·비용구조와 법인참여 농가의 수입구조

법인 수익·비용 구조		법인참여 개별농가 수입구조	비고
법인 수익구조	비용구조		
- 쌀 판매금액	-농지 임차료 →	- 농지 임대료	법인에 임차준 농지, 농기계, 창고에 대한 임대료
- 기타작물 판매금액	-농기계 임차료 →	- 농기계 임대료	
- 보조금 ^{주1)}	-창고 임차료 →	- 창고 임대료	
	-직원 급료 →	- 급료	농협 상환자금으로 이용
	-인건비 →	- 인건비	일한 만큼 받음
	-농자재비용 ^{주2)}		
	-연금 및 보험		
합계	합계		
이익금=(수익합계-비용합계)			

주1) 보조금 = 논·밭경영안정대책(고정직불금), 산지만들기교부금, 농지환경보전대책금, 담당자경영혁신모델사업 등 다양

주2) 농자재비용 = 종자비+비료비+농약비+농기계수선비+영농광열비+복지후생비+여비·교통비, 소모품 및 잡비 등)

표 61 일본 법인형태별 비교자료

구분	농사조합법인	회사법인			
		주식회사 (비공개회사)	합동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근거법	농업협동 조합법	회사법	회사법	회사법	회사법
구성원	농업자 3명이상	1명이상 (제한없음)	1명이상 (제한없음)	2명이상 (제한없음)	2명이상 (제한없음)
자본금최저액	규정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책임자 책임범위	유한책임 (출자금액내)	유한책임 (출자금액내)	유한책임 (출자금액내)	무한책임 (책무금액)	유한책임과 무한책임
의결권	1인 1표	1주 1표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인1표원칙	1인 1표	1인 1표
출자자	조합원	주주	사원	사원	사원
임원	이사 1명이상 감사는 임의	대표1명이상 감사는 임의	대표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	전사원이 업무집행사원	무한책임자가 업무집행사원
임원 임기	3년	원칙 2년(최장 10년)	무기한	무기한	무기한
정관인정	불요	전자:약52천엔 통상:약92천엔	불요	불요	불요
등록면서세	비과세	150천엔~	60천엔~	60천엔~	60천엔~
법인사업세	축산이외 비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법인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결산공고	불요	필요	불요	불요	불요
비고	- 사업 내용에 제한이 있음 - 원외종사자는 2/3을 넘으면 안됨	주식의 전부에 양도기한이 있 음	1인1표제로 회사 결정사항 은 전사원의 동의를 필요	무 한 책임으로 주의가 필요	무 한 책임으로 주의가 필요

3. 단계별 들녘경영체 자격요건, 구비내용 및 지원내용

3-1 들녘경영체 단계별 자격요건

가. 기존 들녘경영체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 기존 들녘경영체 단계는 구분 없이 시설장비 지원경영체와 운영비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경영체로 구분되어짐.
- 들녘경영체 구성원
 - 일반참여농가와 임원진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 참여농가는 지역 들녘에 있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참여희망농가로
 - 대부분 50~30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62 들녘경영체 운영상의 공동경영의 실태와 미래 전개방향

구분	기존 들녘경영체		2, 3단계 들녘경영체
	현재 상태	방법	추진방향
경영체 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RPC, 농협	-대부분 법인체 -전남지역(농업회사법인) 제외시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차이점 분석을 통해 들녘경영 체 특성별 적정 법인 선택
구성원	주체	등기 이사 감사	출자증서 혹은 주주에 5~10명으로 구성
	참여 농가	등기부등본에 25명내외 확대 * 고령농가 참여 기피의 어 려움 존재	50~300명 참여 운영비, 교육, 보급종, 공동육묘, 공동방제 대상
조직체계	미흡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이사, 감사, 총무, 부장 등 구성	등기부등본에 25명내외 확대 * 고령농가 참여 기피의 어 려움 존재
영농일기장	기록미흡	보전미흡	좌동(들녘내 들녘경영체 참여 희망농가 전원 참여)
경영일지	기록미흡	영수증 보관 대부분 세무사에 의뢰	들녘경영체 특성에 따라 구체 적인 조직체계 마련
회의일지	기록미흡	단순 기록	-경영기록장과 함께 기록장
수익배분		○수익금은 대부분 초기단계 에서는 신규사업투자	-경영체에서 정리 -세무사에서 확인
지역, 국가 쌀산업정책과 연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등 정책과 연 계하여 추진 ○가공용쌀, 수출용쌀 단지사업 전개		-회의일지 기록장 보관
			○참여임원진 공동분배 ○일정기금 마련으로 자조금적립
			○쌀산업을 비롯한 식량산업의 정책파트너로서 역할수행 ○곡물자급률 제고 중심축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개발

○ 들녘경영체 임원진, 조합원, 주주

- (현재) 임원진의 경우 대부분 등기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5~15명 등으로 구성
- (문제점) 일반농가의 경우 법인의 조합원이나 주주 참여에 자금투자로 인해 피해우려로 기피현상
- (방향) 2단계 들녘경영체 이상에서는 가능한 들녘경영체 법인의 경우 25명 이상의 조합원(영농조합법인)이나 주주(농업회사법인)에 참여유도하여 많은 농가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경영체 조직체계

- (현재) 대부분이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이사, 감사, 총무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보다 구체적인 부서의 조직은 대부분의 경영체에 없는 실정임
- (방향) 들녘경영체 유형별 특성별로 부서를 조직해 담당부장으로 책임있는 경영이 필요

○ 영농 및 경영기록, 회의일지 등의 기록 상태

- (현재) 매우 미흡할 실정이며, 보전상태도 불량한 상태임
- (방향) 경영일지 등을 보급하여 철저한 영농일지, 경영일지를 기록하게 하고 철저하게 5년간 보관상태 유지

○ 경영체 수익배분

- (현재) 운영비와 교육컨설팅비 지원 들녘경영체의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시설장비지원 들녘경영체의 경우는 시설장비의 감가상각 등을 대비하거나 다른 사업추진을 위해 참여자에게 배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방향)
 - ① 이익금 모두를 미래 사업 확장을 위해 내부 적립하는 방안
 - ② 일정부분을 적립하고 나머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지원 혹은 참여농가에 배분하는 방안

○ 정부의 정책사업과 연계 내용

- (현재) 들녘경영체별로 정부가 추진해온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등에 참여를 통하여 가공용쌀, 수출용쌀 단지사업을 추진하거나, 논콩 재배 등을 통하여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들녘경영체가 많았음.
- (방향) 정부의 정책사업과 연계 식량작물 확대에 의한 자급률 증대와 채소작물 재배면적의 조절을 통한 수급조절에 동참

나. 들녘경영체 육성단계별 규정내용

- 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식량사업, 채소류, 과일류 등의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들녘경영체 육성단계별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
- 들녘경영체 개념
 - 집단화된 농지 50ha을 대상으로 공동영농 조직을 구성하여 육묘에서 수확까지 생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 운영주체 자격
 - 들녘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RPC, 농협
 - * 단, 농업법인, 농협은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는 경우에만 들녘경영체로 선정
 - 최근 조직되고 있는 협동조합 등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성원의 범위
 - 들녘내 희망농가 모두를 참여시키는 것을 기본
 - 영세소농의 참여비율을 높이되, 단계별 1ha이하 농가의 참여비율을 다음 표와 같음.
 - 조합원 혹은 주주의 경우는 단계별 차별화가 필요
 - * 농업법인의 경우 1단계는 10명이상, 2, 3단계에서는 25명이상으로 하는 것이 차후 들녘경영체 수입배분에 중요
- 들녘경영체 경영면적
 - 1단계 : 사업참여의 수월성을 위해 50ha이상으로 하고,
 - 2단계에서는 100ha이상, 3단계에서는 150ha이상으로 하는 것이 많은 농가에 효과가 배분되고, 투자대비 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임.
- 단계별 공동경영 공동작업내용
 - 1단계 : 공동계획서 작성, 품종통일, RPC 혹은 가공업체와 계약재배 및 공동출하
 - 2단계 : 1단계+공동육묘+공동방제
 - 3단계 : 1단계+공동육묘+공동방제+농기계 공동이용+농지 공동이용 등 공동사업추진
- 계약재배 비율과 이행율은 다음 표와 같음.
 - 특히 계약재배 이행율은 가능한 높게 책정해야 함.
- 2단계, 3단계 공동육묘, 공동방제 비율은 다음 표 참조
 -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 소유여부와 능력에 따라 기준 설정
- 농기계 공동이용 비율의 경우
 - 들녘경영체내 농기계 소유실태와 소유기간에 따라 적정 설정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개발

○ 농지 공동이용의 경우

- 들녘내 농지의 소유실태와 품목별 이용실태, 지역 특화품목 등을 고려하여 들녘내 참여농가의 희망여부, 공동이용이후 수익분배방법 등으로 고려하여 적정 설정

표 63 들녘경영체 육성단계별 규정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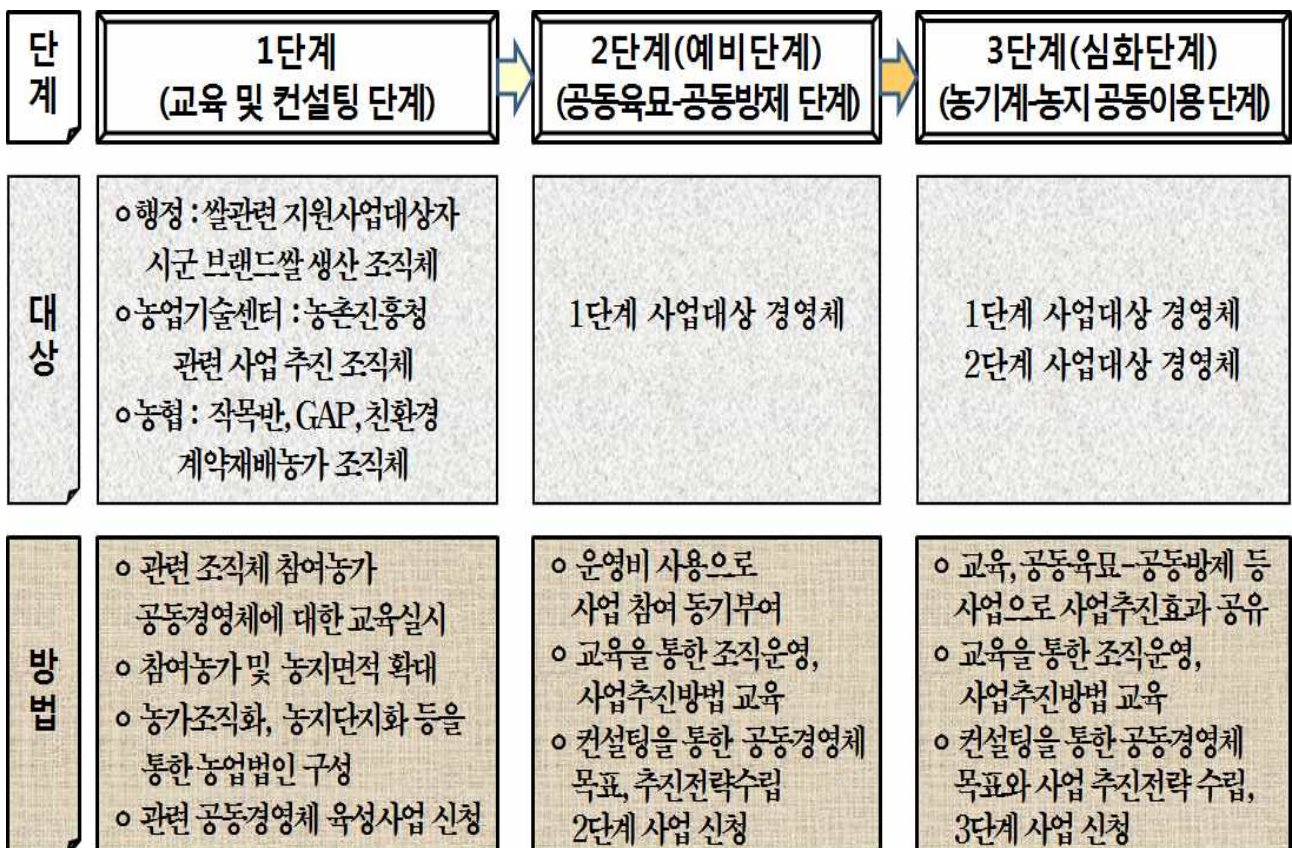
단 계 요 건	1단계	2단계	3단계
운영주체 자격	농업법인, 정부지원RPC 및 DSC, 농협, 협동조합	농업법인, 정부지원RPC 및 DSC, 농협, 협동조합	농업법인, 정부지원RPC 및 DSC, 농협, 협동조합
구성원 범위	(조합원 혹은 주주10명이상) 확정농지내 1ha미만농가의 40%이상	(조합원 혹은 주주25명이상) 확정농지내 1ha미만농가의 50%이상	(조합원 혹은 주주25명이상) 확정농지내 1ha미만농가의 50%이상
경작면적	(논+밭) 50ha 이상	(논+밭) 100ha 이상	(논+밭) 150ha 이상
농지분포	집단화된 농지 (1개 단지가 10ha이상)	집단화된 농지 (1개 단지가 10ha이상)	집단화된 농지 (1개 단지가 10ha이상)
공동작업 종류	공동계획이행 규약 작성 품종통일(2개 이하) RPC와 계약재배 공동출하 - - -	공동계획이행 규약 작성 품종통일(2개 이하) RPC와 계약재배 공동출하 공동육묘, 공동방제 - -	공동계획이행 규약 작성 품종통일(2개 이하) RPC와 계약재배 공동출하 공동육묘, 공동방제 농기계 공동이용 농지 공동이용
계약재배 비율	참여농가면적 70%이상	참여농가면적 80%이상	참여농가면적 90%이상
계약재배 이행율	계약재배량의 70%이상	계약재배량의 80%이상	계약재배량의 90%이상
공동육묘 비율 (육묘장 면적 고려)		참여 논면적 30%이상	참여 논면적 50%이상
공동방제비율 (공동방제기 소유여부 고려)		참여 논면적 80%이상	참여 논면적 90%이상
농기계 공동이용비율	-	-	기종별 50% 이상
농지 공동이용비율	-	-	농지의 50% 이상
비용배분	농지면적별 배분	농지면적별 배분	농지면적별 배분
수익배분	법인적립 (용도 : 2단계준비금)	법인적립 (용도 : 3단계준비금)	적립 및 배분 (적립 : 사업확대 목적) (기준 : 출자액 혹은 농지면적)
조직화 형태 (지배구조, 분배구조)	법인의 조직형태에 따름	법인의 조직형태에 따름	법인의 조직형태에 따름

3-2 단계별 들녘경영체 자격·구비내용 확인방법

가. 단계별 진입대상과 방법

- 들녘경영체 혹은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의 성패는 1단계 들녘경영체 육성에 달려있음.
 - 1단계 들녘경영체 참여를 통하여 2단계, 3단계로 공동경영이 이루어지고,
 - 1단계 참여농가와 임원진들이 들녘경영체나 공동경영체 참여를 통한 운영비 지원,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참여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기 때문
- 1단계 사업 대상자들은 행정,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에서 기존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의 조직경영체를 대상을 확대 개편하여 법인화하여 신청
 - 전북의 경우,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에서 시군 브랜드쌀 육성을 위해 시군별로 1,000ha이상의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2단계 사업참여 대상 경영체는 1단계에서 컨설팅을 받은 경영체에 한해서 선정하고
 - 3단계 사업참여 대상 경영체는 1단계 혹은 2단계 참여 경영체에 한해서 선정
- 각 단계별 사업참여 방법은 제5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그림 18 들녘경영체 단계별 진입대상과 방법



나. 2, 3단계 진입을 위한 구비내용 및 확인방법

- 1단계 들녘경영체가 2, 3단계 진입을 위한 구비내용과 확인방법
 - 구비내용과 확인방법은 들녘경영체 선정평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
 - * 들녘경영체 선정단계에서 선정평가에 관련된 내용은 제5장 3절에 구체적으로 제시
- 운영주체 자격 확인
 - 농업법인과 RPC, 농협 :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구성원에 대한 확인
 - 조합원, 주주의 경우 :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는 출자증서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주주명부로 확인 가능
 - 일반참여농가의 경우
 - * RPC나 가공업체와의 계약재배 서류나 공동이행 계획서 등에서 확인
 - * 장기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들녘경영체 등록시 경영체 등록서류로 확인가능
- 경영면적 확인
 - RPC나 가공업체와의 계약재배 서류나 공동이행 계획서 등에서 확인
- 농지의 분포상황 확인
 - 계약재배 지번과 지적도로 확인
- 공동이행 규약서 혹은 경영계획서 확인
 - 농업법인의 경우 정관 확인
 - 각 들녘경영체에서 작성한 경영계획서와 공동이행 규약서 확인
- RPC 혹은 가공업체와의 계약재배면적 및 출하실적 확인
 - 계약재배 서류와 출하실적에 따른 지불대장
- 공동육묘와 공동방제 실적 확인
 - 경영일지, 수입일지, 농가별 육묘요구량, 방제비 지불대장 등 확인
- 농기계 공동이용 확인
 - 농기계 공동이용 계획서 및 농작업일지, 수익배분 일지 등 확인
- 농지 공동이용 확인
 - 농지 공동이용계획서 및 농작업일지, 수익 및 비용 기록일지 등 확인
 - 농산물 판매처별 입금대장, 구입처별 지불대상 등
- 수익배분 확인
 - 들녘경영체 전용 통장을 통한 수익배분 및 적립금 확인

표 64 들녘경영체 2단계이후의 자격 및 구비내용

단 계 요 건	2, 3 단계 기준	자격 구부여부 및 확인방법
운영주체 자격	농업법인, 정부지원RPC 및 DSC, 농협, 협동조합	법인 등기부등본
구성원 범위	조합원 혹은 주주25명이상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영농조합법인(출자증서), 농업회사법인(주주명부)
	확정농지내 1ha미만농가의 67%이상	농가 경영체 등록상황으로 확인
경영면적	(논+밭) 100ha이상	법인 등기부등본, RPC와 계약재배 서류
경지분포	집단화된 농지 (1구획이 10ha이상) 확정농지 70%이상참가	계약재배 지번과 지적도로 확인 계약재배 지번과 지적도로 확인
공동작업 종류 및 실행기준	공동이행 규약서 및 경영계획서 작성	법인정관 및 공동이행 규약서 및 경영계획서
	품종통일 (2개 이하)	종자원 보급종 요구 및 수령 서류
	RPC와 계약재배 (참여농가 농지 80%이상)	RPC와 계약재배 계획서서류
	공동출하실적 (계약면적의 80%이상)	RPC 비 출하실적 서류, 지불대장 등
	공동육묘 (참여 논면적 30%이상)	경영일지, 수입일지, 농가별 육묘면적 등 참조
	공동방제 (참여 논면적 80%이상)	경영일지, 수입일지 농가별 방제면적 등 참조
	3단계 : 농기계 공동이용 (확정농지의 50%이상)	공동이용 계획서, 농작업일지 및 근거자료 수익배분 일지
	3단계 : 농지 공동이용 (확정농지의 50%이상)	공동이용 계획서, 농작업 일지 및 근거자료 수익배분 일지
비용배분	농지면적별 배분	농협 및 판매처의 구입서류 세무서 재무제표 참조
수익배분	법인적립 (용도 : 3단계준비금)	들녘경영체 통장 적립금 현황 확인 경영계획서 확인
지배 및, 분배구조	법인 조직형태별로 확인	법인형태별로 차이 검토

3-3 단계별 들녘경영체 정부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가. 2009~'10년 들녘경영체 지원방법

- 2009년부터 '10년까지는 들녘경영체 현장평가를 통하여 점수를 책정하고
 - 신청 들녘경영체의 현장평가후 평가 점수차에 의해 지원액을 차별화함
- 평가기준
 - 면적별 차등화 : 150ha를 기준으로 150ha이상과 150ha 미만 차등지원
 - 평가 등급별 차등화 : 평가를 실시하여 점수별로 3개 등급(A, B, C)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 면적과 평가등급을 조합하여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액 차별화

표 65 2009~'10년 들녘경영체 평가결과에 의한 면적별·등급별 지원단가 기준

구 분		평가등급별(백만원)		
		A등급	B등급	C등급
면적별	150ha이상	300	270	240
	150hami만	240	220	200

나. 육성단계별 들녘경영체 지원방식

(1) 1단계 들녘경영체

-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및 운영비 지원 : 교육과 컨설팅은 세트화하여 지원
 - 논 혹은 밭 비옥도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발굴
- 지원액 : 10~30백만원 지원
 - 면적당 차별화 : 100hami만(10백만원), 100~200hami만(20백만), 200ha이상(30백만)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연차적으로 운영비 지원비율 확대 : 1년차(30%), 2년차(40%), 3년차(50%)
- 교육 및 컨설팅내용 : 품질향상, 공동경영방안, 조직체 운영방안 등

(2) 2단계 들녘경영체

-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및 운영비 지원 : 1단계와 동일, 최대 2년 지원
 - 시설장비 지원 :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 타 품목 공동작업을 위한 시설장비

* 지원액 : 평가후 차별화에 의한 2~3억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내용 : 조직체 운영방법, 공동작업방안, 조직갈등 해소방안, 다른 사업추진가능사업 발굴

(3) 3단계 들녘경영체

- 지원내용

- 시설장비 지원 :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 타 품목 공동작업을 위한 시설장비,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시설장비

* 지원액 : 평가후 차별화에 의한 3~5억 지원

- 컨설팅 내용 : 공동경영방안, 조직갈등 해소방안, 효율적인 판매방안 등

표 66 들녘경영체 단계별 지원내용과 지원방식 요약

단 계 요 건	1단계	2단계	3단계
지원내용	교육·컨설팅 및 운영비 공동토지비옥도사업지원	교육·컨설팅 및 운영비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 타작물 관련 공동시설장비 공동토지비옥도사업지원 경리사무장 지원	교육·컨설팅 및 운영비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 타작물 관련 공동시설장비 공동작업을 위한 공동시설장비 공동토지비옥도사업지원 경리사무장 지원
지원규모(액)	10~30백만원 참여농지단위면적당 지원	10~30백만원 2~3억 지원 참여농지단위면적당 지원 년간 2,000만원 지원	10~30백만원 2~3억지원 3단계 : 3~5억지원 참여농지단위면적당 지원 년간 2,000만원 지원
지원방식(09~10년 평가방식 참조)	면적당 차별적 지원	면적당 차별적 지원 평가후 차별적 지원	면적당 차별적 지원 평가후 차별적 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교육·컨설팅 : 2~3년 지원 교육·컨설팅 : 세트 지원 교육·컨설팅 주체 교육	교육·컨설팅 : 1~2년 지원 교육·컨설팅 : 세트 지원 교육·컨설팅 주체 교육	교육·컨설팅 : 1~2년 지원 교육·컨설팅 : 세트 지원 교육·컨설팅 주체 교육
교육·컨설팅 및 운영비 배분방식	연차적 운영비 지원액확대 (30%→40%→50%)	연차적 운영비 지원액확대 (40%→50%)	연차적 운영비 지원액확대 (40%→50%)
교육·컨설팅 업체	-	컨설팅 대상업체	컨설팅 대상업체
교육·컨설팅 내용	품질향상기술 공동경영방안 조직체계 운영	단계별 교육실시 조직체 운영방법 조직 갈등해소	단계별 교육실시 조직 갈등해소, 이익처분 및 배분

3-4 들녘경영체 공동지원조직 시스템

가. 일본 경영체 육성을 위한 행정조직 사례

(1) 일본 농림수산성 조직도 국별 역할

- 일본 농림수산성 조직에는 경영국을 설치
 - 경영국에서는 농업경영의 안정발전을 향한 각종 시책을 담당하고 있음

표 67 일본 농림수산성 국별 조직도

大臣官房	농림수산성전반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담당
국제부	국제교섭(WTO, FTA/EPA), 관세할당, 국제협력
통계부	농림수산정책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가공·분석 등 담당
검사부	협동조합, 제도공제·보험단체, 토지개량구, 商取業者 및 도매시장 등에 대한 검사
소비안전국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 향상과 식품표시의 적정화에 의한 소비자로의 정확한 정보의 전달·제공 담당
식료산업국	「食」や「食」를 만들어내는 농산어촌의 자연과 환경에 관련한 사업을 폭넓게 소관하고, 산업으로서의 육성을 도모하는 업무 담당
생산국	농산물·축산물 생산 진흥, 쌀의 수급조정, 정부미의 매매·관리, 각종생산기술대책, 환경보전형농업의 추진 및 농작물의 재해·조수피해의 방지에 관한 일 등을 담당
경영국	농업경영의 안정·발전을 향한 각종시책을 담당
농촌진흥국	일본 농업생산을 지탱하는 토지(농지), 수(농업용수) 등의 보전관리·정비, 그린투어리즘 등 도시와 농산어촌의 사람들의 교류,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농산어촌의 추진사업의 지원, 농지, 농촌경관, 전통문화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의 보전을 추진하는 등 소프트 하드 양면에서 총합적으로 농촌의 진흥을 도모하는 일 수행

- 경영국내에 경영정책과와 경영안전대책실, 취농여성과를 설치하여 경영체 육성 담당
 - 경영정책과에서는 경영육성, 경영분석, 농업법인, 집락영농, 경영세제 등을 담당하고, 경영안전대책실에서는 경영안전대책반을 3개반으로 나누어 경영체 육성을 담당
 - 취농여성과에서도 경영체육성반을 2개로 나누어 경영체 육성을 담당
 - 농지정책과에서는 경영체들이 농지를 유효하게 이용하고 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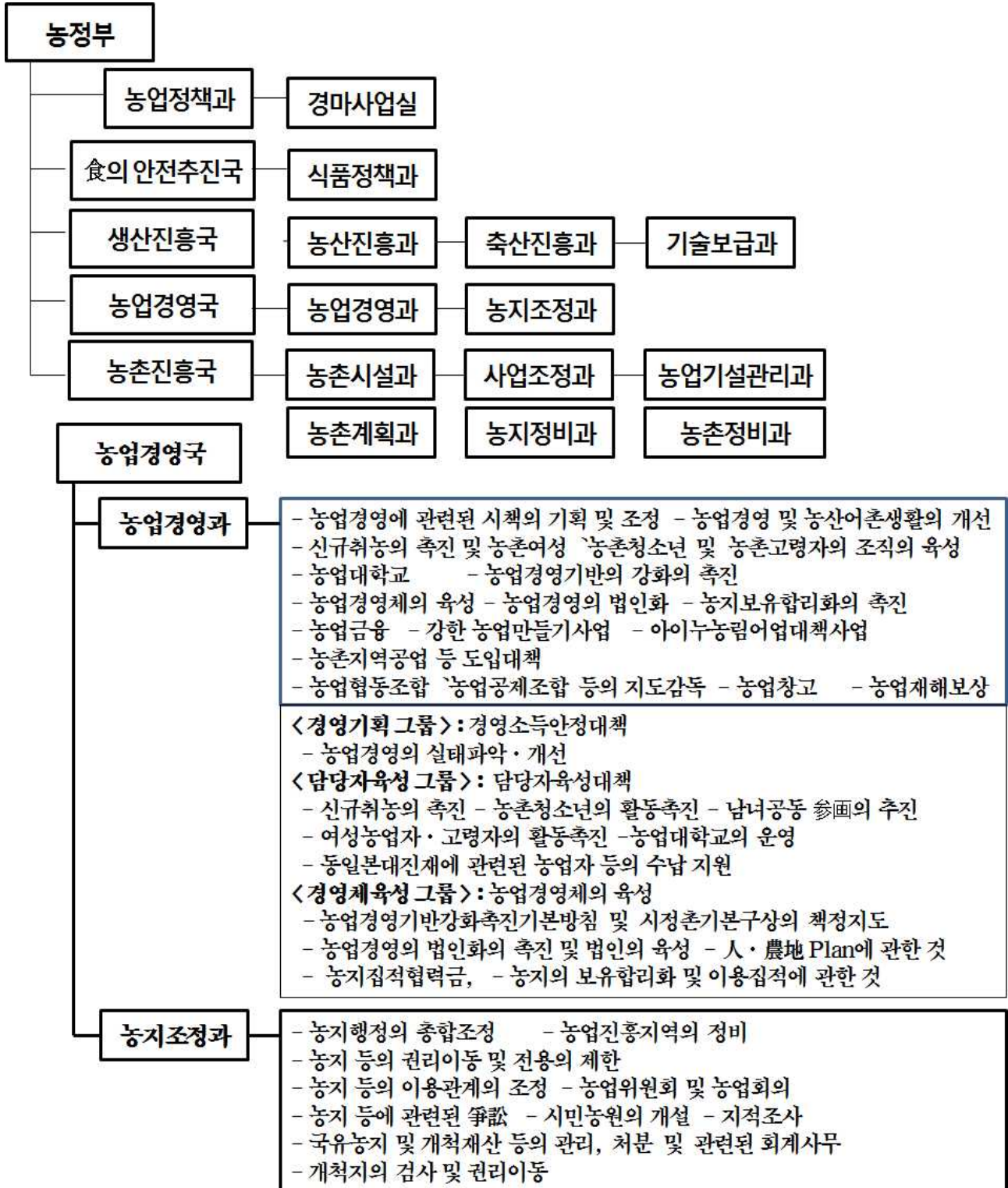
그림 19 일본 농림수산업 경영국 조직과 과별 역할

경영국	농업경영의 안정·발전을 향한 각종시책을 담당				
	총무과	경영정책과	경영정책과(경영안정 대책실)		
	농지정책과	취농·여성과	협동조직과	금융조정과	보험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반, 정책평가반, 인사반, 관리반, 예산반, 경리반, 세제반 -재해종합대책실: 재배반, 재해금융반				
경영정책과	-총무반: 서무, 예산·결산 및 농업경영에 관한 기획·입안 및 법령관계업무 -경영세제그룹: 농업경영에 관한 세제에 관한 조사·조정 -경영분석그룹: 농업경영에 관한 조사·분석 및 정보의 수집·제공 -경영육성그룹: 인정농업자제도의 추진, 농업경영의 육성·확보에 관한 기획·지도 -농업법인그룹: 농업법인의 설립·육성에 관한 기획·지도 -집락영농그룹: 집락영농의 육성, 농용지이용개선사업에 관한 기획·지도 -연금업무반: 농업자연금제도의 기획·조정, 농업자연금기금의 지도감독				
경영정책과 (경영안정 대책실)	-예산회계반: 식료안정특별회계의 농업경영안정勘定에 관한 예산·결산·경리 -추진지도반: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등의 추진에 관한 기획·조정·지도 -경영안정대책제1반: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등의 총합적인기획·입안·조정 -경영안정대책제2반: 쌀 소득보상교부금, 미가변동보전교부금 및 수입감소영향완화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지도·조정 -경영안정대책제3반: 전작물의 소득보상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지도·조정				
취농여성과	-총괄 및 총무반: 서무, 예산, 결산 및 회계 -기획그룹: 농업인재육성에 관한 기획·조정, 조사·廣報 -취농촉진그룹: 취농촉진에 관한 기획·조정, 신규취농촉진대책, 취농지원자금제도의 운영 고용·노동그룹: 농업노동력에 관한 조사·분석, 고용노동력확보대책, 외국인기능실습제도에 관한 연락조정 -농업교육그룹: 농업연수교육·경영자교육에 관한 기획·조정, 농업자교육시설에 관한 기획·조정 <경영체육성 지원실> -사업기획조정반: 경영체 육성지원에 관한 기획·조정, 조사 -경영체육성제1반: 경영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의 기획·조정 -경영체육성제2반: 조건불리지역등의 경영체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기획·조정 -사업평가반: 경영체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의 평가 <여성·고령자 활동추진실 > -공동 参劃 추진반: 여성의 경영발전, 경영·사회 参劃의 촉진등에 관한 기획·조정 -고령자대책반: 고령자·장애자의 농업활동촉진에 관한 기획·조정 -청년활동추진반: 청년농업자 등의 활동촉진, 육성에 관한 기획·조정				
농지정책과	-총괄·총무반 -기획그룹: 농지제도 (농지의 전용은 제외), 농지세제에 관한 것 -조사그룹: 농지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농업위원회그룹: 농업위원회 계통조직 -농지조정그룹: 농지의 권리이동 (농지법제3조의 허가), 농업생산법인제도 농사조정 및 화해의 중개 기타의 타농지의 이용관계의 조정 -유효이용그룹: 유휴농지의 농업상의 이용의 증진 (농지법제4장에 기초한 유휴 농지조치) 일반법인에 의한 농지의 임차 -유동화그룹: 농지유동화 (규모화대 가산을 포함)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기초한 농지의 이용권의 설정 -보유합리화그룹: 농지보유합리화사업 <농지업무실 > : 경리업무반, 재산처분촉진반, 재산관리반				

(2) 북해도 도청 농정부 조직체계

- 일본 북해도 도청의 농정부에도 농업경영국을 설치하여 농업경영과 농지조정을 담당
- 특히 농업경영과에서는 농업경영기획을 담당하고
 - 담당자 육성과 경영체 육성그룹으로 나누어 경영체 육성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 20 일본 북해도 도청 농정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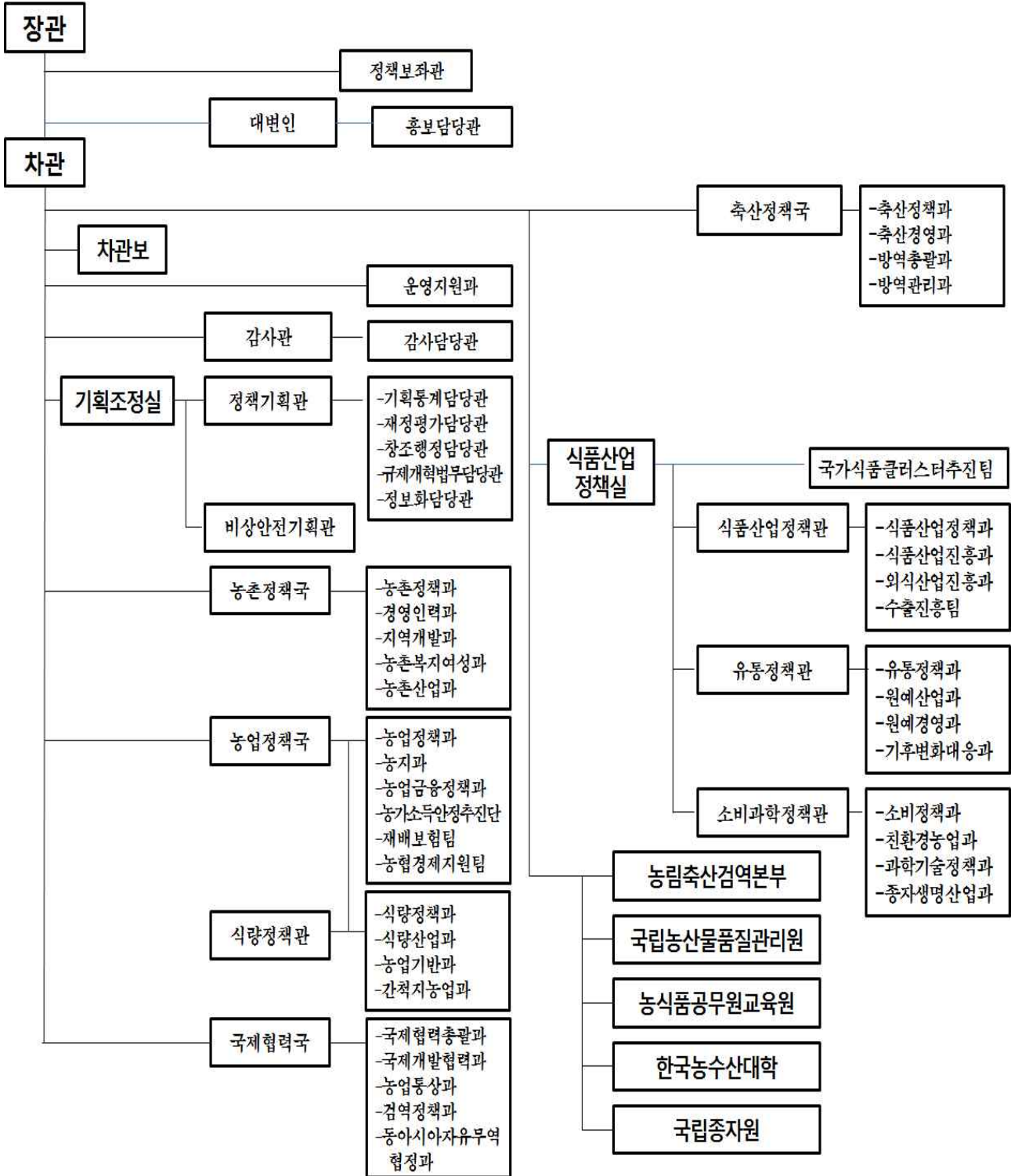


나.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담당 부서

(1) 농림축산식품부 조직

○ 1차관, 1차관보, 2실, 4국, 8관, 45과(담당관 팀 및 5개 소속기관으로 구성

그림 21 농림축산식품부 조직도



(2) 농업경영 담당부서와 역할

- 농업경영관련 내용은 경영인력과에서 담당
 - 농업인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후계농업인력 육성,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경영개선, 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업인의 교육훈련, 농업경영컨설팅, 한국농수산대학, 농업인 단체, 도시민의 귀농·귀촌 등 농촌유치 지원사업, 농어업회의소 지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의 운영
- 경영인력과만으로는 공동경영체 육성을 담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

(3) 공동경영체육성팀 구성(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 채소류, 과수 등에서 공동경영체 육성을 통한 수급조절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계획하고 있음
 - 2017년까지 들녘경영체 500개소, 고추 23개소, 양파 13개소, 과실류 55개소 육성계획
 - * 농림축산식품부,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3.10, 67, 105쪽
- 이와 같은 공동경영체와 품목별 브랜드 육성 성공을 위해서는 공동경영체의 조직운영, 사업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내에 [공동경영체육성팀]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
- 공동경영체 담당부서 설치(안)
 - 공동경영체육성팀을 구성하여 운영
 - 구성 : 식량작물 담당과 원예작물, 축산 담당으로 구성
 - 역할 : 공동경영체 조직 및 운영방안 검토, 사업추진시 관련사업과 연계방안 검토
 - 관련 품목담당과의 연계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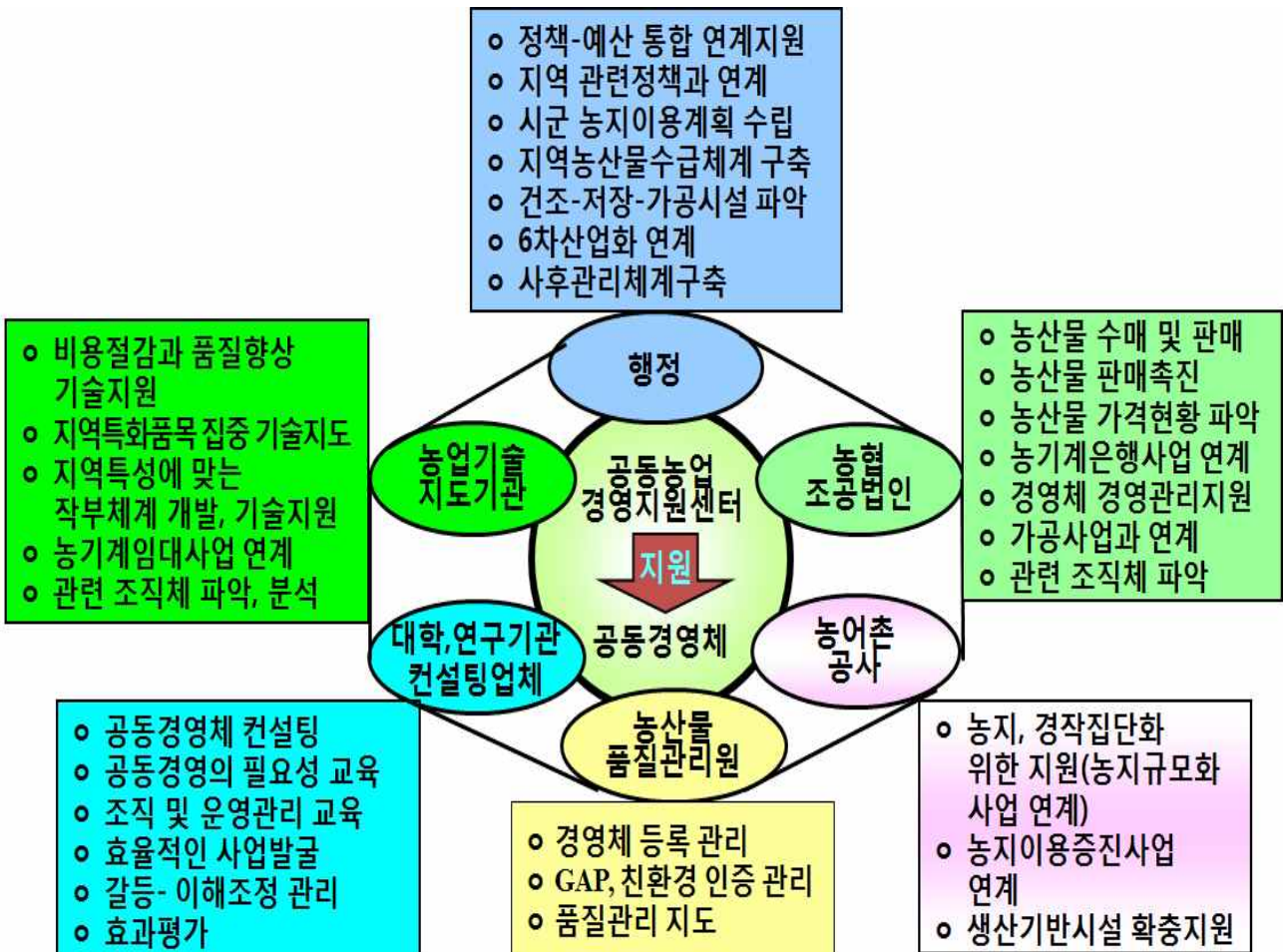
다. 시군단위 공동지원조직체 구성

- 들녘경영체나 공동경영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경영체 공동지원체계의 구축이 절대 필요함
- 지역단위의 기준
 - 기준 : 시군단위
 - 시군단위에 대부분의 관련조직이 조직되어 있음
 - 시군단위에서 관련사업과 연계가 수월

○ 각 기관별 역할

- 행정기관 : 사업 및 예산지원 통합 시스템 구축, 시군 농지이용계획 수립, 농산물 건조-저장-가공시설 파악, 주요 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관련 조직체 파악
- 농업기술센터 : 주요 작물 작부체계 및 작물별 재배면적 파악, 지역 특화작물 집중 기술개발 및 지도, 확대 가능한 작부체계 개발, 관련 경영체 파악, 농기계 임대사업 연계
- 농산물품질관리원 : 농가경영체 등록 공유 및 분석, 농산물GAP인증, 친환경인증 및 관리, 품질관리지도
- 농어촌공사 :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경영체 규모확대와 농지집단화 유도, 생산기반시설 확충
- 농협 및 관련조직 : 농산물 출하지도 및 조정, 농산물 판매촉진, 경영진단지원 시스템 구축, 생산-유통조직 활성화 도모, 농기계은행사업 연계
- 대학-컨설팅 기관 : 공동경영체 필요성 및 조직운영관리 등 교육, 효율적인 사업발굴, 갈등-이해 조정관리, 효과평가 등 수행

그림 22 시군단위 공동경영체 공동경영활성화를 위한 공동경영지원센터 역할



4. 들녘경영체 법제화 방안 검토

4-1 들녘경영체 법제화 개요

- (사업근거)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 2008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이 도입되었음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종사 인력, 농어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어장의 이용 및 보전, 수산자원의 이용과 농수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어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어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2년부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공동이용)이 근거로 첨가됨.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공동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문제점1) 들녘경영체 육성의 이념과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
 - 현재 들녘경영체는 예산사업을 위한 근거법령만 제시되고 있고, 법률에 의한 개념이나 기준이 정의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의 안정성이 부족한 실정임.
 -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에 대비해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용절감, 품질향상의 필요성 증대 등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예산사업 유지여부와 정책추진 여부에 따라 변경가능성이 커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 혼란야기가 크게 우려됨.
- (문제점2) 들녘경영체의 농기계 및 농지의 공동이용 등 심화된 공동경영을 위한 [들녘경영체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이 구체화가 미흡한 실정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정부지원 RPC
 - * 지원자격 및 요건 : 들녘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RPC, 농협. 단, 농업법인, 농협은 정부지원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는 경우에만 들녘경영체로 선정
 - * 들녘경영체 :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육묘에서 수확까지 생산과정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영체
 - 또한 농지의 공동이용을 위한 [농지법]제14조~19조에서 규정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과의 연계성도 미흡함

- * 농지법 제14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 요건)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수립)
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 (일본사례) 농지유동화 촉진, 임대차 촉진, 집단적 조직적 농작업 및 공동 농업경영 활성화, 농업경영법인화를 위해 지속 노력 및 제도개선, 법 개정 및 제정
 - 1970년 [농지법]개정 : 자작농주의에서 임대차 촉진을 통한 농지유동화촉진정책 강화
 - 1975년 [농용지이용증진법]제정
 - 1980년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제정
 - 農業經營基盤強化促進法(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1980年5月28日法律第六十五号)
 - * 목적 : 농업경영개선을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농업자에 대한 농용지 이용집적과, 이들 농업자의 경영관리의 합리화, 기타 농업경영기반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총합적으로 강구함으로써 농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목적
- (법제화 필요성) 들녘경영체는 향후 쌀과 주요 곡물 생산의 주체로서 공동경영을 통한 규모화, 조직화, 단지화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에 기여, 우리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곡물자급률 향상 등 우리 쌀산업 및 곡물생산구조를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제화가 절대 필요
 - 특히 대규모개별농가의 규모화가 가지는 규모확대 한계성, 점진적인 고령화, 중소농 배제성 등의 문제가 있음.
 - 장기적으로 들녘경영체는 조직경영체로서 조직화에 의한 많은 농가의 참여와, 대규모 규모확대가 가능하고, 지속적인 리더 육성으로 경영주체의 고령화를 방제할 수 있음. 따라서 지역농업의 담당주체로서의 역할 수행과 발전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들녘경영체 육성이 가장 중요함.
 - 들녘경영체에 대하여 법률에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정요건과 절차, 지정시 인센티브(정부의 지원내용) 및 공동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법률에 규정하여 정책 및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

4-2 법제화 검토방안(법률 개정 기본방향)

가. 검토대상 법률

- 들녘경영체 법제화 검토대상 법률은 아래와 같음.
 - 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정의)
 -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 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들녘경영체 삽입
 - ④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 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지급상한면적)
 - 제2조의2(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⑥ 농지법
 - 제2조(정의),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제14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 들녘경영체는 기존 농업경영체(개인·법인)의 공동경영을 유도하기 때문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법제화방식

- 새로운 법률 제정 보다는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신설하는 방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장 농어업경영혁신기반 구축 다음 **제7장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 활성화** 형태로 신설하는 방안

다. 법제화 내용

- 신설된 장내에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의 정의, 개념, 지정기준·요건, 지정절차, 지정시 인센티브, 지원내역, 지정의 해제, 처벌규정, 공동경영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등 규정
 - 단, 향후 논의에 발, 과수원 등 농업 전반에 공동경영을 확산해 나갈 것을 염두에 둔다면 [공동경영체]로 개념을 규정하는 방안도 있음.
- [공동농업경영지원센터] 설립·운영내용
 -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의 공동경영 지원을 위해 ‘공동농업경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방안

4-3 조문별 검토방안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제4장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제12조(직접지불금)

제13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제14조(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제15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5장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

제21조(농어업경영체의 회계)

제22조(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제24조(교육기관 평가 등)

제25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제26조(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제27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7장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 활성화

제7장 보칙 제8장 보칙

제8장 별칙 제9장 별칙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 활성화

(제1조) 목적

○ 농업경영체의 비용절감과 품질제고 및 소득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념, 지정요건, 공동농업경영지원센터 설립 등을 규정

(제2조) 개념 정의

○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란 특정 행정리내 농업인을 중심으로 비용절감, 품질향상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50ha) 이상의 농지를 획정하고, 당해 농지 내에서 품종통일, 공동육묘, 공동방제, 농기계의 공동이용, 농지의 이용증진, 기타 공동 농업경영활동 등 공동이행 규약서와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공동경영활동을 하는 농업인 조직체로 정부가 인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 지정 요건

-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일정 규모 이상 농지 획정 / 공동이행 규약 작성, 품종·육묘·농작업을 공동으로 이용 / 농지의 효율적 이용 증진
- 이상의 공동경영을 위한 공동규약서 혹은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로부터 인정받는다.
- 정부는 공동규약서와 경영계획서를 인정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한다. 이는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 교육 이수 요건

- 정부의 공동경영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년 2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 지정 절차

- 공동경영을 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시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다.

(제6조)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 공동경영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동육묘, 공동방제 및 농기계의 공동 이용을 위한 시설장비
 - 농지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
 - 단일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른 생산기반 정비

- 공동경영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제7조) 공동농업경영지원센터 설립·운영

○ 정부는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 지원을 위해 ‘공동농업경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공동농업경영지원센터의 구성과 역할

- 행정 : 정책 및 예산지원,

- 농업기술센터 : 새로운 기술 및 작부체계 지원

- 농협(지역농협, 시군지부) :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일본 북해도의 경우 [JA북해도중앙회 농업법인센터] 설립하여 2012년 [농업을 담당하는 다양한 담당자 확보와 육성, 영농지원기능의 강화]를 결의하여 담당자로서 농업법인의 설립, 운영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농어촌공사 : 경영체로의 농지의 규모화, 이용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제8조) 공동경영체의 지정 해제

○ 거짓·허위 처벌 등

4-4 들녘경영체 개념정의와 목적 및 사업내용과 관련된 기타 법령 조문

가. 관련 법령 내용

(1) (개념정의) 들녘경영체 대상 및 개념정의 관련 법령 : 들녘경영체(조직체)

- 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정의) 3. 농어업경영체
-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3. 농업경영체
- ③ 농지법 : 제2조(정의) 3. 농업법인이란, 4. 농업경영이란, 6. 위탁경영

(2) (사업내용, 목적) 들녘경영체의 목적과 사업내용 관련 법령

- 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1조(목적)
 -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1항
 -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②, ③항
-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담당주체 육성과 관련
 -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정의) ①, ②항
 - 제12조(직접지불금). 제12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 제26조(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 ③ 농지법 : 들녘경영체의 들녘내 농지의 공동이용을 위해 매우 필요
 -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②항
 -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 제14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 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 제22조(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
- ④ 농업기계화촉진법 : 들녘경영체의 농기계의 공동이용을 위해 필요
 - 제1조(목적)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
 - 제2조(정의) 농업기계(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기자재,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 및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제4조(자금지원)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이용)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정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농업인등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농지법과 연계
-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농지법과 연계

⑥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지급상한면적)
 - * 농업인의 경우(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50만제곱미터))

나. 들녘경영체 개념정의와 목적 및 사업내용과 관련된 법령 검토내용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공동경영 ----단체를 말한다).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삽입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 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 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단,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통해 선정된 경영체중,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영체(이하, 「들녘경영체」라 한다)를 포함한다.

제11조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경영규모 확대와 들녘단위의 공동 농업생산 및 경영 활동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하여 농지, 양식장, 어선 또는 농어업용 시설의 매매 등을 우선 지원하거나 알선·중개할 수 있다.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또는 어업법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기소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그 등·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을 말한다.
2. "논농업" 3. "목표가격" 4. "고정직접지불금" 5. "변동직접지불금"이란
6. "논농업에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7.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에 위탁하여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3.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에 위탁하여 농지를 이용하는 농업인.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작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에 등록된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자....

(5)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지급상한면적), 제2조의2(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2조(지급상한면적)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의 경우: 30만제곱미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경우: 50만제곱미터

3.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의 경우는 400만제곱미터

제2조의2(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3.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다.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의 경우 400만제곱미터

(6) 농지법

→ 제2조(정의),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제14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조에 따라 설립된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5. "자경(自耕)"이란

6. "위탁경영"이란

7. "공동경영"이란 특정 행정리내 농업인을 중심으로 비용절감, 품질향상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50ha) 이상의 농지를 확정하고, 당해 농지 내에서 품종통일, 공동육묘, 공동방제, 농기계의 공동이용, 농지의 이용증진, 기타 공동 농업경영활동 등을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7. 단,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②농지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의 지대(地帶)별·용도별 이용계획
2.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 규모 확대계획
3.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

4.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에 의한 농지의 이용계획

⑤농지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5 들녘경영체 인정방안(안)

-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함.
- 들녘경영체를 인정하는 방법은 다음 2가지 방안이 있음
 - 첫째, 들녘경영체가 작성한 공동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정하는 방안과
 - 둘째, 일본과 같이 농업법인중에서 관련법내에서 [특정농업법인]을 정의하여 인정하는 방안이 있음.

가. 들녘경영체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정하는 제도

- 들녘경영체가 작성한 공동경영계획서를 인정할 경우 누가 인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함.
 - 특히 어떻게 공동경영계획서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함.
- 공동경영계획서를 인정하는 주체는 아래와 같은 방안이 있음.
 -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하는 방안으로
 - ①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 사업추진 T/F팀]에서 하는 방안
 - ② 농림축산식품부 별도 [공동경영계획 인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정하는 방안
 - 둘째, 시군 지자체에서 [공동경영계획 인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정하는 방안
 - 일본의 경우 : 개별농가나 농업법인체에서 작성인 [농업경영개선계획]을 市町村 농업위원회에서 인정
- 당분간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검증하고, 검증된 들녘경영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들녘경영체 사업추진T/F팀]에서 인정하는 방법이 있음
 -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시도단위 [공동경영계획 인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단되어짐.

나. 일본 특정농업법인 형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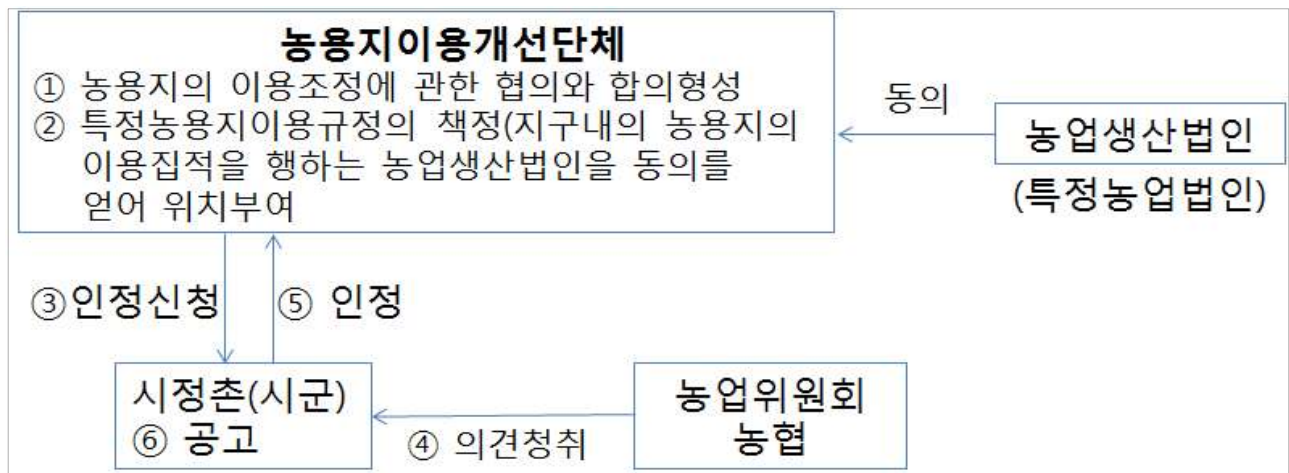
(1) 일본의 특정농업법인과 특정농업단체의 이해

- 일본은 농지 이용집적을 위해 특정농업법인과 특정농업단체를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규정하고 있음.
 - 특정농업단체 : 집락영농을 대상으로 하여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들녘경영체와는 성격이 다름
 - 특정농업법인 :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의 들녘경영체의 목적과 같다고 볼 수 있음

(가) 특정농업법인제도의 개요

- 특정농업법인이란
 - 농용지이용개선단체가 작성하는 특정농용지이용규정에 지역의 농용지의 과반을 이용집적하는 것으로 의미가 부여된 농업생산법인으로 규정.
 - * 규정법률 :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제23조제4항
- 특정농용지이용규정이란
 - 특정농업법인 동의를 얻어 농용지이용개선단체가 작성하여 시정촌이 인정한 것
- 특정농용지이용규정의 인정요건
 - 일반의 농용지이용규정의 인정요건(기본구상에 적합할 것 등)에 더하여
 - ① 특정농업법인이 구역내 농지의 과반을 이용집적을 목표로 할 것
 - ② 농용지이용개선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특정농업법인이 농용지를 인수(이용권 등의 인정 혹은 농작업의 위탁을 받음)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

그림 23 특정농업법인(특정농용지이용규정) 인정순서



(나) 특정농업단체의 개요

○ 특정농업단체란

- ① 담당자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어서
- ② 그 지역의 농지면적의 2/3이상에 대하여 농작업을 수탁하는 상대방으로서 일정한 지연적인 연고가 있는 지역의 地權者(농용지이용개선단체)가 작성한 농용지이용규정에 맞는 임의조직으로 농업생산법인이 되는 것이 확실할 때
- ③ 지권자로부터 농작업을 요구받을 때에 그에 응하는 의무가 있는 성격을 갖는 임의조직(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제23조제4항)

○ 특정농업단체의 요건

- (1) 지역의 농용지의 2/3이상을 집적(농작업을 수탁)하는 목표(5년후)를 정할 것
 - * 지역의 범위는 농용지이용개선사업 실시구역, 즉 地緣的인 연고가 있는 범위(집락(우리의 마을, 들녘 등)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용지의 효율적·통합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 한 개의 집락을 범위를 초월하는 것도 가능함.
- (2) 규약이 정해져 있어야 함
 - 규약에 대표자,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총회의 의결사항, 의결방법 농용지나 농업용기계 등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규약을 정할 것
- (3) 공동판매경리를 행할 것
 - ① 집락영농조직의 구좌를 설정하여
 - ② 농산물의 판매명의를 집락영농조직으로서
 - ③ 판매수입을 그의 구좌에 입금한다
- (4) 조직의 주요 종사자 농업소득 목표는 시정촌 기본구상 수준이상을 정할 것
 - * 주요 종사자는 후보자(이름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사람수)에 따르고
 - * 농업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조직이 장래 지향하는 경영규모 등으로 총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
- (5) 농업생산법인화계획을 작성할 것
 - 5년이내 농업생산법인화 할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실시 시기를 정하는 계획서를 작성한다.

그림 7 일본 특정농업단체(특정농용지이용규정) 인정순서



(2)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農業經營基盤強化促進法)에서 특정농업법인사례

(1980年5月28日法律第六十五号)

< 특정농업법인과 특정농업단체에 대한 개념규정 포함(제23조 4.항에 포함됨) >

최종개정 : 2013年12月13日法律第一〇二号

第一章 總則 (第一條—第四條)

第二章 農業經營基盤 強化促進에 관한 기본방침 등

第三章 農業經營改善計畫 및 青年等就農計畫等

第一節 農業經營改善計畫 (第十二條—第十四條의三)

第二節 青年等就農計畫 (第十四條의 四—第十四條의十二)

第三節 認定農業者等으로의 利用權 設定等の促進 (第十五條·第十六條)

第四章 農業經營基盤強化促進事業의 實施等 (第十七條—第二十七條)

第一章 總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일본농업이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효율적 내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육성하고, 이들의 농업경영이 농업생산의 상당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농업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육성해야 할 효율적·안정적인 농업경영의 목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목표를 행해 농업경영개선을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농업자에 대한 농용지의 이용집적과 이들 농업자의 경영관리의 합리화, 기타 농업경영기반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총합적으로 강구함으로써 농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책무)

第二條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농업경영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농업경영기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생산의 기반정비 및 개발, 농업경영의 근대화를 위한 시설의 도입, 농업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및 기타의 관련시책을 총합적으로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농업경영기반강화 실시)

第三條

농업경영기반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는 농용지의 보유 및 이용현황 및 장래전망, 농용지를 보유 또는 이용하는 자의 농업경영에 관한 의향 기타의 농업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농업자 또는 농업관련단체가 지역농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자주적인 노력을 조장하는 취지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

第四條 이 법률에 있어 「농용지 등」이란 다음에서 설명하는 토지를 말함.

2 이 법률에 있어 「청년 등」이란 이하 정의

3 이 법률에 있어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이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하기 위해 농용지의 이용집적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법률이 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에 각호에 맞는 者가 행하는 당해각호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본 법률에서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사업」이란 이 법률이 정하는 바와 같이 市 町村이 행하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一 농용지에 있어 이용권 (농업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임차권 또는 使用貸借에 의한 권리 혹은 농업경영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취득되는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말함. 이하 같음.)의 설정 혹은 이전 혹은 소유권 이전 (以下「이용권의 설정 등」이라 함)을 촉진하는 사업 (이것과 병행하여 행하는 사업으로 제1항제2호로부터 제4호까지 열거하는 토지에 대한 이용권 설정 등을 촉진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하 「리용권설정등촉진사업」이라 한다)

二 농지이용집적원활화사업 실시를 촉진하는 사업

三 농용지이용개선사업 (농용지에 관한 권리를 갖는 者의 조직한 단체가 농용지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함에 따라 農用地의 효율적 내지 총합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작부지의 집단화, 농작업의 효율화 기타의 조치 및 농용지의 이용관계 개선에 관한 도치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이하 동일)의 실시를 촉진하는 사업

四 前三号에서 열거한 사업이외 위탁을 행하는 농작업 실시를 촉진하는 사업, 농업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농업종사자의 육성 및 확보를 촉진하는 사업 기타 농업경영기반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第二章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등

第一節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기본방침 및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기본구상

第二節 농지중간관리기구사업 특례등

第三節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

第三章 농업경영개선계획 및 청년등 취농계획 등

第一節 농업경영개선계획

第三節 인정농업자 등으로의 이용권설정 등 촉진

第四章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사업 실시 등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사업 실시)

(농용지이용집적계획 작성)

(농용지이용집적계획화 공고)

(공고효과)

(농용지이용집적계획화 취소 등)

(이용권설정등촉진사업 추진)

(農用地利用規程)

제23조 농업협동조합법 제72조의8 제1항 제1호 사업을 행하는 농사조합법인, 기타 단체 (政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 로 제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역을 그 지구로 하고, 당해 지구내의 농용지에 다음 제18조 제3항 제4호 권리를 가진 자의 2/3 이상이 구성원되어 있는 것이란 그 행하는 농용지이용개선사업 준칙이 되는 농용지이용규정을 정하여 그것을 동의하여 市町村(행정단위)에 제출하여, 당해 농용지이용규정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인정을 얻을 수 있다.

2 농용지이용규정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一 농용지의 효율적·총합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二 농용지이용개선사업의 실시구역

三 작부지의 집단화, 기타 농작물 재배개선에 관한 사항

四 인정농업자, 기타 구성원과의 역할분담, 기타 농작업 효율화에 관한 사항

五 인정농업자에 대한 농용지 이용 집적목표, 그 농용지 이용관계개선에 관한 사항

六 기타 필요한 사항

3 동의 시정촌은 제1항의 인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련된 농용지이용규정이 다음 요건에 해당할 때 동향의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一 농용지이용규정내용이 기본구상에 적합해야 할 것

二 농용지이용규정내용이 농용지의 효율적·총합적인 이용을 위해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二의二 전항제4호에서 열거한 역할분담이 인정농업자의 농업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

三 농용지이용규정이 적정하게 정해지고, 신청자가 당해 농용지 이용규정에서 정함에 따라 농용지이용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망이 확실할 때

4 제1항에 규정하는 단체는 농용지의 보유 및 이용현황 및 장래 전망 등으로 본 농용

지이용개선사업이 원활히 실시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단체 지구내 농용지의 상당부분에 대해서 농업상의 이용을 행하는 효율적·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당해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소유하는 농용지에 대해 이용권 설정 등 혹은 농작업위탁을 받은 농용지 이용집적을 행하는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법인 (이하 「특정농업법인」이라 한다.) 또는 당해 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소유하는 농용지에 대하여 농작업위탁을 받아 농용지의 이용집적을 행하는 단체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 政令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특정농업단체」라 한다.) 당해 특정농업법인 또는 특정농업단체 동의를 얻어, 농용지 이용규정을 정할 수 있다.

5 전항 규정에 의한 정하는 농용지이용규정에 있어서는 제2항각호에서 열거한 사항이외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一 특정농업법인 또는 특정농업단체의 명칭과 주소

二 특정농업법인 또는 특정농업단체에 대한 농용지 이용·집적의 목표

三 특정농업법인 또는 특정농업단체에 대한 농용지 이용권설정 등 농작업위탁에 관한 사항

6 동의를 시정촌은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는 농용지 이용규정에 대해 제1항의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는 그 신청에 관한 농용지이용규정이 제3항각호에 열거한 요건 이외에 다음에서 열거하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제1항의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一 전항제2호에서 열거하는 목표가 제2항제2호의 실시 구역내의 농용지의 상당부분에 대해 이용집적을 하는 것으로 한다

二 신청자의 구성원으로부터 그 소유한 농용지에 대하여 이용권 설정 등 혹은 농작업위탁을 해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특정농업법인이 당해 신청한 농용지에 대하여 이용권 설정, 농작업 위탁을 받는 것 또는 특정농업단체가 당해 신청된 농용지에 대하여 농작업의 위탁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확실할 때 인정된다.

7 제5항각호에서 열거한 사항에서 정해진 농용지이용규정 (이하 「특정농용지이용규정」이라고 한다) 에서 정해진 특정농업법인은 인정농업자와 특정농용지이용규정은 認定計劃하는 것으로 본다.

8 동의를 시정촌은 제1항을 인정했을 경우는 農林水産省令에서 정하는 것에 의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공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9 특정농용지이용규정의 유효기간은, 政令에서 정한다.

10 제1항의 인정을 받은 단체 (이하 「인정단체」라 한다) 는 농업위원회, 농업협동조합,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 및 농지중간관리기구에 대하여, 농용지이용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농용지이용규정의 변경 등)

(권장 등)

(위탁을 받은 농작업 실시 촉진 등)

제4장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1.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필요성과 가능성

1-1 농업실태로 본 맞춤형 육성모델 개발 필요성

가. 경지이용률 저하와 곡물자급률 하락

- 1980년대 중반이후 논과 밭 이용률이 급속하게 저하추세에 있음.
 - 특히 논 이용률의 경우는 1990년대 이후 110%이하로 떨어졌으며
 - 밭의 경우는 2000년대 들어와 고령화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표 68 도별 경지이용률 변화추이

구분	논 이용률(%)					밭 이용률(%)				
	1975	1985	1995	2005	2013	1975	1985	1995	2005	2013
전국	130.9	114.9	104.1	102.9	103.1	152.9	129.2	114.7	107.3	98.6
경기	99.8	99.7	91.0	93.1	92.2	137.7	115.5	111.9	100.1	92.1
강원	100.7	101.7	89.2	92.1	89.8	121.9	112.4	97.4	96.9	96.6
충북	111.4	104.3	95.3	94.5	93.2	140.7	122.5	110.5	106.1	103.3
충남	111.6	104.1	97.4	97.5	95.9	160.3	126.8	106.8	104.9	103.1
전북	136.5	110.8	106.2	107.8	114.1	144.1	130.2	125.4	114.5	99.5
전남	152.1	127.8	118.1	110.5	108.4	180.6	163.5	145.9	133.0	108.9
경북	140.8	120.8	101.2	99.2	97.9	151.6	118.8	105.7	98.4	92.1
경남	159.3	134.2	117.4	115.9	120.9	172.8	128.0	107.6	96.1	89.8

자료 : 통계청, 경지이용면적 및 경지이용률 자료, 2014.6

- 이와 같은 경지이용률 저하는 특히 논 이모작 맥류의 저하에 큰 원인이 있으며
 - 밭의 경우는 1990년대 이후 두류 재배면적의 감소에 기인한 것임

표 69 시도별 논과 밭의 맥류 및 두류 이용률(%)

구분	시도 별	논					밭				
		1975	1985	1995	2005	2013	1975	1985	1995	2005	2013
맥류	전국	28.7	10.0	5.2	4.7	2.9	40.9	13.2	3.1	1.2	0.6
	경기	0.4		-	-	0.1	22.5	0.7	-	0.2	0.2
	강원	1.0	0.2	0.1	-	0.2	11.9	1.8	0.5	0.4	0.1
	충북	9.0	1.0	-	0.1		25.8	1.7	0.1	0.2	0.1
	충남	11.4	0.9	0.1	0.1	0.1	45.6	6.8	0.2	0.3	0.1
	전북	31.1	5.6	6.6	7.6	8.6	40.9	8.2	0.7	1.0	0.9
	전남	50.9	22.9	16.6	13.2	4.4	69.7	43.0	11.2	3.8	1.9
	경북	38.4	11.7	1.5	0.9	0.6	42.3	5.9	0.8	0.4	0.1
	경남	53.3	25.4	9.3	6.6	5.6	63.4	22.2	3.8	1.0	0.3
두류	계	1.3	0.7	1.1	1.0	1.2	32.6	22.5	15.5	14.7	11.0
	경기	1.8	0.6	0.5	0.6	0.7	30.7	17.0	9.8	11.5	9.5
	강원	1.6	1.0	1.1	1.1	2.0	35.9	18.8	13.1	16.2	11.6
	충북	1.8	1.0	1.9	1.9	1.9	30.8	22.6	16.0	17.4	16.3
	충남	1.2	0.7	0.7	0.4	0.5	37.4	24.4	11.5	13.5	12.2
	전북	0.6	0.4	0.6	0.9	1.3	28.8	19.8	12.8	12.7	8.4
	전남	0.7	0.3	1.0	0.9	0.7	31.7	34.7	30.9	23.1	14.0
	경북	1.7	1.0	1.9	2.0	2.4	36.6	18.9	11.2	13.0	10.1
	경남	1.4	0.9	1.6	1.3	1.8	31.8	24.5	17.8	13.9	8.1

○ 이같이 경지이용률 저하는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곡물자급률 저하를 가져옴.

표 70 주요 곡물 자급률 추이

(단위 : %)

품목	1990	2000	2010	2013	목표(2017) ^{주1)}
쌀	108.3	102.9	104.5	89.2	98.0
보리	97.4	49.7	25.9	21.0	31.0
밀	0.05	0.1	1.7	1.1	12.0
콩	64.9	28.2	32.4	29.1	38.3
조사료	82.0	83.0	80.0	80.2	88.0
곡물전체	43.1	29.7	27.6	23.1	30.0

주1) 농림축산식품부,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3.10

나. 경지이용률 저하와 농가의 농업소득 감소

- 농가의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점하는 비율은 1990년 56.8%에서 2000년 47.2%로 감소하더니 현재는 29%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 2013년 농업소득은 2000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농가의 농업소득의 정체, 저하는 고령화에 의한 경지이용률 저하가 큰 원인이 되고 있음.

표 71 농가전체 농가호당 농가소득 구성내용의 변화추이 (단위 : 천원, %)

구분	농가소득 (A)	농업소득 (B)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 소득	도시근로 자가구소 득(D)	농업소득: 농가소득 (B/A)	쌀소득: 농업소득 (C/B)	농가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A/D)
1990	11,026	6,264	2,841	1,921	11,320	56.8%	49.4%	97.4%
2000	23,072	10,897	7,432	4,743	28,643	47.2%	52.0%	80.6%
2005	30,503	11,815	9,884	8,803	39,025	38.7%	38.2%	78.2%
2007	31,967	10,406	11,097	10,465	43,874	32.6%	40.2%	72.9%
2009	30,814	9,698	12,128	8,988	46,238	31.5%	39.1%	66.6%
2011	30,148	8,753	12,949	8,446	50,983	29.0%	42.1%	59.1%
2013	34,524	10,035	15,705	8,784	55,275	29.1%	42.1%	62.5%

다. 채소류의 풍흉에 따른 수급문제와 주산지현황

- 채소류 특히 5대 양념채소류의 경우 생산의 풍흉에 따라 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가격의 진폭도 매우 커 소비자의 가계지출과 농가의 안정소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채소류와 과일류의 경우 전국적으로 시군단위 그리고 읍면 단위별로 생산지가 집중되어 있어 경영체 육성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들녘경영체에서도 다양한 소득원 창출과 채소류, 과일류의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채소류와 과일류도 다양한 모델의 한 부분으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표 72 주요 품목 재배의 시군 및 읍면동 집중도

품목	재배면적 (ha)	누적 재배면적 비율별 시군수				누적 재배면적 비율별 읍면동수				
		~20%	~30%	~40%	~50%	~20%	~30%	~40%	~50%	
식량 작물	보리	25,086	2	3	4	6	7	12	19	28
	콩	59,060	6	11	18	29	34	77	139	225
	고구마	23,260	3	7	11	18	12	27	57	112
	감자	21,878	3	6	9	14	8	17	34	70
양념 채소	무(노지)	15,859	1	2	3	6	2	6	14	25
	배추(노지)	28,270	2	5	10	16	9	22	44	81
	고추(노지)	43,405	7	14	21	30	50	98	162	248
	마늘	20,495	3	4	6	7	9	18	29	44
	양파	16,520	1	3	4	6	6	12	21	32
과 채소류	시설수박	10,158	2	5	7	10	3	4	7	10
	시설 토마토	4,331	3	9	14	22	6	17	32	61
	시설 딸기	4,771	2	4	6	10	8	13	21	32
과일류	사과	30,526	3	5	8	10	11	20	32	50
	배	15,341	2	5	8	14	8	17	31	52
	복숭아	12,006	2	5	7	10	8	16	26	42
	포도	13,800	2	4	5	7	7	13	21	31

1-2. 들녘경영체 실태로 본 지역·품목 맞춤형 육성모델 가능성

가. 들녘경영체 임원진 의향

- 대부분 들녘경영체 임원진들의 경우는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들녘경영체 육성모델을 만드는 것에 찬성하고 있음.

표 73 지역(들녘)특성에 맞는 다양한 육성모델로 만드는 것에 대한 찬성여부

구분	빈도	비율
① 아주찬성	25	80.6%
② 약간찬성	6	19.4%
③ 반대		
④ 모르겠다		
합계	31	100.0%

- 현재까지 선정된 들녘경영체의 경우는 평야중심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쌀을 중심으로 하는 모델을 선호하고 있음. 현재 들녘경영체 소재 지역은
 - 쌀+이모작+경축순환농업이 36.4%로 가장 높으며,
 - 특히 쌀 중심의 육성모델이 33.3%를 점하고 있음

표 74 예시된 육성모델중 지역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유형

구분	빈도	비율
① 쌀 중심의 육성모델	11	33.3%
② 쌀+이모작, 타작물 재배 모델	7	21.2%
③ 쌀+이모작, 타작물+경축순환농업	12	36.4%
④ 쌀+밭작물 모델	3	9.1%
⑤ 기타		0.0%
합계	33	100.0%

- 향후 6차산업화를 고려한 농산물가공부문은 쌀을 중심으로 한 가공부문을 중심으로 선호하고 있음.

표 75 5년 이내에 쌀 등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

구분	빈도	비율
① 쌀만 가공	10	32.3%
② 쌀+잡곡가공	16	51.6%
③ 쌀+축산가공,	3	9.7%
④ 기타		0.0%
⑤ 가공식품 불가능	2	6.5%
합계	31	100.0%

나. 들녘경영체별 실제 작목별 재배현황

(1) 들녘경영체 작물재배상의 특징

- 2009년에서 '14년까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통해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63개소의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들녘경영체에서 중심품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쌀 단작이 47.6%로 가장 많으며,

- (쌀+밭작물(채소, 과수))가 27.0%, (쌀+이모작맥류)가 22.3%임
- 쌀+논 시설작물의 경우는 매우 적은 편임

표 76 들녘경영체 작물재배상의 특징 요약

구분	쌀 단작	쌀+이모작 맥류	쌀+시설작물	쌀+채소, 과수
경영체 수	30개소 (47.6%)	14개소 (22.2%)	2개소 (3.2%)	17 (27.0%)

○ 특히 들녘경영체중에서 전북과 전남의 경우가 (쌀+이모작 맥류)의 경우가 많음

표 77 들녘경영체 작물재배상의 특징 1

지원 연도	시도	시군	경영체명	농가 수	면적 (ha)	시설장비	경영체 특징
09년	경기	여주	왕대리최적경영체	42	89	저장고	고품질쌀+(고구마+대파)
10년	경기	이천	풍계3리영농회	47	116	공동육묘장	고품질쌀+복숭아+(배+젓소)
14년	경기	화성	화성농산RPC	106	218	광역방제기	간척지+(무+대가축)
09년	강원	철원	동송재배단지	52	120	저장고	GAP쌀
10년	강원	철원	갈말재배단지	42	137	공동육묘장	GAP쌀
10년	강원	철원	관우재배단지	35	105	광역방제기	GAP쌀
12년	강원	철원	동송농협RPC	127	185	광역방제기	GAP쌀
14년	강원	홍천	피내뜰영농조합법인	213	244	공동육묘장	친환경쌀
10년	충북	보은	대추고을작목반	131	120	광역방제기	친환경쌀+대추
09년	충북	진천	장척쌀유통단지법인	82	150	공동육묘장	고품질쌀+수박+오이
09년	충북	청원	양지말영농법인	27	154	광역방제기	고품질쌀+(대파+인삼+육우)
10년	충북	청원	신평유기쌀작목반	40	80	공동육묘장	친환경쌀+(인삼+무)
10년	충남	당진	당진해나루쌀영농법인	133	225	광역방제기	고품질쌀+(감자+무+배추)
12년	충남	당진	상록수영농법인	66	220	광역방제기	고품질쌀+(감자)
13년	충남	보령	보령통합RPC	91	118	무인헬기	고품질쌀
14년	충남	보령	청소영농조합법인	66	117	공동육묘장	고품질쌀
14년	충남	부여	큰사랑영농조합법인	66	173	광역방제기	쌀+맥류+조사료+(오이)
10년	충남	서산	서산간척지영농법인	7	198	공동육묘장	간척지
14년	충남	서산	산울림영농법인	70	253	공동육묘장	간척지+(당근+양배추+땅콩)
14년	충남	서산	새들만RPC	12	250	무인헬기	간척지
09년	충남	아산	둔포영농법인	119	110	공동육묘장	GAP쌀+(배+산란계)
13년	충남	아산	황금들탑라이스	108	105	공동육묘장	GAP쌀
10년	충남	예산	쌀전업농삽교영농법인	15	160	광역방제기	고품질쌀+(사과)
14년	충남	예산	고덕황금영농법인	25	250	광역방제기	고품질쌀+(사과+대가축)
14년	충남	홍성	대한경기영농조합법인	156	184	공동육묘장	간척지

주 : ()는 들녘경영체가 소속된 읍면단위의 주요 품목임

표 78 들녘경영체 작물재배상의 특징 2

지원 연도	시도	시군	경영체명	농가 수	면적 (ha)	시설장비	경영체 특징
14년	전북	고창	한결영농RPC	115	165	광역방제기	쌀+무+수박+땅콩
09년	전북	군산	나포십자들작목반	118	199	광역방제기	친환경쌀+경관
10년	전북	군산	대야큰들의꿈작목반	79	100	광역방제기	GAP쌀+맥류
12년	전북	군산	(유)나승영농사	460	101	광역방제기	가공용쌀+맥류
14년	전북	군산	회현농협(RPC)	155	304	광역방제기	GAP쌀+맥류
14년	전북	군산	제희RPC	169	285	광역방제기	GAP쌀
10년	전북	김제	소목영농조합법인	65	102	공동육묘장	친환경쌀+맥류
13년	전북	김제	에쿠스영농조합법인	100	254	공동육묘장	쌀+맥류+시설감자
13년	전북	부안	동진협동RPC	174	310	공동육묘장	GAP쌀
09년	전북	익산	한그루영농법인	6	240	광역방제기	쌀+맥류
10년	전북	익산	송산영농조합법인	137	207	광역방제기	쌀+맥류+(상추)
14년	전북	익산	익산우리밀영농조합	64	327	공동육묘장	쌀+맥류
14년	전북	익산	중앙영농조합	119	151	광역방제기	쌀
14년	전북	익산	명천영농RPC	240	350	공동육묘장	친환경쌀+GAP쌀
14년	전북	익산	무형친환경영농조합	81	209	공동육묘장	친환경쌀
10년	전남	고흥	해창만고품질쌀단지	162	164	공동육묘장	간척지+(마늘+오이)
09년	전남	나주	동강작목반	42	154	광역방제기	고품질쌀
14년	전남	담양	농업회사법인(주)대동	120	122	광역방제기	쌀+맥류
14년	전남	보성	천명농업회사법인	87	120	공동육묘장	쌀+맥류+(토마토)
09년	전남	순천	별량최적경영체	195	153	광역방제기	쌀
13년	전남	순천	농업회사주농	351	60	공동육묘장	쌀+채소+딸기
10년	전남	영암	서호태백리쌀작목반	70	85	광역방제기	쌀
12년	전남	영암	농업회사법인빛가람(주)	55	240	무인헬기	친환경쌀+경축순환(무+배추+수박)
14년	전남	영암	기찬들영농조합법인	229	220	무인헬기	쌀+대봉시
14년	전남	영암	덕진농협	93	146	무인헬기	쌀
13년	전남	장성	농업회사법인한농연장성노령뜰(주)	1201	200	광역방제기	쌀
14년	전남	장흥	농업회사법인사자산쌀(주)	388	500	무인헬기	쌀+맥류
10년	전남	해남	오뚝이영농법인	32	120	공동육묘장	쌀+(양파)
09년	경북	상주	금화작목반	165	123	광역방제기	쌀+포도+감, 배 경축
13년	경북	상주	공검감꽃쌀영농조합법인	145	110	광역방제기	쌀+감+배
12년	경북	안동	안동농협	694	130	무인헬기	특수미
10년	경북	영덕	병곡생산단지	202	157	광역방제기	친환경쌀(시금치+보리)
09년	경북	의성	칠성작목반	210	204	광역방제기	고품질쌀
10년	경북	의성	구천작목반	186	250	광역방제기	고품질쌀+사과
10년	경북	포항	홍해쌀전업연구회	67	155	공동육묘장	쌀+(시금치)
09년	경남	김해	화목3통작목반	49	90	공동육묘장	쌀+맥류+(상추+ 토마토+참외)
12년	경남	밀양	밀양제일영농법인	270	150	무인헬기	쌀+맥류+(시금치+고 추+상추+딸기+단감)
10년	경남	산청	영실영농법인	131	182	광역방제기	쌀+맥류+조사료+ 한우+딸기+감

(2)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으로 본 작물재배상의 특징

- 시설장비 지원받은 들녘경영체가 속한 읍면단위의 농지조건을 보면
 - 답률(논 면적÷경지면적)이 75.2%로 전국평균(51.6%)보다 훨씬 높고,
 - 호당 경지면적도 1.84ha로 전국평균(1.38ha, 통계청 2010년 농업총조사)보다 0.46ha가 많음.
 - 경지분포, 호당 경지면적으로 보면 평야지대에 속하는 읍면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79 들녘경영체가 있는 읍면의 경지현황(60개 읍면)

(단위 : ha)

구분	농가수	(논+밭)면적	논면적	밭면적	과수원	호당 경지면적	답률
전체	55,327	96,967	76,359	20,608	4,557		75.2%
읍면당 평균	922	1,693 (100.0%)	1,273 (75.2%)	343 (20.3%)	77 (4.5%)	1.84	

- 들녘경영체 관내 읍면의 경우 논 면적이 1,000ha이상 되는 읍면의 비율이 63.3%로 대규모 평야지대 읍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 상대적으로 밭 면적이 500ha 이상 되는 읍면의 비율은 20.0%에 불과함.
 - 한편 200ha이상의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읍면의 비율은 11.7%임

표 80 읍면당 논 면적 및 밭 면적 규모별 읍면수(2010년 기준)

읍면당 논면적		읍면당 밭면적	
500ha미만	3 (5.0%)	100ha미만	10 (16.7%)
500~1000	19 (31.7%)	100~300ha	20 (33.3%)
1000~1500	21 (35.0%)	300~500ha	18 (30.0%)
1500~2000	6 (10.0%)	500~1,000ha	9 (15.0%)
2000ha이상	11 (18.3%)	1,000ha이상	3 (5.0%)
계	60(100.0%)	계	60(100.0%)

- 들녘경영체 관내지역 읍면의 경우 논 면적 중에서 이모작논의 비율이 13.5%로 전국 평균(2010, 8.9%)보다 높음.

표 81 들녘경영체 있는 읍면당 평균 논과 밭 현황

구분	호당 논면적	논면적	자기논	일모작 논	이모작 논	경지정리 논	자기논 비율	이모작 논비율
면적(ha)	1.38	1,273	760	1,115	172	1,058	59.7	13.5%
구분	호당 밭면적	밭면적	자기밭	경작한밭	과수원	자기밭비율		
면적(ha)	0.37	343	226	335	77	65.9%		

2. 지역·품목 맞춤형 육성모델 개발

2-1 맞춤형 육성모델 개발시 고려점

- 현재 쌀 중심으로 육성되는 들녘경영체를 장기적으로 지역·품목에 적합한 다양한 들녘경영체 육성모델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유형구분을 위한 고려점
 - 경지분포 구분 : 논, 밭, 과수원 등 분포 현황
 - 농업지대별 : 평야, 중산간, 산간
 - 논 이모작 가능 여부 : 기후조건, 토양조건으로 이모작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
 - 밭과 연계한 복합경영 여부
 - 축산(경축순환)과 연계 여부
 - 2·3차산업 연계정도(6차산업화 가능성)

표 82 지역특성별 들녘경영체의 유형 구분방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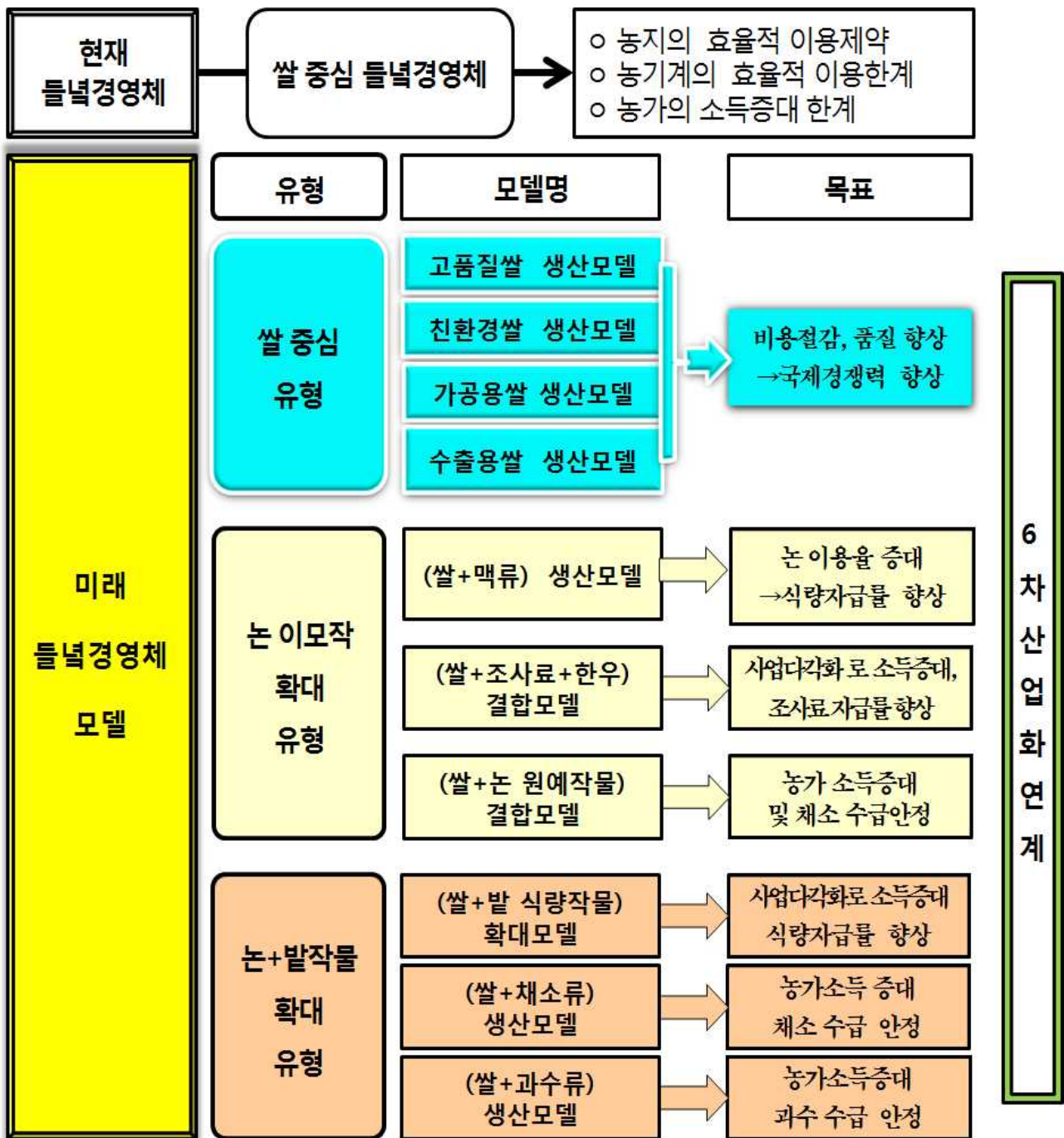
구분		농업지대 및 농지특성		
		평야지대 순답작	중간지대 답전혼합	산간지대 산간지역
사업내용 특성	이모작 여부	가능		
		불가능		
	친환경 실천 여부	실천		
		비실천		
	축산과 연계 여부	연계		
		비연계		
6차산업화 전개여부	2차산업 전개			
	3차산업 전개			

2-2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가.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주요 유형

- (1) 쌀 중심 들녘경영체 유형
- (2) 논 이모작 확대 유형
- (3) 논+밭작물 확대 유형

그림 24 들녘경영체 유형 및 유형별 주요 모델과 목표



나. 들녘경영체 육성모델별 목표

- 품목 유형별 육성모델개발의 기본
 - 비용절감, 품질향상 및 균일화

표 83 들녘경영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육성모델과 목표

유형별	육성 모델	목표
쌀 중심 들녘경영체 유형	① 고품질쌀 생산모델	○ 품질향상, 비용절감 →국제경쟁력 강화 →가공업체 납품
	② 친환경쌀 생산모델	
	③ 가공용쌀 생산모델	
	④ 수출용쌀 생산모델	
논 이모작 확대유형	⑤ (쌀+맥류) 생산모델	○ 논 이용률 증대 →곡물자급률 향상
	⑥ (쌀+조사료+한우) 결합모델	○ 농가의 소득증대, 경축순환 농업실현
	⑦ (쌀+논 원예작물) 결합모델	○ 농가의 소득증대
논+밭작물 확대유형	⑧ (쌀+밭 식량작물) 확대모델	○ 곡물자급률 향상
	⑨ (쌀+채소류) 생산모델	○ 채소 수급안정
	⑩ (쌀+과수류) 생산모델	○ 과수 수급안정

- 지역 특성·품목별 들녘경영체 육성모델을 개발을 통해
 - 시군 지자체에 지역특성 고려한 들녘경영체 육성방향 대안제시
 - 공동경영체를 추구하고자 하는 각 들녘경영체에 대해 벤치마킹 자료제공

다.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별 개발내용

- 모델별 현황과 문제점
 - 모델별 주요 현황과 문제점 제시
- 모델별 주요 정책 추진계획
 - 관련 정책과 정책 추진계획
- 모델별 사업추진전략
 - 사업목표와 전략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 생산-가공-판매 등 유통시스템
- 모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운영체계

○ 모델별 지원시스템 구축

- 모델별·단계별 지원내용과 연계하여 지원체계 구축
- 관계기관 관계사업과 연계방안 구축
 - *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과 연계가능성 검토
 -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과 연계가능성 검토
 - *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및 영농규모화사업
- 지원내용
 - * 품목별 특성에 맞는 지원내용 발굴
 - * 밭작물의 기계화 진척,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체계 검토

○ 기타 모델 활성화를 위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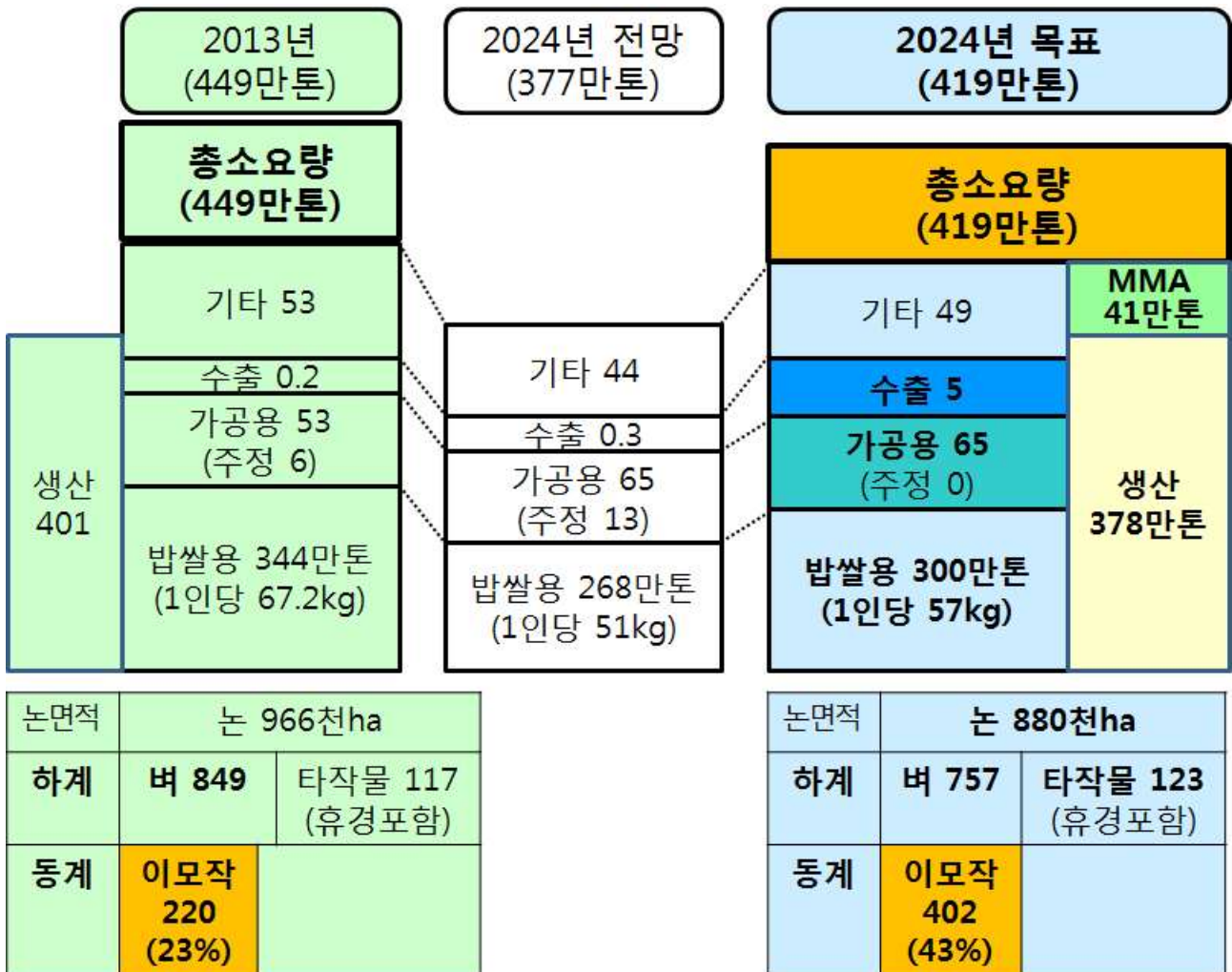
- 모델별 자율적인 수익창출방법
- 모델별 6차산업화 방향
- 모델별 지역농업 담당자 역할과 방향제시

3. 쌀 중심의 들녘경영체 유형

3-1 쌀 관세화 이후 쌀 생산 전망 및 목표치

- 2014년 쌀 관세화 이후 쌀 산업발전대책에서는 2024년 쌀 총 소요량 목표치를 419만 톤으로 결정하고 MMA물량 41만톤을 제외한 378만톤을 생산하는 목표치를 잡음.
 - 이 중 부문별 수요량으로 밥쌀용쌀 300만톤, 가공용쌀 65만톤, 수출 5만톤으로 산정하고 있음.
 - 이를 재배면적으로 논벼 757천ha 목표로 선정하고 있음

그림 25 쌀 생산 전망 및 목표치



자료 : 관계부처합동, [쌀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산업 발전대책], 2014.9, 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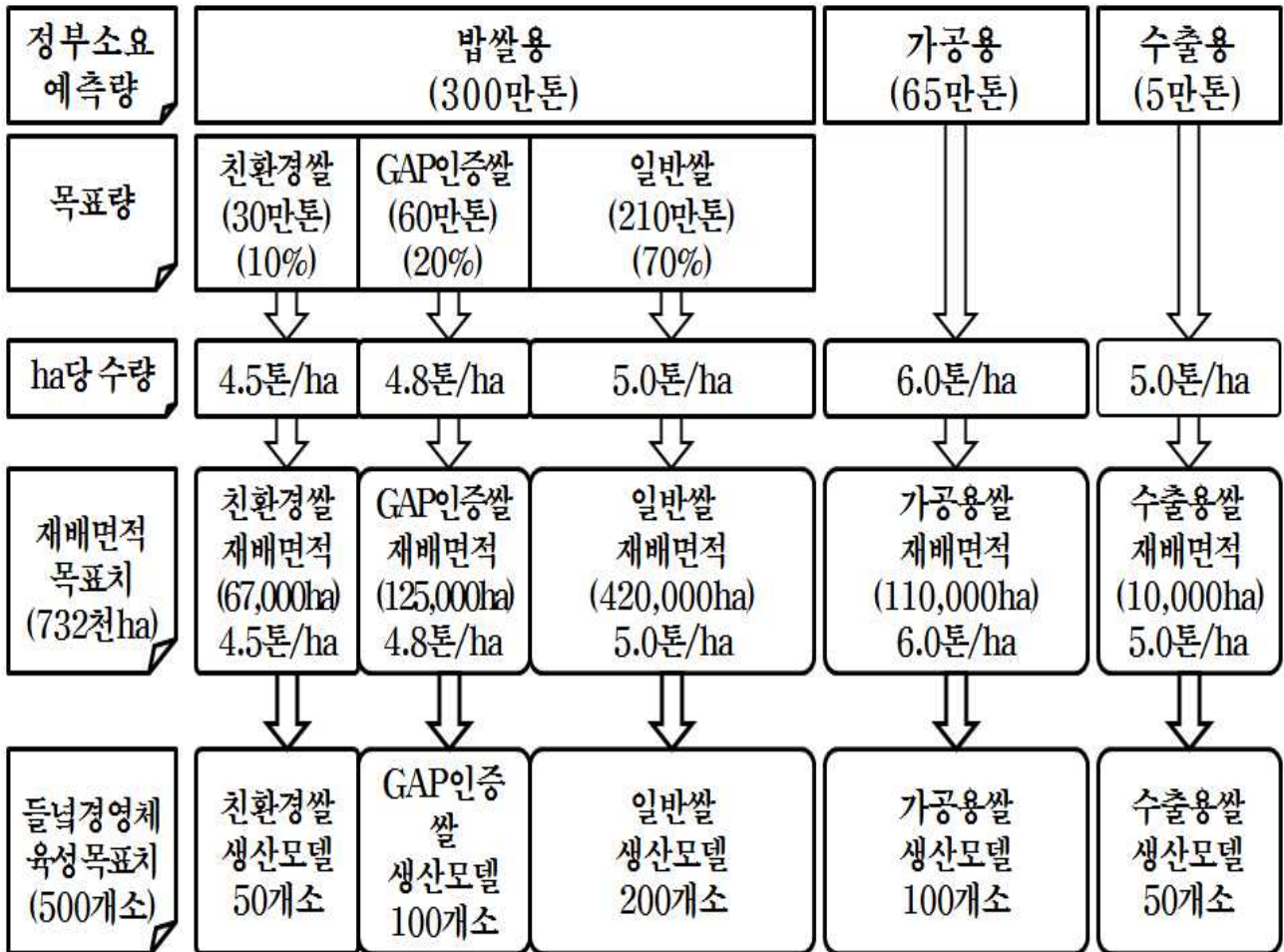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 한편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10)에서는 2017년까지 GAP인증 농산물과 친환경인증농산물의 비중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GAP인증농산물 비중 : 2012년(4%)에서 '17년(30%)로 확대
 -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중 : 2012년(7.3%)에서 '17년(15%)로 확대
- * 농림축산식품부,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3.10, 44쪽

3-2 쌀 중심 들녘경영체 유형

-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들녘경영체 63개소중에서 들녘경영체 전체는 아니지만 GAP인증쌀과 친환경인증쌀을 인증받은 들녘경영체가 38개소 있음.
 - GAP쌀 인증 들녘경영체 수 : 17개소(전체의 27.0%)
 - 친환경쌀 인증 들녘경영체 수 : 21개소(전체의 33.3%)
- 정부의 밥쌀용쌀 300만톤과 가공용쌀 65만톤 및 수출용쌀 5만톤을 어떻게 생산하여 공급하느냐가 쌀 개방시대에 매우 중요함.
 - 밥쌀용쌀의 경우는 외국쌀과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 가공용쌀의 경우는 가공회사의 요구에 따른 낮은 가격에 공급되어야 하며
 - 수출용쌀의 경우도 고품질쌀과 중저가쌀로 나누어 수출되어진다고 할 때, 품질과 가격경쟁이 요구되고 있음.
- 들녘경영체에서 농가의 조직화, 농지의 규모화, 집단화를 통하여 외국쌀과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있는 쌀을 생산하고, 쌀 소비촉진을 위해 비용절감을 통해 가공용쌀의 수요에 맞는 가격대의 쌀을 공급해야 함
- 따라서 쌀 중심의 들녘경영체의 유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 고품질쌀(GAP인증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 친환경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 가공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 수출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그림 26 쌀 용도별 쌀 생산목표량과 들녘경영체 육성방향



3-3 고품질쌀 생산모델

가. 고품질쌀 생산실태

- 2014년 GAP인증 받은 쌀면적은 34,368ha로 '14년 논벼 재배면적(814,334ha)의 4.2%에 불과함.
- 시도별로는 GAP인증면적은 강원, 경기, 전북 순이며,
- 특히 강원도의 경우 쌀 재배면적의 30%이상이 GAP인증을 받고 있음.

표 84 시도별 GAP쌀 인증 현황(2014년)

구분	'14년 논벼 재배면적 (A, ha)	인증면적(ha)		인증농가수(호)		인증건수(건)		인증면적 비율 (B/A)
		면적 (B)	비율	농가수	비율	건수	비율	
전국	814,334	34,368	100.0%	20,659	100.0%	336	100.0%	4.2%
경기	86,457	9,197	26.8%	6,746	32.7%	58	17.3%	10.6%
강원	33,107	10,083	29.3%	3,614	17.5%	14	4.2%	30.5%
충북	40,653	430	1.3%	347	1.7%	7	2.1%	1.1%
충남	148,665	3,518	10.2%	2,407	11.7%	26	7.7%	2.4%
전북	124,049	7,268	21.1%	4,302	20.8%	160	47.6%	5.9%
전남	168,763	1,544	4.5%	952	4.6%	33	9.8%	0.9%
경북	106,815	1,976	5.7%	1,889	9.1%	31	9.2%	1.8%
경남	76,134	186	0.5%	224	1.1%	3	0.9%	0.2%
광주	5,484	113	0.3%	123	0.6%	1	0.3%	2.1%
세종	2,313	44	0.1%	54	0.3%	2	0.6%	1.9%
인천	11,080	10	0.0%	1	0.0%	1	0.3%	0.1%

주 : 세종특별자치시의 쌀 재배면적은 연기군 재배면적으로 계상함.

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분석

나. 고품질쌀(GAP인증쌀) 정부의 주요 추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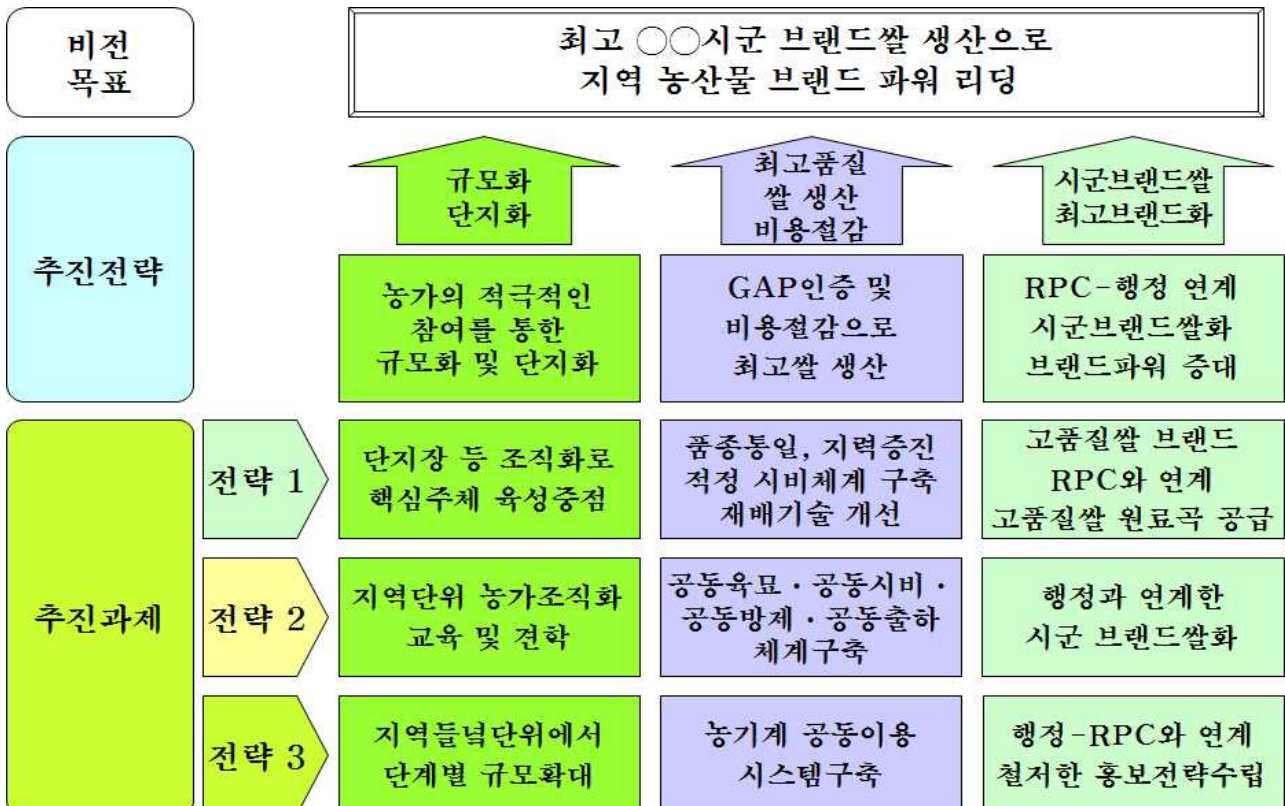
- 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 GAP 인증절차 간소화, 유통 선도조직 육성 및 정책사업간 연계 강화
- 인증제도는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단순화하고, 표시대상도 확대
- GAP인증농산물 비중 : 2012년(4%)에서 '17년(30%)로 확대

다. 사업추진전략

(1) 사업목표와 추진과제

- 일반회사의 경우 대부분 사업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등 구체적인 회사의 방침이 있으나, 농가 조직체의 경우 대부분이 사업의 비전과 추진전략이 거의 없음
- 들녘경영체의 경우도 20~30% 정도만이 사업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들녘경영체도 경영체별 사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등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철저한 경영관리 마인드가 필요함.
- [고품질쌀 생산형] 들녘경영체는 GAP인증을 받는 쌀 생산을 통하여
 - 시군 브랜드쌀과 연계하여 시군 브랜드쌀이 전국 최고쌀이 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임
- 추진전략으로는
 -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조직화, 규모화, 단지화를 도모하고,
 - GAP인증을 통하여 최고품질쌀 생산과 비용절감을 위한 기술체계를 구축하고,
 - 생산된 쌀의 우수브랜드화를 위한 행정-RPC와 연계하여 시군 브랜드쌀의 최고브랜드쌀 도모에 기여
-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아래와 같이 설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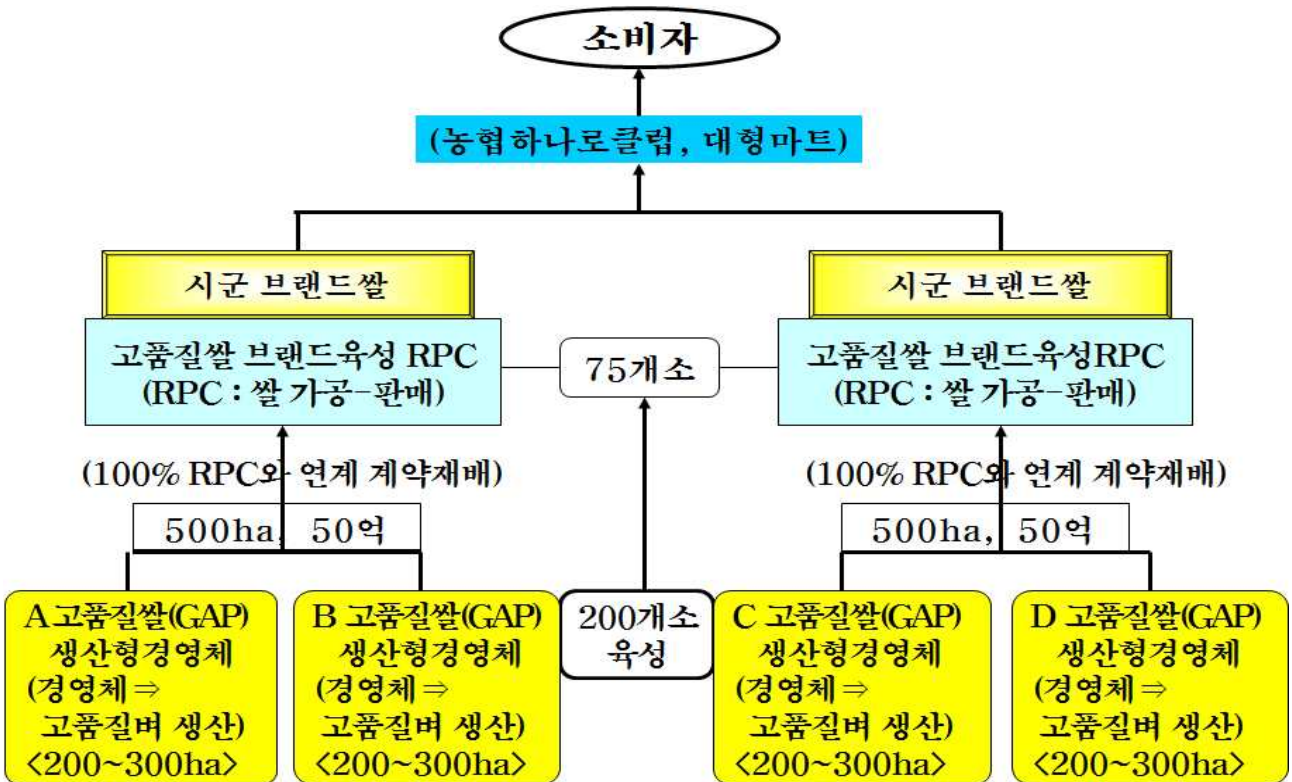
그림 27 [고품질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목표와 추진전략



(2) 고품질쌀 생산-유통 연계 추진시스템

- [고품질쌀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경우는 정부단위에서 추진하는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과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운영방향이 바람직함.
 - 200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단체협의회와 관련기관에서 매년 고품질브랜드 쌀 12개 선정, 선정후 고품질쌀로 인정되어 쌀 브랜드파워 형성에 크게 기여함
 - 2006년부터 쌀 가공RPC에 시설지원사업으로 75개소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들녘경영체에서 들녘에 따라 150~300ha를 조성, 품종통일과 고품질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고품질쌀 브랜드 미곡종합처리장(RPC)]와 연계 유통체계 구축
 - 1개 RPC에 2~3개 들녘경영체와 연계하여 고품질 브랜드쌀에 선정되어 시군 브랜드 쌀 브랜드파워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 RPC의 경우도 2~3개, 400~500ha 들녘경영체와 연계시
 - RPC의 경우, 전체 고품질쌀 매출액이 50억 정도 달성되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30% 수준이 되기 때문에 경영수지도 개선될 수 있음
- 따라서 이런 [고품질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200개소를 육성하여
 - 고품질쌀 브랜드 미곡종합처리장(75개소)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 우리쌀이 외국쌀과 품질경쟁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그림 28 고품질쌀 경영체 생산-유통 시스템



(3) 고품질-저비용쌀 생산 시스템

- [고품질쌀 생산형] 들녘경영체는 2015년도 쌀 관세화에 대비 지역단위에서 고품질쌀 생산으로 품질향상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경영체로서 의의가 있음.
 - 동시에 비용절감을 통하여 고품질쌀의 가격경쟁력도 고려되어야 함
- 한편으로는 지자체에서의 시군 브랜드쌀과 연계하여
 - 시군 브랜드쌀의 브랜드파워 형성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 현재 30개소 들녘경영체 중에서 63%가 이 유형에 속해 있음.
- 고품질-저비용쌀 생산체계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 각각의 생산과정에서 생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 이의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단위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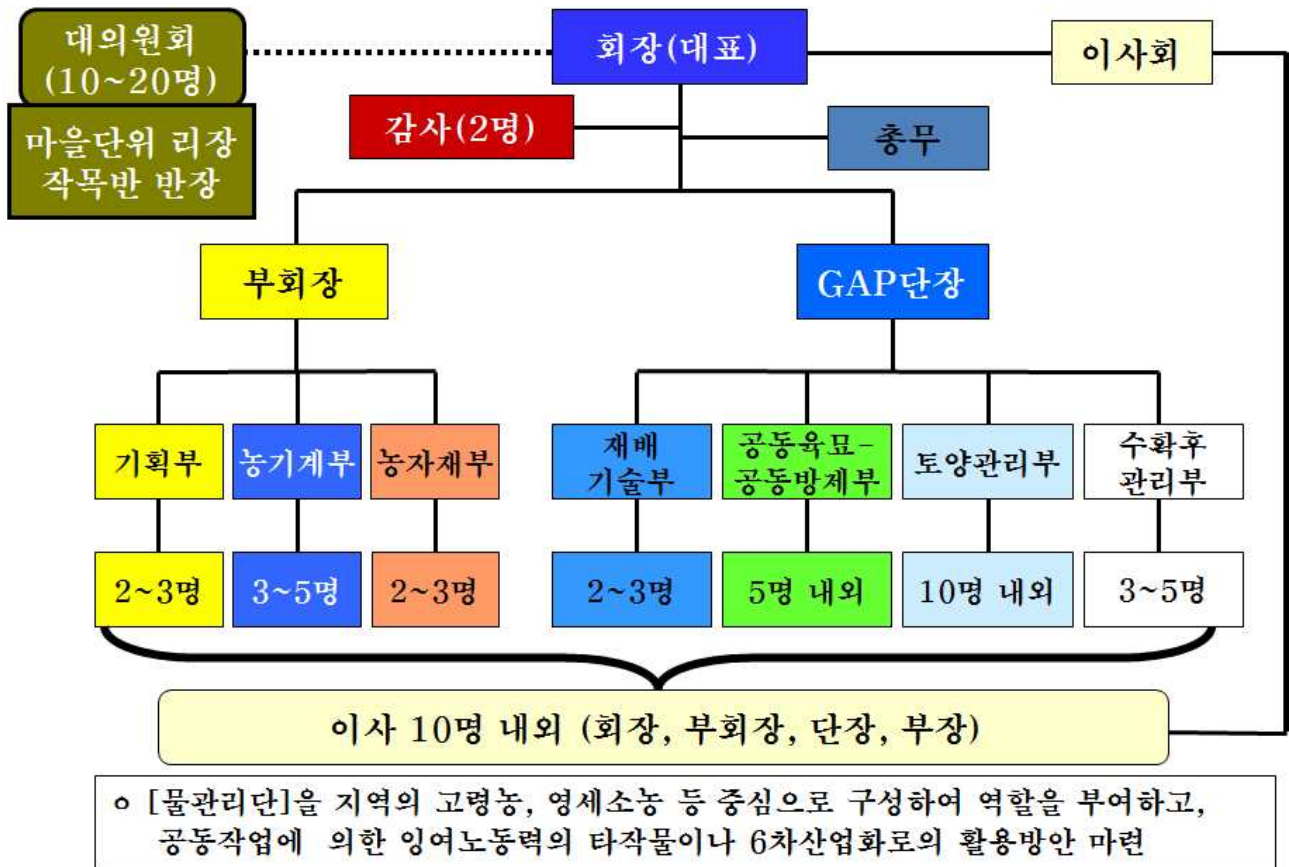
표 85 고품질쌀 생산과 비용절감을 위한 생산시스템 구축

구분	과정	관련 부문		추진 및 지원방안	비고	
		고품질	저비용			
벼	재배 관리	품종	품종통일,보급종	공동구입 배분	정부 보급종 공급	조직화 단지화 블럭화
		취아,육묘	공동육묘장에서	공동 생산	공동육묘장 보급	
		경운,정지	깊이같이	공동이용	농기계은행사업 연계	
		이앙,파종	적정주수	직파, 공동이용	농기계은행사업 연계	
		시비	공동시비, 저투입,유기질	공동시비 시비기술개발	지자체 지원	
		방제	저투입	공동방제	공동방제기	
		제초	친환경농법		친환경제초농법개발	
		물관리	공동관리(고령노동력 역할)			
		수확	GAP인증벼 수확 전용콤바인을 통한 공동작업)		농기계은행사업 연계	
	수확후 관리	건조	산물수매로 RPC수매, 저온건조		RPC건조-저장시설	RPC
저장		RPC에서 품종별, 브랜드별 저장		지원		
쌀	가공기술	품질차별화	RPC통합	통합RPC지원	통합	
	판매전략	시군브랜드쌀 개발 및 홍보				

(4) 경영체 조직체계

- 일반회사의 경우, 수직적 수평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가 조직체 경우, 조직체계도는 거의 없는 실정임.
- 들녘경영체의 경우 전체의 20% 정도만이 조직체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총무로만 구성됨.
 - 들녘경영체의 경우, 200ha전후로 조직화된 경영체로 다양한 사업전개, 공동작업, 공동경영을 통해 많은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체계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고품질쌀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경우
 -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GAP인증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GAP단장을 두고 GAP인증을 위한 재배기술부, 공동육묘-공동방제부, 토양관리부, 수확후관리부 등을 구성하여 GAP인증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직구성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대규모 생산의 경우 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령농 중심으로 물 관리단 조직도 필요

그림 29 [고품질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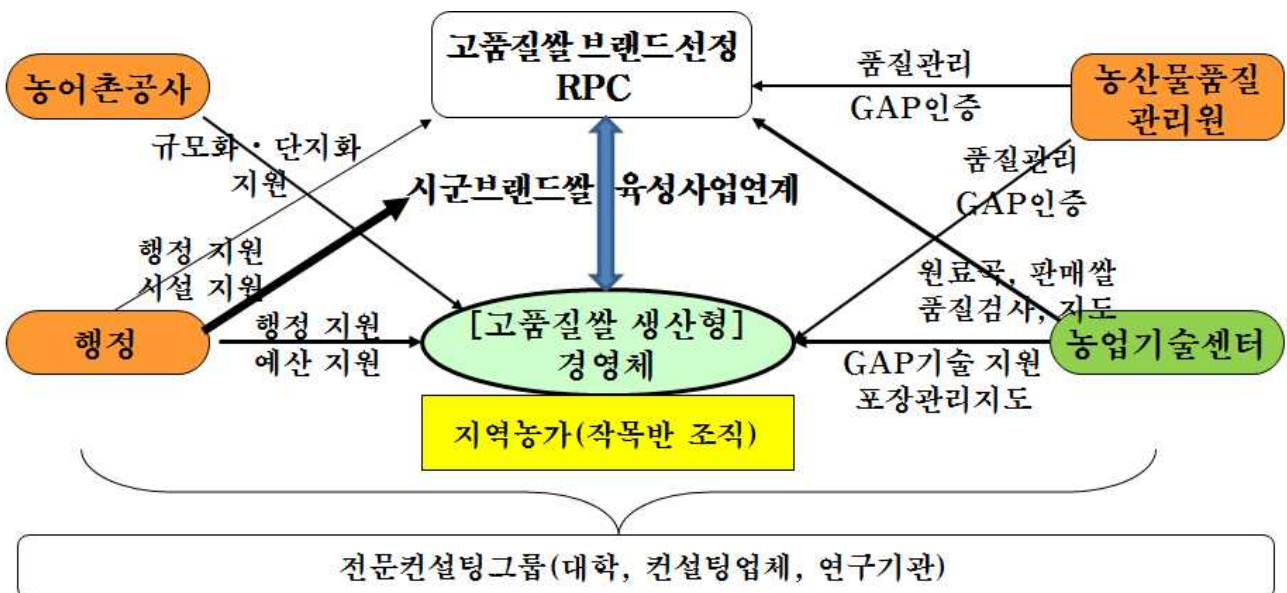


라 지원시스템

(1) 산학연관 중간지원체계 구축

- GAP인증을 통한 고품질쌀 생산에 의한 품질향상으로 쌀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산학연관 중간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첫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GAP인증을 위한 농가와 RPC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 필요
- 둘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쌀 원료곡 생산단지인 고품질쌀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생산단지에 대한 재배기술교육, 포장관리지도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 고품질쌀 가공 RPC에 대해서는 원료곡과 판매 쌀에 대하여 월 1회이상의 품질검사와 지도 필요
- 넷째,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RPC에서는 [GAP인증벼]에 대해 수확후 관리인 건조-저장-가공에 차별화를 도모해야 함
 - 일반벼와 차별적으로 건조하고, 고품질 원료곡 전용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며,
 - 고품질쌀 전용 가공라인에서 가공해야 함.
- 다섯째, 행정에서는 [GAP인증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다양한 행정지원 등이 요구됨
 - GAP인증쌀의 시군 브랜드화와 시군 브랜드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 시군 브랜드쌀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전략 수립
-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규모화사업을 통해 들녘경영체가 들녘단위에서 규모화, 단지화가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그림 30 [고품질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2) 지원내용

- [고품질쌀 생산형] 들녘경영체에는 고품질쌀 생산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장비 및 GAP인증사업 관련 지원정책이 필요
- 기본적인 지원내용
 -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광역살포기, 무인헬기) 지원
 - GAP인증쌀 전용 콤바인 지원(지역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한 들녘경영체 우선 지원책 마련)
- GAP인증에 필요한 지원내용
 - 시군단위에서 [시군브랜드쌀] 육성을 위한 지원책내에 GAP인증에 필요한 자금지원

3-4 친환경쌀 생산모델

가. 친환경쌀 생산현황

- 2010년 저농약 폐지(15년까지 유예)로 친환경인증면적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 2014년 친환경쌀 인증면적은 55,874ha로 전체 재배면적의 4.2% 수준임
 - 친환경인증쌀의 경우는 전남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전북, 경북, 충남 순이며,
 - 전남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친환경인증목표치에 대부분 미달상태임
 - 친환경 인증유형별로는 무농약이 80.4%, 유기농이 17.1%임

표 86 시도별 친환경인증쌀 유형별 인증 면적 비교(2014년)

구분	14년논벼 재배면적 (A, ha)	합계(B, ha)		무농약(ha)		유기농(ha)		저농약(ha)		인증면적 비율 (B/A)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국	814,334	55,874 (100.0%)	100%	44,915 (80.4%)	100%	9,544 (17.1%)	100%	1,415 (2.5%)	100%	4.2%
경기	86,457	2,660	4.8%	1,838	4.1%	812	8.5%	11	0.8%	3.1%
강원	33,107	1,922	3.4%	1,354	3.0%	536	5.6%	32	2.3%	5.8%
충북	40,653	1,995	3.6%	1,451	3.2%	545	5.7%		0.0%	4.9%
충남	148,665	3,275	5.9%	1,821	4.1%	1,453	15.2%	1	0.1%	2.2%
전북	124,049	4,206	7.5%	2,924	6.5%	1,277	13.4%	5	0.3%	3.4%
전남	168,763	32,397	58.0%	29,229	65.1%	3,161	33.1%	7	0.5%	19.2%
경북	106,815	4,445	8.0%	3,056	6.8%	851	8.9%	538	38.0%	4.2%
경남	76,134	3,491	6.2%	2,019	4.5%	753	7.9%	719	50.8%	4.6%
인천	11,080	926	1.7%	791	1.8%	135	1.4%			8.4%
광주	5,484	230	0.4%	229	0.5%	1	0.0%			4.2%
울산	5,475	159	0.3%	82	0.2%		0.0%	77	5.4%	2.9%
대구	2,966	74	0.1%	52	0.1%	1	0.0%	22	1.6%	2.5%
세종	2,313	40	0.1%	19	0.0%	22	0.2%			1.7%
부산	3,056	23	0.0%	23	0.1%		0.0%			0.8%
서울	306	17	0.0%	17	0.0%		0.0%			5.6%
대전	1,312	14	0.0%	10	0.0%		0.0%	4	0.3%	1.1%

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분석

나.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의 주요 추진계획

- 친환경인증 농산물 비중을 2012년(7.3%)에서 '17년(15%)로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 친환경 · 안전관리 기반을 생산부터 소비 전 과정에 걸쳐 구축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소비 활성화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 *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직불제 확충, 재배기술 보급체계 구축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
- *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강화, 소비자 교육·홍보 및 가공산업을 확대하여 차별적 유통채널 확보

○ 친환경인증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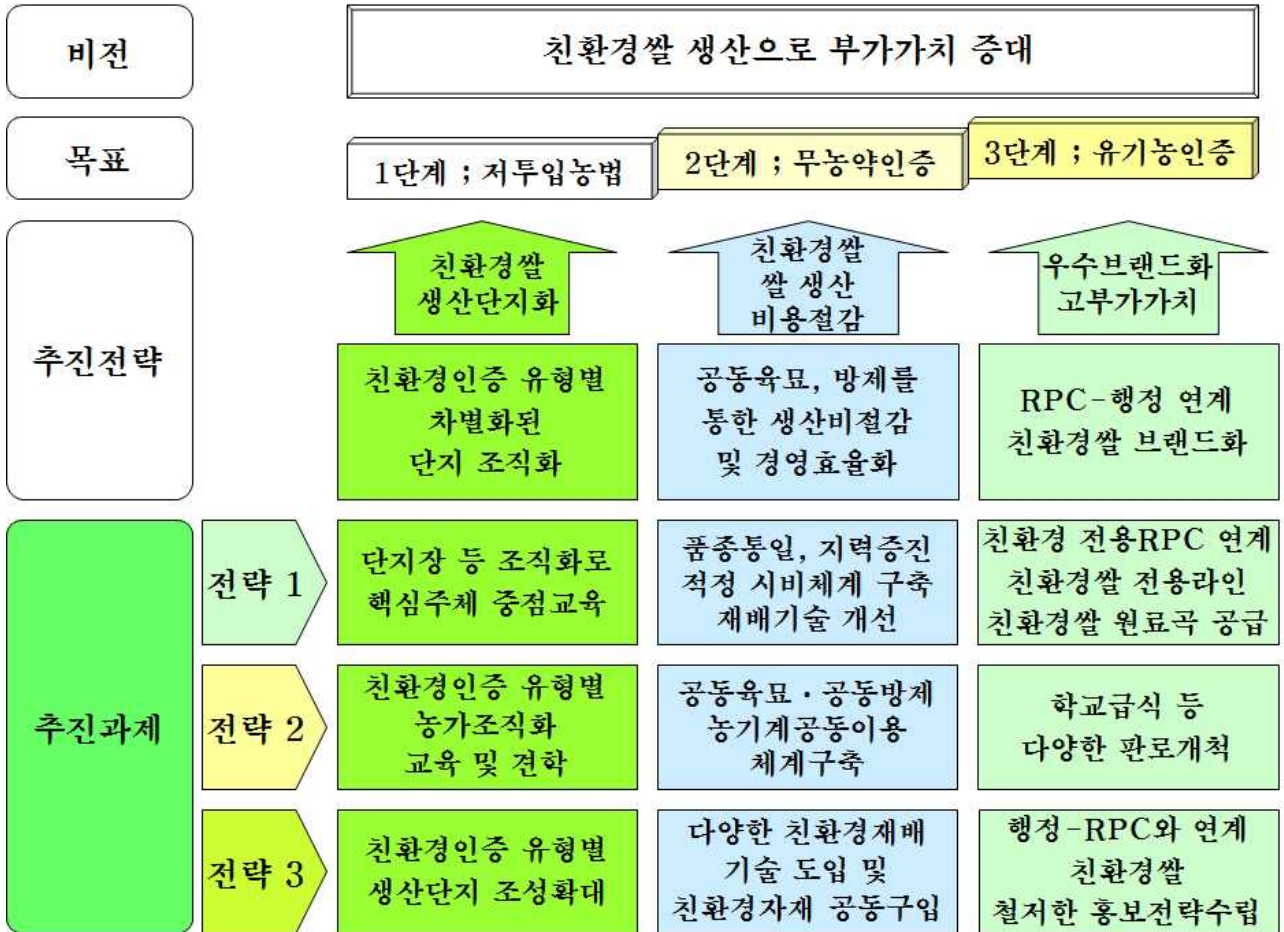
- 친환경 단지·지구 조성 확대 및 사후관리(이행률 점검 등) 강화
 - * 친환경 단지/지구 : ('13) 44개소 / 1,112개소 → ('17) 60 / 1,300
- 친환경농업 지속 실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친환경직불제 개선('16)
 - * 지급기간(유기) 변경/지급단가(유기·무농약) : 품목 미구분 → 품목별 차등
- 유기농 생산·유통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전문기관 육성, 우수기술 보유 농업인 발굴·지원을 통한 농가 기술 보급체계 구축
- 농업환경 보존·개선을 위한 농업 환경자원 관리 강화('14~)
 - * 농업환경지표 개발·관리를 통해 정책의 환경 개선 효과 평가·환류 추진

다. 사업추진전략

(1) 비전과 추진과제

- 친환경농업 실천은 생산면에서나 판매면에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쌀 생산 들녘경영체의 경우는 뚜렷한 목표와 추진과제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임.
- 친환경쌀 생산의 조직화의 경우는 기존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조직화가 잘 되어 있으나,
 - 아직은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농지의 집단화, 단지화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친환경벼 생산농지의 집단화 단지화를 중심으로 한 조직화가 가장 중요함
 - 이를 위해 주변농가의 참여유도를 위한 교육, 선진지견학 등도 매우 중요하며
 - 주변농가의 농지임차를 통한 친환경농업의 단지화 추진도 하나의 방법임
-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위한 재배기술상의 추진과제임
 - 친환경 재배기술의 매뉴얼 작성과 보급
 - 공동육묘와 공동방제, 친환경벼 전용 콤바인에 의한 수확과 건조, 저장시스템 구축
- 친환경쌀 생산-가공-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 친환경쌀 전용 가공라인을 갖춘 RPC에서의 친환경쌀 가공
 - 행정과 연계하여 학교급식, 친환경 매장과 연계한 친환경쌀 판매전략 수립

그림 31 [친환경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목표와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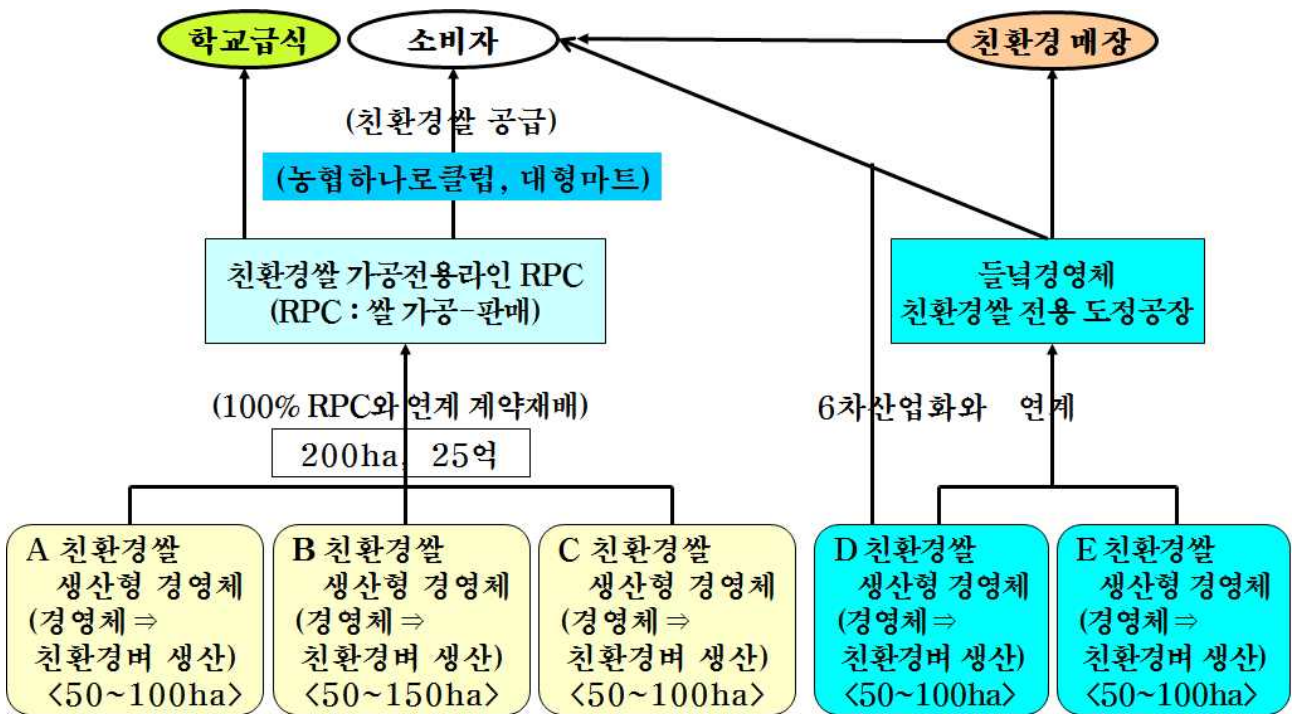
(2) 친환경쌀 생산-가공 유통시스템 구축

- 친환경쌀의 경우 소비자나 유통업자의 친환경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 소비자와 유통업자에 대한 친환경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 친환경벼 생산농지의 집단화, 단지화가 기초이며,
 - RPC에서는 친환경벼 전용 건조-저장시설이 필요하고
 - 친환경쌀 전용 가공라인을 가지고 차별적인 가공이 절대 필요
- 행정과 RPC의 연계를 통한 친환경쌀의 다양한 수요처 확보 및 홍보전략 수립
 - 지역단위 학교급식이나 다양한 친환경 판매매장과의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처 확보가 중요
 - 이를 위해 RPC의 경우 판매처와 판매량을 고려하여 친환경쌀 경영체와 계약재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1개 친환경쌀 생산단지의 경우 보통 30~100ha수준이므로 2~3개 생산단지와 계약재배 실시로 200ha 규모(900톤)와 연계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 시군단위에서도 친환경쌀을 시군 브랜드의 자브랜드화하여 브랜드 파워형성 필요
 - 예를 들면 김제시 지평선쌀(母브랜드), 지평선무농약쌀(子브랜드, (주)새만금농산), 지평선유기농쌀(子브랜드, 공덕농협)로 브랜드파워 형성과 부가가치 증대
- 지역 RPC에서 친환경쌀 생산에 대한 의욕이 없고 들녘경영체 자체에 소형 도정라인이 있을 경우에는 들녘경영체 자체에서 친환경쌀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일관시스템 구축도 필요함
 - 단, 이 경우에는 안정적인 친환경 수요처 확대가 필요한데,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나 지역 학교급식과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 모색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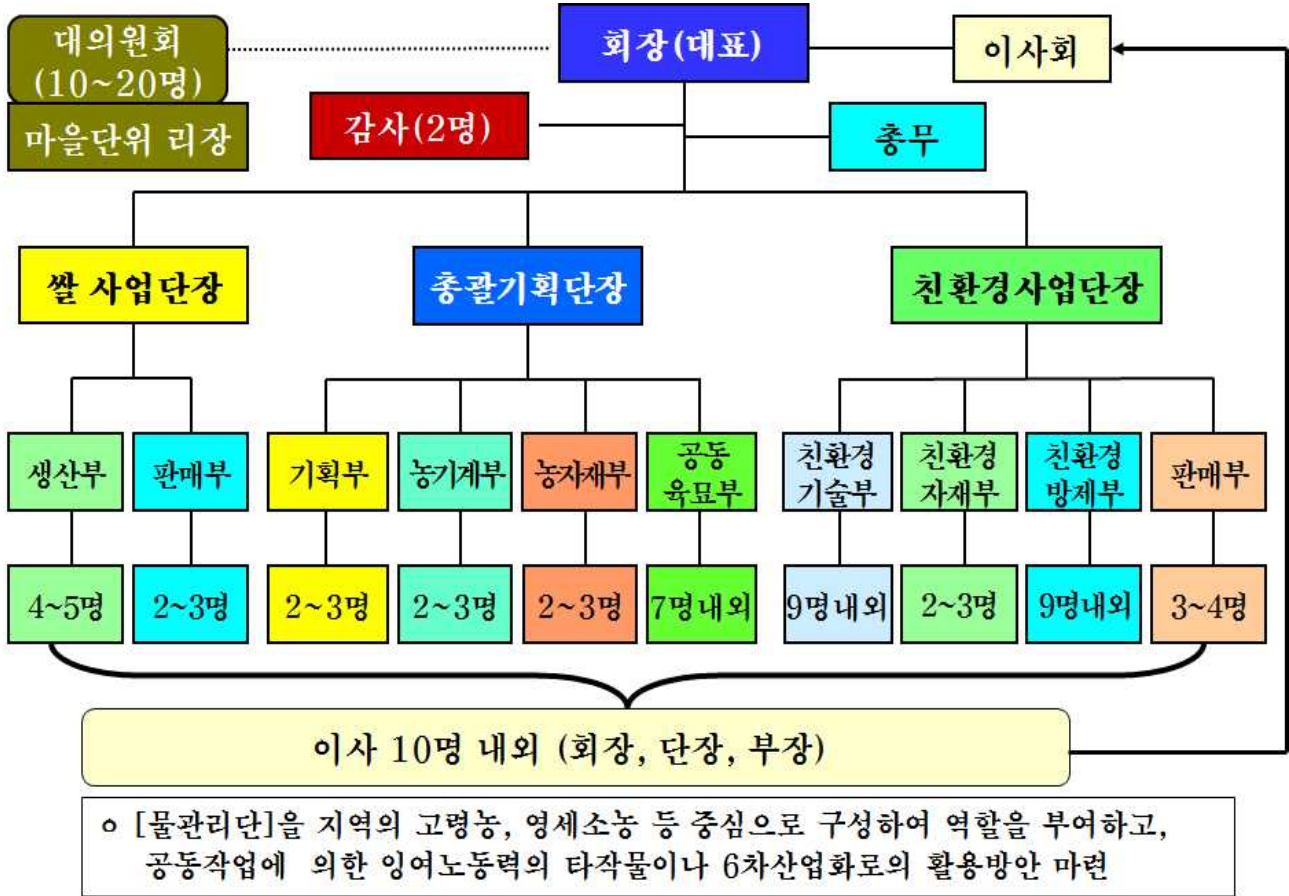
그림 32 친환경쌀 생산-가공-유통 시스템



(3) 친환경쌀 들녘경영체 조직도

- [친환경쌀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경우 생산되는 모든 쌀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 총괄기획단을 만들어 경영체 전체적인 기획, 공동육묘, 농자재, 농기계 부분을 담당
 - 일반쌀 생산의 경우는 생산부와 판매부를 설치함
- 특히 [친환경쌀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경우 친환경사업단을 구성하여
 - 친환경기술부, 친환경자재부, 친환경방제부, 판매부 등을 두어 친환경쌀 전체에 대한 기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그림 33 [친환경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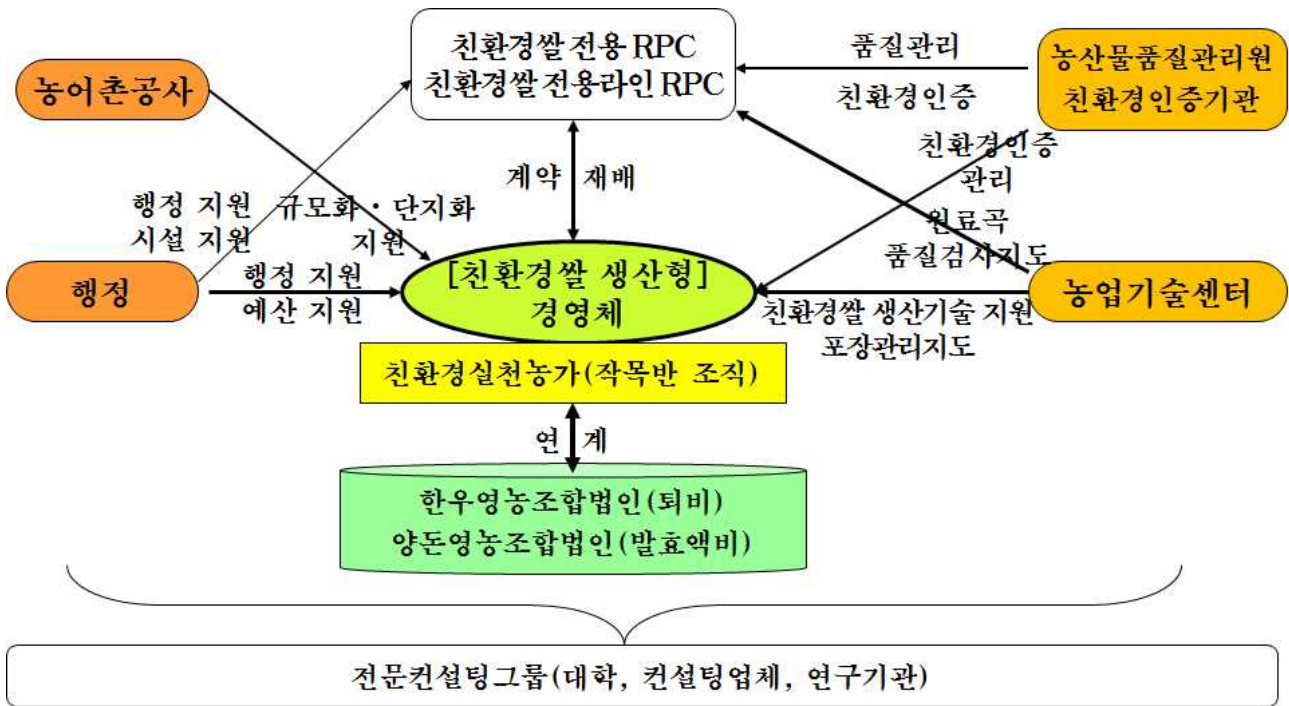


라. 지원시스템

(1) 산학연관 중간지원체계 구축

- [친환경쌀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경우 산학연관 중간지원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함
- [친환경쌀 생산형] 들녘경영체에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 친환경 생산단지에 대한 철저한 친환경 재배기술교육이 필요하고, 철저한 포장관리가 중요하며,
 - * 또한 RPC에 대해서도 원료곡과 판매쌀에 대한 철저한 품질검사와 결과에 따른 지도가 수요자의 신뢰를 얻는데 가장 중요함.
 - 친환경인증기관의 친환경 인증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인증후 관리가 매우 중요
-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 땅심 기르기를 위한 축산관련 법인체와의 연계를 통한 양질의 발효액비와 퇴비의 안정인 공급은 비용절감과 연계하여 매우 중요함

그림 34 [친환경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산학연관 중간지원체계



(2) 지원내용

- [친환경쌀 생산형] 들녘경영체에는 친환경쌀 생산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장비 및 GAP인증사업 관련 지원정책이 필요
- 기본적인 지원내용
 -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광역살포기, 무인헬기)
 - 친환경벼 전용 수확 콤바인(지역농협 농기계은행사업을 통한 지원책 마련)
-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지원내용
 - 시군단위에서 [친환경쌀] 육성을 위한 지원책내에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우렁이 사육장 등 시설장비 지원

3-5 가공용쌀 생산모델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민 식생활의 간편화 경향으로 전체 쌀 소비량은 감소추세이나 가공용쌀 소비량은 증가추세임.
 - 밥쌀 1인당 소비량 : 2008년(75.8kg)→'10년(72.8)→'13년(67.2kg)
 - 가공용쌀 1인당 소비량 : 2008년(4.6kg)→'10년(6.0)→'13년(9.2kg)
- 2011~'13년까지 한시적으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의 일환으로 가공용쌀 계약재배 시범사업이 이루어져 가공용쌀 재배면적이 '13년 3,765ha까지 재배되고 지원됨.
 - 한시적으로 ha당 2,200천원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이 중단됨으로써 가공용쌀 계약재배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짐.
- 이에 따라 가공용쌀 생산농가나 쌀 가공업체는 사업의 지속성에 어려움.

표 87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에 의한 가공용쌀 계약재배 시범사업

구분	2011	2012	2013
재배시군	21	23	23
참여조직(개소)	30	50	50
계약면적(ha)	902.4	2,785.6	3,765.3
(조직당 평균면적, ha)	(30.1ha)	(55.7ha)	(75.3ha)
계약단가(원/kg, 백미)	1,454	1,718	1,642
공급단가(원/kg, 백미)	1,454	1,718	
보조지원(천원/ha)	2,200	2,200	2,200

자료 : 식량산업과 내부자료

나. 모델별 정부의 주요 추진정책

- 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원료곡 안정 공급 체계 확립, R&D 확대
 - 간척지 등을 활용한 가공용쌀 재배단지를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하고, 가공용 다수확 품종재배를 연계하여 원료조달 기반확충
 - *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 : 2015년(3천ha)→ '18년(10천ha)
- 신제품 개발, 초다수성 품종개발 등 R&D 확대
 - 다수확품종 : 현재 생산단수(7.3톤/ha)→'17년(8.5톤/ha)로 확대
- 부가가치가 높은 쌀 가공품 수출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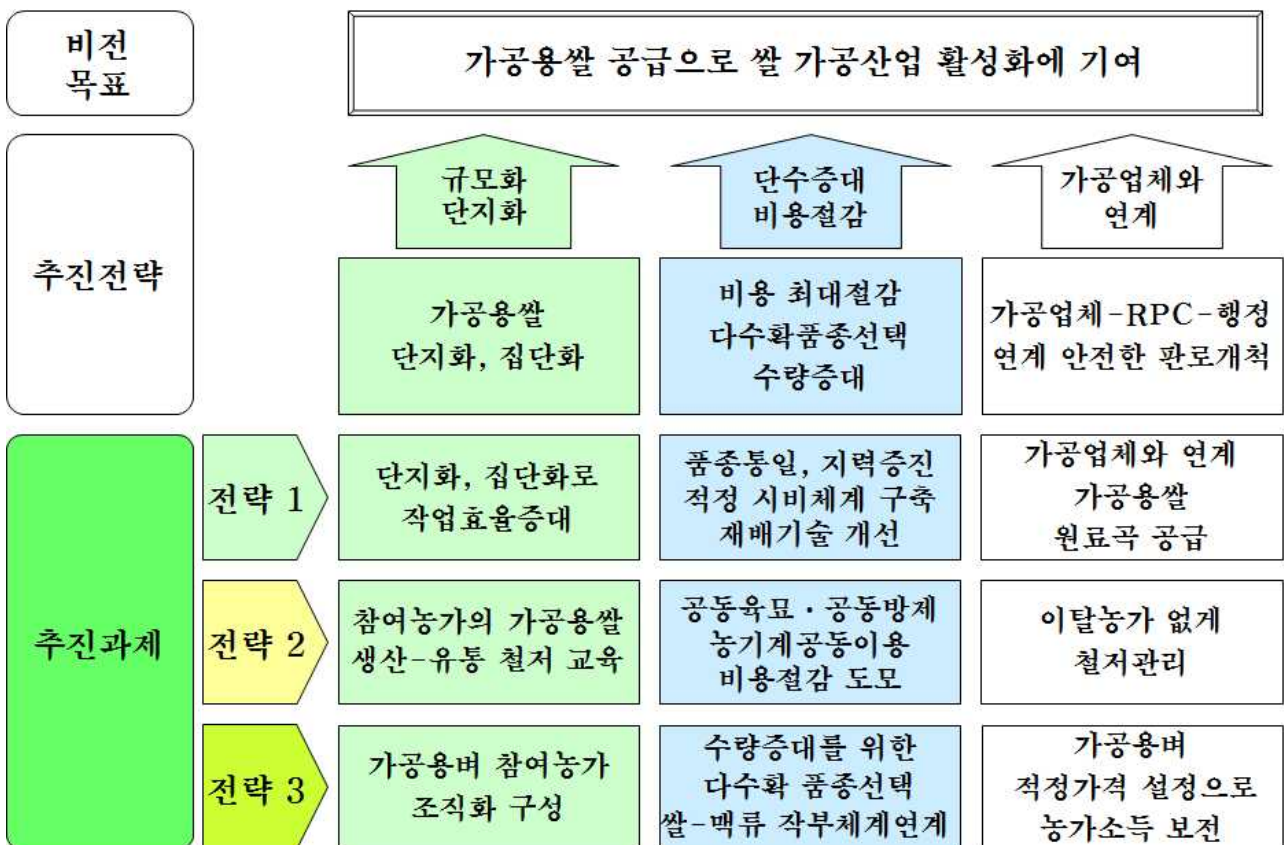
- 2014년(56백만\$)→ '15년(78백만\$)
- 부가가치액 : 국산쌀(36천원/20kg)→막걸리(140천원)→전통떡(161천원)→무균밥(283천원)

다. 사업추진전략

(1) 비전과 추진과제

- 밥쌀용 쌀 소비감소에 따라 가공용쌀 생산은 쌀 소비촉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문임
- 가공용쌀 생산의 경우 생산된 가공용벼의 일반벼로 둔갑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 따라서 가공용쌀 생산은 개인보다는 들녘경영체와 같은 조직경영체를 통해 생산필요
 - 이를 위해 가공용쌀 생산을 위한 농가 조직화와 생산-유통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
- 가공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량증대와 비용절감을 통하여 농가의 안정소득을 보전함과 동시에 적정가격으로 쌀가공업체에 납품하는 것임.
 - 따라서 가공용벼 생산을 위한 다수확품종의 안정생산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적정시비체계 등 재배기술 구축이 중요하며
 - 공동육묘-공동방제, 농기계 공동이용 등 비용절감방안 모색이 중요
 - 생산된 가공용벼의 적정 공급가격 설정도 매우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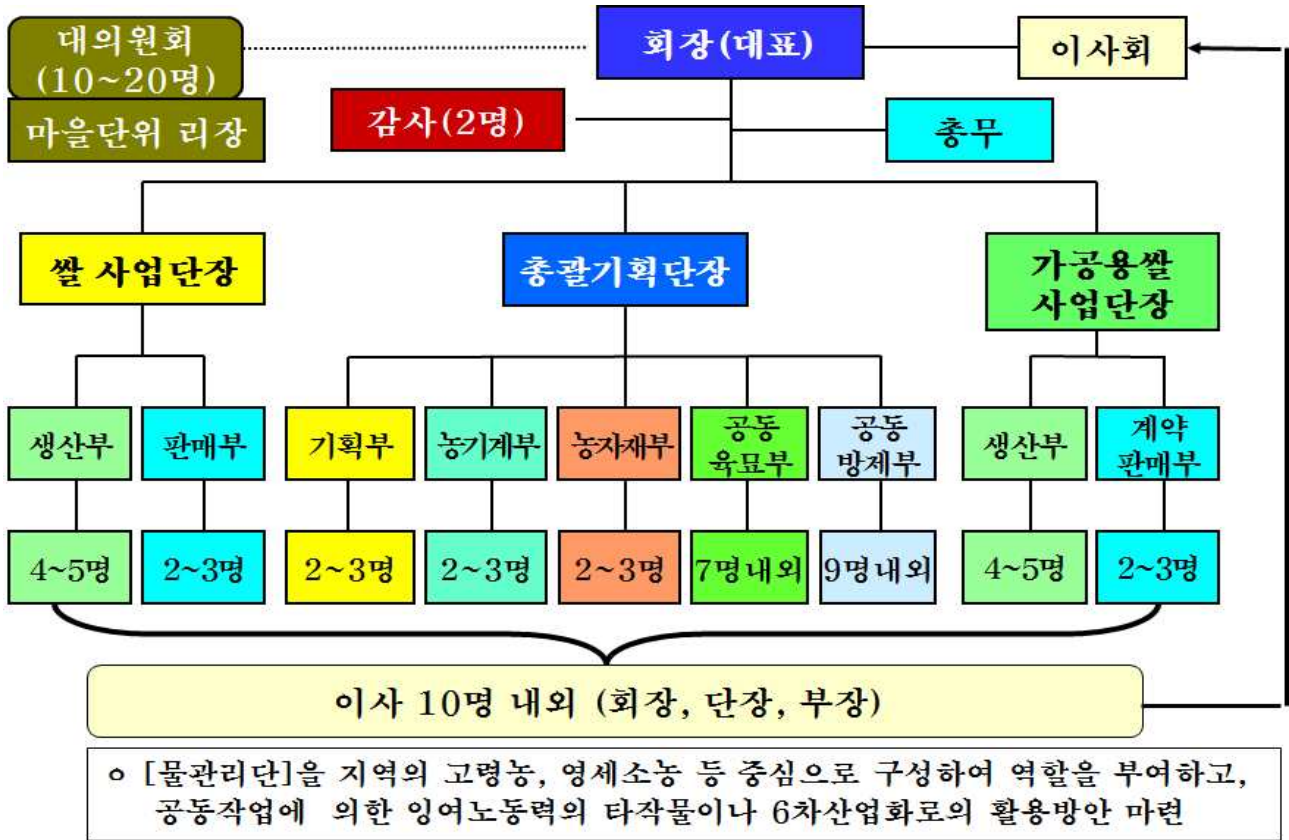
그림 35 [가공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목표와 추진전략



(2) 가공용쌀 들녘경영체 조직도

- [가공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조직도도 친환경쌀 들녘경영체의 조직도와 유사
- 특히 유의점은 가공용쌀 사업단에 계약판매부의 경우는
 - 쌀 가공업체와 계약재배와 판매부문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변 가공용쌀 생산 들녘경영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적정 판매가격을 받아 농가의 쌀소득 보전과 쌀 가공업체에 적정가격을 납품함으로써 쌀 가공부문을 통한 경쟁력확보가 이루어져 쌀 소비촉진이 이루어질 것임

그림 36 [가공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라. 지원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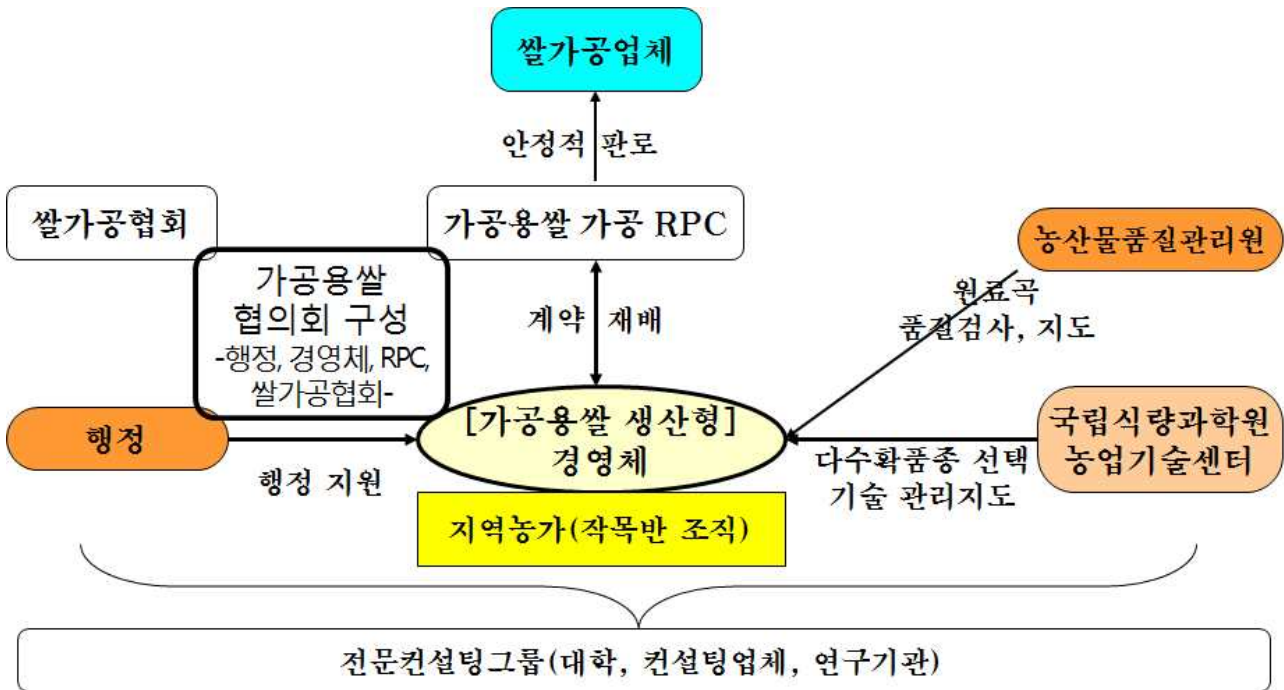
(1) 산학연관 중간지원체계 구축

- [가공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경우 적정가격 산정과 철저한 계약재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군단위나 도 단위를 중심으로 [가공용쌀 생산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이 협의회에는 행정기관, 들녘경영체, RPC, 쌀 가공협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 계약재배 현황, 계약협약 준수, 출하가격 및 출하량 조절 등을 협의하여 결정.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 가공용쌀의 경우 낮은 출하가격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10a당 생산량이 매우 중요
 - 이를 위해 가공적성에 맞는 다수확품종의 선택, 다수확체계 기술도입이 중요
 - 국립식량과학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에 맞는 다수확품종 선정과 다수확재배기술에 대한 기술지도와 교육이 매우 중요함.
 - 행정에서는 가공용쌀 생산 들녘경영체가 효율적으로 가공용쌀 생산을 위한 행정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

그림 37 [가공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산학연관 중간지원조직



(2)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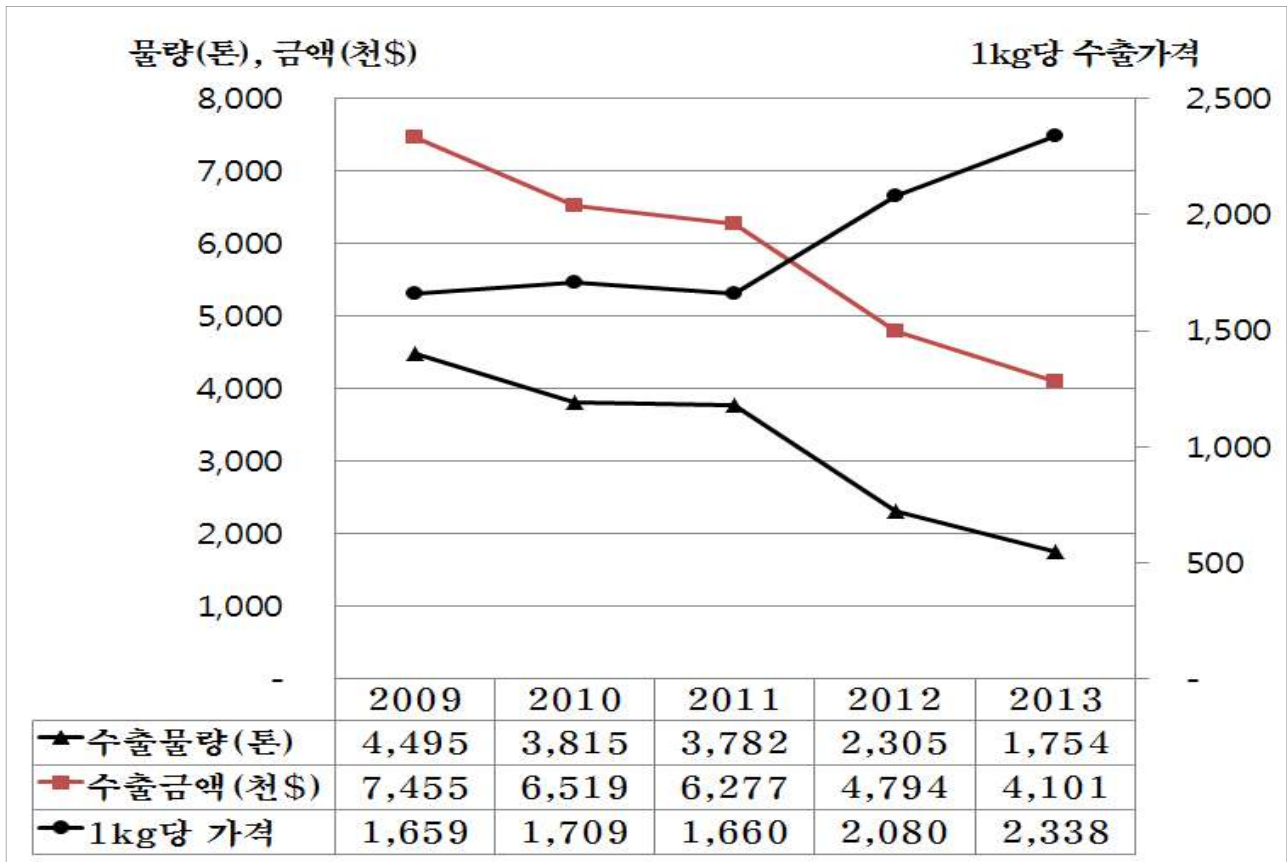
- 가공용쌀 생산 들녘경영체에는 가공용쌀 생산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기본적인 지원내용
 -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광역살포기, 무인헬기)
- 특히 가공용쌀 생산의 경우는 비용절감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과 연계하여 경영체 면적에 필요한 농기계 투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 최대 비용절감 가능액을 계측하여, 계약재배단가를 산정하여,
 -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 쌀 가공업체에 최대 가능 납품액이 얼마인가를 산정해 보아야 함.

3-6 수출용쌀 생산모델

가. 현황과 문제점

- 2007년 전복쌀의 미국수출을 계기로 우리쌀의 외국수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수출추천은 밥쌀용 쌀 수입량 이내에서 신청자 순으로 추천
 - 한도물량 : '07년(34천톤), '08년(47), '10년(80), '11년(98), '12년(104), '13년(101천톤)
- 수출물량은 2009년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쌀의 kg당 평균 수출가격은 초기에는 낮은 가격에 형성되었으나, 점진적으로 국내 판매가격과 유사한 가격에 수출되고 있음

그림 38 우리쌀 수출실적 비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2014.3

- 주요 쌀 수출대상국은
 - 호주가 가장 큰 대상국으로 전체 수출물량의 약 40%를 점하고 있으며
 - 나머지 말레이시아, 일본, 홍콩, 미국, 러시아 등은 전체 물량의 5~9% 수준임

표 88 최근 국가별 쌀 수출실적

(단위 : 천\$)

구분	2011	2012	2013	2013.10 (A)	2014.10 (B)	증감률 (B/A)	합계
전체	6,439 (100.0%)	4,794 (100.0%)	4,101 (100.0%)	3,416	4,050 (100.0%)	18.6	19,384 (100.0%)
호주	2,600 (40.4%)	2,099 (43.8%)	1,526 (37.2%)	1,351	1,259 (31.1%)	-6.8	7,484 (38.6%)
일본	35 (0.5%)	32 (0.7%)	419 (10.2%)	246	536 (13.2%)	118.16	1,022 (5.3%)
말레이시아	673 (10.5%)	549 (11.5%)	315 (7.7%)	267	200 (4.9%)	-25.07	1,737 (9.0%)
홍콩	296 (4.6%)	190 (4.0%)	292 (7.1%)	242	327 (8.1%)	35.18	1,105 (5.7%)
미국	258 (4.0%)	189 (3.9%)	270 (6.6%)	255	299 (7.4%)	17.33	1,016 (5.2%)
러시아	113 (1.8%)	157 (3.3%)	250 (6.1%)	243	256 (6.3%)	5.24	776 (4.0%)
기타	2,464 (38.3%)	1,578 (32.9%)	1,029 (25.1%)	813	1,173 (29.0%)	44.3	6,244 (32.2%)

주 : 기타국가는 뉴질랜드, 영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독일, 캐나다 등임
 자료 : 식량산업과 내부자료, 2014.11

나. 모델별 정부의 주요 추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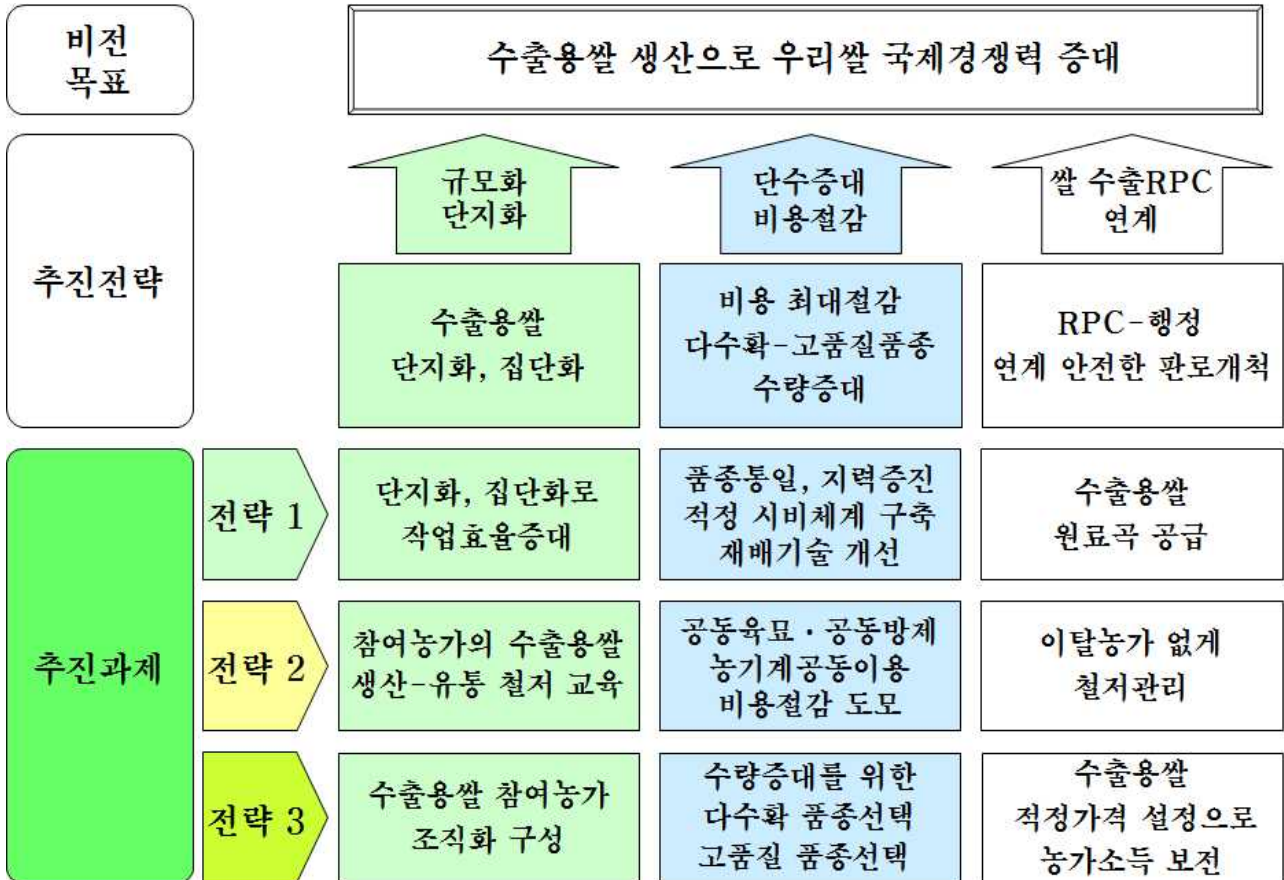
- 쌀 수출은 아직 본격적인 계획은 없으며, 쌀 가공식품 수출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 2024년 시점의 쌀 수출목표치는 5만톤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 2015년 쌀 관세화이후 우리쌀의 공격적인 수출전략이 필요함.
- 수출용쌀의 경우 쌀 품질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 GAP인증쌀이나 친환경쌀의 고가쌀 수출전략
 - 중저가쌀 수출전략

다. 사업추진전략

(1) 비전과 추진과제

- [수출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경우는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 고품질·친환경쌀을 수출할 것인가?(GAP인증쌀 혹은 친환경인증쌀)
 - 중저가 일반쌀을 수출할 것인가?(일반 이모작쌀)
- 다음으로 수출용쌀의 경우는 품질에 따른 가격결정도 중요하지만
 - 외국쌀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가격도 매우 중요함
- 따라서 비용절감을 최대한 도모하여 생산농가의 소득도 보전되어야 하며, 수출업체가 적정가격에 수출할 수 있어야함.
 - 이를 위해 비용절감방안이 매우 중요함
- 또한 가공용쌀 생산과 마찬가지로 수출용쌀의 경우 가능한 일반쌀 유통과의 차별화를 위해 참여농가의 생산-유통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함
- 수출용쌀 생산-유통 시스템은 고품질쌀과 가공용쌀과 같은 형태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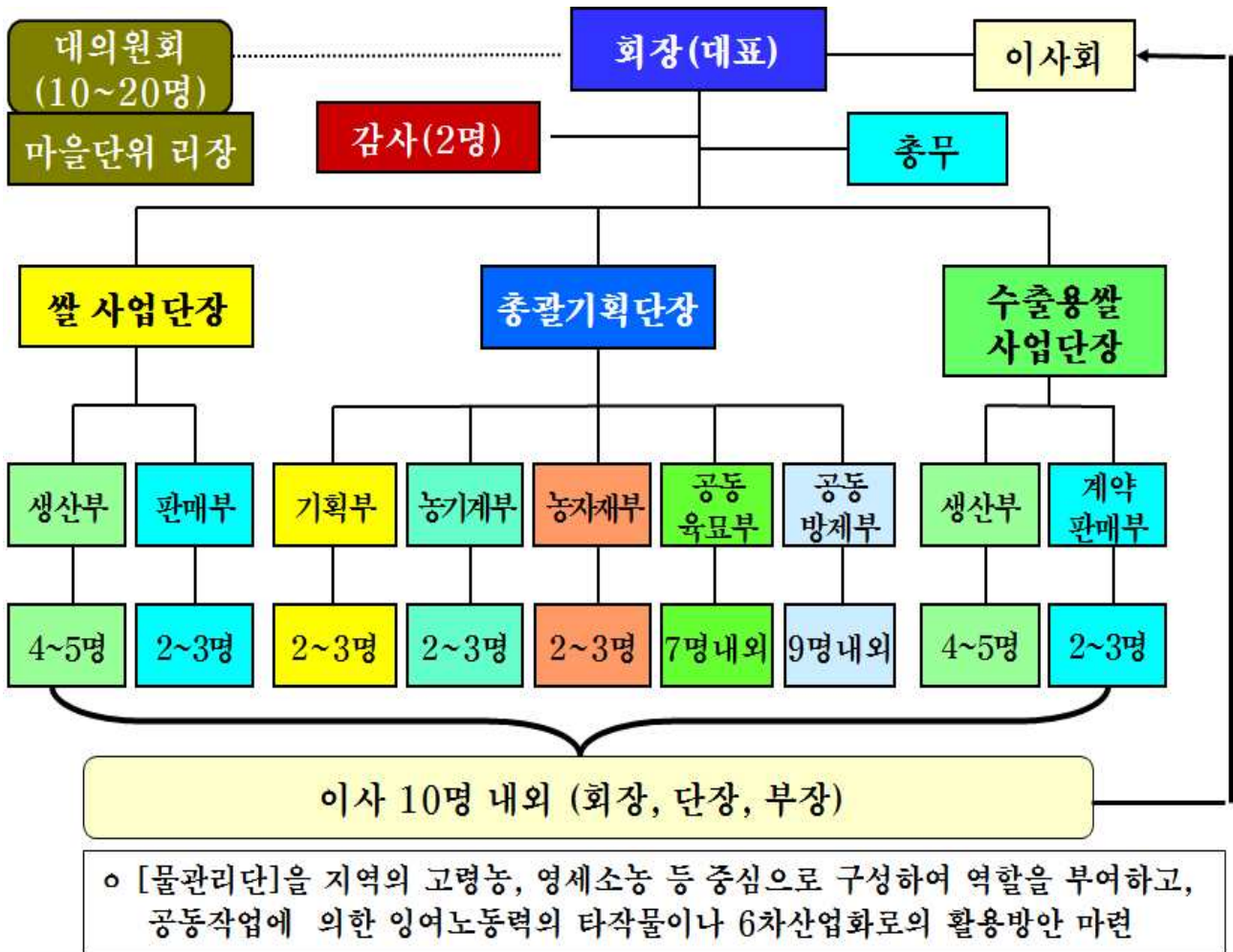
그림 39 [수출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목표와 추진전략



(2) 수출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 [수출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조직도는 가공용쌀 들녘경영체의 조직도와 유사
- 수출용쌀사업단에 계약판매부의 역할은
 - 쌀 수출RPC와 계약재배와 판매부문을 담당하기 때문에 주변 수출용쌀 생산 들녘경영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적정 판매가격을 받아 농가의 쌀 소득보전과 쌀 수출업체에 적정가격을 납품함으로써 쌀 수출 경쟁력확보가 이루어져 함.
- 총괄기획단의 경우 수출용쌀 생산에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 공동육묘-공동방제 부문과 농기계의 공동이용, 농자재의 공동구매 및 이용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실천을 담당.

그림 40 [수출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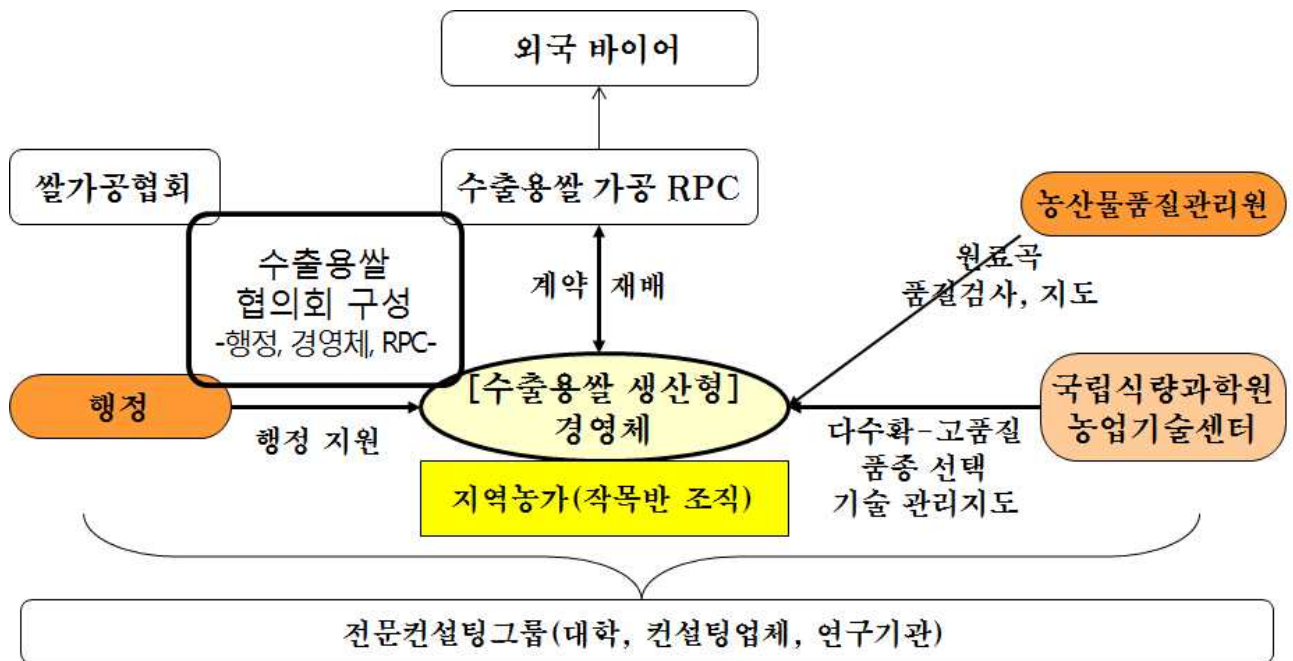


라. 지원시스템

(1) 산학연관 중간지원체계 구축

- [수출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경우 지역단위에서 [수출용쌀 협의회]를 구성하여 쌀 수출활성화 도모
 - 조직구성 : 행정, 들녘경영체, 가공-수출 RPC, 농업기술센터
 - 역할 : 품종선택, 재배기술 선택, 물류비 등 수출 지원내역 검토, 수출촉진방향 등

그림 41 [수출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산학연관 중간지원 시스템



(2) 지원내용

- [수출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에 쌀 생산과 비용절감을 위한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기본적인 지원내용
 -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광역살포기, 무인헬기)
- 특히 수출용쌀 생산의 경우는 비용절감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농협의 [농기계은 행사업]과 연계하여 경영체 면적이 필요한 농기계 투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 최대 비용절감 가능액을 계측하여, 계약재배단가를 산정하여,
 -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 쌀 수출업체나 쌀 가공업체에 최대 가능 납품액이 얼마인가를 산정해 보아야 함.
- 지자체에서는 수출용쌀 가공-수출RPC에는 일정부문 물류비 지원방안 강구

4. 논 이모작 확대유형

4-1 논 이모작 실태와 문제점

- 1970년대 이후 논 이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음
 - 특히 1980년대 후반이후 급격히 떨어지다가 90년대 중반이후 103~105% 유지
 - * 논 이용률 : 1975년(131%)→ '85년(115%)→ 95년(104%) →'13년(103%)
- 도별 논 이용률을 보면
 - 경기와 강원, 충북, 충남지역은 1990년대 초부터 100%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도 2000년대 중반이후 100%이하로 떨어지고 있음.

표 89 도별 논 이용률 변화추이(단위 : %)

구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전국	130.9	118.8	114.9	107.7	104.1	106.3	102.9	106.2	103.1
경기	99.8	100.7	99.7	95.4	91.0	95.8	93.1	94.6	92.2
강원	100.7	99.8	101.7	95.6	89.2	96.3	92.1	93.6	89.8
충북	111.4	105.7	104.3	98.0	95.3	97.9	94.5	95.9	93.2
충남	111.6	106.4	104.1	97.7	97.4	100.4	97.5	96.3	95.9
전북	136.5	117.9	110.8	104.7	106.2	105.1	107.8	118.5	114.1
전남	152.1	134.5	127.8	118.8	118.1	114.3	110.5	114.7	108.4
경북	140.8	125.6	120.8	112.4	101.2	105.3	99.2	99.7	97.9
경남	159.3	137.4	134.2	125.9	117.4	124.6	115.9	122.9	120.9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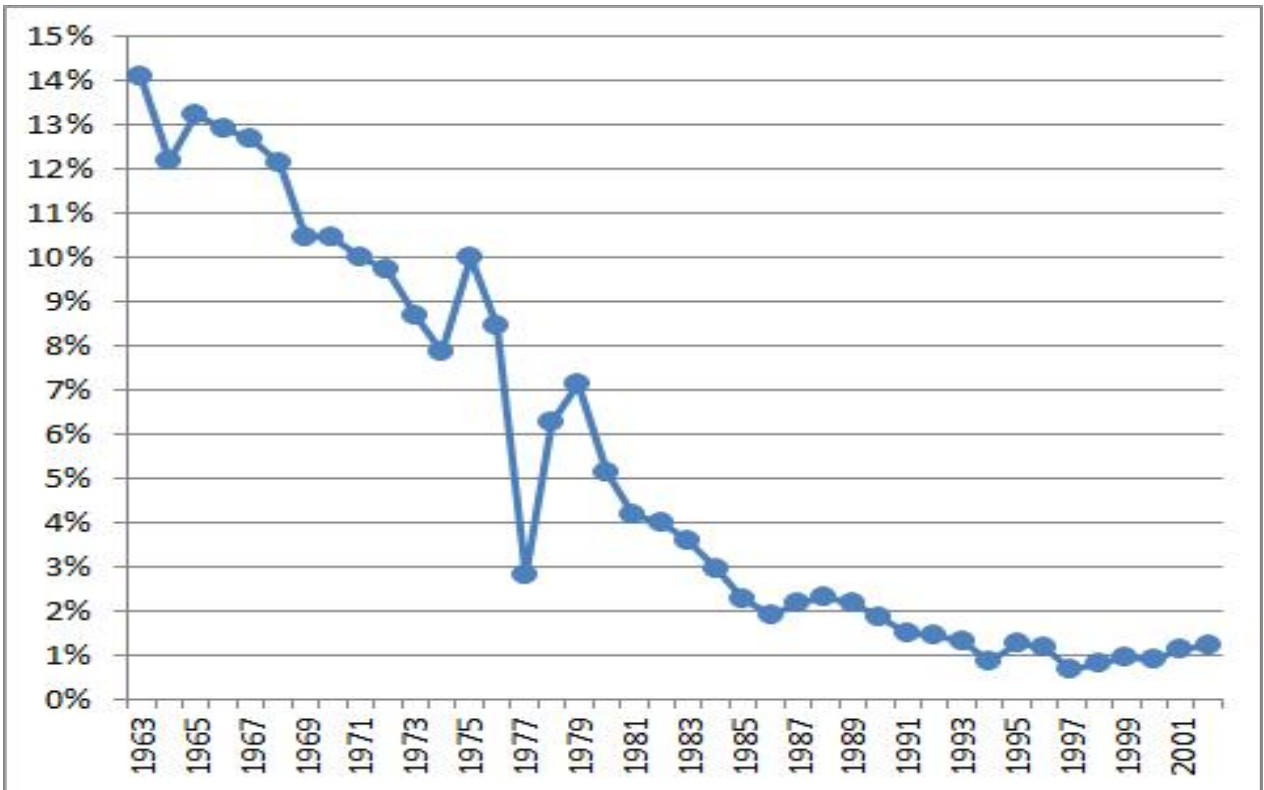
- 이같은 논 이용률의 저하는 특히 맥류 면적의 감소가 가장 큰 감소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후반에 걸친 맥류에 의한 논 재배면적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
-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총수입에서 점하는 맥류수입의 비중이
 - 1970년대 초까지 10%를 점하던 맥류수입비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 80년대에 들어와 5%로 감소하고
 - 90년대에 들어와서는 2%대 이하로 감소하였음
- 한우사육의 증가로 조사료 생산 필요성 증대

표 90 도별 주요 품목별 경지이용률 변화 추이(%)

구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식량작물	전국	124.2	108.1	103.4	98.9	89.8	96.0	92.5	92.5	90.1
	경기	95.1	94.5	93.3	92.0	86.6	94.0	91.3	92.1	90.1
	강원	96.8	92.9	92.1	91.6	82.4	93.4	89.0	89.5	84.6
	충북	104.4	95.1	94.3	91.9	80.3	90.9	88.3	89.7	89.1
	충남	106.0	96.7	94.1	91.8	87.4	92.5	90.4	90.6	90.9
	전북	128.4	107.7	101.1	99.2	94.4	97.1	97.6	101.5	98.8
	전남	146.2	124.3	117.0	112.6	106.1	106.7	101.4	100.2	93.9
	경북	134.0	112.3	104.5	97.4	80.0	90.2	85.7	82.6	80.8
	경남	149.2	123.6	118.3	107.9	89.5	96.8	88.1	89.2	87.7
맥류	전국	28.7	14.1	10.0	7.0	5.2	4.6	4.7	4.3	2.9
	경기	0.4	0.1		-	-	-	-	0.0	0.1
	강원	1.0	0.4	0.2	0.1	0.1	0.1	-	0.1	0.2
	충북	9.0	2.7	1.0	0.2	-	-	0.1	-	
	충남	11.4	2.9	0.9	0.2	0.1	0.1	0.1	0.0	0.1
	전북	31.1	11.9	5.6	4.4	6.6	3.9	7.6	9.4	8.6
	전남	50.9	29.5	22.9	18.7	16.6	14.3	13.2	9.7	4.4
	경북	38.4	18.5	11.7	6.3	1.5	1.6	0.9	0.6	0.6
	경남	53.3	29.9	25.4	18.0	9.3	8.8	6.6	8.1	5.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그림 42 농업총수입 대비 맥류수입 비율의 변화추이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 농가의 논이용 감소에 의한 농업소득 감소로 맥류이외의 논 이모작물 확대에 의한 소득증대 필요성 증대
- 논이모작 확대유형은 다음 3개의 들녘경영체 육성 모델
 - (쌀+논이모작 맥류 생산형) 들녘경영체
 - (쌀+조사료+한우 연계형) 들녘경영체
 - (쌀+논 이모작 원예작물 결합형) 들녘경영체

4-2 [쌀+맥류] 생산모델

가. 현황과 문제점

- 모든 맥류의 논 재배면적은 80년대 중반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 점차적으로 맥류의 논 재배면적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음.

표 91 주요 맥류 논 재배면적과 논재배면적 비율 변화추이

구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논 재배 면적 (ha)	겉보리	142,747	61,267	43,416	27,882	12,990	8,465	6,372	4,615	7,556
	쌀보리	206,854	98,098	58,803	48,741	25,300	24,682	25,925	19,867	14,902
	맥주보리		11,060	28,337	17,375	26,559	19,275	17,589	9,175	4,151
	밀	13,074	13,660	1,031	71	1,337	447	1,980	10,194	5,655
논 재배 면적 비율	겉보리	43.9%	55.3%	67.9%	75.2%	85.1%	76.6%	82.1%	88.8%	94.8%
	쌀보리	53.6%	52.8%	58.2%	62.5%	82.9%	86.9%	91.4%	93.1%	88.8%
	맥주보리		32.7%	39.0%	39.4%	63.7%	68.7%	78.8%	76.5%	72.4%
	밀	29.9%	49.0%	33.6%	24.1%	57.8%	48.6%	82.7%	81.2%	78.8%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도별 맥종별 재배면적 추이를 보면
 - 경기와 강원 지역의 경우는 겉보리가 1975년에는 500ha 이상의 논에 재배되었으나,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거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충북의 경우는 겉보리 논 재배면적이 1980년까지만 해도 2,000ha 이상이었으나 1985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밀의 경우도 1975년 357ha가 재배되었음.
 - 충남은 겉보리, 쌀보리 논 재배면적이 1980년까지만 해도 각각 2,654ha, 2,150ha이었으나, 역시 1985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였음
- 일반적으로 맥류 파종가능지인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의 경우는
 -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맥종별 재배면적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전북은 쌀보리중심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전남은 쌀보리, 맥주보리가 중심이 되고 있고
- 경북은 겉보리가 중심이고, 경남은 모든 맥류의 재배현황을 보이고 있음

○ 밀은 주로 전남, 전북, 경남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음

표 92 맥종별 논 재배면적과 변화추이

구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경기	겉보리	665	103	18	8	32		8		1
	쌀보리	64		1			8	26	7	110
	맥주보리									
	밀	40								
강원	겉보리	510	245	110	61	28	39	11	21	55
	쌀보리							13		
	맥주보리									
	밀	13	3			7	1		1	
충북	겉보리	6,550	2,091	821	186	23	21	51		46
	쌀보리	148						19		
	맥주보리									
	밀	357	84	4						
충남	겉보리	5,959	2,654	850	233	21	110	84		
	쌀보리	12,917	2,150	698	71	93	96	113	36	
	맥주보리									
	밀	924	522	76	8					189
전북	겉보리	862	202	364	3,297	5,549	1,433	1,581	709	3,646
	쌀보리	49,015	20,120	9,733	4,975	5,943	5,015	10,418	9,556	7,640
	맥주보리							24		
	밀	1,254	562	94	8	410		203	3,422	1,484
전남	겉보리	145	2					101	48	51
	쌀보리	107,053	60,043	37,814	33,329	16,904	17,410	13,480	8,602	6,168
	맥주보리		3,721	13,741	6,723	19,117	14,285	14,446	6,986	3,412
	밀	2,130	1,268	13		56	120	759	3,601	1,629
경북	겉보리	74,206	36,779	23,745	13,086	2,554	2,459	1,171	440	691
	쌀보리	2,494	122	96	38		5	180	346	196
	맥주보리									
	밀	3,581	2,789	377	11	74	5	33	64	7
경남	겉보리	53,643	19,175	16,864	10,775	4,171	3,932	2,825	2,963	2,714
	쌀보리	34,946	15,563	10,437	9,081	1,813	1,490	1,155	1,073	754
	맥주보리		7,085	14,303	10,385	7,440	4,952	3,108	2,189	739
	밀	4,756	8,434	440	44	680	223	542	2,394	1,46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 이와 같은 맥류 재배면적의 감소는 맥류수입 감소를 반영하고 있음.
- 도별 맥류 수입의 차이는 이모작 맥류가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간, 년도별 큰 차이 존재
 - 논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인 전북, 전남, 경남 경우는 일정한 맥류 수입이 존재
 - 논 이모작이 가능하지 않은 타도의 경우는 거의 맥류수입이 없음
 - 한편 맥류재배면적의 감소로 90년대 중반에 전체 농업총수입에서 2~4%이던 맥류 수입의 비율이 1~2%로 떨어짐
- 이와 같이 논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에서 맥류는 일정한 소득원이 되고 있음
 - 특히 논 농업이 중심인 순평야지역의 경우는 매우 큼

표 93 도별 농가의 농업총수입과 맥류수입의 변화비교

구분	1993~'95년 평균			2002~'04년 평균			2011~'13년 평균		
	농업 총수입	맥류 수입	맥류수입 비율	농업 총수입	맥류 수입	맥류수입 비율	농업 총수입	맥류 수입	맥류수입 비율
전국평균	14,762	167	1.1%	23,395	205	0.9%	28,231	103	0.4%
경기	15,422	17	0.1%	25,032	9	0.0%	26,644	0	0.0%
강원	12,834	11	0.1%	22,016	17	0.1%	30,000	1	0.0%
충북	15,902	0	0.0%	21,824	58	0.3%	21,391	1	0.0%
충남	18,660	0	0.0%	25,161	24	0.1%	27,152	17	0.1%
전북	14,303	363	2.5%	22,799	371	1.6%	28,796	494	1.7%
전남	14,140	413	2.9%	21,449	618	2.9%	27,903	240	0.9%
경북	15,383	39	0.3%	24,959	52	0.2%	31,368	20	0.1%
경남	11,433	222	1.9%	22,771	301	1.3%	28,783	83	0.3%
제주	22,752	619	2.7%	28,513	370	1.3%	36,106	158	0.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정리

-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맥류 재배면적의 감소는 곡물자급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보리쌀 자급률의 경우 1970년에 100%이상에서 75년에는 90%대로 떨어지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50%이하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21%까지 떨어짐
 - 1970년에 15%이상이었던 밀 자급률의 경우도 1980년에는 5%이하로 떨어지고, 1985년부터는 1% 미만으로 떨어짐

표 94 주요 품목 곡물자급도 및 1인간 연간소비량의 변화추이

구분	자급도(%)								1인당 연간소비량 (kg)		
	곡물자급도(%)				사료용 제외 자급도(%)						
	곡물 전체	보리쌀	밀	두류	곡물 전체	보리쌀	밀	콩	보리쌀	밀	콩
1970	80.5	106.3	15.4	86.1	86.2	115.1	15.9	92.3	37.3	26.1	5.3
75	73.1	92.0	5.7	85.8	79.1	96.3	5.8	97.8	36.3	29.5	6.4
80	56.0	57.6	4.8	35.1	69.6	62.2	4.8	64.3	13.9	29.4	8.0
85	48.4	63.7	0.4	22.5	71.6	89.6	0.5	62.7	4.6	32.1	9.3
90	43.1	97.4	0.05	20.1	70.3	97.4	0.05	64.9	1.6	29.8	8.3
95	29.1	67.0	0.3	9.9	55.7	67.6	0.47	37.0	1.5	33.9	9.0
2000	29.7	46.9	0.1	6.4	55.6	49.7	0.1	28.2	1.6	35.9	8.5
05	29.4	60.0	0.2	9.7	53.4	63.2	0.4	30.9	1.1	31.8	9.0
10	27.6	25.1	0.9	10.1	54.0	25.4	1.7	32.4	1.3	32.1	8.3
2013(P)	23.1	19.9	0.5	9.7	47.2	21.0	1.1	29.1	1.3	32.3	8.0

자료 :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주 : 양곡년도(전년 11월 1일부터当年 10월 31일까지) 기준임.

나. 모델별 정부의 주요 추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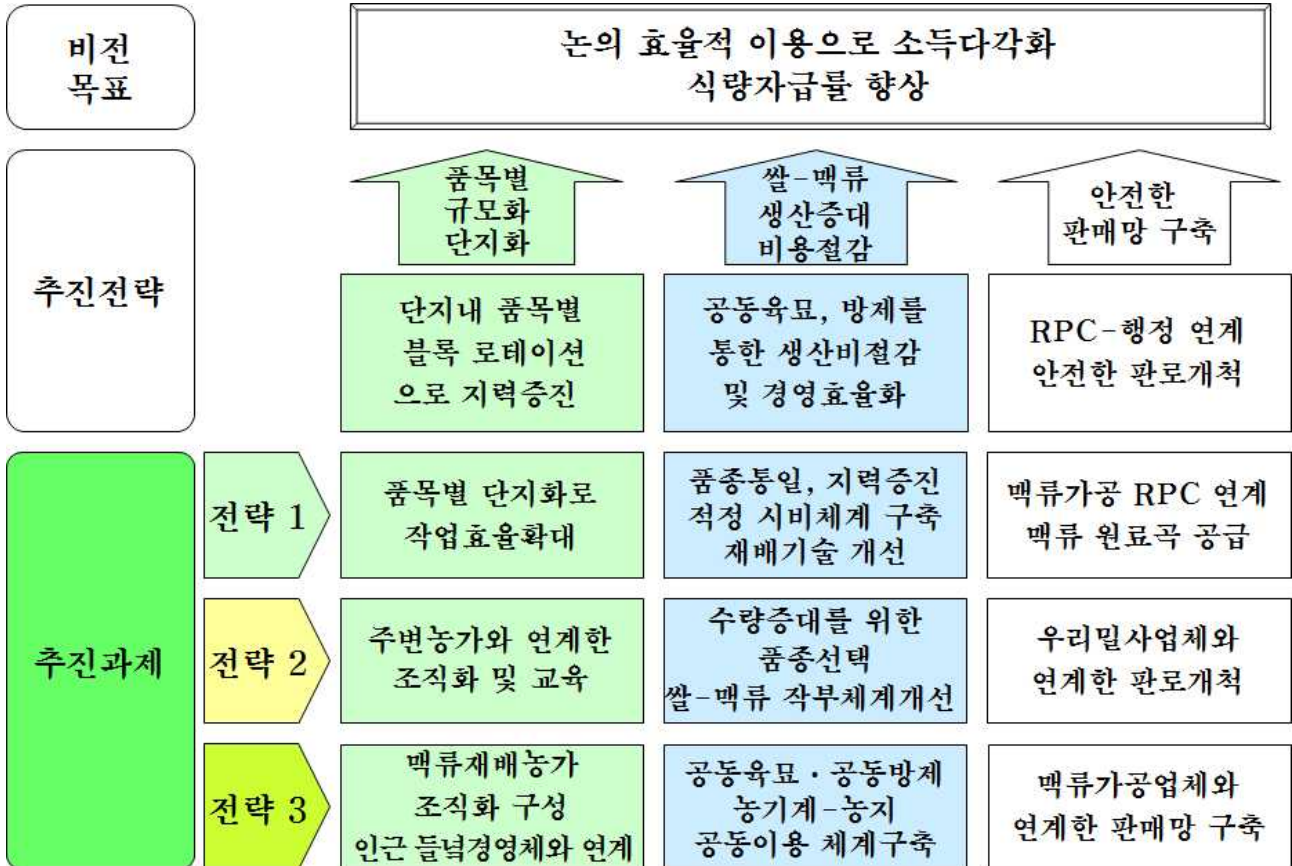
- 주요곡물 자급률 향상 : ('12) 12% → ('17) 15.4 → ('22) 18.1
 - 밀 자급률(생산량) : ('12) 4.7%(95) → ('17) 12.2(261) → ('22) 17(430)
- 기계화 · 주산지 규모화 · 브랜드경영체 육성을 통해 생산 · 유통 안정
 - 고기능성 품종 및 다양한 작부체계에 적응 가능한 품종 개발
 - * 주요곡물 품종개발(누계) : ('11) 11품종 → ('13) 38 → ('15) 66
 - 주산지 규모화·단지화를 통해 농가조직화, 생산비 절감 추진
 - * 특산단지(밀/콩/잡곡) : ('10) 4개소 → ('15) 24
 - 밀 건조 · 저장시설 확충 및 콩 SPC 설치('15:3개소)
- 논 동계 이모작(식량작물, 조사료 등) 직불금 향상
 - 1ha당 400천원→500천원으로 상향 조정
- 밀의 주정용 공급, 군인급식 확대 등 밀 소비기반 확대 추진
 - 밀 군인급식(10천톤), 주정용 공급(30천톤)을 통해 연 40천톤 수요창출
 - * 우리밀 자조금을 중심으로 범국민 우리밀 1kg 먹기 운동 추진

다. 사업추진전략

(1) 비전과 추진과제

- [쌀+맥류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비전
 - 논의 효율적인 이용에 의한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소득다각화와 맥류생산을 통한 식량자급력 증대
- 들녘단위에서 논 이모작 이용을 위해서는 단지화가 매우 중요하므로
 - 지역 농가와의 합의를 통하여 블록 로테이션을 통해 작업효율을 높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들녘경영체 3단계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군단위 농지이용계획이 필요하며, 농지이용계획을 들녘경영체가 담당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
- 겉보리, 쌀보리, 밀 등의 맥종별 확실한 판매처 확보가 중요
 - 판매조건 등을 고려한 맥류 가공업체와 연계한 판매전략 수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주변 [쌀+맥류 생산형] 들녘경영체와의 연계를 갖는 것도 중요함
- 지역의 기후조건, 토양조건 등을 고려한 논 농업의 안전한 작부체계에 대한 기술습득과 비용절감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수립이 중요

그림 43 [쌀+맥류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목표와 추진전략



(2) 맥류의 재배적지

- 맥류종류는 보리(쌀보리, 겉보리, 자수정보리), 밀, 호밀, 귀리, 라이맥, 기타맥류로 구분¹⁴⁾
- 맥종별 재배 가능지와 적응구분을 보면 다음 표와 그림과 같음.
 - 겉보리는 전국이 재배가능지이며, 특히 충남이하와 경북의 남부지역이 재배적지
 - 쌀보리는 호남지역과 경남지역이 재배가능지
- 더욱이 점차적으로 기후 온난화로 맥류 재배지역은 북부로 이동이 가능하여
 - 재배가능지역이 더욱 확대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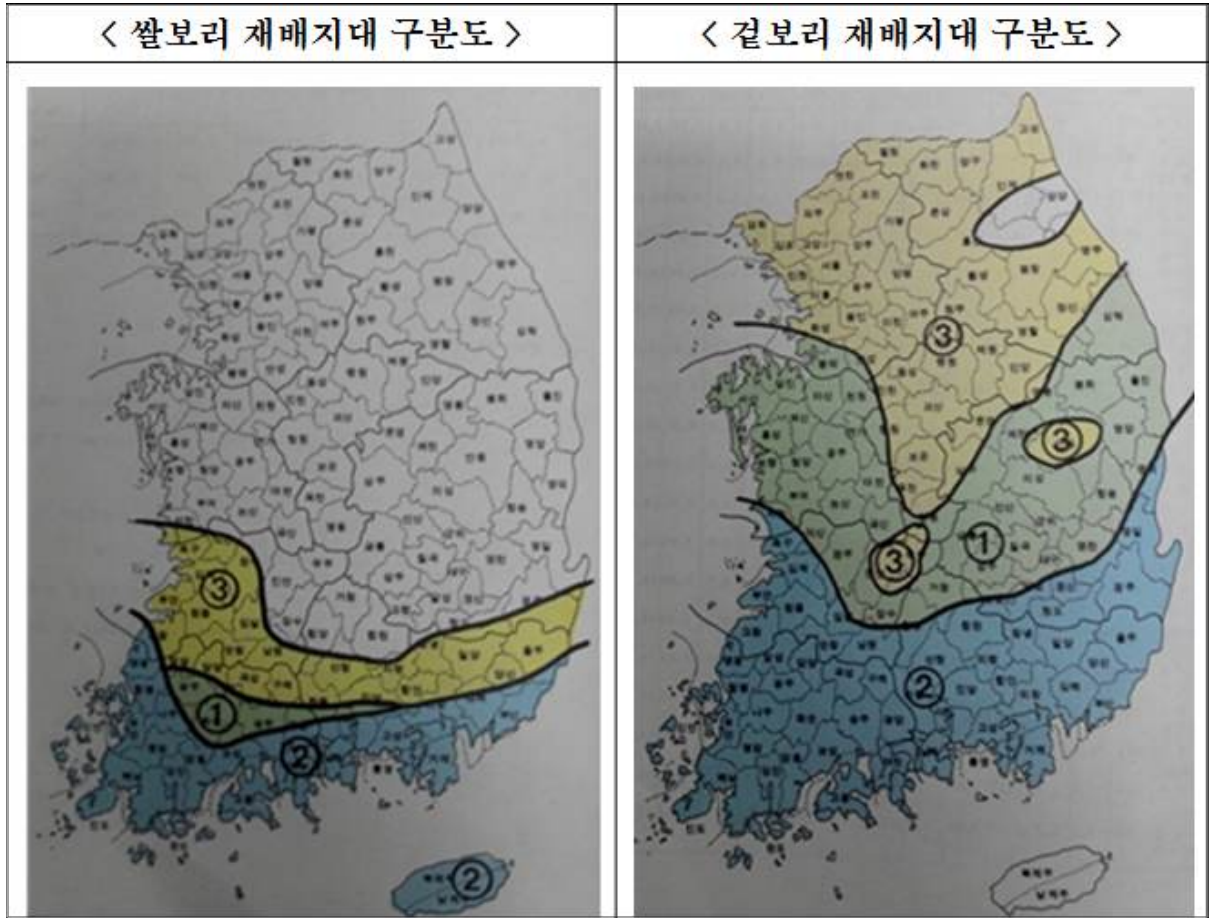
표 95 맥류 곡종별 재배지대 구분기준

곡종	지대별	적응 구분	지대명	기상환경(10~6월)			평균 10a수량 (kg)
				재배기간 평균기온	강수량	적산 온도	
겉보리	1지대	최적지	중부평야	7.2	400~500	1,900	393
	2지대	적지(상)	남부평야	7.0	400~500	1,800	386
	3지대	적지(중)	북부평야	6.4	450~550	1,800	340
쌀보리	1지대	최적지	남부내륙평야	7.0	500~600	2,000	417
	2지대	적지(상)	남부해안	8.7	500~600	2,000	350
	3지대	적지(중)	북부평야	6.8	500~600	2,000	339
맥주 보리	1지대	최적지	남부해안	8.2	500~600	1,900	417
	2지대	적지(상)	제주도해안	9.9	500~600	2,000	378
호밀	1지대	최적지	전남	7.7	500~650	2,000	191
	2지대	적지(상)	전북	7.7	400~500	2,300	141
	3지대	적지(중)	충북, 충남	6.9	500~600	1,900	131

자료 : 농촌진흥청, [농업지대별 작부배치도], 1989.10

14)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맥류 종류 구분내용임

그림 44 맥종별 재배지대 구분도



주 : 1(최적지), 2(적지(상)), 3(적지(중))를 의미

자료 : 농촌진흥청, [농업지대별 작부배치도], 1989.10, 6~8쪽

- 과거 80년대의 경우 충남, 충북에도 겉보리, 쌀보리도 일정면적이 재배되었으나,
 - 경제작물의 개발에 의해 보리가 거의 재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1975년 도별 밀 재배면적
 - 총 재배면적 42,209ha 이중 논 재배면적은 10,998ha로 전체의 26.1%
 - 1위 경북 11,795ha(27.9%), 2위 경남 8,683ha(20.6%)
 - * 논 재배면적 비율 : 경북(38.8%), 경남(39.5%)
 - 3위 충남 5,440ha(12.9%), 4위 충북 5,085ha(12.0%)
- 최근의 보리 주재배지역
 - 겉보리 주 재배지역 : 경북, 경남지역
 - 쌀보리 주 재배지역 : 전남, 경남, 전북지역
 - 밀 주 재배지역 : 전남, 전북, 경남 지역임

(3) 쌀+맥류의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 [쌀+맥류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경우

- 쌀 생산-유통은 지역 RPC와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안전한 판매망을 구축하고,
- 맥류의 경우는 지역과 맥종별 특성에 따라 가공-유통하는 것이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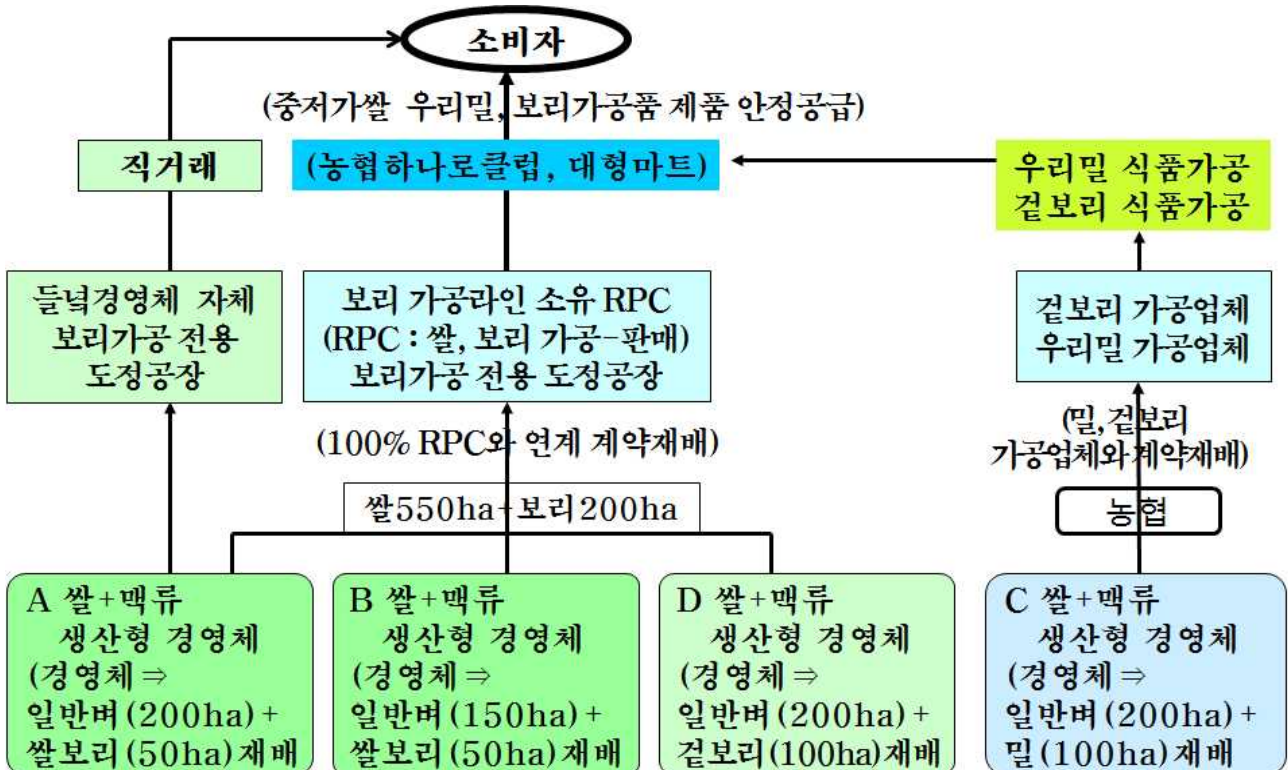
○ 맥종별로 보면

- 쌀보리는 지역농협 중에서 쌀보리 가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RPC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
- 겉보리는 겉보리 가공업체와 연계하여 판로를 개척해야 함. 특히 지역농협이나 원협에서 연계하여 계약재배의 경우 경영체는 판로를 해결할 수 있음.
- 밀은 지역단위에 우리밀사업과 연계하여 계약재배를 하는 방법과 밀 가공업체와 연계하여 계약재배 실시로 안정적 판로구축이 필요

○ 맥류의 경우 지역내 다른 [쌀+맥류] 생산형 들녘경영체와 연계를 통하여 맥류 생산의 규모화를 도모하여 유통부문에서 시장교섭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쌀+맥류]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경우는 들녘경영체내에 [소형 맥류 가공공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6차산업화 연계, 자체 가공하여 소비자와 직거래 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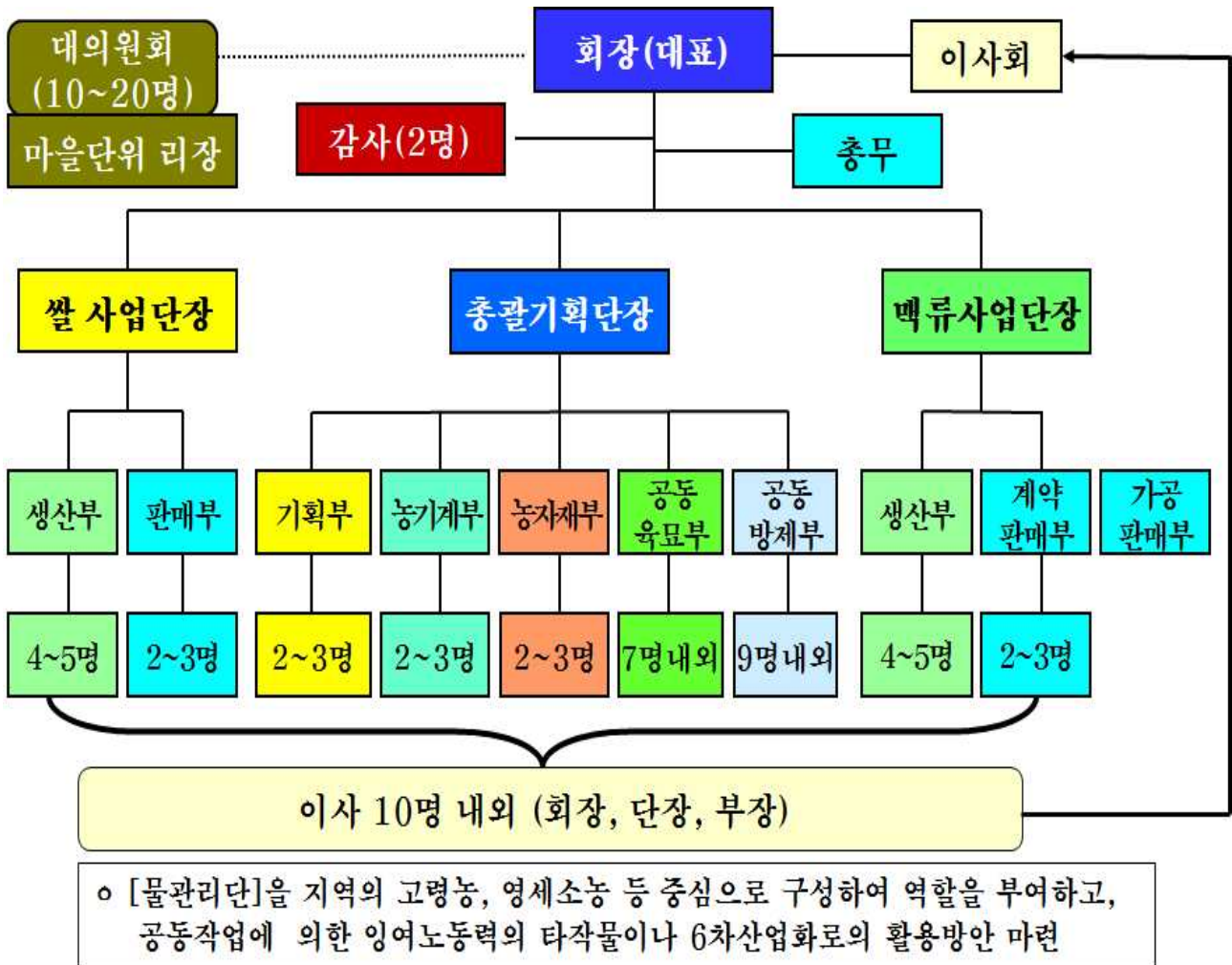
그림 45 [쌀+맥류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생산-유통 시스템



(4) 조직체계

- [쌀+맥류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경우는 맥류사업단을 구성하는 것이 조직체계에서 가장 중요
- 특히 맥류사업단의 경우는 맥류생산부, 계약판매부, 가공판매부 등을 조직하여
 - 맥류생산부에서는 안정생산과, 품질균일화 등을 도모하고
 - 계약판매부는 다른 들녘경영체와 연계하여 지역농협이나 맥류상인과의 계약재배와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
 - 가공판매부의 경우는 들녘경영체내에 [맥류가공시설]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가공과 판매를 담당하여 직거래나 대형상인들과의 판매전략을 수립함

그림 46 [쌀+맥류 생산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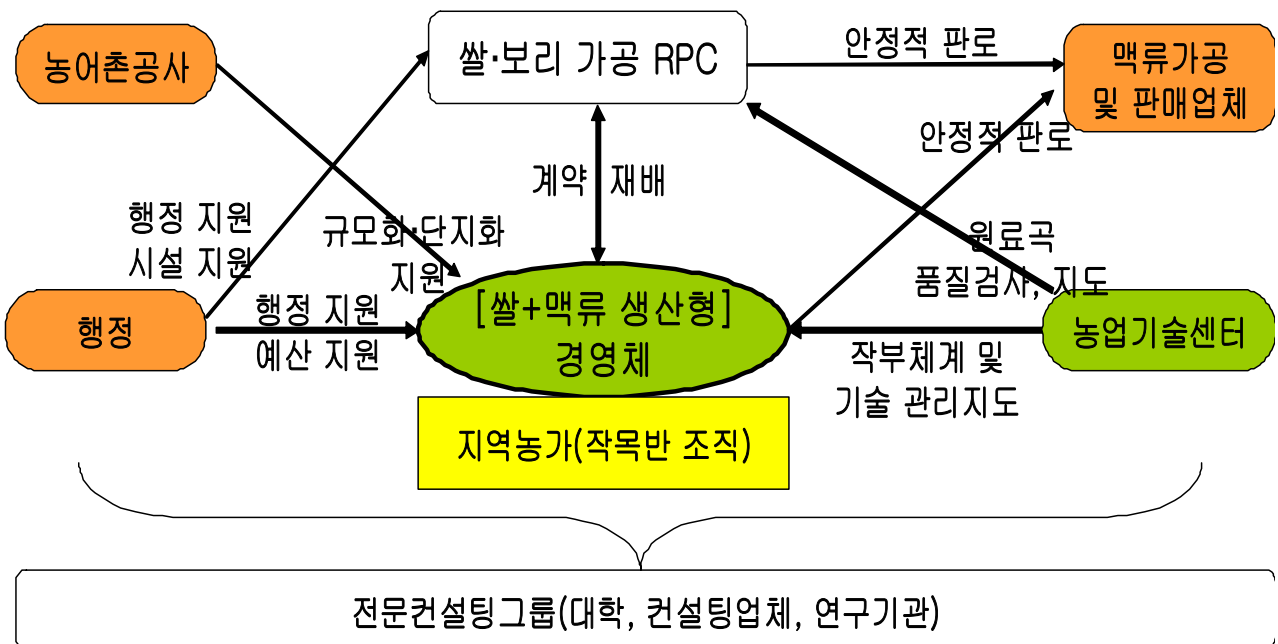


라. 지원시스템

(1) 산학연관 중간지원체계 구축

- [쌀+맥류 생산형] 들녘경영체에서 생산과 판매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체계 구축이 중요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에 맞는 논 이용의 효율적인 작부체계개발, 이에 따른 맥종과 품종선택 및 이에 대한 기술지원이 중요함
- 맥류 판매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는
 - 보리가공 RPC와의 관계,
 - 맥류가공업체, 맥류판매업체와의 협동체계 구축이 중요

그림 47 [쌀+맥류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산학연관 중간지원 시스템



(2) 지원내용

- [쌀+맥류 생산형] 들녘경영체에 일반쌀, 보리 생산과 비용절감을 위한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기본적인 지원내용
 -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광역살포기, 무인헬기)
- 맥류 수확을 위한 클러스터의 경우는 농협의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 연계
- 들녘경영체 자체 보리가공시설이 요구되는 들녘경영체의 경우
 - 소형 보리가공 시설지원
 - 보리·밀의 품질균일화를 위한 저온저장시설 지원

4-3 [쌀+조사료+한우 결합형(경축순환농업형)] 경영체 육성모델

가. 현황과 문제점

○ 2000년도 중반이후 농가의 자급사료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 배합사료의 자급률은 1980년 41%에서 계속 감소되어 '13년 23%까지 감소
- 표 96 사료 수급실적

구분	합 계 (천톤)	농후사료(천톤)						조사료 (천톤)
		계	배 합 사 료				농가자급 사료	
			소계	국내산	수입	자급률		
1970	3,463	913	508	190	318	37	405	2,550
1980	7,561	3,996	3,462	1,410	2,054	41	532	3,565
1990	17,116	10,529	10,518	2,839	7,690	27	644	5,943
2000	19,289	15,897	15,105	3,923	11,068	26	792	3,392
2005	20,283	16,152	15,278	3,730	11,403	25	874	4,131
2010	25,157	20,124	17,710	4,338	13,246	25	2,414	5,033
2013	27,365	21,634	19,085	4,407	14,678	23	2,549	5,731

자료 :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방역관리과(조사료)

주 : 1) 국내산·수입 : 배합사료생산에 투입된 원료사용량 기준

주 : 2) 배합사료 : 양축용, 어류용, 대용유용 배합사료 생산량 기준

○ 조사료의 경우

- 조사료 재배면적 : 2007년(164천ha)→2014년(298천ha)로 81.7% 증가
- 조사료 공 급 량 : 2007년(4,617천톤)→2014년(5,731천ha)로 24.1% 증가
- 조사료 자 급 륜 : 2007년(78%)→2014년(82)로 4% 향상

표 97 조사료 관련 생산·이용 통계

구분	단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소 사육마리수	천두	2,635	2,893	3,038	3,321	3,456	3,479	3,342
조사료 공급량	천톤	4,617	5,054	5,203	5,033	5,577	5,663	5,731
재배면적	천ha	164	193	241	244	260	268	298
자급률	%	78	81	84	82	83	80	82
경영체수	개수	362	517	849	1,173	1,352	1,500	1,59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업무편람], 2014.6

○ 품목별 조사료 생산현황을 보면

- 볏짚비중이 2010년 54.7%에서 2013년 42.4%로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사료작물 생산량이 증가함.
- 품목별로는 동계작물 IRG·호밀 등이 가장 많고, 다음이 수단그라스, 옥수수, 청보리 순임

표 98 조사료 생산현황

(단위 : 천톤, 천ha)

구분		2010	2011	2012	2013
총소요량		5,033	5,577	5,663 (3,479)	5,731 (3,342)
조사료 공급 계획	국내산 (면적)	4,127 (244)	4,606 (260)	4,543 (268)	4,672 (298)
	목초(톨페스큐, 오차드그라스 등) (면적)	273 (39)	273 (39)	266 (38)	277 (39)
	볏짚	2,257 <54.7%>	2,152 <46.7%>	2,040 <44.9%>	1,982 <42.4%>
	사료작물 (면적)	1,597 (205) <38.7%>	2,181 (221) <47.4%>	2,237 (230) <49.2%>	2,413 (259) <51.6%>
	동계작물 (면적)	1,001 (160) <24.3%>	1,520 (175) <33.0%>	1,626 (187) <35.8%>	1,839 (210) <39.4%>
	청보리 (면적)	183 (25)	273 (34)	146 (18)	133 (17)
	IRG·호밀 등 (면적)	818 (135)	1,247 (141)	1,480 (169)	1,706 (193)
	하계작물 (면적)	596 (45)	661 (46)	611 (43)	574 (49)
	옥수수 (면적)	174 (11)	177 (11)	154 (10)	182 (12)
	수단그라스·귀리 등 (면적)	422 (34)	484 (35)	457 (33)	392 (37)
	수입산	906	971	1,120	1,059
	할당관세	734	800	960	894
	1214류(농가용건초)	690	750	900	850
	2308(배합사료 원료용)	44	50	60	44
알파파 등	172	171	160	165	
자급률	82.0	82.6	80.2	81.5	

주 : < >는 국내산 조사료 생산량에 대한 비율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업무편람], 2014.6

○ 도별 사료작물 논 재배면적의 변화추이를 보면

- 사료작물 논재배면적 증가와 더불어 논 재배면적의 비중이 2000년도 후반에 급속히 증가되어 현재 사료작물재배의 2/3이 논에서 재배되고 있음
- 도별로는 논 이모작이 가능한 전남 전북, 경남에서의 논 재배면적이 증가되었으며, 이들 시군의 경우 전체 사료작물재배면적의 85%이상이 논에서 재배되고 있음
- 그러나 경기, 강원, 충북의 경우 논 재배면적이 극히 미약하여 조사료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 논 사료작물 재배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

표 99 시도별 사료작물 논 재배면적 및 논 재배면적비율 변화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논 재배면적 (ha)	전국	3,261	5,928	7,857	7,927	11,897	16,547	45,269	46,891	51,833	49,991
	경기	194	308	400	279	306	298	628	658	1,036	689
	강원	106	89	105	152	112	239	549	414	597	510
	충북	97	175	152	167	80	62	822	290	680	576
	충남	170	426	132	358	393	1,023	836	1,352	1,567	2,194
	전북	500	1,260	2,547	2,760	4,133	6,322	16,368	15,982	13,446	15,033
	전남	389	980	1,512	981	3,053	3,532	13,995	14,956	20,377	21,896
	경북	585	366	521	738	636	1,135	4,395	4,328	4,243	2,517
	경남	1,187	2,282	2,458	2,400	3,152	3,850	7,363	8,134	8,897	5,947
논 재배면적 비율	전국	15.0%	22.5%	29.4%	33.4%	41.3%	46.3%	64.2%	64.4%	66.5%	64.0%
	경기	2.5%	3.6%	5.1%	4.7%	5.2%	5.1%	9.0%	11.9%	18.5%	11.7%
	강원	9.6%	8.8%	8.7%	12.9%	9.3%	14.0%	24.9%	17.6%	22.8%	20.2%
	충북	6.3%	11.5%	14.2%	15.8%	11.5%	8.5%	36.7%	19.0%	36.9%	25.9%
	충남	5.9%	12.3%	4.8%	14.8%	15.3%	28.1%	18.0%	28.8%	29.2%	34.0%
	전북	27.8%	42.5%	62.4%	70.0%	71.5%	77.6%	88.6%	88.6%	86.5%	87.8%
	전남	25.6%	39.8%	50.5%	49.6%	63.5%	64.4%	82.5%	80.9%	84.4%	83.8%
	경북	33.3%	23.3%	30.7%	38.7%	28.8%	37.0%	58.0%	58.2%	58.2%	40.7%
	경남	63.2%	73.3%	76.0%	77.5%	81.3%	80.6%	86.3%	85.7%	88.2%	85.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통계, 각년도

나. 정부 조사료 정책계획

○ 사료 수급·가격 안정화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발전 도모

- 조사료 공급량(자급률) : ('12) 224만톤(80%) → ('17) 320만톤(90%)

○ 조사료 공급 및 농식품 부산물 활용 확대로 국내 자급률 제고

- 자금 및 세제지원을 통해 농가부담 경감 및 사료업체의 가격 인상요인 최소화

○ 목표달성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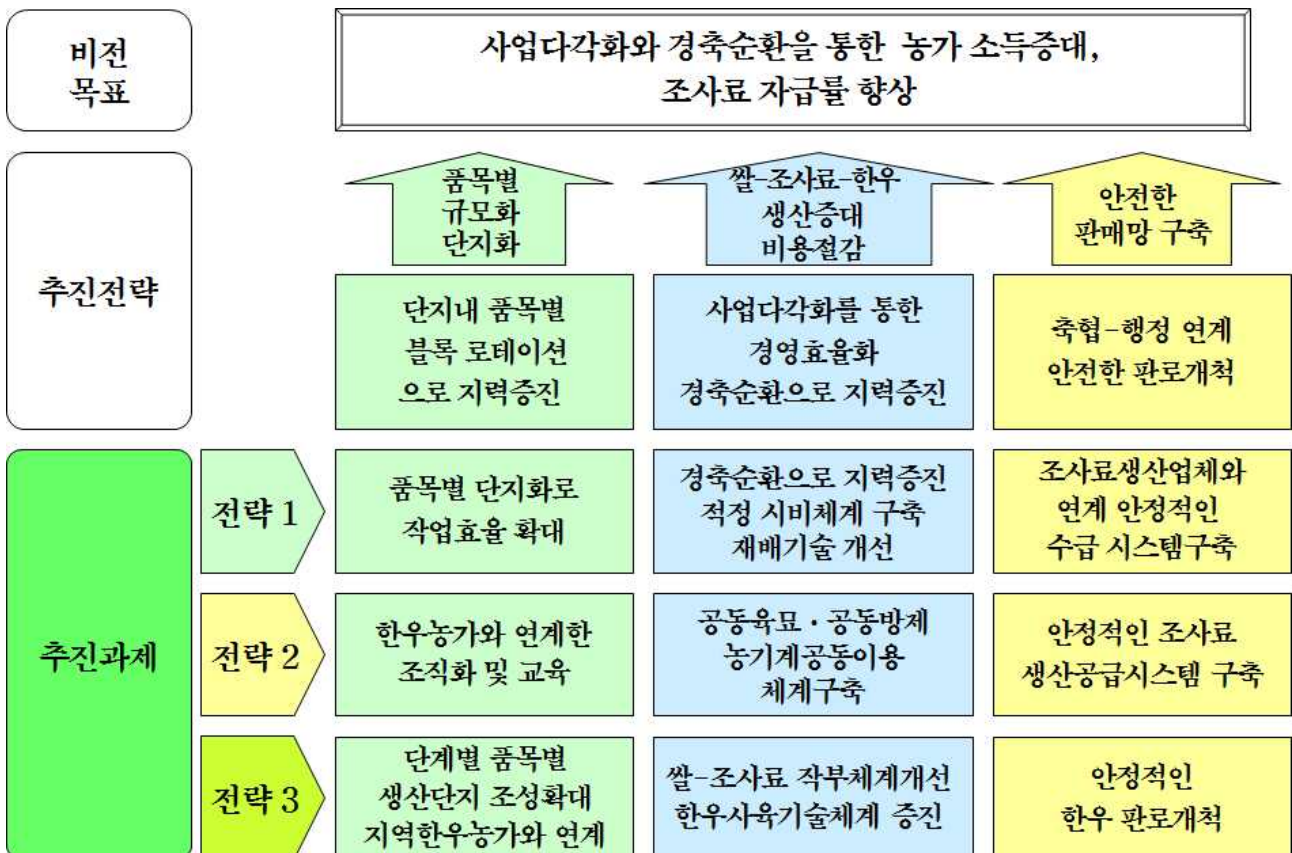
- 조사료 급여 비중 : '12년(50%) → '17년(55%)
 - 공급량 및 재배면적 : '12년(224만톤, 27만ha) → '17년(320만톤, 39만ha)으로 확대
- 조사료에 대한 직불금은 논과 밭 모두에 해당됨
-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2015년부터 ha당 50만원 직불금 지급되며
 - 조사료 밭 직불금은 '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이 밭 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15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 원이 추가되어 올해와 같이 ha당 40만원이 지급.
 -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400ha로 확대) 기준임

다. 사업추진전략

(1) 추진전략

- [쌀+조사료+한우 결합형] 들녘경영체의 목표는 경축순환을 통한 소득다각화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조사료 자급률 향상

그림 48 [쌀+조사료+한우 결합형] 들녘경영체의 목표와 추진전략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 효율적인 농지활용과 조사료 생산을 위해 품목별 단지 로테이션과 지력증진
 - 지역특성에 맞는 농지의 작부체계 확립
 - 사업다각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와 비용절감 연계
 - 조사료의 수급안정과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특히 지역의 영세소농과 고령농의 조사료 생산과 한우 사육에 많은 참여를 위해
 - 지역단위에서 많은 농가와와의 단계적인 추진전략 수립도 매우 중요

(2)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조사료 작부체계

- [쌀+조사료+한우 결합형] 들녘경영체의 경우 조사료 생산은 조사료 생산가능지역에서의 논과 밭의 이모작 작부체계가 개발되어야 함.
 - 즉 평야지대, 중산간지역, 논밭 혼합지역, 이모작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논에서 [논벼+조사료], 밭에서는 [식량작물+조사료] 등의 작부체계 개발이 이루어져야함.
- 중산간지역이나 논밭 혼합지대에서의 한우사육을 통한 경축순환 모델을 위해
 - 다양한 작부체계 기술개발을 통한 조사료 생산증대로 Local Feed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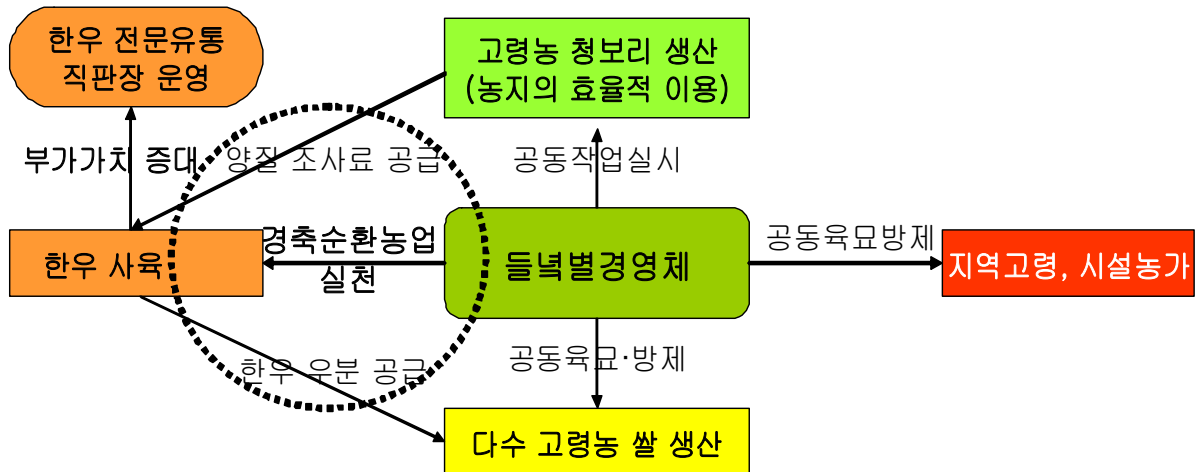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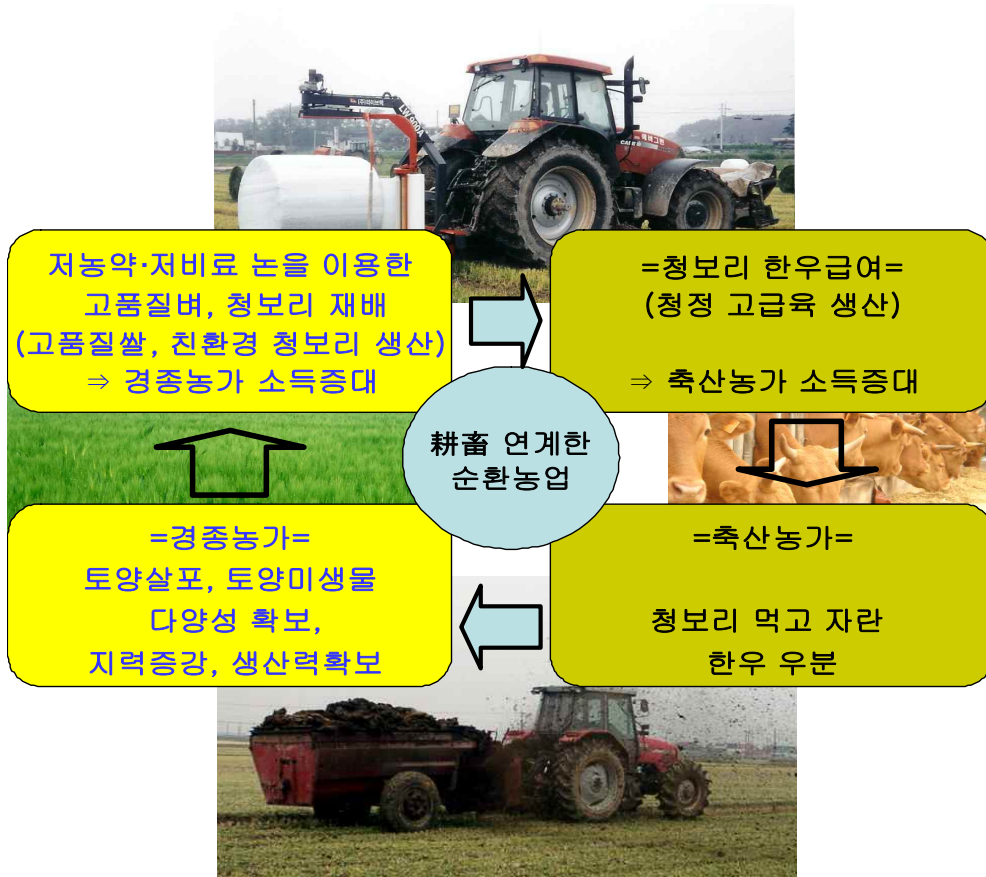
표 100 지역특성에 따른 들녘경영체 가능한 작부체계, 경영유형 구분

구분	순평야 지역	논밭 혼합지대+중산간지역
이모작 불가능 지역 경영 유형	논벼 + 사료작물	논벼 단작 + 밭 → 식량작물 / 사료작물 논벼 + 사료작물 + 축산
이모작 가능 지역 경영 유형	논벼 이모작 가공용-특수미 + 이모작맥류 / 사료작물 / 시설원예	논벼 단작 + 밭 → 식량작물 / 사료작물 논벼 이모작 가공용-특수미 + 맥류 / 사료작물 논벼 이모작 + 사료작물 + 축산

(3) 경축순환농업 시스템 구축

- 논과 밭이 혼합된 지역이나 중산간지역의 경우 경축순환농업형이 논과 밭의 지력을 증진시키고, 영세소농층의 한우사육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면 소득증대에 효과적임.
- 지역의 영세소농의 청보리 및 사료작물재배와 함께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 영세소농층과 고령농의 청보리(사료작물) 생산 혹은 한우사육에 중점을 두고,
 - 들녘경영체에서는 쌀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육묘와 공동방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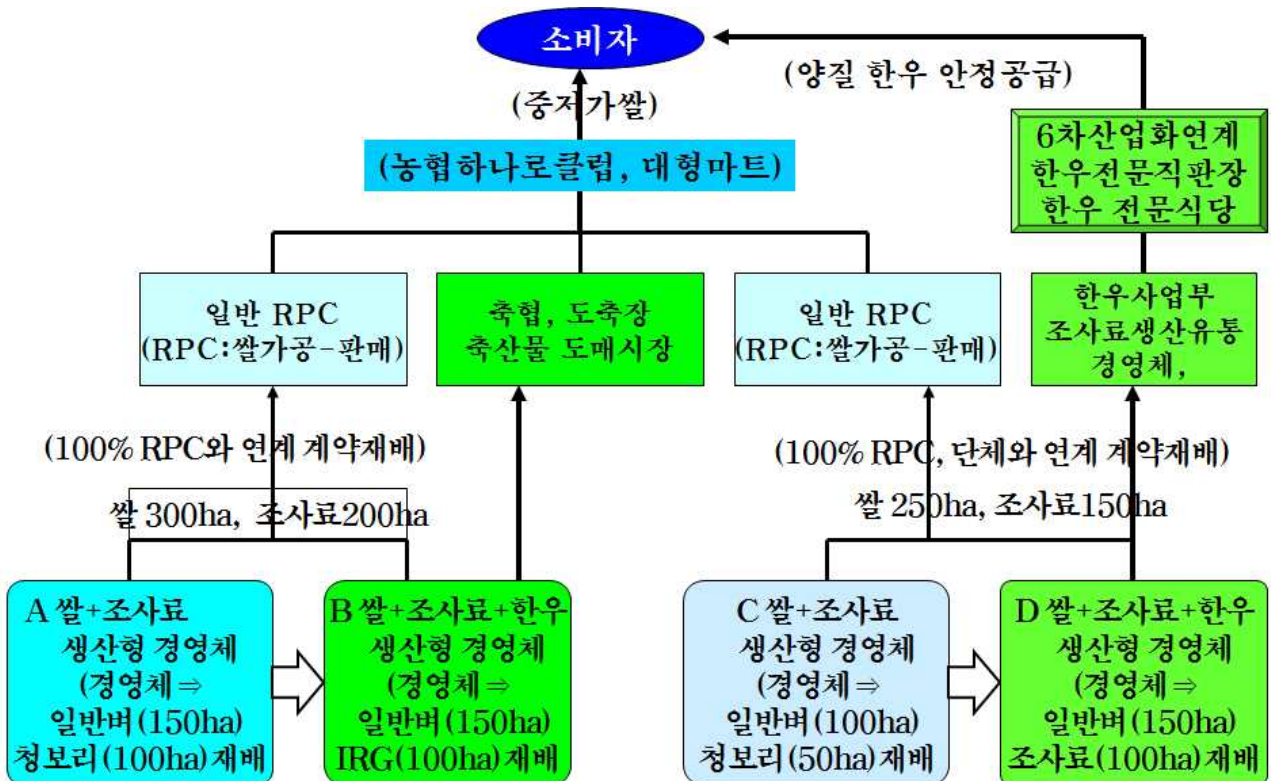
그림 49 경축순환농업의 유형과 방향



(4) 조사료 한우 생산-가공-유통 시스템 구축

- [쌀+조사료+한우 결합형] 들녘경영체 자체의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체계가 중요
 - 이를 위해 지역단위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와의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유통시스템도 중요
- 청보리 등의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한우 관련법인과 연계한 조사료 공급시스템이 중요
 - 지역단위 한우 사육두수 파악 및 조사료 수요량을 파악
 - 자체 소비량과 주변 한우농가에 판매하는 수요량 조사
- 들녘경영체 내 6차산업화를 위해 조사료의 안정생산과 연계하여 한우사업부와 가공판매부를 중심으로 한우전문직판장과 식당 개설을 통하여
 - 안정적인 한우 소비처 확보와 부가가치 증대 노력도 필요
 - 이를 위한 6차산업화의 지원도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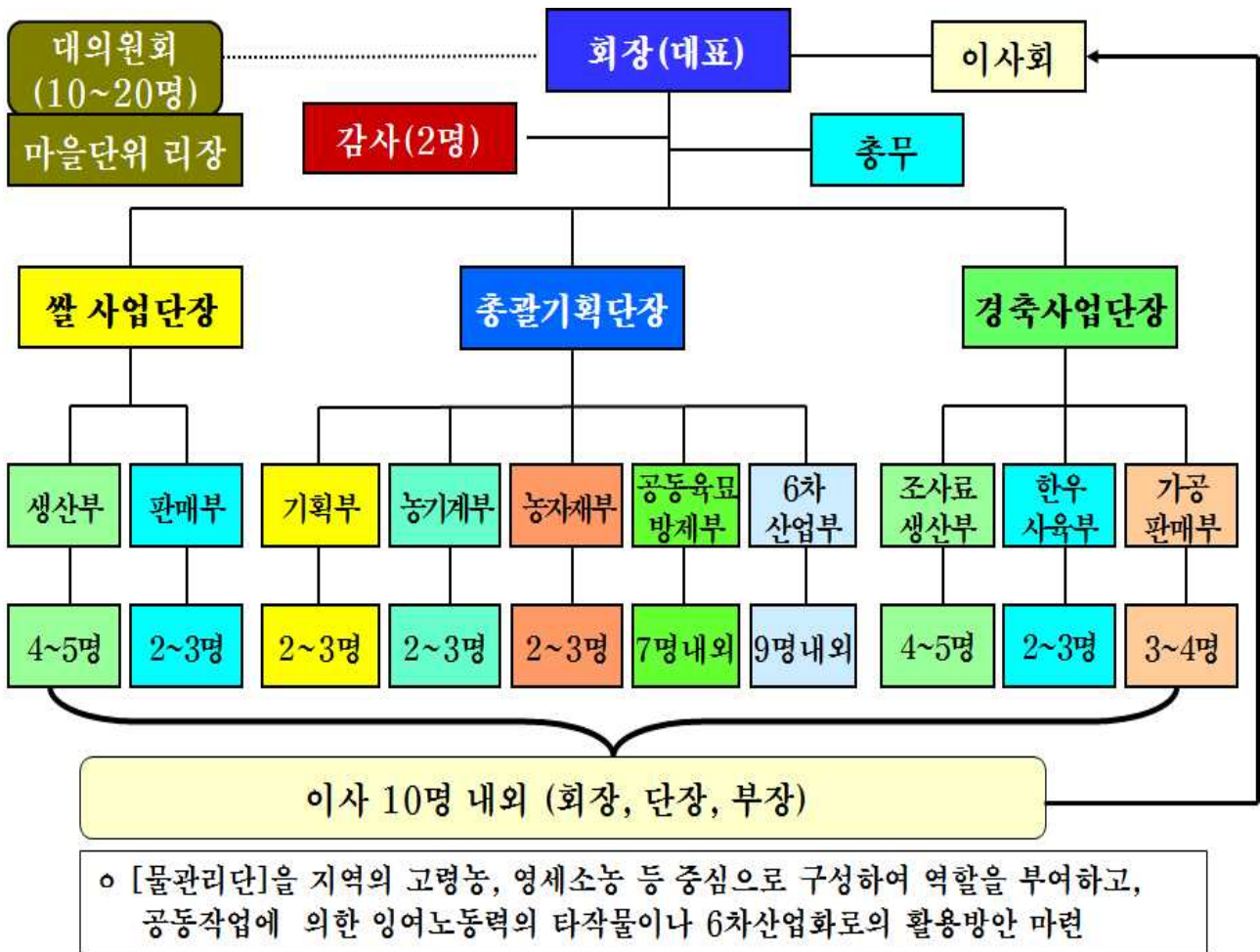
그림 50 [쌀+조사료+한우 결합형] 들녘경영체 생산-가공-유통 시스템



(5) [쌀+조사료+한우 결합형] 들녘경영체의 조직도

- [쌀+조사료+한우 결합형] 들녘경영체의 조직의 특징
 - 조사료 생산과 한우 사육, 가공판매에 중점을 두고 조직체계를 조직해야 함
 - 이를 위해 총괄기획단과 경축사업단을 구성
- 경축사업단은 조사료생산부, 한우사육부, 가공판매부 등을 두고
 - 조사료의 안정생산과 한우의 조사료 급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생산기술 확립
 - 총괄기획단과 연계한 가공판매부는 한우 육가공과 판매방향을 설정함
- 총괄기획단은 쌀+조사료의 공동육묘와 공동방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 6차산업화를 위한 한우전문직관장 개설과 직관장 운영전략과 홍보전략 등 수립
 - 관련 품목을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6차산업화 시스템을 구축

그림 51 [쌀+조사료+한우 결합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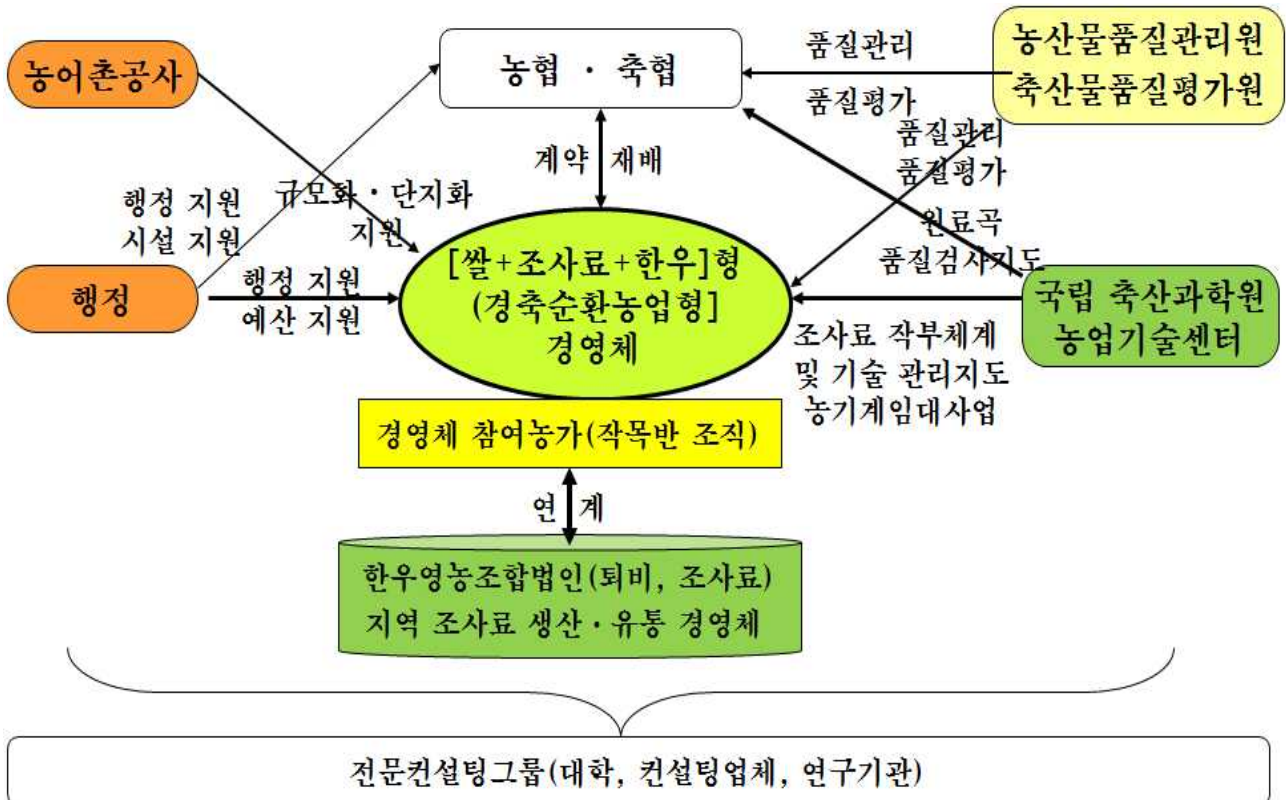


라. 지원시스템

(1) 산학연관 중간지원체계 구축

- [쌀+조사료+한우 결합형] 즉 경축순환형 들녘경영체는 특히 한우관련 영농조합법인이거나 [조사료 생산-유통경영체]와 연계 관계가 중요
 - 이와 같은 연계를 통하여 조사료의 안정공급과 우분의 퇴비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지력증진을 도모함.
- 효율적인 경축순환농업 달성을 위해서는
 - 농업기술센터는 지역특성에 맞는 조사료 생산 작부체계 개발과 재배기술지도를 통하여 양질 조사료생산에 노력
 - 국립축산과학원, 축협 등 축산관련 단체는 한우사육기술에 대한 지도도 중요
- 행정은 지역내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와 들녘경영체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체계를 구축
- 농어촌공사는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농지규모화사업 등으로 농지의 규모화, 단지화에 노력을 기울려야 함.

그림 52 [쌀+조사료+한우 결합형] 들녘경영체 산학연관 중간지원 시스템



(2) 지원사업내용

(가)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하드웨어)

○ 종자구입

- 조사료 생산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료작물 및 목초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자금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IRG, 총채벼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 지원조건 : 축발기금 보조 30%, 자부담 70%(자부담분은 전부 혹은 일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사일리지 제조

- 조사료 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하여 사일리지로 제조하는 자에게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100km미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자금용도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비, 인건비, 사후관리비용 등
- 지원조건 : 축발기금 보조 30%, 지방비60%, 자부담 10%

○ 기계·장비

-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자금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기계·장비 구입
 - * 경영체 등 :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 진압기등
 - * 농가 :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지원조건 : 축발기금 보조 30%, 지방비60%, 자부담 10%
 - * 경영체 등 : 축발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30%
 - 융자 : 연리 3%(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 농가 : 축발기금 융자 80%, 자부담 20%

○ 가공시설

-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보완, 원재료 구입 등 신규·보완·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지역 ▪ 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 지원대상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 자격 : (신규) 조사료생산자와 공급·구매계약체결(보완·운영), HACCP인정 및 국내산조사료를 원료로 사용
- 자금용도 : TMR 가공 기계·장비, 시설건축비, 기존시설 및 기계·장비 보완, 운영자금 등
- 지원조건
 - * 신규·보완 : 축발기금 보조 30%, 지방비30%, 자부담 40%
(신규) 개소당 9억원 이내, (보완) 개소당 6천만원 이내
 - * 운영 : 축발기금 용자 100%(연리 3%, 2년 거치 일시상환)
개소당 4억원이내

○ 전문단지

- 조사료 면적 확대를 위하여 대규모·집단화된 또는 조건불리지역에서 전문화된 단지를 조정하기 위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 자격 : 5년 이상 조사료 생산 (광역) 조사료 재배면적 500ha 이상 (중소) 10ha이상
- 자금용도 : 사일리지 제조, 기계·장비, 종자, 퇴비(분뇨, 액비 등)
- 지원조건
 - * (사일리지 제조) : 축발기금 보조 50%, 지방비40%, 자부담 10%
 - * (기계·장비) : 축발기금 보조 20%, 지방비30%, 자부담 20%, 용자 30%
 - * (종자) 운영 : 축발기금 보조 40%, 지방비 60%
 - * (퇴·액비) : 축발기금 보조 40%, 지방비 60%

(나)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소프트웨어)

○ 장거리 유통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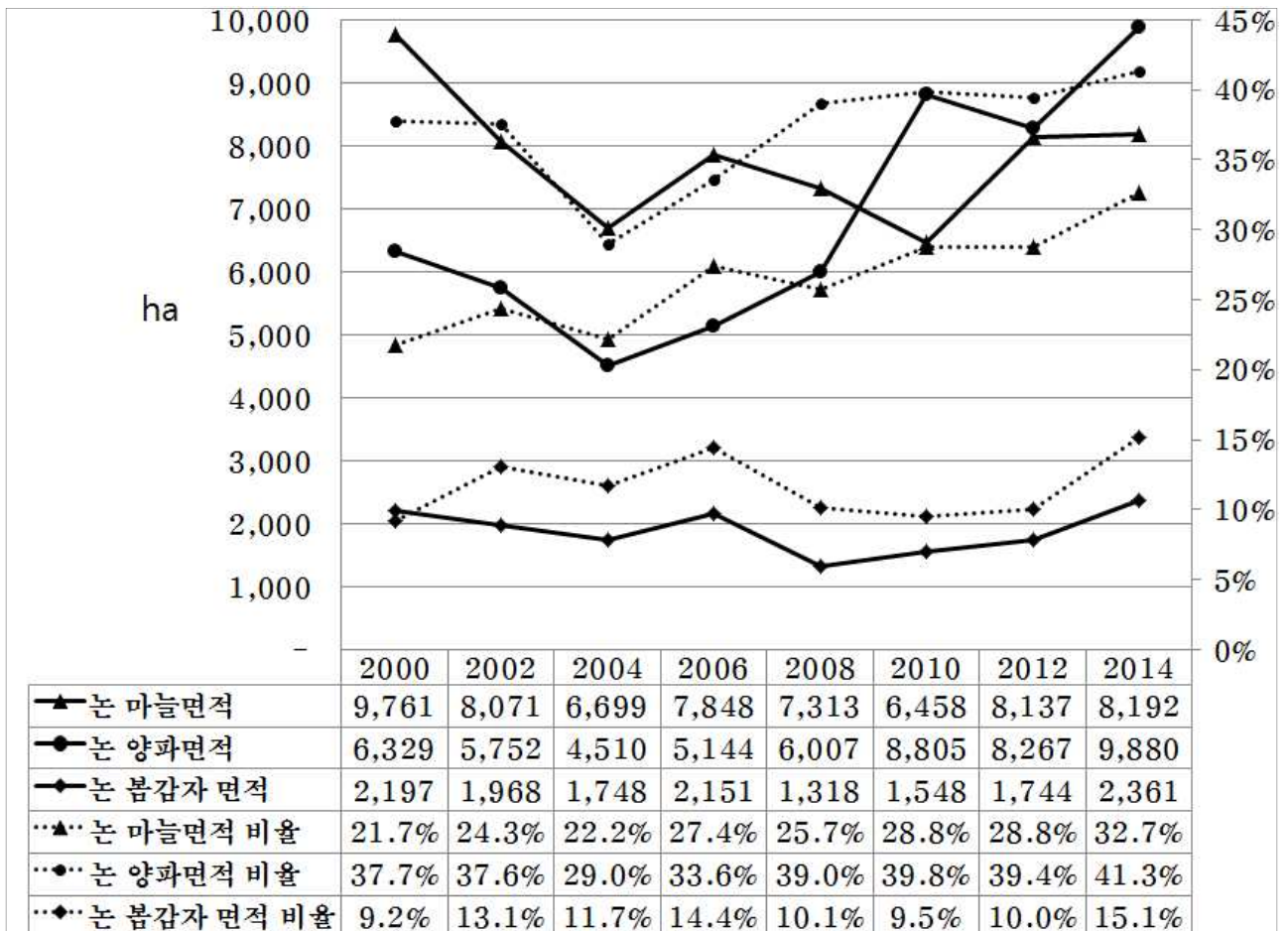
- 국내산 조사료를 100km이상의 타 지역으로 공급·구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장거리운송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 농업인의 경우 축산업 등록농가에 한정
- 자금용도 :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 지원조건 : 축발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 * 장거리운송비(단체, 경영체 등) : 타 시군 100km 이상 유통, 실운송비의 40% 지원
 - * 생산구축비(단체, 경영체 등) :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군 유통, 톤당 5천원
 - * 유통촉진비(TMR업체) : 연간 5백톤 구매, 톤당 10천원

4-4 [쌀+논 원예작물 결합형] 생산모델

가. 현황과 문제점

- 논 이용률 증대와 농가의 소득증대, 그리고 양념채소류의 수급안정을 위해서 [쌀+논 원예작물] 들녘경영체 육성도 필요함
- 마늘과 양파 및 봄감자의 논 재배 현황
 - 마늘의 경우는 논 재배면적은 약간씩 감소하고 있으나 마늘 전체 재배면적에서 논재배면적의 비율은 2000년 21.7%에서 2006년 27.4%, 2014년 32.7%로 매년 증가추세
 - 양파의 경우는 2010년도 들어와 양파재배면적의 증가와 더불어 논 재배면적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논재배면적 비율은 2000년 37.7%에서 14년에는 41.3%까지 증가함
 - 봄감자의 경우 논 재배면적의 비율이 2000년 9.2%에서 14년 15.1%로 증가함

그림 53 마늘, 양파, 봄감자 논 재배면적과 논 재배면적비율 변화추이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서 분석

지역 · 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 주요 양념채소류인 마늘과 양파의 도별 논 재배면적을 보면

- 마늘의 경우 마늘 주산지인 경남과 경북의 경우 논 재배면적 비율이 70%이상이며
- 양파의 논 재배면적은 최대의 양파주산지인 경남과 전남, 경북이 가장 많으며, 논 재배면적의 비율은 경남이 91.5%, 경북이 65.8%, 전북이 50.6%를 점하고 있음

표 101 마늘주산지 도별 논 재배면적 변화추이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논 재배 면적 (ha)	전국	9,761	8,071	6,699	7,848	7,313	6,458	8,137	8,192
	충북	172	114	79	88	52	16	5	67
	충남	213	103	63	147	77	43	63	76
	전북	153	85	69	137	158	58	73	92
	전남	965	716	559	1,111	792	702	760	888
	경북	3,753	2,956	2,591	2,787	2,418	2,213	2,954	2,739
	경남	4,196	3,821	3,161	3,357	3,609	3,198	4,008	4,103
논 재배 면적 비율	전국	21.7%	24.3%	22.2%	27.4%	25.7%	28.8%	28.8%	32.7%
	충북	16.7%	16.7%	13.1%	13.9%	8.0%	2.6%	0.6%	11.0%
	충남	5.4%	3.7%	2.4%	6.7%	3.0%	2.1%	2.2%	3.0%
	전북	15.7%	13.7%	11.2%	23.1%	22.4%	10.0%	10.0%	13.6%
	전남	4.6%	5.1%	4.6%	9.9%	7.6%	9.4%	8.3%	12.0%
	경북	71.0%	74.8%	73.8%	73.7%	70.3%	73.3%	67.4%	70.9%
	경남	62.3%	65.9%	62.8%	65.8%	66.8%	73.4%	70.0%	74.1%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서 분석

표 102 양파주산지 도별 논 재배면적 변화추이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논 재배 면적 (ha)	전국	6,329	5,752	4,510	5,144	6,007	8,805	8,267	9,880
	충남	12	17	16	12	12	31	47	113
	전북	119	121	87	156	504	651	696	837
	전남	920	712	766	1,159	1,449	2,044	1,775	2,170
	경북	2,332	2,109	1,519	1,407	1,358	1,892	1,493	1,711
	경남	2,856	2,642	1,941	2,330	2,544	4,017	4,081	4,845
논 재배 면적 비율	전국	37.7%	37.6%	29.0%	33.6%	39.0%	39.8%	39.4%	41.3%
	충남	4.9%	7.8%	6.3%	7.5%	4.1%	7.9%	7.6%	15.6%
	전북	24.4%	24.3%	17.2%	27.6%	50.6%	50.0%	51.1%	50.6%
	전남	11.4%	9.6%	8.5%	13.5%	17.7%	17.4%	16.6%	18.0%
	경북	72.5%	72.1%	67.0%	65.4%	68.7%	70.2%	63.0%	65.8%
	경남	84.6%	85.4%	86.5%	86.1%	90.5%	93.8%	90.8%	91.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서 분석

- 봄감자의 도별 논 재배면적을 보면 대부분의 도에서 100~500ha까지 주산지시군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 특히 논 재배면적 비율은 경남이 33.5%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전북이 24.5%로 높은 편임.

표 103 봄감자 도별 논 재배면적 변화추이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논 재배 면적 (ha)	전국	2,197	1,968	1,748	2,151	1,318	1,548	1,744	2,361
	경기	2	2	1	30	5	67	59	175
	강원	33	11	54	128	31	16	31	115
	충북	131	145	111	199	66	70	40	170
	충남	34	43	37	185	161	24	143	340
	전북	71	34	26	126	83	40	193	262
	전남	431	520	462	349	278	328	170	353
	경북	498	399	285	404	317	442	485	500
	경남	965	774	731	657	318	527	584	420
논 재배 면적 비율	전국	9.2%	13.1%	11.7%	14.4%	10.1%	9.5%	10.0%	15.1%
	경기	0.1%	0.2%	0.1%	3.1%	0.5%	4.7%	3.4%	10.5%
	강원	0.4%	0.4%	2.4%	5.8%	1.7%	0.9%	1.6%	6.4%
	충북	8.8%	13.7%	10.0%	17.0%	5.7%	4.2%	2.4%	11.4%
	충남	2.5%	3.1%	2.3%	11.3%	10.8%	1.0%	4.7%	14.6%
	전북	5.0%	2.8%	2.5%	13.1%	7.9%	4.3%	20.1%	24.5%
	전남	20.4%	27.3%	21.0%	16.9%	18.1%	15.3%	8.3%	15.9%
	경북	17.6%	20.8%	15.8%	17.9%	14.6%	15.6%	15.7%	16.9%
	경남	41.5%	41.0%	41.6%	38.0%	22.7%	35.8%	37.0%	33.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서 분석

나. 정부의 주요 추진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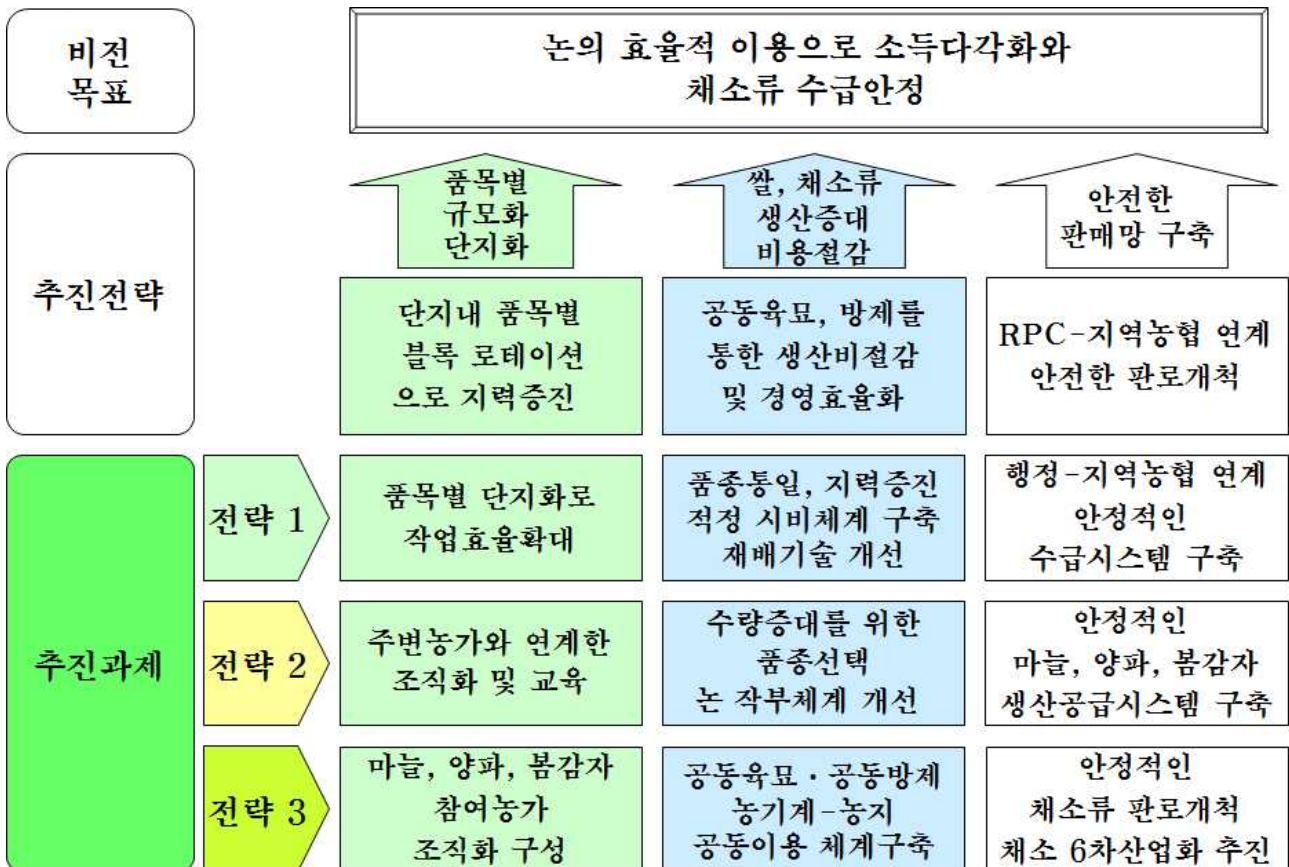
- 논농업의 경우 쌀, 맥류, 조사료의 경우 단위면적당 낮은 소득으로
 - 논농업이 중심인 지역에서는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음.
- 채소류의 경우 주산지를 중심으로 하는 채소류 수급의 안정화가 가장 큰 목적
 - 주산지중심으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계약재배를 통한 수급안정화 도모
- 따라서 본 [쌀+마늘, 양파, 봄감자] 들녘경영체의 경우 논외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논벼 이모작으로 상기 품목을 재배함으로써
 -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의 수급조절을 도모할 목적으로 경영체 육성

다. 사업추진전략

(1) 경영체의 목표 및 추진과제

- [쌀+논 원예작물 결합형] 들녘경영체의 목표와 비전
 - 논이 효율적인 이용으로 소득다각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와 채소수급안정에 기여
-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 들녘경영체내 농가나 주변농가의 품목별 조직화임. 이들 품목별 조직화를 통한 생산-유통 교육을 시키고,
 - 지력증진을 위해 적정 시비체계를 구축하고,
 - 지역과 품목 특성에 맞는 작부체계를 개발하여 품목별 블록로테이션 운영
-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 품목별 공동육묘와 공동방제 시스템을 구축
 - 농기계와 농지의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품목의 다양성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농협과 행정,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공급시스템을 구축
- 1차 가공과 체험을 통한 6차산업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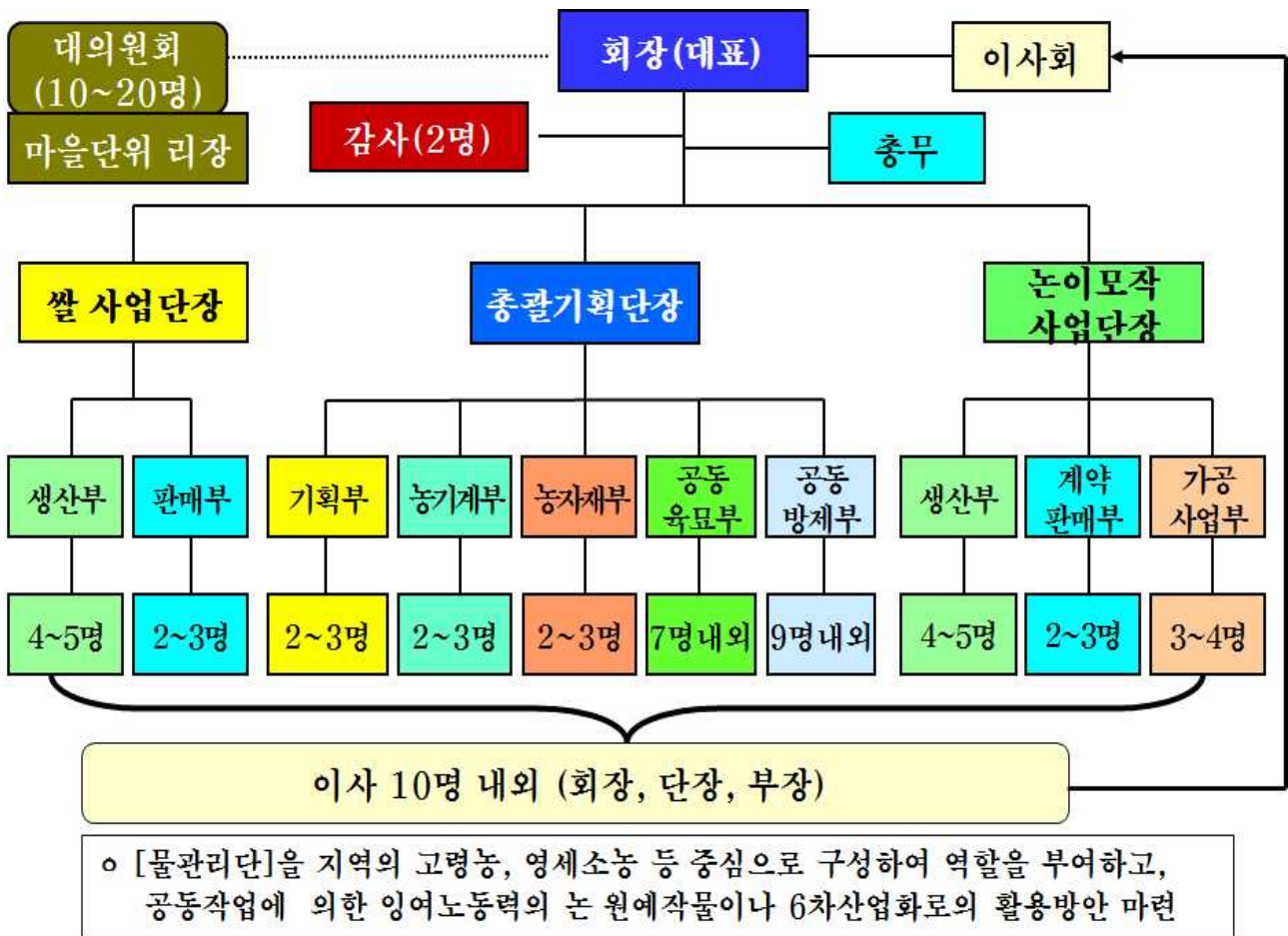
그림 54 [쌀+논 원예작물 결합형] 들녘경영체 목표와 추진전략



(2) 들녘경영체의 조직도

- 본 들녘경영체는 품목의 다양성으로 총괄기획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
 - 기획부에서는 지역특성(지역의 주산지 품목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
 - 생산의 주체, 유통의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논 이모작 사업단을 구성하여
 - 품목별 생산부를 설치하여 안정생산을 도모하고
 - 계약판매부는 생산된 품목을 농협, 원협 등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판로개척

그림 55 [쌀+논 원예작물 결합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라. 지원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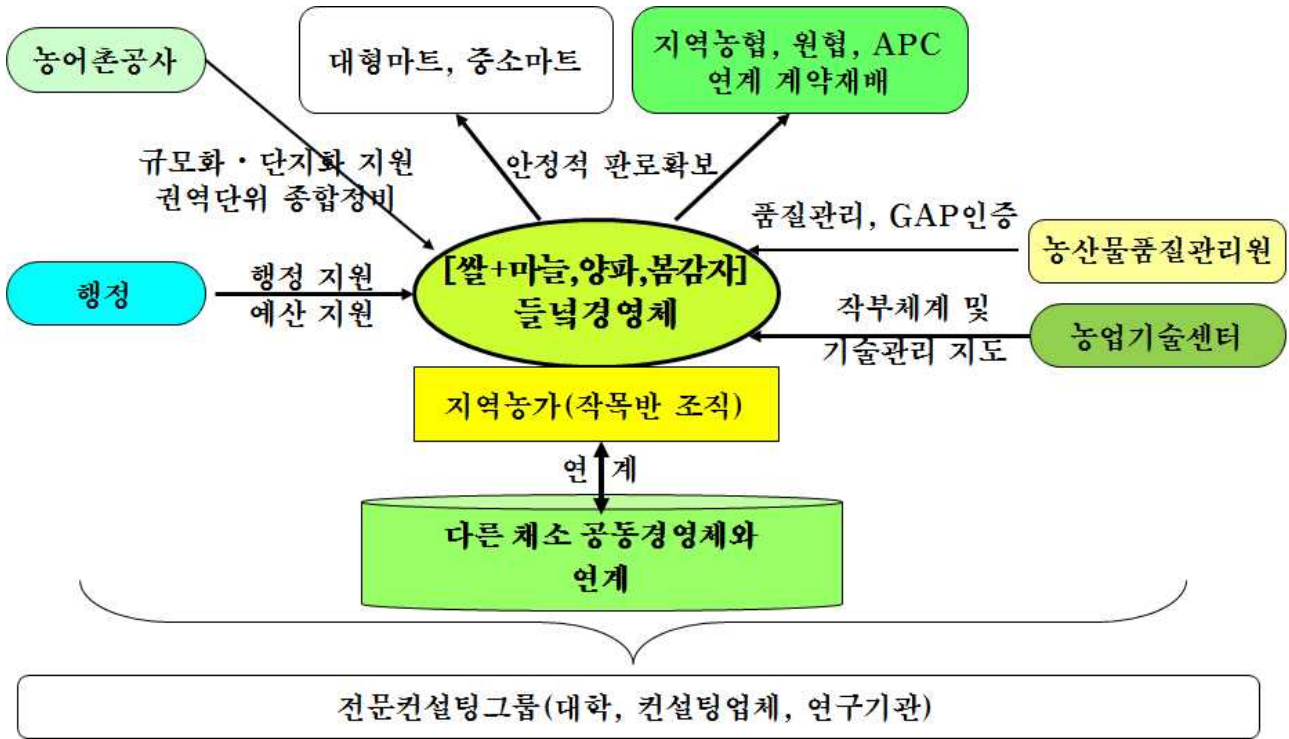
(1) 산학연관 중간지원체계 구축

- [쌀+논 원예작물 결합형] 들녘경영체의 경우는
 - 특히 판매처인 지역농협 혹은 원협이 가장 중요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함.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 이들 지역농협과 원협의 경우 행정과 연계하여 마늘, 양파, 봄감자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해야 함
-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는 지역품목에 맞는 작부체계와 품목개발과 이에 따른 재배기술 교육 및 지원이 필요

그림 56 [쌀+논 원예작물 결합형] 들녘경영체 산학연관 중간지원 시스템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산지 읍면단위에서 조직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는 들녘경영체
 - * 생산주체와 유통주체를 동시에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들녘경영체
 - * 예시 : 농협주체(농협+생산농가 연계), 산지유통법인(법인+생산농가)

○ 지원내역(마늘, 양파를 중심으로)

- 비용절감 패키지 지원 희망
 - * 양파사례 : 정식기계 + 친환경 비닐 + 예취기 + 수확기계 패키지 지원
- 주산지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체에 패키지 지원내역 발굴
 - * 생산기반조성 용도 : 관정, 스프링클러, 경지기반정비사업
 - * 생산기계화 용도 : 공동육묘장, 파종기, 비닐피복기, 수확기, 퇴비사 등
 - * 유통 용도 : 공동선별기, 포장기, 저장시설(저온저장고), 1차 가공시설
 - * S/W 사업 : 교육 및 컨설팅, 홍보사업

5. 논+밭작물 확대유형

5-1 현황과 문제점

- 밭 이용률은 1975년 153%에서 점진적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음.
 - 2005년에는 110% 수준에서 '13년에는 100% 이하까지 떨어짐
 - 이 같은 밭 이용률 감소는 농가의 농업총수입의 감소를 초래함
- 이와 같은 밭 이용률 저하 원인은
 - 맥류와 두류의 밭 재배면적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임
 - 특히 두류의 밭 이용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1975년 32.6%에서 2013년 11%까지 떨어짐
- 채소와 과수의 밭 이용률의 경우 200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임

표 104 밭 이용면적 및 주요 품목별 이용률 변화추이

구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밭이용면적(천ha)		1,482	1,208	1,075	953	878	872	773	746	753
밭 이용률 (%)	합계	152.9	134.8	129.2	123.1	114.7	116.9	107.3	102.7	98.6
	식량작물	98.6	64.3	49.8	42.7	27.2	28.1	27.8	21.7	21.9
	맥류	40.9	19.6	13.2	8.5	3.1	2.1	1.2	1.0	0.6
	잡곡	7.5	5.8	4.7	4.7	3.3	3.2	3.4	3.2	3.5
	두류	32.6	27.2	22.5	23.2	15.5	13.6	14.7	10.4	11.0
	서류	14.5	9.9	7.2	4.9	4.9	5.5	6.2	5.4	5.9
	채소	23.0	35.4	35.5	30.6	33.4	35.0	29.3	24.4	24.8
	과수	7.7	11.1	13.1	16.8	21.4	22.5	20.5	21.2	19.7
	시설작물		0.5	1.0	2.6	5.1	6.7	6.9	7.8	8.0

- 품목별 도별 밭 이용률 변화추이
 - 두류는 특히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에서 밭 이용률이 크게 저하
 - 채소는 경기, 충북, 경북, 경남에서 밭 이용률이 매우 낮아졌으며
 - 과수는 경북과 경남, 충북에서 그래도 밭 이용률이 유지되고 있음
 - 맥류는 대부분의 도에서 밭 이용률이 낮아졌으며
 - 서류의 경우는 대부분의 도에서 밭 이용률이 큰 변화가 없음

표 105 도별 주요 품목의 밭 이용률 변화추이

항목	시도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두류 (%)	경기	30.7	25.3	17.0	14.1	9.8	10.9	11.5	8.3	9.5
	강원	35.9	21.6	18.8	18.3	13.1	15.5	16.2	11.8	11.6
	충북	30.8	26.4	22.6	25.5	16.0	15.6	17.4	15.8	16.3
	충남	37.4	32.2	24.4	20.3	11.5	11.7	13.5	9.8	12.2
	전북	28.8	27.4	19.8	20.2	12.8	11.1	12.7	6.8	8.4
	전남	31.7	35.1	34.7	41.9	30.9	21.2	23.1	13.2	14.0
	경북	36.6	26.2	18.9	19.6	11.2	11.1	13.0	9.0	10.1
	경남	31.8	25.4	24.5	25.6	17.8	14.3	13.9	8.6	8.1
맥류 (%)	경기	22.5	2.6	0.7	0.4	-	0.1	0.2	0.2	0.2
	강원	11.9	2.8	1.8	1.0	0.5	0.4	0.4	0.3	0.1
	충북	25.8	5.2	1.7	0.4	0.1	0.2	0.2	0.1	0.1
	충남	45.6	19.2	6.8	1.9	0.2	0.5	0.3	0.2	0.1
	전북	40.9	16.6	8.2	5.1	0.7	2.4	1.0	0.9	0.9
	전남	69.7	50.5	43.0	31.3	11.2	7.3	3.8	2.9	1.9
	경북	42.3	14.1	5.9	2.9	0.8	0.8	0.4	0.2	0.1
	경남	63.4	31.0	22.2	13.3	3.8	2.1	1.0	0.4	0.3
서류 (%)	경기	7.3	3.8	2.6	1.8	2.8	5.8	6.0	5.8	6.7
	강원	14.8	11.7	14.3	10.0	10.2	12.8	10.8	8.8	9.5
	충북	6.8	3.9	2.2	1.0	1.2	2.8	3.4	4.6	5.3
	충남	8.6	4.8	2.7	2.0	2.1	3.4	5.8	7.3	8.5
	전북	19.1	9.5	5.4	4.5	6.6	6.6	9.1	6.6	7.2
	전남	25.8	17.4	13.2	7.7	6.3	5.2	6.2	5.5	5.9
	경북	7.8	5.2	2.8	1.8	1.5	2.5	2.8	3.1	3.7
	경남	23.3	17.0	11.8	7.6	6.6	5.8	5.5	3.8	4.0
채소 (%)	경기	37.6	45.8	41.2	31.7	29.4	28.4	21.1	18.4	17.7
	강원	14.5	28.9	31.3	28.3	35.2	42.7	32.6	31.2	31.6
	충북	26.1	47.4	41.3	25.0	28.7	30.3	23.5	18.8	18.4
	충남	29.8	42.3	39.9	37.2	36.7	37.2	28.5	24.8	23.7
	전북	24.1	43.5	42.4	44.8	48.3	43.2	31.2	23.0	22.7
	전남	14.7	30.9	37.0	38.3	54.0	56.4	50.3	35.1	40.0
	경북	20.4	30.7	30.7	24.6	23.1	24.6	20.9	18.7	17.5
	경남	25.8	29.9	26.4	22.5	22.5	22.2	19.3	16.6	17.2
과수 (%)	경기	7.9	9.6	9.7	9.1	9.4	11.3	10.9	10.4	9.1
	강원	2.1	2.6	2.3	2.3	2.2	3.2	3.2	3.1	3.2
	충북	8.9	11.6	10.6	12.8	16.3	18.6	18.6	20.8	19.7
	충남	10.0	11.9	10.6	12.0	15.0	17.2	15.2	11.8	10.7
	전북	3.9	6.9	7.1	6.1	8.5	11.4	10.6	11.1	12.7
	전남	2.1	3.3	5.3	8.0	14.5	14.9	14.0	17.1	15.2
	경북	12.6	20.4	26.7	37.1	43.1	39.3	37.6	39.9	36.4
	경남	5.9	12.0	14.7	19.2	28.6	34.2	31.5	33.5	30.4

- 한편 이들 쌀을 제외한 식량작물과 채소, 과수의 경우
 - 대부분의 작물에서 시군별로 읍면별로 주산지가 형성되어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생산-유통을 통한 수급조절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

표 106 주요 품목 재배의 시군 및 읍면동 집중도(2010년)

품목	재배면적 (ha)	누적 재배면적 비율별 시군수				누적 재배면적 비율별 읍면동수				
		~20%	~30%	~40%	~50%	~20%	~30%	~40%	~50%	
식량작물	보리	25,086	2	3	4	6	7	12	19	28
	콩	59,060	6	11	18	29	34	77	139	225
	고구마	23,260	3	7	11	18	12	27	57	112
	감자	21,878	3	6	9	14	8	17	34	70
양념채소	무(노지)	15,859	1	2	3	6	2	6	14	25
	배추(노지)	28,270	2	5	10	16	9	22	44	81
	고추(노지)	43,405	7	14	21	30	50	98	162	248
	마늘	20,495	3	4	6	7	9	18	29	44
	양파	16,520	1	3	4	6	6	12	21	32
과일류	사과	30,526	3	5	8	10	11	20	32	50
	배	15,341	2	5	8	14	8	17	31	52
	복숭아	12,006	2	5	7	10	8	16	26	42
	포도	13,800	2	4	5	7	7	13	21	31

자료 : 통계청, [2010년 농업총조사], 2012

5-2 [쌀+밭 식량작물 확대] 생산모델

가. 현황과 문제점

- 주요 밭 식량작물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변화추이
 - 감자의 경우 재배면적은 1970년 대비 2013년은 거의 50%가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의 경우는 단위면적당 수량 증가로 더 증가하였음
 - 고구마 재배면적은 1970년 대비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크게 감소함
 - 콩은 1970년 대비 재배면적은 27%로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은 66.4%로 감소하였고,
 - 옥수수의 경우는 1980년 대비 재배면적은 46%로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은 60.6%로 감소하였음.

표 107 주요 밭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추이

(단위 : 천ha, 천톤)

구분	감 자		고 구 마		콩		옥 수 수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면 적	생산량
1970	54	605	127	2,136	295	232	47	68
75	52	660	95	1,953	274	311	32	54
80	37	446	55	1,103	188	216	35	154
85	31	575	33	787	156	234	26	132
90	21	371	19	432	152	233	26	120
95	25	592	15	305	105	160	18	74
2000	29	705	16	345	86	113	16	64
05	33	894	17	283	105	183	15	73
10	25	617	19	299	71	105	16	74
2013	27	727	22	330	80	154	16	8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2014.9

주 : 감자, 고구마 생산량은 생서기준임.

- 이와 같은 밭 식량작물 재배면적의 감소로 서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밭 식량작물의 자급률(사료용 제외)은 크게 저하됨
 - 콩이 1970년(92.3%)에서 1995년(37.0%), 2013년(29.1%)로 감소하고
 - 옥수수의 경우도 1970년(82.9%)에서 1980년(27.1%), 1990년(8.2), 2013년(4.5%)로 크게 감소함

표 108 주요 곡물 자급도 변화추이(%)

구분	전체곡물 자급도					사료용을 제외한 자급도				
	계	옥수수	두류	서류	기타	계	옥수수	콩	서류	기타
1970	80.5	18.9	86.1	100.0	96.9	86.2	82.9	92.3	122.7	100.8
75	73.1	8.3	85.8	100.0	100.0	79.1	25.7	97.8	133.1	109.0
80	56.0	5.9	35.1	100.0	89.8	69.6	27.1	64.3	111.2	98.9
85	48.4	4.1	22.5	100.0	11.6	71.6	15.5	62.7	111.1	52.6
90	43.1	1.9	20.1	95.6	13.9	70.3	8.2	64.9	101.2	79.7
95	29.1	1.1	9.9	98.4	3.8	55.7	5.0	37.0	108.6	19.9
2000	29.7	0.9	6.4	99.3	5.2	55.6	3.7	28.2	110.8	18.9
05	29.4	0.9	9.7	98.6	10.0	53.4	3.0	30.9	110.0	11.7
10	27.6	0.9	10.1	98.7	9.7	54.0	3.8	32.4	109.4	10.6
13(P)	23.1	1.0	9.7	96.2	8.4	47.2	4.5	29.1	103.5	12.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2014.9

주 : 양곡년도(전년 11월 1일부터当年 10월 31일까지) 기준임.

나. 정부의 주요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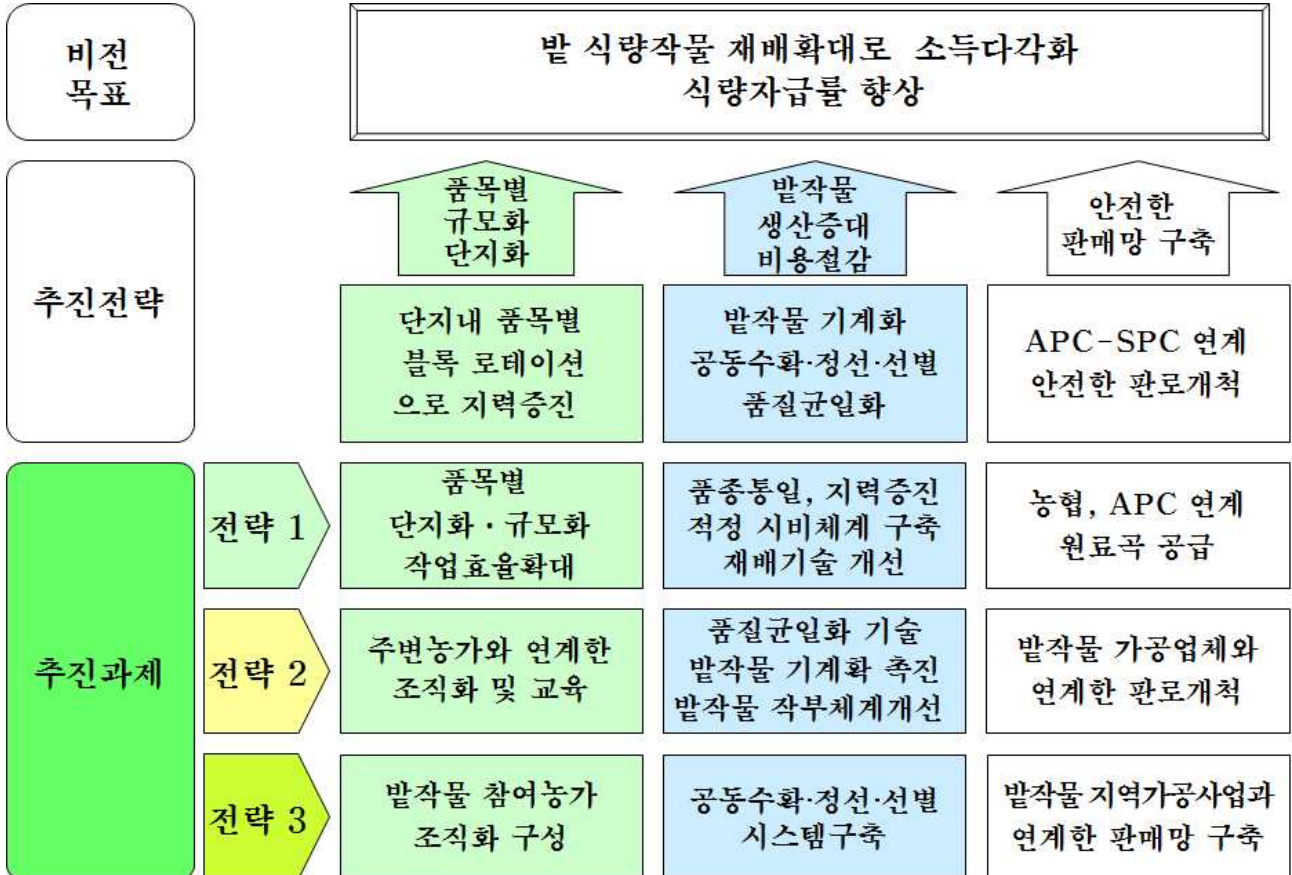
- 주요곡물 자급률 향상 : ('12) 12% → ('17) 15.4 → ('22) 18.1
 - 콩 자급률(생산량) : ('12) 33.7%(158) → ('17) 38.3(182) → ('22) 43(213)
- 기계화·주산지 규모화·브랜드경영체 육성을 통해 생산·유통 안정
 - 농기계 임대사업 등을 통해 '15년 밭작물 기계화율 60% 달성('10:46%)
 - * 밭농업 농작업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 이식, 수확 작업 기계 집중 개발
 - * 파종·이식 / 수확 / 비닐피복 : ('10) 4% / 12 / 44 → ('15) 10 / 20 / 50
 - 고기능성 품종 및 다양한 작부체계에 적용 가능한 품종 개발
 - * 주요곡물 품종개발(누계) : ('11) 11품종 → ('13) 38 → ('15) 66
 - 주산지 규모화·단지화를 통해 농가조직화, 생산비 절감 추진
 - * 특산단지(콩) : ('10) 10 → ('15) 40
 - 콩 소비확대를 위해 음식점(콩 전문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추진
 - * 요식업 중앙회, 수입품 취급 단체·기업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
- 밭 직불금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원 이 밭 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고,
 - 현행 26개 품목을 '15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원이 추가되어 올해와 같이 ha당 40만원이 지급될 계획임
-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
 -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다. 사업추진전략

(1) 경영체의 목표 및 추진과제

- [쌀+밭 식량작물 확대형] 들녘경영체의 비전과 목표
 - 밭 식량작물 재배확대로 소득다각화와 식량자급력 증대
- 밭 식량작물은 두류, 서류, 옥수수 등이 있음
 - 이들 품목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택하여 규모화, 단지화를 도모
 - 품목별 지력증진을 위해 적정시비체계 구축과 품목별 블록 로테이션 등 재배기술 체계를 개선
- 밭작물 기계화 추진을 통하여 품질을 균일화하고 비용절감을 도모
 - 파종, 수확 등에서 기계화 도모
 - 수확후 정선, 선별, 저장시스템 구축
- 지역의 농협, 원협, APC 등을 통한 안전한 판매망 구축
 - 밭작물 사업과 연계된 가공업체와 연계
 - 밭작물의 1차가공 등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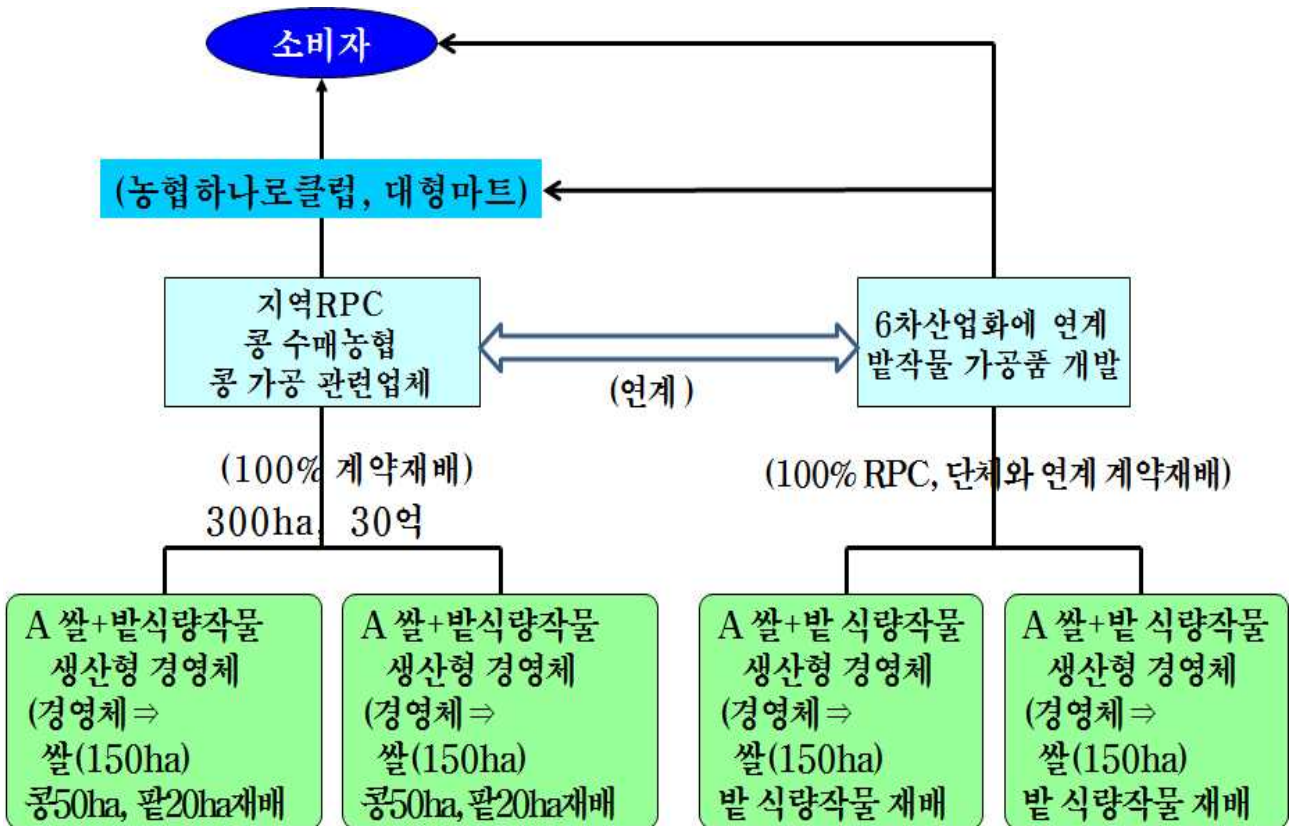
그림 57 [쌀+밭 식량작물 확대형] 들녘경영체 목표와 추진전략



(2) 쌀 식량작물의 생산-가공-유통 시스템 구축

- 들녘경영체에서 생산된 쌀 식량작물의 경우
 - 지역RPC와 식량작물 수매농협, 가공업체 등과 연계하여 판매망 구축
- 들녘경영체에서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쌀 식량작물 1차 가공품 개발과 이를 체험과 연계한 6차산업화를 통한 판매촉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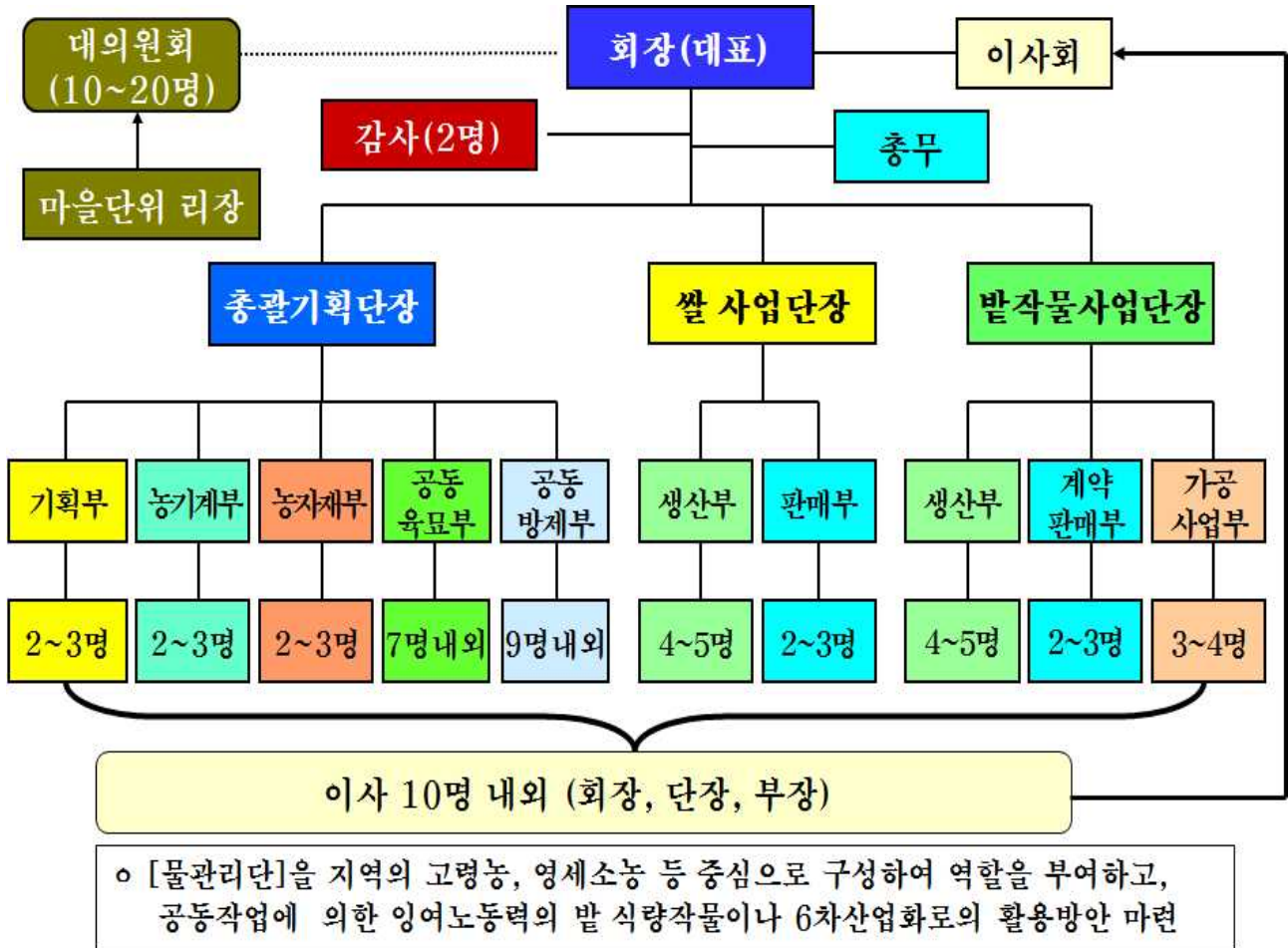
그림 58 [쌀+밭 식량작물 확대형] 들녘경영체 생산-가공-유통 시스템



(3) 쌀 식량작물 들녘경영체 조직도

- 쌀사업단, 밭작물사업단, 총괄기획단 등 3개단을 구성하여 품목별 품목연계사업 전개
- 총괄기획단의 경우
 - 쌀 식량작물의 품목배치, 농기계 공동이용부문, 농자재 공동구매-이용부문, 공동육묘와 공동방제를 담당
- 밭작물 사업단의 경우
 - 쌀 식량작물 생산부문과 계약판매부, 가공사업부를 담당
 - 식량작물의 1차 가공과 연계한 6차산업화 담당

그림 59 [쌀+밭 식량작물 확대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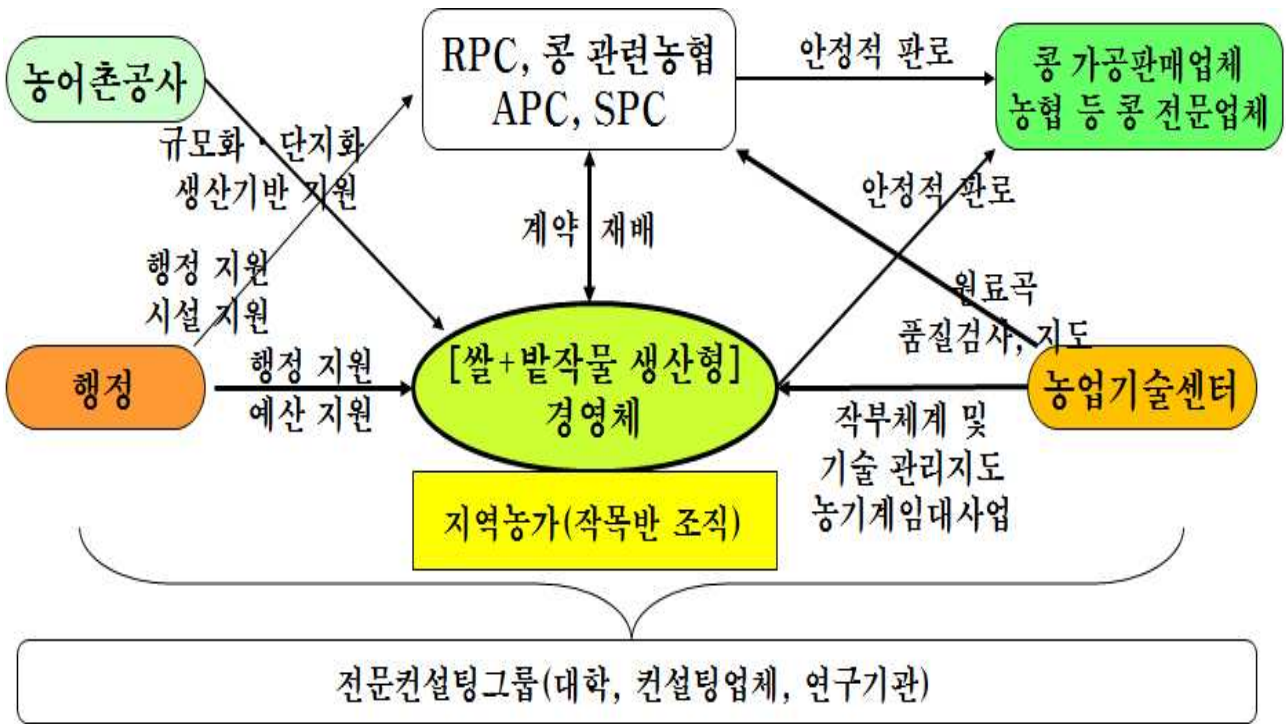


라. 지원시스템

(1) 산학연관 중간지원체계 구축

- [쌀+밭 식량작물 확대형] 들녘경영체의 경우 산학연관 중간지원 시스템이 절대 필요
- 쿵을 비롯한 밭 식량작물의 생산과 연계된 농업기술센터는
 - 지역특성에 맞고 연작피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밭 작부체계 개발과 품목개발, 품목별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의 들녘경영체 연계를 통하여 농기계 비용절감을 도모해야 함
- 밭 식량작물 생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서는 밭 규모화 단지화를 추진하고 밭 생산기반 지원이 요구됨
- 농협, 원협, APC 등은 들녘경영체에서 생산되는 밭식량작물의 가공업체와 연계, 자체 판매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판매망을 구축해야 함.

그림 60 [쌀+밭 식량작물 확대형] 들녘경영체 산학연관 중간지원 시스템



(2) 지원내용

- 쌀 부문에서는 기본적으로
 - 공동육묘장과 공동방제기(광역살포기, 무인헬기) 등의 시설장비 지원 필요
- 밭 식량작물 부문 지원내역
 - 비용절감 패키지 지원
 - * 정식기계 + 친환경 비닐 + 애취기 + 수확기계 패키지 지원
 - 주산지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체에 패키지 지원내역 발굴
 - * 생산기반조성 용도 : 관정, 스프링클러, 경지기반정비사업
 - * 생산기계화 용도 : 공동육묘장, 파종기, 비닐피복기, 수확기 등
 - * 유통 용도 : 공동정선기, 선별기, 포장기, 저장시설(저온저장고), 1차 가공시설
 - * S/W 사업 : 교육 및 컨설팅, 홍보사업
 -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
 -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

5-3 [쌀+채소류] 생산모델

가. 현황과 문제점

○ 주요 양념채소류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동향

- 배추, 무, 고추, 마늘 재배면적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생산량은 단위면적당 수량증가로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음
- 양파의 경우는 90년대 중반이후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생산량도 증가함.

표 109 주요 채소류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추이

(단위 : 천ha, 천톤)

구분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기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0	71	797	66	765	37	53	15	78	4.0	83	61.0	737
75	39	2,263	36	1,370	99	128	14	103	4.2	95	50.8	671
80	48	3,040	49	1,973	133	125	37	253	7.7	275	84.3	1,598
85	41	2,790	38	1,586	118	165	39	256	10.7	440	90.3	1,846
90	44	3,241	35	1,686	63	133	44	417	7.6	407	83.4	1,776
95	40	2,638	31	1,290	87	193	40	462	15.8	975	107.2	2,605
2000	46	2,869	34	1,507	75	194	45	474	16.8	878	79.2	2,113
05	34	2,182	23	1,093	61	161	32	375	16.7	1,023	53.3	1,531
2013	32	2,388	22	1,299	45	118	29	412	20.0	1,294	44.0	1,18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2014.9

○ 한편 지난 10년간의 10a당 수량을 보면,

- 대부분의 양념채소류의 경우 기상여건에 따라 연도별 차이가 심함
- 가을배추 : 최대 10,946kg/10a에서 최소 8,773kg 24.8%의 차이
- 가을무 : 최대 8,483kg/10a에서 최소 6,333kg 33.9% 차이
- 건고추 : 최대 292kg/10a에서 최소 181kg 61.3% 차이
- 마늘 : 최대 1,405kg/10a에서 최소 1,159kg 21.2% 차이
- 양파 : 최대 7,412kg/10a에서 최소 5,703kg 30.0% 차이

표 110 주요 양념채소류 10a당 수량 변화추이(kg)

구분	가을배추	가을무	건고추	마늘	양파
2004	10,212	6,729	250	1,183	6,090
05	10,134	6,542	263	1,180	6,114
06	9,896	6,838	220	1,159	5,809
07	9,351	6,409	292	1,288	6,836
08	10,241	7,544	254	1,321	6,725
09	10,946	8,034	262	1,357	7,412
10	8,773	6,333	214	1,212	6,384
11	10,948	7,354	181	1,227	6,616
12	9,681	7,324	229	1,199	5,703
2013	10,174	8,483	260	1,405	6,45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2014.9

- 한편 주요 양념채소류의 1인당 연간소비량은
 - 매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표 111 주요 양념채소류 1인당 연간 소비량(kg)

구분	계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기타
70	59.9	19.0	19.8	1.5	1.9	1.2	16.5
75	62.5	15.5	25.7	1.8	2.0	2.7	14.8
80	120.3	31.0	47.6	3.9	5.4	2.2	30.2
85	98.6	23.1	35.6	3.8	7.8	1.5	26.8
90	132.6	26.7	46.9	6.5	7.4	1.8	43.3
95	160.6	21.1	38.3	7.5	16.5	2.4	74.8
00	165.9	24.4	39.7	7.2	14.8	2.5	77.3
05	145.5	17.2	30.2	6.2	17.0	2.2	72.1
10	146.1	20.9	41.7	6.8	28.6	2.6	45.5
13	170.0	26.2	56.2	9.1	27.0	5.7	45.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2014.9

주 : 순식기준

- 양념채소류의 경우 재배면적의 변화와 10a당 수량차에 의한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
 -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가격차이의 진폭이 큼
- 따라서 양념채소류의 수급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이 절대 필요

그림 61 주요 양념채소류의 단위무게당 가격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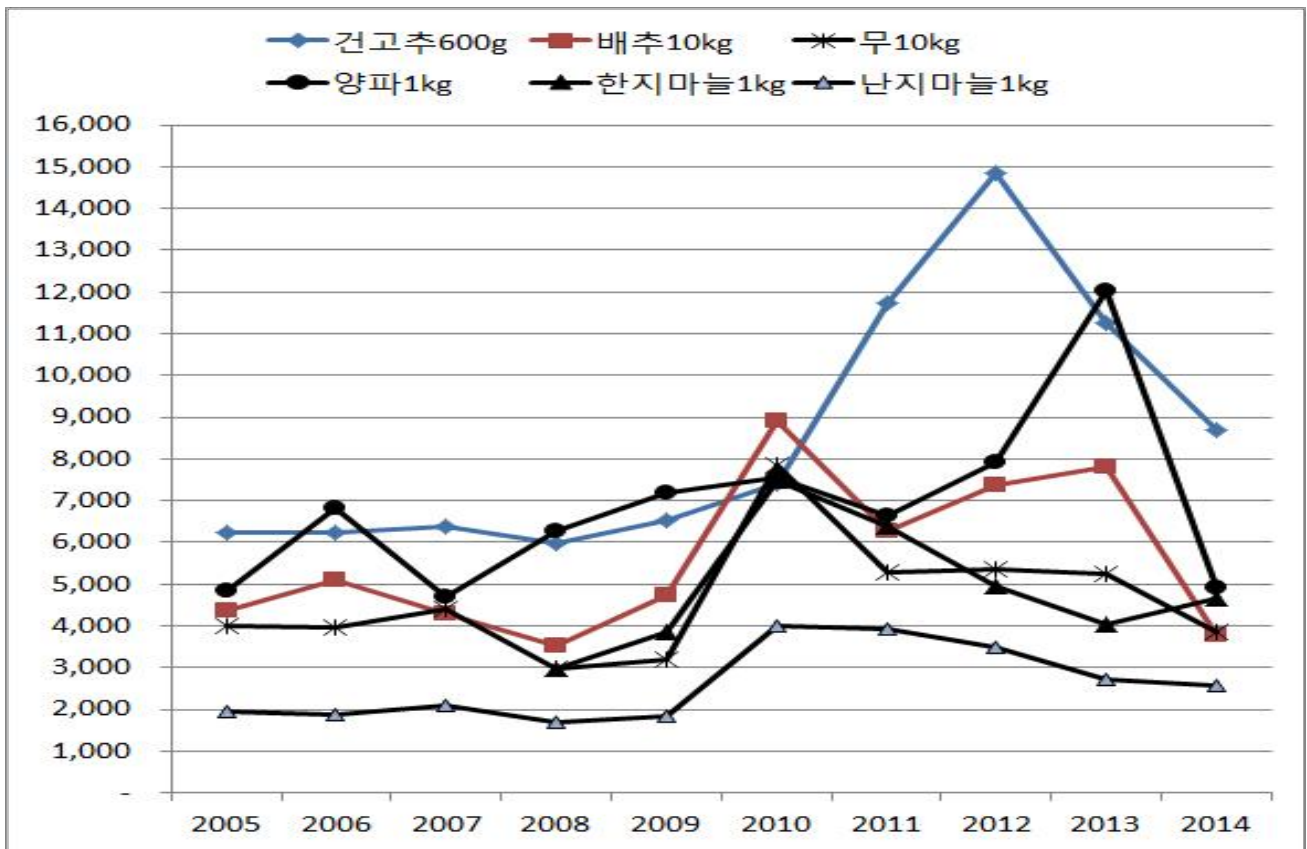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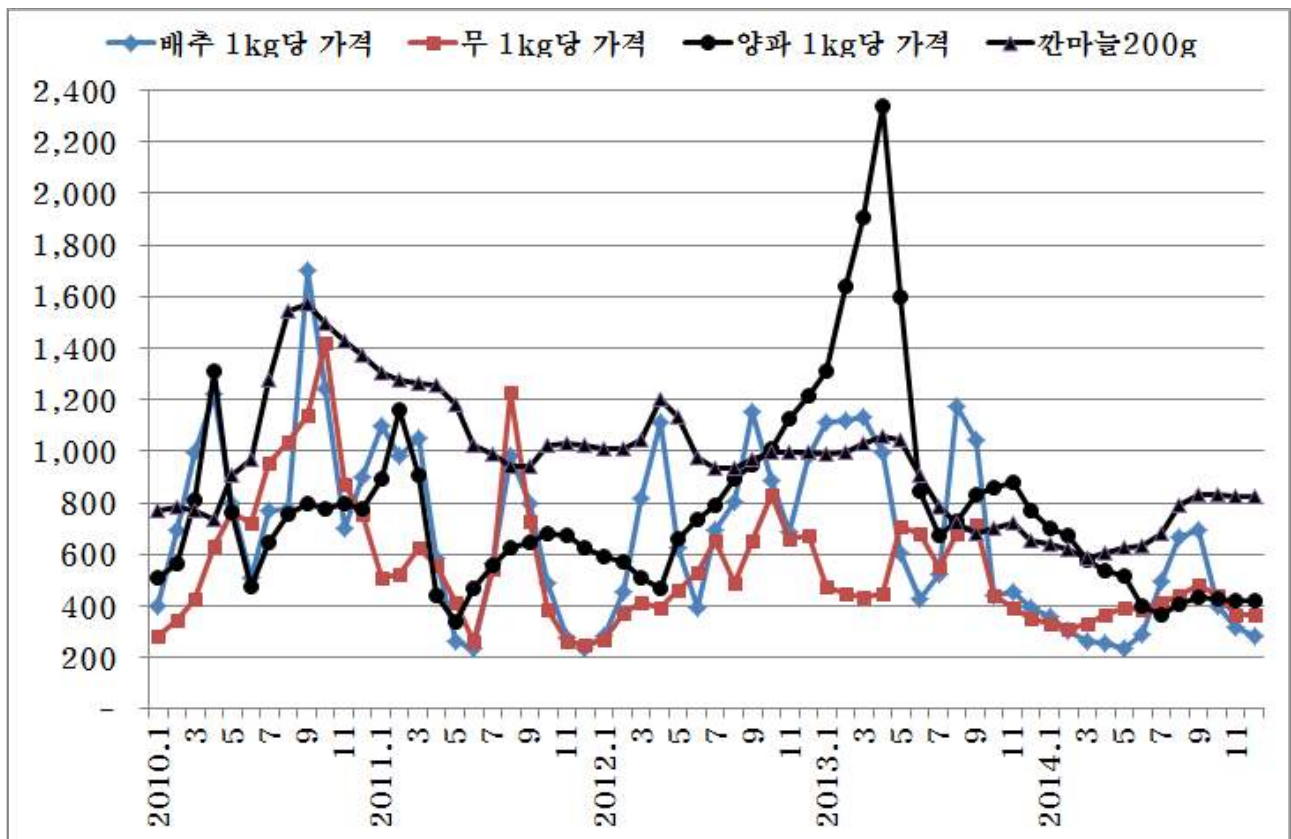


그림 62 주요 양념채소류 단위무게당 월별 변화추이



나. 정부의 주요 추진정책

- 주산지 집단화·계열화 및 공동영농을 위한 들녘경영체 육성
 - '17년까지 들녘경영체(쌀 500개소, 고추 23, 양파 13, 과실류 55) 육성
- (과수·채소) 원예브랜드·APC 단위의 집단화·계열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제고 추진
- (과수·채소) 집단화된 과수단지 및 채소 주산지 중심으로 공동육묘·수확·방제 등 연계지원을 통한 농가조직화·계열화 촉진
- 들녘경영체와 계열화 주체간 협력모델 개발·확산('14년)
- 생산안정을 통해 노지채소 수급안정 및 자급률 80% 수준 유지
 - 계약재배물량 : ('12) 12% → ('17) 30 → ('22) 30
 - 고추(마늘) 자급률 : ('11) 42% (75%) → ('17) 65% (75%)
- 시설현대화 등을 통해 고추·마늘의 적정 수준의 자급률 유지
 - '18년까지 고추 비가림시설 3,600ha 지원, 고추(23개)·마늘(15개)·양파(12개) 주산지 시·군에 전용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 * '18년까지 고추정식 기계화율 40%, 마늘·양파 파종·수확 기계화율 70%
 - 양념채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마늘 우량종구 공급 확대 및 내병성 고추 등 신품종 개발 추진
-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계약재배 확대 및 자조금 역할 강화
 -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추진체계 개선
 - * 매취사업 중심에서 수탁중심으로 개편, 연합판매사업 확대
 - * 산지유통인의 법인화 등 농협 이외 산지유통조직 규모화 유도
 - 양념채소 브랜드경영체를 육성하여 채소 유통구조 개선 추진
 - * 양념채소 브랜드 경영체 : ('12년) 6개소 → ('15) 12
- 상시비축, 저장·가공시설 확충 등으로 수급조절기능 강화
 - 작기별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사전 계약을 통한 상시비축 추진
 - 배추 주산지 등에 저온저장 및 가공시설 등 확충('13~'15)
 - * 수확후 관리·가공·품질 유지기술 개발 병행 추진
 - 저장기간 연장기술 및 절임배추 생산시설 표준 개발('12~'15)
- 주산지 중심의 수급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집중 추진
 - 채소류 주산지 지정을 위한 기준 마련·고시
 - 시·도시자는 9월말까지 기준에 적합한 주산지를 지정·고시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 주산지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 대상 품목과 기준(공간범위, 재배면적, 출하량)을 고시하고, 시·도지사가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확정
 - 지정 대상 품목
 - * 배추·무(작형별),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 국민 식생활 및 민생 물가와 밀접한 품목과,
 - * 주산지가 뚜렷하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당근,
 - * 농가 소득 작물로의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의 국가적 기반 유지가 필요한 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 등 총 12개 품목, 18개 작형을 선정
 - 지정 기준
 - * 공간적 범위 : 시·군·구 단위
 - * 재배면적 기준 : 품목별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수와 자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ha~1,500ha의 기준이 산정
 - * 출하량 기준 : 품목별 기준 재배면적과 최근 5년 평년 단수를 활용한 생산량 적용
- 정부는 향후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급안정과 경쟁력 제고 정책을 집중 추진계획
 - 지자체 중심의 주산지육성 전략계획을 토대로 중앙과 지역간 정책 지원 연계를 강화
 - 주산지 중심의 산지 조직화 등을 통한 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절 등을 통해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4년 7월에 채소류 주산지지정기준을 고시하고, '14년 9월까지 시도지사가 시군별 채소류 주산지를 지정 완료하였음.

표 112 채소류 주산지 지정기준

품목	단지 지정 기준			품목	단지 지정 기준		
	지역	면적	출하량 (생산량기준)		지역	면적	출하량 (생산량기준)
봄배추	시·군·구	150ha이상	12,840t이상	마늘	시·군·구	1,000ha이상	12,530t이상
여름배추	시·군·구	450ha이상	15,850t이상	양파	시·군·구	800ha이상	52,600t이상
가을배추	시·군·구	300ha이상	30,860t이상	대파	시·군·구	250ha이상	6,740t이상
겨울배추	시·군·구	500ha이상	32,350t이상	생강	시·군·구	100ha이상	1,280t이상
봄무	시·군·구	70ha이상	6,020t이상	당근	시·군·구	100ha이상	3,600t이상
여름무	시·군·구	250ha이상	7,060t이상	참깨	시·군·구	250ha이상	100t이상
가을무	시·군·구	150ha이상	11,110t이상	땅콩	시·군·구	100ha이상	240t이상
겨울무	시·군·구	1,500ha이상	92,350t이상	버섯류	시·군·구	(연면적) 30ha이상	-
고추	시·군·구	700ha이상	1,620t이상	특작류	시·군·구	50ha이상	-

표 113 주요 채소류 주산지 지정현황(2014.10월 현재)

품 목	지정기준 (재배면적)	강원 <미고시>	충북 (4)	충남 (14)	전북 (7)	전남 (28)	경북 (26)	경남 (8)	제주 (4)
봄배추 (1)	150ha 이상		-	-	-	-	문경	-	-
여름배추 (-)	450ha 이상		-	-	-	-	-	-	-
가을배추 (3)	300ha 이상		-	당진	고창	해남	-	-	-
겨울배추 (2)	500ha 이상		-	-	-	해남, 진도	-	-	-
봄 무 (1)	70ha 이상		-	-	고창	-	-	-	-
여름무 (-)	250ha 이상		-	-	-	-	-	-	-
가을무 (3)	150ha 이상		-	당진	고창	영암	-	-	-
겨울무 (1)	1,500ha 이상		-	-	-	-	-	-	서귀포
고추 (14)	700ha 이상		괴산	당진, 청양, 태안	정읍, 임실, 고창	해남, 영광	안동, 의성, 청송, 영양, 봉화	-	-
마늘 (9)	1,000ha 이상		-	서산, 태안	-	고흥, 해남, 신안	의성	창녕, 남해	서귀포
양파 (5)	800ha 이상		-	-	-	무안, 신안, 해남, 함평	-	창녕	-
대파 (3)	250ha 이상		-	-	-	진도, 신안, 영광	-	-	-
생강 (4)	100ha 이상		-	서산, 태안	-	-	안동, 영주	-	-
당근 (3)	100ha 이상		-	-	-	-	-	김해	제주, 서귀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내부자료

다. 채소류 수급조절 시스템과 경영체 육성방향

- 채소류의 수급조절은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 시도단위, 시군단위 지자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단위 시도단위에도 주산지역 품목별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와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채소류 수급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농가와 지역농협, 원협, APC, 조합공동사업법인 등과의 계약재배의 실현과 수급현황에 따른 생산농가의 유통행위가 가장 중요함.
 -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별 생산농가보다는 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로 생산조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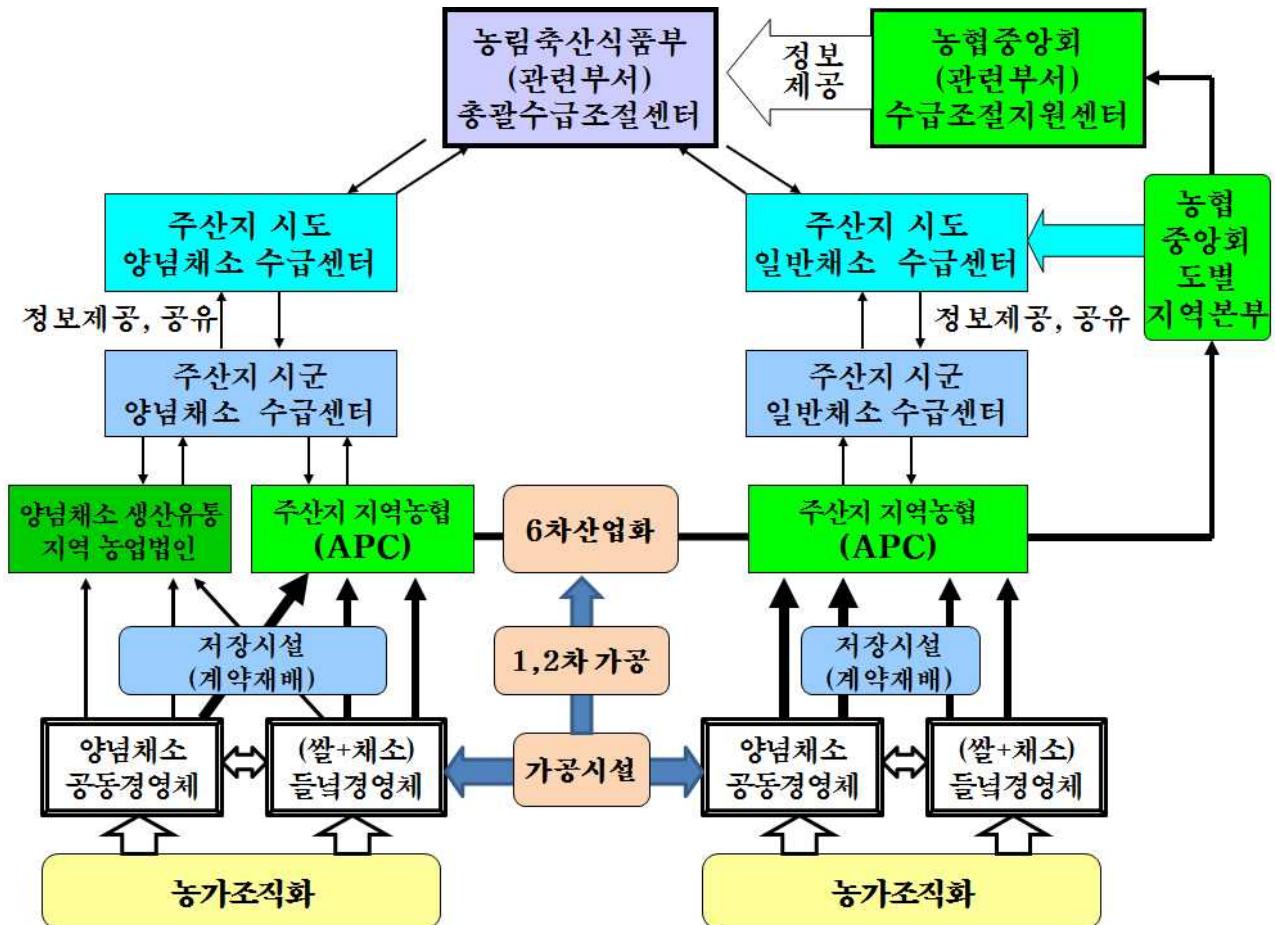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읍면단위의 지역농협과 시군단위의 원협의 역할임

- 특히 지역단위에서 지역농협과 시군단위 원협, APC, 조합공동사업법인 등과 생산농가간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채소류 수급안정에 가장 중요함
- 주산지에서 채소류 품목별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지역농협 혹은 지역농업생산-유통법인과 계약재배를 통해 계약출하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농협과 연계된 양념채소류 공동경영체에 수급조절에 맞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쌀+채소류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경우

- 채소류 주산지에 있는 들녘경영체의 경우 주변 양념채소 공동경영체와 연계를 통해 일정부분 지역농협, 원협, APC 등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수급조절하는 방안임
- 채소류 주산지역이 아닌 지역의 들녘경영체의 경우는 자체 지역농협과 채소류 계약재배를 통하여 일정부분 생산-유통을 담당하는 형태임

그림 63 채소류 수급조절 시스템과 들녘경영체 육성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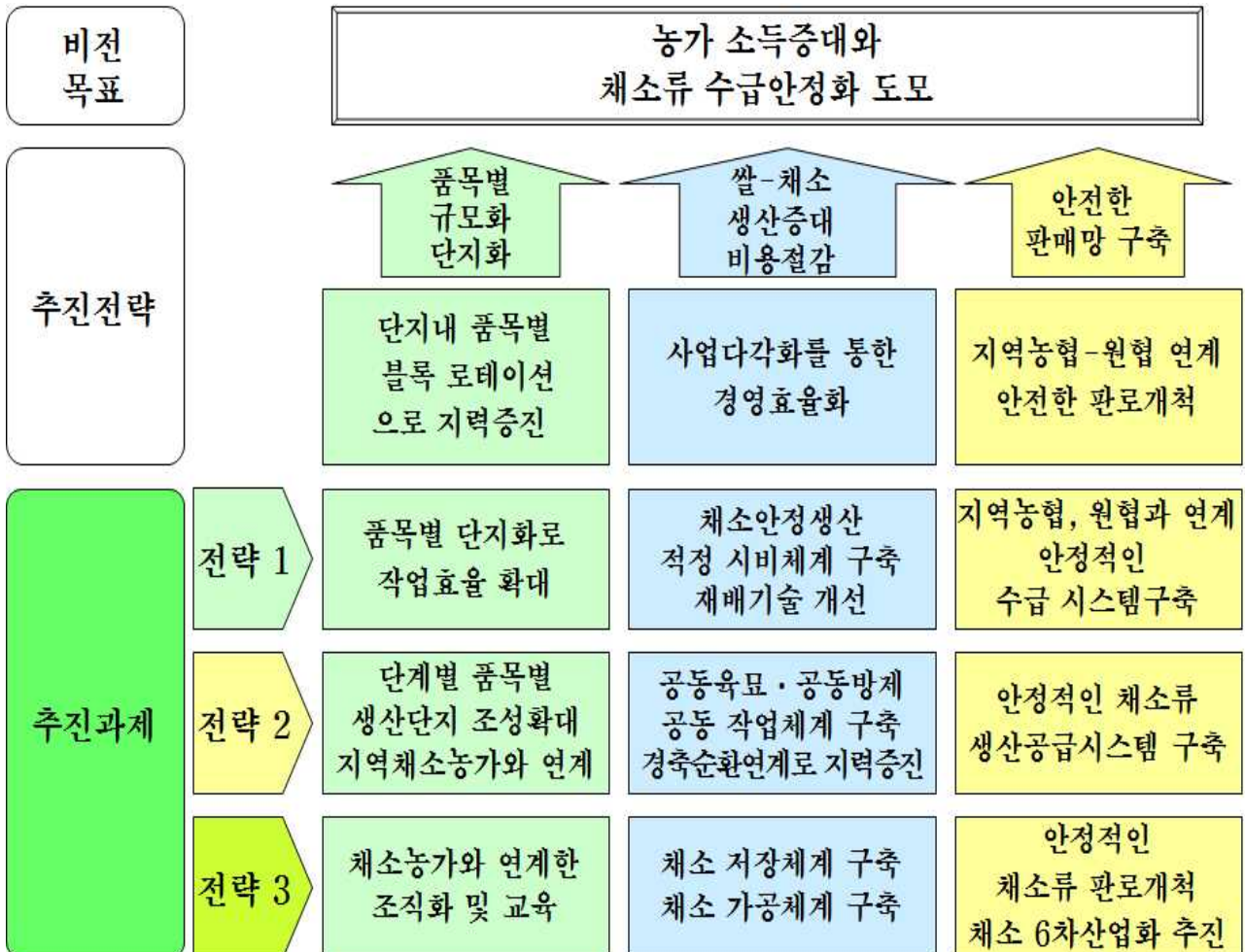


라. 사업추진전략

(1) 비전과 추진과제

- [쌀+채소류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비전과 목표
 - 참여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채소 수급 안정화 도모
- 채소 생산농가의 품목별 조직화와 생산단지화를 통하여 채소농가에 대한 생산유통교육 실시
 - 적정시비체계 구축, 재배기술개선, 작부체계 개발
- 수확후 저장시설과 1차 가공체계 구축
- 지역농협, 원협, APC 등과의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과 수급시스템 구축
- 1차 가공 가능한 경우 주변지역과 연계한 6차산업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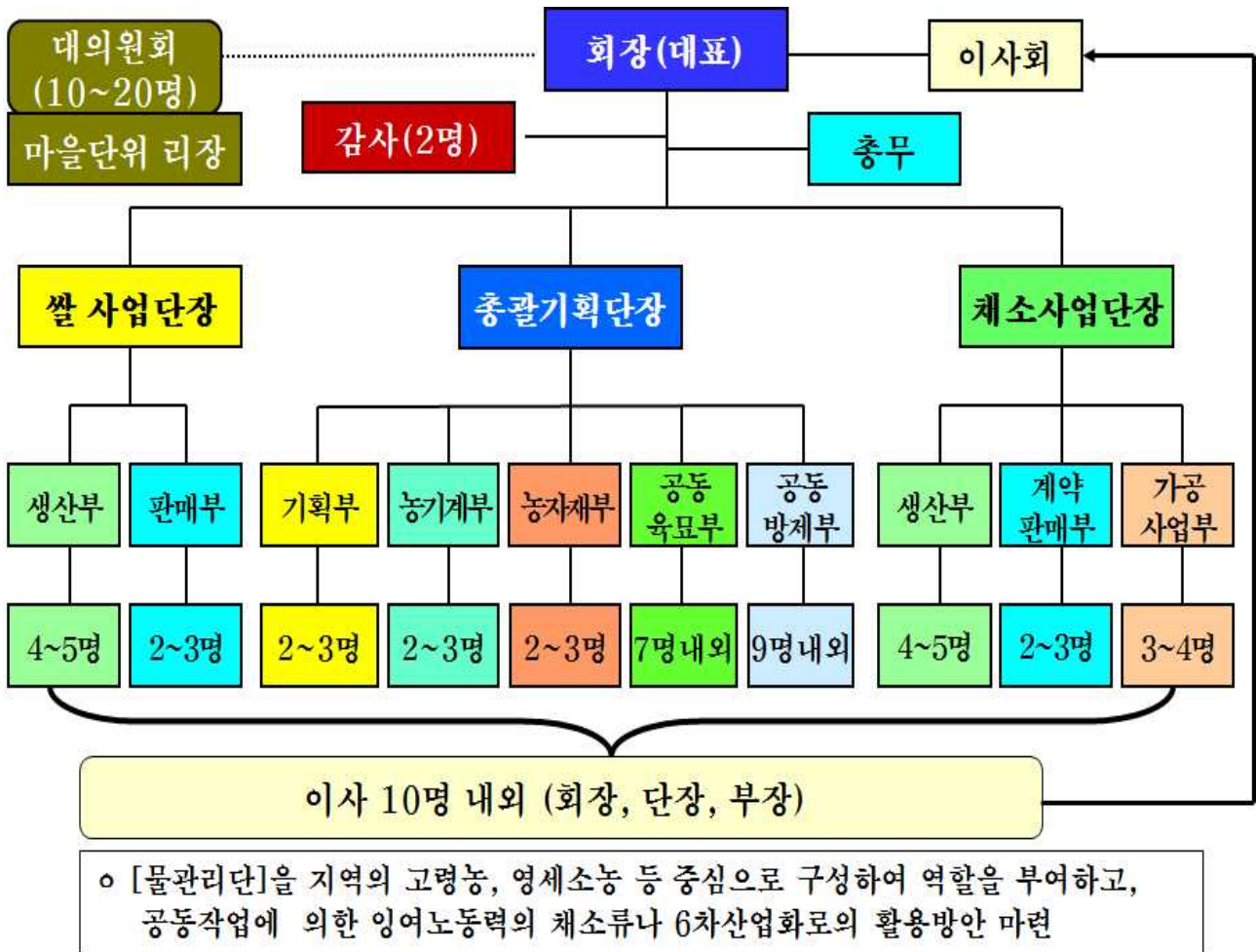
그림 64 [쌀+채소류 생산형] 들녘경영체 비전과 추진과제



(2) 들녘경영체 조직도

- 채소사업단, 총괄기획단, 쌀사업단 등 3개단을 구성하여 품목별 품목연계사업 전개
- 총괄기획단의 경우
 - 지역 특성 채소 주산지 현황 등을 고려한 채소류 품목배치, 농기계 공동이용부문, 농자재 공동구매-이용부문, 공동육묘와 공동방제를 담당
- 채소류사업단의 경우
 - 채소류의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부문과 지역농협, 원협, APC등과의 채소류 계약재배를 담당하는 계약판매부를 두고
 - 채소류 1차 가공과 연계한 6차산업화를 담당할 가공사업부를 구성함
- 총괄기획단과 채소류사업단을 중심으로
 - 생산, 가공, 판매, 체험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를 통하여 부가가치 증대에 중점을 둠
 - 1차가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함과 동시에 수급조절에도 기여

그림 65 [쌀+채소류 생산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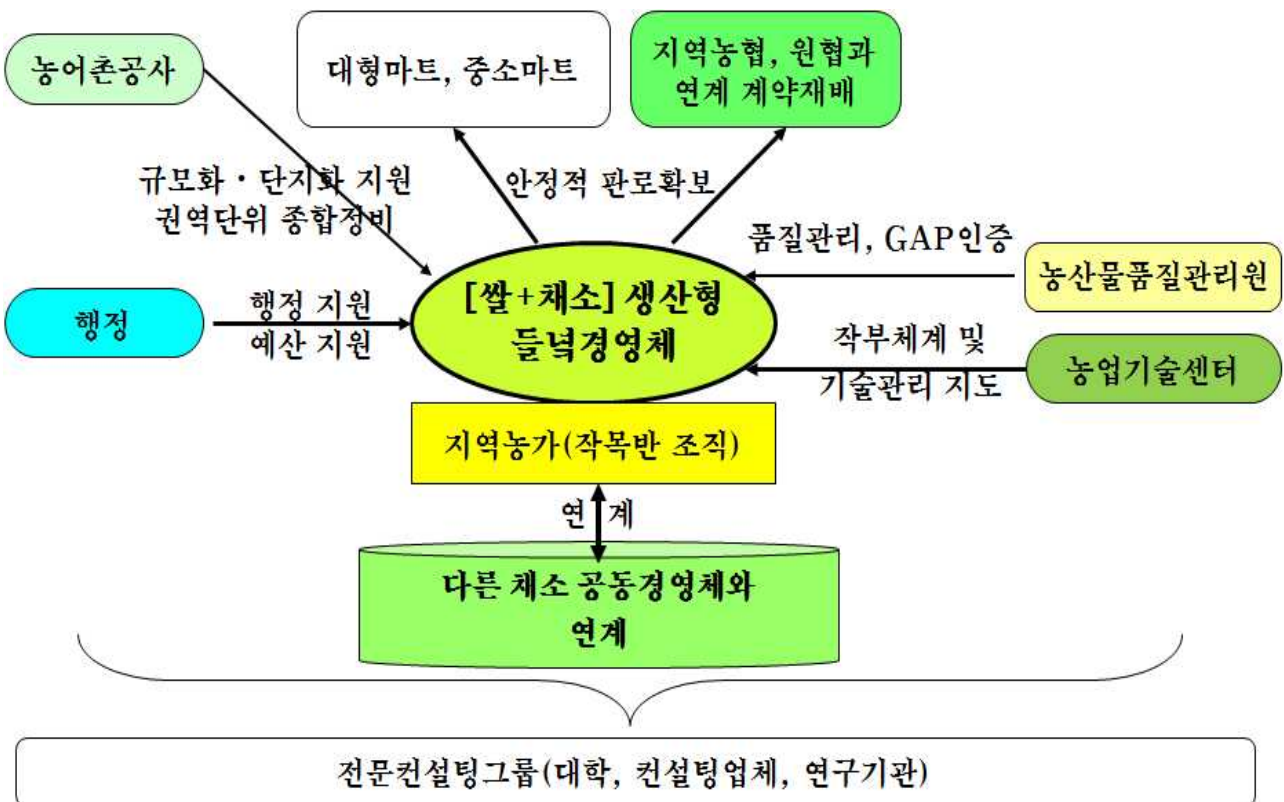


마. 지원시스템

(1) 산학연관 중간지원체계 구축

- [쌀+채소류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경우 산학연과 중간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본 들녘경영체의 성과와 채소류의 안정적인 수급조절의 성과를 좌우할 것임.
- 가장 중요한 중간지원시스템은
 - 시군단위에서 행정을 중심으로 한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 들녘경영체가 지역농협, 원협 등과 계약재배를 통하여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임
- 채소류 주산지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는
 - 지역특성에 맞고 연작피해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채소류 작부체계 개발과 품목개발, 품목별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 농기계임대사업의 들녘경영체 연계를 통하여 농기계 비용절감을 도모해야 함
- 채소류 안정생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어촌공사에서는 밭 규모화 단지화를 추진하고, 채소류 안정생산을 위한 밭 생산기반 지원을 해야 할 것임
 - 특히 기계화가 어려운 채소류의 생산을 위한 기반정비도 필요함

그림 66 [쌀+채소류 생산형] 들녘경영체 산학연관 중간지원시스템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산지 읍면단위에서 조직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체
 - * 생산주체와 유통주체를 동시에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영체
 - * 예시 : 농협주체(농협+생산농가 연계), 산지유통법인(법인+생산농가)

○ 지원내역(마늘 양파를 중심으로)

- 비용절감 패키지 지원 희망
 - * 양파사례 : 정식기계 + 친환경 비닐 + 애취기 + 수확기계 패키지 지원
- 주산지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체에 패키지 지원내역 발굴
 - * 생산기반조성 용도 : 관정, 스프링클러, 경지기반정비사업
 - * 생산기계화 용도 : 공동육묘장, 파종기, 비닐피복기, 수확기, 퇴비사 등
 - * 유통 용도 : 공동선별기, 포장기,
 - * 저장 시설 : 저온저장고,
 - * 가공시설 : 품목별 가공관련 시설
 - * S/W 사업 : 교육 및 컨설팅, 홍보사업

5-4 [쌀+과수류] 생산모델

가. 현황과 문제점

- 과일의 경우는 1995~2000년 사이에 최대 재배면적을 보이다가, 농산물 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대부분 과일 재배면적이 감소하기 시작함.

표 114 주요 과일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추이

(단위 : 천ha, 천t)

구분	계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80	99	833	46	410	9	60	8	57	10	89	12	161
85	109	1,464	38	533	9	128	16	150	13	132	16	371
90	133	1,766	49	629	9	159	15	131	12	115	19	493
95	174	2,300	50	716	16	178	26	316	10	130	24	615
2000	173	2,429	29	489	26	324	29	476	14	170	27	563
05	155	2,593	27	368	22	443	22	381	15	224	22	638
10	162	2,489	31	460	16	308	18	306	13	139	21	615
2013	161	2,523	30	494	14	282	17	260	15	193	21	68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2014.9

- 과일류 1인당 소비량의 경우도 1995~2005년 사이를 최고로 하여 감소추세 혹은 정체 상태에 있음

표 115 과일류 1인당 연간 소비량

(단위 : kg)

구분	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기타
1980	22.3	10.8	1.5	2.3	1.5	0.2	4.2	1.8
85	36.0	13.0	3.1	3.2	3.7	1.6	9.1	2.3
90	41.8	14.5	3.6	2.7	3.1	1.5	11.5	4.9
95	54.8	15.8	3.9	2.9	7.0	3.4	13.6	7.8
2000	58.4	10.4	6.7	3.6	10.3	4.8	11.9	8.6
05	62.6	7.5	8.6	4.6	8.2	4.8	13.1	13.2
10	62.4	9.3	5.8	2.8	6.9	3.6	12.5	21.5
13	63.2	9.8	5.2	3.8	6.3	3.0	13.5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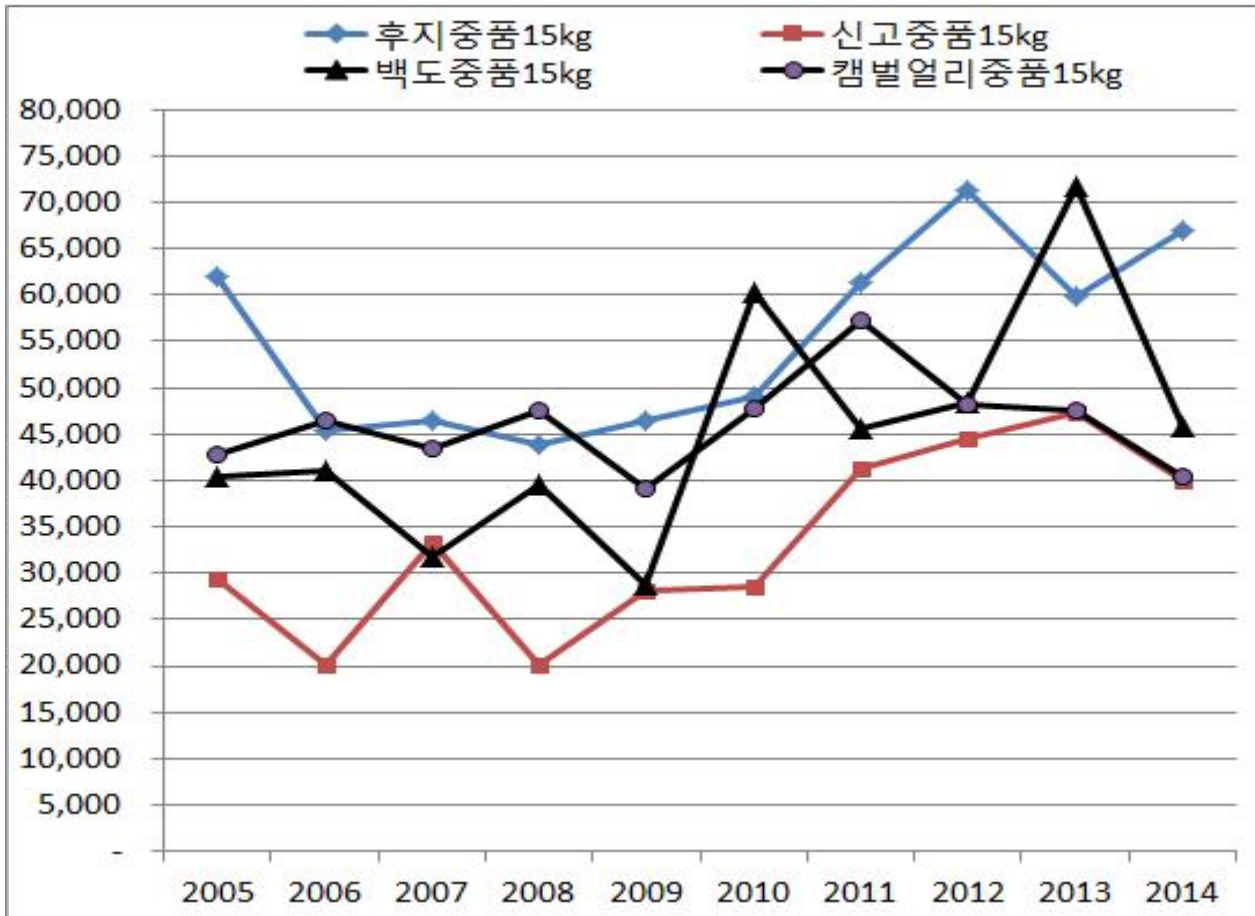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 2014.9

주 : 1인당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조식기준

○ 과일의 경우도

- 재배면적의 변화와 기상변화에 따른 10a당 수량의 변화에 따라 과일가격의 변화도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음.

그림 67 주요 과일의 연평균가격의 변화추이



○ 이와 같이 우리 과일의 재배면적의 감소와 소비량감소는 외국산과일 수입증대에 의한 것으로 우리 과일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일의 경우도 가격진폭이 커서 안정생산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이 요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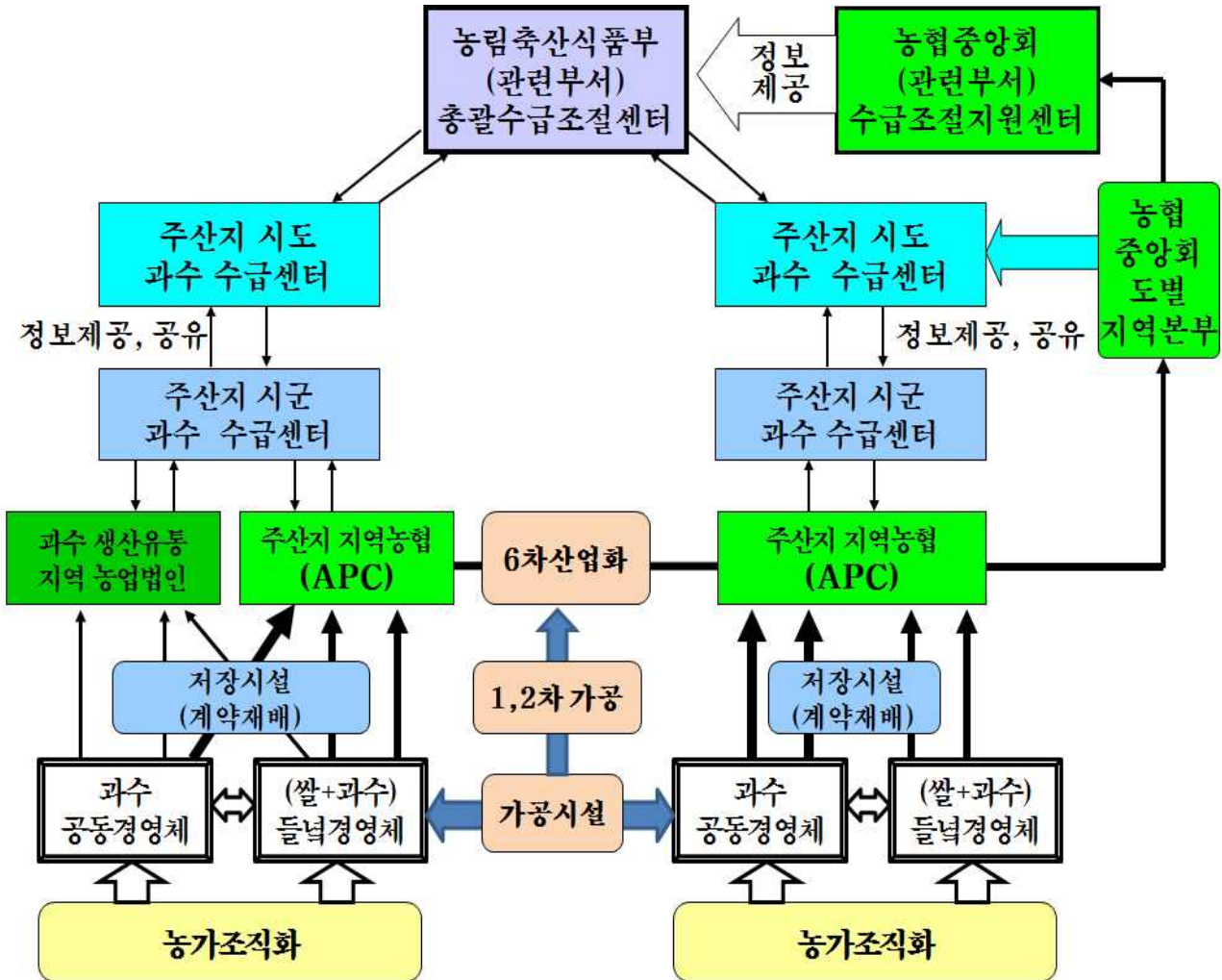
나. 정부의 주요 추진정책

- 주산지 집단화·계열화 및 공동영농을 위한 들녘경영체 육성
 - '17년까지 들녘경영체(쌀 500개소, 고추 23, 양파 13, 과실류 55) 육성
- (과수·채소) 원예브랜드·APC 단위의 집단화·계열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제고 추진
- (과수·채소) 집단화된 과수단지 및 채소 주산지 중심으로 공동육묘·수확·방제 등 연계지원을 통한 농가조직화·계열화 촉진
- 들녘경영체와 계열화 주체간 협력모델 개발·확산('14년)
- 고품질·안전 과실을 생산하는 소비자·수출 지향의 과수산업 육성
 - 생산시설 현대화 : ('12) 20% → ('17) 35 → ('22) 45
 - 과실 수출액 : ('12) 0.75억불 → ('17) 2 → ('22) 2.3
-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 촉진
 - 품종갱신 및 비가림·관수·관비·재해예방 시설 등 확충
 - * 주산지·수출단지 생산기반 정비(경작로 확포장, 용·배수로 설치 등)
 - * 생산시설 현대화(누계) : ('12) 37천ha → ('17) 55 → ('22) 70
 - 우량묘목 공급을 위해 묘목 이력관리시스템 및 의무보증제 도입 추진
 - * 무병(virus free)·우량 묘목 공급 : ('12) 2% → ('17) 30 → ('22) 60
-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의 농가 조직화·규모화 및 공동마케팅 추진으로 산지·소비지 유통계열화
 - 과실 전문 APC 30개소 건립,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
 - * 전문 APC 처리비중 : ('12) 9% → ('17) 30 → ('22) 40
 - 유통비 절감을 위해 과대포장, 꼭지절단사과 유통 등 관행개선
- 가공품 개발, 수출 확대 등 과수산업의 안정적 소비기반 확충
 - 과실을 활용한 식품소재 및 기능·편의성 가공제품 개발
 -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및 현지인시장 개척 등으로 수출 확대
 - * 수출 전용품종 개발, 수출전문단지 지정 확대, 수입국 식품안전기준에 적합한 과실 생산, Global GAP 인증 등 품질관리 강화
 - 의무자조금 도입 및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수출기능 강화

다. 과일류 수급조절 시스템과 경영체 육성방향

- 과일류의 수급조절의 경우는 가공사업연계와 더불어
 - 시도단위, 시군단위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산지역 시도단위 시군단위에도 품목별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와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과일류 수급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농가와 지역농협, 원협, APC, 조합공동사업법인 등과의 계약재배의 실현과 수급현황에 따른 생산농가의 유통행위가 가장 중요함.
 -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별 생산농가보다는 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로 생산조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군단위에서 지역농협과 시군단위의 원협의 역할임.
 - 특히 지역단위에서 지역농협과 시군단위 원협, APC, 조합공동사업법인 등과 생산농가간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과일류 수급안정에 가장 중요함
 - 주산지역에서 과일류 품목별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지역농협 혹은 지역농업생산-유통법인과 계약재배를 통해 계약출하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농협과 연계된 과일류 공동경영체에 수급조절에 맞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쌀+과일류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경우
 - 과일 주산지역에 있는 들녘경영체의 경우 주변 과일 공동경영체와 연계를 통해 일정부분 지역농협, 원협, APC 등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수급조절하는 방안임
 - 과일 주산지역이 아닌 지역의 들녘경영체의 경우는 자체 지역농협과 과일 계약재배를 통하여 일정부분 생산-유통을 담당하는 형태임

그림 68 과수류 수급조절시스템과 들녘경영체 육성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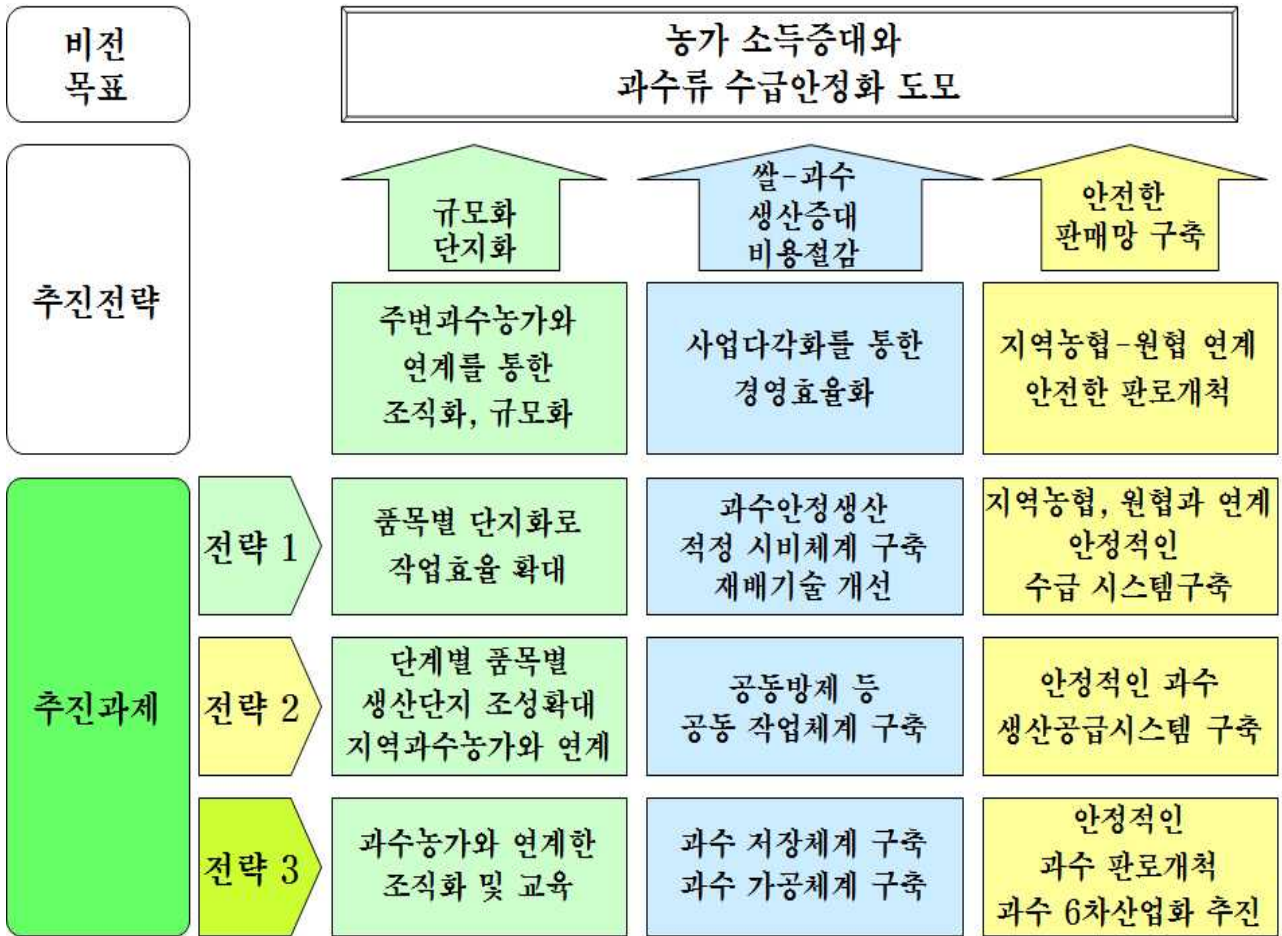


라. 사업추진전략

(1) 비전과 추진과제

- [쌀+과일류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비전과 목표
 - 참여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과일 수급 안정화 도모
- 과일 생산농가의 품목별 조직화와 생산단지화를 통하여 과일생산농가에 대한 생산유통교육 실시
 - 적정시비체계 구축, 재배기술개선
- 수확후 저장시설과 1차 가공체계 구축
- 지역농협, 원협, APC 등과의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과 수급시스템 구축
- 1차 가공 가능한 경우 주변지역과 연계한 6차산업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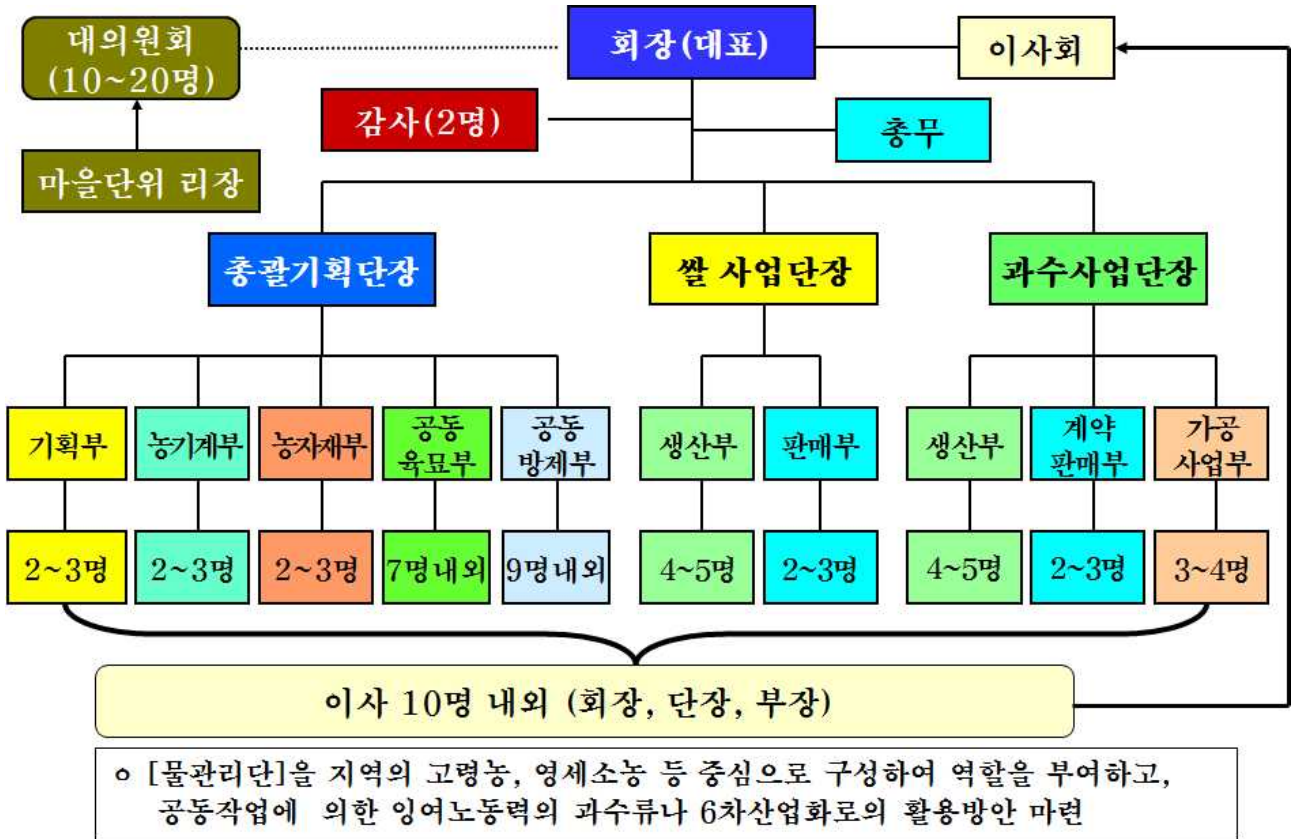
그림 69 [쌀+과수류 생산형] 들녘경영체 목표와 추진전략



(2) 들녘경영체 조직도

- 과일사업단, 총괄기획단, 쌀사업단 등 3개단을 구성하여 품목별 품목연계사업 전개
- 총괄기획단의 경우
 - 지역 특성 과일 주산지 현황 등을 고려한 농기계 공동이용부문, 농자재 공동구매-이용부문, 공동방제를 담당
- 과일류사업단의 경우
 - 과일의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부문과 지역농협, 원협, APC등과의 과일 계약판매를 담당하는 계약판매부를 두고
 - 과일의 1차 가공과 연계한 6차산업화를 담당할 가공사업부를 구성함
- 총괄기획단과 과일사업단을 중심으로
 - 생산, 가공, 판매, 체험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를 통하여 부가가치 증대에 중점을 둠
 - 1차가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함과 동시에 수급조절에도 기여

그림 70 [쌀+과수류 생산형] 들녘경영체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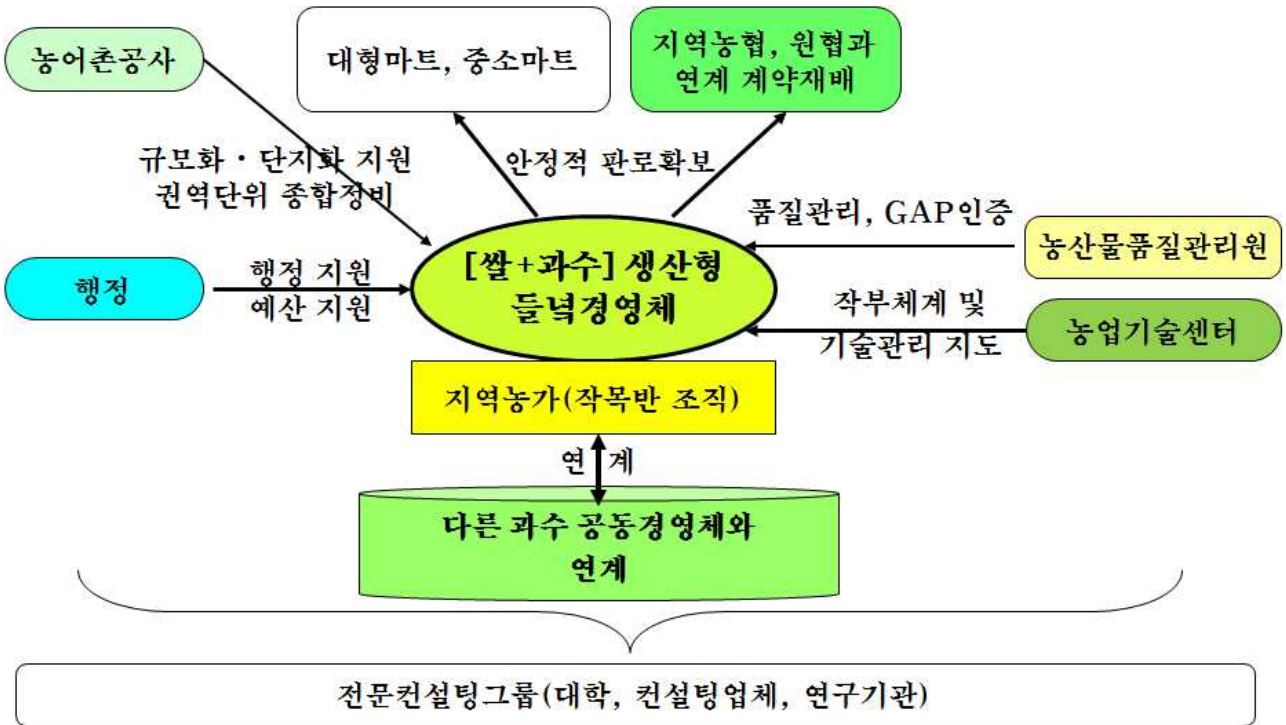


마. 지원시스템

(1) 산학연관 중간지원체계 구축

- [쌀+과일류 생산형] 들녘경영체의 경우 산학연과 중간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본 들녘경영체의 성과와 과일류의 안정적인 수급조절의 성과를 좌우할 것임.
- 가장 중요한 중간지원시스템은
 - 시군단위에서 행정을 중심으로 한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 들녘경영체가 지역농협, 원협 등과 계약재배를 통하여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임
- 과일 주산지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는
 - 품목별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 농기계임대사업의 들녘경영체 연계를 통하여 농기계 비용절감을 도모해야 함
- 지역농협의 경우도 농기계은행사업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뿐만이 아니라
 - SS분무기 등 과일부문에서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한 농기계 은행사업을 통해 과수 공동경영체나 들녘경영체의 비용절감에 기여해야 할 것임

그림 71 [쌀+과수류 생산형] 들녘경영체 산학연관 중간지원 시스템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산지 읍면단위에서 조직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영체
 - * 생산주체와 유통주체를 동시에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영체
 - * 예시 : 농협주체(농협+생산농가 연계), 산지유통법인(법인+생산농가)

○ 지원내역(마늘 양파를 중심으로)

- 비용절감 패키지 지원 희망
 - * 양파사례 : 정식기계 + 친환경 비닐 + 애취기 + 수확기계 패키지 지원
- 주산지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체에 패키지 지원내역 발굴
 - * 생산기반조성 용도 : 관정, 스프링클러, 경지기반정비사업
 - * 생산기계화 용도 : 공동육묘장, 파종기, 비닐피복기, 수확기, 퇴비사 등
 - * 유통 용도 : 공동선별기, 포장기,
 - * 저장 시설 : 저온저장고,
 - * 가공시설 : 품목별 가공관련 시설
 - * S/W 사업 : 교육 및 컨설팅, 홍보사업

6. 유형별 공동사업 추진전략¹⁵⁾

6-1 들녘경영체 조직-운영체계

가. 농가조직화 방안

(1) 경영체 구성원들의 경영체 조직화에 대한 의사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사업대상자는 농업법인, RPC, 농협 등으로 사업대상별 농가조직화 방안은 차이가 있음.
 - RPC과 농협의 경우는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있는 농가군을 들녘경영체로 조직화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이와 같은 농가조직화는 큰 어려움이 없음.
- 농가조직체의 경우, 농가를 중심으로 100ha이상 경영면적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법인을 설립하고, 일반농가를 들녘경영체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법임
 - 그러나 농업법인 설립시 영농조합법인으로 할 것인가? 농업회사법인으로 할 것인가?의 결정, 조합원(혹은 주주) 대상자 선정, 대표선정 등 과정이 어렵고,
 - 농업법인 설립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일반농가를 구성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음.
- 들녘경영체 농업법인 설립시 어려운 점에 대한 임원진의 의향은
 - 2012년에는 고령화로 참여농가 한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다음이 법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의사결정의 어려움 순이었으나,
 - 2014년 조사에서는 농가들의 법인에 대한 부족(28.6%)과 법인운영경험 부족(25.0%) 다음이 고령화로 참여농가의 한계와 주변농가의 경영체로의 참여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2012년 조사에 비해 의사결정의 어려움은 낮게 나타남.
- 들녘경영체 임원진들의 들녘경영체 운영시 어려운 점으로 2012년 조사에서는 농가전체의 조직화가 41.7%로 가장 높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28.1%를 점하였으나,
 - 2014년 조사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농가전체의 조직화, 농기계 공동작업추진 순으로 나타났음
 - 한편 공동육묘장 및 광역살포기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몇 년간의 공동육묘장과 공동방제기 운영에 나름대로의 경험이 쌓인 것으로 판단되어짐

15) 농산업전략연구원, [지역특성별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2012.10, 72~84쪽을 수정보완한 것임

표 116 들녘경영체를 법인화시 어려운 점

2012년 조사결과		2014년 조사결과	
법인에 대한 이해부족	28.4%	① 법인에 대한 이해부족	28.6%
고령화로 참여농가 한계	43.1%	② 고령화로 참여농가의 한계	19.6%
의사결정의 어려움	22.9%	③ 의사결정의 어려움	7.1%
기타	5.5%	④ 주변농가들의 경영체로의 참여	19.6%
합계	100.0%	⑤ 법인운영 경험 부족	25.0%
		합계	100.0%

표 117 들녘경영체 운영시 어려운 점

구분	2012년 조사결과	2014년 조사결과
농가전체의 조직화	41.7%	28.9%
임원진의 단합	8.3%	15.8%
농기계 공동작업 추진	13.5%	18.4%
작업료 계산	2.1%	2.6%
공동육묘장, 광역살포기 운영	6.3%	0.0%
지속적인 정부사업 추진	28.1%	34.2%
합계	100.0%	100.0%

- 들녘경영체 활성화를 위해 경영체에서 중요한 점으로는 2012년에는 회원들의 결속, 자체 자조금 확보, 대표의 리더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 2014년 조사에서는 회원들의 결속과 다양한 사업추진, 자체자조금 확보, 사업내용의 투명성 확보 등이 12년 조사대비 비중이 늘었음.
 - 2년간 이상의 사업추진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표의 리더십보다 회원들간의 결속, 다양한 사업추진, 사업내용의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의식하고 있음.

표 118 들녘경영체 활성화를 위해 경영체에서 중요한 점

구분	2012년 조사결과	2014년 조사결과
대표의 리더십	18.2%	11.9%
임원진의 단합	10.9%	7.9%
회원들의 결속	21.9%	24.8%
다양한 사업추진	15.1%	19.8%
사업내용 투명성 확보	12.5%	16.8%
자체 자조금 확보	21.4%	18.8%
합계	100.0%	100.0%

(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농가조직화 방안

(가) 조직형태 유형과 장단점

- 들녘경영체의 공간적 기본범위는 동일한 토질조건을 감안할 때 지역내에서 들녘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
- 조직유형은 토지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사람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가능하며 각각 장단점이 있음.
- 첫째, A형으로 들녘의 쌀 전업농만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방법으로 **대인중심형**
- 둘째, B형으로 (쌀 전업농+일반농가 일부)의 혼합조직으로 또 다른 **대인결합형**,
- 셋째, C형으로 (쌀 전업농+일반농가 전체) 혼합조직으로 들녘내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전체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 농지를 구획을 그어 지정하는 방법 즉 **농지중심형**
-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C형이나 조직이 어렵기 때문에
 - A형에서 출발하여 B형, 혹은 B형에서 C형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

그림 72 들녘경영체 단계별 조직화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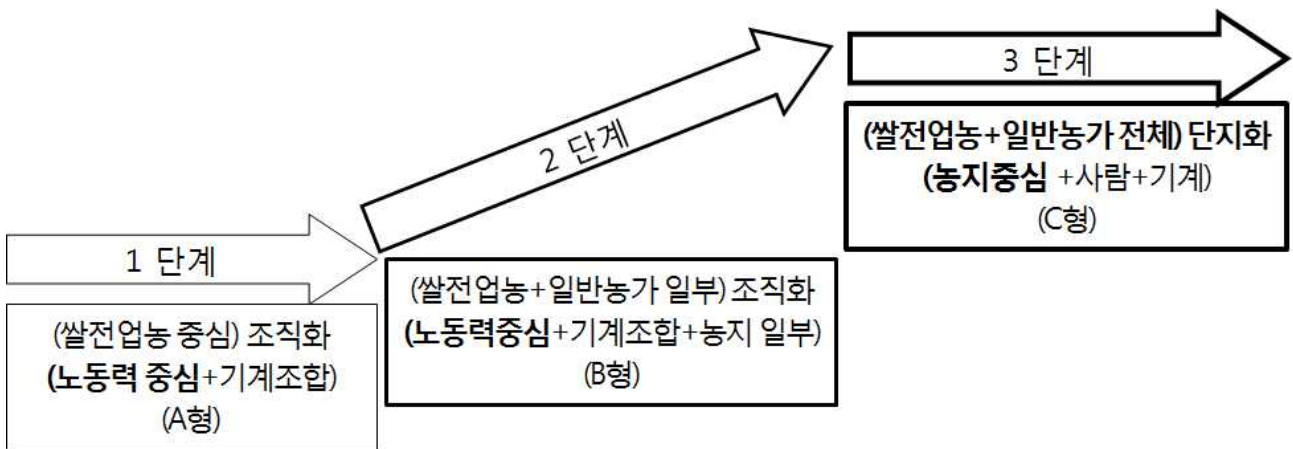


표 119 들녘경영체 조직유형별 장단점

구분	농가 · 농지분포	유형별 장·단점	
		장점	단점
I형	전 전 전 전	-조직 가장 용이 -조직운영 용이	-중소농 소외 저항 대두 -농지 분산입지로 통제 제약
II형	전 전 일 전 일 일 전	-구획지정 용이 -고품질·저비용쌀 생산가능	-일반농가 참여비율 높음 -농지 분산입지로 통제 제약
III형	전 농지 포함	-토질 차별화 가능 -고품질·저비용쌀 생산가능	-단지선정이 어려움 -의식공유 제약

(나) 법인체 구성에서의 구성원들의 참여형태

- 농가조직체로 구성된 들녘경영체는 구성원은 아래와 같이 3가지유형으로 구분가능
 - 첫째, 대표, 이사, 감사, 총무 등의 임원진,
 - 둘째, 조합원(영농조합법인), 주주(농업회사법인),
 - 셋째, 일반 참여농가 등
- 들녘경영체 구성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들녘경영체의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의사결정과 사업추진결과의 효과배분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추진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
 - 특히 조합원(혹은 주주)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들녘경영체가 지역농업주체로서의 대표성과 공공성과 연계되고, 또한 지역사업추진결과 효과배분의 혜택을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에도 관계가 있음.
- 따라서 들녘경영체 조합원(주주)에 많은 구성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가장 중요
 - 일반농가의 경우 들녘내 농지가 소재한 모든 농가를 들녘경영체 참여 시키고,
 - 유형별로 출자액, 역할부여를 차별화하고
 - 혜택이나 주 의사결정권은 모두 동등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120 들녘경영체 바람직한 구성원 형태와 역할

구분	출자액수	역할	혜택	의결권
임원진	중심 주주	중심역할 (의사결정, 사업주체)	동일 혜택 수혜	법인 유형별로 차이
조합원 (주주)	소액 주주	보조역할 (주 사업참여)		
참여농가	희망에 따라 투자가능	구성원 (물관리 등 참여)		

- 경북 상주시 아자개영농조합법인
 - 조직형태(Ⅱ형)와 규모 : 조합원 144명, 경영면적 500ha
- 조직원 구성형태

구분	대상	인원	1구좌	출자액 특징	총출자액
임원	대표, 이사, 감사 (2년 선출직)	8명	1백만원	1인당 1,000만원	-
조합원	5구좌이상	144명	1백만원	20구좌이하	-
사업참여 농가	쌀 1ha이상 재배농가	-	-	-	-
계					836백만원

나. 사무실 운영체계

-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 들녘경영체의 경우 약 30%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없음
 - 그러나 임원진들의 회의와 서류정리, 관련 자료정리, 관련 책자 비치 등을 위해서는 사무실 운영이 필수적임.
- 사무실에는 경영체의 전체적인 현황판과 회의실 구성이 필수
 - 현황판 : 경영체 조직현황, 사업비전, 일반현황, 시설현황, 조직체계도, 단지현황도 등이 비치되어야 함
 - 탁자와 의자 : 이사회나 대의원 회의시 필요
 - 한 탁자와 의자, 컴퓨터와 프린터 등이 비치되어야 함

그림 73 들녘경영체 사무실 및 사무실 내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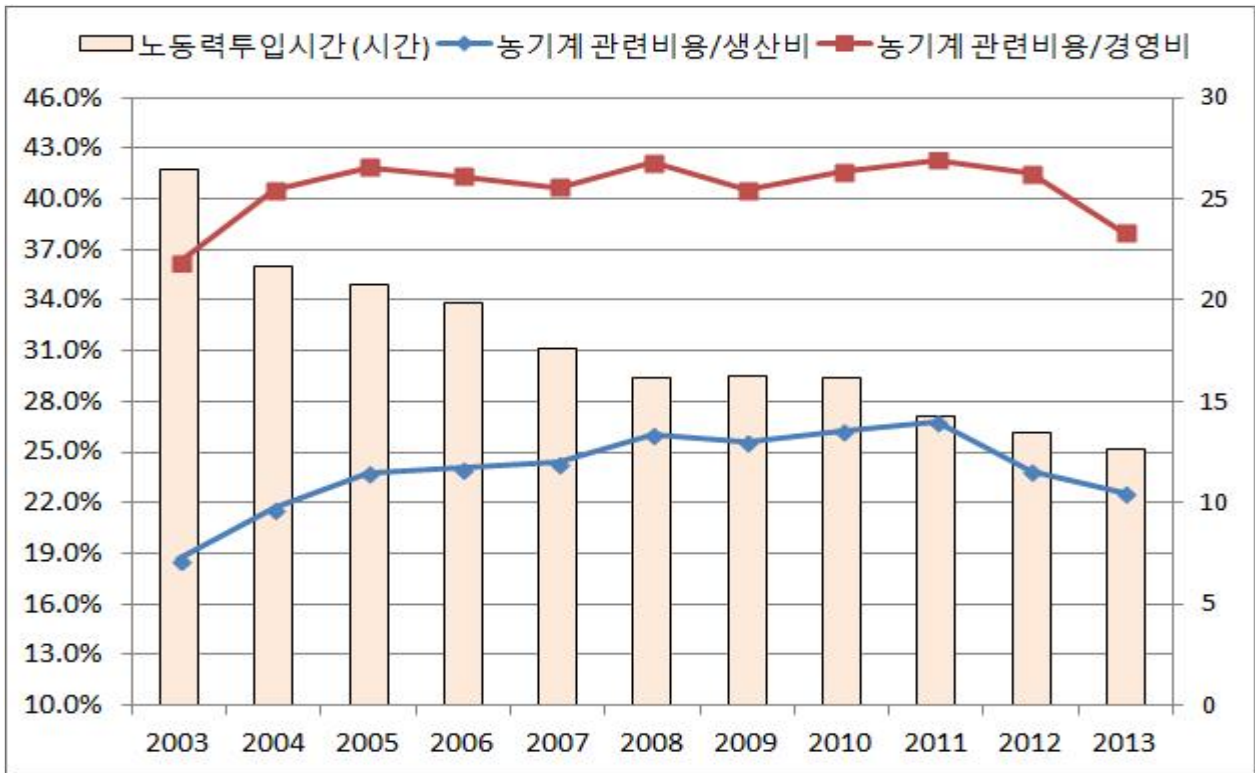
<위좌(한그루영농조합법인 사무실)과 위우(한그루영농조합법인 사무실 내부)>
 <아래좌(큰사랑영농조합법인 7월 일정표) 아래우(농업회사법인빛가람(주) 현황도)>

6-2 농기계 공동이용 시스템

가. 농기계관련비용의 비중

- 쌀 생산에서 농기계관련비용(영농광열비, 농기구비, 위탁영농비)은 2000년대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쌀 소득증대와 비용절감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농기계관련비용의 경영비에서 비중은 2003년대 36.7%에서 '12년 42% 수준까지 증가.
 - 생산비에서 비중도 2003년대 초 18.8%에서 12년 25~27%까지 증가
- 2000년대 중반이후 농기계관련비용의 상승은 농기계의 중대형화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상승과 유류대 상승에 의한 작업위탁료가 상승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농기계의 공동이용에 의한 비용절감이 매우 중요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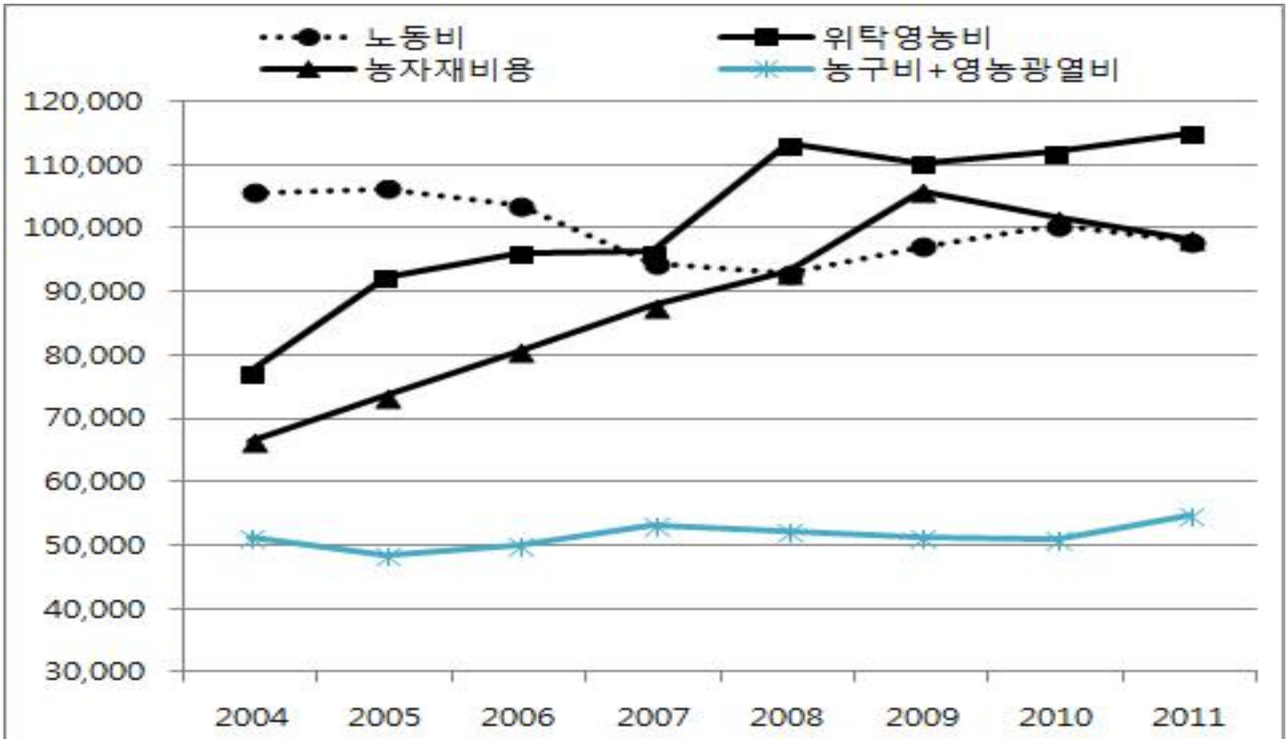
그림 74 쌀 생산에 있어 농기계 관련비용의 비중 변화추이



- 개별영농의 경우 일정면적이상의 쌀 재배의 경우 작업편리와 작업시기를 위해
 - 5ha이상의 경우 대부분 트랙터-이앙기-콤바인 일관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5ha이상도 이들 중 2개 기종 정도를 보유하여 비용절감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쌀 재배면적별 농기계 비용(농구비와 영농광열비), 위탁영농비의 구조를 보면,
 - 1.5ha미만의 농가군은 위탁영농비가 매우 높고 농기계비용도 대농과 큰 차이없음
 - 상대적으로 5ha이상 농가군은 위탁영농비용이 적음
 - 따라서 1.5ha미만농가의 위탁영농비의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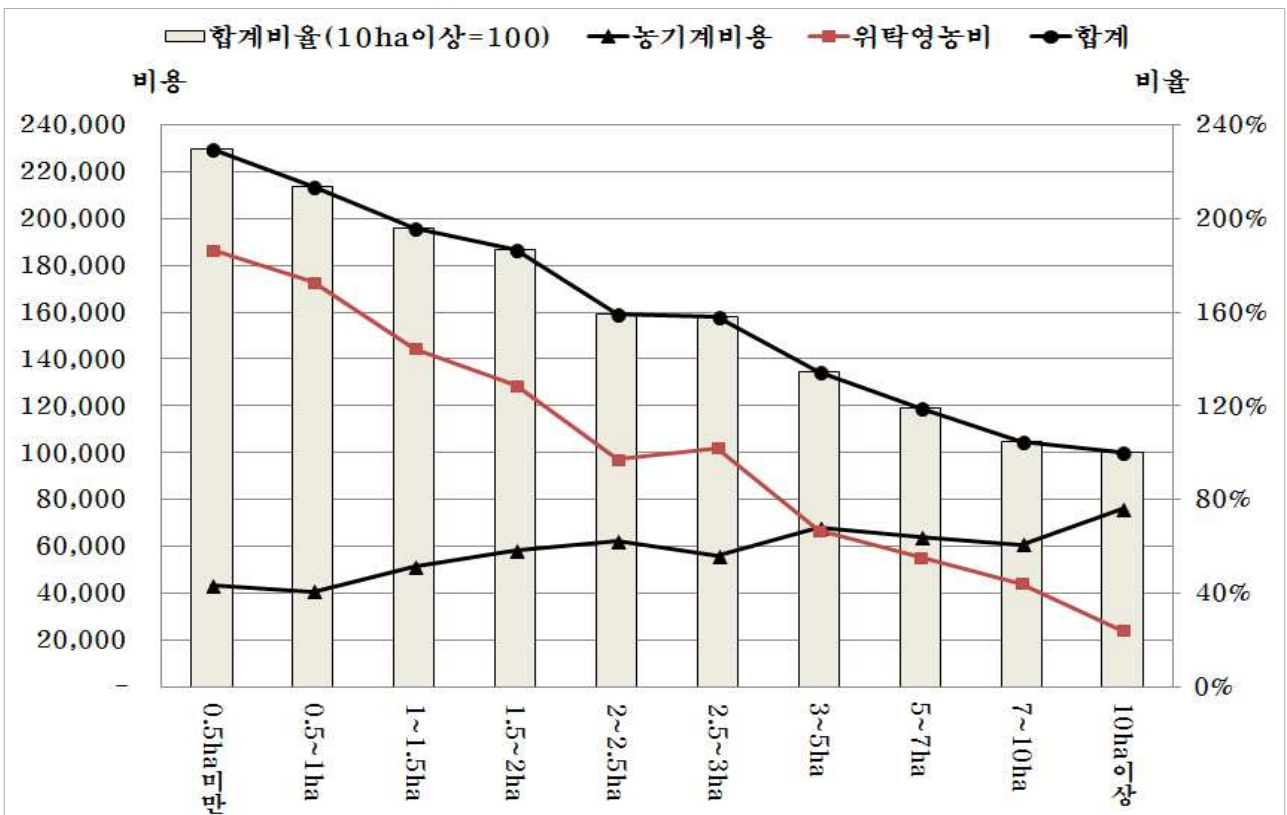
- 1.5~5ha농가의 위탁영농비와 농기계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

그림 75 10a당 주요 비목의 비용변화추이



주 : 2012년부터 노동시간당 임금책정이 변경되어서 2011년까지만 작성함

그림 76 쌀 재배면적별 농기계 관련비용 비교(2012~13년 평균)



나. 경영규모별 농기계편성 시산

- 모든 계층의 농구비와 위탁영농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 들녘경영체 경영면적에 따라 농기계의 기종과 형식을 아래와 같이 농기계 조합을 통하여 결합, 편성하여 고가의 농기계를 공동이용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임
- 그러나 대다수 들녘경영체에서는 기존 소유농기계의 처분문제와 편리성으로
 - 개별경영과 같은 유형의 농기계 운영체계를 이루고 있음.
- 따라서 들녘경영체 전체의 주요 농기계의 개별 소유실태와 이용실태를 파악
 - 기종별 작업가능면적, 유효 이용가능면적 등을 고려하여
 - 지역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과 연계, 처분하고
 - 필요한 농기계만을 가지고 공동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들녘면적별 들녘경영체의 적정농기계 편성은 다음 표와 같이
 - 평야지대와 중산간지대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121 평야지대 들녘경영체 적정 농기계 편성 추정치

구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필요 노동력
	기비살포	경운	정지	이앙	수확	
50~69ha	소형1대	중형2대	중대형2대	6조3대 or, 8조2대	4조2대+5조1대	
	1인	2인	2인	3인	3인	3인
70~99ha	소형1대	중형3대	중대형3대	6조3대 or 8조2대	4조1대+5조2대	
	1인	3인	3인	3인	3인	3인
100~149ha	소형2대	중형4대	중대형4대	6조2대+8조1대	4조2대+5조3대	
	2인	4인	4인	3인	5인	5인
150~199ha	소형2대	중형6대	중대형6대	6조3대+8조2대	4조3대+5조4대	
	2인	6인	6인	5인	7인	7인
200~249ha	소형2대	중형8대	중대형8대	6조6대+8조2대	4조4대+5조5대	
	2인	8인	8인	6인	9인	9인
250~299ha	소형2대	중형10대	중대형10대	6조7대+8조3대	4조4대+5조6대	
	2인	10인	10인	10인	10인	10인
300~349ha	소형3대	중형12대	중대형12대	6조7대+8조4대	4조5대+5조7대	
	3인	12인	12인	11인	12인	12인
350~399ha	소형3대	중형14대	중대형14대	6조8대+8조4대	4조6대+5조8대	
	3인	14인	14인	12인	14인	14인
400~449ha	소형4대	중형16대	중대형16대	6조9대+8조5대	4조6대+5조10대	
	4인	16인	16인	14인	16인	16인
450~499ha	소형4대	중형18대	중대형18대	6조9대+8조6대	4조6대+5조11대	
	4인	18인	18인	15인	17인	18인

주 : 트랙터에서 소형(50HP미만), 중형(50~80HP미만), 대형(80HP이상) 의미

표 122 중산간지대 들녘경영체 적정 농기계 편성 추정치

구분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필요 노동력
	기비살포	경운	정지	이앙	수확	
50~69ha	소형1대	중형3대	중대형3대	6조3대 혹은 8조2대	4조2대+5조1대	
	1인	3인	3인	3인	3인	4인
70~99ha	소형1대	중형4대	중형4대	6조3대 혹은 8조3대	4조3대+5조1대	
	1인	4인	4인	3인	4인	4인
100~149ha	소형2대	중형6대	중형6대	6조4대 혹은 8조4대	4조4대+5조2대	
	2인	6인	6인	4인	6인	46
150~199ha	소형2대	중형8대	중형8대	6조5대+8조1대	4조5대+5조3대	
	2인	8인	8인	5인	8인	8인
200~249ha	소형3대	중형10대	중형10대	6조7대+8조2대	4조6대+5조4대	
	3인	10인	10인	6인	10인	10인
250~299ha	소형3대	중형12대	중형12대	6조8대+8조3대	4조7대+5조5대	
	3인	12인	12인	10인	12인	12인
300~349ha	소형4대	중형14대	중형14대	6조10대+8조4대	4조9대+5조6대	
	4인	14인	14인	11인	15인	15인
350~399ha	소형4대	중형16대	중형16대	6조12대+8조4대	4조10대+5조7대	
	4인	16인	16인	12인	17인	17인
400~449ha	소형5대	중형18대	중형18대	6조13대+8조6대	4조11대+5조8대	
	5인	18인	18인	14인	19인	19인
450~499ha	소형5대	중형20대	중형20대	6조15대+8조6대	4조12대+5조9대	
	5인	20인	20인	15인	21인	21

- 다음의 들녘경영체 사례 경영체는 7명의 구성원이 244ha 쌀 재배면적 운영
- 트랙터 31대(이중 19대는 내용연수가 경과한지 5년 이상 된 농기계임), 이앙기 8대, 콤바인 7대, 건조기 28대를 보유하고 있어 평야지대 적정농기계 대수와 유사함.
 - 주요 농기계 소유를 통하여 자신의 경영면적과 약간의 작업수탁을 통해 기종별로 316~339ha 전후의 총 작업면적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논 이모작으로 보리 112ha(2013년 수확면적)와 밀(16ha), IRG(38.0ha) 등 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트랙터와 콤바인 감가상각비를 절감하고 있음

표 123 ○○영농조합법인의 농기계소유 및 이용현황 사례(2013년 12월)

농가 번호	논 작물별 재배면적(ha)					농기계 소유대수(HP, 조, 조)			
	쌀재배	보리	밀	IRG	면적	트랙터(HP,대)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1	24.0	12.0			36.0	105,90,47,42	8	5	42,54,70
2	60.0	32.0	8.0		100.0	115,90,52,43,38	8,8	6	42,50,64×4대
3	48.0	10.0		38.0	96.0	135,110,82,65,45,35	8	4	35,44,44,62,62
4	18.0	2.8			20.8	90,43,42	6	4	75,75
5	50.0	24.0			74.0	125,90,80,80,38	8,8	6	70×4대
6	28.0	16.0			44.0	110,110,96,35	8	6	42,42,44,62
7	16.0	16.0	8.0		40.0	125,90,55,42	8	6	62,62,72,72
합계	244.0	112.8	16.0	38.0	410.8	31대(12대 계상)	8대	7대	28대(17대계상)
평균	34.9 (100%)	16.1 (46.1%)	2.3 (6.6%)	5.4 (15.5%)	58.7 (168.2%)	4.4대(292HP)	8.6조	6.4조	4대

주 : 밀줄친 것은 내용연수 지난 것으로 비용에 계상되지 않음.
 주) 농가1과 농가 7의 경우 익산시 만경강 하천부지(국가소유) 땅의 환경사업으로 2013년부터 쌀 재배면적을 못하게 되어 재배면적이 줄어듦.
 주) 농가4는 2013년도 4월부터 시설원예(딸기)도입으로 쌀 재배면적이 증가하지 못함

표 124 ○○영농조합법인의 농기계 이용 사례(2013년 12월)

구분	트랙터(경운 · 정지, ha)			이앙기(이앙, ha)			콤바인(수확, 건조, ha)		
	합계	자가	수탁	합계	자가	수탁	합계	자가	수탁
○○○	26.0	24.0	2.0	26.0	24.0	2.0	28.5	24.0	4.5
○○○	66.2	60.0	6.2	66.2	60.0	6.2	66.2	60.0	6.2
○○○	52.0	48.0	4.0	52.0	48.0	4.0	52.0	48.0	4.0
○○○	22.0	18.0	4.0	24.0	18.0	6.0	26.0	18.0	8.0
○○○	66.0	50.0	16.0	82.0	50.0	32.0	82.0	50.0	32.0
○○○	28.0	28.0	-	28.0	28.0	-	28.0	28.0	-
○○○	56.0	16.0	40.0	56.0	16.0	40.0	56.0	16.0	40.0
합계	316.2	244.0	72.2	334.2	244.0	90.2	338.7	244.0	94.7
평균	45.2 (100%)	34.9 (77.2%)	10.3 (22.8%)	47.7 (100%)	34.9 (73.2%)	12.9 (26.8%)	48.4 (100%)	34.9 (72.1%)	13.5 (27.9%)

- 사례 들녘경영체의 전체 농가의 10a당 평균 감가상각비는 97,042원
 - 10a당 수선비 12,200원 영농광열비 19,400원으로
 - 농기계관련비용은 통 128,642원으로 2013년 전국평균 165,065원보다 36,423원이 절감되어 22.1%를 절감하고 있음.

표 125 ○○영농조합법인 농가 기종별 10a당 농기계 감가상각비(2013년)

구분	중형농기계(원)				부속 농기계(원)		합계(원)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계	건조기	부속작업기	
○○○	56,839	26,154	30,504	113,496	8,473	27,585	149,554
○○○	25,865	9,668	18,482	54,015	8,808	13,266	76,089
○○○	27,366	10,385	22,987	60,738	4,239	22,459	87,437
○○○	23,575	13,333	21,459	58,368	11,624	31,412	101,404
○○○	19,382	9,756	25,328	54,466	4,947	17,844	77,257
○○○	29,852	19,286	36,360	85,497	-	15,039	100,536
○○○	29,576	13,929	17,117	60,621	3,343	23,051	87,015
평균	30,351 (31.3%)	14,644 (15.1%)	24,605 (25.4%)	69,600 (71.7%)	5,919 (6.1%)	21,522 (22.2%)	97,0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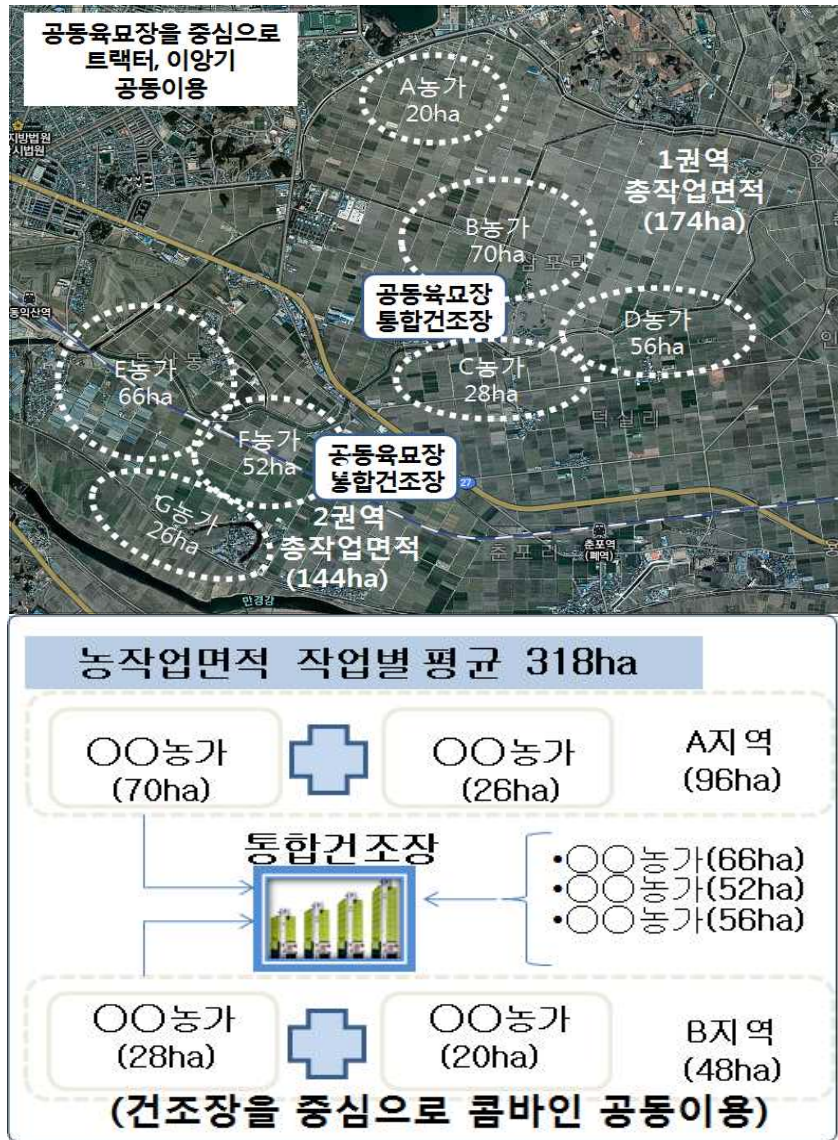
표 126 ○○영농조합법인 농가의 기종별 10a당 영농광열비와 수선비(2013년)

구분		영농광열비	수선비	구분		영농광열비	수선비
트랙터	경운	3,240	4,848	건조기	유류대	4,725	211
	정지	5,940			전기료	500	
	소계	9,180			소계	5,225	
이앙기		945	3,106	콤바인		4,050	4,035
합 계						19,400	12,200

다. 주요농기계 공동이용 시스템 구상도

- 들녘경영체의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은 매우 어려우나,
 - 아래와 같이 단계별 농작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트랙터 및 이앙기의 공동이용시스템
 - 공동육묘장과 연계하여 육묘-경운-정지-이앙과정에서
 - 육묘장에서 품종별 이앙시기를 고려하여 파종하고, 공동 경운정지와 이앙 실시
- 콤바인의 공동이용시스템
 - 통합건조장, RPC 건조시설과 연계하여 콤바인 공동이용구축
- 아래 그림은 들녘경영체 ○○영농조합법인의 공동육묘장과 통합건조장을 중심으로 한 농기계 공동작업 추진구상도를 정리한 것임

그림 77 ○○영농조합법인 공동작업 추진 구상도



6-3 공동 육묘-방제 시스템

가. 공동육묘장 운영모델

- 공동육묘장(200평 철골 자동화 시설)의 작업면적
 - 연간 3만장 육묘 공급가능, 1개소당 100ha분 작업
 - 들녘 500,000ha로 계산시 5,000개소 필요
- 특히 공동육묘는 품종통일과 양질묘생산에 의한 고품질쌀 생산의 출발점이며, 공동육묘를 통한 이양 등 농기계 공동이용의 출발점으로 중요
- 공동육묘장 작업 시스템 (100ha기준)
 - 노동력편성 : 5인 혹은 6인 1조
 - 공동육묘장 연간 가동 작업 상자수 : 100ha당 30,000장(종자 8,000kg)
 - 탈망시간 : 1인 1시간 650kg = 12시간 소요
 - 상자작업시간 : 6명 1조, 시간당 700장 작업가능
 - ⇒ 3만장 50시간 소요 총 300시간
 - 틀에 상자 넣기 작업 : 3명 8시간 6,000장 작업가능
 - 3명×8시간×5회 총 120시간
 - 관리 : 1일 1일 1시간 10일간 관리 총 10시간
 - 100ha 총노동시간 = 450시간(통계청 2,830시간의 16%로 84%절감)
 - ⇒ 450시간=(12+300+120+10)+8시간(여유시간)
- 공동육묘장 필요장비
 - 육묘상자 : 10,000~20,000장
 - 육묘컨테이너 : 100~200개
 - 기타 장비 : 탈망기, 일괄파종기, 지게차, 온탕기,
- 공동육묘장 육묘형태
 - 2~3일 발아후 출하
 - 10일묘 출하, 육묘장(10일묘)→녹화장(15일)→ 출하
 - 25일묘 출하 등 다양

나. 광역방제기 운영모델

- 광역방제기(광역살포기나 무인헬기)의 작업가능면적
 - 1일 30~60ha 작업가능
 - 1대 최대 1차 방제시 가능면적 : 300~500ha(10일 방제 기준)
 - 들녘 500,000ha로 계산시 1,000대 필요
- 2010년 쌀 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 무인헬기 2015년까지 500대 보급계획
 - ⇒ 광역살포기 : 국산제품(160백만원), 작업효율성 높음. 운영비 적게 소요
야간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 있음
 - ⇒ 무인헬기 : 100% 2억원 소요. 운영관리비, 보험료 등이 많이 소요
- 공동광역방제기 작업 시스템 (100ha기준)
 - 노동력 편성 : (4인 1조) 혹은 (최소 3인 1조)가 기본
 - 1일 작업면적 : 40~50ha(최대 60ha가능)
 - 2500cc : 1회 3.2ha (1일 9시간에 14~17회 반복가능)
 - 3000cc : 1회 4.0ha (1일 9시간에 14~17회 반복가능)
 - 1일 작업시간 : 9시간(1일) ⇒ 100ha는 2일 작업 필요
 - 년 2~3회 방제
 - 100ha 총 노동시간=150시간(통계청 1,310시간의 11%로 89%절감)
150시간=(9시간×4인×2일×2회)+6시간(여유시간)

< 광역살포기 공동방제 >



< 무인헬기 공동방제 >



(3) 공동육묘-공동방제 시스템 구축

- 시설장비 지원 들녘경영체 63개소 중에서 16개 들녘경영체는 공동육묘장-공동방제기를 소유하고 있어 공동육묘-공동방제 시스템구축
 - 그러나 시설장비 지원 들녘경영체 전체의 25.4%에 불과
 - 차후 시설장비 지원 들녘경영체 중에서 공동육묘장과 공동방제기 중 하나만 소유한 경영체에 다른 시설장비 지원이 절대 필요

표 127 공동육묘장-광역살포기 공동시스템 구축 들녘경영체(2009~10년선정)

지원 연도	시도	시군	경영체명	농가 수	면적 (ha)	시설장비		
						공동 육묘장	광역 방제기	비고
'09년	충북	청원	양지말영농법인	27	154	충북	'09	충북 지원
	충북	진천	장척쌀유통단지법인	82	150	'09	충북	충북 지원
	전북	익산	한그루영농법인	6	240	전북	'09	전북 지원
	전북	상주	금화작목반	165	123	경북	'09	경북 지원
	경북	의성	칠성작목반	210	204	소형	'09	경북 지원
'10년	충북	보은	대추고을작목반	131	120	충북	'10	충북 지원
	충남	예산	쌀전업농삼교영농법인	15	160	충남	'10	충남 지원
	경남	산청	영실영농법인	131	182	경남	'10	경남 지원
'12년	전남	영암	농업회사법인빛가람(주)	55	240	소형	'12	전남 지원
'10년	충남	보령	보령통합RPC	91	118	충남	'13	충남 지원
	전북	김제	에쿠스영농조합법인	100	254	'13	전북	전북 지원
	전남	순천	농업회사주농	351	60	'13	전남	전남 지원
'12년	충남	부여	큰사랑영농조합법인	66	173	소형	'14	충남 지원
	전북	군산	회현농협(RPC)	155	304	전북	'14	전북 지원
	전북	군산	제희RPC	169	285	전북	'14	전북 지원
	전북	익산	익산우리밀영농조합	64	327	'14	전북	전북 지원

그림 78 공동육묘장-공동방제기-고품질쌀브랜드RPC연계 시스템

(1) 공동육묘장 운영
 ↳ 양질묘 생산으로 고품질쌀 기초

차수	품종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1차 I	향미향3,000,노출향2075,향미향400	향미향3,000,노출향2075,향미향400	소독	소독	소독	발아기	파종	발아실	발아실	발아실	파종
2차 II	향미향3,000	향미향3,000	소독	소독	소독	발아기	파종	발아실	발아실	발아실	파종
3차 III	향미향3,000	향미향3,000	소독	소독	소독	발아기	파종	발아실	발아실	발아실	파종
4차 I	향미향3,000	향미향3,000	소독	소독	소독	발아기	파종	발아실	발아실	발아실	파종
5차 II	향미향3,000	향미향3,000	소독	소독	소독	발아기	파종	발아실	발아실	발아실	파종
6차 III	향미향3,000,향미향5,000	향미향3,000,향미향5,000	소독	소독	소독	발아기	파종	발아실	발아실	발아실	파종
7차 I	향미향3,000	향미향3,000	소독	소독	소독	발아기	파종	발아실	발아실	발아실	파종
8차 II	향미향3,000	향미향3,000	소독	소독	소독	발아기	파종	발아실	발아실	발아실	파종
9차 III	향미향3,000	향미향3,000	소독	소독	소독	발아기	파종	발아실	발아실	발아실	파종
10차 I	향미향3,000	향미향3,000	소독	소독	소독	발아기	파종	발아실	발아실	발아실	파종
11차 II	향미향3,000	향미향3,000	소독	소독	소독	발아기	파종	발아실	발아실	발아실	파종
12차 III	향미향3,000,노출향4,000	향미향3,000,노출향4,000	소독	소독	소독	발아기	파종	발아실	발아실	발아실	파종
13차 I	향미향3,000	향미향3,000	소독	소독	소독	발아기	파종	발아실	발아실	발아실	파종
14차 II	향미향3,000	향미향3,000	소독	소독	소독	발아기	파종	발아실	발아실	발아실	파종
15차 III	향미향3,000	향미향3,000	소독	소독	소독	발아기	파종	발아실	발아실	발아실	파종
16차 I	향미향3,000	향미향3,000	소독	소독	소독	발아기	파종	발아실	발아실	발아실	파종
17차 II	향미향3,000	향미향3,000	소독	소독	소독	발아기	파종	발아실	발아실	발아실	파종
18차 III	향미향3,000	향미향3,000	소독	소독	소독	발아기	파종	발아실	발아실	발아실	파종
19차 I	향미향3,000	향미향3,000	소독	소독	소독	발아기	파종	발아실	발아실	발아실	파종
20차 II	향미향3,000	향미향3,000	소독	소독	소독	발아기	파종	발아실	발아실	발아실	파종




(2) 광역살포기, 무인헬기에 의한 공동방제단 운영
 ↳ 비용절감, 고품질벼 생산




(3) 고품질쌀 브랜드 RPC(시설현대화RPC)
 새로운 최고 시설에서 최고쌀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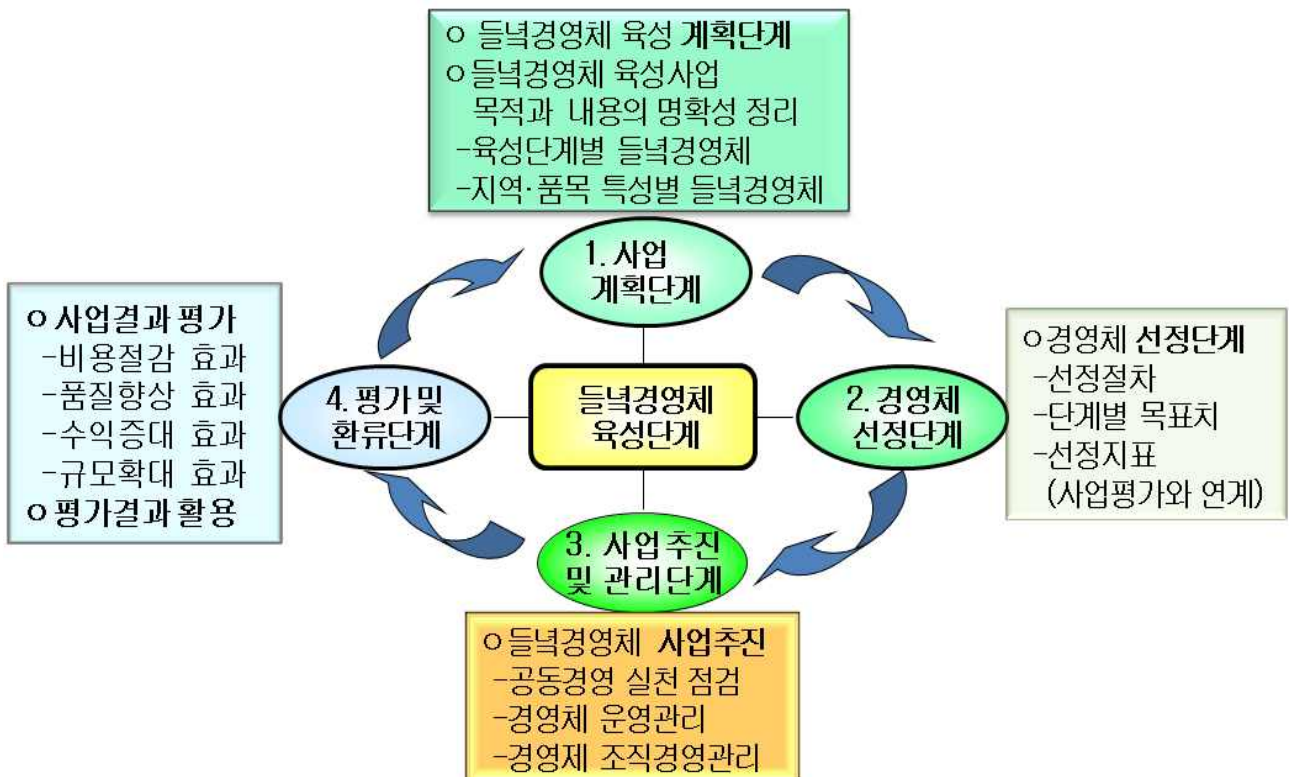
제5장 들녘경영체 성과 조사방법 분석

1. 사업 계획-선정-관리-평가 4단계

1-1 분석체계

-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 계획수립-선정-시행(관리)-평가단계 등 4단계 과정에서의 계획수립이 필요
- 1단계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계획단계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명확성을 제시하고, 육성단계별, 지역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방향 등을 수립하는 단계
- 2단계 : 들녘경영체 선정 단계
 - 선정절차, 단계별 목표치, 평가지표와 연계된 선정방향 설정하여 선정하는 단계
- 3단계 : 들녘경영체 사업시행 및 관리단계
 - 선정된 들녘경영체의 현장에서의 사업추진과 사업내용, 운영, 조직경영 등에 대한 관리단계
- 4단계 : 들녘경영체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단계
 - 평가지표 개발, 평가방향, 평가결과 활용 등을 검토하는 단계

그림 79 들녘경영체 육성계획-선정-수행관리-평가단계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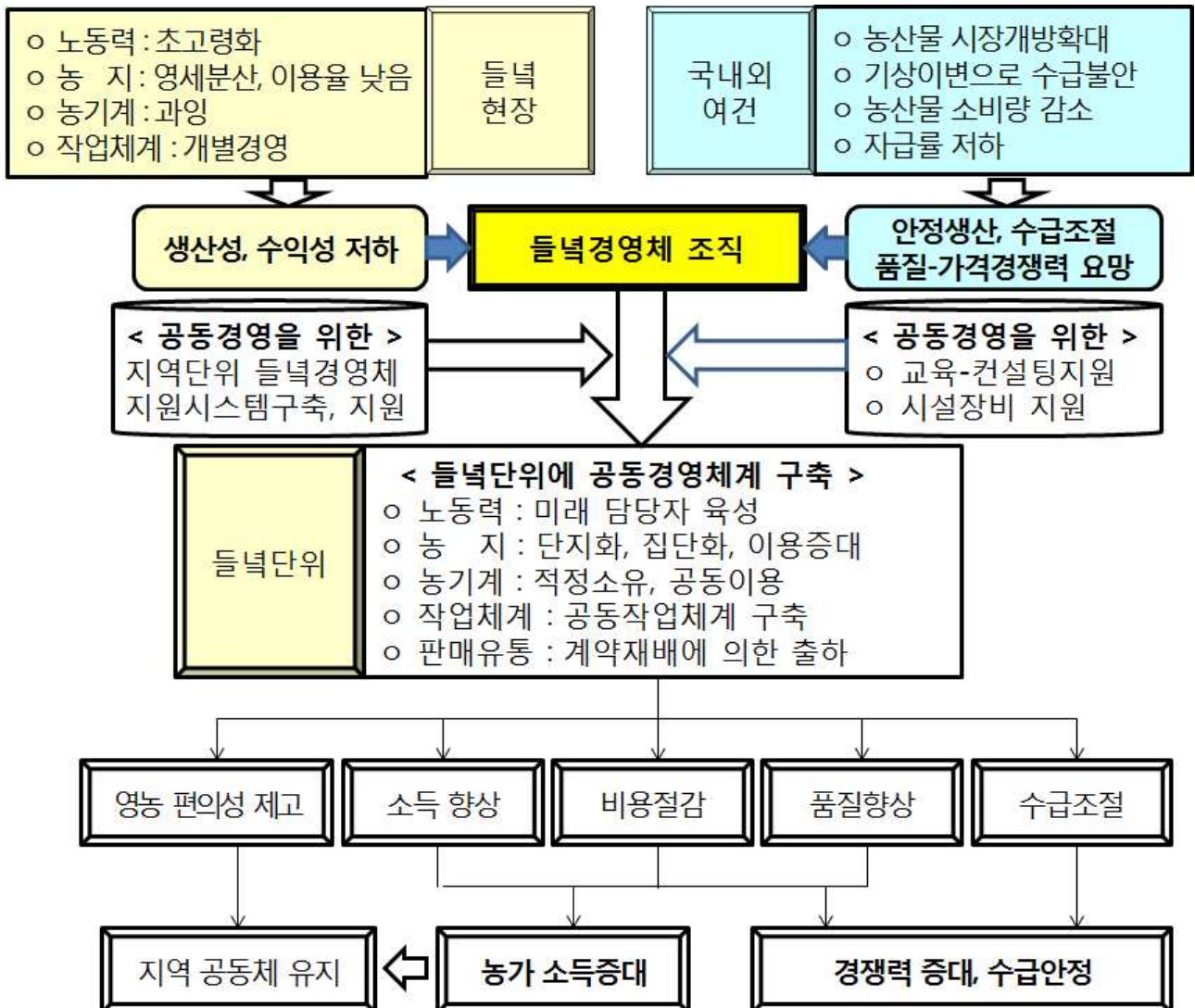


1-2 들녘경영체 육성 단계별 요약

가. 사업계획단계

-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목적과 사업내용이 명확해야 함
- 쌀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농자재가격 상승 등에 의한 생산비용이 증대되고 있어,
 -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쌀의 국제경쟁력 제고 요구
- 들녘단위를 중심으로 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 단지를 조성한 경영체 대상
 -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등 시설장비 지원과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들녘경영체 농지의 규모화, 단지화를 통하여
 - 지원된 공동육묘장, 광역살포기를 통해 공동육묘-공동방제, 농기계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쌀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
 - 지역의 우수RPC와 연계를 통해 고품질벼 출하로 시군 브랜드쌀과 연계

그림 80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배경과 목적과 사업내용



- 쌀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에 다양한 목적달성
 - 농가의 소득증대와 고품질쌀 생산을 통한 RPC 경영수지 개선
 - 고품질쌀 생산을 통한 시군 브랜드쌀의 브랜드 파워형성
- 이상과 같이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사업목적과 추진내용이 명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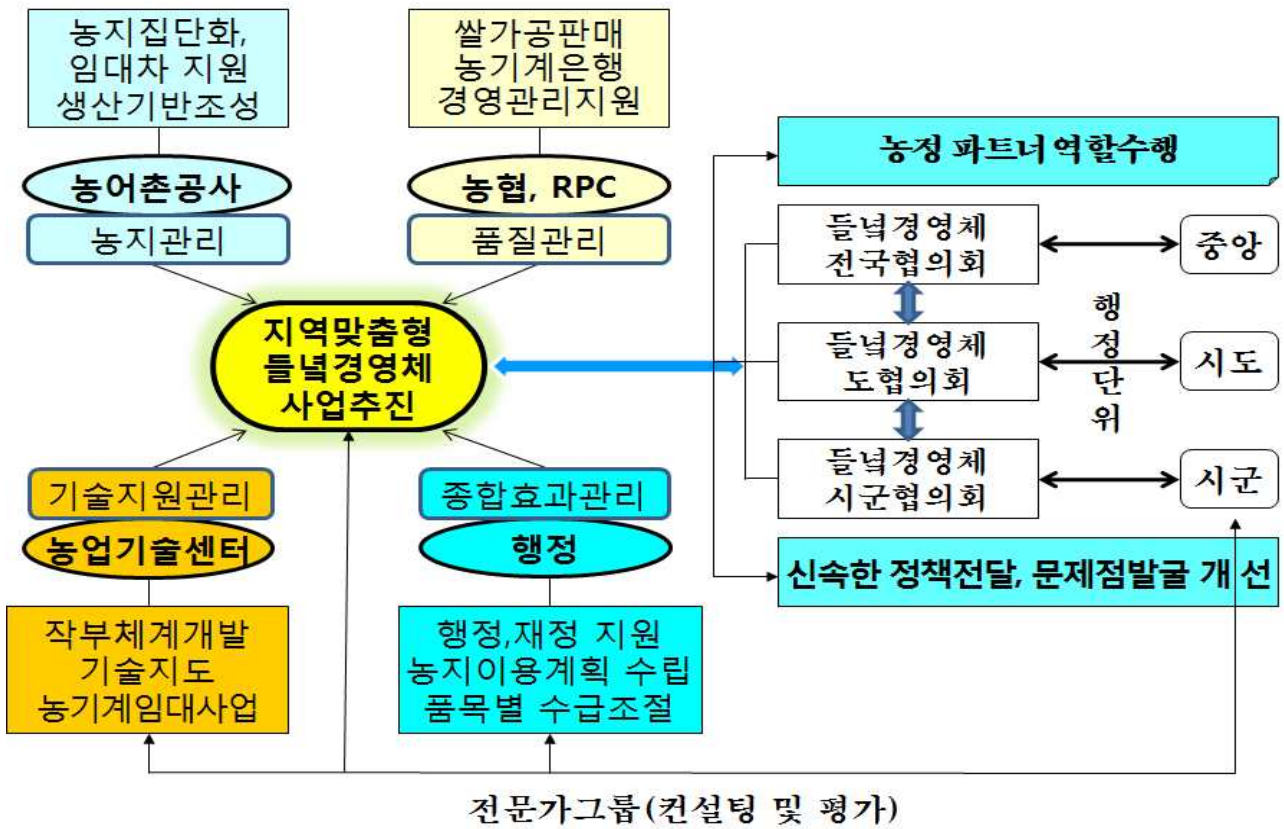
나. 선정단계

- 선정단계에서는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계획에 따라 단계별 적정 들녘경영체를 선정
 - 선정단계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을 추진할 경영체를 선정한 단계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임
- 선정단계에서는 다음 3가지 과정이 중요함
 - 들녘경영체 자체의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가능성 등 고려하여 적정한 평가항목과 지표 개발
 -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정책목표와 지역·품목 특성에 맞는 적정 들녘경영체를 선정
- 선정시 지역과 품목, 유형 등을 고려한 적정배치도 중요

다. 사업추진 및 관리단계

- 관리단계에서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단계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분석해야 함
- 들녘경영체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3가지를 추진
 - ① 들녘경영체 스스로 전국협의회와 도단위협의회, 시군협의회 조직, 운영
 - 상호 견학과 워크숍을 통해 정보교류를 행하면서 효율적인 경영체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벤치마킹하고 있음
 - ② 시군단위에서 들녘경영체 산학연관 협동체계 구축
 - 들녘경영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역단위에서 산학연관 협동체계 구축을 구축하고 각 기관에서의 들녘경영체 지원을 위한 역할활동을 열심히 해야 함.
 - 행정(경영체 관리지원), 농업기술센터(고품질쌀 생산 및 비용절감 기술지도), 농협(RPC 고품질벼 수매와 판매지원), 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지원)
 - ③ 들녘경영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컨설팅 실시
 - 지역단위 쌀산업 전체와 연계하여 경영체, 농협, 행정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그림 81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추진체계



라. 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단계 : 사업결과평가를 활용, Feedback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 수행하는 단계
- ① 2010.12, 도원회계법인,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효과분석』 평가실시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컨설팅업체와 경영체에 공동육묘장, 광역살포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 ② 2012. 6 (사)농산업전략연구원 [지역특성별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평가실시
 - 연구배경 : 쌀산업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경영체 육성모델개발
 - 연구기간 : 2012. 6~10
 - 연구내용 : 사업 성과평가와 지역특성별 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및 발전방안
 - 연구대상 : 2009~11년까지 육성된 들녘경영체
 - 연구결과 활용 : 2013년부터 육성모델에 의한 사업추진 계획
- 이상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회에 걸친 성과분석과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모델개발 등
 - 사업평가 결과를 잘 활용하고 환류하고 있음

2. 들녘경영체 선정단계 평가방법

2-1 이전 들녘경영체 선정 평가방법

- 2009년부터 들녘경영체 선정시작, 2단계로 변화되어 옴
 - 2009~'10년 들녘경영체 선정방법
 - 2011~'14년 들녘경영체 선정방법
- 2009~'10년 2년간 들녘경영체 선정은 시설장비 지원 들녘경영체를 선정하고, 이들 경영체 전체에 대해 교육 및 컨설팅 시작
 - 들녘경영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후 시군에 제출→도 제출→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들녘경영체 선정평가위원]구성후 평가항목에 따라 현장실사 평가 실시후 선정
 -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에 따라 지원액을 차별화하여 지원
- 2011~14년까지는 2가지 형태의 들녘경영체를 선정하였음
 - 2011년 : 들녘경영체에 운영비, 교육 및 컨설팅만 지원
 - 들녘경영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후 시군에 제출→도 제출→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지자체 자체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항목에 따라 서류 평가후 선정
 - 2012~14년 : 2단계 들녘경영체 지원 운영
 - (운영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운영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들녘경영체
 - (운영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들녘경영체 선정방법
 - * 들녘경영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후 시군에 제출→도 제출→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 지자체 자체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평가항목에 따라 서류 평가후 선정
 - (시설장비+운영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들녘경영체 선정방법
 - * 들녘경영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후 시군에 제출→도 제출→농림축산식품부 제출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들녘경영체 선정평가위원] 구성후 평가항목에 따라 현장실사 평가 실시후 선정
 -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항목에 따라 서류 평가후 선정

가. 2009~'10년 들녘경영체 선정 평가방법

(1) 들녘경영체 사업계획서 작성내용

(가) 현 황

1) 일반현황 : 들녘경영체 소재 시·군에 대해 작성

- 농가인구, 전체 가구수 및 인구수 :
- 영농현황 : 농가수, 벼, 재배면적, 생산량, 소득액, 생산비중
 - 쌀 전업농 수 및 들녘경영체 사업 참여 전업농 수
 - 호당 평균 재배면적 - 주재배 품종명 :
 -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수 및 면적 : 호, ha
 - 쌀관련 농업 법인체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2) 사업신청 들녘경영체 현황

- 일반사항 : 들녘경영체 명칭, 소재지, 결성일, 면적, 조합원수, 참여농가수
- 기술적 사항 : 주 재배품종, 친환경농업면적:
- RPC와 계약재배 : 계약재배 RPC와 서면약정 기준
 - 계약재배규약, 지적도 표시, 참여농가 리스트(주소, 성명, 재배면적, 지적번호)
- 사업신청 들녘경영체(법인 등) 시설·장비 보유현황
 - 생산시설 : 공동육묘장, 녹화장, 채종포, 건조저장시설(개수, 크기)
 - 농기계·장비 : 기종별(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소유대수
 - 기타 시설장비 : 공동방제기 등

3) 계약재배 RPC현황

- 일반현황 : 소재지, 대표브랜드, 벼 매입량, 쌀 출하량, 주요 판매처
- 계약재배현황 : 계약재배면적, 계약재배 매입량, 친환경인증면적
 - 계약재배 농가조직화 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시중브랜드쌀 평가 수상실적

(나) 사업신청 들녘경영체(법인 등)의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1) 주요항목 및 추진(경영개선)목표

- 기간 : 3~5년
- 경영개선내용
 - ① 재배품종수 및 품종명, ② 공동육묘 면적 및 비율

- ③ 공동병충해방제비용, ④ 공동시비관리 비율(유기질비료 시비 비율)
- ⑤ 농기계 공동농작업(경운, 이앙, 수확), ⑥ 농기계감축(트랙트, 이앙기, 콤바인)
- ⑦ 농가조직화비용(들녘내 참여농가 및 면적비율)
- ⑧ RPC계약재배 및 출하량 비율, ⑨ GAP 혹은 친환경인증재배 면적비율
- ⑩ 들녘경영체 CEO교육 참석실적, ⑪ 들녘경영체운영 협의회 개최(회)

2) 사업신청 들녘경영체(법인 등)의 재배관리 목표

- 기간 : 3~5년
- 재배관리내용
 - ① 10a당 질소질 비료 사용량(kg), ② 단백질 함량, ③ 10a당 생산단수(kg)
 - ④ 겨울철 논 이모작(밀, 보리, 청보리, 유채 등) 재배면적 및 비율
 - ⑩ 들녘경영체 CEO교육 참석실적, ⑪ 들녘경영체 운영협의회 개최(회)

3)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항목별로 상세히 작성하고 근거자료 첨부
 - ① 들녘경영체 결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② 관리 규약 제정 및 운영실적 및 계획
 - ③ 재배관리룩장, 재배관리 매뉴얼, 계약재배 약관 제정 및 운영 실적 및 계획
 - ④ 농가조직화,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협의회 개최, 컨설팅 등 실천계획
 - ⑤ 들녘경영체의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RPC)와 계약재배 추진 실적 및 계획
 - ⑥ 시·군단위 「들녘경영체」 육성 협의회 구성 운영 실적 및 계획
 - ⑦ 지자체 농협, RPC 계획 : 참여 농가 교육·홍보를 위한 자체 지원실적 및 계획

(다) 세부사업 시행계획

1) 사업별 계획

- 총괄표(예시)
 - 시설장비 지원 요구내용 및 금액
 - 컨설팅 지원요구액
-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 세부사업별 추진 일정

2) 사업비 확보 계획

-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3) 사후관리 체계

들녘경영체 성과 조사방법 분석

- 사업평가/ Feedback / 사후관리 계획
 - 자체평가지표, Feedback 계획서 등
- 기타 관리계획 등

(라) 사업계획서에 첨부해야 할 자료

- ① 시·군 단위 고품질 쌀 들녘경영체 육성 계획(5개년)
- ② 시·도, 시·군의 사업계획서 검토 자료(의견, 우선순위 등 기재)
- ③ 지방비·자부담금 확보 증빙자료
 - 지방비 : 지자체 기본 방침
 - 자부담금 확보 증빙 : 법인 또는 법인대표자명의 예금 평잔 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등
- ④ 들녘경영체 사업참여 동의서
 - 법인 : 법인이사회(또는 참여 농업인 전체회의)의사록, 동의서 등
 - 농가조직체 : 농가조직체(또는 참여 농업인 전체회의)의사록 동의서(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의 2/3이상 동의) 등 증빙자료
- ⑤ 들녘경영체의 농가조직화 근거자료(관리규약, 참여 농가리스트, 공동재배 지침 등)
- ⑥ 들녘경영체와 계약재배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RPC포함)간 서면 약정서 및 계약재배 약관
- ⑦ 들녘경영체의 대표자(CEO)선발 및 경력 근거 자료
- ⑧ 지자체의 사업평가지표 및 Feedback 계획 등(내부자료)
- ⑨ 사업신청 들녘경영체의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농가조직체의 경우 농가조직체 관리규약 또는 조례 사본 1부)

< 참고 > 일본사례 농업경영개선계획 인정신청서 서식

(1) 근거법령

-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1980년법률 제65호) 제12조제1항의 規定

(2) 기본사항

- 신청자 주소, 명칭,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설립일), 전화번호, FAX번호 등

(3) 농업경영개선계획 내용

- ① 목표로 하는 영농유형
- ② 경영개선 방향 개요
 - 연간 농업소득 및 연간 노동시간의 현재 실태와 5년후 목표
- ③ 농업경영 규모확대에 관한 목표

- 재배작물 및 가축사육, 생산량 현재와 5년후 목표치
- 농지소유지와 임차지 면적 및 5년후 목표치(지목포함)
- 특정작업수탁 작목 및 작업면적 현재와 5년후 목표치
- 작업수탁 작목 및 작업면적 현재와 5년후 목표치
- 농축산물 가공·판매 기타 관련 부대사업 사업명과 내용의 현재와 5년후 목표치
- ④ 생산방식의 합리화 목표
 - 기계·시설의 현재소유 성능과 5년후 목표치(기계 시설명 기록)
 - 농지 이용조건의 현재와 5년후 목표치
- ⑤ 경영관리 합리화 방안에 대한 현재와 5년후 내용
- ⑥ 농업종사 상태의 현재와 5년후 개선목표
- ⑦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개선목표와 조치내용

< 참고사항 >

- 경영구성 : 가족농업종사자(법인경영의 경우 임원)의 성명 경영주(대표자와의 관계)
 - 각 종사자의 현재의 담당업무, 연간농업종사일수와 5년후의 예측내용
- 고용자 : 상시고용, 임시고용의 현재 인원과 5년후 예측치

(2) 2009~'10년 들녘경영체 선정평가지 지표

(가)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 개발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경영체의 사업계획의 적정성, 고품질쌀 생산 및 여건, 비용절감 체계구축 및 여건 및 조직화·규모화·단지화 체계 구축정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배점기준을 검토

(나) 평가항목 분류 및 심사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총 20점)

- ① 사업목표 명확성 : 들녘경영체 사업목표의 명확성 파악
 - 배점 총 6점 : 등급별 점수 6, 5, 4, 3점
 - 등급심사기준 : 들녘경영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성목표의 명확성 여부, 육성계획목표(5개년)은 실현가능하게 수립여부,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합성 여부
- ② 사업계획 적정성 : 들녘경영체 사업계획의 적정성 파악

들녘경영체 성과 조사방법 분석

- 배점 총 6점 : 등급별 점수 6, 5, 4, 3점
- 등급심사기준 : 재배관리 목표는 실현가능성,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의 적정여부, 사업추진 의지여부, 시·군단위 들녘경영체 육성협의회 구성여부
- ③ 지자체 지원 및 자담조달계획과 지원능력 : 시군단위 쌀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정도와 실현가능성정도를 측정
 - 배점 총 4점 : 등급별 점수 4, 3, 2, 1점
 - 등급심사기준 :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지자체의 들녘경영체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실적) 적정여부, 연차별 지방비 및 자부담 계획여부
- ④ RPC와 계약재배의 적정성 : RPC 고품질 쌀 생산 가능성 파악
 - 배점 총 4점 : 등급별 점수 4, 3, 2, 1점
 - 등급심사기준 : 들녘경영체와 RPC와 계약재배 서면약정(의무화)여부, 약정적정성, 계약재배 여부 및 계약 재배비율에 따라 차등배점

2) 고품질쌀 생산 및 여건(총 25점)

- ① 품종통일 및 종자확보 정도 : 고품질쌀 생산 가능성 측정
 - 배점 총 5점 : 등급별 점수 5, 4, 3, 2점
 - 등급심사기준 : 들녘경영체의 재배품종수, 종자확보 정도(정부보급종 자체 채종포)에 따라 차등 배점
- ② 재배관리 및 표준화 정도 : 고품질쌀 생산 가능성 측정
 - 배점 총 5점 : 등급별 점수 5, 4, 3, 2점
 - 등급심사기준 : 들녘경영체의 재배관리 규약(메뉴얼)이 있는지 여부와 재배관리 규약(메뉴얼) 적정성 정도에 따라 차등배점
- ③ 지력증진실천의지 : 고품질쌀 생산 가능성 측정
 - 배점 총 4점 : 등급별 점수 4, 3, 2, 1점
 - 등급심사기준 : 녹비작물 재배여부 및 정도, 규산, 유기질 비료 사용여부, 정도, 벧짚환원여부 및 정도 등 지력증진 노력에 따른 차등배점
- ④ 축분지원과 정도 : 비료비 절감과 고품질쌀 생산가능성
 - 배점 총 4점 : 등급별 점수 4, 3, 2, 1점
 - 등급심사기준 : 축분(대가축,양돈,양계)자원 이용여부 및 이용정도에 따라 차등배점
- ⑤ 계약재배 RPC의 수확후 관리 노력정도 : RPC의 고품질쌀 생산가능성
 - 배점 총 4점 : 등급별 점수 4, 3, 2, 1점

- 등급심사기준 : 들녘경영체와 계약재배 체결한 RPC의 수확후 관리(건조·저장·가공) 능력 및 정도에 따라 차등배점

⑥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 고품질친환경쌀 생산가능성 파악

- 배점 총 3점 : 등급별 점수 3, 2, 1, 0점
- 등급심사기준 : 들녘경영체의 경영면적중 GAP인증 및 친환경인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점

3) 비용절감 체계구축 및 여건(총 25점)

① 농기계 공동 이용 :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적정성을 파악 농기계비용절감 정도 측정

- 배점 총 5점 : 등급별 점수 5, 4, 3, 2점
- 등급심사기준 : 주요농작업(경운·이앙·수확)에서 농기계 공동 이용 체계 구축여부 및 적정에 따라 차등 배점

② 농기계 적정보유정도 및 증·감축 계획 : 농기계 적정소유와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적정성을 파악하고 경영개선 가능성 측정

- 배점 총 4점 : 등급별 점수 4, 3, 2, 1점
- 등급심사기준 : 들녘경영체의 농기계 보유적정성, 경영면적에 따라 적정보유 정도, 농기계 증·감축 계획의 수립여부 및 계획수립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차등배점

③ 공동 농작업 정도 : 비용절감과 조직화의 정도를 측정

- 배점 총 5점 : 등급별 점수 5, 4, 3, 2점
- 등급심사기준 : 공동농작업이 가능한 작업의 매뉴얼작성 여부와 매뉴얼에 따른 공동작업정도에 따라 차등 배점

④ 직파재배 정도 : 이앙시간에서의 노동시간절감에 의한 비용절감 가능성 측정

- 배점 총 4점 : 등급별 점수 4, 3, 2, 1점
- 등급심사기준 : 들녘경영체의 직파재배 면적의 비율에 따라 차등배점

⑤ 공동육묘 정도 : 비용절감과 조직화의 정도를 측정

- 배점 총 4점 : 등급별 점수 4, 3, 2, 1점
- 등급심사기준 : 들녘경영체의 공동육묘 비율에 따라 차등배점

⑥ 겨울철 논활용 정도 :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쌀 토지용역비 절감과 경영체의 소득 증대 가능성 측정

- 배점 총 4점 : 등급별 점수 4, 3, 2, 1점
- 등급심사기준 : 겨울철 논 이모작 활용 비율에 따라 차등배점

4) 규모화·조직화·단지화 체계구축 정도 (총 30점)

- ① 법인체 구성 :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측정
 - 배점 총 6점 : 등급별 점수 6, 5, 4, 3점
 - 등급심사기준 : 들녘경영체의 법인체 구성 등 조직화 적정 여부
- ② 집단화 단지화 정도 : 사업의 목표달성 가능성 측정
 - 배점 총 5점 : 등급별 점수 5, 4, 3, 2점
 - 등급심사기준 :
- ③ 쌀전업농 구성비율 : 들녘경영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측정
 - 배점 총 4점 : 등급별 점수 4, 3, 2, 1점
 - 등급심사기준 : 들녘경영체 경영면적이 집단화, 단지화 적정여부, 집단화, 단지화 정도에 따라 차등배점
- ④ 단지면적 농가수 적정도 : 사업목표의 달성가능성을 측정
 - 배점 총 6점 : 등급별 점수 6, 5, 4, 3점
 - 등급심사기준 : 들녘전체 면적대비 들녘경영체 단지 면적 비율, 들녘전체 농가수 대비,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비율에 따라 차등 배점
- ⑤ 전문인력 확보 및 경영여건 : 들녘경영체의 조직적·효율적인 운영을 측정
 - 배점 총 5점 : 등급별 점수 5, 4, 3, 2점
 - 등급심사기준 : 들녘경영체의 대표자(CEO)의 사업추진의지와 전문성 여부 참여경영체 임원, 회원들의 벼농사 CEO교육이수 정도에 따라 차등배점, 관리규약 유무 및 관리 규약의 적정성에 따라 차등배점
- ⑥ 조직 구성체계 정도 : 들녘경영체의 조직적·효율적인 운영을 측정
 - 배점 총 4점 : 등급별 점수 4, 3, 2, 1점
 - 등급심사기준 : 들녘경영체의 조직(법인 등)체계 인적 구성의 타당성, 적정성 정도에 따라 차등 배점

(3) 2009~'10년 들녘경영체 평가방법

- 1차 평가 (서류평가)
- 2차 평가 (현장평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들녘경영체 선정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후 점수차 등에 의한 지원 차등화

나. 2011~'14년 들녘경영체 선정 평가방법

(1) 들녘경영체 사업계획서 작성내용

(가) 공동 농작업

- 공동 농작업 종류 및 면적
 - (해당 지역의 논 면적 중 들녘경영체가 공동 생산하는 면적, 향후 계획 등)
 - (육묘, 이앙, 병해충관리, 물관리, 수확 등 공동 농작업의 종류)
- 농기계·시설 확보 방안
 - (사업자가 보유한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시설 현황)
 - (사업자가 보유한 농기계, 시설로는 공동생산이 어려울 경우 부족한 농기계, 시설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방안)
- 인력확보 방안
 -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인부를 어떻게 확보할지 기재, 예를 들면 농협 직원 활용, 농작업 대행 농업인에게 노임 지급 또는 임시노동자 고용 등 상세방안)

(나) 고품질쌀 생산

- 계약재배 면적 및 품종
 - (계약재배 품종, 품종별 계약재배 면적)
- 품질기준 및 생산지도
 - 품질기준
 - (질소함량·품종순도 등 품질기준 및 품질기준에 맞는 벼를 생산하기 위한 재배 방법, 품질 기준 준수여부 확인방법)
 - 생산지도
 - (품질기준에 맞는 벼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지도 방안)
 - 제재사항
 - (품질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
- ※ 계약재배 약정체결서 첨부

(다) 자금 운영 계획

- 농가의 공동농작업 비용 처리 방법
 - (육묘, 방제 등을 대행해 줄 경우 해당 농지 농업인은 이에 대한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납부하는 지, 납부금액은 관행비용에 비교할 때 얼마나 저렴한지 등)
- 농가로부터 받은 농작업료 처리 방법

들녘경영체 성과 조사방법 분석

- (농업인으로부터 받은 농작업료를 누가 관리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수입과 지출은 참여농업인에게 어떻게 보고되는지 등)

(2) 2011~'14년 들녘경영체 선정 평가기준 및 방법

(가) 운영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들녘경영체 선정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①들녘규모, ②공동농작업 규모, ③신청자 조직형태, ④시도지사 평가점수, ⑤기타

○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들녘규모 (40)	20	○ 참여 농지면적이 50ha 5점, 50ha 추가마다 5점 가점(최대 20점)
	20	○ 공동농작업 참여 농업인수가 25명 5점, 25명당 5점 가점(최대 20점)
2. 공동농작업 규모(40)	20	○ 광역방제기 또는 무인항공방제기 보유(개소당 10점), 임차(개소당 5)
	10	○ 육묘장(661㎡, 200평 기준) 1동 5점, 2동 이상 10점
	10	○ 신청자 보유 농기계(트랙터·이앙기·콤바인) 대수당 2점 * 법인명의로 면세유를 받는 농기계 또는 법인명의로 용자 구입한 농기계이거나 농협직영 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농기계에 한하여 인정
3. 신청자 조직 형태(10)	10	○ 사업자의 조직형태에 따라 배점 - 농업법인 10점, RPC 8점, 농협 6점
4. 시도지사 평가점수(5)	5	○ 시도별 신청자 수를 감안, 시·도 재량 판단에 따라 5단계로 강제 배분(상위 20%는 5점, 이후 20%마다 1점씩 차감) * 배분없이 점수를 부여할 경우, 1점 부여 * 신청자 수가 5단계 배분이 불가능할 경우, 최고 5점부터 등급 당 1점씩 차감하여 부여
5. 기타(5)	5	○ 들녘경영체가 GAP 농산물 생산단지인 경우 ○ 들녘경영체가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도 생산하는 경우 ○ 수탁형 계약재배사업 참여 경영체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5점 부여, 기타 항목 모두에 해당하더라도 5점만 부여
합계	100점	

(나) 시설장비 지원 들녘경영체 선정 평가기준

○ 시설장비 지원 들녘경영체의 경우

- 운영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들녘경영체의 평가기준+현장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

- 시설장비 지원 들녘경영체의 경우 아래의 평가항목을 추가로 하여 현장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운영실태, 조직력, 지자체 참여도, 교육이수 정도 등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1. 사업계획 타당성	10	○ 들녘경영체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명확성 파악 ① 들녘경영체 목표 설정의 명확성 여부 ② 들녘경영체 목표 실현가능성 여부 ③ 들녘경영체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여부 ④ 들녘경영체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 여부 - 위 4개 모두 적정(10점), 3개 적정(8), 2개 적정(6), 1개 적정(4), 모두 미흡(2)	
2. 들녘경영체 운영실태	10	○ 들녘경영체의 사업추진 의지 파악 ① 공동육묘 참여 및 농기계 공동이용 여부 ② 이앙, 수확 등 공동농작업 이행 여부 ③ 계약재배 및 수탁거래비율이 70% 이상 여부 ④ 들녘경영체 회원관리 적정 여부 ⑤ 고품질 쌀 생산(재배) 체계 적정 여부 - 위 5개 모두 적정(10점), 4개 적정(8), 3개 적정(6), 2개 적정(4), 1개 적정(2), 모두 미흡(0)	
3. 들녘경영체 조직력	5	○ 법인을 구성하여 들녘경영체 형태로 운영된 년수 파악 ① 5년 이상 5점, ② 4년 이상 4점, ③ 3년 이상 3점 ④ 2년 이상 2점, ⑤ 1년 이상 1점	
4. 지자체 참여도	3	○ 지자체의 들녘경영체 육성의지 파악 - 들녘경영체 육성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3점	
5. 교육이수	2	○ 들녘경영체 임원진 역량 파악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CEO교육 이수 여부	
합계	30점		

(3) 2011~'14년 들녘경영체 평가방법

- 1차 평가 (서류평가)
 - 대상 : 운영비·교육 및 컨설팅지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지원 들녘경영체
- 2차 평가 (현장평가)
 - 대상 : 시설장비 지원 들녘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들녘경영체 선정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후 점수차 등에 의한 지원 차등화

2-2 들녘경영체 선정 평가방법

- 2015년부터 들녘경영체가 단계별 육성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들녘경영체 육성단계별, 지역맞춤형 모델별 사업계획서 및 평가방법 차별화 필요
 - 육성단계별
 - * 1단계(교육 및 컨설팅 단계), 2단계(공동경영 준비단계), 3단계(공동경영 심화단계)
 - 지역맞춤형 모델별
 - * 쌀중심형 유형, 논이모작 유형, (쌀+밭작물) 유형
- 2009년부터 사용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평가방법들을 수정, 보완하여 재작성
 - 들녘경영체 자체 사업계획서 작성내용
 - 들녘경영체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내용
 - 일반현황(들녘경영체, 들녘경영체와 연계된 RPC와 관련 사업체)
 - 조직화 정도
 - 공동작업내용
 - 운영관리방안
 - 추진전략 등
- 평가관련 내용
 - 사업계획서와 연계하여 작성하고, 들녘경영체 취지에 따라 평가항목 설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방법

가. 1단계 들녘경영체 선정 평가방법

- 검토내용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신청서
 - 들녘경영체 사업계획서 내용 검토
- 사업계획서 : 2011년도 이후 사업계획서와 유사

(1) 사업계획서 작성내용

(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신청서 (예시)

신청자	경영체명		설립년도		
	대표자명		교육컨설팅	총지원년도 년	
	휴대전화		지원내역	총지원액 백만원	
	주소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RPC, 농협			
	연계조직 (또는 업체)	* RPC의 경우 연계된 조직가입 * 비RPC는 연계된 조직과 RPC 모두 가입			
신청내역	신청단계	1단계 들녘경영체(), 2단계 들녘경영체(), 3단계 들녘경영체()			
	신청유형	쌀중심 들녘경영체() 논이모작유형 들녘경영체(), 쌀+밭작물 들녘경영체()			
	사업량	들녘경영체 __개소, 참여농가수 __호, 경영면적 __ ha			
	재원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시설·장비	시설·장비명			
		구입액			(백만원)
교육·컨설팅	계	교육	컨설팅	운영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p>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서 내용 삽입)</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2. 들녘경영체와 RPC간와 신청연도 계약재배 체결서 3. 들녘 항공사진(참여 농지 구분 표시) 4. 법인등록증(농업법인에 한함)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시설·장비 지원에 한함) * 통장사본은 통장인감으로 원본대조 날인하여 제출 6. 사업자 선정 평가표(교육·컨설팅 지원에 한함)</p>					

(나) 사업계획서 내용

○○법인(RPC·농협) 들녘경영체 기본현황

1. 신청자 현황

신청자	총 경영면적	논 (ha), 밭 (), 과수원 ()			
	참여농가수	호	법인의 경우 조합원수	명	
	경영체 참여 총 시설장비 기계보유현황	육묘장	동(m ²),	광역방제기	대, 무인헬기 대
			트랙터 대,	이앙기 대,	콤바인 대
	시설장비 임대현황	광역방제기 대, 무인헬기 대, 기타 대			
	경영체 전체 주요 품목 재배면적 및 사육현황	품목명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ha) 사육두수(두, 수)	계약재배현황
	계약재배 대상사업체	RPC 혹은 농협명, 업체명			
		업체 소재지		()시 ()면 ()리	
대상사업체 사업량		연간 가공량 톤			
		연간 판매액 백만원			
대상사업체 주요 생산품목 및 브랜드		품목명	브랜드명		
경영체 자체 가공사업내용	가공품명	연간 생산량	연간 판매액		
		톤	백만원		
		톤	백만원		
들녘 경영체 1	경영체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참여농가수	호
	경영 면적	ha	공동농작업 종류 및 면적	작업명	ha
				작업명	ha
				작업명	ha
시설장비기계 보유현황	육묘장	동(m ²),	광역방제기	대, 무인헬기 대	
		트랙터 대,	이앙기 대,	콤바인 대	
들녘 경영체 2	들녘경영체 1과 동일하게 작성				

2. 사업계획

가. 공동 경영부문 사업계획(비용절감 부문)

□ 공동 농작업 방안

- 농작업내용 : 육묘, 경운·정지, 이앙(과종), 시비, 병해충방제, 물관리, 수확, 건조·자장, 출하, 기타 등
- 들녘경영체가 공동 농작업 면적, 향후 3년내 계획 및 추진방안
 - () 작업 : 현 공동작업 면적(_____ha), 계획면적(_____ha)
 - () 작업 : 현 공동작업 면적(_____ha), 계획면적(_____ha)
 - () 작업 : 현 공동작업 면적(_____ha), 계획면적(_____ha)
 - 각 공동작업별 공동작업방안
- 들녘경영체가 공동 농작업료 책정 계획
 - () 작업 : 인근 지역 농작업료(_____원/300평), 계획(_____원/300평)
 - () 작업 : 인근 지역 농작업료(_____원/300평), 계획(_____원/300평)
 - () 작업 : 인근 지역 농작업료(_____원/300평), 계획(_____원/300평)
- 들녘경영체가 공동 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방안
 -

□ 농기계 소유 및 처분 및 확보 방안

- 들녘경영체가 보유한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현황과 부족한 농기계의 추가확보방안과 과잉 농기계 처분방안
- 들녘경영체 참여농가가 소유한 농기계의 소유현황, 3년이내 처분, 확보계획
 - 트랙터
 - * 현재 보유대수(주요 마력수별 _____대수), 처분대수(_____), 확보대수(_____)
 - * 처분 및 확보방안 : (_____)
 - 이앙기
 - * 현재 보유대수(6조, 8조별 _____소유 _____대수), 처분대수(_____), 확보대수(_____)
 - * 처분 및 확보방안 : (_____)
 - 콤바인
 - * 현재 보유대수(3조,4조,5조, 6조별 _____소유 _____대수), 처분대수(_____), 확보대수(_____)
 - * 처분 및 확보방안 : (_____)

들녘경영체 성과 조사방법 분석

□ 시설장비 확보 방안

- 들녘경영체가 보유한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현황과 부족한 시설장비의 추가확보방안
- 들녘경영체 참여농가가 소유한 시설장비의 소유현황, 3년 이내 확보계획
 - 공동육묘장
 - * 현재 보유현황(동, m²), 확보계획(년 동, m²)
 - * 확보방안 : ()
 - 광역살포기
 - * 현재 보유현황(기종, 대), 확보대수(년, 기종, 대)
 - * 확보방안 : ()
 - 건조시설
 - * 현재 현황(), 확보계획()
 - * 확보방안 : ()
 - 건조시설
 - * 현재 현황(), 확보계획()
 - * 확보방안 : ()
 - 기타 시설장비
 - * 현재 현황(), 확보계획()
 - * 확보방안 : ()
- 들녘경영체 공동소유 시설장비 구입시 필요한 자금 확보방안
 - 들녘경영체 운영비로 충당할 것인지?, 참여농가별로 각각 각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제시

□ 인력확보 및 이용방안

- 공동 농작업에 필요한 인부 확보방안
 - 예를 들면 농협 직원 활용, 농작업 대행 농업인에게 노임 지급 또는 임시노동자 고용 등 상세방안
- 공동 농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잉여 노동력(예를 들면 고령농 등)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 예를 들면 공동육묘, 공동방제 등에 의한 잉여노동력을 타작물 생산에 투입 혹은 6차산업화에 투입 등 잉여노동력의 상세 이용방안 기재

나. 고품질쌀 및 농산물생산

품목별 계약재배 면적 및 품종

- 계약재배 품목, 품종, 품종별 계약재배 면적
- 계약재배 대상 RPC, 농협, 업체 등 기재
- ※ 계약재배 약정체결서 첨부

품목별 품질기준 및 생산지도

- 품질기준
 - (질소함량·품종순도 등 품질기준 및 품질기준에 맞는 벼 등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재배 방법, 품질 기준 준수여부 확인방법)
- 생산지도
 - 품질기준에 맞는 벼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지도 방안
- 제재사항
 - 품질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

다. 자금 운영 계획

들녘경영체 사업 추진시 필요한 자부담 부문 확보방안

- 들녘경영체 운영비로 충당할 것인지?, 참여농가별로 각각 각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제시

농가의 공동농작업 비용 처리 방법

- 육묘, 방제 등 농작업을 대행해 줄 경우 해당 위탁 농업인은 이에 대한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납부하는가? 방법 등 기재

-

*

농가로부터 받은 농작업료 및 이익금 처리 방법

- 농작위탁 농업인으로부터 받은 농작업료 관리방안(누가, 어떻게, 보고 등)
- 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합원(주주)와 참여농가에 보고방안
- 들녘경영체에서 공동농작업으로 창출된 이익금 처리방안

(2) 교육·컨설팅 지원 들녘경영체 평가항목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점수
1. 들녘규모 (30)	15	○ 참여 농지면적이 50ha 5점, 50ha 추가마다 5점 가점 (최대 20점)	
	15	○ 공동농작업 참여 농업인수가 25명 5점, 25명당 5점 가점 (최대 20점)	
2. 공동농작업 규모(40)	20	○ 광역방제기 또는 무인항공방제기 보유(개소당 10점), 임차(개소당 5)	
	10	○ 육묘장(661㎡, 200평 기준) 1동 5점, 2동 이상 10점	
	10	○ 신청자 보유 농기계(트랙터·이앙기·콤바인) 대수당 2점 * 법인명의로 면세유를 받는 농기계 또는 법인명의로 용자 구입한 농기계이거나 농협직영 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농기계에 한하여 인정	
3. 기타(5)	15	○ 들녘경영체가 GAP 농산물 생산단지인 경우 ○ 들녘경영체가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도 생산하는 경우 ○ 수탁형 계약재배사업 참여 경영체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5점 부여, 기타 항목 모두에 해당 하더라도 5점만 부여	
4. 신청자 조직 형태(10)	10	○ 사업자의 조직형태에 따라 배점 - 농업법인 10점, RPC 8점, 농협 6점	
5. 시도지사 평가점수(5)	5	○ 시도별 신청자 수를 감안, 시·도 재량 판단에 따라 5단계 로 강제배분(상위 20%는 5점, 이후 20%마다 1점씩 차감) * 배분없이 점수를 부여할 경우, 1점 부여 * 신청자 수가 5단계 배분이 불가능할 경우, 최고 5점부터 등급 당 1점씩 차감하여 부여	
합계	100점		

(3)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서류평가
- 평가위원 : 들녘경영체 사업추진 T/F팀에서 결정

나. 2, 3단계 들녘경영체 선정 평가방법

(1) 사업계획서 작성내용

(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신청서 (예시)

신청자	경영체명		설립년도		
	대표자명		교육컨설팅	총지원년도 년	
	휴대전화		지원내역	총지원액 백만원	
	주소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RPC, 농협			
	연계조직 (또는 업체)	* RPC의 경우 연계된 조직가입 * 비RPC는 연계된 조직과 RPC 모두 가입			
신청내역	신청단계	1단계 들녘경영체(), 2단계 들녘경영체(), 3단계 들녘경영체()			
	신청유형	쌀중심 들녘경영체() 논이모작유형 들녘경영체(), 쌀+밭작물 들녘경영체()			
	사업량	들녘경영체 __ 개소, 참여농가수 __ 호, 경영면적 __ ha			
	재원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시설·장비	시설·장비명			
		구입액			(백만원)
교육·컨설팅	계	교육	컨설팅	운영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p>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서 내용 삼입)</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2. 들녘경영체와 RPC간와 신청연도 계약재배 체결서 3. 들녘 항공사진(참여 농지 구분 표시) 4. 법인등록증(농업법인에 한함)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시설·장비 지원에 한함) * 통장사본은 통장인감으로 원본대조 날인하여 제출 6. 사업자 선정 평가표(교육·컨설팅 지원에 한함)</p>					

(나) 사업계획서 내용

○○법인(RPC·농협) 들녘경영체 기본현황

1. 신청자 현황

신청자	총 경영면적	논 (ha), 밭 (), 과수원 ()			
	참여농가수	호	법인의 경우 조합원수	명	
	경영체 참여 총 시설장비 기계보유현황	육묘장	동(m ²),	광역방제기	대, 무인헬기 대
			트랙터_____대,	이앙기_____대,	콤바인_____대
	시설장비 임대현황	광역방제기 대, 무인헬기 대, 기타 대			
	경영체 전체 주요 품목 재배면적 및 사육현황	품목명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ha) 사육두수(두, 수)	계약재배현황
	계약재배 대상사업체	RPC 혹은 농협명, 업체명			
		업체 소재지		()시 ()면 () 리	
대상사업체 사업량		연간 가공량		톤	
		연간 판매액		백만원	
대상사업체 주요 생산품목 및 브랜드		품목명	브랜드명		
경영체 자체 가공사업내용	가공품명	연간 생산량	연간 판매액		
		톤	백만원		
		톤	백만원		
들녘 경영체 1	경영체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조직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참여농가수	호
	경영 면적	ha	공동농작업 종류 및 면적	작업명	ha
				작업명	ha
				작업명	ha
시설장비기계 보유현황	육묘장	동(m ²),	광역방제기	대, 무인헬기 대	
		트랙터 대,	이앙기 대,	콤바인 대	
들녘 경영체 2	들녘경영체 1과 동일하게 작성				

2. 사업계획서

2-1 현황

가. 들녘경영체 소재 시군에 대해 작성

- 지역 : (시·도) (시·군)
- 농가수, 농가인구 및 주요 특화품목 현황

구분	농가수 (호)	농가인구 (명)	주요 작물 재배면적 및 가축 사육두수						
			()품목		()품목		()품목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당해 년도									
최근 증감 현황									

나.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에 대해 작성(개략적으로 작성)

- 지역 : (시·도) (시·군)
- 농가수, 농가인구 및 주요 특화품목 현황

구분	농가수 (호)	농가인구 (명)	주요 작물 재배면적 및 가축 사육두수						
			()품목		()품목		()품목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당해 년도									
최근 증감 현황									

- GAP 실천 농가수 및 면적 : 호, ha
 - 품목별
-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수 및 면적 : 호, ha
 - 품목별
- 농업관련 농업법인체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 개
 - 품목별

다. 사업신청 들녘경영체 현황

○ 들녘경영체(법인 등) 소재지 : _____시·도 _____시·군 _____읍면동 _____리

○ 들녘경영체의 법인 결성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 법인 결성전 조직체 결성여부 :

* _____년 작목반 조직

* _____년 연구회 조직 등

○ 들녘경영체 자체 사무실 소유여부

- 소유시 : (건물 _____평)

(1)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현황

○ (농업법인의 경우) 들녘경영체 임원 및 참여 조합원 현황

- 임원수 :

- 조합원수 : _____명

- 조합원 자격조건

*

- 조직도 작성 : 부서별 조직구성 현황

*

*

○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 현황

연령별 현황	농가수	논 경영면적	농가수	1인가족 농가수
30대		0.5ha. 미만		호
40대		0.5~1.0ha		
50대		1.0~2.0ha		
60대		2.0~3.0ha		
70대		3.0~5.0ha		
80대 이상		5ha이상		

○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리스트

- 주소, 성명, 품목별 재배면적, 지적번호, 들녘경영체 임원여부 등

- 별도자료 첨부

들녘명	들녘 면적 (ha)	들녘경영체 참여 면적 (ha)	비율 (%)	들녘 전체 농가수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수	비율 (%)	계약재배		들녘경영체 관리규약 유무
							면적	생산량	
○○들 (들녘소개)									

* 2개 이상 들녘일 경우 들녘별로 구분 작성

- 들녘경영체(법인 등) 참여 면적의 재배품종수 및 재배품종 :

- 들녘경영체(법인 등) 참여 농가 중 친환경농업실천농가수 및 재배

면적 : 호, ha(전체대비 비율 %)

* 2개 이상 들녘일 경우 들녘별로 구분 작성

* 계약재배 : 계약재배 RPC와 서면약정 기준

* 들녘경영체(법인 등) 관리규약 : 별도첨부

* 들녘전체 면적 및 들녘경영체 참여 면적에 대한 지적도 표시 : 별도 첨부

(2)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농기계 및 시설장비 현황

○ 사업신청 들녘경영체(법인 등) 시설·장비 보유현황

- 농기계·장비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계	6조식	8조식	계	3조식	4조식	5조식	6조식	계	~49HP	50~79	80~99	100HP~

- 생산시설 등

자동화공동육묘장	자연적응 녹화온실	자체채종포	상온통풍 종자건조저장시설	기타
동, m ²	동, m ²	평	동, 톤	

공동방제기	공동균평기	산물벼 이송 컨테이너	공동직파기	기타

- 수확 후 관리시설

건조시설		저장시설		
건조기	건조능력	계	상온저장	저온저장
대	톤	동, 톤	동, 톤	동, 톤

(3) 들녘경영체 품목별 계약재배 현황

○ 들녘경영체의 품목별 계약재배 현황

품목	계약재배 대상업체	계약재배 면적(ha)	계약재배 참여 농가수	재배 품종수	재배관리 기록장 및 매뉴얼 유무	계약재배 약관유무	재배기술지도		
							RPC 농협	농업 기술센터 협조	기타
	○○RPC								
	○○농협								
	○○업체								

- 재배기술지도 : 해당“란”에 표시하고 증빙자료 첨부
- 재배관리 기록장, 재배관리 매뉴얼, 계약재배약관 증빙자료 첨부

○ 계약재배 대상업체(RPC, 농협, 업체) 현황

* 들녘경영체와 대상업체와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작성필요

- 대상업체명 : _____
- 대상업체 소재지 : _____ 시도 _____ 시군 _____ 읍면동 _____ 리
- 들녘경영체 계약재배 현황

품목	계약재배 면적(ha)	GAP 인증비율	친환경 인증비율	매입량 (톤)	계약재배		
					농가수	약관여부	
					호	개소	

- 계약재배 물량을 품질·품종별 구분하여 처리(건조+저장)방식을 해당 “란”에 기재
- 대상업체 주요개황

	브랜드명	매입량	들녘경영체 비율	출하량
대표브랜드		M/T	%	
일반브랜드				

2-2 들녘경영체의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가. 주요항목 및 추진(경영개선)목표

구분	사업 추진년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비고
1. 공동작업 현황						
① 공동육묘(%)						
- 10a당 종자사용량(kg)						
- 품종수						
- 주요 품종명						
② 공동병충해방제(%)						
③ 공동시비관리(%)						
- 유기질비료 시비 비율(%)						
④ 10a당 질소질비료사용량(kg)						
2. 주요 농기계 공동농작업						
① 트랙터 경운·정지작업(%)						
② 이앙기 이앙작업(%)						
③ 콤바인 수확작업(%)						
3. 잉여 농기계감축(대)						
① 트랙터 (대)						
② 이앙기 (대)						
③ 콤바인 (대)						
4. 농가조직화						
① 조합원수 확대계획						
② 전체들녘 농가수 대비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수 비율(%)						
③ 전체들녘 면적대비 들녘경영체 참여면적 비율(%)						
5. 농산물 계약재배 비율(%)						
① 벼 RPC계약재배 면적비율						
② 타 작물()						
③ 타 작물()						
6. 기타 교육 등 계획						
① 들녘경영체 교육참석실적(명)						
② 들녘경영체운영 협의회 개최(회)						

나. 들녘경영체의 재배관리 목표

구분	사업 추진년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비고
1. 벼 단백질 함량(%)						
2. 주요 품목별 10a당 생산단수(kg)						
① 벼						
②						
③						
3. 품목별 고품질 농산물 생산 계획						
① GAP인증 비율						
- 품목 ()						
- 품목 ()						
② 친환경인증재배 면적비율(%)						
- 품목 ()						
4. 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면적(ha)						
① 밀, 보리 등 식량작물						
② 청보리, IRG 등 사료작물						
③ 유채 등 바이오작물						
④ 기타 원예작물						
5. 밭작물						
① 콩 등 식량작물						
② 채소류(품목 기재)						
- 품목						
③ 과수류(품목 기재)						
- 품목						

다.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항목별로 상세히 작성하고 근거자료 첨부

- ① 들녘경영체 결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② 들녘경영체 관리 규약 제정 및 운영실적 및 계획
- ③ 들녘경영체 재배관리기록장, 재배관리 매뉴얼, 계약재배 약관 제정 및 운영 실적 및 계획
- ④ 농가조직화,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협의회 개최, 컨설팅 등 실천계획
- ⑤ 들녘경영체 대표자의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체 운영 계획

- ⑥ 들녘경영체의 고품질쌀 브랜드경영체(RPC포함)와 계약재배 추진 실적 및 계획
- ⑦ 들녘경영체 지원 및 컨설팅을 위한 시·군단위 「들녘경영체」육성 협의회 구성 운영 실적 및 계획
- ⑧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 교육·홍보를 위한 자체 지원실적 및 계획(지자체, 농협, RPC 등)
- ⑨ 들녘경영체(법인 등)에 육성을 위한 지자체 등 자체 지원실적 및 계획(지자체, 농협, RPC 등)

2-3 세부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별 계획

○ 총괄표(예시)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 시설 - 자동화 공동육묘장 - 자연적응 녹화온실등 - 공동작업을 위한 시설						
○ 장비·기계 - 광역살포기 - 무인헬기 - 공동작업을 위한 시설						
○ 운영비 ○ 교육컨설팅비						

○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 세부사업별 추진 일정

들녘경영체 성과 조사방법 분석

나. 사업비 확보 계획

-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다. 사후관리 체계

- 사업평가/ Feedback / 사후관리 계획
 - * 자체평가지표, Feedback 계획서 등
- 기타 관리계획 등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1부 및 사본 10부

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사업시행 지침서의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 자료인용시 출처 명시
- 사업계획서 분량은 제한 없으나 최대한 간소화
- 모든 첨부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목차를 작성

3. 신청서 규격

- 신청서 규격 : A4
 - 본문 12포인트, 장평 100, 줄 간격 160, 휴면명조
 -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5, 오른쪽 25, 머리말 15, 꼬리말 15

【사업계획서에 첨부해야 할 자료】

- ① 시·군 단위 들녘경영체 육성 계획(5개년)
- ② 시·도, 시·군의 사업계획서 검토 자료(의견, 우선순위 등 기재)
- ③ 지방비·자부담금 확보 증빙자료
 - 지방비 : 지자체 기본 방침
 - 자부담금 확보 증빙 : 법인 또는 법인대표자명의 예금 평잔 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 농업법인이 아닌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명의 예금 평잔확인서, 출자관련 규약 등 관련 증빙자료
- ④ 들녘경영체 사업참여 동의서
 - 농업법인 : 법인이사회(또는 참여 농업인 전체회의)의사록, 동의서 등
 - 농업법인이외 : 참여 농업인 전체회의 의사록 동의서(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의 2/3이

상 동의) 등 증빙자료

- ⑤ 들녘경영체의 농가조직화 근거자료(관리규약, 참여 농가리스트, 공동재배 지침 등)
- ⑥ 들녘경영체와 계약재배 고품질쌀 브랜드 경영체(RPC포함)간 서면 약정서 및 계약재배 약관
- ⑦ 들녘경영체의 대표자(CEO)선발 및 경력 근거 자료
- ⑧ 지자체의 사업평가지표 및 Feedback 계획 등(내부자료)
- ⑨ 사업신청 들녘경영체의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농가조직체의 경우 농가조직체 관리규약 또는 조례 사본 1부)

(2) 평가항목

(가) 평가항목 및 선정이유

평가항목		점수	지표 선정이유	
대분류	중분류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1-1.사업목표 명확성	6	경영체의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명확성 파악	
	1-2.사업계획 적정성	6		
	1-3.지자체 지원 및 자담조달 계획과 지원능력	4	시군단위 쌀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정도와 실현가능성정도를 측정	
	1-4.RPC와 계약재배의 적정성	4	고품질 쌀 생산과 연계	
2. 고품질쌀 농산물 생산 및 여건 (25점)	2-1.품종통일 및 종자확보 정도	5	고품질쌀 생산 가능성 측정	
	2-2.재배관리 및 표준화 정도	5		
	2-3.지력증진실천의지	4	비료비 절감과 고품질쌀 생산가능성	
	2-4.축분지원과 정도	4		
	2-5.계약재배 RPC의 수확후 관리 노력정도	4		RPC의 고품질쌀 생산가능성
	2-6.친환경농업 실천의지	3		고품질친환경쌀 생산가능성
합계		100점		

들녘경영체 성과 조사방법 분석

평가항목		점수	지표 선정이유
대분류	중분류		
3. 비용절감 체계구축 및 여건 (25점)	3-1.농기계 공동 이용	5	농기계의 적정소유와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적정성을 파악 농기계비용절감과 경영개선 가능성 측정
	3-2.농기계 적정보유정도 및 증·감축 계획	4	
	3-3.공동 농작업 정도	5	비용절감과 조직화의 정도를 측정
	3-4.직파재배 정도	4	이앙시간에서의 노동시간절감 가능성을 측정
	3-5.공동육묘 정도	4	비용절감과 조직화의 정도를 측정
	3-6.겨울철 논활용 정도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쌀 토지용역비절감과 경영체의 소득증대 가능성 측정
4. 규모화 조직화 단지화 체계구축 정도 (30점)	4-1.법인체 구성	6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측정
	4-2.집단화 단지화 정도	5	사업의 목표달성 가능성 측정
	4-3.쌀전업농 구성비율	4	경영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측정
	4-4.단지면적 농가수 적 정도	6	사업목표의 달성가능성을 측정
	4-5.전문인력 확보 및 경영여건	5	경영체의 조직적·효율적인 운영을 측정
	4-6.조직 구성체계 정도	4	
합계		100점	

(나)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심사·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 심사 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1-1. 사업목표의 명확성	6	5	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녘경영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성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 여부 ○ 들녘경영체 육성계획목표(5개년)은 실현가능하게 수립여부 ○ 들녘경영체 육성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이 수립여부 	
	1-2. 사업계획의 적정성	6	5	4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녘경영체 재배관리 목표는 실현가능한가? ○ 들녘경영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이 적정여부 ○ 들녘경영체의 사업추진 의지여부 ○ 시·군단위 들녘경영체 육성협의회가 구성여부 	
	1-3. 지자체 지원 및 자담조달 계획과 지원능력	4	3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 ○ 지자체의 들녘경영체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실적)은 적정여부 ○ 연차별 지방비 및 자부담 계획여부 	
	1-4. RPC와 계약재배의 적정성	4	3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녘경영체와 RPC와 계약재배 서면약정(의무화)여부, 약정적정성 ○ 들녘경영체와 RPC와 계약재배 여부 및 계약 재배비율에 따라 차등배점 	
2. 고품질쌀 생산 및 여건 (25점)	2-1. 품종통일 및 종자확보정도	5	4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녘경영체의 재배품종수 ○ 들녘경영체의 종자확보 정도(정부보급종 자체 채종포)에 따라 차등 배점 	
	2-2. 재배관리 및 표준화 정도	5	4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녘경영체의 재배관리 규약(메뉴얼)이 있는지 여부와 재배관리 규약(메뉴얼) 적정성 정도에 따라 차등배점 	
	2-3. 지력증진 실천 의지	4	3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력증진 노력에 따른 차등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비작물 재배여부 및 정도 - 규산, 유기질 비료 사용여부, 정도 - 벧짚환원여부 및 정도 	
	2-4. 축분지원과 정도	4	3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분(대가축,양돈,양계)자원 이용여부 및 이용정도에 따라 차등배점 	
	2-5. 계약재배 RPC수확후 관리노력정도	4	3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녘경영체와 계약재배 체결한 RPC의 수확후 관리(건조·저장·가공)능력 및 정도에 따라 차등배점 	
	2-6.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3	2	1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녘경영체의 재배면적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점 	

들녘경영체 성과 조사방법 분석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3. 비용절감 체계구축 및 여건 (25점)	3-1. 농기계 공동 이용	5	4	3	2	○ 주요농작업(경운·이앙·수확)에서 농기계 공동 이용 체계 구축여부 및 적정에 따라 차등 배점	
	3-2. 농기계 적정 보유정도 및 증·감축 계획	4	3	2	1	○ 들녘경영체의 농기계 보유적정성 - 경영면적에 따라 적정보유 정도를 측정하여 차등배점 ○ 들녘경영체의 농기계 증·감축 계획의 수립여부 및 계획수립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차등배점	
	3-3. 공동 농작업 정도	5	4	3	2	○ 공동농작업이 가능한 작업의 매뉴얼작성 여부와 매뉴얼에 따른 공동작업정도에 따라 차등 배점	
	3-4. 직파재배정도	4	3	2	1	○ 들녘경영체의 직파재배 면적의 비율에 따라 차등배점	
	3-5. 공동육묘정도	4	3	2	1	○ 들녘경영체의 공동육묘 비율에 따라 차등배점	
	3-6. 겨울철 논 활용 정도	4	3	2	1	○ 여름철 논 이용후 겨울철 논 이모작 활용 비율에 따라 차등배점	
4. 규모화 조직화 단지화 체계구축 정도 (30점)	4-1. 법인체 구성	6	4	2	0	○ 들녘경영체의 법인체 구성등 조직화가 적정 여부	
	4-2. 집단화 단지화 정도	5	4	3	2	○ 들녘경영체 경영면적이 집단화, 단지화가 적정여부 - 집단화, 단지화 정도에 따라 차등배점 - 들녘전체 면적대비 들녘경영체 참여 면적의 농지 규모화 사업 면적 비율에 따라 차등 배점	
	4-3. 쌀전업농 구성 비율	4	3	2	0	○ 들녘전체 농가수 대비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비율에 따라 차등 배점	
	4-4. 단지면적 농가수 적정도	6	5	4	3	○ 들녘전체 면적대비 들녘경영체 단지면적 비율, 들녘전체 농가수 대비,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비율에 따라 차등 배점	
	4-5. 전문인력 확보 및 경영여건	5	4	3	2	○ 들녘경영체의 대표자(CEO)의 사업추진 의지와 전문성이 있는가? - 참여경영체 임원, 회원들의 벼농사 CEO교육이수 정도에 따라 차등배점 ○ 들녘경영체의 관리규약 유무 및 관리규약이 적정성에 따라 차등배점	
	4-6. 조직(법인체 등)구축 체계 정도	4	3	2	1	○ 들녘경영체의 조직(법인 등)체계 인적구성의 타당성, 적정성 정도에 따라 차등 배점	
합 계		100점					

(3) 평가방법

(가) 평가단계

- 1차 평가 (서류평가)
 - 1단계 : 시도단위에서 서류평가하여 점수화
 - 2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서류평가
- 2차 평가 (현장평가)
 - 서류평가에서 합격한 들녘경영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들녘경영체 선정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 후에 점수차에 의한 지원 차등화

(나) 들녘경영체 선정평가단 구성방안

- 제1안 : 현 들녘경영체 사업추진 협의회 T/F으로 평가단 구성방안
- 제2안 : 들녘경영체 선정평가단 구성하여 평가
 - 평가단 참여 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전문가그룹, 들녘경영체 전국협의회임원 등으로 구성하여 평가단 구성
 - 구성인원 : 15명 전후로 구성

3. 들녘경영체 성과단계 평가방법

3-1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및 농산물생산비 조사항목

○ 통계청에서는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 생산비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음.

가. 농가경제조사

(1) 농가경제조사 개황

○ 농가경제조사의 목적

- 경제사회 변천에 따른 농가경제의 동향과 농업경영 실태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과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농가 지출, 노동 투입량 등 각종 농가경제지표를 생산하여 농업문제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 제공

○ 농가경제조사 연혁

- 1953년 농림부와 한국은행이 「농촌실태조사」를 합동으로 처음 실시
- 1954년 농림부가 「농촌실태조사」를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로 분리하여 실시
- 1998년 7월 1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이관
- 2011년 농어가경제조사 개선계획에 따라 조사표 및 조사지침 개편
- 2013년 표본개편(10차)과 함께 조사표 및 조사지침 개편

○ 농가경제조사 조사기간

- 조사표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조사(조사대상기간 : 1년)
- 원 부 : 매년 연초 및 연말을 기준으로 조사(년 2회, 자산변동 시에는 수시)

○ 농가경제조사의 주요 조사표

- 가구원현황
- 작물재배현황
- 가축사육현황 및 구입I판매 내역
- 수입 : 농업총수입, 농업외수입, 이전수입, 비경상수입
- 지출 : 농업지출, 농업외지출, 가계지출
- 농업노동 투입내역

표 128 농가경제조사 도별·영농형태별 표본농가수

구분	2인 이상 농가											1인 농가	표본 수
	논벼	전작	채소	특용	과수	화훼	기타	축산	2종	통합*	합계		
경기	62	16	27	12	18	28	7	34	107		311	9	320
강원	45	45	41	27	7	-	-	29	49	3	246	7	253
충북	39	29	28	28	36	4	3	28	52		247	6	253
충남	92	18	35	24	21	11	10	37	57		305	10	315
전북	80	17	42	19	24	13	3	37	46		281	9	290
전남	86	19	65	12	28	13	16	33	53		325	21	346
경북	70	14	57	16	69	3	6	36	60		331	19	350
경남	49	13	64	6	40	19	3	42	68		304	16	320
제주	-	12	26	-	66	-	-	4	39	3	150	3	153
전국	523	183	385	144	309	91	48	280	531	6	2,500	100	2,600

* 강원은 화훼+기타, 제주는 논벼+특용+화훼+기타를 통합한 층, 해당 지역의 통합된 층은 모집단 가구수가 적어 층별 표본배분이 어려우므로 통합층을 형성

(2) 농가경제조사 수익 및 비용 구성내용

(가) 농가 수입관련 구성내용

1) 농업총수입 구성내용

- 농업총수입은 농가가 당해연도 농업경영 결과 얻은 총수입으로 농산물판매수입, 생산물 중 자기소비평가액, 대동물증식액, 재고농산물 증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
- 농업총수입을 작물수입(11개 항목)과 축산수입(4개 항목), 농업잡수익(3개 항목)으로 구성됨.

표 129 농업총수입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농업총수입	작물수입(11)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채소, 특작, 과실, 화훼, 기타 농작물, 농작물 부산물
	축산수입(4)	생산된 대동물, 소동물, 축산물, 축산 부산물
	농업잡수입(3)	농업소득피해보상금, 폐농자재 판매대금 등

들녘경영체 성과 조사방법 분석

- 농업잡수입은 가격하락에 의한 보험, 작물보험에 의한 보상금과 정부의 피해보상금, 논농업변동직불금, 폐농자재 판매대금 등으로 구성됨.

표 130 농업총수입중 농업잡수입 구성 항목

항목명	내용
가격보상금 (보험)	작물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송아지 생산안정보험, 작물보험 등의 보험에 가입하여 받은 보상금
피해보상금	작물, 축산, 과수에 대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논농업 변동직불금 제외)
변동직불금	논농업 변동직불금
폐농자재 판매대금	사용한 농약병 판매대금 유기농업을 위해 구입했던 오리, 꿀벌 등 농업용 자재판매
기타	농업비용 과다지급에 따른 환불금 등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가경제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 조사 지침서], 2012, 121쪽

2) 농업외수입 구성내용

- 농업외수입은 겸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성됨

표 131 농업외소득 관련 수입 내용

항목		내용	
겸업 수입	임업	산나물, 들나물, 산야초, 나뭇가지, 버섯류, 밤, 잣, 호도, 도토리, 은행, 산딸기, 장작, 산토끼 등 (재배용 밤, 호두, 대추, 잣, 은행 포함)	
	어업	일체의 수산물 수입(해수면과 내수면 포함)	
	농산물가공업	자가생산 및 구입한 농축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한 일체의 수입(콩나물, 두부, 떡, 장류, 삼배, 과일즙, 흑염소, 개소주 등의 가공품)	
	제조업	농산물 가공을 제외한 제조업 수입 일체	
	건설업	건설업과 관련된 일체의 수입	
	농업서비스업	단일작업, 구간작업 및 전체작업을 대행받아 작업한 수입, 착유, 제분, 부화, 가축교배 등의 서비스업 수입 등 농업부대 서비스 수입	
	음식숙박업	식당 및 숙박업소 관련 수입	
	도소매업	다단계 판매수입 등 도소매업 수입	
기타 겸업	이상 소개한 겸업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관련 수입(농업부문 제외)		
사업외 수입	급여 수입	농업외임금	농사이외의 일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현금 및 현물평가액
		농업임금	다른집 농사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현금 및 급여물의 평가액
	자본 수입	농지임대료	논, 밭, 수원지 등의 농지 임대료 수입
		기타	○ 이자 및 배당 수입 ○ 유가증권 매매차익(원금 제외) ○ 기타 임대료 수입 - 시설물, 대농구, 역축, 대지 등의 임대료 수입

○ 들녘경영체와 관련된 겸업수입 내용

- 농산물가공업 : 장기적으로 들녘경영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6차산업화와 연계하여 얻어질 수 있는 수입
- 농업서비스업 : 들녘경영체에서 공동작업으로 얻어지는 수입으로 공동육묘와 공동방제에 의한 수입과, 농기계 경운·정지, 이앙, 수확 작업 등 미래 농기계 공동이용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수입

○ 들녘경영체와 관련된 사업외수입 내용

- 농업외임금 : 들녘경영체에서 6차산업화를 통하여 얻을수 있는 고령농 등 잉여노동력의 6차산업화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
- 농업임금 : 영세고령농 등 잉여노동력의 공동육묘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

3)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의 내용

- 이전소득은 농가가 비경제적인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정부가 지급하는 논농업 고정직불금, 농기계보조, 농약, 비료, 친환경보조 등 농업과 관련된 정부의 보조금은 농업부문에서 공적보조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 비경상소득은 경조수입, 사고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또는 타가구로부터 얻은 수입
- 이전수입과 비경상수입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과 관련 없이 얻어지는 수입임

표 132 이전수입과 비경상수입 구성 내용

항목		부호	내용
이전 수입	공적 보조금	농업	31 논농업 고정직불금 및 농기계보조, 농약, 비료, 친환경보조 등 농업과 관련한 정부의 보조금
		농업외	32 -공적연금 -실업수당 -산업재해보험급여 -기타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받는 경상적 또는 일정기간 동안받는 일체의 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	33 출타가족 또는 친인척 등 타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보조금	
비경상수입		41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또는 타 가구로부터 얻은 수입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등 -정부나 기타기관으로부터 농촌조사를 하고 받은 사례금 및 물품, 표본작물 배상금, 경조금 답례품 등

(나) 농업지출 관련 구성내용

- 농가경제조사에서의 농업지출관련 비목은 농산물생산비조사와 관련된 항목으로
 - 농업지출 관련비용은 크게 재료비와 노무비(노동비), 경비 등으로 구분
- 재료비는 종자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동물관리비, 사료비 등으로 구성됨
- 경비는 영농광열비, 자산수선비, 소농구구입비, 임차료, 수리시설사용료, 농작업위탁비, 조세, 부담금, 이자, 보험료, 판매자재비 등으로 구성됨

표 133 농가경제조사시 농업지출 항목

항목명		단위	내 용 예 시
재료비	종자종묘	kg	구입한 종자, 구입한 과수묘목(관상수 묘목 포함) 등 농산물의 구입한 종자와 구입한 묘
	비료비	kg	구입한 퇴비, 녹비, 계분 등 유기질비료, 질소, 인산, 칼리, 영양제 등 무기질 비료 및 석회고토 등 기타비료
	농약비	kg, ml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전착제, 발근제, 종자소독제, 성장촉진제 등 모든 농약
	동물관리비		사육중인 대소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쓴 비용, 가축의료비, 부화용종란대, 양봉비, 가축교배료, 양잠비 등
	사료비	kg	쌀겨, 밀기울, 배합사료, 콩깻묵 등의 일체의 사료구입비
	기타		비닐, 발작물의 지주대, 온상재료, 수정용별, 유기농업용 오리구입비, 영농시설물 설치에 드는 벚짚, 이엉, 새끼, 수숫대 등 일체의 농산 부산물의 평가액과 목초액, 친환경 자재 등 구입비
노무비	명	상시고용 및 임시 고용한 인부에게 지불한 현금 및 현물 노임, 급여물 등	
경비	영농광열비	kw, l	농업용으로 사용한 전기, 유류 및 윤활유 등의 구입비
	자산수선비		농업용 자산(건물, 구축물, 기계기구)의 재조달가 10%미만에 해당하는 경상수리
	소농구구입비	대	낫, 호미, 삽 등 소농구 구입비, 장화, 장갑, 우의 등 농업용 피복비
	임차료		농지, 농기계 및 농업시설(건물, 수정용 별통) 등의 임차료
	수리시설사용료		암거, 명거 등의 간단한 수리비, 양수조합비, 제방 수리 부담금 등
	농작업위탁비	m2	농사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수행한 경우의 비용
	조세		국세 및 지방세(경상적 조세) 중 농업용 세금
	부담금		이장모곡, 환경개선부담금 등
	이자		농업용으로 사용한 부채에 대한 지불이자
	기타비용		- 생산관리노동에 수반되는 교통비, 수강료, 참가료 등과 생산관리기기의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비 등 - 농 축산물 검사료, 농지분필, 합필 등기료, 측량비용, 소규모 객토비용(흙 포함), 농업용차량, 농기계상해, 농업인 안전보험료 등 농업용 소멸성 보험 등
	보험료		가축, 과수, 농작물재배보험료 등 농축산물보상관련 보험
	판매자재비		포대, 박스 등 포장재료, 기타판매용 자재 (판매수수료 및 판매 상·하차비는 농작물소득카드에서 조사)

나. 농산물 생산비조사

(1) 농산물생산비조사 조사개황

- 농산물생산비조사 목적
 - 농업경영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 농업정책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농산물생산비조사 연혁
 - 1953년 : 농림부와 한국은행이 합동으로 「농촌실태조사」를 실시
 - 1954년 농림부가 「농촌실태조사」를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로 분리하여 실시
 - 1962년 : 통계작성 승인(농림부)
 - 1998년 7월 1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이관
 - 2011년 농어가경제조사 개선계획에 따라 조사표 및 조사지침 개편
 - 2013년 표본개편(10차)과 함께 조사표 및 조사지침 개편
- 농산물생산비조사 조사대상
 - 매년 전국의 2,600개 표본농가(농가경제표본농가) 중 조사대상작물을 재배규모 층별로 비례배분한 농가(1,868개)
 - 논벼 : 1,980㎡이상 재배하는 농가
 - 콩 : 990㎡이상 재배하는 농가
 - 마늘·고추 : 660㎡이상 재배하는 농가
 - 양과 : 330㎡이상 재배하는 농가
- 농산물생산비조사 조사기간
 - 해당작물의 전년산 수확이후부터 당년산 수확기까지 1년간
 - 논벼·고추·콩 : 당년 1. 1 ~ 당년 12. 31
 - 마늘·양과 : 전년 8. 1~ 당년 7. 31
- 농산물생산비조사 조사내용 및 발표자료
 - 재배면적, 생산량, 투입자재 및 노동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 10a당 및 일정규격(kg, 쌀 정곡80kg, 양과 20kg당)당 생산비와 각종 수익성 지표를 작성하여 공표
- 논벼 물적 조사내용
 - 경영개황 : 조사농가수, 경지면적(논, 밭, 자작지, 임차지), 논벼 재배면적(자작지, 임차지), 주산물 수량, 주산물평가액
 - 논벼 주요 투입물량 및 시간 : 종자·종묘량, 무기질비료량(질소질, 요소, 유안, 인산

들녘경영체 성과 조사방법 분석

질, 중과석, 용성인비, 가리질, 염화가리, 복합비료, 토양개량제, 석회질, 규산질, 기타무기질), 유기질(퇴비구, 녹비, 산야초 등), 노동력 투입시간(자가, 고용, 남자, 여자), 동력사용시간, 축력사용시간

- 작업별 논벼 노동투입시간 : 묘판 및 온상, 파종, 기경밧정지, 이앙, 관리, 시비, 제초, 병충해방제, 수확, 운반, 탈곡, 콤바인, 건조, 생산관리, 기타

(2) 농산물생산비조사 수익 및 비용분석내용

(가) 농산물 수입관련 조사내용

- 통계청 수익 관련자료 항목
 - 총수입, 순수익, 소득, 생산량(주산물, 부산물)

(나) 농산물 투입관련 조사내용

- 농산물생산비조사에서의 투입내역은 크게 재료비와 노무비(노동비), 경비 등으로 구분
 - 재료비는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기타제재료비 등으로 구성되며,
 - 노무비는 노동비로 구성되고,
 - 경비는 영농광열비, 수리유지비, 소농구비, 임차료, 위탁영농비, 조세 및 기타, 생산관리비, 감가상각비, 축력비 등으로 구성됨
- 생산비 = 직접생산비 + 간접생산비
 - 직접생산비 : 종묘, 비료, 농약, 자재 등의 중간투입재와 노동력 투입은 특정 농산물에 비용을 직접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생산비(直接生産費)라 함
 - * 직접생산비 = 종묘비+비료비+농약비+영농광열비+기타재료비+농구비+영농시설비+수리(水利)비+노동비+위탁영농비+생산관리비+기타 비용
 - 간접생산비 : 토지의 사용 대가인 토지용역비(地代)와 투입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인 자본용역비(資本(利子))는 특정 농산물에 비용을 직접 부과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우회적 방법으로 산출하여 생산원가에 포함하기 때문에 간접생산비(間接生産費)라 함
 - * 간접생산비 = 토지용역비 + 자본용역비
- 경영비란 농산물생산비 조사에 있어서의 경영비는 생산비 가운데 실제로 지불되지 않는 노동(가족노동력), 자본(고정자본, 유동자본), 토지(자작지)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생산에 투입된 모든 현금 및 현물지출과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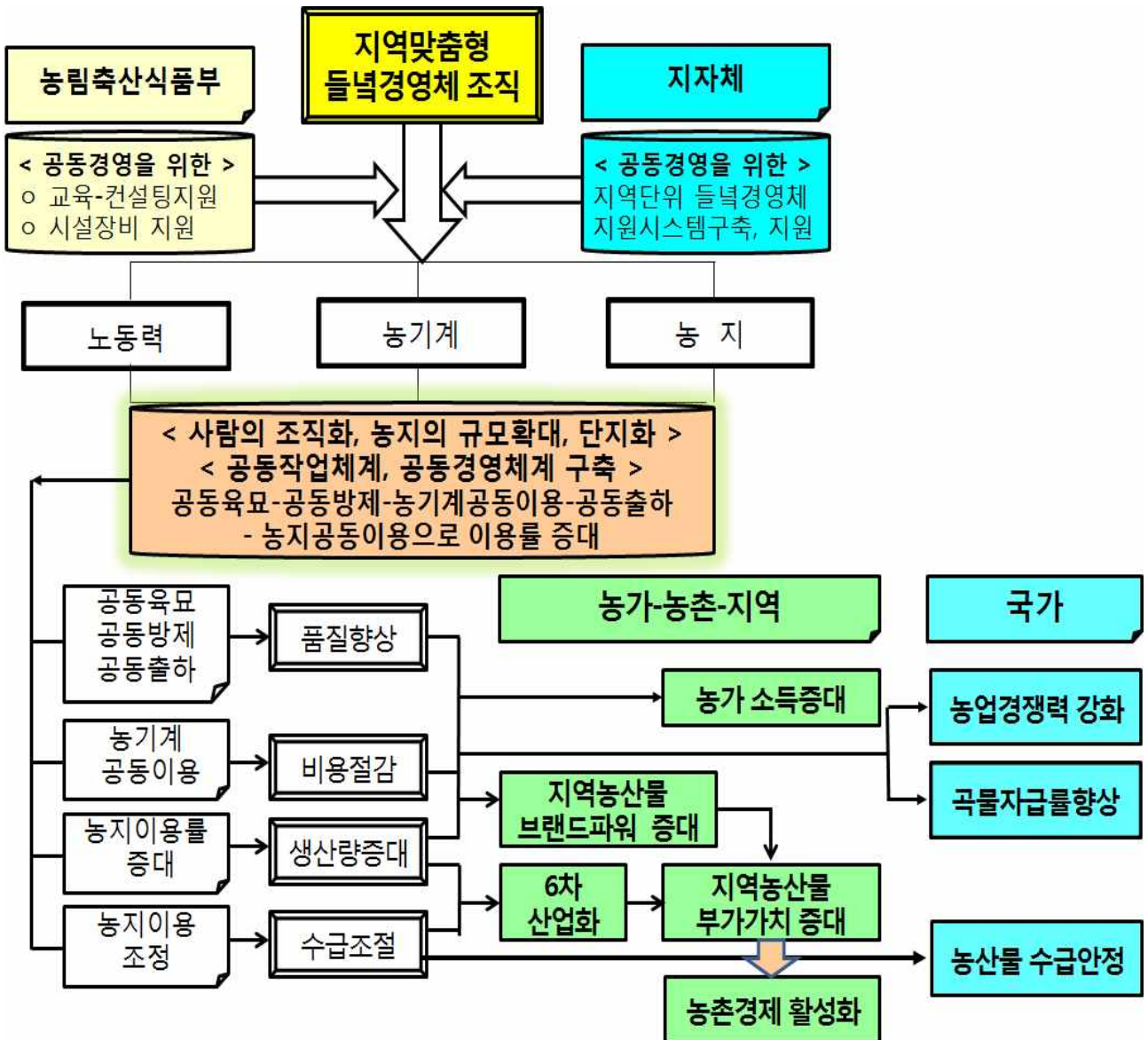
표 134 농산물생산비 투입내역

생산요소 및 비목명		단위	품목명	내용의 예시
재료비	종묘비	kg, g	종자(국내산)	g : 고추, 양파
		kg	종자(국외산)	kg : 벼, 콩, 마늘
		주	종묘(국내산)	자급종묘는 종자 kg, 구입종묘는 모종수로 조사,
		주	종묘(국외산)	단 벼는 종자 kg으로 조사
	비료비	kg	질소질 비료	요소, 유안, 염화암모늄
		kg	인산질 비료	중과석, 용성인비, 용과린 등
		kg	가리질 비료	염화가리, 황산가리 등
		kg	복합비료	21-17-17, 17-21-17 등 (무기질 3요소 성분, 유기질 등이 2가지 이상 혼합된 배합비료)
		kg	토지개량제	석회질비료, 규산질 비료 등
		kg	기타 무기질 비료	영양제 등
		kg	유기질	퇴구비, 녹비, 산야초, 초목회, 분뇨, 기타 등
	농약비	kg	입·분제	살균·살충 입·분제 등
		ml	유액·수화제	살균·살충 유액·수화제 등
	기타재료비	m ²	비닐	
		m ²	부직포	
		kg	상토	
		개	지주	고추지주 등
			친환경농업자재	오리, 우렁이, 키토산, 목초액 등
			기타	PP포대 등
	노무비	노동비	시간	고용노동(남)
		시간	고용노동(여)	
경비	영농광열비	ℓ	경 유	휘 발 유, 등 유
		kW	영농전기로	
			기 타	
	수리유지비			생산관리기기, 영농시설, 수리구축, 대농구수선비,
	소농구비			구입소농구, 자급소농구, 임차소농구
	임차료			농지임차료, 대농구임차료, 영농시설물임차료, 수리시설임차료, 생산관리기기
	위탁영농비	m ²	구간위탁1	종자침종에서 이앙까지
		m ²	구간위탁2	묘관설치작업~이앙작업까 지
		m ²	구간위탁3	콤버인수확에서 건조작업까지
		m ²	구간위탁4	기타 위탁작업
		m ²	묘상작업, 본논 준비, 파종작업, 이식작업, 본논관리, 파종작업, 비료주기, 체초작업, 병해충작업, 수확작업, 수확물운반, 건조작업	
		m ² ,kg	기타직접노동	
	조세 및 기타			토지세, 건물세,자동차 등의 세금,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 작물재배보험료, 기타
	생산관리비			협회비, 집회참가비, 영농교육비, 정보통신, 사무용품비, 기타비용,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축력비	시간	축력비		

3-2 들녘경영체 육성효과 흐름도

- 지역의 다양한 농가계층이 들녘을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농지를 규모화, 단지화하여,
 - 경영체의 경영규모가 확대되고,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판로개척이 이루어짐.
 -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지원을 통해 비용이 절감됨과 동시에 영농편의성이 제고됨.
 - 지역단위에서는 지역브랜드쌀 부가가치가 증대되고, 공동체의식이 확대됨

그림 82 들녘경영체 육성효과 흐름도



3-3 들녘경영체 성과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가. 평가항목

(1) 농가경제조사 및 농산물생산비조사에서 분석항목

- 농가경제조사에서 농가소득 구성항목은 크게
 - 농업소득,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됨

표 135 농가경제조사에 의한 농가소득 구성항목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농가소득	경상소득	농가순소득	①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② 겸업소득
				③ 사업외소득
		④ 이전소득		
	⑤ 비경상소득			

- 농가소득 구성항목별 의미와 계산식은 아래 표와 같음.
 - 특히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겸업소득, 사업외소득)이 들녘경영체와 관계된 소득임.

표 136 농가소득 구성항목별 의미와 계산식

구분		계산식과 의미	
		계산식	의미
①농업소득		농업총수입-농업경영비	○농업소득 : 농가가 당해연도 농업생산활동의 최종성과, 투입된 생산요소의 총보수 - 농업총수입 : 농가가 당해연도 농업경영 결과 얻은 총수입 - 농업경영비 : 농업경영에 투입된 일체의 비용
농업외소득	②겸업소득	겸업수입-겸업비용	○농가가 농업외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
	③사업외소득	사업외수입-사업외비용	○농가가 사업외의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④이전소득			○ 농가가 비경제적인 활동으로 얻은 수입 - 공적보조금 * 농업 : 논농업 고정직불금 및 농기계보조, 농약, 비료, 친환경보조 등 농업과 관련한 정부의 보조금 * 농업외 : - 사적보조금 :
⑤비경상소득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소득

들녘경영체 성과 조사방법 분석

- 농산물생산비에서는 비용관련 항목
 - 총생산비 :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를 합한 총비용
 -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
 - 경영비 : 실제 지불한 비용
- 농산물생산비에서는 비용관련 항목
 - 총수입 : 단위면적당 생산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것
 - 소득 :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뺀 것

표 137 쌀 생산비조사에서 수입항목과 비목항목

수입 항목	생산비 항목	
총수입 (A)	(1) 직접생산비	(2) 간접생산비
B 생산비 (B)	① 종묘비	⑫토지용역비
C 내급비 (C)	○ 자급	⑫-1 자가
순수익 (D=A-B)	○ 구입	⑫-2 임차
경영비 (E)	② 비료비	⑬자본용역비
소 득 (F=A-E)	○ 무기질	○ 유동자본
주산물 (kg)	○ 유기질(자급, 구입)	○ 고정자본
부산물 (kg)	③ 농약비	
경영비=①+②+③+④+⑤⑥+ ⑦+(⑧-2)+⑨+⑩+⑪ +(⑫-2)	④ 기타재료비(자급, 구입)	
	⑤ 영농광열비	부산물 생산비
	⑥ 농구비	부산물공제생산비
	○ 대농구	
	- 감가상각비	
	- 수리유지임차료	
	○ 소농구(자급, 구입)	
	○ 축력비(자가, 차용)	
	⑦ 영농시설비	
	⑦ 수리(水利)비	
	⑧노동비	
	⑧-1 자가	
	⑧-2 고용	
	⑨위탁영농비	
	⑩기타비용	
	⑪생산관리비	

(2) 농가경제조사 및 농산물생산비조사에서 농업경영분석지표

○ 수익성지표

- 농업총수입 = 농업수입(현금, 현물) + 생산현물가계소비 + 미처분농축산물증감액
+ 대동식물증감액
- 농업유동재비 = 농업경영비 - (지불노임+지불임차료+지불이자+감가상각비)
- 농업부가가치 = 농업총수입 - (중간재비 - 감가상각비)
 - * 중간재비 = 농업경영비 - (지불노임 + 지불임차료 + 지불이자)
 - * 일반적으로 각종 농업생산성 지표는 산출액/투입액으로 정의되는데 종전까지 산출액으로 사용해 오던 농업소득 대신에 '92년부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농업부가가치 개념을 사용
- 농업노동 1시간당 농업소득 = 농업소득 / 자영농업노동시간
- 농업노동 1시간당 농업총수입 = 농업총수입 / 자영농업노동시간
- 단위자본(100만원)당 농업소득 = (농업소득 / 농업고정자본액) × 단위자본
- 단위자본(100만원)당 농업총수입 = (농업총수입 / 농업고정자본액) × 단위자본
 - * 일반적으로 노동자 1인당 자본액을 말하는데 농업의 경우 가족노동이 많고 노동의 계절성 때문에 제조업의 경우와 같이 노동자 1인당 자본장비율을 표시하지 않음
- 단위면적(10a)당 농업소득 = (농업소득 / 경영경지면적) × 단위면적
- 단위면적(10a)당 농업총수입 = (농업총수입 / 경영경지면적) × 단위면적
- 농업소득률 = {(농업총수입 - 농업경영비) / 농업총수입} × 100

○ 생산성지표

- 노동생산성 = 농업부가가치 / 자영농업노동시간
 - * 투하된 노동력과 그 결과로써 얻은 생산량의 비율
 - * 노동생산성 지표는 자본생산성 지표와 함께 농업과 타산업 또는 농가 상호간의 경제적 능률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
- 토지생산성 = 농업부가가치 / 경지면적(10a)
 - * 토지면적 단위당 생산량을 말하며 그 토지의 경제성을 타 토지와 비교하는데 사용
- 자본생산성 = 농업부가가치 / 농업자본액(100만원)
 - * 투입된 자본에 대한 생산량
- 노동집약도 = 자영농업노동시간 / 경지면적(10a)
 - * 일반적으로 단위생산물에 대한 투하노동량의 비율을 뜻하며 농가 경제조사에서는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하된 노동량

들녘경영체 성과 조사방법 분석

- 자본집약도 = 농업자본액 / 경지면적(10a)
 -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하여 투입된 농업자본액
- 자본구성도(자본장비율) = 농업자본액 / 자영농업노동시간, 노동생산성 × 자본계수
- 자본계수 = 자본집약도 / 토지생산성
 - * 일정 기간의 생산량에 대한 자본량의 비율

(3) 들녘경영체 평가항목

- 2015년 이후 정부는 지역·품목 등을 고려한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할 계획
 - 따라서 들녘경영체별 성과는 경영체가 추진하는 사업내용, 품목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할 것임

(가) (쌀 중심형) 들녘경영체 소득증대부문

- ①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제재료비, 농구비, 위탁영농비, 고용노동비, 임차지 토지용역비 등의 경영비에서 비용절감에 의한 소득증대 부문
- ② 품질향상(GAP인증 혹은 친환경인증 등)으로 벼 판매가격 향상에 의한 총수입증대 부문
- ③ 혹은 10a당 수량증대에 의한 총수익증대 부문
- ④ 공동육묘장과 광역방제기를 통한 들녘경영체 내부 소득증대

(나) (쌀+논 이모작 확대형) 들녘경영체 소득증대 부문

- ① 쌀 부문에서의 위의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에 의한 소득증대 부문
- ② 논 이모작 작물 재배확대와 품질향상, 균일화 등에 의한 총수입증대 부문
- ③ 논 이모작 작물에서의 비용절감에 의한 소득증대 부문

(다) (쌀+밭작물 생산형) 들녘경영체 소득증대 부문

- ① 쌀 부문에서의 위의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에 의한 소득증대 부문
- ② 밭작물 재배확대와 품질향상, 균일화 등에 의한 총수입증대 부문
- ③ 밭작물에서의 비용절감에 의한 소득증대 부문

(라) (들녘경영체 공통) 6차산업화에 의한 수익증대

- ① 2차 가공과 판매에 의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수익증대 부문
- ② 매출액 증대에 의한 수입증대 부문

나. 조사내용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및 쌀 생산비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표 작성후 조사

(1) 들녘경영체 전체 수입과 비용 부문

○ 들녘경영체 전체의 수입부문의 경우

- 작물수입, 축산수입 : 재배면적(사육두수), 생산량, 단위당 판매가격 등 조사
- 농산물가공업의 경우 : 총생산량과 판매단가 등 조사
- 농업서비스업의 경우 : 수탁면적, 단가 등 조사
- 농업외임금, 농업임금의 경우 : 노동일수, 일당 등 조사

표 138 들녘경영체 부문별 수입부문 조사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수입부문			
			재배면적 (ha) 사육두수	총생산량 (kg) (A)	단위당 판매가격 (원) (B)	총수입 (A×B)
농업총수입 부문	작물 수입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채소				
		과수				
		특작				
	축산수입	대동물				
		소동물				
잡수입	잡수입					
겸업수입 부문	농산물가공업			총생산량	판매단가	
		가공품				
	농업서비스업			수탁면적	단가	
		농작업명				
		농작업명				
	사업외수입 부문	농업외임금			노동일수	일당
농업임금				노동일수	일당	

들녘경영체 성과 조사방법 분석

○ 들녘경영체의 각 품목별, 사업별 비용 조사항목

- 작물의 경우 : 통계청 농업지출 부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조사
- 농산물 가공업의 경우 : 제조원가 조사
- 농업서비스업 : 작업일수, 일당 가격, 영농광열비 등 조사

표 139 들녘경영체 품목별 비용부문 조사항목

비목별	농업총수입부문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업	
	작물수입				축산수입			
	미곡	맥류	두류	채소 과수	가축명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동물관리비								
사료비								
기타재료비							●	●
고용노동비								
영농광열비							●	●
자산수선비							●	●
소농구구입비								
임차료								
수리시설사 용료								
농작업위탁비							●	●
조세								
부담금								
이자								
기타비용								
보험료								
판매자재비								
제조원가						●		

- 들녘경영체 전체의 수익과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전체의 주요 농기계 소유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해야 함.
 - 기종별 성능, 작업면적(자기논, 타인 논 면적, 밭 면적) 등 조사

표 140 들녘경영체 소속농가의 농기계 소유 및 이용실태

기종	소유자 이름	성능 (마력)	작업면적(ha, 필지, 마지기)		기종	소유자 이름	성능 (마력)	작업면적(ha, 필지, 마지기)	
			자기논	타인논				자기논	타인논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 토지용역비와 관련하여 조사항목
 - 단위면적당 논과 밭의 임차료
 - 각 작물이 부담해야 할 토지용역비 계산을 위해 논 이모작 재배면적, 수량, 판매가격 등 조사

표 141 논 이모작 작물 재배현황 조사내용

구분	경영체 전체면적	보리(ha, kg, 원)			밀(ha, kg, 원)			조사료() (ha,kg,원)		
		재배 면적	10a당 수량	40kg관 매가격	재배 면적	10a당 수량	40kg관 매가격	재배 면적	10a당 수량	판매 가격
당해 년도										

(2) 들녘경영체 쌀 부문 수입과 비용

- 들녘경영체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문이 쌀이기 때문에 들녘경영체 사업추진으로 얻어진 쌀 수입과 비용을 조사
 - 비용절감부문과 품질향상에 의한 수익증가 부문을 조사
- 쌀 수입부문
 - 재배면적, 단위수량, 판매가격, GAP인증, 친환경인증 실태 등 조사
- 쌀 생산비용 부문
 - 논벼 생산비 조사 비목별 단위면적당 사용량, 단위당 구입가격, 단위면적당 비용 등 조사

표 142 쌀 생산비조사에서 수입항목과 비목항목

수입 항목	생산비 항목	
총수입 (A)	(1) 직접생산비	(2) 간접생산비
B 생산비 (B)	① 종묘비(자급, 구입)	⑫토지용역비
C 내급비 (C)	② 비료비	⑫-1 자가
순수익 (D=A-B)	○ 무기질	⑫-2 임차
경영비 (E)	○ 유기질(자급, 구입)	⑬자본용역비
소득 (F=A-E)	③ 농약비	○ 유동자본
주산물 (kg)	④ 기타재료비(자급, 구입)	○ 고정자본
부산물 (kg)	⑤ 영농광열비	
경영비=①+②+③+④+⑤⑥+ ⑦+(⑧-2)+⑨+⑩+⑪ +(⑫-2)	⑥ 농구비	
	○ 대농구	부산물생산비
	- 감가상각비	부산물공제생산비
	- 수리유지임차료	
	○ 소농구(자급, 구입)	
	○ 축력비(자가, 차용)	
	⑦ 영농시설비	
	⑦ 수리(水利)비	
	⑧노동비	
	⑧-1 자가	
	⑧-2 고용	
	⑨위탁영농비	
	⑩기타비용	
	⑪생산관리비	

표 143 들녘경영체 쌀 부문 조사내용

구분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인근지역 일반 농가
	사업전	사업후	
10a당 수량(A)			
조곡 40kg당 판매가격(B)			
총수입(A×B)			
○종묘비(사용량, 단가) 종자			
○비료비 (사용량, 단가)	밑거름		
	새끼질거름		
	이삭거름		
	토양개량제		
○농약비 (사용량, 단가)	살충제		
	살균제		
	영양제		
	제초제		
○기타재료비 (사용량, 단가)	부직포		
	비닐		
○농기계관련비용			
-영농광열비			
-농구비			
-위탁영농비	육묘		
	경운-정지		
	이앙		
	수확		
	병충해방제 건조		
○영농시설비			
○수리비			
○조세및기타비용			
○생산관리비			
○노동비	투입노동시간		
-자가			
-고용	고용노임		
○토지용역비	1200평당		
-자가	지역임차료		
-임차	논 이용정도		
○자본용역비			
-유동자본			
-고정자본			

다.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1) 조사대상

- 조사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들녘경영체 성과조사에서 가장 중요함
 - 조사대상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고
 - 농가연령별, 농가 작물형태별, 경영규모별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임
- 1안 :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전체대상
 - 장점 : 전수조사를 통하여 조사의 신뢰도 및 전체 파급효과 분석 가능
 - 단점 : 전수조사가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
- 2안 : 들녘경영체 참여 규모계층별 샘플 대상
 - 방법 : 참여농가 전체중 규모계층을 대변하는 농가층을 샘플로 선정하여 조사
 - 장점 : 조사의 편이성이 있음
 - 단점 : 신뢰도가 떨어지고, 전체 파급효과 분석이 어렵고, 계층을 대변하는 샘플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 조사대상 선정(안)
 - 제2안을 중심으로 들녘경영체를 연령별, 경영규모별 편차를 최소한으로 하여 연령별, 경영규모별을 대변할 수 있는 농가수 선정

(2) 조사방법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및 농산물생산비 조사방법에 의해 조사원을 통해 조사 실시
- 조사원 교육
 - 농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에 대해 철저히 교육

3-4 들녘경영체 성과 비교방법

가.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및 농산물생산비조사 비교방법

(1) 농가경제관련 비교지표

-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지표
 - 전국평균, 전·겸업별, 주·부업별, 영농형태별, 경지규모별, 경영주연령별, 가구원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있음.
- 전·겸업별 : 3개 유형 분류
 - 전업농가, 겸업농가(1종 겸업농가, 2종 겸업농가)
- 주·부업별 : 4개 유형 분류
 - 주업농가(전문농가, 일반농가), 부업농가, 자급농가
- 영농형태별 : 8개 유형 분류
 - 벼농가, 과수농가, 채소농가, 특작농가, 화훼농가, 전작농가, 축산농가, 기타농가
- 경지규모별 : 9개 계층 분류
 - 0.5ha미만, 0.5~1.0ha, 1.0~1.5, 1.5~2.0, 2.0~3.0, 3.0~5.0, 5.0~7.0, 7.0~10.0, 10ha이상
- 경영주연령별 : 3개 유형, 9개층 분류
 - 연령계층별 :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 60세 기준 : 60세 미만, 60세 이상
 - 65세 기준 : 65세 미만, 65세 이상
- 가구원규모별 : 6개 유형 분류
 - 1명 농가, 2명 농가, 3명 농가, 4명 농가, 5명 농가, 6명 이상 농가
- 지역별 : 9개 도 분류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쌀 수익성 및 생산비 비교지표

- 쌀 생산비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지표
 - 전국평균, 도별, 재배규모별, 경영주연령별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있음.
 - 쌀이외의 품목에서는 위 비교지표가 없이 전국평균만 제시하고 있음
- 도별 : 8개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재배규모별 : 10계층 분류
 - 0.5ha미만, 0.5~1.0ha, 1.0~1.5, 1.5~2.0, 2.0~2.5, 2.5~3.0, 3.0~5.0, 5.0~7.0, 7.0~10.0, 10ha이상

들녘경영체 성과 조사방법 분석

- 경영주연령별 : 5개 연령계층 분류
 -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나. 들녘경영체 성과 비교대상

(1) 논벼 생산비 조사를 중심으로 비목별 편차사례

- 통계청 논벼 생산비조사 결과를 보면,
 - 지역별, 재배면적별, 연령별 비목별 편차가 큰 비목이 있음.
- 토지용역비의 경우 전북과 강원도와의 편차는 126천원 차이가 있음
 - 이는 전북이 단위면적당 논 임차료가 매우 높고, 강원도가 낮기 때문임.

표 144 도별 논벼 생산비 비목별 10a당 생산비 비교(2012~'13년 평균)

구분	도별								최대-최소치	(최고-최소)/최소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생산비합계	708,065	733,940	673,381	758,561	763,183	677,360	713,851	692,972	89,802	13.3%
직접생산비	440,251	509,791	425,920	488,259	413,166	432,172	442,301	467,507	96,625	23.4%
종묘비	15,950	15,508	17,269	14,941	15,646	13,604	15,379	18,812	5,208	38.3%
비료비	42,285	57,084	35,861	53,088	42,031	44,695	37,080	40,974	21,223	59.2%
농약비	21,929	28,450	20,308	30,192	24,660	24,967	22,506	27,037	9,884	48.7%
기타재료비	14,042	20,352	15,522	14,660	9,914	19,848	10,739	14,724	10,438	105.3%
영농광열비	6,460	7,597	5,185	6,291	5,921	6,739	7,399	10,030	4,845	93.4%
농구비	40,594	61,973	41,276	51,811	50,102	37,515	58,081	63,747	26,232	69.9%
노동비	152,831	196,513	169,964	174,045	169,205	175,479	183,581	182,043	43,682	28.6%
-자가	138,542	184,720	159,667	157,719	154,000	168,140	172,721	174,820	46,179	33.3%
-고용	14,289	11,793	10,298	16,327	15,205	7,339	10,861	7,223	9,104	126.0%
위탁영농비	131,626	111,628	112,833	135,514	91,697	104,552	101,702	103,126	43,817	47.8%
간접생산비	267,815	224,149	247,463	270,302	350,017	245,188	271,550	225,465	125,868	56.2%
토지용역비	245,873	199,030	226,915	245,503	325,906	222,384	246,738	200,400	126,877	63.7%
-자가	121,481	109,574	104,778	131,554	117,317	103,388	112,410	87,776	43,778	49.9%
-임차	124,393	89,456	122,138	113,949	208,589	118,997	134,328	112,625	119,133	133.2%
자본용역비	21,942	25,120	20,547	24,799	24,111	22,804	24,813	25,065	4,573	22.3%
경영비	426,101	414,527	388,391	444,490	467,756	383,029	403,908	405,312	84,727	22.1%
농자재비	94,205	121,393	88,960	112,880	92,251	103,113	85,703	101,546	35,690	41.6%
농기계관련비	178,680	181,197	159,294	193,616	147,720	148,806	167,181	176,903	45,896	31.1%

주 : 농자재비(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기타재료비), 농기계관련비(영농광열비, 농구비, 위탁영농비)

자료 : 통계청, [2012, 2013 농산물생산비통계], 각년도

- 벼 재배면적별 비목차이가 많은 비목은 농구비, 위탁영농비, 토지용역비 부문임
- 농구비의 경우 1ha미만농가의 경우는 중형농기계 소유가 적어, 농구비가 낮고
 - 상대적으로 위탁영농비의 경우 편차가 매우 큼
 - 2ha미만농가의 경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을 소유하지 않고 농작업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탁영농비가 매우 많음

표 145 논벼 재배면적별 논벼 생산비 비목별 10a당 생산비비교(2012~'13년 평균)

구분	논벼 재배면적별								최대-최소치	(최고-최소)/최소
	0.5ha미만	0.5~1	1.5~2	2~2.5	2.5~3	5~7	7~10	10ha이상		
생산비합계	797,912	753,540	727,965	694,871	695,968	676,673	677,994	704,695	121,239	17.9%
직접생산비	549,977	506,413	460,179	421,435	420,755	376,103	378,496	369,934	180,043	48.7%
종묘비	19,356	16,759	14,442	14,816	15,472	13,018	13,944	17,336	6,339	48.7%
비료비	41,130	42,290	47,915	40,578	46,545	47,414	46,382	38,953	8,962	23.0%
농약비	26,203	25,153	25,651	23,568	27,056	26,418	22,305	24,330	4,751	21.3%
기타재료비	10,989	12,466	12,857	11,828	12,895	14,540	18,155	19,083	8,094	73.7%
영농광열비	4,531	4,721	5,577	7,800	6,875	10,278	7,027	9,366	5,748	126.9%
농구비	38,705	35,946	52,538	54,507	49,094	53,662	53,764	66,500	30,555	85.0%
노동비	209,645	187,452	165,035	165,993	153,454	152,233	169,970	167,003	57,413	37.7%
-자가	201,641	177,316	154,444	154,156	142,742	143,845	153,901	140,811	60,830	43.2%
-고용	8,005	10,136	10,592	11,838	10,712	8,388	16,070	26,193	18,188	227.2%
위탁영농비	186,411	172,768	128,583	97,018	102,085	55,253	44,130	24,157	162,254	671.7%
간접생산비	247,935	247,127	267,786	273,436	275,213	300,570	299,499	334,761	87,634	35.5%
토지용역비	223,044	223,938	242,953	250,186	251,727	280,780	277,361	308,767	85,723	38.4%
-자가	158,039	138,611	137,391	106,376	100,980	86,944	57,984	60,461	100,056	172.6%
-임차	65,005	85,326	105,563	143,811	150,748	193,836	219,377	248,305	183,300	282.0%
자본용역비	24,892	23,190	24,833	23,250	23,486	19,791	22,138	25,995	6,204	31.3%
경영비	413,341	414,424	411,298	411,090	428,761	426,094	443,972	477,429	66,339	16.1%
농자재비	97,677	96,666	100,864	90,790	101,968	101,389	100,785	99,701	11,178	12.3%
농기계관련비	229,646	213,434	186,698	159,325	158,054	119,193	104,921	100,023	129,624	129.6%
임차지비율	30.2%	40.1%	45.7%	58.3%	62.2%	70.4%	79.5%	78.0%		

주1 : 1.0~1.5ha, 3.0~5.0ha 계층은 최소최대치가 없어서 제외함

주2 : 농자재비(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기타재료비), 농기계관련비(영농광열비, 농구비, 위탁영농비)

자료 : 통계청, [2012, 2013 농산물생산비통계], 각년도

들녘경영체 성과 조사방법 분석

- 토지임차료의 경우는 재배면적이 클수록 토지용역비가 많음
 - 재배면적이 클수록 농작업이 편리하여 임차료가 비싼 평야지대에 속한 농가가 많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토지용역비 중에서 경영비에 영향을 주는 임차지에 대한 토지용역비의 경우, 재배면적이 클수록 임차지 토지용역비가 절대적으로 높음. 이는 논벼 재배면적이 큰 농가일수록 임차지 비율이 높음을 반영한 것임.
 - * 1ha미만의 경우는 40%이하이나, 5ha이상 농가의 경우 임차지 비율이 70%이상임
- 경영주연령별 비목도 농구비, 위탁영농비, 임차지 토지용역비에서 큰 차이가 있음
 - 농구비는 40대 이상이 가장 많으며, 위탁영농비의 경우는 70대 이상이 가장 많음
 - * 70대 이상의 경우는 거의 중형농기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작업을 위탁
 - 토지용역비에서 임차지 비율은 40대 이하층에서 임차지의 비중이 70%이상으로 임차지 토지용역비가 매우 많음.

표 146 경영주연령별 논벼 생산비 비목별 10a당 생산비비교(2012~'13년 평균)

구분	경영주 연령별					최대-최소치	(최고-최소)/최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생산비합계	637,577	697,018	687,588	726,501	762,745	125,168	19.6%
종묘비	14,640	14,996	16,435	15,113	15,325	1,795	12.3%
비료비	43,336	44,375	44,584	42,670	44,951	2,281	5.3%
농약비	37,041	25,407	23,221	26,106	25,213	13,820	59.5%
기타재료비	15,606	12,480	17,398	13,369	12,944	4,918	39.4%
영농광열비	6,726	7,406	7,934	7,458	4,571	3,363	73.6%
농구비	50,834	64,787	53,974	49,115	38,776	26,011	67.1%
노동비	141,793	165,942	167,320	176,027	182,820	41,027	28.9%
-자가	130,282	155,637	156,366	163,895	169,241	38,959	29.9%
-고용	11,511	10,306	10,955	12,133	13,579	3,274	31.8%
위탁영농비	63,749	67,057	72,102	107,303	168,776	105,027	164.8%
토지용역비	234,558	263,598	255,581	258,595	236,874	29,041	12.4%
-자가	55,716	65,296	84,001	117,279	152,437	96,721	173.6%
-임차	178,842	198,303	171,581	141,317	84,438	113,865	134.9%
자본용역비	25,408	26,344	23,503	23,646	23,386	2,958	12.6%
경영비	426,172	449,742	423,720	421,682	417,682	32,060	7.7%
농자재비	110,622	97,258	101,637	97,257	98,432	12,191	12.5%
농기계관련비	121,309	139,249	134,009	163,876	212,123	90,814	74.9%
임차비 비율	79.1%	75.2%	66.6%	54.7%	35.9%		

주 : 농자재비(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기타재료비), 농기계관련비(영농광열비, 농구비, 위탁영농비)
 자료 : 통계청, [2012, 2013 농산물생산비통계], 각년도

(2) 들녘경영체 성과 비교대상

- 들녘경영체 성과평가지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매우 어렵고 중요함.
 - 앞에서 본바와 같이 같은 품목에서 재배규모별, 연령별, 지역별 비용항목별 차이가 크기 때문임.
 - 들녘경영체는 전국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연령별, 재배규모별로 다양한 농가계층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함.
 - 또한 들녘경영체별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기 때문에 평가가 어려움
- 쌀을 중심으로 하는 비용절감 비교방안
 - 1안 : 통계청 쌀 생산비 전국 평균치와 비교하는 방안
 - 2안 : 들녘경영체 조직 전·후의 쌀 생산비를 비교하는 방안
 - 3안 : 들녘경영체와 인근지역의 들녘경영체가 없는 농가와 비교하는 방안
- 대안 선택방법 : 들녘경영체 생산비 조사후 검토

표 147 들녘경영체 성과비교 기준안별 장단점

구분	기준	장점	단점
1안	통계청 통계자료 기준	-비교자료 획득 용이	-지역의 농기계(작업료 차이), 농지(임차료 차이)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2안	들녘경영체 조직 전·후 비교	-지역의 특성반영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 (전문가분석 필요)
3안	들녘경영체 주변과 비교	-지역의 특성반영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 (전문가분석 필요)

- 조사비목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지역조사를 중심으로 정리 필요
 - 토지용역비 경우 : 조사지역 인근 임차료를 기준으로 설정
 - 통계청 자료 이용보다는 지역의 임차료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 바람직
 - 지역별 투입여건이 다른 비목 :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위탁영농비 등
 - 지역조사치와 통계청 수치를 비교하는 방안
 - 조사상의 어려운 비목의 경우 : 기타 제재료비, 조세 및 기타비용, 생산관리비
 - 통계청 수치를 이용하는 방안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1-1 연구개요

- 연구제목 :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연구
- 연구기간 : 2014년 9월 1일~12월 23일(4개월)
- 관계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 연구기관 : (주)한국농업경영기술연구원
- 주요과업내용
 - ① 기존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 ②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 체계 정립
 - ③ 들녘경영체 성과조사 방법 제시
 - ④ 지역·품목에 적합한 다양한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검토
- 본 연구의 목적
 - 들녘경영체 운영실태와 문제점 분석, 단계별 육성체계 정립, 지역·품목에 적합한 다양한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과 평가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 심화된 공동경영을 추진하는 들녘경영체 모델개발과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을 통해 우리 식량산업의 주체를 육성하여,
첫째, 농가의 비용절감과 수익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증대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고품질·저비용·고효율 식량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셋째, 미래 식량 산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식량자급 기반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농업체계 마련
- 본 연구로 기대되는 효과
 - 첫째, 공동경영에 의한 계획생산, 비용절감, 수익성 향상 등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방안을 마련
 - 둘째, 저비용·고효율 생산 체계 구축으로 농업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체계를 구축
 - 셋째, 쌀 관세화와 미래의 식량 산업 위기에 대응한 식량자급률 제고와 농식품개방화에 따른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 넷째, 우리 전체 농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의 기본 모델로 제시하여 지역과

품목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육성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농정 토대를 마련

○ 본 연구의 활용방안

첫째, 들녘경영체의 단계별(1, 2, 3단계) 조직체계, 운영방안, 평가체계 등 효율적인 육성체계 정립

- 들녘경영체 기초 진입단계부터 단계별 심화단계까지 효율적 운영체계 제시로 들녘경영체 사업추진 목적에 이용

둘째, 지역·품목별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을 제시

- 지자체별로 들녘경영체 육성방향 및 추진방안 설정과 홍보로 능률적인 들녘경영체 육성에 활용
- 지역단위 들녘경영체별로 지역과 작물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을 통해 사업의 성공 유도와 들녘경영체간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

셋째,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으로 [식량자급률 향상], [채소류 안정적인 수급조절], [외국농산물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전략품목 육성], [농산물 품질·가격 경쟁력 증대방안]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개발에 활용

넷째, 각 행정단위별 관련기관과 [들녘경영체 협의회]가 연계하여 쌀과 식량산업, 채소와 과수류의 안정생산과 소득보전,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정책추진 파트너 역할 수행

- 이를 통해 ① 정확한 정책 수립 및 현장으로의 전달, ② 신속한 정책 전개, ③ 효율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기대할 수 있음

1-2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과정과 운영실태

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과정

○ 2009년 고품질-저비용 쌀 생산을 통한 농가의 쌀 소득보전과 쌀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추진

- 2013년부터 [들녘별경영체 육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까지 확대하여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지원대상 및 사업대상자

- 2010년까지 벼를 재배로 하는 법인 혹은 농가조직체
- 2011년부터 50ha이상 들녘을 조직화하여 공동영농을 수행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 농업회사법인), RPC·DSC, 농협으로 확대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육성실적

- 2014년 현재 274개소(2, 3년차 지원포함) 지원, 158개소의 들녘경영체 지원
- 실적(누계) : ('09)12개소→('10)30→('11)99→('12)118→('13)132→('14)158
- 시설장비 지원 경영체 63개소, 운영비 및 교육컨설팅 지원 경영체 95개소
- 그러나 쌀 재배면적이 많은 전남, 충남, 전북이 많이 선정되어 타 시도에 대해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에 대한 홍보 필요

○ 앞으로의 들녘경영체 육성목표

- 50ha 이상 전국 2,800여개 들녘(45만ha) 중 '20년까지 500개소 (10만ha, 전체들녘의 20% 수준) 육성 목표

나. 운영실태

○ 들녘경영체 158개소 경영체당 평균 참여농가수 152명, 평균 경영면적 202ha로 농가의 조직화와 규모화가 크게 진척됨

- 150~250ha 들녘경영체 비율이 34.2%로 가장 많으며, 300ha이상도 15.2%

○ 시설장비 지원 들녘경영체 63개소의 시설장비 현황

- 공동육묘장 소유 들녘경영체(30.2%), 광역방제기 소유 들녘경영체(41.3%)
- 공동육묘장과 공동방제기를 모두 소유한 들녘경영체는 18개소(28.6%)로 공동육묘와 공동방제도 동시에 공동작업하는 들녘경영체 비율이 낮음.

○ 들녘경영체 선정당시와 현재의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수와 경영면적 변화

- 참여농가수는 고령농가의 은퇴로 152명에서 138명으로 9.3%가 감소
- 경영면적은 규모화가 확대되어 202ha에서 227ha로 12.1% 증가하였는데, 특히 시설장비 지원 경영체와 농가조직체에서 증가폭이 큼.

○ 교육컨설팅비의 지원으로 들녘경영체 사업내용과 운영방법, 정부의 식량산업에 대한 정책이해도가 높아졌으며

- 운영비는 공동방제와 공동육묘 부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음.
- 교육컨설팅 및 운영비 지원은 임원진들과 농가의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참여 동기 부여와 정부의 식량산업 정책이해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3년 간의 지원이 필요함

다. 들녘경영체 공동경영 현황과 문제점

○ 들녘경영체 구성 농가와 농지 구성 현황

- 들녘경영체의 공동경작에 참여하는 농가수는 108호이며, 법인 구성원(조합원, 주주)

은 30.6%, 일반농가 69.4%임.

- 농지의 경우, 35.3%가 법인구성원 면적 64.7%가 일반농가의 농지
- 들녘경영체 공동경작에 참여하는 농가수와 농지의 법인구성원 비중이 낮은 것은 영세소농인 고령농가가 법인에 대한 이해 부족, 법인의 사고발생시 두려움으로 농업법인의 조합원이나 주주로의 참여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
- 들녘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는 임원진과 참여농가의 조직화가 어려운 점
 - 농업법인에 대한 이해부족과 운영경험으로 부족, 참여농가의 고령화로 사업참여의 어려움과 특히 조합원(주주)으로의 참여회피로 조합원(주주)확대가 어려움.
 - 참여농가와 조합원, 임원에 대해 농업법인에 대한 교육에 대한 많은 교육이 필요
- 들녘경영체 중에서 농업법인 자체의 농지 소유, 임차 및 쌀직불금 수령 현황
 - 법인명의 농지소유와 임차, 쌀 직불금 수령 농업법인 들녘경영체비율이 극히 적음
 - 법인 구성기간이 5년 미만의 경영체가 많고, 공동육묘와 공동방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들녘경영체 자체의 농지소유나 농지임차에 관심부분이 적음
- 들녘경영체 공동경영을 위한 경영관리 현황
 - 농가 명부관리와 농지조서 구비는 90%수준으로 관리수준이 매우 높음. 특히 시설장비 지원경영체에서 더 높음.
 - 협약서 이행, 단일영농계획수립, 농작업 일지 기록 등은 6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라. 들녘경영체 공동작업의 실태와 문제점

- 들녘경영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업중 공동작업 비율
 - 품종통일, 공동방제, 공동건조, 공동출하, 공동육묘 작업에서 공동작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시설장비 지원 경영체가 매우 높은 편임.
 - 그러나 공동육묘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공동육묘장의 연간 공동육묘 가능량이 최대 100ha 수준이기 때문
 - 경운정지, 이앙, 수확, 시비, 제초 등의 공동작업 비율은 낮은 편임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 시작된 지 5년(경영체별로는 1~2년도 많음)이 경과되고 단순히 지원사업인 공동육묘와 공동방제 부문에서만 공동작업이 이루어지며, 사업취지인 공동경영·각각의 작업별 공동농작업에 의한 비용절감에 대해 공감대 부족한 들녘경영체도 있음
 - 일부 선도적인 들녘경영체 사례가 많이 있지만, 아직 많은 들녘경영체는 초보단계로 조직화·공동작업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있음.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들녘경영체 참여 농가의 낮은 공동작업의 이유는 참여농가의 사업취지 인식 부족과 도시근교지역(특히 경기도)에 따라 높은 부재지주 비율로 들녘내 참여 농지 전체의 공동농작업이 쉽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음.
 - 한편 들녘경영체를 조직화하여 농지를 단지화해야 주도할 핵심리더 부재 및 리더로 양성할 인력풀도 부족한 실정임.
 - 또한 들녘경영체 자체의 조직화의 미비와 임원진들의 공동경영에 대한 인식부족, 참여농가의 농업법인과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음.
- 한편 공동농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는 토지용역비와 농기계 비용 부문에서 어느 일정부분 분명한 한계가 있음.
 - 첫째, 쌀 생산비 중 가장 많은 비중(40%)을 차지하는 토지용역비 절감을 위해서는 논 임차료가 떨어지지 않는 전제하에서는 들녘경영체 참여농지의 논 효율적인 이용률증대를 위한 농지공동이용 등 방안이 절대 필요
 - 둘째, 쌀 생산비의 23%이상을 점하고 있는 농기계 관련비용(농구비, 영농광열비, 위탁영농비) 절감문제임. 이를 위해 과잉된 농기계의 처분과 들녘단위에서 적정농기계 배치와 농기계 공동이용방안 등에 대한 모색이 절대 필요
- 들녘경영체가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들녘경영체 자체에서는
 - 단일영농계획 수립 등 공동경영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대부분 쌀 중심의 들녘경영체에서 쌀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의 품목 특성을 반영한 육성모델 개발 필요
 - 경영체별 농기계 적정소유대수 추정과 과잉농기계 처분과 공동이용방안 모색
 - 들녘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농지의 공동이용과 단지화 집단화 방향 설정 등이 필요
- 들녘경영체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 들녘경영체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수립
 -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및 파급
 -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 이외의 들녘경영체 성장단계별,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별 공동경영, 공동농작업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 들녘경영체 요건,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점검·제재 등 사후관리 철저 등이 필요

1-3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개발

가.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개발 필요성

- 2009년부터 추진되어온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들녘경영체 내부

적·정책적으로 단계별 육성시스템 구축 필요성 증대

- 내부적으로는 임원진들을 제외한 일반구성원들의 경우 공동경영체에 대한 인식 부족, 공동작업(공동경영)의 범위, 내용에 한계점이 노출되었으며, 들녘경영체 선정 이후 지속적인 사업전개에 어려움 존재
- 정책적으로는 그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들녘경영체 개념정의, 자격조건, 사후관리체계 등의 규정이 미흡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한 실정
- 쌀산업에서 새로운 생산주체로서 비용절감, 품질향상에 기여한 부문이 있으나, 타 작물과의 연계성 미흡, 농기계·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정책과의 연계성 미흡
- 일본의 집락영농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집락(우리의 마을단위)의 공동화 현상에 대비하여 집락단위를 중심으로 [집락영농을 조직하여 농업생산과정에서 일부 혹은 전부를 공동화, 통일에 관한 합의하에 실시하는 영농]을 시작
 - 2014년 14,717개의 집락영농이 조직되어 평균 농기계의 공동소유와 공동이용 비율, 농산물 공동판매비율이 높고, 토지이용조정이 58.2% 등 공동경영을 운영하고 있음.
 - 일본 북해도에서는 [농업생산법인]을 조직하여 법인체내에 개별농가가 가지고 있는 농지, 농기계 등을 법인에 위탁하여 100% 공동작업 및 공동경영을 수행하고 있음.
- 들녘경영체를 보다 심화된 공동경영을 통해 식량산업의 생산 담당주체로서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 들녘경영체에 대한 개념규정과 법제화 필요성 증대
 - 들녘경영체 단계별 공동경영의 정도, 공동농작업 등의 내용과 자격조건, 인정방안, 지원내용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나. 들녘경영체 개념정의

-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 개념정리 요건
 - (지역범위) 특정 행정리내 농업인
 - (목적) 비용절감,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강화
 - (면적기준) 일정 규모(50ha, 시행지침으로 규정) 이상의 농지 획정
 - (사업내용) 당해 농지 내에서 품종통일, 공동육묘, 공동방제, 농기계의 효율적 공동이용, 농지의 공동이용에 의한 농지이용증진, 기타 공동농업 경영활동
 - (규약 및 계획서) 공동이행 규약사와 경영계획서를 작성
 - (대상) 효율적으로 공동경영활동을 하는 농업인 조직체로 정부가 인정한 조직체
-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 개념정리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특정 행정리내 농업인을 중심으로 비용절감, 품질향상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50ha) 이상의 농지를 획정하고, 당해 농지 내에서 품종통일, 공동육묘, 공동방제, 농기계의 공동이용, 농지의 이용증진, 기타 공동 농업경영활동 등 공동이행 규약서와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공동경영활동을 하는 농업인 조직체로 정부가 인정한 농업경영체

다. 들녘경영체 단계규정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들녘경영체를 1, 2, 3단계를 구분하여 규정
- 1단계 들녘경영체 규정 : 특정 행정리내 농업인을 중심으로 법인체를 구성하여 비용절감, 품질향상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50ha) 이상의 농지를 획정하고, 당해 농지 내에서 품종통일을 통일하여 RPC와 계약재배를 체결하고 육묘, 방제, 농기계 등 공동 농업경영활동 등 공동이행 규약서와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공동경영활동을 하는 농업인 조직체로 정부가 인정한 농업경영체
- 2단계 들녘경영체 규정 : 1단계 이후에 특정 행정리내 농업인을 중심으로 비용절감, 품질향상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50ha) 이상의 농지를 획정하고, 당해 농지 내에서 품종통일, 공동육묘, 공동방제 등 공동이행 규약서와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공동경영활동을 하는 농업인 조직체로 정부가 인정한 농업경영체
- 3단계 들녘경영체 규정 : 1, 2단계이후에 특정 행정리내 농업인을 중심으로 비용절감, 품질향상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50ha) 이상의 농지를 획정하고, 당해 농지 내에서 품종통일, 공동육묘, 공동방제, 농기계의 공동이용, 농지의 이용증진, 기타 공동 농업경영활동 등 공동이행 규약서와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공동경영활동을 하는 농업인 조직체로 정부가 인정한 농업경영체

라. 들녘경영체 단계별 자격요건

- 들녘경영체 임원진, 조합원, 주주수 : 2단계 이상의 농업법인 들녘경영체에서는 조합원(영농조합법인)이나 주주(농업회사법인)에 가능한 25명 이상의 참여를 유도하고, 많은 일반농가도 적극적인 참여하도록 유도
- 경영체 조직체계 : 유형별 특성별 부서를 조직해 담당부장으로 책임있는 경영이 필요
- 경영일지 등을 보급하여 철저한 영농일지, 경영일지를 기록하게 하고 철저하게 5년간 보관상태 유지

- 경영체 수익배분은 이익금 모두를 미래 사업확장을 위해 내부 적립하는 방안과 일정 부분을 적립하고 나머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지원, 참여농가에 배분하는 방안
- 정부의 정책사업과 연계 식량작물 확대에 의한 자급률 증대와 채소작물 재배면적의 조절을 통한 수급조절에 동참

마. 들녘경영체 육성단계별 규정내용, 확인방법

- 운영주체 자격
 - 들녘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RPC, 농협
 - * 단, 농업법인, 농협은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는 경우에만 들녘 경영체로 선정, 최근 협동조합 등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 구성원의 범위
 - 들녘내 희망농가 모두를 참여시키는 것을 기본
 - 단계별 1ha이하 영세소농의 참여비율 높임.
 - 농업법인의 경우 조합원 혹은 주주의 숫자도 단계별 25명 이상으로 확대
- 단계별 공동경영 공동작업내용
 - 1단계 : 공동계획서 작성, 품종통일, RPC 혹은 가공업체와 계약재배 및 공동출하
 - 2단계 : 1단계+공동육묘+공동방제
 - 3단계 : 1단계+공동육묘+공동방제+농기계 공동이용+농지 공동이용 등 공동사업추진
- 단계별로 공동육묘장의 소유정도와 공동방제기 소유여부에 따라 공동육묘, 공동방제 면적 비율도 높이고, 계약재배 비율과 이행율도 높게 책정해야 함.
- 3단계 들녘경영체에서는 보다 심화된 공동경영을 위해
 - 농기계 공동이용은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농기계 소유실태에 적정 보유대수를 설정하고 공동이용비율을 높임
 - 들녘내 농지의 소유실태와 품목별 이용실태, 지역 특화품목 등을 고려하여 들녘내 참여농가의 희망여부, 공동이용 이후 수익분배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 설정
- 1단계 들녘경영체가 2, 3단계 진입을 위한 구비내용과 확인방법
 - 들녘경영체 선정단계에서 사업계획서에 따라 구비내용과 확인방법 결정
- 운영주체 자격, 구성원 확인
 - 정관, 등기부등본, 출자증서(주주명부), 계약재배협약서, 출하증서, 농작업일지, 입출금대장, 법인통장 등으로 확인

바 단계별 들녘경영체 정부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1단계 들녘경영체

○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및 운영비 지원 : 교육 및 컨설팅을 세트화하여 지원
- 논 혹은 밭 비옥도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발굴

○ 지원액 : 10~30백만원 지원

- 면적당 차별화 : 100ha미만(10백만원), 100~200ha미만(20백만), 200ha이상(30백만)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연차적으로 운영비 지원비율 확대 : 1년차(30%), 2년차(40%), 3년차(50%)

○ 교육 및 컨설팅내용 : 품질향상, 공동경영방안, 조직체 운영방안 등

□ 2단계 들녘경영체

○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및 운영비 지원 : 1단계와 동일, 최대 2년지원
- 시설장비 지원 :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 품목별 공동작업을 위한 시설장비
- 지원액 : 평가후 차별화에 의한 2~3억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내용 : 조직체 운영방법, 공동작업방안, 조직갈등 해소방안, 다른 사업추진가능사업 발굴

□ 3단계 들녘경영체

○ 지원내용

- 시설장비 지원 : 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 타 품목 공동작업을 위한 시설장비,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한 시설장비
- 지원액 : 평가후 차별화에 의한 3~5억 지원

○ 컨설팅 내용 : 공동경영방안, 조직갈등 해소방안, 효율적인 판매방안 등

□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조직체계

○ 일본의 경우 농림수산물 조직에는 [경영국]을 설치하여, 농업경영의 안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과 농업경영체 육성에 많은 인력 투입

○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경영관련 내용은 경영인력과에서 담당

- 농업인력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후계농업인력 육성,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경영개선, 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업인의 교육훈련, 농업경영컨설팅, 한국농수산대학, 농업인 단체, 도시민의 귀농·귀촌 등 농촌유치 지원사업, 농어업회의소 지원

- 경영인력과만으로는 공동경영체 육성을 담당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

사. 들녘경영체 법제화 방안 검토

- 들녘경영체 육성의 이념과 법적 근거 미약, 들녘경영체의 농기계 및 농지의 공동이용 등 심화된 공동경영을 위한 [들녘경영체사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등에서 구체화가 미흡. 또한 농지의 공동이용을 위한 [농지법]내 [농지이용증진사업]과의 연계성도 미흡
- 들녘경영체는 향후 쌀과 주요 곡물 생산의 주체로서 공동경영을 통한 규모화, 조직화, 단지화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에 기여, 우리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곡물자급률 향상 등 우리 쌀산업 및 곡물생산구조를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제화가 절대 필요

아. 들녘경영체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정하는 제도

-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함.
 - 들녘경영체를 인정하는 방법은 다음 2가지 방안이 있음
 - 첫째, 들녘경영체가 작성한 공동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정하는 방안과
 - 둘째, 일본과 같이 농업법인 중에서 관련법 내에서 [특정농업법인]을 정의하여 인정하는 방안
- 들녘경영체가 작성한 공동경영계획서를 누가 인정할 것인가?
 - 특히 공동경영계획서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함.
- 공동경영계획서를 인정하는 주체는 아래와 같은 방안이 있음.
 -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하는 방안으로
 - ① 농림축산식품부 [들녘경영체 사업추진 T/F팀]에서 하는 방안
 - ② 농림축산식품부 별도 [공동경영계획인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정하는 방안
 - 둘째, 시군 지자체에서 [공동경영계획인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정하는 방안
 - 일본의 경우 : 개별농가나 농업법인체에서 작성한 [농업경영개선계획]을 市町村 농업위원회에서 인정
- 당분간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검증하고, 검증된 들녘경영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들녘경영체 사업추진T/F팀]에서 인정하는 방법
 -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시도단위 [공동경영계획 인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방안이라 판단되어짐.

1-4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가.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유형과 개발내용

- 유형구분을 위한 고려점
 - 경지분포 구분 : 논, 밭, 과수원 등 분포 현황
 - 농업지대별 : 평야, 중산간, 산간
 - 논 이모작 가능 여부 : 기후조건, 토양조건으로 이모작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
 - 밭과 연계한 복합경영 여부
 - 축산(경축순환)과 연계 여부
 - 2·3차 산업 연계정도(6차산업화 가능성)
-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 육성유형
 - (1) 쌀 중심 들녘경영체 유형
 - (2) 논 이모작 확대 유형
 - (3) 논+밭작물 확대 유형
- 각 유형과 모델별 육성방안
 - 모델별 주요 현황과 문제점 제시와 정책 추진계획
 - 모델별 사업목표와 전략, 생산-가공-판매 시스템, 조직운영체계 등 사업추진전략
 - 모델별 지원체계, 지원내용 등 지원시스템 구축
 - 모델별·단계별 지원내용과 연계하여 지원체계 구축
 - 모델별 관계기관 관계사업과 연계방안 구축
 - 모델별 자율적인 수익창출방법, 6차산업화 방향, 모델별 지역농업 담당자 역할과 방향 등 모델 활성화를 위한 내용

나. 쌀 중심의 들녘경영체 유형

- 2014년 쌀 관세화이후 쌀 산업발전대책에서는 2024년 쌀 총 소요량 목표치를 419만톤으로 결정하고 MMA물량 41만톤을 제외한 378만톤 생산 목표설정
 - 밥쌀용쌀 300만톤, 가공용쌀 65만톤, 수출 5만톤으로 산정
 - 이를 재배면적으로 논벼 757천ha 목표로 선정
-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10)에서는 2017년까지 GAP인증 농산물과 친환경인증농산물의 비중을 대폭 확대 계획.
 - GAP인증농산물 비중 : 2012년(4%)에서 '17년(30%)로 확대
 - 친환경인증농산물 비중 : 2012년(7.3%)에서 '17년(15%)로 확대

- 시설장비 지원 들녘경영체 63개소 중에서 GAP인증쌀과 친환경인증쌀을 인증받은 들녘경영체가 38개소
 - GAP쌀 인증 들녘경영체 수 : 17개소(전체의 27.0%)
 - 친환경쌀 인증 들녘경영체 수 : 21개소(전체의 33.3%)
- 정부의 밥쌀용쌀 300만톤과 가공용쌀 65만톤 및 수출용쌀 5만톤을 어떻게 생산하여 공급하느냐가 쌀 개방시대에 매우 중요
 - 밥쌀용쌀의 경우는 외국쌀과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요구
 - 가공용쌀의 경우는 낮은 가격에 공급 요구
 - 수출용쌀도 고품질쌀과 중저가쌀로 나누어 수출시 품질과 가격경쟁이 요구
- 쌀 중심의 들녘경영체의 유형은 다음 4개 들녘경영체 모델 육성
 - [고품질쌀(GAP인증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 [친환경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 [가공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 [수출용쌀 생산형] 들녘경영체

다. 논 이모작 확대유형

- 1970년대 이후 논 이용률은 계속 하락추세,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떨어지다가 90년대 중반 이후 103~105% 유지
 - 논 이용률 : 1975년(131%)→ '85년(115%)→ 95년(104%) → '13년(103%)
- 경기와 강원, 충북, 충남지역은 1990년대 초부터 100%이하도 하락
 - 경북의 경우도 2000년대 중반 이후 100%이하로 떨어지고 있음.
- 논 이용률의 저하는 특히 맥류 면적의 감소가 가장 큰 감소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후반에 걸친 맥류에 의한 논 재배면적의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
- 농업총수입에서 점하는 맥류수입의 비중 급감
 - 1970년대 초까지 10%를 점하던 맥류수입비중이 점차적으로 감소, 80년대에 들어와 5%로 감소, 90년대에 들어와서는 2%이하로 감소
- 한우사육의 증가로 조사료 생산 필요성 증대
- 농가의 논이용 감소에 의한 농업소득 감소로 맥류 이외의 논 이모작물 확대에 의한 소득증대 필요성 증대
- 논 이모작 확대유형은 다음 3개의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 [쌀+논이모작 맥류 생산형] 들녘경영체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쌀+조사료+한우 결합형] 들녘경영체
- [쌀+논 이모작 원예작물 생산형] 들녘경영체

라. 논+밭작물 확대유형

- 밭 이용률은 1975년 153%에서 점진적으로 감소.
 - 2005년에는 110%이하에서 2013년에는 100%이하까지 하락
 - 이 같은 밭 이용률 감소는 농가의 농업총수입의 감소를 초래함
- 이와 같은 밭 이용률 저하 원인은
 - 맥류와 두류의 밭 재배면적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임
 - 두류의 밭 이용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1975년 32.6%에서 '13년 11%까지 떨어짐
- 채소와 과수의 밭 이용률의 경우 200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임
- 품목별 도별 밭 이용률 변화추이
 - 두류는 특히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에서 밭 이용률 크게 저하
 - 채소는 경기, 충북, 경북, 경남에서 밭 이용률이 매우 낮아졌으며
 - 과수는 경북과 경남, 충북에서 밭 이용률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
 - 맥류는 대부분의 도에서 밭 이용률이 낮아졌으며
 - 서류의 경우는 대부분의 도에서 밭 이용률의 비율에 큰 변화가 없음
- 한편 이들 쌀을 제외한 식량작물과 채소, 과수의 경우
 - 대부분의 작물에서 시군별로 읍면별로 주산지가 형성되어 주산지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생산-유통을 통한 수급조절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
- 논+밭작물 확대유형은 다음 3개의 들녘경영체 육성모델
 - [쌀+밭 식량작물 확대형] 들녘경영체
 - [쌀+채소류 생산형] 들녘경영체
 - [쌀+과수류 생산형] 들녘경영체

1-5 들녘경영체 성과 조사방법 분석

가. 들녘경영체 선정단계 평가방법

- 들녘경영체 성공여부는 어떤 들녘경영체를 선정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들녘경영체 선정단계 평가가 매우 중요
- 일본의 경우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농가나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개선계획을 작성하여 市町村에 제출하여 농업위원회에서 평가후 선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우리나라 들녘경영체의 경우도 2009년부터 들녘경영체 선정시 각 경영체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으나,
 - 2009~'10년에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장평가를 통하여 면적과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액의 차등화를 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사업계획서 내용이 미흡하였고, 시설장비지원에서는 차등화가 없었음.
- 들녘경영체가 구체적인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현장평가를 통해 평가
 - 사업계획서 작성내용 : 들녘경영체 소재 지역의 일반현황, 들녘경영체 현황(참여농가 수, 면적, 농기계 및 시설현황 등), 계약재배RPC나 가공업체 현황, 사업목표와 재배관리 및 경영개선 목표 등 추진전략에 대한 중장기 계획, 세부사업 시행계획 등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신청 경영체 평가항목
 - 들녘경영체의 사업계획의 적정성(목표명확성, 계획적정성, 지자체 지원능력, 계약재배 적정성 등), 고품질쌀 생산 및 여건(품종, 재배관리, 지력증진, 축분자원화정도, GAP 친환경 실천 의지 등), 비용절감 체계구축 및 여건(농기계 공동이용정도, 공동농작업 정도, 겨울철 논 이용정도 등), 조직화·규모화·단지화 체계 구축정도(법인구성 정도, 농지의 집단화정도, 단지면적, 경영여건, 조직도 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배점기준을 검토
- 들녘경영체 선정 평가방법
 - 1차 평가(서류평가) : 시도단위에서 서류평가하여 점수화한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서류평가
 - 2차 평가(현장평가) : 서류평가에서 합격한 들녘경영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들녘경영체 선정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 후에 점수차에 의한 지원 차등화
- 들녘경영체 선정평가단 구성방안
 - 제1안 : 현 들녘경영체 사업추진 협의회 T/F으로 평가단 구성방안
 - 제2안 : 들녘경영체 선정평가단 구성하여 평가
 - 평가단 참여 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전문가그룹, 들녘경영체 전국협의회임원 등으로 구성하여 평가단 구성
 - 구성인원 : 15명 전후로 구성

나. 들녘경영체 성과단계 평가방법

- '15년 이후 들녘경영체는 지역·품목을 고려한 맞춤형 들녘경영체를 육성할 계획
 - 들녘경영체별 성과는 경영체가 추진하는 사업내용, 품목 등에 따라 매우 다양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쌀 중심형) 들녘경영체 모델 평가항목
 - ①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제재료비, 농구비, 위탁영농비, 고용노동비, 임차지 토지용역비 등의 경영비에서 비용절감에 의한 소득증대 부문
 - ② 품질향상(GAP인증 혹은 친환경인증)으로 판매가격 향상에 의한 총수입증대 부문
 - ③ 혹은 10a당 수량증대에 의한 총수익증대 부문
 - ④ 공동육묘장과 광역방제기를 통한 들녘경영체 내부 소득증대
- (쌀+논 이모작 확대형) 들녘경영체 모델 평가항목
 - ① 쌀 부문에서의 위의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에 의한 소득증대 부문
 - ② 논 이모작 작물 재배확대와 품질향상, 균일화 등에 의한 총수입증대 부문
 - ③ 논 이모작 작물에서의 비용절감에 의한 소득증대 부문
- (쌀+밭작물 생산형) 들녘경영체 모델 평가항목
 - ① 쌀 부문에서의 위의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에 의한 소득증대 부문
 - ② 밭작물 재배확대와 품질향상, 균일화 등에 의한 총수입증대 부문
 - ③ 밭작물에서의 비용절감에 의한 소득증대 부문
- (들녘경영체 공통) 6차산업화에 의한 수익증대
 - ① 2차 가공과 판매에 의한 부가가치 향상으로 수익증대 부문
 - ② 매출액 증대에 의한 수입증대 부문
- 들녘경영체 성과평가지 조사내용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및 쌀 생산비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표 작성후 조사
- 조사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들녘경영체 성과조사에서 가장 중요함
 - 조사대상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고, 농가연령별, 농가 작물형태별, 경영규모별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
 - 1안 : 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전체대상
 - 2안 : 들녘경영체 참여 규모계층별 샘플 대상
 - 조사대상 선정(안) : 제2안을 중심으로 들녘경영체의 연령별, 경영규모별 편차를 최소한으로 하여 각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농가수 선정
- 쌀을 중심으로 하는 비용절감 비교방안
 - 1안 : 통계청 쌀 생산비 전국 평균치와 비교하는 방안
 - 2안 : 들녘경영체 조직 전·후의 쌀 생산비를 비교하는 방안
 - 3안 : 들녘경영체와 인근지역의 들녘경영체가 없는 농가와 비교하는 방안
- 대안 선택방법 : 들녘경영체 생산비 조사후 검토

- 조사비목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지역조사를 중심으로 정리 필요
 - 토지용역비 경우 : 조사지역 인근 임차료를 기준으로 설정
 - 통계청 자료 이용보다는 지역의 임차료를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이 바람직
 - 지역별 투입여건이 다른 비목 :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위탁영농비 등
 - 지역조사치와 통계청 수치를 비교하는 방안
 - 조사상의 어려운 비목의 경우 : 기타 제재료비, 조세 및 기타비용, 생산관리비
 - 통계청 수치를 이용하는 방안

2. 정책제언

2-1 들녘경영체 단계별·유형별 육성체계 구축

가.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구축

- 들녘경영체(혹은 공동경영체) 확실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정의를 법제화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됨
- 들녘경영체 단계별 규정, 자격조건, 규정내용과 확인방법, 지원방식의 차별화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설정해야 함.
- 단계별 들녘경영체 선정시 단계별 조건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 선정평가체계를 재정비해야 함
- 다양한 들녘경영체의 성과평가를 위해서도 평가항목, 조사방법,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평가단이 필요
- 들녘경영체 사업계획서 평가, 성과평가를 위해
 - 가칭 [들녘경영체 평가위원회]를 구성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 전문가 집단으로 10~15명 구성

나. 들녘경영체 유형별 육성체계 구축

-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를 육성을 통해 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소득다각화에 의한 소득증대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채소와 과일류의 수급조절능력 향상을 도모
- 쌀중심 들녘경영체의 경우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을 기본으로 하고,
 - 고품질쌀(GAP인증쌀) 생산, 친환경쌀 생산, 가공용쌀 생산, 수출용쌀 생산을 통하여
 - 지역쌀 브랜드파워 형성과 우리쌀의 국제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고, 쌀 가공업체에 안

요약 및 정책적 제언

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쌀 가공품 수출에 기여해야 함

- 논 이모작 이용률을 증진시켜 맥류 및 조사료, 양념채소류 생산을 확대하여
 - 특히 평야지대 농가의 소득다양화를 통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 곡물자급률 향상과 채소수급 안정을 모색해야 함
- 생산기반정비와 밭작물 기계화 촉진으로 밭 이용률 증진을 통해 식량작물 재배확대와 채소류와 과일류 조직화를 도모하여
 - 농가의 소득원 확보와 식량작물급률을 향상시키고, 양념채소와 과일류 수급안정 도모
- 지역·품목 맞춤형 들녘경영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 정부는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농작업 기계화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들녘경영체 유형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 지역단위에서는 들녘경영체 산학연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2-2 들녘경영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정비

가. 농림축산식품부내 [공동경영체육성팀] 구성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만으로는 들녘경영체와 공동경영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한계
- 품목별 공동경영체 육성과 브랜드 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 공동경영체의 조직운영, 사업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내에 [공동경영체육성팀] 설치가 필요
 - 구성 : 식량작물 담당과 원예작물, 축산 담당으로 구성
 - 역할 : 공동경영체 조직 및 운영방안 검토, 사업추진시 관련사업과 연계방안 검토, 관련 품목담당과의 연계작업

나. 시군단위 공동농업경영지원센터 구성

- 들녘경영체나 공동경영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경영체 공동지원체계의 구축이 절대 필요함
- 지역단위의 기준 : 시군단위
 - 시군단위에서 관련사업과 연계가 수월
- 각 기관별 역할
 - 행정기관 : 사업 및 예산지원 통합 시스템 구축, 시군 농지이용계획 수립, 농산물 건조-저장-가공시설 파악, 주요 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관련 조직체 파악

- 농업기술센터 : 주요 작물 작부체계 및 작물별 재배면적 파악, 지역 특화작물 집중 기술개발 및 지도, 확대 가능한 작부체계 개발, 관련 경영체 파악, 농기계 임대사업 연계
- 농산물품질관리원 : 농가경영체 등록 공유 및 분석, 농산물GAP인증, 친환경인증 및 관리, 품질관리지도
- 농어촌공사 :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경영체 규모확대와 농지집단화 유도, 생산기반시설 확충
- 농협 및 관련조직 : 농산물 출하지도 및 조정, 농산물 판매촉진, 경영진단지원 시스템 구축, 생산-유통조직 활성화 도모, 농기계은행사업 연계
- 대학-컨설팅 기관 : 공동경영체 필요성 및 조직운영관리 등 교육, 효율적인 사업발굴, 갈등-이해조정관리, 효과평가 등 수행

2-3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 관련내용 법제화

가. 법제화 내용

- 신설된 장내에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의 정의, 개념, 지정기준·요건, 지정절차, 지정시 인센티브, 지원내역, 지정의 해제, 처벌규정, 공동경영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 등 규정
- 단, 향후 논의에 발, 과수원 등 농업 전반에 공동경영을 확산해 나갈 것을 염두에 둔다면 [공동경영체]로 개념을 규정하는 방안도 있음.
- [공동농업경영지원센터] 설립·운영내용
-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의 공동경영 지원을 위해 ‘공동농업경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방안

나. 법제화방식

- 새로운 법률 제정 보다는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들녘경영체는 기존 농업경영체(개인·법인)의 공동경영을 유도하기 때문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새로운 장을 신설하는 방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장 농어업경영혁신기반 구축 다음 제7장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 활성화 형태로 신설하는 방안

다. 주요 항목별·법령별 검토내용

요약 및 정책적 제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 활성화
 - 들녘경영체(공동경영체)의 목적, 개념 정의, 지정요건, 교육이수조건, 지정절차, 활성화를 위한 지원내용, 공동농업경영지원센터 설립·운영, 공동경영체의 지정 해체 등
- (개념정의) 들녘경영체 대상 및 개념정의 관련 법령 : 들녘경영체(조직체)
 - 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정의) 3. 농어업경영체
 -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3. 농업경영체
 - ③ 농지법 : 제2조(정의) 3. 농업법인이란, 4. 농업경영이란, 6. 위탁경영
- (사업내용, 목적) 들녘경영체의 목적과 사업내용 관련 법령
 - 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1조(목적)
 - 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1항
 -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②, ③항
 -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업담당주체 육성과 관련
 -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정의) ①, ②항
 - 제12조(직접지불금). 제12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 제26조(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 ③ 농지법 :: 들녘경영체의 들녘내 농지의 공동이용을 위해 매우 필요
 -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②항 -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 제14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 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 제22조(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
 - ④ 농업기계화촉진법 : 들녘경영체의 농기계의 공동이용을 위해 필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4조(자금지원) - 제8조(공동이용)
 - 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농지법과 연계
 -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농지법과 연계

< 참고문헌 >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각년도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업무편람], 2014.6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2014.3
- 농림축산식품부,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3.10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 2011.7
- 농림수산식품부 비용절감운동본부, [품목별 비용절감 종합대책(안)-쌀·채소·특작분야], 2010.6
- 농림수산식품부, [주요곡물 수급안정대책-안정적생산·유통시스템 구축으로 발작물 자급률 향상-], 2011.3
- 농림수산식품부,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 2011. 2
-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쌀산업발전 및 논농업다양화대책], 2010.1
- 농림축산식품부, [쌀 관세화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산업 발전대책], 2014.9.18.
-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경제성 분석 방법과 사례], 2010.2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변역, [집락영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7.12
- 농촌진흥청, [논벼 대체작목 발굴을 위한 경영실태 조사연구], 2008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통계』 각연도
- 도원회계법인,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효과분석』, 농림수산식품부, 2010.12
- 박문호, 김정승, 『지연성 농업경영체의 경영실태와 성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653-3, 2011.11
- 박문호외 2인, 『지역농업 주체의 확립과 육성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653-3, 2009.10
- 성진근외 4인, 『강한농업으로의 길』, 농민신문사, 2009.7
- 전북대학교·농협중앙회 양곡부, 『쌀산업 경영개선을 위한 「맞춤형 최적경영단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2008.12
- 전주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영농규모화사업 효과분석 및 쌀전업농 육성방안에 관한 실증조사 연구』, 2004.12
- 농산업전략연구원·농촌진흥청, 『논벼 재배농가 유형별 소득분석 연구』, 2013.11
- 농산업전략연구원·농림축산식품부, 『지역특성별 들녘별경영체 육성모델 개발』, 2012.10

참고문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4』, E04-2014, 2014.2
- 한국쌀연구회편, 『쌀 생산비 절감기술 발전방향』, 『한쌀회 총서 제28권』, 2010. 4
- 한국쌀연구회편, 『세계식량위기와 우리 쌀산업』, 『한쌀회 총서 제24권』, 2008. 7
- 김정호외 5인, 『쌀 농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모델과 지역시스템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98-10, 1998.12
- 한국쌀산업진흥회편, 『쌀관세화 대비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한쌀회 총서 제34권, 한국쌀산업진흥회, 2013.5
- 농촌진흥청·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 農林水産省編, [2004年版 食料・農業・農村白書], 2014.6
- 田中康晃, [新規 農業参入の手續農業生産法人設立・運營], 日本法令2004.5
- 小松知末, [組織法人の經營展開], 北海道地域農業研究所學術叢書⑬, 農林統計出版, 2012.8
- 北海道農政部農業經營局農業經營課, [農業生産法人事例集], 2012.3
- 北海道農政部農政課, [2013年度 北海道農業・農村の動向], 2014.6
- 北海道農政部農政課, [2013年度 北海道農業・農村統計表], 2014.6
- 谷口信和, 『水田活用新時代-減反・轉作對應から地域産業興しの據点へ』, 農文協, 2010.12
- 森 剛一, 『集落營農と家族經營を活かす法人化塾』, 農文協, 2009.11
- 梅本雅, 『轉換期における水田農業の展開と經營對應』, 農林統計協會, 2008.4
- 木村伸男, 『現代農業のマネジメント』, 日本經濟評論社, 2008.2
- 宮武恭一, 『大規模稻作經營の經營革新と地域農業』, 中央農業總合研究センター 『總合農業研究叢書 第59號』, 2007.3
- 楠元雅弘, 『集落營農-つくり方・運營・經營管理の實際』, 農文協, 2006.3
- 迫田登穩, 『稻作法人の經營展開と人材育成』, 中央農業總合研究センター 『總合農業研究叢書 第50號』, 2004.3
- 高橋明廣, 『多様な農家・組織間の連携と集落營農の發展』, 中央農業總合研究センター 『總合農業研究叢書 第45號』, 2003.3
- 宇佐美 繁, 『地域營農集團と法人經營』, 日本經濟評論社, 1994.7
- 梶井 功編, 『食糧自給率向上へ!-食料安定報障への道筋』, 日本農業年報55, 農林統計協會, 2009.1
- 日本農林水産省 홈페이지

< 참조 1 > 2009~ '14년 들녘경영체 소속 읍면 주요 작물재배면적

자료 : 통계청, [2010년 농업총조사], 2012.6에서 분석한 것임

부표 1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동 경지면적 및 식량작물 재배면적 1(2010년)

시도	시군	읍면동	농가수	(논+밭) 면적	논면적	밭면적	과수원	겉보리 쌀보리	옥수수	콩	팥	감자	고구마
전국	전국	전국	1,177,318	1,449,418	839,996	609,422	178,831	25,086	12,542	59,060	3,647	21,878	23,260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1,387	2,152	1,106	1,046	647	0	3	56	1	16	65
경기	화성시	우정읍	1,246	2,004	1,547	458	17	6	16	36	2	20	14
경기	여주군	능서면	903	1,974	1,305	669	18		6	20	1	16	388
강원	홍천군	남면	738	901	431	470	12	0	78	34	3	17	10
강원	철원군	철원읍	651	2,672	2,526	147	0		4	42	1	7	3
강원	철원군	갈말읍	924	1,885	1,467	418	19	0	31	46	2	11	5
강원	철원군	동송읍	1,474	4,367	4,148	219	19	1	13	42	3	13	7
충북	청원군	오창읍	1,441	1,853	1,448	405	46	0	37	54	4	22	21
충북	청원군	북이면	1,058	1,522	1,069	453	34	0	7	50	5	14	22
충북	보은군	탄부면	501	1,069	883	186	67	1	1	15	2	4	17
충북	진천군	진천읍	1,346	1,264	995	269	36	0	4	44	2	11	13
충남	보령시	청소면	699	857	658	199	3	2	3	25	2	8	22
충남	보령시	남포면	962	1,573	1,346	227	72		2	23	2	3	32
충남	아산시	둔포면	997	1,870	1,329	541	252	0	3	28	2	6	11
충남	아산시	영인면	928	1,595	1,280	315	57	0	3	26	1	9	13
충남	서산시	부석면	1,601	3,006	2,006	1,000	17		3	104	4	128	35
충남	서산시	고북면	1,239	2,725	2,150	574	16	1	0	34	2	32	41
충남	부여군	임천면	639	1,267	1,010	257	58		1	40	3	2	12
충남	홍성군	서부면	832	1,104	830	274	9	2	2	27	1	29	28
충남	예산군	삼교읍	1,577	2,564	2,033	531	158	3	2	52	3	29	31
충남	예산군	고덕면	1,175	2,138	1,500	638	203	12	1	30	1	9	7
충남	당진시	송악읍	1,510	2,771	2,083	688	94	3	2	43	2	252	30
충남	당진시	신평면	1,287	2,125	1,674	451	52		1	33	1	196	42
전북	군산시	회현면	563	1,530	1,480	50	2	615	0	12	1	1	1
전북	군산시	임피면	637	961	860	101	9	129	1	16	2	3	8
전북	군산시	대야면	775	2,045	2,003	42	2	589	0	10	0	1	1
전북	군산시	개정면	394	655	577	79	2	60	0	7	2	2	3
전북	군산시	나포면	371	743	684	60	7	1	0	4	0	2	3
전북	익산시	오산면	601	1,733	1,667	66	4	598	16	11	2	2	7
전북	익산시	용안면	484	1,175	1,122	53	3	2	0	8	0	1	1
전북	익산시	낭산면	648	1,100	840	260	33	1	2	15	2	2	34
전북	익산시	동산동	446	974	908	67	7	9	0	16	1	0	2
전북	김제시	성덕면	450	1,350	1,248	103	32	372	6	19	1	1	2
전북	김제시	광활면	422	1,165	1,152	13		421	0	3	0	280	2

참고문헌

부표 2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동 경지면적 및 식량작물 재배면적 2(2010년)

시도	시군	읍면동	농가수	(논+밭) 면적	논면적	밭면적	과수원	걸보리 쌀보리	옥수수	콩	팥	감자	고구마
전국	전국	전국	1,177,318	1,449,418	839,996	609,422	178,831	25,086	12,542	59,060	3,647	21,878	23,260
전북	고창군	대산면	959	2,291	1,098	1,193	45	7	10	22	2	0	32
전북	부안군	동진면	619	1,852	1,775	77	19	467	0	25	2	68	3
전남	순천시	주암면	1,164	1,031	690	341	75	2	0	40	3	6	5
전남	순천시	별량면	1,271	1,134	837	296	61	5	1	23	4	3	18
전남	나주시	동강면	792	1,606	1,372	234	76	4		43	8	1	4
전남	담양군	무정면	484	526	448	78	2	3	0	7	1	2	4
전남	고흥군	포두면	1,436	2,466	2,055	411	67	4	1	93	7	2	10
전남	보성군	조성면	942	1,529	1,320	209	99	688	1	18	0	2	6
전남	장흥군	관산읍	1,342	1,932	1,584	348	33	232	3	53	8	18	4
전남	해남군	현산면	822	1,668	1,194	475	9	39	0	45	2	2	69
전남	영암군	덕진면	516	1,088	781	307	65	15	2	20	3	1	95
전남	영암군	시종면	1,273	2,976	2,150	827	70	2	0	48	5	5	38
전남	영암군	군서면	1,053	2,350	2,033	317	87	1	7	46	10	15	31
전남	영암군	서호면	603	1,204	1,057	148	25	60	0	29	3	1	3
전남	장성군	장성읍	1,164	972	731	241	68	6	1	27	2	3	13
경북	포항시	홍해읍	2,300	2,559	2,168	392	80	5	7	26	1	7	29
경북	안동시	서후면	810	1,018	517	501	41	0	6	113	1	15	12
경북	안동시	남선면	496	508	228	280	45	1	2	104	4	5	5
경북	상주시	사벌면	1,137	1,859	1,417	441	351	0	1	17	3	4	4
경북	상주시	공검면	749	1,006	647	358	296		0	21	1	15	2
경북	의성군	구천면	603	1,134	714	420	362		0	14	1	1	6
경북	의성군	단북면	574	1,225	1,107	119	67	0	0	10	1	3	2
경북	영덕군	병곡면	727	939	756	183	53	153	0	20	1	3	15
경남	김해시	철산서부동	581	740	613	127	11	3	0	4	1	0	1
경남	밀양시	하남읍	1,168	1,413	1,097	316	98	178	0	34	2	57	4
경남	산청군	신안면	836	1,246	604	642	343	15	1	24	1	6	11

부표 3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동 노지채소 및 특작류 재배면적 1 (2010년)

시도	시군	읍면동	배추	무	고추	양파	대파	마늘	시금 치	상추	호박	양 배추	수박	인삼	참깨	들깨
전국	전국	전국	28,270	15,859	43,405	16,520	7,292	20,495	3,491	788	2,935	3,909	2,330	17,028	10,798	13,449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5	3	13	0	3	1	0	0	0	0	1	12	7	12
경기	화성시	우정읍	22	63	62	2	7	10	2	2	4	0	0	45	13	13
경기	여주군	능서면	5	1	24	0	31	2	0	1	0	0		15	5	6
강원	홍천군	남면	10	7	43		1	2		0	3	1		69	6	13
강원	철원군	철원읍	2	1	9	0	1	0		0	1			9	1	5
강원	철원군	갈말읍	14	3	24	1	12	0	0	0	7		0	68	4	29
강원	철원군	동송읍	8	4	18	0	1	2	0	0	3	0	0		3	18
충북	청원군	오창읍	22	43	54	1	1	4	0	1	1	0	0	53	25	25
충북	청원군	북이면	19	7	43	1	17	2	0	0	2		0	42	22	17
충북	보은군	탄부면	3	1	25	0	3	3	0	0	0			7	7	21
충북	진천군	진천읍	8	3	28	2	2	3	0	0	1	0	2	10	8	24
충남	보령시	청소면	8	7	24	0	0	2	0	0	0	0	0	8	5	13
충남	보령시	남포면	4	1	21	1	0	1	0	0	0			4	2	8
충남	아산시	둔포면	5	5	16	0	0	3	0	0	0		0	23	3	7
충남	아산시	영인면	11	3	30	3	27	9	0	1	1	0	0		4	15
충남	서산시	부석면	97	67	57	36	39	274	1	0	4	55	0	10	9	30
충남	서산시	고북면	51	19	14	1	2	12	0		0		1	39	4	9
충남	부여군	임천면	11	2	36	1	1	9	0	0	1	0		6	9	21
충남	홍성군	서부면	28	3	68	1	1	12	0	0	1	0	1	1	11	19
충남	예산군	삼교읍	8	5	14	0	0	7	0	0	0	5	1	29	5	24
충남	예산군	고덕면	22	24	16	0	0	5	0	0	0	0	0	94	3	15
충남	당진시	송악읍	122	114	72	1	0	10	0	0	0	1	0	7	5	16
충남	당진시	신평면	78	151	48	5	0	19	0	4	1		0	15	5	10
전북	군산시	회현면	4	0	4	1	0	3	0	0	0		0		1	2
전북	군산시	임피면	5	1	10	1	1	6	0	0	0	0	0		7	13
전북	군산시	대야면	7	1	7	1	2	1	0	0	1				1	2
전북	군산시	개정면	11	2	8	1	3	3	1	1	0	0	0		2	3
전북	군산시	나포면	4	0	11	0	0	2	0	0	0			0	3	7
전북	익산시	오산면	15	2	8	1	1	7	0	0	0	0			3	4
전북	익산시	용안면	5	2	9	1	1	4	0	0	0		0		2	6
전북	익산시	낭산면	7	2	22	0	0	2	0	0	0			5	7	3
전북	익산시	동산동	6	1	9	1	1	6	1	1	0			0	7	6
전북	김제시	성덕면	9	1	16	1	1	4	0	0		0	0	1	7	5
전북	김제시	광활면	1		0	4		1	0	1	0	4			0	0

참고문헌

부표 4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동 노지채소 및 특작류 재배면적 2 (2010년)

시도	시군	읍면동	배추	무	고추	양파	대파	마늘	시금치	상추	호박	양배추	수박	인삼	참깨	들깨
전국	전국	전국	28,270	15,859	43,405	16,520	7,292	20,495	3,491	788	2,935	3,909	2,330	17,028	10,798	13,449
전북	고창군	대산면	94	341	79	42	44	1	2	0	1	0	220	66	11	1
전북	부안군	동진면	3	0	14	0	1	3	0	0		0			4	1
전남	순천시	주암면	11	2	98	1	0	3	0	0	0	0	0	6	8	4
전남	순천시	별량면	3	1	8	1	1	2	0	0	0	0	0		4	2
전남	나주시	동강면	5	0	42	6		2	0	0	0	0			10	2
전남	담양군	무정면	1	0	5	1		0	0						3	2
전남	고흥군	포두면	3	0	14	6	2	146	2	0	0		0	0	8	2
전남	보성군	조성면	6	1	14	0	0	4	1	0		0	0		5	3
전남	장흥군	관산읍	17	5	58	54	2	15	1	0	0	15	0	1	26	7
전남	해남군	현산면	56	5	42	93	4	115	4	0	8	0		0	19	2
전남	영암군	덕진면	15	14	36	1	0	3		0	2		1	1	22	3
전남	영암군	시종면	220	163	154	19	0	3	0	0	4		65	93	42	2
전남	영암군	군서면	16	7	19	9	0	12	0	0	0	0	0		19	5
전남	영암군	서호면	14	1	35	1	0	5	0	0	0		0		16	3
전남	장성군	장성읍	11	2	26	15	0	12	0	0	0		0	0	12	7
경북	포항시	홍해읍	22	7	22	3	8	3	63	3	1	0		0	5	5
경북	안동시	서후면	2	2	110	1	1	0	0	0	2		0	0	31	3
경북	안동시	남선면	1	0	35	11	0	5		0	25				12	2
경북	상주시	사벌면	5	2	15	1	0	1	0	0				5	7	4
경북	상주시	공검면	4	1	14	0	0	1			3	0	0		6	6
경북	의성군	구천면	0	0	10	2	0	1	0		0			2	6	2
경북	의성군	단북면	1	0	13	2		1			0				5	1
경북	영덕군	병곡면	4	1	24	6	2	0	33	0	0		0		2	1
경남	김해시	철산서부동	2	1	1	0	2	1	0	0					0	
경남	밀양시	하남읍	2	1	0	2	0	2	0	0	0	1	0		2	0
경남	산청군	신안면	6	3	8	18	0	1	0	0	1	0	0		1	2

부표 5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동 과일류 재배면적 1 (2010년)

시도	시군	읍면동	사과	배	복숭아	단감	노지포도	시설포도	뽕은감	매실	밤	대추	복분자
전국	전국	전국	32,789	16,110	13,381	11,365	14,457	2,127	13,620	7,773	26,646	3,586	2,495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18	74	548					2			0
경기	화성시	우정읍	0	7	1	0	6	1		0	0	1	
경기	여주군	능서면	1	9	4		1	0		0	2	0	0
강원	홍천군	남면	1	8	1		1	1		0			
강원	철원군	철원읍		0									
강원	철원군	갈말읍	3	6	1	0	4			5		0	0
강원	철원군	동송읍	3	1			2	1		1	1		
충북	청원군	오창읍	6	17	9		0	0	1	1	2	0	
충북	청원군	북이면	12	9	7		3	1	0				
충북	보은군	탄부면	9	0	1		1		17	1		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5	6	4	0	8	1		3	8	1	
충남	보령시	청소면	0	0	0	0			1	0	2	0	0
충남	보령시	남포면	1	6	0	0	49	10	0	0	3		
충남	아산시	둔포면	6	236	2	0	2		1	1	0	0	
충남	아산시	영인면	20	24	0	0	6		1	1	2	0	0
충남	서산시	부석면	6	9			1	0					
충남	서산시	고북면	6	6	0	1	1		1	1	1		
충남	부여군	임천면		0	1		1	0	5	1	47		0
충남	홍성군	서부면	3			0	1	1	0	1	0	0	
충남	예산군	삼교읍	103	32	2	1	0		2	11	1	0	1
충남	예산군	고덕면	154	43	2		1		0				
충남	당진시	송악읍	64	9	3	2	2	0	3	5	1	3	0
충남	당진시	신평면	48	2	2	0				0			
전북	군산시	회현면		0	0		0		0	1			
전북	군산시	임피면	0	2	0	0	0		1	1	0		
전북	군산시	대야면			1		1			0			
전북	군산시	개정면		0		0			0	1		0	
전북	군산시	나포면	0	4		0	1		0	1	1	0	0
전북	익산시	오산면		2			1		0	0			0
전북	익산시	용안면				0	2		0	0			
전북	익산시	낭산면	14	6	2	5	5		2	0			0
전북	익산시	동산동	4	1		1	0		4	0	3	0	
전북	김제시	성덕면	13	1	12	0	0	0	2	0			0
전북	김제시	광활면											

참고문헌

부표 6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동 과일류 재배면적 2 (2010년)

시도	시군	읍면동	사과	배	복숭아	단감	노지포도	시설포도	뽕은감	매실	밤	대추	복분자
전국	전국	전국	32,789	16,110	13,381	11,365	14,457	2,127	13,620	7,773	26,646	3,586	2,495
전북	고창군	대산면		3		0			1				24
전북	부안군	동진면	3	2		0			0	0			
전남	순천시	주암면		10	1	22			5	15	23		
전남	순천시	별량면		4	1	19			1	14	6	0	
전남	나주시	동강면		36	1	8	0		21	1			10
전남	담양군	무정면				0	1			1			
전남	고흥군	포두면				3			2	11	1		0
전남	보성군	조성면		3	0	7			1	5	0		
전남	장흥군	관산읍		3		11			5	7	0		
전남	해남군	현산면				4			0	0			
전남	영암군	덕진면		21	1	15		2	20	5			0
전남	영암군	시종면		48		16			6	0			
전남	영암군	군서면	13	11		37	0		13	3			
전남	영암군	서호면		1		4	1		15	1			
전남	장성군	장성읍	7	1	4	11	2	0	33	4			2
경북	포항시	홍해읍	49	5	3	12	1		0	3	0	2	1
경북	안동시	서후면	34		4		0		0		0	0	
경북	안동시	남선면	34	0	0		0		2	1		4	0
경북	상주시	사벌면	10	258	2	0	31		47	0			
경북	상주시	공검면	59	186	6				45	0	0	0	
경북	의성군	구천면	266	11	22	0	1		18	1	0	0	0
경북	의성군	단북면	33		17		1		3				
경북	영덕군	병곡면	4	44	3	1			0	0			
경남	김해시	철산서부동				6	0		4	0		0	0
경남	밀양시	하남읍	0	0		96			0	1			0
경남	산청군	신안면	2	11		104			71	5	148		

부표 7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동 시설채소 재배면적 1(2010년)

시도	시군	읍면동	시설 배추	시설 무	시설 고추	시설 시금치	시설 상추	시설 호박	시설 오이	시설 수박	시설 토마토	시설 딸기	시설 참외
전국	전국	전국	2,575	1,269	4,852	2,686	4,086	2,297	3,004	10,158	4,331	4,771	5,029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1	0	0	0			0		0		
경기	화성시	우정읍	1	1	4	1	1	0	1	0	1	0	0
경기	여주군	능서면	0	0	1	5	9		0	0	0	0	
강원	홍천군	남면	1	1	4	0	1	0	1	0	0		0
강원	철원군	철원읍	0	0	2		1	0	2		1		
강원	철원군	갈말읍	2	0	7		0		1		6		
강원	철원군	동송읍	0	0	5	0			1		2		
충북	청원군	오창읍	1	0	1	1	1	0	3	2	14	4	
충북	청원군	북이면	0	0	0	2	0	0	2		0		0
충북	보은군	탄부면	0		0				0	0	9		
충북	진천군	진천읍	1	2	1	1	0	1	8	19	1	1	0
충남	보령시	청소면	0	0	0	0					5		
충남	보령시	남포면	0	0	2	1	4	0	0	1			
충남	아산시	둔포면					0	0	0		0	0	
충남	아산시	영인면	0	0	1	0	1	2		1	14	0	
충남	서산시	부석면	3	0	0		0	1	0	1			0
충남	서산시	고북면	4	1	2	0	1	0	3	3	0	5	0
충남	부여군	임천면	0		3		0	0	26	10	5		0
충남	홍성군	서부면	4	0	3	0			0	20	0		
충남	예산군	삼교읍	1	0	6	0	0	1		11	5	8	
충남	예산군	고덕면	2	0	18	2	0		4	4	0	0	
충남	당진시	송악읍	1	0	4	0	0	1	0				
충남	당진시	신평면	1	1	3	0	23	1	0	1	1	0	0
전북	군산시	회현면	0	0	1	0	1	0	0			0	
전북	군산시	임피면			1	0	0	0	0				0
전북	군산시	대야면	1	0	0	0	0	1	0	0	1		
전북	군산시	개정면	1	1	1	0	0	0	0	0	1		0
전북	군산시	나포면	0		1	0	0	0					
전북	익산시	오산면	1	0	0	1	2	0			0		
전북	익산시	용안면	0		1		0	1	0	63	11	17	0
전북	익산시	낭산면	1	1	5	0	1			2	2	19	
전북	익산시	동산동	1	0	2	1	73	1	1	105	29	1	14
전북	김제시	성덕면	1		0		0	0		1	2	5	
전북	김제시	광활면	0		0	0	1						

참고문헌

부표 8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동 시설채소 재배면적 2 (2010년)

시도	시군	읍면동	시설 배추	시설 무	시설 고추	시설 시금치	시설 상추	시설 호박	시설 오이	시설 수박	시설 토마토	시설 딸기	시설 참외
전국	전국	전국	2,575	1,269	4,852	2,686	4,086	2,297	3,004	10,158	4,331	4,771	5,029
전북	고창군	대산면	8	42	7	0		5		76	4	0	0
전북	부안군	동진면			1							2	
전남	순천시	주암면	0	0	14	0	1	0		5	1	14	1
전남	순천시	별량면	0	0	0		0	0	6		2	0	
전남	나주시	동강면	0		1	0	0				0		
전남	담양군	무정면	0		0		0			0	24	8	
전남	고흥군	포두면	0	0	0	0			24		1	0	
전남	보성군	조성면	0		1				0		32	2	
전남	장흥군	관산읍	1	0	3	0	0	0	0		11	12	0
전남	해남군	현산면	0	0	0	0	0				1	2	
전남	영암군	덕진면	0	0	4	0	0	0	0	3		0	0
전남	영암군	시종면	5	94	13	0	0	1		51	4	2	
전남	영암군	군서면	2	0	2	0	1	1	1		0		
전남	영암군	서호면			1						3		
전남	장성군	장성읍	0		4	0	0	0		4	2	5	
경북	포항시	홍해읍	1	0	0	9	1	0	0		4	4	0
경북	안동시	서후면	0	0	0	0	0		1	1	0	4	
경북	안동시	남선면	0	0	0	1	0	11	7	8	5		
경북	상주시	사벌면			0	0	0		7				4
경북	상주시	공검면						0	3		1		
경북	의성군	구천면	0	0	0	0	0	1	1		0		
경북	의성군	단북면	1		1	0	0	0	1		1		1
경북	영덕군	병곡면			1	11		0					
경남	김해시	찰산써부동	0	0		2	91	0	0	0	31	1	34
경남	밀양시	하남읍	4	1	57	0	51	4	1	32	2	108	1
경남	산청군	신안면	0	0	1		1	11	1	16	1	70	0

부표 9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동 축종별 사육현황 1 (2010년)

시도	시군	읍면동	한우	육우	젓소암컷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전국	전국	전국	2,681,125	188,153	409,257	8,094,302	100,450,134	51,716,661	10,209,432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941	894	2,436	35,141	155,150	206,007	8,000
경기	화성시	우정읍	2,387	1,509	3,208	5,001	305,672	35,100	10
경기	여주군	능서면	1,108	99	859	14,598	278,256	28,540	6
강원	홍천군	남면	2,826	200	482	26,065	178,267	1,345	37
강원	철원군	철원읍	1,841		6	3,000	35	36	
강원	철원군	갈말읍	2,813	181	1,321	16,783	297,451	424,657	16
강원	철원군	동송읍	3,884	732	1,746	22,495	484	147,040	15
충북	청원군	오창읍	6,449	162	447	7,040	78,241	10,546	17,018
충북	청원군	북이면	4,266	7,348	10	26,821	87,107	51,278	226,004
충북	보은군	탄부면	4,045	44	76	2,288	50,296	146	2
충북	진천군	진천읍	1,356	106	854	21,102	23	82	1,415
충남	보령시	청소면	2,727	25	338	10,471	104,100	73	
충남	보령시	남포면	3,031	6	7		130,609	605	13
충남	아산시	둔포면	1,046	163	1,134	11,110	168,000	445,200	65,250
충남	아산시	영인면	1,416	309	1,262	2,900	136,202	86,088	18
충남	서산시	부석면	2,084	262	20	7,207	159,179	43,900	31
충남	서산시	고북면	4,068	285	587	7,023	165	4,530	26
충남	부여군	임천면	1,503	62	140	1,100	20,048	26,075	
충남	홍성군	서부면	6,057	174	176	18,983	406,349	72,145	67
충남	예산군	삼교읍	4,586	365	1,343	5,129	130,027	434	13
충남	예산군	고덕면	5,326	1,114	3,759	19,517	435,546	50,055	32
충남	당진시	송악읍	2,708	180		12,159	30,222	15,440	55
충남	당진시	신평면	2,596	584	1,948	24,903	177,457	16,121	46
전북	군산시	회현면	105	64	335	5907	149	115	107
전북	군산시	임피면	433	70	195	41	105532	1503	139
전북	군산시	대야면	1474	13	1		150	45	
전북	군산시	개정면	731	10	3	2300	6298	74	68
전북	군산시	나포면	470	79	86	3003	761	180	3
전북	익산시	오산면	808			2,544	458	144	4
전북	익산시	용안면	1,089	274	232	52	140,126	110	10,016
전북	익산시	낭산면	4,578	86	359	2,600	383,069	22,031	21
전북	익산시	동산동	1,257	10		8,530	250,099	7,608	2
전북	김제시	성덕면	989	31	3	2	200	2,225	24
전북	김제시	광활면	409				165		

참고문헌

부표 10 들녘경영체 소재 읍면동 축종별 사육현황 2 (2010년)

시도	시군	읍면동	한우	육우	젓소암컷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전국	전국	전국	2,681,125	188,153	409,257	8,094,302	100,450,134	51,716,661	10,209,432
전북	고창군	대산면	2,452	274	2,760		197	56,034	3,234
전북	부안군	동진면	685	114		2,900	43,098	41	
전남	순천시	주암면	381	13	51	32	48,521	323	26
전남	순천시	별량면	627	52	160	107	77,502	405	10
전남	나주시	동강면	3,482	70	7	46	175,416	65,012	101,010
전남	담양군	무정면	3,900	184	190	3,000	61,753	25	7
전남	고흥군	포두면	7,151	69	177	3,528	60,064	24	
전남	보성군	조성면	2,269	13	97	2,000	4,336	27	10,012
전남	장흥군	관산읍	11,734	18	14	7,347	60,069	418	20
전남	해남군	현산면	6,657	106	102	13,861	140	277	45,046
전남	영암군	덕진면	3,401	8	104	3,047	2,047	17,231	211,081
전남	영암군	시종면	2,369	101	231	4,319	83,040	70,220	204,500
전남	영암군	군서면	2,239	67	112	1,034	722	338	43,085
전남	영암군	서호면	2,923		151	1,202	841,182	30,056	23
전남	장성군	장성읍	2,917			4,220	2,619	117	47
경북	포항시	홍해읍	2,890	216	388	1,365	1,750	97,759	7
경북	안동시	서후면	6,179	1		12,500	121,069	139	10
경북	안동시	남선면	880			7,200	30,175	106	21
경북	상주시	사벌면	3,099	55	167	75	270,255	8	8
경북	상주시	공검면	1,350			26	27	53,942	
경북	의성군	구천면	1,496	141	252	4,450	26,031	90	
경북	의성군	단북면	768	119	107	6,102		12	
경북	영덕군	병곡면	702		13	1	31	422	15
경남	김해시	철산서부동	593	1	1	48	32	55	
경남	밀양시	하남읍	722	6	144	950	50	20,000	
경남	산청군	신안면	2,190	9	259	4,012	953	6,569	8

< 참조 2 > 전국 농업법인의 현황

부표 11 전국 농업법인 조직형태별 출자자수별 법인수 비교(2013년)

구분	4인이하	5~9인	10~49인	50인이상	계
영농조합법인	599 (6.2%)	7,038 (72.9%)	1,580 (16.4%)	434 (4.5%)	9,651 (100.0%)
농업회사법인	2,591 (70.4%)	801 (21.8%)	216 (5.9%)	74 (2.0%)	3,682 (100.0%)
전체	3,190 (23.9%)	7,839 (58.8%)	1,796 (13.5%)	508 (3.8%)	13,333 (100.0%)

부표 12 전국 농업법인 조직형태별 출자자 비율 및 법인당 출자자수 비교(2013년)

구분	출자자계 (%)	농업인 (%)	비농업인 (%)	생산자단체 (%)	기타법인 (%)	법인당 출자자수 (명)
영농조합법인	100.0	94.9	5.0	0.1	0.0	14.1
농업회사법인	100.0	74.3	24.6	0.5	0.6	12.4
계	100.0	89.7	9.9	0.2	0.2	13.6

부표 13 전국 농업법인 조직형태별 출자액별 법인수 비교(2013년)

구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원~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출자법인수
영농조합법인	1,939 (20.1%)	1,667 (17.3%)	5,114 (53.0%)	931 (9.6%)	9,651 (100.0%)
농업회사법인	624 (16.9%)	700 (19.0%)	1,763 (47.9%)	595 (16.2%)	3,682 (100.0%)
계	2,563 (19.2%)	2,367 (17.8%)	6,877 (51.6%)	1,526 (11.4%)	13,333 (100.0%)

부표 14 전국 농업법인의 정부보조금 및 융자금 관련법인 현황

조직형태별	정부보조금 관련법인			정부융자금 관련 법인		
	법인수 (개)	법인당 정부보조금 (백만원)	정부보조금 당해연도 법인당 정부보조금	법인수 (개)	정부융자금 법인수 비율	법인당 정부융자금 (백만원)
계	5,494	390.2	126.7	1,114	20.3%	564.2
영농조합법인	4,662	365.5	115.2	849	849	467.6
농업회사법인	832	528.6	179.6	265	265	873.9

참고문헌

부표 15 전국 농업법인 조직형태별 출자금 유형 및 법인당 출자금 비교(2013년)

구분	출자금 합계 (백만원)	현금-현물여부 (백만원)		출자자 유형 (백만원)				법인당 출자금 (백만원)
		현금 출자	현물 출자	농업인	비 농업인	농업 생산자 단체	기타 법인	
영농조합법인	221.4 (100.0%)	191.2 (86.4%)	30.2 (13.6%)	197.4 (89.2%)	21.0 (9.5%)	2.1 (1.0%)	0.9 (0.4%)	221.4
농업회사법인	455.2 (100.0%)	400.0 (87.9%)	55.2 (12.1%)	262.0 (57.6%)	124.5 (27.4%)	24.7 (5.4%)	44.0 (9.7%)	455.2
계	285.9 (100.0%)	248.9 (87.0%)	37.1 (13.0%)	215.2 (75.3%)	49.6 (17.3%)	8.4 (2.9%)	12.8 (4.5%)	285.9

부표 16 전국 농업법인의 사무실 유형별 법인비율

구분	법인수	법인수	사무실 있음				사무실 없음
			계	소유	임차	무상	
영농조합법인	8,872	100.0%	71.6%	42.1%	19.7%	9.7%	28.4%
농업회사법인	2,875	100.0%	88.6%	42.7%	40.1%	5.8%	11.4%
계	11,747	100.0%	75.8%	42.3%	24.7%	8.8%	24.2%

부표 17 전국 농업법인의 운영주체별 법인 현황

구분	합계	운영주체별		
		출자자 공동	대표자단독	출자자 개별
영농조합법인	10,792 (100.0%)	5,417 (50.2%)	4,234 (39.2%)	1,141 (10.6%)
농업회사법인	3,760 (100.0%)	1,181 (31.4%)	2,501 (66.5%)	78 (2.1%)
계	14,552 (100.0%)	6,598 (45.3%)	6,735 (46.3%)	1,219 (8.4%)

부표 18 전국 농업법인의 사업유형별 법인 현황

구분	총계	사업유형별								비분류
		계	농업 생산	농업생산이외						
				소계	가공업	유통업	농업서 비스업	농업서 비스업 (위탁 영농)	기타	
영농조합법인	10,792 (100.0%)	9,651 (89.4%)	3,087 (32.0%)	6,564 (68.0%)	1,880 (28.6%)	2,554 (38.9%)	733 (11.2%)	629 (9.6%)	768 (11.7%)	1,141 (17.4%)
농업회사법인	3,760 (100.0%)	3,682 (97.9%)	1,036 (28.1%)	2,646 (71.9%)	882 (33.3%)	1,101 (41.6%)	118 (4.5%)	85 (3.2%)	460 (17.4%)	78 (2.9%)
계	14,552 (100.0%)	13,333 (91.6%)	4,123 (30.9%)	9,210 (69.1%)	2,762 (30.0%)	3,655 (39.7%)	851 (9.2%)	714 (7.8%)	1,228 (13.3%)	1,219 (13.2%)

부표 19 전국 농업법인의 법인당 종사유형별 종사자수 및 비율

구분	종사유형별 법인당 종사자수					종사유형별 법인당 종사자수				
	종사자	상시 종사자	상시 종사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상시 종사자	상시 종사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상근 출자자	상용 근로자			상근 출자자	상용 근로자		
영농조합법인	6.2	4.8	2.9	2.4	1.4	77.5%	46.2%	31.3%	22.5%	
농업회사법인	8.7	7.0	1.7	1.4	1.7	80.6%	19.2%	61.4%	19.4%	
계	6.9	5.4	2.5	2.1	1.5	78.6%	36.8%	41.8%	21.4%	

부표 20 전국 농업법인의 상시종사자 규모별 법인수 비율

구분	법인수	상시종사자 규모별 법인수비율				
		합계	4인 이하	5~9인	10~49인	50인 이상
영농조합법인	9,651	100.0%	60.3%	30.3%	9.1%	0.3%
농업회사법인	3,682	100.0%	60.8%	21.3%	16.6%	1.2%
계	13,333	100.0%	60.5%	27.8%	11.2%	0.5%

참고문헌

부표 21 전국 농업법인의 재무제표 작성여부 비율 변화(단위 : %)

구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영농조합법인	51.4	57.8	64.0	67.2	68.9	70.0	82.9	86.3	86.1	86.8
농업회사법인	29.0	33.8	44.0	55.0	68.9	76.0	88.2	93.9	94.5	94.3
계	45.2	52.5	60.4	65.2	68.9	70.8	83.8	87.9	88.1	88.9

부표 22 전국 농업법인중 결산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 현황

구분	결산 법인수 (개)	자산(백만원)			부채(백만원)			자본 (백만원)
		소계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소계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영농조합법인	8,376	958 (100.0%)	464 (48.4%)	494 (51.6%)	569 (59.4%)	313 (55.0%)	256 (45.0%)	390 (40.7%)
농업회사법인	3,472	2,187 (100.0%)	920 (42.1%)	1,267 (57.9%)	1,498 (68.5%)	954 (63.7%)	544 (36.3%)	688 (31.5%)
합계-평균	11,848	1,318 (100.0%)	597 (45.3%)	721 (54.7%)	841 (63.8%)	501 (59.6%)	340 (40.4%)	477 (36.2%)

부표 23 전국 농업법인중 결산법인의 규모별 자산, 부채, 자본 현황

구분	계	자산				부채				자본			
		1억 미만	1억~5 억미만	5억~10 억미만	10억 이상	1억 미만	1억~5 억미만	5억~10 억미만	10억 이상	1억 미만	1억~5 억미만	5억~10 억미만	10억 이상
영농조합법인	100.0	18.5	44.5	15.3	21.7	50.3	26.0	9.6	14.1	37.0	43.8	11.0	8.2
농업회사법인	100.0	17.1	32.7	14.7	35.5	32.1	25.9	12.9	29.1	42.8	34.7	9.7	12.8
계	100.0	18.1	41.1	15.1	25.7	45.0	25.9	10.6	18.5	38.7	41.1	10.7	9.6

부표 24 전국 농업법인 법인당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농업생산수입			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
		계	작물재배	축산	
영농조합법인	1,082	241	121	120	841
농업회사법인	2,585	681	133	549	1,903
계	1,497	363	124	239	1,134
영농조합법인	100.0%	22.3%	11.2%	11.1%	77.7%
농업회사법인	100.0%	26.3%	5.1%	21.2%	73.6%
계	100.0%	24.2%	8.3%	16.0%	75.8%

부표 25 전국 농업법인 법인당 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 현황

구분	농업생산이외 수입별					
	계	가공 판매	유통 판매	농업 서비스	농업서비스 (위탁영농)	기타
영농조합법인	841	301	429	15	9	95
농업회사법인	1,903	653	1,019	30	21	202
계	1,134	398	592	19	13	125
영농조합법인	100.0%	35.8%	51.0%	1.8%	1.1%	11.3%
농업회사법인	100.0%	34.3%	53.5%	1.6%	1.1%	10.6%
계	100.0%	35.1%	52.2%	1.7%	1.1%	11.0%

부표 26 전국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결산 법인 수(개)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 관리비	영업 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당기 순이익	당기 순이익 -결손 제외
영농조합법인	8,376	1,228	1,061	168	158	9	20	18	57
농업회사법인	3,472	2,735	2,402	333	341	-8	-19	-24	108
계	11,848	1,670	1,454	216	212	4	8	6	71

참고문헌

부표 27 전국 농업법인의 경영성과비율 비교

구분	결손법인수 비율	매출 총이익율	매출원가비율	영업 이익율	당기 순이익율
영농조합법인	33.0%	13.7%	86.4%	0.7%	1.5%
농업회사법인	37.8%	12.2%	87.8%	-0.3%	-0.9%
계	34.4%	12.9%	87.1%	0.2%	0.4%

주 : 매출총이익율=매출총이익÷매출액, 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

부표 28 전국 농업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 구성내용

구분	판매비와 관리비 (백만원)	판매비와 관리비 구성내용(백만원)							
		급여	퇴직 급여	복리 후생비	조세 공과금	임차료	감가 상각비	대손 상각비	기타 비용
영농조합법인	158	39	1	5	2	4	12	0	95
농업회사법인	341	92	5	12	6	10	14	7	196
계	212	54	2	7	3	6	13	2	125
영농조합법인	100.0%	24.7%	0.6%	3.2%	1.3%	2.5%	7.6%	0.0%	60.1%
농업회사법인	100.0%	27.0%	1.5%	3.5%	1.8%	2.9%	4.1%	2.1%	57.5%
계	100.0%	25.5%	0.9%	3.3%	1.4%	2.8%	6.1%	0.9%	59.0%

부표 29 전국 농업법인의 매출액규모별 법인수 비율

조직형태별	매출액 규모별 비율						
	1억원 미만	1~5 억원미 만	5~10 억원 미만	10~20 억원 미만	20~50 억원 미만	50~100 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42.2%	23.7%	10.2%	9.1%	8.8%	3.6%	2.4%
농업회사법인	31.5%	20.8%	10.1%	10.2%	13.6%	7.8%	6.0%
계	39.1%	22.9%	10.2%	9.4%	10.2%	4.8%	3.5%

부표 30 전국 농업법인의 영업이익규모별 법인수 비율

조직형태별	영업이익 규모별 비율			
	적자	1억원미만	1~5억원미만	5억원이상
영농조합법인	43.6%	46.9%	8.5%	1.0%
농업회사법인	43.5%	38.8%	14.7%	2.9%
계	43.6%	44.5%	10.3%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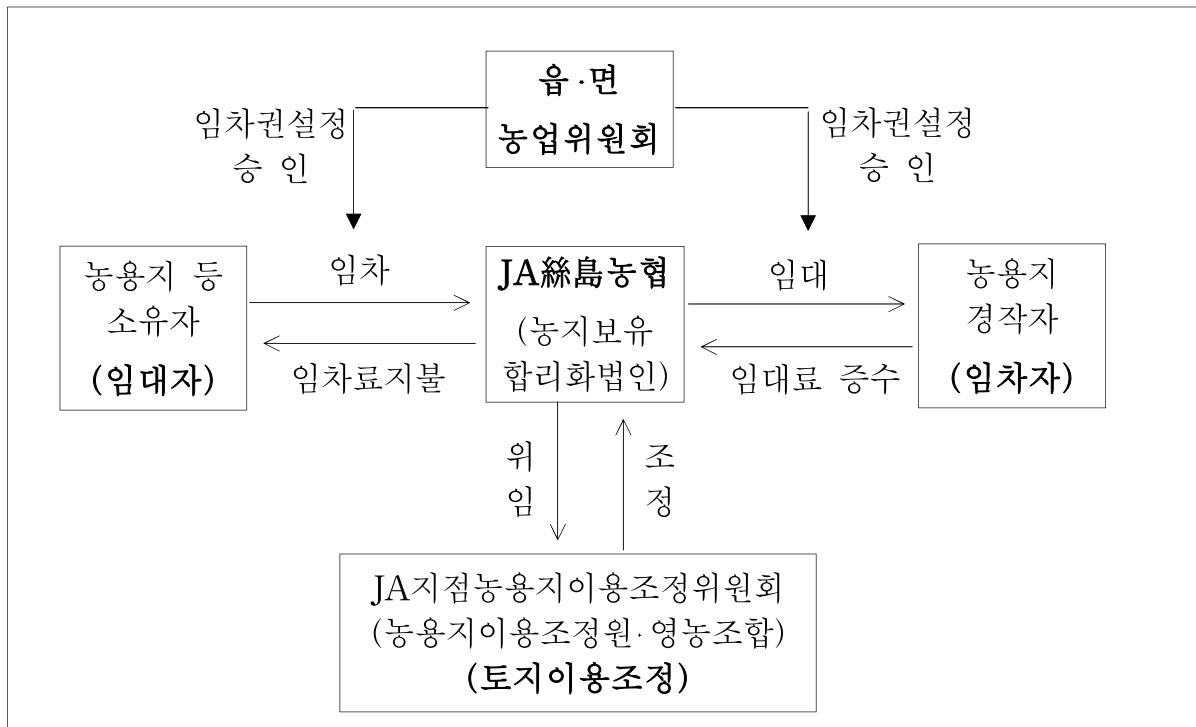
< 참조 3 > 일본 농지보유합리화사업 사례(일본 福岡縣 系島市)

→ 2014년부터 [農地中間管理機構]를 통해 지역농지의 집적·집약화 도모

○ JA系島(농협)의 농지보유합리화사업의 추진체계

- JA系島의 농지보유합리화사업의 추진순서

- ① 농지소유자(경작자 포함)가 농지보유합리화법인에게 농지를 일괄 임대하면,
- ②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인 농협이 농용지이용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하여
- ③ 경작자에게 市町村 농업위원회에서 임차권을 줌
- ④ 상기과정에서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인 농협에서는 농지경작자에게서 임대료를 징수하여 경지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함.



참고문헌

- 추진절차

절차	내 용
①설명회	農區별로 실시하고, 농지소유자(임대자), 경작자(임차자)을 별도로 실시(설명회 결시자는 재실시)
②접수	이용권설정 신청접수(임대자, 임차자)
③이용조정	JA지점의 이용조정위원·농정과·농업위원회에서 경작자의 집약, 합격한 조정포장정비지구내에서는 영농조합에서 조정
④계약	JA지점에서 실시, 농지소유자와 경작자 별도로 실시
⑤농지이용집적 계획작성신청	JA본점에서 市·町 농정과로 신청
⑥이용권설정승인	농업위원회에서 심의, 승인
⑦공고	市·町 농정과에서 공고
⑧임차료의 징수와 지불	JA가 경작자에게서 임차료를 징수하여 소유자에게 지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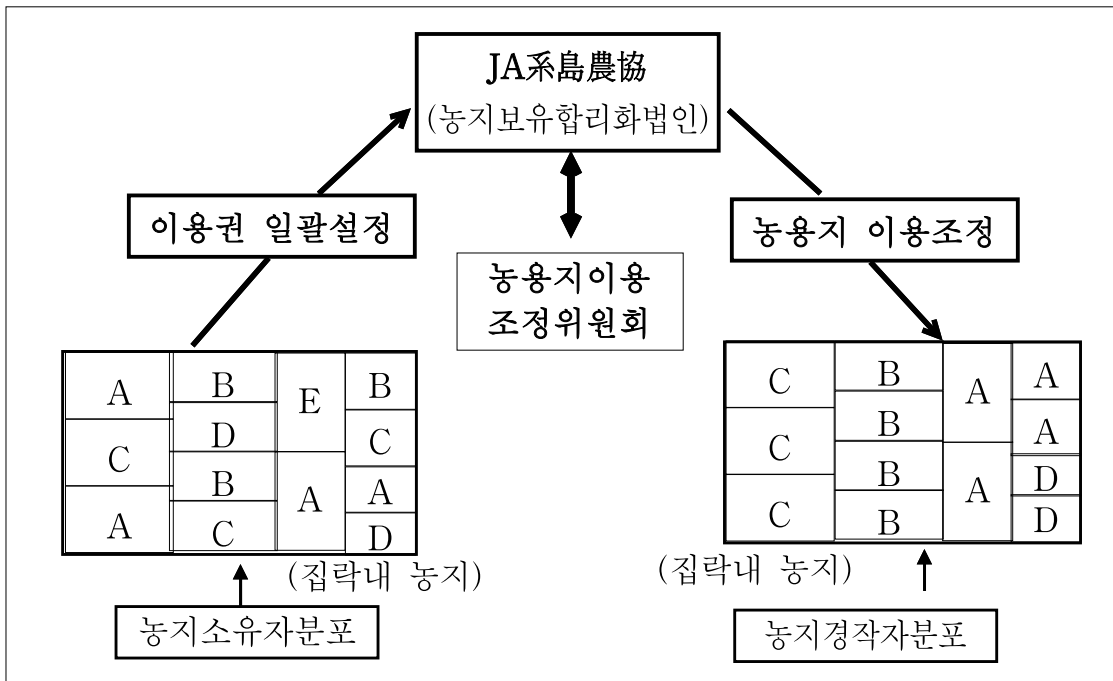
-역할분담 : 각 농업관련 기관에서 단지활성화를 위해 역할 분담체계를 잘 하고 있음.

기관별	역 할
농협지점	설명회 실시, 이용권설정 접수, 이용조정, 계약, 이용권설정서 발송, 계약기간의 종료(갱신) 통지문서 발송(기간관리, 임차료 등)
농협본점	농지이용집적계획의 작성 및 전산입력, 임대차료의 지불·징수, 계약기간의 종료(갱신) 통지문서 작성(기간관리, 임차료 등)
市·町 농업위원회	설명회실시, 농업자 연금, 生前일괄증여자 등 관계자를 파악하여, 개별지도, 임차권설정의 심의와 승인, 농지대장의 확인
市·町 농정과	설명회의 실시, 이용조정, 농지이용집적계획의 공고
영농조합	설명회 실시, 이용권 설정접수, 이용조정(포장정비지구내)

○ JA系島(농협)의 농지보유합리화사업을 통한 농지집단화 방법

- 가능한 농지경작자의 소유농지를 중심으로 이용농지를 집단화하면서 농지이용권을 줌.

- ① 농지소유자가 농지보유합리화법인에게 농지의 이용권을 일괄 설정하면
- ② 농용지이용조정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해 농지경작자에게 농지이용권을 부여함
- ③ 농지이용권을 농지경작자에게 부여시 아래 그림과 같이 분산된 농지를



○ 농지임차료 지불방법

- 결정체계 : 영농조합 연합협회의 農用地이용조정위원회에서 임차료를 결정함.
- 임대인(농지소유자)의 임대료 및 지불방법
 - * 임대료 : 10a당 현미 120kg (현미 100kg은 백미 90kg으로 환산)
 - * 임대자가 농협에 지불방법 신청
 - * 지불가능한 방법 : 임대자 희망에 의해, 현금, (현금+현물), 현물 지급

○ 주요 지원책

- 슈퍼L 자금((주)일본정책금융고)
 - 농지취득, 시설정비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추진에 요하는 장기자금을 저리로 융통
-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
 - 인정농업자가 경영안정을 위해 교부금을 적립하여 農用地, 농업용기계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적립액과 취득액을 필요 경비 혹은 損金으로 算入할 수 있는 제도
- 농업위원회에 의한 농〇용지 이용권설정 등에 관한 우선 알선

< 참조 4 >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연구 설문조사표

= 안내말씀 =

-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에서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과제(과제명 :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연구)로써 들녘경영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단계별 들녘경영체 육성체계를 연구하는 정책연구과제입니다
- 본 연구는 쌀 중심의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서 다양한 들녘경영체 육성방향과 2단계 공동경영 진입을 통한 들녘경영체 육성을 위한 연구를 통하여 쌀산업, 나아가 식량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 들녘경영체가 지역의 식량산업을 책임지고,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을 통해 참여농가의 소득증대와 식량의 자급률향상과 나아가 식량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편 주변지역의 밭작물의 연계하고, 6차 산업과 연계하여 농가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에 거듭나려고 합니다. 들녘경영체 임원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11월

(주)한국농업경영기술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연구자 대표 : 전북대학교 교수 조가옥

1. 귀하의 연령은 : (만 _____ 세)
2. 귀하는 들녘경영체에서 맡고 계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_____ ① 회장 _____ ② 임원 _____ ③ 일반회원
3. 귀하의 들녘경영체는 몇 년도에 선정되셨습니까?
 - 1) 시설장비 지원사업 : (_____ 년) (지원내용 : _____)
 - 2) 교육 및 컨설팅사업 : (_____ 년) (_____ 년) (_____ 년)

4. 들녘경영체의 법인구성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① 등기 이·감사 (_____ 명) ② 조합원 (_____ 명) ③ 준조합원 (_____ 명)
 ④ 계약재배농가수 (_____ 명) ⑤ 기타 (_____ , _____ 명)

5. 들녘경영체의 법인구성은 앞으로 어떤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 ① 등기 이·감사 (_____ 명) ② 조합원 (_____ 명) ③ 준조합원 (_____ 명)
 ④ 계약재배농가수 (_____ 명) ⑤ 기타 (_____ , _____ 명)

6. 귀하의 들녘경영체가 있는 지역의 들녘의 특징은 어떤 곳입니까?

- ___ ① 논 중심평야지역 ___ ② 논과 밭이 있는 평야지역(논과 밭이 혼합된 지역)
 ___ ③ 중산간지역 ___ ④ 산간지역

7. 들녘경영체가 지역의 쌀을 포함한 식량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많이 기여한다 ___ ② 약간 기여한다 ___ ③ 기여하지 못한다

8. (7.에서 ①과 ②에 답한 분에 한해서) 들녘경영체가 지역의 쌀을 포함한 식량발전에 기여한다면 무슨 부문에서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모두 체크하세요)

- ___ ① 고품질-친환경쌀 생산 ___ ② 식량산업에서 비용절감
 ___ ③ 지역농업의 식량생산 주체 ___ ④ 기타 (_____)

9. 귀하의 들녘경영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동작업은 무엇입니까?

(있는 데로 답해 주세요)

- ___ ① 공동육묘장을 통한 공동육묘 ___ ② 광역살포기를 통한 공동방제
 ___ ③ 농기계 공동이용(트랙터 경운·정지작업, 이앙기 이앙작업, 콤바인 수확작업)
 ___ ④ 벼 공동출하 ___ ⑤ 농지의 공동이용
 ___ ⑥ 농산물 가공사업 (가공사업내용 : _____)

10. 귀하의 들녘경영체에서 앞으로 가능한 공동작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있는 데로 답해 주세요)

- ___ ① 공동육묘장을 통한 공동육묘 ___ ② 광역살포기를 통한 공동방제
 ___ ③ 농기계 공동이용(트랙터 경운·정지작업, 이앙기 이앙작업, 콤바인 수확작업)
 ___ ④ 벼 공동출하 ___ ⑤ 농지의 공동이용
 ___ ⑥ 농산물 가공사업 (가공사업내용 : _____)

11.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운영비 지원사업 지원기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현재대로 3년간 지원 ___ ② 2단계별 이후 최소 1년이상 지원필요
 ___ ③ 지원필요없음 ___ ④ 기타(_____)

참고문헌

12. 교육컨설팅·운영비 지원사업 중 운영비 지원사업은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___ ① 공동육묘에 필요한 운영비 사용 ___ ② 공동방제에 필요한 운영비 사용
___ ③ 기타(_____)
13. 교육컨설팅·운영비 지원사업 중 운영비의 비율을 얼마나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___ ① 매년 동일하게 비율 책정 ___ ② 연차별 운영비 비중을 증대 ___ ③ 모르겠다
14. (13.에서 연차별 운영비 비중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답한 분만) 운영비의 비중을 연차별로 어떻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① 1년차 (_____ %) ② 2년차 (_____ %) ③ 3년차 (_____ %)
15. 교육 및 컨설팅비용으로 들녘경영체에 도움이 된 내용은 무엇인가요?(모두 체크)
___ ① 쌀 재배기술에 대한 기술습득 ___ ② 들녘경영체의 사업내용
___ ③ 쌀 판매방법에 대한 지식습득 ___ ④ 법인체 및 들녘경영체 운영방법
___ ⑤ 정부의 쌀과 식량 정책이해 ___ ⑥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___ ⑦ 기타(_____)
16. 지금까지 쌀 중심의 들녘경영체 육성을 지역(들녘)특성에 맞게 다양한 육성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 ① 아주찬성 ___ ② 약간찬성 ___ ③ 반대 ___ ④ 모르겠다
17. 지금까지 쌀 중심의 들녘경영체 육성을 지역(들녘)특성에 맞는 다양한 육성모델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 ① 아주찬성 ___ ② 약간찬성 ___ ③ 반대 ___ ④ 모르겠다
18. 귀하 들녘경영체의 경우 들녘여건을 고려할 때 다음에 예시된 육성모델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유형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___ ① 쌀 중심의 육성모델 ___ ② 쌀+이모작, 타작물 재배모델,
___ ③ 쌀+이모작, 타작물 + 경축순환농업 ___ ④ 쌀+밭작물 모델
___ ⑤ 기타(_____)
19. 귀하의 들녘경영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가능한 논 이모작과 타작물은 무엇입니까?
___ ① 논 이모작 식량작물(_____) ___ ② 논벼 대체 육성작물(_____)
___ ③ 논 이모작 시설작물(_____) ___ ④ 밭작물(_____) ___ ⑤ 없음
20. 귀하의 들녘경영체에서 5년이내에 쌀 등 가공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___ ① 쌀만 가공 ___ ② 쌀+잡곡가공 ___ ③쌀+축산가공,
___ ④ 기타(_____) ___ ⑤ 가공식품 불가능

21. 귀하의 들녘경영체에서 5년 이내에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___ ② 정보화마을 ___ ③ 도농교류형사업,
___ ④ 녹색농촌체험마을 ___ ⑤ 사회적기업 운영 ___ ⑥ 기타(_____)

22. 들녘경영체를 법인화(영농조합법인 혹은 농업회사법인)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있는데로 체크해 주세요)

- ___ ① 법인에 대한 이해부족 ___ ② 고령화로 참여농가의 한계
___ ③ 의사결정의 어려움 ___ ④ 주변농가들의 경영체로의 참여
___ ⑤ 법인운영 경험 부족 ___ ⑥ 기타 (_____)

23. 들녘경영체를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___ ① 농가 조직화 ___ ② 임원진의 역량부족 ___ ③ 농기계 공동작업 추진
___ ④ 공동육묘 및 방제 등 사업비정산 ___ ⑤ 공동육묘장이나 광역살포기 운영
___ ⑥ 지속사업 발굴 및 추진 ___ ⑦ 기타(_____)

24. 들녘경영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지원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있는데로 체크해 주세요)

- ___ ① 지속적인 교육·컨설팅 지원 ___ ② 도단위, 시군단위 관련사업 연계
___ ③ 들녘경영체 단계별·모델별 육성정책 확대 ___ ④ 지속가능한 모델개발 필요
___ ⑤ 공동육묘장 및 공동방제기 부속시설 지원
___ ⑥ 기타 시설지원(필요사항 적으세요 : _____)

25. 들녘경영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영체 자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있는데로 체크해 주세요)

- ___ ① 대표의 리더십 ___ ② 임원진의 역량강화
___ ③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역량강화 ___ ④ 다양한 사업추진
___ ⑤ 사업추진 및 자금의 투명성 제고 ___ ⑥ 자체 자조금 확보 운영
___ ⑦ 기타(_____)

26. 들녘경영체 활성화 위한 건의사항을 적으세요.

- ① 농림축산식품부 : (_____)
② 도, 시군 행정 : (_____)
③ 농업기술센터 : (_____)
④ 컨설팅업체 : (_____)
⑤ 기타 : (_____)

들녘경영체 단계별 육성체계 연구

발간등록번호 : 11-1543000-000732-01

(비매품)

2014년 12월 30일 인쇄

2014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연구자 : 조가옥, 김윤태, 황재현, 양호성, 이인재

(주)한국농업경영기술연구원

063-213-0466

발행처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연락처 : 044 - 201-1837

인쇄처 : 동인문화사 ☎ 063-275-1138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식량정책관 김경규, 식량산업과장 전한영,

담당 박성기 주무관 노규진, 곽동우,

044-201-1837, <http://www.mafra.go.kr>